

# 國防史年表

1945~1990

國防軍史研究所



# 發 刊 辭

국군의 역사는 8·15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혼란 속에서 태동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탄생하여 어언, 반세기의 연륜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군은 제 모습을 갖추기 전에 한국전쟁을 3년간이나 치러 조국 흥망의 위기를 극복했으며, 지금까지 40여 년간 사상 유례가 없는 휴전상태에서도 역경을 딛고 선진 국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군의 성장은 오늘에 있어 역사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안보상황은 전쟁을 억제하는 가운데서도 綜合安保態勢構築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군의 역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개요가 되는 「國防史年表」를 단행본으로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年表는 변천된 과정을 年代順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기록으로서, 일반 역사연표는 여러 권이 이미 발간된 바 있으나, 국방분야의 연표는 國防史와 各軍史를 통해 해당연도의 부분적인 연표가 부록으로 취급되었을 뿐 단행본으로 발간되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國防史年表」는 建軍期를 전후한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각계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엮은 것입니다.

국방군사분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라는 특수조건 때문에 정부나 군의 입장에서 公刊된 책자를 제외하고서는 손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나 연구학자들 외에는 국방에 관련된 지나간 과정의 사항이나 자료를 찾아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연구소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비중이 큰 국방분야의 연구 및 발전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10여 년간 국방사 편찬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國防史年表」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실무면이나 연구분야는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폭넓게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편찬에 참여해 준 관계 연구원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1994년 6월 1일

國防軍史研究所 所長 具 本 重

# 凡 例

1. 이 연표는 국방사 제1, 2, 3집을 비롯하여 국방백서, 국방일지의 기본자료와 각군사를 중심으로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국방분야와 이에 관련된 주요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제1부는 연표, 제2부는 국방관계 문헌으로 구분하여 일자순으로 편집하였다.
2. 연표의 내용은 국내, 북한, 국제로 구분하여 군정/군령을 총망라한 관련사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 그리고 국제적 사건을 포함하였다.
3. 일자 기준은 장기간일 경우, 시작일을 기준하고 괄호 안에 끝나는 일자를 표시하였으며, 1960년 이전의 단기로 된 법령의 공포일은 이해의 편의성을 감안, 서기로 표기하였다.
4. '70년대 이후의 기구 및 부대편성사항은 조직법령을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5. 국방관계 문헌은 미군정 당시 국방관련 법령과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제정한 법령과 최근까지의 역대 국방부 장관·차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령관 명단 등을 수록하였다.
6. 漢字 사용은 제정당시 법령은 원본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고유 명사 및 낱말과 중복되기 쉬운 용어에 국한하였다.
7. 외래어의 한글표기는 문교부 제정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과 언론분야에서 통용되는 외래어 표기 및 관용화된 말을 그대로 살렸다.

# 目 次

發 刊 辭  
凡 例

## 第 1 部 年 表

I. 建 軍 期 .....	3
1945년 .....	3
1946년 .....	9
1947년 .....	22
1948년 .....	33
1949년 .....	48
II. 戰 爭·整 備 期 .....	65
1950년 .....	65
1951년 .....	93
1952년 .....	113
1953년 .....	129
1954년 .....	152
1955년 .....	163
1956년 .....	173
1957년 .....	185

1958년	197
1959년	208
1960년	220

**Ⅲ. 國防體制定立期** ..... 232

1961년	232
1962년	242
1963년	254
1964년	267
1965년	279
1966년	292
1967년	306
1968년	320
1969년	336
1970년	350
1971년	361

**Ⅳ. 自主國防期(前期)** ..... 375

1972년	375
1973년	392
1974년	404
1975년	417
1976년	430
1977년	445
1978년	456
1979년	466
1980년	476

V. 自主國防期(後期) .....	494
1981년 .....	494
1982년 .....	512
1983년 .....	529
1984년 .....	547
1985년 .....	562
1986년 .....	576
1987년 .....	590
1988년 .....	606
1989년 .....	632
VI. 國防態勢發展期 .....	652
1990년 .....	652

## 第 2 部 國防關係 文獻

I. 國防關係 法令 .....	679
가. 軍政期 .....	679
나. 政府樹立 以後 .....	683
II. 歷代 國防部長官·次官, 合參議長, 各軍 參謀總長, 韓·美 聯合司 副司令官 및 海兵隊 司令官 名單 .....	749

# 第 1 部 年 表



# I. 建 軍 期

## 194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5 해방</p> <p>16 총독부, 在監 억류중의 사상·경제범 등 석방을 발표</p> <p>17 건국준비위(安在鴻, 呂運亨 등) 日人으로부터 국내 치안권 인수</p> <p>18 이범석 장군, 중국 西安에서 美 특별기로 여의도 도착. 일본군의 저지로 다음날 되돌아감</p> <p>20 미군기(B-29), 駐中 미군 사령관 웨드마이어 중장 명의 미군진주 전단을 서울 시내 살포</p> <p>21 建準, 선언 강령 발표</p> <p>27 맥아더 원수, 하지 중장을 在조선미육군사령관에 임명</p>	<p>17 평남건국준비위원회 결성</p> <p>18 蘇 제25군 선발대, 원산에 상륙</p> <p>20 蘇 1개 여단병력, 원산에 상륙</p> <p>25 · 소련군, 평양에 진주, 사령부 설치 · 치스차코프 중장, 포고문 발표, 蘇軍政 실시</p> <p>27 평남건준을 해체하고 평남인민정치위원회로 정비</p>	<p>15 日王 裕仁 항복 방송</p> <p>19 트루먼 美대통령, 일본 점령정책 선언</p> <p>25 미·소 양군, 북위 38도선 분할점령 방송(미국)</p>

194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30 군사사설단체 국군준비대 결성	29 蘇軍 개성 진주	30 맥아더 장군, 일본에 도착
9	1 • 조선학병동맹 결성 • 臨政還國환영 준비위원회 결성		2 • 일본 항복조인식(미조리함상) 동경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설치 • 맥아더 장군, 38도선 분할점령을 공식 발표 • 미제24군단 서울진주 결정
	2 맥아더 장군, 북위 38도선 경계로 미·소 양군 조선점령정책을 발표		7 美극동군사령부, 남한에 軍政 포고
	4 미제24군단 선발대 해리스 소장 등 27명 김포공항 도착	8 평양인민위원회, 부서발표 (위원장 조만식 피선)	11 미군, 對한국 GARIOA 원조
	8 미군 인천에 상륙(제24군단)		
	9 미군 서울에 진주(군정실시 포고), 일본군 항복 조인식 거행		
	12 • 하지 중장, 군정시정방침 발표 • 아놀드 소장, 군정장관에 취임		
	13 연합군 환영 시민대회		
	15 미군, 방송국 접수		15 美·蘇 양군, 38도선에서 첫 상봉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16 한국인 경찰관 모집	16 정치국에서 북한정부수립 요강 공포	
	22 美제40사단 부산에 상륙		
	24 서울시내 국민학교 결성	28 현준혁 암살	
10	5 美군정장관 고문에 한국인 11명 임명(위원장 金性洙)		
	10 • 美제6사단 인천에 상륙 • 아놀드 장관 人共國 부 인 성명	10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	
	11 美군정, 小作料 3:1제 실시		11 맥아더 장군, 5대改革 日 本정부에 요구
		12 사설 군사단체 해체	
		14 김일성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	
	16 • 이승만 박사 환국 • 하지 중장, 군정성격 천명		
	20 연합군 환영대회(군정청 광장)		20 美국무부 극동부장 빈센 트, 한국신탁통치 가능성 시사
21 美군정청에 경무국 설치	21 각 도별 보안대 조직		
	23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분국 설치 승인		

194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5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결성(이승만 등)</p> <p>27 군정장관, 신탁통치는 군정당국의 의사가 아니라고 언명</p>	<p>25 항공대 창설(신의주)</p> <p>28 북조선 5도 행정국 정식 발족</p>	<p>24 국제연합 창설</p>
11	<p>4 독립촉성 중앙회의, 미·소 양국에 메시지</p> <p>11 海防兵團 결성(단장, 손원일)</p> <p>12 • 해방병단 진해 이동 • 日本人의 東拓(주)을 新韓公社로 개편</p> <p>13 美군정청에 國防司令部 설치</p> <p>14 초대 국방사령부장에 쉬크 준장 임명</p> <p>20 군정청, 한국인 외국여행을 제한</p>	<p>4 조선민주당 결성</p> <p>7 함흥에서 반공학생 쫓겨 피검자 50명</p> <p>18 •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편(제1서기 김일성) • 북조선 민주여성동맹 결성</p>	<p>9 중국, 國共내전 돌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3 임정요인 제1차 환국(金九 외 14명)</p> <p>28 • 미국산업 조사단 내한 • 군정청, 각 도지사 회의 개최</p>	<p>23 신의주 대규모 반공, 반 소련 학생의거 발생 (사망 23명, 부상자 700여명, 피검자 2,000여명, 시베리아 유형자 100여명)</p>	<p>27 하지 중장, 소련과 모스크바에서 38도선 철폐에 대한 협의 용의 있다고 성명</p> <p>30 蘇·中共간에 협정(1946. 1. 3. 蘇軍 철퇴 결정) 조인</p>
12	<p>1 임정요인 제2차 귀국</p> <p>5 군사영어학교 설치 및 개교(서대문구 냉천동 감리교 신학교 자리)</p> <p>9 • 아놀드(소장) 군정장관 해임 • 대한국민회의 결성(김성수, 안재홍 등)</p> <p>11 국방사령부내 재정국 설치</p> <p>16 • 제2대 군정장관 러치 (Archer L. Lerch) 소장 취임 • 이승만 박사, 공산주의자의 파괴행동에 경계 방송</p> <p>19 臨政 환영 전국대회</p>	<p>1 • 조선공산당 평양시 당대회 개최 • 각지 인민재판소 개정</p> <p>6 학교교육 임시조치 요강 발표, 소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p> <p>10 조선항공협회 창설</p> <p>18 소련군사령부, 소련군인 중 기술자 출신을 북한의 각 공장에 배치</p>	<p>1 일본, 육군성·해군성 폐지</p> <p>16 모스크바 3상회의 개최</p>

194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0 제2대 국방사령부장 참 페니 대령 취임</p> <p>23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개 최, 회장에 이승만 피선</p> <p>29 신탁통치 반대투쟁 결성</p>	<p>22 평남인민위원회, 부재지 주토지 매매 금지</p>	<p>26 신탁통치안 의결(모스크 바 3상회의 종료)</p>

# 194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 • 공산당, 신탁반대 서울시민대회에서 돌연 지지 성명 • 하지 중장, 모스크바 결의 해명서 발표</p> <p>4 金九 주석, 비상국민회의 소집</p> <p>7 전국학생 신탁통치 반대 시위</p> <p>9 美합참, 남한의 BAM-BOO 계획 승인</p> <p>11 국방사령부내 남조선국 방경비대 임시사무소 설치</p> <p>12 • 신탁통치 반대 국민대회 • 장택상, 경기도 경찰부장에 취임</p> <p>14 미·소, 회담 양측대표 결정(미측대표 아놀드 소장, 소련대표 스티코프 장군)</p>	<p>5 조만식 감금(고려호텔)</p> <p>6 신탁통치 지지 평양시민대회</p> <p>11 철도보안대 조직(13개 중대)</p> <p>12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 서울 출발</p>	<p>2 UN안보이사회 성립</p> <p>7 파리평화회담 개최</p> <p>10 제1차 UN총회 개막(런던)</p> <p>11 일본국 신헌법 공포</p>

# 194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5 • 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 • 초대사령관 마셜 미육군 중령 취임 • 제1연대(A중대) 창설 (양주 : 제1대대장 마셜 미군 중령, A중대장에 蔡秉德 正尉를 임명 • 국방사령부 軍務局내 고급부관실, 조달보급과 설치</p> <p>16 미·소 공동위원 예비회담(미군정청에서) 개최</p> <p>17 해군병학교 창설(제1기 입교)</p> <p>18 학병동맹사건 발생</p> <p>21 • 사설 군사단체 해산령 • 하지 중장, 반탁시위 중지 요청</p> <p>23 미·소회담 대표 환영 시민대회 개최</p> <p>29 제5연대(A중대) 창설(부산 : 副尉 朴炳權)</p>	<p>15 蘇軍 지시로 북조선 중앙은행 창설</p> <p>22 북조선 방역연구소 신설</p> <p>23 평남인민위원회 확대회의 개최</p>	<p>15 박헌영, 신탁통치후 조선연방 편입을 보도(뉴욕타임즈)</p> <p>24 한국託治에 美 10년, 蘇 5년 주장을 모스크바에서 방송</p>
2	<p>1 해리만 美소련 대사 내한</p>	<p>5 美·蘇軍 사령부 대표회의 개막</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6 미·소회담, 서울에 공동위원회 설치</p> <p>7 • 해방병단 공작부 설치                      •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설치(태릉 제1연대 2층)                      • 제7연대(A중대) 창설(청주: 參尉 閔繼植)</p> <p>8 • 제1연대 입대식                      • 대한독립촉성회의 결성(총재 李承晩)</p> <p>12 각계에서 洪思翊 장군(일본군 중장) 구출진정서 제출</p> <p>14 대한민국 민주의원 결성(미군정 자문기관)</p> <p>15 • 제4연대(A중대) 창설(광주: 副尉 金洪俊)                      • 해방병단 교육대 제1기 입대</p> <p>16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p>	<p>8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일성)                      • 평양학원 설립(진남포)</p> <p>11 金日成, 조선인민당 위원장 呂運亨과 회담</p> <p>15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의장단 여운형, 허헌, 박헌영, 백남운, 김원봉, 사무국장 이강국) 개최</p> <p>16 米穀수집령 발표</p>	<p>6 미·소 공동위 예비회담 폐막</p> <p>9 蘇, 信託5개년계획 발표</p> <p>10 미·영·소 3국, 알타협정문 발표</p>

194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8 제6연대(A중대) 창설(대 구: 參尉 金英煥)</p> <p>21 해군병원 설치(진해)</p> <p>22 남조선 국방경비대 초대 총사령관 취임(參領 元容 德)</p> <p>26 제3연대(A중대) 창설(이 리: 副尉 金白一)</p> <p>27 군사영어학교를 태릉으 로 이전</p> <p>28 제2연대(A중대) 창설(대 전: 正尉 李亨根)</p>	<p>24 조선민주당 당수에 崔庸 健 피선</p>	<p>20 소련, 일본의 사할린을 정식 領有 포고</p>
3	<p>3 해군헌병대 설치</p> <p>5 38도선 철폐 요구 국민대 회</p> <p>6 일본식 내무위병제도를 미 국식으로 개정</p> <p>7 경부선, 특급열차 운행</p> <p>8 학병동맹사건 60명 석방 (29명 기소)</p>	<p>5 토지개혁법령 발표, 부재 지주 토지와 5정보 이상 사 유토지 몰수 및 무상분배</p> <p>13 함흥 학생사건 발생</p>	<p>5 영국의 처칠 수상, 철의 장막 연설</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5 남북한간 우편물 교환</p> <p>20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덕수궁)</p> <p>29 ·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 · 국방사령부내 군무국과 경무국중 경무국을 독립</p>	<p>23 김일성, 20개정강 정책 발표</p>	<p>25 제1회 UN안보이사회 개최</p> <p>26 소련군 만주 철수 개시</p>
4	<p>1 제8연대(A중대) 창설(총천: 副尉 金鍾甲)</p> <p>2 해군군악대 설치</p> <p>11 정부수립 촉진 시민대회 개최</p> <p>15 해방병단 인천기지 설치</p> <p>30 군사영어학교 폐교</p>	<p>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예산 채택(세출입 각 11억6,863만원)</p> <p>26 평양방송국을 중앙방송국으로 개칭</p> <p>30 북조선 농업은행 설립</p>	<p>14 소련군, 長春에서 철퇴(國府·中共·長春市 쟁탈전)</p> <p>16 국제연맹 정식 해산</p>

194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 •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제1기 입교: 교장 參領 李亨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대총사령부내 의무국 설치</li> <li>• 국방부 재정국을 총사령부에 편입</li> </ul> <p>2 경비대총사령부, 태릉에서 서울로 이동</p> <p>6 제1차 미·소 공동위 결렬</p> <p>15 군정청 공보부, 정판사위 폐사건 진상 발표</p> <p>23 38도선 무허가 월경금지령 공포</p> <p>25 제1연대 제1대대 소요사건 발생</p> <p>30 제7연대 소요사건 발생</p>	<p>1 해방후 최초로 맞는 노동절 행사 대대적으로 거행</p> <p>2 소련군대 위령탑 제막식 거행(원산)</p> <p>23 중앙예술공작단 결성</p>	<p>3 극동국제재판 개정(동경)</p> <p>5 중국 국민당 정부 남경으로 천도</p> <p>7 중공, 長春에 인민정부 수립</p>
6	<p>3 李 박사, 남한단독정부수립 발언(정읍에서)</p>	<p>3 북조선공산당 중앙당학교 개교</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1 러치 군정장관, 남조선 단독정부수립 반대 성명</p> <p>15 • 국방부를 국내경비부 (한국측은 통위부라 함),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조선 경비대로, 해방병단을 조선 해안경비대로 개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경비사관학교 제1기 40명 참위(소위)로 임관</li> <li>• 해군병학교를 해안경비사관학교로 개칭</li> </ul> <p>19 서울국립종합대학안 문교부에서 발표</p> <p>22 광복군 귀국(이범석 장군 일행)</p> <p>25 요인암살단 先遣隊 검거 (북한 밀파)</p>	<p>6 • 중앙정치간부학교 창설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소 개설(개천, 신의주, 정주, 강계)</li> </ul> <p>21 중앙보안간부학교 창설</p> <p>26 평양학원 제1기생(4,800명) 입교</p>	<p>15 4개국 외상회의(파리)</p> <p>19 소련대표,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병기금지조약안(그로미코안) 제출</p> <p>21 美육군부, 조선 등지에 항구기지화계획 발표</p>
7	<p>1 • 통위부 직속 보급부대 창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 서울주재영사관 철수</li> </ul>		<p>1 미국, 비키니 섬에서 원자폭탄 실험</p>

194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4 미국과 우편통신 개시		
	9 하지 중장, 입법기관 설치 찬성 표명	10 평양 중앙기상대 설치	
	12 신문기자단, 러치 군정장 관에게 언론자유 및 기자 신분보장 건의	12 •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결성 • 조선항공기술동맹 결성	
	13 제주도를 도로 승격	13 철도경비사령부 창설(13개 중대)	
	15 美제7함대, 남한일대 경비 개시		
	17 정부, 북조선에 航行 금지령		20 장개석軍과 모택동軍, 대항 본격화(國·共 전세 430만 대 120만)
	22 요인암살단 先遣隊 총검거령	21 북조선 보안간부학교 개교(군관학교 발족)	
8	30 경비대총사령부내 법무처 설치	22 북한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결성(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김달현)	29 파리강화회의 개막
	1 통위부, 조달보급과를 보급국으로 개칭	5 중앙당학교 제1회 졸업식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0 해안경비사관학교를 해안경비대학으로 개칭</p> <p>16 해안경비대 김포파견대 설치</p> <p>18 해안경비대 목포기지 설치</p> <p>20 경비대총사령부내 정보처 및 감찰처 설치</p> <p>22 해안경비대 목호기지 설치</p> <p>27 러치 군정장관, 10월에 입법기관 개설한다고 언급</p>	<p>9 공민증 발행에 관한 건 공포</p> <p>10 북조선 주요산업 국유화 실시 발표(북한 전경제의 약 90% 몰수)</p> <p>15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평양)</p> <p>28 북조선노동당 창립 대회 (위원장: 김두봉, 부위원장: 김일성·주영하)</p> <p>31 북로당 제1차 중앙회의 (위원장 김두봉)</p>	<p>9 미국, 한국에 2,500만달러 차관 설정 발표</p> <p>16 네루, 인도의 독립과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p> <p>19 중공, 총동원령 발표</p> <p>28 미·소 양점령군 사령관, 共委관계 교환서한 공개</p>
9	<p>1 해안경비대 고문으로 미군대령 매캐비 일행 내한</p>	<p>1 북로당 강령 발표</p>	<p>1 그리스, 王制 부활</p>

194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8 남로당 간부 李舟河 체포 (11월 14일 출감)</p> <p>12 • 미군정, 한국인 부처장에게 행정권 이양 성명(통위부장 柳東悅 취임) • 인사·작전·군수국과 재정·의무·법무 및 특별참모실 설치</p> <p>15 해안경비대 최초로 LCI형 함정 2척 미국에서 인수</p> <p>20 해안경비대 신병교육대 제2기 수료</p> <p>23 경비사관학교 제2기생 입교</p> <p>24 • 해안경비대 부산기지 설치 • 남조선 철도종사원 총파업</p> <p>28 조선경비대 제2대 총사령관(참령 李亨根) 취임</p>	<p>5 북조선공산당지 노동신문 창간</p> <p>15 김일성대학 개교식(총장 金料奉)</p> <p>22 평양에서 미군정 정책반대 군중대회 준비</p> <p>25 노동당중앙위 제1기 2차 회의</p>	<p>8 불가리아, 국민투표 실시 (王制 否認)</p> <p>15 불가리아, 공화국 선언</p>
10	<p>1 • 해안경비대 총사령부 이전(진해→서울)</p>	<p>1 개간법령 공포</p>	<p>1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최종 판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 • 대구에서 노동자·학생폭동, 경찰서 점거(10. 1 폭동사건)</p> <p>3 張澤相 수도경찰청장, 용산철도기관차고에서 무기압수 발표</p> <p>9 해안경비대, JMS형 함정 4척 인수(소해정)</p> <p>10 진해특설기지사령부 설치</p> <p>12 과도입법위원회에 관한 법령 공포(군정법령 제118호)</p> <p>19 서울시내에 비상경계령</p> <p>21 제3연대 소요사건 발생(이리)</p> <p>23 해안경비대, JMS형 소해정 2척 인수</p>	<p>6 조선문자개혁연구위원회 조직</p> <p>25 몽고정부대표단 북한 방문(~11월 3일)</p> <p>31 북한·소련간 민간항공협정 조인</p>	<p>2 미국무장관 대리 애치슨, 조선문제에 관해 언명</p> <p>13 佛, 국민투표로 신헌법 채택(제4공화국)</p> <p>18 미·소 양정부간 共同委속개 요청 서한 발표</p> <p>21 중국, 國共조정안 성립</p> <p>24 英 배빈 외상, 조선문제에 관해 언급</p>

194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 해안경비대 총사령부에 통신대 설치</p> <p>2 민선 입법의원 결정 발표 (45명)</p> <p>3 제8연대, 폭동진압차 울진 출동</p> <p>4 군정장관 대리예 헬믹 준장 취임</p> <p>9 국방경비대 사열식</p> <p>12 해안경비대 신병교육대 제3기 수료</p> <p>16 제9연대(A중대) 창설(제주: 正尉 張昌國)</p> <p>19 • 對日 우편물 정식인가 • 李舟河 재수감</p> <p>29 관공리 임관시험 실시</p>	<p>1 북조선 중앙은행, 화폐발행은행으로 발족</p> <p>3 북한의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p> <p>5 도, 시, 군 인민위원 발표</p>	<p>1 중국, 대만으로 철수 개시</p> <p>3 일본, 새헌법 공포(1947. 5. 3 시행)</p> <p>4 미·영·불·소 외상 이사회 개최(뉴욕)</p> <p>10 그리스, 반란 발발</p> <p>17 미의회, 2천5백만달러 對 조선 차관 가결</p> <p>30 佛, 총선에서 공산당이 제1위로 진출</p>
12	<p>1 • 통위부보급국을 군수국으로 개칭 • 조선경비대 장병계급장명칭 개칭</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 • 경비사관학교(제2기생) 생도대장 폭행사건 • 이승만 박사 도미</p> <p>3 해안경비대, 유조선 1척 인수</p> <p>12 과도입법의원 개원(의장 金奎植 박사)</p> <p>14 경비사관학교 제2기 졸업</p> <p>17 통위부 초대 총참모장 (李亨根 중령) 취임</p> <p>23 • 조선경비대 3대 총사령관(宋虎聲 중령) 취임 • LCI형 2척(상륙정), JMS형(소해정) 2척 등 합정 인수</p>	<p>2 북로당에서 建國思想 총동원운동 발표</p> <p>5 북조선 중앙통신사 설립</p> <p>18 북조선인민위, 인민학교 6년제를 5년제로 하고, 1년의 예비반·유치원반 설치. 초급중학 4년제를 3년제로 하고 3년제의 고급중학을 신설키로 결정</p>	<p>7 유엔, 탕가니카·카메룬·토고랜드의 일부를 영국 신탁통치, 르완다·부룬디를 벨기에 신탁통치 지역으로 결의</p> <p>14 • 유엔본부를 뉴욕에 설치키로 결정, 군축대헌장 가결 • 미대통령, 對중국 성명 발표</p> <p>18 인도차이나전쟁 발발(佛·越南 전면 충돌)</p> <p>21 佛, 북베트남 하노이를 점령</p>

# 194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4 과도정부, 중국과 임시 운항 무역법 공포</p> <p>13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입학</p> <p>14 해안경비대 신병교육대 제4기 수료</p> <p>15 · 조선경비대 창설 1주년 기념식 거행 · 입법의원에서 반탁결의 · 이승만 박사 워싱턴에서 반탁폭동설 부인</p> <p>16 故 金佐鎭 장군 추도식 거행</p> <p>26 해안경비대 군산기지 설치</p>	<p>1 일제무기를 蘇製로 대체</p> <p>25 중앙민청학원 개원</p> <p>27 조·중 인민친선교류 대회</p>	<p>1 중화민국 헌법 공포</p> <p>11 하지 중장, 미·소 공동위서한 공개하고 재개 요청</p> <p>18 美國무장관 마셜, 國共 조정 실패</p> <p>23 스탈린 소련수상, 美·蘇 共存 가능 성명</p> <p>28 영국, 버마 독립부여 백서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5 민정장관에 安在鴻 임명</p> <p>7 • 총무공호 명명 및 진수식 • 해안경비사관학교 제2기 입학식 • 도미중의 李 박사, 남한과 도정부수립을 전문으로 발표</p> <p>8 해안경비대 포항기지 설치</p> <p>9 경비대 총사령부 작전교육과를 작전교육처, 재정처를 재정국으로 개칭</p> <p>11 公民證制 실시</p> <p>12 안재홍 민정장관, 시정방침 발표</p> <p>17 해안경비사관학교 제1기 수료</p> <p>27 해안경비대 고문 교체 (매캐비 대령→필킨스 대령)</p>	<p>7 조선역사편찬회 설치</p> <p>10 평양시를 중·동·서·북구로 분할</p> <p>17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개최</p> <p>24 각 동(리)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p>	<p>10 파리평화조약 조인(5개국)</p> <p>27 하지 중장, 남조선에 군정수립 부인</p> <p>10 미·영·불·소 4개국 외상회의 개최</p>
3	<p>9 통위부 총참모장(이형근 중령) 해임</p>		

194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2 제주도 관공리 총파업</p> <p>15 군정청, 인사행정권을 한인에게 이양</p> <p>22 남조선 일대에 노동자 24시간 총파업</p> <p>26 해안경비대 목호기지 주문진 파견대 설치</p> <p>28 해안경비대 기지사령관 회의 최초 개최</p> <p>30 해안경비대, JMS형 함정 (소해정) 2척 인수</p>	<p>11 제28차 인민위원회 개최</p>	<p>12 트루먼 독트린 발표</p> <p>14 美·比 군사기지협정 조인</p> <p>31 일본, 교육기본법·학교교육법 공포(6·3·3·4제)</p>
4	<p>1 • 통위부 보급부대를 병기부대 사령부로 개칭 • 해안경비대 총사령부에 군비처 설치</p> <p>4 군정청, 기구를 13부 2척 3원으로 개편</p> <p>5 제8연대 제3대대 무장난동 사건(강릉) 발생</p>	<p>5 북한주둔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 해임하고 신임에 코로트코프 중장 취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6 해안경비대, YMS형 함정 (소해정) 3척 인수		7 하지 중장,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협력 없으면 미군 단독행동 단행 언명
	8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초대 총참모장(金相鏞 대령) 취임		
	9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수료		11 마셜 美國무장관, 소련에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 제의
	12 일본어선, 동해어장 불법 침입	16 노동간부양성소 개설	
	19 서윤복 선수,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우승		
	21 ·이승만 박사 미국에서 귀국 ·이청천 장군 환국	23 북조선연맹 박정애, 국제민주여맹 대의원 대회 참석 후 귀국	22 蘇 몰로토프 외상,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 제안
	5	1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의무국을 의무처로, 정보처를 정보부로 개칭	1 해방탑 제막식

194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5 해군사관학교·해병대설치령 공포</p> <p>10 · 해안경비대, YMS형 함정(소해정) 4척 인수 · 해안경비대 신병교육대 제6기 수료</p> <p>12 브라운 소장, 미·소 공동위 긴급 소집</p> <p>14 마셜 美국무장관, 하지 중장에 미·소 공동위 준비 훈령 시달</p> <p>16 조선경비사관학교 제4기 입교</p> <p>17 美군정청,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칭 결정</p> <p>20 통위부 軍監사령부 설치</p> <p>21 제2차 미·소공동위 재개</p>	<p>17 인민집단군으로 재편확대</p> <p>27 전장병에게 계급장 수여식, 인민군 제115전차연대 창설</p>	<p>3 일본 개정헌법 실시로 李王家 존칭 상실</p>
6	<p>1 · 영암 군·경 충돌사건 발생(경비대 6명 사망, 10여명 부상) · 통위부 정보국을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처로 흡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3 • 남조선 과도정부 출범 • 광주에서 국방경비대와 경찰 충돌</p> <p>13 해안경비대 신병교육대 제7기 수료</p> <p>15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통신과 설치</p> <p>21 • 해안경비대 제주 수영 설치 • 해안경비대 JMS(소해정) 3척 인수</p> <p>25 군정청, 미·소 공동위 개최</p>	<p>3 조선민족혁명당을 인민공화당으로 개편(당수 김원봉)</p> <p>16 북한 해안경비간부학교 신설(원산)</p>	<p>5 마셜플랜 발표</p> <p>11 미·영·소 3국, 대일강화 예비회담 개시</p> <p>27 • 英·佛·蘇 외상회의 개최(파리) • 미국, 소총탄 1억3천만 발을 중국에 원조</p> <p>28 파키스탄, 인도와 분리독립을 결정</p>
7	<p>1 • 해안경비대, 여수에 수영 설치 • 미·소 공동위, 평양에서 개최 • 徐載弼 박사 환국</p>	<p>1 38경비대 조직</p>	<p>4 트루먼 美대통령, 세계평화 4조건 제창</p>

194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7 해안경비사관학교 제3기 입교	7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단 서울로 출발	
	13 해안경비대 기지사령관 회의		
	19 呂運亨, 해화동서 피습 사망(범인 韓智根 24일 체 포)		
	20 · 조선경비사관학교 군기 과 설치(헌병학교 모체) ·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통 신과를 통신처로 개칭	23 수상보안대 신설	20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에 서 군사행동 개시
8	1 미국, 대 남조선구호금 1 억1천만달러 결정	1 · 한글학교(문맹퇴치학습 회) 10,400교 일제히 개교 · 혁명 유가족 학원 개교	
	6 · 해안경비대, YMS형 함 정(소해정) 7척 인수 · 조선임시정부 約憲, 立議 통과	11 평양에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4 해안경비대학을 해사대 학으로 개칭		14 파키스탄, 인도에서 분리 독립
	21 좌익 5백여명 포고령 위 반으로 처단		
	26 美대통령 특사 웨드마이 어 중장 내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8 해안경비대 신병교육대 제8기 수료</p> <p>30 해안경비대, YMS형 함정 (소해정) 2척 인수</p> <p>31 美 구축함, 남한 해안경비 임무를 해안경비대에 인계</p>		<p>27 마셜 美국무장관, 조선문 제로 소련에 서한 발송</p>
9	<p>1 조선경비대, 병기 및 피복 제도 개정</p> <p>10 조선경비사관학교 제4기 수료</p> <p>11 군정장관 러치 소장 사망</p> <p>12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제 2대 총참모장 丁一權 중령 취임</p>	<p>7 김일성대학 신축 착공</p> <p>10 만경대 학원 기공식</p> <p>15 홍남공업대학 개교</p>	<p>2 美, 美洲 공동방위협정 조 인</p> <p>8 소련, 조선문제에 관한 4개국 회의 개최안 거부</p> <p>16 • 제2차 UN총회 개막, 한 반도 문제 논의 • 인도네시아공화국 독립 선언</p>

194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2 • 제2연대 부정 및 不隱 사건 • W. H. 드레이반 美육군 성 차관 내한(~10월 1일)</p> <p>24 해안경비대 부산기지 설치</p> <p>26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은 1948년 초까지 미·소군 철수 제안</p>		<p>18 소련, 미·소 공동위원회의 자문기관 설치안 정식으로 제의</p> <p>23 • UN총회, 한국문제 정식 상정을 가결(41:6, 기권 6) • 주한외국군 철수문제안 제출(소련측)</p> <p>25 트루먼 美대통령 특사 웨드마이어, 보고서 통해 소련과 동시철수 주장</p>
10	<p>4 •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법무처를 법무국으로 개칭 • 미하원 -군사조사단 일행 내한</p> <p>14 해안경비대 제1특무정대 설치(부산)</p> <p>20 5개월만에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소련대표부도 철수</p>	<p>20 북조선 民靑 제7차 중앙위원회, 국제대학생연맹 가입 결정</p> <p>21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단 철수, 평양 도착</p>	<p>5 유럽 코민포름 결성</p> <p>14 유엔 소련대표, 한국문제 토의 제외 주장</p> <p>17 유엔 미국대표, 한국독립 촉진 결의안 제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30 軍政長官에 딘 소장 임명· 통위부에 軍紀司令部 설치	26 보안간부학교 제1기 졸업식	30 UN총회, 한국에 UN위원단 파견안 가결(41:0)
11	1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병기처 설치  15 조선경비대 통신학교 및 위생학교 설치(진해)	1 직장연맹 각기관 선거 개시  18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제3차 회의 개최(재정위원 및 초안작성 위원회 조직)	3 UN총회, UN한국위원단 설치안 및 정부수립후 양군철수안 등 결의안 채택  16 UN총회,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 정부수립후 미·소 점령군 철수 등 가결안 채택  29 UN총회,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채택
12	1 조선경비대 3개 여단(제1~3여단) 창설  2 한민당 정치부장 張德秀 피살  5 해안경비대 제2특무정대 설치(여수)	1 화폐 개혁  8 구화폐 사용 금지  13 보안간부훈련 대대지부 참모장 안길 사망	2 유엔 서기국에 한국위원단 파견 등 중요법안 위탁  8 미국, 자유중국에 군함 140척 양도

194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0 조선경비사관학교내 군 기병교육대 설치</p> <p>22 金九, 남한단독정부 수립 반대 성명</p> <p>23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입교</p> <p>30 해안경비대 항해학교 발족(제1기 입교)</p>	<p>22 인민위원회, 지하자원, 산림지역 및 수역 국유화 법령 공포</p>	<p>18 · 蘇 그로미코, UN한국 위원단 파견을 거부</p> <p>· 이탈리아 공화국 발족</p> <p>23 트루먼 美대통령, 조선을 포함한 대외 긴급원조안 서명</p> <p>27 터키에서 반공학생 데모</p> <p>29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성립</p>

# 194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통위부 후방부대사령부, 제1병기대대 제1병참대대 제1공병대대 편성(영등포) • 제1여단내 수색대 창설</p> <p>3 해안경비대, YMS형 함정 1척 인수</p> <p>4 과도정부, 통화대책위 설치</p> <p>7 UN韓委 대표단 내한</p> <p>10 미군정, 남한점령 행정을 미국무부로 이관</p> <p>12 유엔韓委, 덕수궁에서 첫 회합</p> <p>14 해안경비대, YMS형 함정 1척 인수</p> <p>20 • 해안경비대 기관학교 제1기 입교 • 메논 유엔韓委대표(印度人), 하지 중장 방문</p>	<p>1 38보안여단본부 설치(사리원)</p> <p>9 김일성, UN韓委 입북을 거부</p> <p>11 김일성, 인민군의 창군을 앞두고 개천, 강계 군사시설 시찰</p>	<p>4 버마, 영연방으로부터 이탈·독립</p> <p>8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한국에 도착</p> <p>17 和·印尼 정전협정 조인</p>

194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5 이승만·김구, UN韓委와 첫 회담	21 인민군 신문 창간	23 蘇, UN 韓委입북 거부통고  30 인도의 간디 피살
2	1 해안경비대에 군기대 설치  4 유엔韓委議長에 매논 인도 대표 취임  11 유엔韓委 유엔보고안 발표  15 해안경비대 공보실 설치  16 • 육군형무소 설치(영등포) • 과도정부, '48예산 3백억원 발표  21 보병학교 창설(수색)	8 • 조선인민군 창설 선포 •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인민군 해군군관학교로 개칭  13 북조선人民戰 제23차 중앙위원회 개최, 조선임시헌법 초안 건의  20 金日成, 인민군 제395군부대 포병 구분대 군관들에게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키우라고 지시	12 일본, 비무장화 指令案 채택  19 매논 UN韓委議長, 유엔小總會에서 보고 연설  25 체코에 정변  26 UN小總會, 한국가능지역 선거안 채택(31:1로 가결)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 하지 중장, 5월 9일 선거 실시 발표</p> <p>8 金九, 북한에 남북회담 요청서 서한 발송(북한 3. 25. 남북협상 수락)</p> <p>11 •통위부 군기사 해체 •조선경비대에 군기사 설치 •해안경비대 기상대 설치(진해)</p> <p>17 유엔 韓委, 선거 자유분위기 보장 군정청에 건의</p> <p>18 입법위원 의원 사퇴(30명)</p> <p>22 신한공사 토지분배에 관한 법령 공포</p> <p>27 드레이퍼 美육군부 차관 내한</p> <p>31 윌리엄 F. 딘 군정장관, 정치범에 대한 특사령 발표</p>	<p>14 북한 전역에서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 군중시위대회 개최(210여만명)</p> <p>16 중공과 비밀군사협정 체결</p> <p>27 노동당 제2차 전당대회(서기장 김일성)</p>	<p>4 UN안보리 미국대표, 한국 분할 독립 주장</p> <p>12 UN 韓委, 가능지역 선거안 가결(4:2)</p> <p>17 서구 5개국 연맹조약 조인, 서구연합 성립</p> <p>26 미국, 對蘇무기수출 정지</p>

# 194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 • 항공대 창설요원 보병학교 입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경비대 의무처 설치</li> <li>• 해안경비대 신병교육대 제9기 수료</li> </ul> <p>2 하지 중장, 선거방안 발표</p> <p>3 제주도 4·3 폭동사건 발생</p> <p>6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수료</p> <p>8 구조선은행권 교환 회수</p> <p>10 제5연대 1개대대 제주 출동</p> <p>19 金九·金圭植, 남북협상 참가차 월북(~5월 5일 귀경)</p> <p>23 美육군부 점령지역 민정국장 엘 노모스 소장 내한</p> <p>28 유엔韓委, 선거감시 결정</p>	<p>1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 조직준비위원회 결성(위원장 朱寧河)</p> <p>6 남북 연석회의 참가 위한 勤民黨·民衆同盟대표 일행 평양 도착</p> <p>19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 예비회의 개최</p> <p>20 김구·김규식 평양 도착</p> <p>21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56정당 단체 대표 545명 참석)</p> <p>23 • 연석회의 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택안 미·소 양국에 보내는 철군요청서 등 4개안</li> </ul>	<p>1 소련, 베를린 육상수송 차단(베를린 봉쇄) 개시</p> <p>3 미국, 대의원조법 성립</p> <p>8 트루먼 美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정책 승인</p> <p>19 장개석, 자유중국 초대총통에 당선</p> <p>27 아랍軍, 팔레스타인에 진격</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 • 조선경비대, 제10(강릉) 제11(수원) 제12(군산) 연대 창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인사과를 인사처로 개칭</li> <li>• 통위부 후방부대사령부를 통위부 잠정 후방사령부로 개칭</li> <li>• 조선경비대, 제51통신대대 제1의무대대 경리학교 창설</li> </ul> <p>4 조선경비대, 제13(은양) 제14(여수) 제15(부산) 연대 창설</p> <p>5 • 제1·제2수색부대 창설(수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경비사관학교 제6기 입학</li> </ul> <p>6 제2육군병원 창설(대전)</p> <p>7 해안경비대 通川艦(제311호함정) 남북사건</p> <p>10 제헌국회의원 선거</p> <p>11 육군 군악학교 창설</p> <p>14 북한에서 送電 단절</p>	<p>1 5·1절 행사에 북한군 시위</p> <p>5 남한 단독선거반대 전국 투쟁위원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선거 감시결정 반대규탄 성명</p> <p>8 북한 전역에서 소련측의 撤軍용의 성명을 지지하는 군중대회 개최</p> <p>14 남한에 대한 송전 중단</p>	<p>1 일본, 해상보안청 신설</p> <p>3 蘇 타스통신,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 및 남북연석회의 관련보도</p> <p>7 蘇軍당국, 남북협상의 미·소 양군철폐에 수락 회한</p> <p>14 • 아랍제국, 대 이스라엘 선전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공화국 선언</li> </ul>

194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5 · 해안경비대 高原艇 납복사건 · 통위부 직할의 항공부대 창설</p> <p>16 해안경비대 제513·503·504·516정, 병력수송차 제주에 출항</p> <p>18 숙군 단행</p> <p>22 하지 중장, 북한에 송전 요청</p> <p>23 항공부대 예속변경(통위부에서 국방경비대로)</p> <p>24 조선경비대 자동차학교 창설(수색)</p> <p>25 조선해안경비대의 선박수색권에 관한 법령 공포</p> <p>31 제헌국회 개원</p>	<p>22 남조선 단독선거반대 전국투쟁위원회, 5·10선거관련 성명서 발표</p>	<p>17 소련, 이스라엘 정식 승인</p>
6			<p>2 美下院 세출위원회, 한국구체비로 1억700만달러 가결</p> <p>5 베트남 임시정부 수립</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7 안재홍 민정장관 퇴임</p> <p>8 미공군 독도상공에서 훈련중 어선에 오폭</p> <p>10 국회법 통과. 국회의장에 이승만 피선</p> <p>11 UN 韓委會 국회성립 통고</p> <p>18 • 통위부 후방부대 직할 제1·제2자동차중대 창설 • 제11연대장 朴珍景 대령, 4·3제주도 폭동진압작전중 내부 좌익분자에게 피살</p> <p>26 조선경비대, 제1(대구) 제2(용산), 제3(진해) 훈련 학교 창설</p>	<p>7 북조선 蘇군사령관 경질 (코로토코프 대장→미크로프 소장)</p> <p>10 해양간부학교 개교</p> <p>18 정당·사회단체, 북한주둔 소련군 감축반대 담화 발표</p> <p>23 남포 조선소에서 처음으로 건조한 450톤 철강선 신흥호 진수식</p>	<p>18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反英투쟁 격화</p> <p>24 소련, 베를린 전면봉쇄</p>
7	<p>1 •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 조선경비대 보병학교 폐교 •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군수국을 병참처로 개칭</p> <p>5 • 국방경비법 공포 • 해안경비법 공포</p> <p>10 조선경비대 잠정 후방部隊司를 잠정 특별部隊司로 개칭</p>	<p>10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시행 발표</p>	<p>3 미국·중국간 경제협정 조인</p>

194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2 헌법 국회 통과</p> <p>15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부에 의무처 설치</p> <p>16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p> <p>17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조직법 공포</p> <p>20 •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통신과를 통신처로 개칭 •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에 李承晩, 부통령에 李始榮 피선</p> <p>24 정·부통령 취임식</p> <p>27 항공부대를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하고 이동(수색 → 김포)</p> <p>28 조선경비사관학교 제6기 수료</p> <p>29 해안경비대 제1차 특별교육반 수료</p>	<p>24 북한, 新國旗 제정 발표</p>	<p>15 UN안보리,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명령</p> <p>22 뉴펀들랜드, 주민투표로 캐나다와의 합병을 결정</p> <p>24 필리핀, 대한민국을 최초로 승인</p> <p>27 미·영·불, 서독정부수립 결정 발표</p>
8	<p>1 제1병참대대를 제1병참단으로 승격</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 국무총리에 李範奭 국회 인준</p> <p>7 정부기구 11부 4처 66국 으로 결정</p> <p>9 • 제1병기대대 제1의무대 대를 제11병기단 제1의무 단으로 승격 • 조선경비사관학교 제7기 입교</p> <p>14 제6연대 1개대대 제주도 파견</p> <p>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식, 하지 중장 미군정 폐지 발표</p> <p>16 • 국방부장관(이범석) 취 임(4일 임명) • 국방부훈령 제1호 공포 (육·해군 호칭) • 한·미간 정권이양회담 개시</p> <p>20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인 사처를 인사국으로 개칭</p> <p>23 美대통령 특사 무초 내한</p> <p>24 • 하지 중장 퇴임 성명 • 한·미 군사안전잠정협 정 체결</p>	<p>20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 개최</p>	<p>7 화북 임시 인민대표대회 개최</p> <p>13 미국 및 중국, 대한민국 을 가승인</p> <p>20 국제난민기구(IRO) 발족</p> <p>24 필리핀 정부, 후크단과 전투재개 발표</p>

194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6 • 육군통신학교 창설 • 육군간호장교 제1기 수료</p> <p>27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임하고 신임사령관 겸 제 24군단장에 콜터(John B. Coulter) 중장 부임</p>	<p>25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 의원 선거(212명)</p>	
9	<p>1 • 해사대학 제4기 입학 •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 대 국군으로 잠정 편입 • 육군항공기지사령부, 김 포비행장으로 이동 • 미군정 경찰권 이양</p> <p>3 경찰권 정식 이양</p> <p>4 • 항공基地司를 육군항공 사령부로 개칭하고 산하 비행부대 창설 • 미군으로부터 L-4형 연락기 10대 인수</p> <p>5 •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 대를 육군 및 해군으로 개칭 •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육 군사관학교로 개칭 • 조선경비대사령부를 육 군총사령부로 개칭</p>		<p>1 중공 화북정부 수립</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8 국회, 연호를 단기로 결정	9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 철도보안대대를 여단으로 확대 • 조·만국경비대대대 편성	21 제3차 UN총회 개막. 미·소간 주한군 철수안 심의
	13 한·미간 행정권 완전 이양		
	15 주한미군 제1진 철수		
	18 국회, 한·미 행정협정 인준		
	24 구례 군경 충돌사건 발생		
	27 정부수립 大敎令 5,700여명 석방		
	10		
11 제주도 경비사령부 설치			
19 •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원수 초청받고 일본 방문 • 여·순지구 군부반란사건 발생			

194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1 반군토벌전투사령부 설치 (광주, 사령관 송호성 준장)</p> <p>22 여·순지구에 계엄령선포</p> <p>23李大통령, 여·순반란사건 발생에 관련하여 국민에게            고평하는 경고문 발표</p> <p>28 · 제16연대 창설(마산)            · 제14연대 해체            · 숙군 단행(제1차)</p> <p>29李大통령, 11월중 민병 5            만 조직 언명</p> <p>30 호남방면군사령부 설치</p>	<p>24 만경대 혁명자 유가족            학원 신교사 개원</p> <p>27 북한·루마니아간 외교관            계 설정</p>	<p>26 중국정부군, 전본토로부터            터 대만으로 철수 개시</p> <p>30 유엔韓委, UN총회에 남            북평화교섭 달성시까지 점            령군 계속 주둔을 요청</p>
11	<p>1 여·순 반란사건 관련자            89명 사형 언도</p> <p>2 ·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제1차)            · 여의도비행장 미군으로            부터 인수</p>		<p>2 미국 대통령 트루먼 재선</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4 경북지구 경비사령부 설치</p> <p>9 국방부, 여순반란사건 사상자 4천여명으로 집계</p> <p>11 육군사관학교 제7기 수료</p> <p>12 육군총사령부 재정국을 재정처로 개칭</p> <p>14 북한 남파 유격대 180명 침투</p> <p>16 해사대학을 해군대학으로 개칭</p> <p>20 • 국가보안법 국회 통과. 호국군 창설(대통령 긴급명령으로) • 육군총사령관 宋虎聲 준장 사임하고 3대 李應俊 대령 부임 • 육군(잠정)포병학교 편성 • 제17~19연대 창설 완료 • 제4연대 해체. 제20연대 대 신편 • 긴급임시조치령 공포 (호국군 창설 위한)</p> <p>23 재한 미공보원장, 미군 한국철수 발표</p>	<p>4 蘇·中共 민청대표 평양 도착</p> <p>11 북조선 民靑 제3차 중앙 대회 개최</p> <p>16 國歌제정위원회 조직</p> <p>23 咸北 부령 제1발전소 준 공식</p>	<p>9 英·日 통상협정 성립</p> <p>24 유엔 중국대표, 한국대표 참가를 정치위원회에 요청</p>

194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5 • 육군공병학교 수색학교 창설 • 병기공창, 병기감실 및 특별부대 수사단 편성(경장 갑차 22대 인수)</p> <p>30 국군조직법 공포(법률 제9호)</p>		<p>26 UN정치위원회, 한국문제 토의</p>
12	<p>1 • 국가보안법 공포 • 항공기지사령부를 육군 항공사령부로 개칭 • 정부수립후 최초로 金弘一, 蔡秉德, 李應俊, 宋虎聲, 孫元一 등 5명의 준장 승진 식 거행(중앙청 광장)</p> <p>6 • 국군3대선언문 공포 • 제6연대 반란사건(제2차)</p> <p>7 • 국방부 직제령 공포 • 육군사관학교 제8기 입교</p> <p>9 국회, 대한민국 승인 감사문 발송결의</p> <p>10 수색단을 기갑연대로 개편</p>	<p>4 철퇴하는 소련군 환송연 개최(국립예술극장)</p> <p>9 보안간부학교를 제1군관 학교로 개칭</p>	<p>3 맥아더 원수와 한국대표 간 국군증강문제 협의</p> <p>7 UN정치위, 한국초청을 가결, 북한초청 부결</p> <p>9 UN총회, 한국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46:6)</p> <p>10 • 한·미 경제원조협정 조인 • UN총회, 세계인권선언 채택</p> <p>11 소련·중공·북한 전략회의 (모스크바)</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3 • 張勉 特使,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 • 한·미 경제협정 국회 인준</p> <p>15 • 대한민국 유엔승인 경축식 거행 • 육군총사령부를 육군본부로 개칭 • 육군 각병과 창설 • 해군사관학교 제2기 졸업 • 국방부 및 국군(육군, 해군) 정식 법제화 • 육군 잠정포병단을 잠정포병사령부로 개칭</p> <p>17 남한 각 지구의 특별경비임무를 경찰과 교대</p> <p>19 대한청년단 결성</p> <p>23 육군항공사령부, L-5형 항공기 10대 인수</p> <p>30 각 여단관하에 1개 유격대 편성</p> <p>31 제주도지역 계엄령 해제</p>	<p>14 노동당, 북한주둔 소련군장병들에게 祝旗 전달</p> <p>21 최고인민위 상임위원회, 국기훈장 1·2·3급 수여에 관한 政令 발표</p> <p>26 북한당국, 스탈린에게 감사문 전달(소련군 북한 지원에 대하여)</p>	<p>12 제3차 UN총회 폐회</p> <p>26 蘇, 북한에서 蘇軍철수 완료했다고 발표</p> <p>29 미육군부, 미제7사단 남한철수 발표</p>

#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해군본부 법무감실 설치 • ECA 원조 도입 시작</p> <p>3 배속장교 제1기 육군사관 학교에 입교</p> <p>6 제51통신대대를 제1통신 단으로 승격</p> <p>7 제7여단 창설(서울)</p> <p>10 • 해군본부 함정국 설치 • 호국군 10개 연대 편성</p> <p>11 호국군 5개 여단 편성 및 사령부 설치</p> <p>13 이승만 대통령, 고철 해 외반출금지 언급</p> <p>14 육군항공사관학교 설치 (김포)</p>	<p>1 만포선(개교~고인간) 전 철공사 완료</p> <p>6 제2차대전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집되었던 조선인 출신 포로 2,162명 소련에서 귀환</p> <p>10 평양학원을 제2군관학교로 개칭</p> <p>11 북한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 대장, 평양 도착(14일 신임장 제출)</p>	<p>1 미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p> <p>4 • 중국, 대한민국 정식 승인 • 미국무부, 한국 자주방위능력시까지 미군철수 않겠다고 발표 • 소련군 북한에서 완전 철수했다고 발표</p> <p>6 미국무부, 한국부흥에 8천 500만달러 세목 발표</p> <p>14 모택동 중공당 주석, 시국 성명 발표, 和平 8개 조건 제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5 • 육군자동차학교를 병기 학교로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본부 병기감실 설치</li> <li>• 해군대학을 해군사관학교로 개칭</li> <li>• 주한미군주력부대 철수 (제5연대전투단 잔류)</li> </ul> <p>16 육군헌병학교 설치</p> <p>19 • 정부, 남북협상반대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가입 신청</li> </ul> <p>20 • 호국군 병역에 대한 임시조치법 공포(대통령령 제 5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경리학교 설치</li> <li>• 병역법 임시조치령 공포</li> </ul> <p>27 • 한민당 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필리핀 대사에 卞榮泰 임명</li> </ul> <p>30 제6연대 반란사건(제3차)</p> <p>31 정부, 외무부장관에 林炳稷 임명</p>	<p>18 동북의용군 입북에 관한 회의(하얼빈)</p> <p>23 • 평원선(양덕~천성간) 전철 개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주에서 애국청년의거</li> </ul> <p>31 자강도 신설</p>	<p>18 美,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21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 사임, 李宗仁 부총통이 대행</p> <p>27 자유중국 李宗仁 총통대리, 모택동이 제안한 和平 8개 조건 승인</p> <p>30 중공군 북경 입성</p>
2	<p>1 • 제21연대 창설(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여단을 수도여단으로 개칭</li> </ul>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 • 해군본부, 의무감실 및 감찰감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진급 : 金弘一, 李應俊, 蔡秉德, 孫元一</li> <li>• 준장진급 : 丁一權, 李亨根</li> <li>• 유엔韓委 업무개시</li> </ul> <p>2 • 제5육군병원 창설(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봉암 농림부장관 사표 제출</li> </ul> <p>4 육군 제1기 배속장교 수료</p> <p>6 • 국회, 외국군 철수결의 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열 美육군장관 내한</li> </ul> <p>10 배속장교 제2기 육사에 입교</p> <p>12 유엔韓委 전체회의 개최</p> <p>14 해군함정을 3개 정대 및 1개 훈련정대로 편성</p> <p>15 여자항공교육대 창설</p> <p>16 李대통령, 美의 對日 태도에 경고</p> <p>18 한·미 우편물교환 협정 조인</p>	<p>7 인민군 창설 1주년 기념 대회</p> <p>13 북한 민청대표, 소련 靑靑에 참가차 모스크바 향발</p>	<p>6 프랑스,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p> <p>15 UN안보리, 한국가입안을 가입심사위에 회부(찬성 9, 반대 2)</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19 유엔韓委 38도선 시찰		
	20 주한 美공사관, 대사관으로 승격	22 訪蘇대표단(단장 김일성) 일행 모스크바로 향발	20 중공정부, 石家莊에서 北京으로 이전
	23 유엔韓委, 蘇에 북한지도자 접촉 요청	23 조선 중앙역사박물관에 소련軍館 개관	24 이스라엘·이집트 휴전협정 조인
	25 육군호림부대 창설		26 UN安保審委에서 한국 유엔가입자격 가결
3	1 · 지리산지역 전투사령부 설치(남원) · 해군본부 정보감실 설치		
	2 ·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 해군사관학교 제5기 입교		2 일본경제신문, 북한정규군 20만명, 비정규군 15만명 이라고 보도
	4 호국군 간부훈련소 설치(서울)	4 김일성 모스크바 방문(~20일)	3 필리핀, 대한민국 정식 승인. 양국대사관 설치
	9 학도호국단 결성		
	10 韓·日간 통상예비회담 개최(동경)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17 백아더 사령부 참모단 내한, 이범석 국방부장관과 회담	17 북한 소련과 경제문화협정 조인(21억 1,200만루블 차관 약정)	21 자유중국, 河應欽 내각성립	
	21 • 국방부장관 이취임식 (제2대 申性模) • 주한미대사 무초 임명			22 美안보회의, 주한미군 6월까지 완전철수를 대통령에 건의
	27 張勉 주미대사, 트루먼 미대통령에 신임장 제정			
4	1 • 육본 호국군국을 호국군사령부로 개칭 • 육군피복공창 및 각 지구보급창 설치 • 해본 호국군국 및 헌병감실 설치 • 육본에 병무국을 창설 • 정부, 1949예산안 국회에 제출	22 朝·蘇간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해 양국정부 공동성명서 발표	3 이스라엘·요르단 휴전협정 조인  4 NATO조약 조인(워싱턴)  9 캐나다, 대한민국 정식 승인	
	3 李範奭 총리, 국회에서 연설			
	9 해군간호장교 제1기 수료			
	10 701함, 미국에서 진해에 입항			
	9 평화옹호 세계대회에 참석차 韓雪野·朴正愛·金昌俊 向佛			
10 남침준비유류 10만톤을 望山에 저장	10 • UN안보리에서 한국가입안 부결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5 • 해병대 창설 • 제6연대 해체, 제22연대 신편</p> <p>19 해군군악학교 창설</p> <p>20 이범석 총리, 주한미군 철수는 군사협정 체결후라고 언명</p> <p>22 학도호국단 창설</p> <p>23 한·일 통상협정 체결</p> <p>24李大통령, 자력국토통일 담화 발표</p>	<p>21 金日成, 최고인민회의 제1기 3차회의에서 소련방문 결과 보고</p>	<p>• 조병옥 특사, 美에 무기 원조 요청</p> <p>13 • 美육군부, 주한미군 7월까지 주둔 발표 • 로마교황청,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20 國·共 평화회담 결렬</p> <p>22 美국무장관, 미군철수전 대한무기이양을 언명</p> <p>24 중공군 남경 입성</p>
5	<p>1 • 육군경리학교 창설 • 육군군악학교 창설 • 육본 각 부처를 감실로 개칭 • 국방부 병참처를 육본으로 편입과 동시 군수국으로 개칭 • 해군본부 정훈감실 설치 • 배속장교 제3기 육사에 입교</p>	<p>1 5·1절 기념 군중시위 대회</p>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4 춘천 주둔 제8연대 1대대장 표무원 소령, 야간훈련 병자하여 대대병력 이끌고 월북(4/239)</p> <p>5 • 해군병기공창 설치 • 해병대령 공포 • 해군사관학교령 공포 • 홍천 주둔 제8연대 2대대장 강태무 소령, 야간훈련 병자하여 대대병력 이끌고 월북(1/143)</p> <p>7 해군기지 설치령 공포</p> <p>9 • 제2대 육군총참모장 취임(채병덕 소장) • 국방부 참모총장제 폐지</p> <p>11 해군 제2특무정대 기함 제508정 납북사건</p> <p>12 6개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 개편</p> <p>14 육군본부 정훈국을 정훈감실로 개칭</p> <p>15 제2차 숙군 단행</p>	<p>9 남로당을 비롯 南韓民戰수개 정당, 사회단체를 합쳐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자고 제의. 16일 북한당국 이를 수락</p> <p>11 북한군 38도선에서 산발적으로 도발</p> <p>16 북한군 115전차연대를 제105전차여단으로 개편</p>	<p>5 베를린 봉쇄 해제에 관한 미·영·불·소 4개국 협정조인(뉴욕)</p> <p>6 서독 임시정부 수립</p> <p>12 베를린 봉쇄 해제</p>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8 정부, 한국방어서약을 미국에 요구</p> <p>20 • 해군 302정 남북 미수 사건 발생 • 육군 정보학교 설치(수색)</p> <p>21 북한군 웅진지구 무력 침공사건 발생</p> <p>23 육군사관학교 제8기 졸업</p> <p>31 미군철수 반대 국민운동 전개</p>		<p>17 미국, 대한원조 2억달러 책정 발표</p> <p>25 중공군 상해 점령</p> <p>27 칠레,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28 美국무부, 군사고문단 이외에 전 주한미군 철수 발표</p>
6	<p>2 북한 제2차 남파유격대 400명 침투</p> <p>5 웅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p> <p>6 순국장병 합동위령제 거행</p> <p>8 주한미군 軍事使節團長에 로버트 준장 취임</p>	<p>1 청진 해방투쟁관 개관</p>	<p>2 브라질,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8 美국무부, 주한미군 철수 발표</p>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5 해군 진해특설기지를 진해통제부로 개칭</p> <p>20 • 제8사단 창설(강릉) • 수도경비사령부 창설(서울) • 제23연대 창설(마산) • 제25연대 창설(대전) • 육본 헌병감실을 육군헌병사령부로 개칭 • 수도사단을 제7사단으로 개칭</p> <p>21 정부, 농지개혁법 공포</p> <p>25 • 국군 징계령 공포 • 통제부 직제령 공포 • 경비부 직제령 공포</p> <p>26 白凡 김구,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피살</p> <p>27 육군본부, 항공국 설치</p> <p>29 • 주한미군 잔여부대(제5연대 전투단) 철수 완료 • 張勉 주미대사, 미국에 군사원조 재요청</p>	<p>18 김일성, 전군에 전투태세 완료 명령</p> <p>25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p>	<p>10 美국무부, 한국에 군사고문단 설치 발표</p> <p>18 맥아더 사령부, 맥아더라 인 확대 거부 성명</p> <p>20 도미니카,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23 뉴질랜드,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26 美하원, 대한원조액 1억 5천만달러 가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청사 이전(구 신한공사 → 구 수도여단)</li> <li>정부, 트루먼 美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임시원조 요청</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노동당 합당, 조선 노동당으로 발족(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박헌영)</li> </ul>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군본부시설감실 설치</li> <li>육군참모학교 창설(용산)</li> <li>육군보병학교 창설(시흥)</li> <li>수도육군병원 설치</li> <li>주한미군사고문단 (KMAG) 공식기구로 발족</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韓委, 蘇軍철수 감시차 입북을 방송으로 요청(蘇 측 거부)</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군본부 후생감실 설치</li> <li>웅진지구 전투사령부 철수(제19연대에 인계)</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朝·日·蘇간 경제문화협정 비준서 교환</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英·蘇 통상협정 조인</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승만 대통령, 북한의 9월 총선거 제안을 거부. 반박성명 발표</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군정보학교를 남산학교로 개칭</li> <li>호국군간부학교를 호국군사관학교로 개칭</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북한 국군 제8연대 1·2대대 장병을 인민군대에 편입 발표</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면·조병옥 대사, 미국에서 북한 총선거 제안을 반박성명</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볼리비아, 대한민국 정식 승인</li> <li>美上院, 대한원조안 가결</li> </ul>	

1949년

월	한 국	부 한	국 제
7	<p>15 • 임시훈장제도 제정(훈장 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사 제1기생도 및 제9기 사관후보생 입교</li> <li>• 병역법 국회 통과</li> </ul> <p>16 호국군여단 및 연대 증설</p> <p>20 이승만 대통령, 태평양동맹 협의차 퀴리노 필리핀 대통령, 장개석 중국총통 등 초청</p> <p>27 각 사단에 야전공병대대 창설(제1·6·7·8사단)</p> <p>28 유엔韓委, 미군 완전철수 확인</p> <p>29 • 국방부 헌병령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참모학교 제1기 수료</li> </ul> <p>30 육군특별부대 사령부 해체(관하 대대는 육본직할)</p>	<p>25 중공 제166사단 入北(한인의용군)</p>	<p>16 브라질,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18 쿠바,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25 네덜란드,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26 트루먼 美대통령, 대한무기협조안 의회에 제출</p> <p>31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정전협정 조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 • 육군 제1병참대대를 병참단으로 개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시설관리소 창설</li> <li>• 부평지구 위수사령부 설치</li> <li>• 배속장교 제3기 수료 및 임관</li> </ul> <p>4 북한 제2차 웅진지구 무력침공사건 발생</p> <p>5 각 사단 헌병대 창설(연대 헌병대 해체)</p> <p>6 병역법 공포(국민개병주의, 법률 제41호)</p> <p>7 장개석 중국총통 내한 (~8일, 공동성명 발표)</p> <p>12 북한군 제5차 유격대 용문산에 침투</p> <p>15 • 육군군의학교 창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호국사관학교 해체</li> <li>• 육군보국대대 창설</li> <li>• 육군복장령 공포</li> </ul>	<p>1 조국전선 中央常委, 남한측이 38도선 이북을 침범한다고 선전</p> <p>11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38도선 황해도지구의 군관하사 전사들에게 국기훈장 및 군공메달 수여</p> <p>15 8·15해방 4주년기념 평양시 위수부대 열병식 거행</p>	<p>4 그리스,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5 미국, 對中共白書 발표</p> <p>10 퀴리노 필리핀 대통령, 태평양동맹에서 일본 제의를 선언</p> <p>12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13 터키,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15 오스트레일리아·벨기에, 대한민국 정식 승인</p>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6 • 해군병기공창 해체 • 북한 제6·7차 남파유격대 300명 경북지역에 침투</p> <p>17 정부, WHO 가입</p> <p>20 위수사령부 설치(11개 지역)</p> <p>26 해병대 진주주둔부대 편성</p> <p>31 호국군사령부 해체(육본 예비군국에 인계)</p>	<p>23 중공 제164사단 入北(한국인 의용군)</p> <p>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이 파견한 호림부대에 대하여 보도</p>	<p>20 니카라과, 대한민국 정식 승인</p> <p>24 북대서양조약 발효</p>
9	<p>1 •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 설치 • 陸本에 병무국, 예비군국, 교도국 설치</p> <p>3 해군사관학교 제6기 입학</p> <p>5 보병 제2연대, 웅진지역에 출동</p> <p>10 육본 예비군국을 교도국에 합편</p> <p>11 유네스코 회담에 한국대표 파견</p>		<p>4 엘살바도르, 대한민국 승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5 • 육군보충대 창설(수원) • 육군측 지부대 창설(서울) • 육군 제1의무단 해체 (제1의무대대에 인계)</p> <p>25 항공기 헌납 국민운동 전개</p> <p>26 • 육본 정훈감실 해체 • 군인 신체구속 잠정규정 공포</p> <p>28 북한군 제8차 유격대 침투</p> <p>30 육군, 각 사단에 군악대 편성</p>	<p>14 중앙방역위원회를 내각 직속 중앙방역위원회로 개편</p> <p>16 개성지구 주둔 국군 제1사단 11연대 소속 배용식 이등상사 지휘아래 1개 분대가 월북해 왔다고 주장</p> <p>22 金日成의 妻 金貞淑 사망</p> <p>24 국군소속 군용기 L-19 110호기 비행사 이명호와 하사관 조수 박용오가 월북해 왔다고 주장</p>	<p>14 아데나워 서독수상 취임</p> <p>20 제4차 UN총회 개막</p> <p>22 소련, 첫 원폭시험</p> <p>24 이란, 대한민국 승인</p> <p>28 UN특별정치위원회, 한국 문제 상정</p> <p>29 美의회, 대한군사원조안 승인</p>
10	<p>1 • 공군 창설(육군항공국 해체) • 공군본부 직제령 공포 • 육군 총참모장 경질(대리 申泰英 소장)</p>	<p>1 외무상 박헌영, UN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 북한가입 요청</p>	<p>1 • 중화인민공화국(중공) 수립 • UN총회, 한국대표 참가 결정</p>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 • 3군 보도과를 국방부 정훈국에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웅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li> <li>• 육군 총참모장(채병덕)과 제1사단장(김석원), 남북교역사건으로 예비역에 편입</li> </ul> <p>14 북한군 제3차 웅진지구 무력침공사건(은파산 전투)</p> <p>15 • 육군포병학교 창설(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경리학교를 일부 분리, 병참학교로 개편</li> </ul> <p>17 미국에서 PC 701함 구입</p> <p>23 제3차 숙군 단행</p> <p>27 • 공군 5개 기지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계엄법 통과</li> </ul>	<p>6 中共정권 승인, 외교관계 설정 합의</p> <p>18 제109전차연대·제205전차연대, 남천과 철원으로 이동</p>	<p>2 소련, 중공을 승인</p> <p>3 泰國, 대한민국 승인</p> <p>5 에콰도르, 대한민국 승인</p> <p>6 미국, 상호방위원조법 제정 공포</p> <p>14 美국회, 대한원조안 1억 5천만달러 통과</p> <p>20 일본정부, 재일교포학교 273교에 폐쇄령</p>
11	<p>1 • 육군포로수용소 설치(영등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반란사건 관련자 89명에 사형집행</li> <li>• 美함대 친선방문</li> </ul>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 육군피복수리공창 창설 (육군피복창 직할)</p> <p>15 육본교도국을 청년방위 국으로 개편</p> <p>21 陸軍 제1·2보충대 창설</p> <p>24 계엄법 공포</p> <p>28 북한군 유격대 제9차로 普賢山에 침투</p>	<p>7 북한, 동독과 외교관계 수립</p> <p>25 里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실시</p>	<p>2 네덜란드·인도네시아, 헤 이그협정 조인</p> <p>24 UN정치위, 한국가입 再 審案을 가결</p>
12	<p>1 · 국방부 병기공창 창설 (육군병기공창 통합) · 육군편찬위원회 설치(육 본작전교육국) · 청년방위대 간부훈련학 교 설치(온양) · 美상원의원 내한</p> <p>3 · 이승만 대통령, 향토방 위대 조직 발표 · 군인·군속 및 군수소화 물 운송규칙 제정</p> <p>4 국회,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p> <p>6 징병검사 실시</p> <p>7 UN韓委 사무국장 등 38도 선 시찰</p>	<p>3 面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 거 실시(803지역, 13,354명 선출)</p>	<p>7 중화민국, 臺北에 환도 선언</p>

194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8 • 고등군법회의 관리권 이관 • 육군병기공창 제2공장 설치</p> <p>10 헌병 무기사용령 공포</p> <p>13 국방부, 행정사무처리규정 공포</p> <p>15 국방부, 兵器行政本部 설치</p> <p>16 공군본부 청사이전(국방부 별관에서 회현동으로 이동)</p> <p>19 • 공군 항공기지사에서 수원, 군산, 광주, 청주 등 비행장 관할 • 헌병과 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령 공포</p> <p>22 동남아연맹회의에서 한국 정식 초청</p> <p>24 육군병원 직제령 공포</p> <p>25 국가보안법 개정법령 공포</p> <p>26 해병대, 제주도로 이동</p> <p>27 육군철도수송규정 공포</p>	<p>12 자강도 강계군을 강계시로 승격</p> <p>15 북한, 비행연대를 사단으로 확대. 전폭기 122대 보유</p> <p>21 평양 인민군 피복창고 화재(군복 6만벌 소실)</p> <p>22 중공주재 초대 대사에 이주연 임명</p> <p>25 • 북한·중공간 통상우호협정 체결 • 북한·소련간 영사협정 체결</p>	<p>8 우루과이, 대한민국 승인</p> <p>17 페루, 대한민국 승인</p> <p>22 동남아연맹회의에서 한국을 정식 초청</p>

## Ⅱ. 戰爭·整備期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5 공군헌병대 창설</p> <p>10 군보도취급규정 공포</p> <p>14 · 해병대 육사 제9기 위탁사관후보생 임관(30명)                      · 한·미간 김포비행장 사용협정 체결                      · 전권 특명대사겸 주일 연합군사령부 파견 외교사절단장에 申興雨 임명</p> <p>15 3개 사단장 인사발령(제 2·3·6사단)</p> <p>16 · 청년방위국 설치(육본)                      · 최초로 사병1차 만기 전역</p>	<p>10 내각 직속 “정치·경제학 아카데미” 창설안 결정</p>	<p>7 일본정부, 재일교포 62만명에 강제등록 실시</p> <p>9 美대통령 국회에 對韓經濟援助案 1억1천4만달러 승인 요구</p> <p>10 록셈부르크, 대한민국 승인</p> <p>12 애치슨 美국무장관, 미국 동방위선에서 한국, 대만 제외 선언</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3 제1기 경찰간부후보생 육군보병학교 입교(119명)</p> <p>26 ·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조인 · 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조인(28일 발효)</p> <p>30 정부, 국회에 군정법령 폐지안 제출</p>	<p>21 중공과 우편물교환 및 전신전화연락협정 체결</p> <p>30 김일성종합대학 제1회 졸업식</p> <p>31 북한·월맹간 외교관계 설정 합의</p>	<p>19 美하원, 對韓經援 6천2백만달러 지출안 부결</p> <p>27 미국, NATO 가맹국간에 상호방위원조(MSA)협정 조인</p> <p>31 · 美上院, 下院 외교위 대한경제원조안 6천만달러 가결 · 중공군, 중국본토 완전 점령</p>
2	<p>1 · 병역법 시행령 공포 · 육군경리학교 제1기입교</p> <p>6 정부, 내각책임제 개헌안 공고</p>	<p>6 북한군 공병여단, 만주 간도에서 축성지대 돌파훈련 실시</p>	<p>10 美上院, 대한원조법안 수정 가결</p> <p>11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승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4 해군 진해통제부에 총무 감실 설치</p> <p>16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장군 초청으로 訪日(~18일)</p> <p>24 김홍일 소장 외 29명 육군 참모학교 고위간부과정 수료</p> <p>25 해군사관학교 제3기 졸업</p> <p>27 제2차 종군기자 훈련반 23명 수료(육사)</p> <p>28 · 군인복무령 공포 · 재학생 징병연기잠정령 공포</p>	<p>14 헝가리주재 대사에 권오직 임명</p> <p>27 김일성, 7명의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소련 방문, 스탈린 및 슈티멘코 蘇총참모장 등과 협의(~3월 1일)</p>	<p>14 · 蘇·중공상호원조조약 조인 · 트루먼 美대통령, 대한 경제원조안에 서명</p> <p>25 퀴리노 필리핀 대통령, 3월말 태평양동맹회의 소집을 성명</p>
3	<p>1 · 용진지구 전투사령부 해체(제17연대에 인계) · 북한정치공작대 190명 검거</p> <p>2 해군기지법 공포</p>	<p>1 3·1절 행사 폐지·금지</p>	<p>1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에 복귀</p> <p>3 · UN, 대한민국에 군사감시단 파견 결정 ·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승인</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5 • 제4차 숙군 단행 • 한·일 통상회의 개최</p> <p>6 공군 제1차 정보사관후보 생 수료</p> <p>14 각 병사구사령부 폐지 및 육본 청년방위국·병무국 해체</p> <p>15 • 항공기 건국호 10대 도입 • 지리산 및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해체</p> <p>16 한·미 선박기술협정 조 인</p> <p>27 • 위수령 공포 • 남로당 총책, 金三龍·李 舟河 검거</p> <p>30 한·미 상호방위조약 원조 협정 국회비준</p>	<p>5 38도선 5km 이내 주민 소 개령</p> <p>18 朝·中 상호방위협정 체결</p>	<p>9 미국, 대한군원액 1천97만 달러 확정</p> <p>20 미국, 對西歐 무기원조 개시</p> <p>31 미국, 대외원조법 성립</p>
4	<p>1 • 해군본부 정훈감실 부활 • 해군선박경호대 부산에 설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창설</p>	<p>1 독립건설자금은행 창립</p>	<p>2 美육군부 차관, 오키나와 를 무기한 점령한다고 성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5 육본 정훈감실 재창설</p> <p>6 이윤영 총리서리, 국회부결</p> <p>10 • 제3대 육군총참모장 蔡秉德 소장 임명(예비역에서 현역으로 기용) • PC 701함 진해에 입항</p> <p>12李大통령, 군비강화 긴급성 강조</p> <p>14 • 군사원호법 공포 • 한·일 잠정해운협정 체결</p> <p>15 육군위생재료창 창설</p> <p>21 申性模 전 국방부장관, 국무총리서리에 임명</p> <p>22 육군 수뇌급 인사이동 (제1·2·5사단장 및 작전참모부장 등)</p> <p>24 해군정보감실 진해파견대를 통제부 정보참모실로 개칭</p>	<p>5 체코주재 대사에 김응기 임명</p> <p>7 최고재판소 전원회의 개최</p> <p>21 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평화운동에 전체인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결정</p>	<p>22 애치슨 美국무장관, 對蘇 총력외교 6원칙 발표</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28 • 북한 공군중위李建淳 IL-10 타고 귀순 • 군속법령 공포 • 항공수당급여규정 공포		
5	1 육군본부 조달감실 설치		7 美 上·下院, 대한원조법안 통과
	10 국방부장관, 북한군 38도선 병력 집결증임을 발표	10 북한·소련 航空社, 평양~청진, 평양~함흥,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평양~원산간 여객·우편물 수송항공로 개설	
	12 이승만 대통령, 군비강화 긴급성 강조		
	14 전국기(T-6) 10대 명명식 (여의도)	17 북한, 평화통일달성회의 토론회의 개최	19 美 上·下院, 대한원조액 5천만달러 가결
	20 육군보충대를 육군원호대로 개칭		
	22李大통령, 각 부대 순시 (8일간)		24 트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 평화제안 발표
			25 유네스코, 대한민국 가입 가결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30 제2대 민의원 선거(무소속 126, 민국당 23, 국민당 22, 한청 10, 국민회 10명 당선)		
6	1 • 군사원호법 시행령 공포 • 정부, 의무교육 실시  2 • 육사 제2기 생도 입교 • 한·일 통상협정 조인 • 제헌국회 폐회식  4 해군사관학교 제7기 입교  8 한·일 통상협정 발효  9 • UN韓委 감시반, 38도선 전역 시찰 • 육군 주요지휘관 및 참모 인사이동(제2·6·7·8사단장, 수경사령관, 육본작전교육국장 등)  12 한국은행 개업식	7 북한, 남북 총선거 제안  9 조국전선중앙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구성  12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조국전선 대표 3명이 남한으로 가던 중 국군에게 검거, 군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 석방 위해 전 인민의 강력한 운동전개 촉구	4 트루먼 美대통령, 대한경제원조법에 서명  14 주일대표부, 맥아더 사령부에서 몰수한 조총련계 소속 재산 반환 요청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5 • 국방부, 제1(부산), 제2(인천) 조병창 설치 • 국방부 조병창에 과학기술연구소 설치</p> <p>16李大통령, 曹晩植을 金三龍·李舟河 양인과 교환하자 는 북한제안에 조건부 찬의</p> <p>17 덜레스 美국무장관 고문 내한하고 38도선 시찰</p> <p>19 제2대 국회개원, 국회의장 신익희, 부의장 장택상·조봉암</p> <p>25 •북한군, 38도선 전역에서 불법남침 • 07:00 중앙방송, 북한의 남침 첫 소식을 방송 • 비상국무회의 개최, 대통령령 제377호(비상사태하의 법령공포의 특례에 관한 건) 공포, 대통령 긴급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 •李大통령, UN 한국위원단과 긴급회의 개최. UN 한국위원단, 북한측에 전투중지를 요구. 정부, 미국에 무기원조 요청. 주한 미대사, 미국무부에 무기 요청</p>	<p>18 金日成, 전군에 전투태세 완료 명령</p> <p>20 남한의 조만식 조건부 교환을 거절</p> <p>25 • 새벽 4시, 북한군 38도선 전역으로부터 대거 남침 공격을 개시 • 북한 비상내각회의 소집</p>	<p>17 이집트·레바논·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예멘, 아랍집단 안전보장 조인(이라크·요르단 불참)</p> <p>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군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철수요구 결의안을 채택(찬성 9, 기권 1, 소련 불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5 · 서울 상공에 북한기 5대 출현 · 국회 긴급회의 개최</p> <p>26 · 주한외국인 가족 철수. 美, 대한긴급원조 무기 공수 개시 · 국회 본회의 개최, 비상시국에 관한 긴급결의안 가결. UN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채택. 무기구입대책위원회 조직안 채택 · 북한기 2대 김포비행장 폭격 · 북한기 여의도비행장 폭격 · 서울 상공에서 미 F-51 전투기와 蘇製 YAK기가 교전 · 용진반도, 문산, 의정부 철수 · 국군 제17연대 인천으로 철수 ·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춘천전투에서 북한군 제2사단을 격퇴</p> <p>27 ·李大통령, 국민 총결기 촉구 · 정부, 大田으로 이전 · 맥아더 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를 수원에 설치</p>	<p>26 · 군사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일성) · 김일성, 북한군에게 특별방송</p> <p>27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시상태 선포 · 유엔안보리의 한국전 관련 결정에 대하여 비난성명 발표</p>	<p>26 · 트루먼 美대통령, 美대평양함대 사령관에게 전투대비 명령 · 美의회, 대한 추가지원안 가결(5천만달러) · 맥아더 원수, 한국군에 F-51(무스탕) 10대 인도를 발표 · 자유중국,李大통령에게 반공의 입장을 취하며 한국정부를 절대 지지한다고 표명 · 맥아더 사령관, 일본정부에 공산당 기관지 '적지' 발간금지 명령</p> <p>27 · 유엔안보리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 결의(파병결의) · 트루먼 美대통령, 미 해·공군에 한국과 대만방위 명령 · 美, 각서로 북한군의 철퇴를 蘇에 요청</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7 • 美전투기, 소련 YAK기 1대를 김포비행장 부근에서 격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해군, 인천항 부근에 상륙기도</li> <li>• 강릉 철수, 국군 미아리 청량리선에 수도방어 진지 편성</li> </ul> <p>28 • 국회, 서울 사수 결의. 춘천, 서울 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교 폭파(오전 3시)</li> <li>•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편성(사령관 김홍일 소장), 한강 남안에 방어선 구축</li> <li>• 육군본부 수원으로 이동</li> <li>• 한강전투지연작전(~7월 3일) 전개</li> </ul> <p>29 • 맥아더 원수 내한,李大통령과 회담하고 군사원조 약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공군, 38도선 이북지역에 첫 출격</li> </ul> <p>30 • 육·해·공군 총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에 丁一權 준장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500명의 학도, 수원에서 비상학도대를 조직</li> </ul>	<p>28 • 김일성, 인민군 서울 점령에 대한 연설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항공기, 수원비행장 폭격</li> </ul> <p>29 군사위원회, 전방구호대 조직, 전선에 파견명령 하달</p> <p>30 북한군 한강 도하</p>	<p>28 • 영국, 일본해역의 영국함에 美해군 지휘하에 편입 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중폭격기 1개 중대 파한 결정</li> <li>• 美해군, 미 제7함대 대만해협에서 작전중이라고 발표</li> </ul> <p>29 • 美의회, 대한원조 1억 달러 지출 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 미국의 북한군 철퇴 요청을 거부</li> </ul> <p>30 • 트루먼 美대통령, 美지상군의 한국 출동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한국해안 봉쇄 조치</li> <li>• 북한지역에 폭격 승인</li> </ul>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 • 美지상군 美제24사단 21연대 제1대대(스미스부대) 부산에 상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전시대책위원회 설치</li> </ul> <p>2 • 호주공군, 한국전선 출동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 美극동공군사령부로부터 F-51 10대 인수, 비행단을 편성</li> </ul> <p>4 • 육군본부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지상군사령관에 딘 소장 임명</li> </ul> <p>5 • 육군 편성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군단(소장 김홍일) 창설(평택)</li> <li>• 한·미연합해군방위사령부 설치(부산)</li> <li>• 미군, 오산 부근에서 접전(미제24사단 제21연대 1대대(스미스부대))</li> <li>• 동락리(음성북방)전투(7.5~10), 제6사단이 적 15사단을 음성북방 동락리서 격퇴</li> <li>• 미국, 신형 3.5인치 로켓을 한국으로 급송</li> </ul>	<p>1 • 최고인민회의, 전시총동원령 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남한 점령지역에 정치공작원 1,000명 이상 파견 발표</li> </ul> <p>4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남한점령지역 토지개혁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li> </ul> <p>5 인민군 총사령관 명령 제7호, “부대칭호 수여에 관하여” 발표</p>	<p>1 자유중국, 대한군사지원을 유엔안보리에 제의했으나 부결</p> <p>2 유엔 36개국, 대한군사원조 지지 성명</p> <p>3 맥아더 원수, 미해병대 출동명령</p> <p>4 • 蘇 그로미코 외상, 미군의 한국 철수를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미·소 양국에 대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중재용의 표명</li> </ul> <p>5 美, 대중공 석유 禁輸 결정</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7 • <b>李대통령</b>, 포로에 인도 적 대우를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해군 및 공군 한국 전선에 참가</li> </ul> <p>8 •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전남·북도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전북편성관구 창설</li> <li>• 육군본부, 유엔연락장교 단 창설</li> </ul> <p>9 주한 <b>美제8군사령부</b> 대구에 설치</p> <p>10 • <b>이승만 대통령</b>, 38도선 자연해소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유엔 및 미국정부에 원조감사전문 발송</li> </ul> <p>11 한국해군, <b>美극동해군</b>에 편입</p> <p>13 • <b>이화령전투</b>, 보병 제6사단 2연대, 문경북방 이화령에서 적 1사단의 침공을 지연저지(~1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군 통신관리본부 설치</li> </ul>	<p>7 북한군, 청주시 점령</p> <p>8 <b>김일성</b>, 인민군과 인민에게 미국의 침략을 격퇴할 것을 방송</p> <p>12 인민군 총사령부, 미군포로를 살해하고 있다는 맥아더 사령부의 성명을 날조라고 주장, 인민군 포로를 국제법에 의해 취급해 줄 것을 요구</p> <p>13 • <b>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b>에서 <b>李舜臣</b> 훈장 1·2급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산 유격대 山淸郡에 진입, 국군 1개 소대 습격</li> </ul>	<p>7 • 유엔안보리, 유엔군통합 사령부 설치안 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원수 임명</li> <li>• 美, 징병 및 징용법 발동</li> </ul> <p>11 유엔사무총장, 제네바 전쟁법규의 준수를 요구</p> <p>12 • 미국, 한국에 <b>美제8군</b>으로 주한 <b>美지상군사령부</b>를 설치(사령관 워커 장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 체결 (일명 大田협정)</li> </ul>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4 • 육군본부 대구로 이동 • 美제24사단 대전에서 2개 사단 공격을 지연방어 (~20일) • 정부, 내무부장관에 趙炳玉 임명</p> <p>15 • 이승만 대통령, 국군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 • 제2군단(준장 김백일) 창설(함창)</p> <p>16 • 정부, 대전에서 대구로 이전 • 영덕전투, 국군 제3사단, 동해안 영덕지역에서 적 5사단의 침공을 맞아 2주 동안 저지(~29일) • 대전전투, 美제24사단이 적 105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3·4사단과 대전지역에서 지연전 전개 (~20일)</p> <p>17 • 정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 보병 제3사단 개편, 영남편성관구로부터 육군본부 직할로 편입 • 화령장전투, 국군독립제17연대와 제1사단, 화령장 일대에서 적 1사단의 기습 남하를 저지(~25일)</p>	<p>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남한지역 도·면·리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p> <p>17 조선인민군 근위군장 제정</p>	<p>14 • 인도, 對韓평화안 제안 • 유엔사무총장, 각국에 지상군 한국파병을 요청 • 번즈ECA 주한 사절단장 내한</p> <p>15 화란 구축함 1척 한국 도착</p> <p>16 蘇, 인도 평화안 수리</p> <p>17 미국, 인도의 對韓 평화제안을 거부</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7 • 영강(함창북방) 전투, 국군 제1사단과 6사단이 함창북방의 영강선 일대에서 적 2군단의 침공을 2주간 저지(~3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수송화물특별조치령 공포</li> </ul> <p>18 • 美제1기병사단, 포항에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제24사단장 딘 소장 실종(대전지구)</li> </ul> <p>19 정부, 계엄선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p> <p>21 • 전남·북도에 계엄령 선포(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징발보상령 공포</li> </ul> <p>22 비상항토방위령 공포</p> <p>23 • 蔡秉德 소장(영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 하동전선에서 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병 소집</li> </ul>	<p>20 북한군, 大田 점령</p> <p>23 북한군, 광주에 돌입</p> <p>25 남한 점령지역에서 군·면·리 인민위원회 선거 시작</p>	<p>19 • 트루먼 美대통령, 의회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특별교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하원, 한국 포함한 군원 12억달러 가결</li> </ul> <p>20 • 美국무부, 대한백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공에 수출금지 조치</li> <li>• 맥아더 원수, 한국작전 전망에 관한 성명 발표</li> </ul> <p>25 영국·터키·필리핀, 한국에 지상군 파병 결정</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6 •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규칙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엄령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li> <li>• 공군본부 개편</li> <li>• 대구방위사령부 창설</li> <li>• 美제8군사령관(워커 중장) 낙동강전선으로 철수 준비명령 시달</li> </ul> <p>27 국회, 부산극장에서 개최</p> <p>28 • 정부, 한·미간 유엔군 비용 지출에 관한 협정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엄하 군재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li> <li>• 비상국토방위법 실시</li> </ul> <p>29 • 워커 중장, 영동방위선 사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 8사단·수도사단, 안동지역에서 북한군 12사단 병력을 저지(~8월 4일)</li> </ul>	<p>26 최고인민위 상임위, 서울 점령의 제3사단 18연대에 근위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 발표</p> <p>27 북한군,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전역을 점령</p> <p>28 최고인민위 상임위, 비행사단 추격기연대에 근위칭호 수여에 관한 정령 발표</p>	<p>26 • 트루먼 美대통령, 한국군비 등 강화 위해 의회에 50억달러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뉴질랜드, 한국파병 결정</li> </ul> <p>29 프랑스 구축함 1척 한국 도착</p> <p>30 • 애틀리 英수상, 공산주의자들의 대한남침은 세계적 음모의 일환이라고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주한 유엔군에게 비협조하는 국가에 원조중지 결정</li> </ul> <p>31 유엔안보이사회, 한국 민간인 구호를 결의</p>

#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 비상국무회의, 전시대책위원회 설치</p> <p>3 • 의성전투,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제18연대, 영천북방 의성지역에서 적 8사단과 12사단의 침공을 저지(~13일)</p> <p>• 마산전투, 美제25사단을 주축으로 한 키크수임부대, 마산 서북방에서 적 6사단을 저지(~13일)</p> <p>• 다부동전투, 국군 1사단 및 美제1기병사단, 왜관과 다부동 일대에서 제105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2군단(제3·13·15사단)의 8월과 9월 공세를 저지 방어(~9월 22일)</p> <p>7 해리만 美대통령 특사 내한, 李대통령과 회담</p> <p>9 안강·포항전투, 국군 1군단(수도·3사단), 기계·안강·영덕·포항 일대에서 북한군 2개 사단의 침공을 격퇴 방어(~9월 22일)</p> <p>10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설치</p> <p>11 유엔군, 진주 탈환</p>	<p>5 북한군, 왜관 점령</p> <p>8 북한군, 포항 진입을 발표</p>	<p>1 맥아더 장군, 대만·澎湖島 방위를 성명</p> <p>3 소련대표 말리크, 유엔안보리에서 한국문제 관련 연설</p> <p>5 인도, 야전의무대 파견</p> <p>9 美국방부, 대구 수호 자신 피력</p> <p>10 일본, 경찰예비대 창설</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4 • 제1훈련소 창설(대구) • 제2훈련소 창설(부산) • 육군보병학교, 부산동래에서 육군사관학교에 합병운영 • 여자의용군교육대 창설</p> <p>16 • 카투스(KATUSA)병 훈련차 313명 渡日 • 해군 제1함대 창설</p> <p>18 정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전</p> <p>20 미국 하원 의원단 한국 전황 시찰</p> <p>21 • 육군보병학교를 부산동래에서 육군諸兵학교로 개칭 • 정부 보상령 공포</p> <p>22 • 美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 내한 • 제3훈련소 창설(구포) • 제5훈련소 창설(제주도) • 제6훈련소 창설(삼랑진)</p>	<p>13 초대 북한주재 중공대사 평양 도착, 취임(예자량)</p> <p>16 중공대표단 23명 평양 도착</p> <p>19 남한지역에서 노동법령 실시에 대한 명령 발표</p> <p>21 최고인민위 상임위, 군사행동구역에서의 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승인에 대한 정령 발표</p> <p>22 외무상, 미군 만행에 관한 조국전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발송</p>	<p>14 주유엔 미국대표, 유엔사무총장에 포로 및 억류자 취급방법 조사차 적십자대표 북한 파견 요청</p> <p>17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유엔가맹국에 지상부대急派를 요청</p> <p>19 아데나워 서독수상, 소련지구 인민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방위군 창설을 요구</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7 보병 제11사단 창설</p> <p>28 • 육군보충장교령(대통령령 제382호) 공포                      • 제주도 경비사령부 창설                      • 조선은행권 교환 및 유통에 관한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10호 공포</p> <p>30 • 신령전투, 영천북방의 신령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이 적 8사단의 영천 진출을 저지(~15일)                      • 정부 전시학교 운영대책 발표</p>	<p>29 조국전선중앙위, 미군과 유엔군을 철수시키고 이승만·이범석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p>	<p>25 美국방부, 북한의 공업시설 만주로 철거중이라고 발표</p> <p>27 美국동 해·공군, 유엔군사령부에 통합</p> <p>28 • 트루먼 美대통령, 對自由中國 정책 7원칙 발표                      • 호주수상, 한국전쟁에서 승리만이 세계 민주제국의 번영의 길임을 선언</p>
9	<p>1 •李大통령, 병역법 실시에 대한 성명 발표                      • 해병 제1연대 창설</p> <p>2 영천전투, 북한군 15사단이 영천을 침공, 국군 제2군단이 영천을 탈환(~13일)</p>	<p>3 내각, 남한지역에서의 토지개혁 실시 위해 18,000개의 농촌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발표</p>	<p>1 트루먼 美대통령, “왜 우리는 한국에서 싸우는가” 성명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5 • 전국소방대원(10만명) 완전무장 • 육군본부 부산으로 이동</p> <p>6 해병대, 목포·군산 앞바다 제도 탈환</p> <p>7 육군제병학교를 육군종합학교로 개칭</p> <p>8 • 정부, 전시의무요원 소집 • 피난민수용임시조치법 개정령 공포</p> <p>11 제7훈련소 창설(진해)</p> <p>13 유엔 한국 수석대표에 林炳稷 의무를 임명</p> <p>15 •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전개 • 조선은행권 유통금지, 신권과 교환</p> <p>16 •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 총반격 개시 • 美제7사단, 美제1해병사단, 국군 제17연대, 국군 제1해병연대, 인천에 상륙. 이 작전을 위해 유엔해군 제7함동상륙기동부대가 261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작전 실시</p>	<p>7 박헌영 外相,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대하여” 성명서 전달</p> <p>8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 전사</p> <p>16 박헌영 外相, 미군기 폭격에 대해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통고</p>	<p>5 美국무부, 유엔안보리에 소련 비행기의 주한유엔군 공격을 보고</p> <p>7 유엔안보리, 북한원조단절안 가결</p> <p>15 재일한국(청년학도)의용군 美제1기병사단에 자원편입, 인천상륙작전에 참가</p>

#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6 • 국군임시계급에 대한 법령 공포            •李大통령, 한국통일 위해 한·만국경까지 진격할 것을 언명</p> <p>18 • 국군선발대, 영등포 돌입            • 유엔 공군, 김포비행장 착륙</p> <p>19 유엔군, 낙동강 도하 왜관 탈환</p> <p>20 美해병대 한강 도하</p> <p>21 • 서울시내 소탕전            • 한강교 폭파책임자 崔昌植 대령 사형 집행</p> <p>23 • 육군본부,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            • 美제9군단 창설            • 수원비행장 사용</p> <p>26 • 경인지구 계엄사령부 및 경인지구 병사구사령부 설치            • 서울 수복</p>	<p>18 폴란드주재 대사 최일, 몽고주재 대사 김진명 임명</p> <p>23 북한군, 낙동강 전선에서 분산 퇴각</p> <p>25 중공, 인도 대사에게 미군의 38도선 돌파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언명</p>	<p>19 제5차 유엔총회 개막</p> <p>20 마셜 美국방장관, 중공군의 북한진입에 대해 성명</p> <p>21 蘇대표, 유엔총회에서 38도선을 停戰내용으로 하는 평화선언 제안</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7 美합동참모본부, 유엔군 사령부에 북진에 대한 훈령 하달	27 예일 그루수 길 북한주 재 체코대사 취임	27 유엔에 전후 한국문제처리 위한 9개국 위원회 설치
	28 • 정부, 서울 환도 •李大통령, 38도선 이북 진격 명령	28 북한군, 서울지구로부터 후퇴	
	29 수도탈환식 거행(李大통령 맥아더 원수 참석)		
	30 워커 사령관 38도선 돌파명령 하달	30 내각, 남한에서의 토지개혁 실시 총괄에 관한 보도 발표	30 맥아더 사령관, 김일성에게 항복을 권고
10	1 국군 수도사단 및 제3사단, 38도선 돌파		
	2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2호 하달	2 중공외상, 한국군 제외한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시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 언명	2 유엔 蘇블락, 한국전에서 즉시 정전토의 제안
	3 국군 38도선 돌파후 양양 탈환		
	4 경인지구 계엄 고등군법회의 설치		4 UN政委, 38도선 돌파 가결
	7 • 유엔군 38도선 돌파 • 신 유엔 韓委 구성, 호주, 칠레, 화란, 필리핀, 파키스탄, 터키 6개국	6 북한군 제2군단, 철의 삼각지대에서 제2전선 형성	7 유엔총회, 한국통일과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설치안 가결 및 38도선 돌파 가결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8 서울·부산간 철도 개통</p> <p>10 · 38도선 이북 전역에 계엄령 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 탈환</li> <li>· 제주도지구 계엄령 해제</li> <li>· 어업 선박항행금지 해제</li> </ul> <p>14 정부, UN韓委의 전국 총선거안을 거부</p> <p>15 정부, 공무원 임시등록법 공포</p> <p>16 육군 제3군단(준장 이형근) 창설(서울)</p> <p>17 ·李大통령, 유엔결의에 의한 북한통치를 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 작전명령 4호 하달</li> <li>· 정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 증거 발표</li> </ul> <p>18 · 정부, 무공훈장령 공포 (대통령령 제38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 정찰비행대를 정찰비행전대로 개칭</li> </ul>	<p>11 김일성, 항복을 거부하고 최후항전을 명령</p> <p>17 북한정권 각 기관, 평양으로부터 철수</p>	<p>9 맥아더 사령관, 김일성에게 즉시 항복의 최후권고를 통고</p> <p>12 유엔총회, 한국통일시까지 유엔군에 의한 군정안 가결</p> <p>13 중공군, 은밀히 북한에 진입</p> <p>15 트루먼·맥아더, 웨이크도에서 회담</p> <p>16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한국구호사업계획을 위한 7인위원회 구성 결정</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9 • 국군, 평양을 탈환 • 한강교 가교 준공식</p> <p>20 • 숙천·순천 공수작전 (~22일) 전개 • 맥아더 장군, 워커 제8 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을 조속히 국경에 도착토록 명령 • 美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 국군 제1군단에 한·만 국경까지 북진 명령</p> <p>22 진남포 탈환</p> <p>23 해군 제1함대 산하로 제1소해정대 창설</p> <p>24 • 유엔군사령관, 북진한계선을 철폐하고 전유엔군에 국경선까지의 진격을 명령 • 傷痍記章令 공포</p> <p>25 • 운산전투, 국군 제1사단과 美제1기병사단이 운산에서 최초로 중공군(제39군)과 교전(~11월 1일) • 육군 제9사단 창설 • 청년방위학교 창설</p> <p>26 • 국군 제6사단 7연대 1중대, 압록강변 초산 도달 • 美제10군단 예하 미제1해병사단, 원산에 상륙</p>	<p>19 북한정권 신의주로 이동</p> <p>23 인민군 후퇴 중지, 반격작전인 제3단계 작전 전개</p> <p>24 제1차 작전 전개(~11월 8일)</p> <p>26 중공, 抗美원조협회 결성</p>	<p>25 중공군 한국전 개입</p>

#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30李大통령, 평양시찰 및 환영대회 참가		
11	1 평북 선천 상공에 蘇製 MIG-15기 첫 출현  4 美해군, 한국해군에 구축함 2척 기증  6 • 유엔군사령관, 중공군 개입에 대한 비난성명 발표 • 유엔군사령관, 압록강 교량폭파를 명령  7 정부, 전국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제주, 경남·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경비계엄 실시  8 申翼熙 국회의장 평양 방문  9 유엔군사령부 대변인, 중공군 50개 사단이 만주에 집결 대기중이라고 발표  10 정부, 韓美貨 환율 2,500:1로 11월 1일 소급 실시	1 국군 및 미군 3,280명 살상, 포로, 기재 등 노획을 발표  3 곡산 인민유격대, 곡산 점령  6 함경남도 영흥군 소년군 위대 조직  9 곡산 인민유격대, 포로가 장해 국군을 습격  10 맹산군 인민유격대, 3차에 걸쳐 영흥~맹산간 도로 4개소 파괴	3 유엔총회, 평화를 위한 통합결의를 채택  6 유엔군사령관, 중공개입을 유엔에 정식 보고  7 중공, 중공의용군 한국전쟁에 참가하고 있다고 방송  8 • 유엔경제이사회, 對韓재건비 2억5천만달러안 가결 • 유엔안보리, 한국대표 초청안 가결  10 • 유엔안보리, 한국전쟁 확대증지 및 북한 원조증지에 관한 결의안 채택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2 서울·평양 대동역간 열차 개통</p> <p>13 부역자처리법 국회 통과</p> <p>16 申性模 국방부장관 渡日</p> <p>18 · 신성모 국방부장관, 완충지대를 만주에 설치 요구 · 육군, 정훈대대 조직</p> <p>20李大통령, 함흥 시찰</p> <p>21 · 국군, 혜산진 점령 · 서울·평양간 전화 개통</p> <p>23 장면 국무총리 국회인준 가결</p> <p>24 · 유엔군사령관, 한국전선 시찰, 종전을 위한 총공격 명령 · 국민방위군설치법안 국회 제출</p> <p>25 · 국군, 청진 점령 · 정부, 포로심사위원회 규정 공포</p>	<p>12 군사위원회 명령 제001호, 가족의 도살을 일체 엄금하는 포고문 발표</p> <p>15 중공·북한군 총반격 개시</p> <p>18 인제군 인민유격대, 수동면 소재지에서 국군과 접전, 승리 보도</p> <p>20 내각, 전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결정 제175호 채택</p> <p>24 북한군, 美·英 연합군의 크리스마스 총공세에 대한 반격 개시</p> <p>26 박헌영 外相, 미군의 만행에 대한 항의 서한 유엔안보리에 발송</p>	<p>10 · 미국 등 6개국, 유엔안보리에 중공군 즉시 철퇴요구 결의안 제출</p> <p>16 트루먼 美대통령, 한국전쟁이 중공에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p> <p>23 · 영국, 한국전 종식을 위한 정전 3개 계획 발표 · 영국외상, 중공군의 철퇴를 요청하는 메시지 발표</p> <p>25 유엔안보리, 한국 및 중공대표 초청안 가결</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27 장진호전투, 美해병 1사단이 서부전선부대와 접촉 유지를 위해 장진호 북방으로 진출하던중 중공군(7개사단)에 포위되어 2주간 철수작전 성공(~12월 11일)		
	29 군우리전투, 美제2사단이 철수중, 군우리~순천간의 협곡지대에서 중공군 제42군의 공격을 받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철수작전 전개(~12월 1일)		29 美·日 통상협정 조인
	30 유엔군, 신의주비행장 철수	30 문천군 인민유격대, 천내리 전투에서 국군 48명 살상, 포로 보도	30 트루먼 美대통령, 한국에서 경우에 따라 원자탄 사용도 고려하겠다고 성명
12	1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의 전면 후퇴를 결정		
	2 유엔군, 평양 철수 개시		2 맥아더 원수, 미합참에 새로운 전략계획 요청
	3 신성모 국방부장관, 유엔에 원폭 사용을 요청		
	4 평양시에서 행정, 군, 민간단체 철수		4 맥아더 원수, 중공군 100만명이 북한에 집결중이라고 언명
		5 일시적인 강점지역에서 반대단체에 가담한 자들을 위한 자수를 종용하는 포고문 발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6 콜린스 미육군참모총장 내한, 한국전선에서 원폭 사용 가치없다고 발표</p> <p>7 • 정부,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1952년 2월 8일부 해제) • 駐 중국대사에 이범석 장군 임명</p> <p>8李大통령, 미국에 한국군 50만병력을 무장 요구</p> <p>11 •李大통령, 유엔에 중공 斷罪 결정 요구 •李大통령, 서울 사수를 언명</p> <p>14 한국군 제1군단 및 미 제10군단, 흥남에서 해상 철수 개시</p> <p>16 • 제주도 계엄민사부 설치 • 국민방위군법, 국회 통과</p> <p>17 이승만 대통령, 춘천·원주 지방 시찰</p>	<p>6 북한, 평양시 수복 발표</p> <p>7 박헌영, “미군의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라는 성명 발표</p> <p>9 김일성, “평양시 해방에 제하여” 호소문 발표</p> <p>14 중공, 유엔회원국가들의 한국전쟁 휴전안을 거부</p>	<p>7 美 재향군인회, 맥아더 원수의 대한전 강경론 전면지지(대통령에게 공한 발송)</p> <p>8 자유중국, 한국에 3만 병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p> <p>13 • 유엔정치위, 13개국 한국휴전안 가결 • 유엔 蘇대표, 한국에서 유엔군이 철수하면 중공군도 철수한다고 언명</p> <p>14 유엔총회, 한국휴전결의문 채택</p> <p>16 트루먼 美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p>

195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2 육·해군 중앙야전우체국 설치</p> <p>23 美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교통사고로 전사(의정부), 후임에 리지웨이 임명</p> <p>24 • 홍남철수작전, 국군·유엔군 12만명이 홍남에서 철수 완료(민간인 10만명) •李大통령, 서울시민에게 피난을 명령</p> <p>26 홍남에서 철수한 유엔군, 부산·포항에 도착</p>	<p>21 •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제에 대하여” 보고 • 평양방송 재개</p> <p>24 북한주재 폴란드 공사 유리우스 부르크인 취임</p> <p>25 북한주재 불가리아 공사 베뜨코프 취임</p> <p>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없이 전투지구와 전투장에서 무기와 전투기재를 포기한 근무자들에 대한 처벌결정 발표</p>	<p>19 NATO군 창설, 사령관에 아이젠하워 장군 임명</p> <p>23 중공 외상, 유엔 3人委의 협상제의 거부</p> <p>30 • 美합참, 만일의 경우에 대비, 한반도로부터의 철수 계획 수립을 맥아더 원수에게 지시 • 맥아더 사령관, 대중공보복조치를 미합참본부에 제의</p>			

#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 국방부, 인쇄물 사전검열 검토</p> <p>3 정부, 부산으로 다시 이전</p> <p>4 국군, 서울지구 철수</p> <p>6 원주전투, 국군과 유엔군이 북위 37도선까지 후퇴 시 美제2사단이 우군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원주를 공격하여 북한군 3개 사단(제2·9·31사단)을 격퇴. 원주 탈환(~12일)</p> <p>10 육군 제2군단 해체</p>	<p>1 북한·중공군, 신정공세 개시</p> <p>4 북한, 서울 재점령</p> <p>5 군사위원회, 적에게 임시 강점당했던 지역에서 반공 단체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기로 결정</p> <p>6 내각 결정 제192호, 미제국주의 및李정권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재산을 등록하여 이를 처분한데 대한 결정서 채택</p> <p>12 북한군, 김포·인천·강화·수원·양평·여주·홍천·횡성·원주 등을 재점령</p>	<p>4 트루먼 美대통령, 중공 폭격 고려중임을 언명</p> <p>5 美하원 태프트의원, 對中共 선전포고 주장</p> <p>7 美·유고 식량원조협정 조인</p> <p>11 중남미 20개국,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 결의</p> <p>12 미합참본부, 한반도로부터 철수를 불원한다고 훈령</p>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3 국방부, 헌병사령관에 최 경록 준장 임명</p> <p>14 국군·유엔군, 37도선인 평택~삼척선에 신방어선 구축, 반격계획 수립</p> <p>15 콜린스 美육군참모총장 및 반덴버그 美공군참모총 장 내한</p> <p>16 白전투사령부 창설(사령 관 백선엽 소장)</p> <p>17 정부, 유엔정전안 반대 (유엔정치위에서 1월 13일 결의)</p> <p>22 · 제1훈련소, 대구에서 제 주도로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 전면 반격 개시</li> <li>· 맥아더 원수 내한</li> <li>· 국민방위군본부 기구개편</li> </ul>	<p>13 내각 결정, 조국해방전쟁 에서 희생된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과 애국열사들 의 유자녀 학원 설치에 관 한 결정서(제192호) 채택</p> <p>21 최고인민위 상임위, 인민 군 제19고사포 연대에 근 위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정 령 발표</p> <p>25 내각 결정 제197호, 조국 해방전쟁시기에 있어 인민 생활 안전을 위한 제대책에 관한 결정서 채택 공포</p>	<p>13 · 유엔정치위, 한국정전 을 결의(중공 불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한국에 미군 5만명 증파 결정</li> </ul> <p>14 중공, 항미원조협회에서 중공지원군 및 난민을 위한 구제물자 모집</p> <p>17 중공, 정전을 거부</p> <p>18 미국, 공군예비역을 소집</p> <p>24 아시아·아랍 12개국, 유 엔정치위에 새 한국휴전안 제의</p> <p>25 중공, 12개국 휴전안 수락</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6 •李大통령, 대일강화 및 한·일 우호관계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 함대 인천 포격</li> <li>• 국군해병대 인천 상륙</li> </ul> <p>28 맥아더 원수 전선 시찰</p>	<p>31 김책 부수상 겸 산업상 전사</p>	<p>27 •美, UN정치위에서 12개국 휴전안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 네바다주에서 원폭 실험</li> </ul>
2	<p>3 정부, 張勉 국무총리 취임식 거행</p> <p>5 •李大통령, 38도선은 이미 없어졌다고 진격 정지설 반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성전투, 국군 제8사단이 황성지역에서 홍천방향으로 진격중 중공군의 2월 공세에 공격 실패, 원주로 철수(~12일)</li> <li>• 국방부 합동헌병대 발족</li> </ul>	<p>2 군사위원회, 국가비상방역위원회 조직을 발표</p> <p>5 윤상철 인민유격대, 영월 북방에서 국군 제5사단 36연대와 접전</p> <p>6 •내각 공업상에 정일용을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에 국기훈장 1급 수여</li> </ul>	<p>1 유엔총회,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미국안 가결</p> <p>3 유엔 38개국, 한국 구제에 2억2천만달러 기증 발표</p> <p>5 유엔총회, 第2會期 폐막</p>

#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8 유엔군, 서울 재탈환 위해 공격개시</p> <p>11 거창 양민 학살사건 발생</p> <p>13 · 지평리전투, 1951년 중 공군 2월공세기 美제2사단 과 프랑스군 대대가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저지 (~16일) · 맥아더 원수 전선시찰</p> <p>16 · 육군종합학교를 육군보병학교로 개칭 · 급여규정, 원호법 시행령(대통령령) 공포</p> <p>18 전시연합대학 개강(부산)</p> <p>24 美제9군단장 무어 소장, 한강상공에서 헬기추락으로 전사</p>	<p>11 · 중공군, 2월공세 개시 · 이현상 부대, 함양에 주둔한 국군 제11사단 9연대 1개대대를 포위 습격</p> <p>15 이현상 부대, 광주에서 국군 제11사단 20연대와 접전</p> <p>22 북한, 미군이 세균전을 감행하였다고 비난</p> <p>24 중공, 북한의 세균전 항의지지 성명</p>	<p>9 美·자유중국간 군사고문단 파견협정 체결</p> <p>12 퀴리노 필리핀 대통령, 태평양동맹 제안</p> <p>15 트루먼 美대통령, 38도선 돌파권을 맥아더 원수에게 부여</p> <p>17 한국전 참전 13개국, 38도선 돌파 협의</p> <p>24 콜린스 장군, 공산군의 대대적인 공격시 중공본토 폭격 언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 황성지구 탈환</p> <p>12 리지웨이 사령관, 38도선에서 종전되면 유엔군의 승리라고 담화발표(한국전쟁의 협상가능성 시사)</p> <p>14 서울 재탈환(국군 제1사단)</p> <p>15 정부, 서울선발대 파견</p> <p>19 정부, 제2국민병 해산 발표(국민방위군)</p> <p>20 방위군 교육대 해체</p> <p>21 춘천 탈환</p>	<p>10 내각에 社會安全省 신설</p> <p>17 김일성, 최후까지 전쟁하겠다고 스탈린에게 서한 발송</p> <p>19 • 스탈린, 가능한 원조를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회신 • 중공적십자회 국제의료 방역요원 150명 신의주 도착</p>	<p>5 美·英, 38도선 이북지역 진격에 합의</p> <p>10 美국가안보회의, 일본에서 군수품 제조를 결정</p> <p>21 마셜 美국방장관, 미군병력 290만명이라 발표(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의 2배)</p>

#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23 •李大통령, 유엔군이 국경진격후 철수하여도 50만 국군, 국토보전 가능하다고 성명 발표 • 의정부 탈환		23 맥아더 사령관, 중공본토 공격을 시사하고 중공군 최고사령관에게 현지 정전회의를 제의(중공측 이를 거부)
	24李大통령, 한·만국경까지 진격을 강조. 휴전반대 성명		24 맥아더 사령관, 필요시 38도선 재돌파명령을 언명
	26 국군, 인제 점령	26 중공 방역대원 191명 북한에 도착	
	27 문교부, 6, 3, 3, 4 신학제 실시 공포	27 평양-강계간 통신망 복구	
	28 육군 제1군단장 金白一 소장 비행기 사고로 전사 (대관령)	30 소련 방역대 10명 북한에 도착	
4	1 제1차 전군 각개점호 실시	1 遺子女 보육원과 초등학교 원·군사학원 개교	
	2 국회, 38도선 정치, 평화교섭, 완충지대 설치 등에 반대하는 서한을 유엔·미국·맥아더 장군에게 발송 결정		2 NATO軍 정식 발족
	3 • 유엔군 38도선 전역에서 북진 • 학도의용대 정훈공작대 해산		3 美, ECA를 CAC로 개편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5 • 해병학교 창설 • 거창사건 조사단 피습, 金宗元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조작 습격으로 판명</p> <p>8 경남북·전남북·충남북도에 계엄령 해제</p> <p>9 군인유족 기장령 공포</p> <p>10 페이스 美육군장관 내한 전선 시찰</p> <p>11 •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 해임, 후임에 리지웨이 중장을 임명 • 美제8군사령관에 벤플리트 장군 임명</p> <p>14 미군 교대병력(제1차) 이한</p> <p>16 정부, 대일강화회의 준비로 외교외 구성·보상문제 등 심의</p>	<p>7 중공인민대표 574명 북한 방문</p> <p>13 • 내각, 영예군인학교 설립에 관한 결정 채택 • 내각 결정 제253호, 승리의 기를 수여하는데 대한 결정 발표</p> <p>15 박헌영 外相, 한국전 평화해결을 유엔에 요청</p>	<p>5 • 아시아·아랍 13개국, 對 韓평화해결안 검토 • 美하원 마틴 의원, 국부군을 사용하고 중국본토에 제2전선을 전개하자는 맥아더 장군 서한을 공개</p> <p>12 트루먼 美대통령, 극동정책을 발표</p> <p>16 유고 유엔대표, 유엔총회에 38도선 정전협정을 제의</p>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22 사창리전투, 중공군의 제 1차 춘계공세당시 국군 제6사단이 가평 북방의 사창리와 화악산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방어 (~24일)</p> <p>23 한·일 통상협정 체결</p> <p>24 • 정부, 국무회의에서 국민방위군사건 관련장관(국방·법무·내무) 사직 권고 • 리지웨이 유엔군총사령관 내한, 전선시찰 및 주요 작전회의</p> <p>25 • 정부, 서울시민철수령 • 적성전투, 중공군 1차 춘계공세로 7연방 제29여단과 벨기에 대대가 중공군 제65군을 지연방어</p> <p>26 한국참전 14개국, 敵空軍 공격시 만주 폭격에 합의</p>	<p>18 북한주재 루마니아 대사 바부취팔렐 취임</p> <p>22 중공군·북한군, 춘계 제1차 공세개시</p> <p>23 최고인민위원회, 무역상에 진반수 임명</p> <p>27 여맹위원장 박정애, 스탈린賞 수상</p>	<p>26 트루먼 美대통령, 한국전쟁의 局地化를 희망한다고 기자회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7 국방부장관 경질, 신성모 장관 해임하고 3대로 李起鵬 장관 취임</p> <p>9 李始榮 부통령 사표 제출</p> <p>12 •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 법률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우편법(법률 제294호) 공포</li> <li>• 병역법개정안 국회 통과</li> </ul> </p> <p>15 국회, 부통령에 金性洙 선출</p> <p>16 • 병커고지 전투,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로 미제2사단이 흥천 북방의 병커고지(778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12군의 침공을 저지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리전투,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로 인제 남방 가로리에서 가리봉간을 방어중이던 제3군단(제3·9사단)이 중공군 2개군과 북한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방어에 실패 (~22일)</li> </ul> </p>	<p>8 북한, 미국이 한국전에 세균병기 사용했다고 유엔안보리에 항의서 발송</p> <p>9 소련 방역(단장 와시코프) 평양 도착</p> <p>15 • 북한주재 소련대사 브·브·노·라주바에프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공군 5월공세 개시</li> </ul> </p>	<p>3 맥아더 전 유엔군총사령관, 美상원 군사·외교위원회에서 증언</p> <p>16 美국가안보회의, 한국전쟁을 협상으로 체결시킨다는 방침 확정</p>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8 용문산전투, 중공군의 제 2차 춘계공세시, 양평 북방의 용문산을 방어중이던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의 침공을 격퇴(~21일)</p> <p>23 국방부, 합동수사본부 해체</p> <p>25 대관령전투, 현리전투에서 실패한 3군단이 후퇴시, 수도사단이 대관령 일대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25일)</p> <p>26 육군 제3군단 해체</p> <p>30 유엔 전물장병 합동위령제 개최</p>	<p>18 박헌영 外相, 유엔총회 의장과 안보리에 보고된 (북한군 총사령부 제2호 명령, 제4보병사단장의 전투 명령) 문건은 미국이 조작한 허위문서라고 주장</p>	<p>18 유엔총회, 대중공 및 북한에 대한 전쟁물자 금수조치 결의</p>
6	<p>1 국군, 양구 돌입</p> <p>3 래드포드 美대평양함대사령관, 한국전선 시찰</p> <p>4 • 도솔산전투, 국군해병 제 1연대가 양구 북방의 도솔산에서 북한군 1개 사단을 공격 격퇴(~19일) • 육군 제1군단장에 백선엽 소장 임명</p>	<p>1 중공 인민抗美원조 총회의 호소에 의하여 북한에 대한 軍器基金 헌납운동 전국적으로 전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8 •李大통령, 38도선에서의 휴전반대 성명 •마셜 美국무장관 내한	22 헝가리 의료단 북한 도착    26 박헌영 外相, 대일강화조약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천명하는 각서를 비신스키 소련외상에 전달	22 유엔사무총장, 각국 방문 한국에 병력증파 요청
	23 •육군총참모장 경질, 정일권 소장 후임에 李鍾贊 소장 임명 •국방부차관에 金一煥 소장 임명		23 말리크 蘇유엔대표, 한국 전 휴전 제의
	25李大통령, 말리크 휴전제안 거부 성명		25 유엔총회, 9개국에 한국 파병 요청
	27李大통령,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포함한 휴전안 반대 성명		29 트루먼 美대통령,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한국 휴전교섭을 지시
	30 리지웨이 사령관, 공산군 사령관에게 휴전회담 제의 (원산항 덴마크함상)		
7	1 정전 반대 국토통일 국민 쟁기대회 개최	1 북한과 중공, 유엔측 휴전제의 수락(장소로 개성 제의)	
	3 •李大통령, 트루먼 美대통령에게 휴전협상 반대전문 발송 •리지웨이 사령관, 공산측 제의 수락		3 美정부,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휴전회담은 군사문제에 국한하도록 훈령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8 • 휴전예비교섭 개성회담 개최, 10일 개성 본회담 개최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장성에 대한 “閣下” 호칭 폐지</li> </ul> <p>10 • 휴전회담 본회의 개시 (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군무위원회 설치</li> </ul> <p>12 휴전회담 중단(공산측의 유엔기자단 개성출입 거부로)</p> <p>13 리지웨이 사령관, 공산측에 회담재개의 조건을 제시 (개성지대의 중립화, 유엔 대표단 행동의 자유, 신문 기자를 포함한 대표단 구성의 자유)</p> <p>14 정부, 한·미간 환율 6,000 : 1로 변경</p> <p>15 휴전회담 재개, 개성중립화, 통로무제한 사용, 기자 20명 동행 등 합의</p>	<p>7 최고인민위 상임위, 자유독립훈장 제1급·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 정령 공포</p> <p>10 휴전회담 개시, 공산군측 대표로 남일·동화·해방·이상조·장평산으로 발표</p> <p>11 평양방송, 외국군대의 한국 철수를 강조</p> <p>14 공산군측, 리지웨이 사령관 제안을 수락</p>	<p>9 영·불, 대독전쟁상태 종결을 선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9 국민방위군 사건의 김윤근 등 5명에게 사형판결</p> <p>26 휴전회담 의사일정에 합의</p>	<p>26 휴전회담 의사일정에 합의</p> <p>27 산업성을 중공업성, 화학건재공업성, 경공업성으로 분리</p>	<p>19 애치슨 美국무장관, 한국 휴전성립후에도 미군 불철수를 발표</p>
8	<p>1 •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대표, 38도선 境界提案을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교육총감부 설치</li> <li>• 공군 제1전투비행단 창설</li> </ul> <p>5 휴전회담 중단(4일 중공군의 중립지대 침범으로)</p> <p>9 호주外相 방한</p> <p>10 훈장제도 개정</p> <p>13 국민방위군 부정사건으로 사령관 金潤根, 부사령관 윤익헌 등 5명 총살형 집행</p>	<p>9 최고인민위 상임위, 인민군 제10보병연대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정령 발표</p>	<p>6 유엔군사령부, 동경에서 휴전회담 유엔군측 대표들 회의. 유엔군은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현전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없다고 발표</p>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6 휴전회담, 경계선 合同小                      18 • 피의 능선 전투, 美제2                      사단과 국군 제5사단이 양                      구북방 피의 능선(983고지                      -940고지-773고지)의 공                      격작전을 전개, 적 1개 사                      단 규모 및 아군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9                      월 7일)                      • 펀치볼 전투, 국군 해병                      제1연대와 美제1해병사단이                      양구 북방 해안분지(펀치                      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 1                      사단을 격퇴(~29일)</p> <p>20 육군부관교육대를 육군                      부관학교로 개칭</p> <p>21 해군본부, 제1차 명예제                      대식 거행</p> <p>25 • 국방부 제4국(병무국)                      설치                      • 정전예비회담 재개</p>	<p>16 북경방송, 38도선을 군사                      경계선으로 희망한다고 방송</p> <p>22 휴전회담 공산군측 대표,                      유엔 전투기가 개성 중립지                      대를 폭격하였다는 이유로                      회담 거부</p> <p>27 김일성·팽덕희, 중립지구                      개성지방 폭격진상을 각 신                      문·통신사에 보도해 줄 것                      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요구</p>	<p>30 美·比 상호방위조약 조                      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31 북한, 소련유학생 700여 명중 86명 귀환 발표	
9	1 유엔군사령부, 한국군의 증강대책 수립  4 가칠봉전투, 전선이 교착된 후, 국군과 유엔군이 주저항선 전방의 주요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전개할 당시 국군 5사단이 양구 북방 가칠봉을 공격하여 적을 격퇴(~14일)  6 리지웨이 장군, 정전회담 연락장교회담 판문점 개최 제의 • 국군, 女軍團 창설  20李대통령, 휴전수락 4대 원칙 제시 (중공군 철퇴, 북한군 무장해제, 유엔감시하에 북한선거, 휴전회담의 시간적 제한)	2 남일, 미군측의 개성 중립지대 폭격발생 조사 보고  10 교통성 陸運관리국과 海運관리국을 폐지하고 내각 직속의 통운국을 신설	1 미·호주·뉴질랜드 3개국 (ANZUS)간 안전보장조약 조인  4 유엔군사령부, 한국전쟁에 소련군이 참전해 있다고 발표  8 연합국, 對일본강화조약 조인 • 美·日 안전보장조약 조인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3 정부, 전관수역을 침범한 日어선 162척(해방 이후) 이라 발표</p> <p>28 육·해·공군 합동위령제 개최</p>	<p>27 중공 건국 2주년 기념식 전 참가하는 북한대표단 평양 출발</p>	<p>26 美·英·佛 3개국 對이탈리아 강화조약 수정을 선언</p>
10	<p>1 브래들리 美합참의장, 리지웨이 사령관, 전선시찰 및李大통령과 요담</p> <p>5 제51 및 제52전차중대 창설(동태)</p> <p>8 유엔군측, 휴전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결정</p> <p>9 유엔총회 수석대표로 張勉 결정</p> <p>10 국방부, 군사원호사무를 홀병감실에서 병사구사령부로 이관 조치</p>	<p>7 북한, 휴전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하자고 제의</p> <p>9 공산군측, 휴전회담을 10일부터 재개하자고 제의</p> <p>15 최고인민위원회, 군무자가 반역 또는 탈주범죄를 행할 경우에 그 가족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에 관한 규정 공포</p>	<p>1 美, 상호안전보장법(MSA) 제정</p> <p>10 트루먼 美대통령, 상호안전보장법(MSA)에 서명</p> <p>17 英·이집트 양군, 수에즈에서 충돌</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8 육군교육총감부 이동(부산에서 광주로)</p> <p>20 한·일회담 예비회담 개막(맥아더 원수 주선)</p> <p>21 가칠봉 전방의 1052 및 1211고지를 국군 제3사단이 공격(~31일)</p> <p>25 • 판문점에서 휴전회담 재개(유엔군측, 현전선에 따른 비무장지대 설치 제외)                      • 국방부 중군기자단 창단                      • 해병대사령부, 제대식 거행</p> <p>26 제2국민병 보충소집 실시</p> <p>27 육군보병학교, 부산 동래에서 전남 광주로 이동</p> <p>28 콜린스 美육군참모총장 내한, 휴전성립후에도 유엔군은 한국에 주둔할 것이라고 언명</p>	<p>23 • 북한 상공에 미그전투기 출현                      • 최고인민위 상임위,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에게 국기훈장 제1급 수여 정령 채택</p>	<p>18 인도네시아, 對일본 배상 80억달러 요구</p> <p>24 美, 對獨 전쟁상대 종결 선언</p> <p>25 영국선거, 수상에 처칠 당선</p>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30 • 육군대학 창설(대구) • 육군사관학교 재개교 (진해)	30 對日 단독강화조약에 반 대성명 발표	
11	1 육군 제2훈련소 설치(논 산)  2 전북지구에 비상계엄령 선포  10 반덴버그 美공군참모총 장 내한  15 비행기 헌납기금 2년간 4억2천만원 모금  20 유엔군사령부, 공산군의 포로학살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시체 365구를 확인)  21 서울시장, 밴플리트 장군 에게 명예시장증 전달	1 노동당 제4차 전원회의 개최  2 훈장·메달의 非法的 패용 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과 한 데 대하여 정령 공포  7 정전회담 인민군측 대표,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 으로 하여 쌍방이 각각 2km 씩 후퇴, 비무장지대를 설 치할 것을 제의  19 북한, 포로문제에 대하여 유엔에 서한 발송	1 미군, 처음으로 원자연습 실시(라스베가스)  6 제6차 유엔총회 개막(파 리)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3 • 휴전회담 쌍방대표, 군사분계선의 확정 및 비무장지대 설치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클레이 美 부통령, 제 8군사령부에서 리지웨이, 밴플리트 장군과 회담(24일李大통령과도 요담)</li> </ul>		29 태국 무혈혁명 발생
12	<p>1 • 정부, 부산·대구를 제외한 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1952년 2월 1일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군사훈련실시령 공포</li> </ul> <p>7 휴전회담, 비무장지대 획정을 완료, 적대행위의 정지, 비무장지대로부터의 철수, 동지역의 출입금지 등 3개 항목에 합의</p> <p>10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포로 999명이 구국충성을 혈서로 서약</p> <p>11 육군대학 개교식 거행</p>	<p>5 일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에서 반공단체에 가담한 자들의 자수를 중용하는 포고문 발표</p> <p>11 在北 한·미·영 전쟁포로로 평화옹호위원회 설치(평화투사) 신문 발간</p> <p>13 司法相에 이용 임명(이승엽 해임)</p>	1 중공군, 티베트의 라사에 진주

195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6 딜레스 美국무부 고문 내한, 전선시찰후 李대통령 과 요담</p> <p>18 휴전회담, 양측의 포로명 단을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군측 포로수를 발표</li> <li>• 유엔군측 억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군 111,754명</li> <li>중공군 20,720명</li> </ul> </li> <li>• 공산군측 억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군 7,142명</li> <li>미 군 3,198명</li> <li>기타 유엔군 1,216명</li> </ul> </li> </ul> <p>25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1090고지), 크리스마스 휴일을 이용한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국군 제7사단이 격퇴. 다시 1952년 2월에 백석산 북쪽(크리스마스 고지)을 공격해 오자 이를 격퇴(~52년 2월 13일)</p>	<p>24 북한, 국제적십자 대표의 북한 포로수용소의 방문을 거부</p> <p>25 루마니아주재 대사 고봉기 임명</p>	<p>27 중공, 무기헌납운동 종료</p> <p>29 미국, ECA폐지, MSA 신설</p> <p>30 美, 마셜계획 종료. 약 120억달러 지출</p>

#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 휴전회담, 포로 전원 교환에 합의</p> <p>4 한·미간의 1951년 美 상호 안전보장법에 의해 요구되는 보장에 관한 협정 조인</p> <p>5 광주 보병학교 지역을 상무대로 명명</p> <p>13 휴전회담, 유엔군측은 자유의사에 의한 포로 송환 주장, 공산군측은 강제송환 주장</p> <p>16 국회, 포로석방건의안 가결</p> <p>18 정부, 평화선 선포(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p> <p>20 · 4년제 육군사관학교 진행에서 개교(11기 입교식 거행) · 국방부, 헌병사령관에 沈彦樺 준장 임명</p>	<p>4 몽고대표단 북한 방문</p> <p>5 유엔가입신청서 제출</p> <p>12 소련주재 대사 임해 임명</p> <p>18 북한연합부대, 지난 10일간 전투에서 유엔군 5,608명을 살상했다고 발표</p>	<p>7 유엔 蘇대표, 한국휴전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해결하자고 제의</p> <p>9 유엔총회, 미·영·불 3개국이 제안한 13개국 군축위원회 설치안을 가결</p>

#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4 유엔군측은 휴전회담에서 상병포로에 대한 즉시 교환을 제의했으나, 공산군측 거부		24 일본, 평화선 선언에 반대 성명(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
	28 계엄법 시행령 공포	28 유엔기가 伊川 동남지구 에 세균·곤충을 살포했다고 주장	
	31 내무부, 각도 피난민 총 수 7백만명으로 집계		
2	1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결성대회	1 북한, 휴전감시반의 출입구를 3개소로 한정하되 신의주·함흥·청진으로 하자고 제의(2일 유엔측 반대)	
	3 경상남북도 계엄 선포 (1952년 3월 5일 해제)	7 인민군 창건 4주년기념 평양시 경축대회	
	10 국방부, 3군정훈감회의 개최		10 중공군, 티베트軍區 성립
	15 ·한·일회담 1차 본회담 시작 ·일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출신자 유골 2,033주 송환통보	15 유엔군 비행기, 평강·금화지역에서 세균 살포했다고 주장	15 서구 11개국, 구주 원자핵연구회의 설립협정 조인
		16 휴전회담에서 공산군측, 중립국감시단으로 소련, 체코, 폴란드를 지명(유엔군측, 소련 참가를 거부)	17 영국, 연내에 첫 원폭실험을 호주에서 실시한다고 발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18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사건 발생	20 군사위원회, 적의 세균무기대책에 관한 결정 제65호 채택	24 중공방송, 미군이 한국전에 세균을 사용했다고 비난  26 영국, 원폭 보유 공포  28 미·일 행정협정 조인
3	1 • 유엔군측, 상병포로 교환을 요구(공산군측 거부) • 정부 한·중 항공로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4 국방부, 대구에 계엄사령부와 각지에 계엄사무소 설치  6 美태평양함대사령관, 유엔군총사령관, 극동공군사령관 및 휴전회담 유엔군측 수석대표, 주일 미대사관에 서 회담  10 국군 영현안치소 설치 (부산 동래 범어사에)	3 평양지구 문학예술인들, 미국의 세균전 만행 규탄항의 대회 개최  10 조국전선 중앙위 제12차 회의, 미군사용 세균무기대책 토의 및 호소문 채택	7 중공외상, 미국이 세균전을 만주까지 확대함으로써 한국 휴전을 지연시킨다고 비난  9 소련의 각 신문, 미국의 세균전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15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설치		15 美유엔대표 코엔, 蘇의 세균비난을 반박하고 국제적십자사의 조사를 요구
	19 국방부, 병기행정본부를 제5국으로, 제3국인 관리국을 경리국으로 개편	19 중공, 세균조사단 43명 북한 방문	
	20 휴전회담, 중립국감시단의 출입구 결정 한국: 부산, 대구, 강릉, 군산, 인천(서울비행장 포함) 북한: 신의주, 만포진, 홍남(평양비행장 포함)		
	29 국방부장관 경질, 이기봉 장관 후임에 4대에 申泰英 임명	29 북한 외상, “미군의 세균 무기 사용에 대하여”라는 성명 발표	
4	1 국방부 중앙공적심사위원회 설치		4 미국의 세균전을 조사하기 위한 중공조사단 평양 도착
	5 제2군단(소장 白善燁) 재창설		
	10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 (71명 사상자 발생)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2 • 해군, 충무공동상제막식 거행(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 군의학교령 공포</li> <li>• 해군신병훈련소령 공포</li> <li>• 해군병원령 공포</li> </ul> <p>22 해병학교령 공포</p> <p>24 • 군법무관임용법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총리서리에 李充榮 임명</li> <li>• 徐珉濠 의원, 순천에서 서창선 대위를 권총으로 치사시킴</li> </ul> <p>28 휴전회담, 중립국 감시위원단 구성(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에 합의</p> <p>30 국방부, 훈기장수여절차 규정제정</p>	<p>12 • 만경대와 보천보에 김일성기념관 건립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산진에 김일성 고급중학 설치 결정</li> </ul> <p>22 군사위원회, 세균전 만행과의 투쟁대책을 일층강화함에 관한 명령 제263호 발표</p>	<p>14 스탈린 소련수상, 김일성에 밀가루 5만톤 원조 제의</p> <p>25 유엔군총사령부, 맥아더선 폐지에 관한 각서 발표</p> <p>28 • 美·대일평화안보조약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일본점령 정식종결</li> <li>• NATO군 총사령관에 리지웨이 장군 임명 및 유엔군사령관에 클라크 장군 임명</li> </ul>
5	<p>1 경부선, 복선운행 실시</p> <p>3 • 해군공창령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 미국에서 인수한 함정 4척 명명식 거행</li> <li>• 해병훈련소령 공포</li> </ul>	<p>1 5·1절 관련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령 제236호 발표</p>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6 정부, 국무총리에 張澤相 임명</p> <p>7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돛드 소장 납치 (3일간 감금)</p> <p>15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포로폭동은 포로교환 문제를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것이라고 성명</p> <p>19 휴전회담 유엔군측 수석 대표에 해리슨 소장 선임</p> <p>25 • 부산, 경남, 전남북에 계엄령 선포 • 정부, 내무장관에 이범석 전국무총리를 임명</p> <p>26 부산정치과동 발생, 국회 의원 10명 헌병에 연행</p> <p>29 정부, 부통령 김성수 사임을 발표</p>	<p>5 중앙신문, 미군 포로 존 킨, 케네트 이노크가 세균전에 참가했었다는 자백서 보</p> <p>8 내각 검열위원회 신설, 노동상에 김원봉 임명</p> <p>23 화학건재상에 백홍권 임명</p>	<p>9 미·영·불, 트리에스테 협정에 조인</p> <p>24 리지웨이 장군, 미상원 군사위에서 만주폭격은 소련공군을 한국전에 불러들이게 되며 한국의 상실은 일본 및 미국에 위협이며 정치적 해결없이 군사적으로만 한국전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증언</p> <p>26 미·영·불, 獨과 평화조약 조인</p> <p>27 구주방위공동체조약 조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7 서민호 의원 군재 개정</p> <p>10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 격화(포로 160명, 미군 14명 사상)</p> <p>13 영국방상 일행 및 클라크 사령관 내한, 전선시찰 및 휴전회담 해리슨 수석대표와 회담</p> <p>23 美제5공군 소속항공기, 수송발전소 폭격</p> <p>25 부산 총무로 6·25 2주년 식장에서李大통령 저격사건 발생, 현장에서 범인 柳時泰 체포</p>	<p>2 북한·폴란드,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 체결</p> <p>4 프랑스 평화옹호위원장겸 세계평화옹호위원장 북한도착</p> <p>21 세계평화이사회 집행국 바루조와 세군진 참가 미공군 포로간 문답기록 북경에서 발표</p> <p>24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보고대회</p>	<p>9 日·印 평화조약 조인</p> <p>10 美국무부, 클라크 사령관에게 만주까지 적기추격권 있다고 언명</p> <p>14 미국, 원자력 잠수함 완성 발표</p> <p>16 美·蘇 대어무기 결재 교섭 재개</p>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 서민호 의원, 군재에서 사형 언도(9일 대통령 재심명령)</p> <p>4 국회, 발췌개헌안 통과 처리</p> <p>7 수도권지 지형능선전투, 휴전회담으로 쌍방간에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방전이 전개되자, 수도사단이 중공 제12군의 공격을 받고 3개월간 방어(~10월 14일)</p> <p>13 콜린스 美육군참모총장 및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내한, 서부전선 시찰</p> <p>20 국방부, 통신위원회 설치</p> <p>23 육군참모장 경질, 이종찬 중장 후임으로 백선엽 중장 임명</p> <p>26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 해제</p>	<p>9 세계평화이사회, 조선전쟁 종결 문제에 관한 결의문 채택</p> <p>28 국제과학조사단, 미국이 강행한 세균전 실제상황 조사차 북한 도착</p> <p>29 당·정부·인민군대표단, 중공인민해방군 창건 25주년 맞아 중공인민지원군 사령부 방문</p>	<p>4 소련,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안한 세균전 조사안 거부</p> <p>13 유엔 그로스 美대표, 10만명의 공산포로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반대한다고 안보리에 보고</p> <p>26 美·日 시설구역 협정 조인</p> <p>31 미국방동원본부, 한국전 이래 미국은 100만명의 장정을 소집했다고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 서민호 의원, 8년 징역언도</p> <p>2 해군 제1함대 증편 및 함대사령부 설치(진해)</p> <p>5 정부, 정·부통령 선거(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함태영 당선)</p> <p>7 미국 국회의원 4명, 한국 부흥계획 실태 조사차 내한</p> <p>15 정·부통령 취임식</p> <p>25 국방부, 임시연합참모회의 설치</p>	<p>25 조선인민군 외과학회의 개최</p>	<p>8 • 국제적십자회의, 포로대우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참전국 대표의 파견을 요청한 한국대표안 채택 • 미국방장관, 미국은 원자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언명</p> <p>18 NATO, 터키에 동남부군사령부 설치를 발표</p> <p>27 유엔포로위 西村 일본대표, 미귀환자수를 34만6천명이라 발표</p>
9	<p>1 육군, 장교 MOS 1차 부여제도 시행</p>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6 고양대전투, 연천 북방의 임진강 북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이 고양대 일대(니키고지, 테시고지, 노리고지, 배티고지)에서 중공군 제47군과 방어전투전개(~12월 13일)</p> <p>8 美하원 군사시찰단 내한, 귀국후 대한군사원조의 강화 등 5개 항목을 건의</p> <p>12 변영태 외무부장관, 송환 거부 포로의 제3국 이송을 발표</p> <p>18 美해군, 한국전선에서 유도무인기의 사용을 발표</p> <p>20 유엔군사령부, 민간인 억류자 11,000명 석방결정을 발표</p> <p>22 국방부, 전국병무회의 개최. 학생징집보류 요강 결정</p>	<p>10 평양 제1애육원 개원</p> <p>14 유엔공군기, 평양을 폭격</p>	<p>8 미국은 국부군의 한국과 병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표명(AP통신)</p> <p>15 • 美국방부, 한국휴전 문제는 유엔에서가 아니라 판문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성명 발표 • 中·蘇 수뇌회담 개최</p> <p>18 소련, 유엔안보리에서 일본의 유엔가입안을 거부</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3 제주도 포로수용소에서 중공군 포로들 시위(포로 49명 부상)</p> <p>27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한국 해상방위선(클라크라인) 설정을 발표</p>	<p>24 휴전회담 북한측 대표, 북한군 포로 11,000명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유엔측 대표에 항의문 제출</p>	
10	<p>1 • 국방부 제1·제2조병창을 직속기관으로 개편 • 해병 제1전투단 창설</p> <p>4 포로심사령 공포</p> <p>6 • 유엔군 포로수용소, 민간인억류자 11,000명 석방 개시(6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백마고지전투: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395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격퇴(~14일)</p> <p>8 휴전회담, 포로자유송환 문제로 무기휴회</p>	<p>8 북경방송, 10월 1일 미군기 120대가 32회에 걸쳐 만주 영공을 침공했다고 비난</p>	<p>1 유엔군사령부, 북한내에 소련군 7,000~12,000명이 주둔하여 대공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명</p> <p>3 영국,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p>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9 정부, 국무총리서리에 백두진 임명</p> <p>14 • 저격능선전투, 국군 제2사단이 저격능선에 배치되어 있는 중공군 제15군을 공격, 이 능선을 탈취한 후 계속된 중공군의 역습을 격퇴(~11월 2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상이군인 원호대책 한·미 합동위 구성 결정</li> </ul> <p>15 •李大통령 저격범에 사형 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li> </ul> <p>18 경북 왜관에서 상이군인이 관공서 습격</p> <p>20 정부, 상이군인상담소 설치 결정</p> <p>21 정부, 북한군 포로 1만1천명 석방 결정</p>	<p>10 조선무역촉진위원회 결성</p> <p>16 김일성, 휴전회담 무기휴회와 관련, 유엔군사령관에게 서한 전달</p> <p>17 북한 외무상, 유엔 제7차 총회에 한국문제 토의 위해 북한대표 참가 요구</p> <p>21 외무상, 유엔사무총장에서 발송한 조선정전협정초안 등 3개 문건 발표</p>	<p>14 제7차 유엔총회 개막</p> <p>15 • 미합동참모본부, 한국에서의 원자무기 사용을 미대통령에게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208밀리 원자포를 최초로 공개</li> </ul> <p>21 유엔총회, 북한대표 참가 시키자는 소련안 거부</p> <p>22 이란, 對英 단교 선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3 밴플리트 8군사령관, 한국군은 수적 열세로 단독으로는 공산군과 대전 불가능하다고 동경에서 언명</p> <p>27 日어선 해양침범규탄 국민대회 개최</p> <p>28 한국공군 단독으로 我地上軍 지원작전 개시</p> <p>31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사건(178명 부상)</p>	<p>24 중공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2주년기념 평양시 경축대회 개최</p> <p>29 최고인민위 상임위, 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에 대한 증명서 사본에 대한 정령 채택</p>	<p>30 美국방부, 美제8군사령관이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을 제안한바, 유엔군사령관이 거부했다고 비밀자료를 공개</p>
11	<p>1 군인 휴가 규정 공포</p> <p>2 유엔군사령부, 美제77기동함대 소속 航母 오리스커니호의 한국전 참전 발표</p> <p>3 육군, 최초로 제71·72화학근무중대 창설</p> <p>6李大통령, 아이젠하워 장군을 초청</p>	<p>6 평양시, 사회주의 10월혁명 35주년 경축행사 거행</p>	<p>1 미국, 수소폭탄장치 실험 (16일 성공 발표)</p> <p>4 미국대통령에 아이젠하워 당선</p>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8 엘리슨 美국무차관보 내한, 李대통령과 요담	8 외무상, 유엔총회의장에게 세균무기사용에 적절한 대책 요구	
	9 로젠버그 美국방차관보 내한, 李대통령과 요담		9 美국무부, 한국군 확장안 승인
	11 뉴질랜드 國防相 내한, 전선 시찰		10 비신스키 소련외상, 유엔총회에서 한국포로의 자유송환안을 비난
		11 내각 부수상에 최창익, 정일용 임명	11 영국, 유엔총회에서 한국포로문제에 관한 해결책 제안
	19 美공군참모총장 내한, 유엔군 공군은 만주공격을 명령한다면 즉각 단행할 것이라고 언명	19 미군 전쟁 행위 규탄 대회 개최	16 미국,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
20 李대통령, 美제7함대 방문		17 인도대표, 유엔총회 정치위에서 한국전쟁포로 문제에 관한 타협안 제출	
		26 유엔 인도대표, 자국안의 재수정 제안	
		27 유엔 政委에서 미국 및 11개국 대표, 인도안 지지 발언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8 外務相, 11월 23일자 소련안 지지 성명 발표</p> <p>29 내각, 농림성을 농업성으로 개칭</p>	<p>29 네루 인도수상, 중공수상에게 인도안 수락을 요청</p>
12	<p>1 ·佛 국방차관 일행 내한, 전선 시찰 · 호남지방 공비소탕 계엄령 공포</p> <p>2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당선자 내한(~5일)</p> <p>12 영국 극동사령관 포드 증장 내한, 李대통령과 요담</p> <p>13 밴플리트 美제8군사령관, 한국군 3개 사단 증강 발표</p>	<p>1 과학원 개원식 거행</p> <p>5 김일성종합대학 제3회 졸업식</p> <p>8 군사위원회, 국가비상방역위원회 재조직에 관한 명령 제326호 발표</p>	<p>3 유엔총회, 포로문제에 관한 인도안 가결(54:4)</p> <p>4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당선자, 웨이크도에서 한국문제 토의</p> <p>8 중공, 美공군 B-29의 安東 폭격을 발표</p>

195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4 • 봉암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82명 사망) •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 상병포로 즉시 교환을 제의</p> <p>17 • 국방부장관, 한국군 대 폭증강 방침을 발표 • 미상원 외교위원 15명 내한</p> <p>26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공포</p>	<p>15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 개최</p> <p>16 휴전회담 공산군측 대표, 봉암도 포로사건에 대하여 항의서 유엔군측에 전달</p> <p>24 김일성, 인민군 고급군관 회의에서 인민군대강화에 대해 강조</p> <p>31 최고인민위 상임위, 인민군 상급지휘관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한 정령 채택</p>	<p>14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당선자, 한국문제해결의 확신 및 한국군 증강, 보급개선 등 성명 발표</p>

#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5 李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초청으로 일본 방문</p> <p>9 美정보국 파트리치 소장 내한</p> <p>10 국방부, 국군장교 계급심사위원회 설치</p> <p>11 유엔군사령부, 한국전 이래 '52년 11월까지 원조액이 5억9천만달러라고 발표</p> <p>12 장교 외국군사령부 파견령 공포</p> <p>15 李대통령, 클라크 및 밴플리트 사령관과 한국군 증강문제 협의</p> <p>20 보병사단에 포병부대 보강(105밀리 3개 대대, 155밀리 1개 대대)</p>	<p>6 평양방송, 李대통령 訪日을 전쟁확대와 일본군의 한국출병을 계획한 것이라 비난</p> <p>19 군사위원회, 개별·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군대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한 결정 제19호 채택</p>	<p>7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당선자 및 英 처칠 수상 회담, 한국전선 확대문제 논의</p> <p>20 아이젠하워 34대 美대통령 취임</p>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3 美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 해임, 후임에 테일러 중장 임명</p> <p>26 美육군참모총장 내한, 한국군 수뇌와 회담</p> <p>30 부산 국제시장에 大火災 발생</p> <p>31 白善燁 육군참모총장 대장으로 승진</p>	<p>27 춘하기 방역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채택</p>	
2	<p>4 재향군인 일제등록 및 簡閱召集 실시</p> <p>6 미군당국, 한국군 2개 사단 증설을 발표</p> <p>9 보병 제20사단 및 제21사단 창설</p> <p>11李大통령, 미국에 중공해안 봉쇄를 요구</p>	<p>2 미군, 평남 신창군·동흥군 일대에 세군 공중투하 주장</p> <p>7 • 최고인민회의 政令으로 김일성에게 원수 칭호 수여 • 민족보위상 최용건에게 次帥 수여</p>	<p>2 美대통령, 일반교서 발표. 알타 비밀조항 폐기를 시사 및 대만의 중립화 해제표명</p> <p>4 주은래 중공외상, 한국전 즉시 휴전용의를 표명</p> <p>10 브리지스 美上院議長, 한국에 원자무기 사용을 요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5 • 긴급통화조치, 제1차화폐개혁(100원을 1환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전투비행단 창설</li> <li>• 제1 전투비행단(-)을 제1훈련단으로 개편</li> </ul> <p>20 造兵廠, 대한식 소총 제7호 試作 완료</p> <p>22 •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 공산측에 상병포로 즉시 교환을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O지상군 사령관 슈랑 원수 내한</li> </ul>	<p>22 소련군 창건 35주년 평양시 경축대회 개최</p>	<p>12 소련, 對이스라엘 斷交</p> <p>17 美대통령, 한국전은 유엔의 책임이라고 언명(기자회견)</p> <p>23 일본, 이승만 라인 부인 성명</p>
3	<p>2 • 국방부 조병창 서울 분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공군성 장관 탈보트 내한</li> </ul> <p>3 국방부, 본부 헌병대 설치</p> <p>8 前 佛首相 레오노오 내한, 전선 시찰 및李大통령과 요담</p>	<p>2 미군기가 원산에 전염병 매개체 곤충투하 주장</p> <p>7 당·정부 대표단(단장 박정애), 스탈린 장례식에 참석차 출발</p>	<p>2 브래들리 美합참의장, 한국전 해결책으로 만주폭격과 원자무기 사용을 제시</p> <p>5 스탈린 소련수상 사망</p> <p>8 밴플리트 장군, 美상원 의 교위에서 한국전에서 원자무기 사용을 주장</p>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0 학생군사훈련실시령 개정 공포</p> <p>12 태국 군사대표단 내한, 전선 시찰</p> <p>15 국방부, 조병창을 육군에 이관(국일명 제63호)</p> <p>17 美민주당 대통령 후보 스티븐슨 내한, 전선 시찰 및李大통령과 요담</p> <p>20 • 국방부, 헌병총사령부 설치(사령관 元容德 소장) • 해군수로국령 공포 • 손원일 해군참모총장, 해양주권선 고수할 것이라고 언급</p>	<p>10 金日成, “스탈린 사망에 제하여” 연설</p> <p>18 북한, 미군이 강원도 평강군 지대에 독가스탄 살포했다고 주장</p> <p>20 북한, 억류 영국시민 석방과 영국에 귀환시키기 위한 영국정부 요청을 소련으로부터 접수</p> <p>26 북한, 억류 프랑스 시민 석방과 프랑스에 귀환시키기 위한 프랑스 정부 요청을 소련으로부터 접수</p>	<p>11 유엔총회, 한국원조 및 재건에 관한 7개국 공동결의안 가결</p> <p>15 소련수상에 말렌코프 취임</p> <p>16 英정부, 한국백서 발표. 현재로선 휴전가능성 전무. 공산군의 현병력은 100만명 이상 그중 75만명이 중공군</p> <p>19 서독의회, 평화조약 FDC 조약비준안 가결</p> <p>22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인도지나 전선 시찰</p> <p>23 콜린스 美육군참모총장, 유엔군의 탄약·군수품은 충분하다고 미상원에서 증원</p> <p>26 소련·중공 통상원조협정 조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28 美5 공군당국, 재한 미폭격기에 원자탄 적재 가능한 F-86 개량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발표	28 • 金日成·팽덕희, 클라크 사령관에게 상병포로 문제에 대한 회한 발송 • 공산군측, 휴전회담에서 상병포로 교환에 동의(협정 조인 4월 11일)	30 주은래 중공외상, 송환불원 포로의 중립국 이송을 제의
	30 유엔군사령부, 포로 132, 304명중 상병포로는 2,619 명이라고 발표		
	31 • 스테반스 美육군 장관 내한 • 조병창, 대한식 제5호 소총과 81밀리 박격포 시험 제작	31 金日成, 1953년 3월 30일 중공 외상의 포로문제 제의에 대해 지지성명 발표	
4	1 육군, 최초로 사병 주특기 부여		
	2 국회, 주은래 중공외상의 휴전안 반대결의	2 金日成, 휴전회담과 관련 1953년 3월 31일 성명을 자유중국을 제외한 전유엔 회원국에 전달할 것을 유엔에 요청	
	5李大통령, 육군제2군단 창설기념식에서 휴전반대결의 표명(춘천)	6 북한, 억류 미국시민 석방과 미국에 귀환시키기 위한 미국정부 요청을 소련으로부터 접수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7 휴전회담에서 5개조항에 관해 양측이 의견일치</p> <p>8 지원병령(대통령령 제771호) 공포</p> <p>11 · 휴전회담, 상병포로 교환협정 정식조인 ·李大통령, 휴전반대 단독북진을 성명</p> <p>12 · 테일러 美제8군사령관, 제8군본부에서 군단장급 이상 비밀회의 개최 ·李大통령, 한·만국경까지 진격요구 성명</p> <p>13 · 卜외무부장관, 송환불원 포로의 중립국 이송반대 성명 · 상병포로 인수 본부 설치</p> <p>14 거제도 포로수용소, 북한 출신 상병포로 송환반대 선언</p>	<p>9 평양방송, 억류중인 전주한 영국공사 등 7명을 석방한다고 발표</p> <p>10 南日 정전회담 대표, 판문점에서 정식회담 요청</p> <p>13 미군이 평양과 청진에 무차별 폭격했다고 주장</p>	<p>7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휴전 후에도 한국방위 담당을 언명</p> <p>10 유엔사무총장에 함마술드 취임</p> <p>18 유엔총회, 포로송환에 관한 브라질안 가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19 휴전회담 한국군 대표로 崔德新 육군 소장 임명		
	20 · 유엔군 및 공산군측, 상병포로 교환 개시 · 유엔군측, 100명 인수 · 공산군측, 500명 인수 (총 10회에 걸쳐 유엔군 측 684명 인수, 공산군측 6,670명 인수)		
	21 · 정부, 국무총리에 白斗 鏞 임명 · 보병 제22·제25사단 창 설(강원도 양양) · 유엔군측, 포로문제 공 산측 6개제안 거부		
26 · 휴전회담 본회의 6개월 만에 재개 ·李大통령, 아이젠하워 美대통령에게 통일없는 휴 전반대 메시지 전달	30 평양방송, 북한에 억류중 인 미국시민 7명 석방한다 고 발표		
5	1 제3군단사령부 재창설(군 단장 소장 姜文奉, 강원도 인제)		1 美국무부, 한국전 송환불 원 포로가 4만8천명이라 발표
	4 국방부, 육·해·공군 계급 장 통일결정	7 휴전회담에서 공산군측 8 항목을 제의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8 •李大통령, 미국정부에 휴전 불수락을 통고                      • 卞외무부장관, 완충지대를 국경선의 설치 요청</p> <p>10 • 국군징계 항고심사규정 (대통령령 제793호) 공포</p> <p>12 •李大통령, 클라크 유엔 군사령관과 극비리에 요담                      • 휴전회담 유엔군측 대표, 공산군측의 8개항목 거부 통고</p> <p>19 정부, 서울로 환도</p> <p>25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 신제안을 비밀토의</p> <p>29 卞외무부장관, 포로교환 관리 인도군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p> <p>30李大통령, 아이젠하워 美 대통령에게 휴전에 관한 공한 전달</p>	<p>8 • 북경방송,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의 8항목을 수락하면 한국휴전 성립될 것이라 보도                      • 북한·폴란드간 기술협조 협정 체결</p> <p>21 군사위원회, 순안 및 순천저수지 피해 비상구호대책에 관한 정령 발표</p>	<p>9 딜레스 美국무장관, 공산군측의 8항목에 관해 한국 派兵諸國과 협의후 일부 수정을 표명</p> <p>17 미국, 한국군 6개 사단 증강 결정했다고 부언</p> <p>26 미·영·불, 서독과 평화조약 조인</p> <p>30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딜레스 국무장관, 윌슨 국방장관 및 콜린스 육군참모총장과 한국휴전문제를 협의</p>
6	<p>1 육·해·공군 헌병사령부를 국방부 헌병총사령부로 변경</p>		

월	한 · 국	북 한	국 제
6	<p>2 申국방부장관, 현전선에서의 휴전은 극히 불리하며 중공군의 철퇴없이 휴전을 수락할 수 없다고 언명</p> <p>3 • 전시근로동원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동원업무, 국방부 소관에서 사회부로 이관</li> <li>• 卞榮泰 외무부장관, 한·미 상호방위협정 및 휴전 4개조건 등 美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언명</li> </ul> </p> <p>4 한국파병 16개국, 美국무부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비밀회의 개최</p> <p>5 •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내한, 李대통령 및 휴전회담 대표와 요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산 포로수용소에서 북한 반공포로 2,000명이 유엔군측안을 반대하는 데모 전개</li> </ul> </p> <p>7 • 유엔군 및 공산군측, 비밀회의로 포로교환에 관한 세목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전회담 한국업저버, 유엔군측 대표단으로부터 철수</li> <li>• 李대통령, 휴전에 관한 한국안 거부되면 단독 복진하겠다고 성명발표</li> </ul> </p>	<p>4 프랑스 평화옹호위원장겸 세계평화옹호위원장 북한에 도착</p>	<p>2 • 美상원, 한국전쟁에서 소모된 戰費는 150억달러라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대관식</li> </ul> </p> <p>4 英연방 수상회의, 유엔군은 휴전조건에 관한 공산군측의 주장을 수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p>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7 • 전국에 준비상경계를 선포(유엔군 북한의 비밀휴전 회담에 따른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大통령, 渡美중인 전장병의 즉시소환 및 渡美예정자에게 출국금지를 명령</li> </ul> <p>8 • 휴전회담 유엔군 및 공산군측, 포로송환협정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大통령, 전투계속 결의를 재천명</li> </ul> <p>9 정부, 휴전거부를 결의</p> <p>10 M-1고지 전투, 휴전직전 국군 제20사단이 백석산과 어은산 중간의 전초진지(M-1고지)를 방어중 중공군이 22회 공격, 제20사단이 이진지를 확보(~23일)</p> <p>11 •李大통령, 현상태하에서의 휴전은 우리에게 죽음을 뜻한다고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미국 및 대한 지원제국의 휴전반대 메시지 발송을 결의</li> <li>•국방부, 국방위원회 설치 규정(대통령령 제795호) 공포</li> <li>•카스텔로 필리핀 국방상 내한</li> </ul>	<p>8 국가건설위원회 신설</p> <p>12 북경방송, 중공은 체코·폴란드·스위스 등 5개국에 중립국포로송환위에 가입토록 초청장을 발송하였다고 보도</p>	<p>9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한국문제를 협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3 영국국방상 및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내한</p> <p>15 유엔 공군편대, 공산군 전초진지에 개전 이래 최고 기록인 2,115회 출격</p> <p>16李大통령, 중부전선에서 한·미 고위회담 개최</p> <p>17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미국은 유엔목적에 어긋난 휴전을 수락치 않을 것이라고李大통령에게 서한 발송</p> <p>18 · 정부, 반공 애국포로 27,000명을 석방          · 유엔군사령부, 27,000명의 반공포로가 탈주하였는바 18일 14:30까지 971명이 재수용되었다고 발표          · 보병 제26(충남 논산), 제27사단(전남 광주) 창설          · 전국 제2국민병 신상 신고 실시</p> <p>19 ·李大통령, 휴전조건 수락할 수 없다고 성명 발표          ·李大통령, 아이젠하워 美대통령에게 공한 발송(휴전반대)</p>	<p>15 북경방송, 판문점회담과 관련하여 휴전협정은 불원조인될 것이라고 시사</p> <p>19 김일성·평양회담, 유엔군측의 포로석방과 관련 클라크 사령관에 서한</p>	<p>14 美, 원자력잠수함 완성 발표</p> <p>17 東베를린 시위폭동화로 계엄령 선포</p> <p>18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반공포로 석방은 유엔군사령부의 권한 침해라고 비난</p>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1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반공포로 석방은 전적으로 한국측에 책임이 있다고 언명</p> <p>22李大통령,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회담, 휴전조건으로 3개항의 방안제시(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중공군 철수, 정치회담의 기간 제한 등)</p> <p>24李大통령, 현상태로 휴전이 성립되면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 휘하에서 철수하겠다고 유엔군사령관에게 통고</p> <p>25 로버트슨 美대통령 특사 내한</p> <p>26 日人, 독도에 불법 상륙</p> <p>29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석방포로 재수용 불능을 공산군측에 통고</p> <p>30 국방부장관 경질, 申泰英 장관 후임에 5대에 孫元一 제독 취임</p>	<p>24 북한군사령부, 한국전쟁 3년간의 종합전과 발표. 유엔군 사상 및 포로 989,391명(미군 380,773명, 한국군 580,644명, 기타 29,974명)</p> <p>28 루마니아 의료단, 북한 도착</p>	<p>23 유엔총회의장,李大통령에게 반공포로 석방을 항의</p> <p>24 美국무부, 한국전쟁 3년간의 실상을 발표                      ①유엔군은 공산군의 10분의 1의 희생으로 6회의 대공세를 격퇴                      ②미국의 전쟁비 사용(150억달러)                      ③공산군 전사장자 134만 7천명 이상</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0 해군참모총장에 朴沃圭 소장 임명</p> <p>11 휴전회담 20일만에 재개, 비밀회담 개최</p> <p>12 李대통령과 로버트슨 美 대통령 특사와의 회담결과 공동성명 발표 ①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합의 ②한국은 이미 조인된 포로교환협정에 동의 ③정치·경제 및 방위에 관한 한·미협력에 광범위한 의견일치 등</p> <p>13 금성전투, 휴전직전 정치적 목적과 중부전선에 돌출되어 있는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공군 12개 사단이 국군 5개 사단(수도·5·6·8·11사단)의 방어진역인 중부전선의 금성지역을 공격, 국군은 약 40km 정면에서 4km 철수(~20일)</p>	<p>3 북한방송,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6월 29일자 회담을 비난</p> <p>4 民保相 崔庸健을 부수상에 임명</p> <p>10 미군기가 황해도 수안 전쟁포로수용소를 폭격했다고 발표</p> <p>13 최고인민위 상임위, 朴義琬을 내각 부수상으로 임명함에 관한 정령 채택</p>	<p>1 美상원, 對韓원조 7천만달러 가결 발표</p> <p>10 워싱턴에서 미·영·불 3개국 외상회의 개최(14일 휴전성립후 중공이 재침하던 공동제재키로 합의)</p> <p>14 미·영·불 外相, 李대통령의 통일노력지지 공동성명</p>

1953년

월	한 국	부 한	국 제
7	<p>16 국군, 전전선에서 반격전 전개</p> <p>19 휴전회담 쌍방대표, 휴전 협정 조인에 동의</p> <p>20 下외무부장관, 한국휴전 조인에 불참 성명</p> <p>23 민병대령(대통령령 제 813호) 공포</p> <p>24 • 민병대사령관 申泰英 육군 중장 임명 • 휴전협정안에 한·미간 합의</p>	<p>19 공산군측, 휴전협정 조인에 동의</p>	<p>15 로버트슨 美대통령 특사, 李대통령의 친서를 아이젠하워 美대통령에게 전달</p> <p>22 덜레스 美국무장관, 공식 성명 발표 ①李대통령은 아이젠하워 美대통령에게 휴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였고 ②휴전후 李대통령과 정치 회담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언명</p> <p>23 덜레스 美국무장관, 한국 휴전후 한·미 수뇌회담 개최 제의</p> <p>24 •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對韓긴급경제원조 2억달러 지원계획 발표 • 美정부당국, 한국휴전협정은 한국시간으로 27일 10:00에 체결된다고 언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7 • 제1차 전후방 교대 실시(26,02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조인(오전 10시) 全戰線 오후 10시를 기해 전투중지(휴전선으로 철수). 李대통령, 휴전조인에 즈음한 성명 발표</li> <li>• 한국참전 16개국, 공산군 재침시 공동방위의 원칙을 확인하는 공동성명 발표</li> <li>•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전유엔군 장병에게 휴전 메시지 발표</li> <li>• 군사정전위원회 제1차 본회의 개최</li> </ul> <p>29 군사정전위 제2차 본회의 개최</p> <p>30 • 美제8군사령부, 전전선의 유엔군은 30일 21시까지 비무장지대 철수완료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정전위 제3차 본회의 개최</li> </ul> <p>31 군사정전위 제4차 본회의 개최,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완료를 상호 확인</p>	<p>27 • 공산군(북한, 중공) 사령관, 전 부대에 정전명령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련, 金日成에게 휴전 후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 제공 서한 전달</li> </ul> <p>29 金日成, 소련수상 말렌코프에게 감사의 서신 발송</p> <p>30 내각 결정 제126호, 도시 복구 및 건설계획 실시를 보장하는데 대하여</p>	<p>27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한·미군 병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축소시키지 않겠다고 방송</p> <p>30 • 일본정부, 유엔군사령부에 평화선 철폐를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상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국부흥비 2억 달러 사용 권한 부여</li> </ul>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 • 군사정전위 제5차 본회의 및 중립국감시위 제1차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법제위원회 규정 공포</li> <li>• 한국정전감시위 신임장 교환</li> </ul> <p>3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를 판문점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참모본부 설치</li> <li>• 중립국감시위 군사정전에서 활동개시</li> </ul> <p>4 딜레스 美국무장관, 統韓 및 상호방위조약 협의 위해 내한</p> <p>5 • 한·미 서울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에서 포로교환</li> <li>• 국방부 기구 개편(육군국, 해군국, 공군국, 병무국, 관리국으로)</li> </ul> <p>7 참전 16개국, 공산군측이 휴전협정 파기하면 중공본토를 공격한다고 공동성명 발표</p> <p>8 한·영 상호방위조약 가조인(서울).李大통령과 딜레스 美국무장관 공동성명 발표</p>	<p>3 외무상에 南日 임명</p> <p>5 金日成, 노동당중앙위 제6차 대회에서 “모든 것은 전후 인민경제복구를 위하여” 연설</p> <p>7 평양방송, 남로당계 박헌영, 이승엽, 이강국 등 12명 숙청, 7명 사형</p>	<p>1 美 MAS를 폐지, FOA(대외활동본부) 설치</p> <p>8 • 말렌코프 소련수상, 소련의 수소폭탄 보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련, 북한원조 10억루블 예산 결정</li> </ul>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4 민병대 총사령부, 각 지역별로 조직 착수</p> <p>15 • 정부, 서울 환도 선포 • 해병 제2연대 창설</p> <p>24 卞외무부장관, 유엔안보리에서 인도의 한국정치회담 참가 반대를 연설</p> <p>26 비상계엄 전면 해제</p> <p>27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한국수역 방위선(클라크 라인) 철폐를 발표</p>	<p>12 • 북한, 소련에서 2억5천만달러 원조결정 접수 • 중립국송환위원회 인도대표단 선발대 일행, 평양에서 회담 • 북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항의문 채택</p> <p>15 6·25전쟁 종합전과에 대한 인민군최고사령부와 중공군사령부의 공동보도 발표</p> <p>16 인민군 종합전람회 개관</p> <p>17 전투영웅대회 개막</p> <p>25 南日 外相, 28남·북간 정치회담 문제에 대해 성명 발표</p>	<p>12 미·영·불·소 4개국 대표, 한국문제에 관한 개별회담 개시</p> <p>17 제7차 유엔총회 특별회의 개막(한국 휴전협정을 승인)</p> <p>24 미·영·불·유고 군사회담 개최(워싱턴)</p>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8 국군징계항고심사규정 공포</p> <p>30 한국함대 창설</p>		<p>28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회담 개최를 결의</p>
9	<p>1 • 중립국송환위원회 인도군 대표 내한 • 공문서 한글전용 • 국군의 방송 발족</p> <p>2 정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클라크 라인” 철폐에 항의</p> <p>4 前 美제24사단장 단 소장 포로교환으로 3년 12일만에 귀환</p> <p>6 포로교환 완료, 귀환된 유엔군 포로 12,773명 공산측 송환 75,823명(비율 6 : 1)</p> <p>9 유엔군측, 불법억류포로 3,400명(미군 944명) 전원 송환을 공산군측에 요구</p> <p>10 유엔군측, 송환불원 반공포로를 중립국의 인도관리군에 인도(23일까지 22,604명)</p> <p>11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후임에 존 E. 헐 대장 임명</p>	<p>1 金日成 일행 소련 방문(전후복구 원조 요청)</p> <p>4 최고인민위 상임위, 군관 김봉순 외 14명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 수여</p> <p>10 金日成, 모스크바 역두에서 연설</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4 후방지역 공비특별작전 지휘의 일원화를 위한 국방·내무회의 개최</p> <p>16 국회, 서울로 환도</p> <p>19 한·미 재단 이사장에 벤 플리트 장군 취임</p> <p>21 북한 공군대위 盧今錫, MIG기로 김포공항에 착륙 (상금 10만달러 수령)</p> <p>22 반공 북한포로 1,479명을 중립국 인도군에 이관</p> <p>29 군사정전위 제21차 본회담에서 포로송환위원회 해산 동의</p>	<p>13 북한방송, 한국정치회의에 관한 8월 28일 유엔총회의 결정을 거부</p> <p>16 북한, 정치회의에 인도를 포함시키자고 유엔에 제의</p> <p>19 朝·蘇, 경제원조. 차관 상환연기협정 조인</p> <p>24 공산군측, 송환거부 친공 유엔군 포로 359명(미군 23명, 영국 1명, 한국군 335명)을 인도군에 인도</p>	<p>15 제8차 유엔총회 개막</p> <p>16 중공, 미국의 정치회의의 제안 거부</p> <p>24 일본정부, 한·일회담 재개 제의</p> <p>25 율슨 美제독, 일본정부에 평화선내 어로중지 요구</p> <p>26 이란, 서독간에 복교</p> <p>29 미·일 행정협정 개정 조인</p>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식조인(1954. 11. 17 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군단 창설</li> <li>• 印度관리군, 반공포로 시위에 발포(1명 사망, 6명 부상)</li> <li>• 孫元一 국방부장관, 반공포로 시위 발포에 관한 중대경고 발표</li> </ul> <p>12 평화선 수비를 위한 해안경비대 발족</p> <p>15 유엔군측, 송환거부 포로는 1954년 1월 22일까지 시민자격으로 환원시킨다는 서한을 중립국송환위의 장에게 발송</p> <p>17 육·해·공군 및 해병대사령관 임기제 공포(대통령령 제825호)</p> <p>18 무공훈장령 공포</p>	<p>14 최고인민위 상임위, 이승만 일파 사형집행승인에 관한 결정 채택</p> <p>20 金日成·평양회, 미송환 북한포로에 대한 해명요구 서한을 유엔군총사령관에게 발송</p>	<p>9 아테나워 서독수상 재선</p> <p>14 영국, 우메라서 2차 원폭 실험</p> <p>16 미국·태국·버마·자유중국 4개국, 자유중국 잔존군의 버마 철수계획에 합의</p> <p>23 일본, 한국에 주일대표부 설치 요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6 관문점에서 정치회담 예비회담 개최</p> <p>31 卞외무부장관, 인도의 정치회담 예비회담에의 참가 반대를 성명</p>		<p>28 美육군부, 한국전에서 미군 6,113명에 대해 고문, 학살 중공군의 잔악행위에 관한 보고서 발표</p> <p>29 일·중공 무역협정 조인</p>
11	<p>4 반공포로 전원 송환 거부</p> <p>12 닉슨 美부통령 내한, 李 대통령에게 아이젠하워 美 대통령의 친서 전달</p> <p>18 보병 제28사단 창설</p>	<p>3 북한·불가리아간 경제·기술원조협정 조인</p> <p>10 金日成 중공 방문, 전후 복구 원조요청</p> <p>12 朝·中共간 경제·문화협정 조인</p> <p>14 • 공산군축, 반공포로 설득 중지, • 중공, 한국전쟁기간중의 물자비용의 대북한 상환요구 권리를 포기</p> <p>25 金日成, 북경에서 연설</p>	<p>18 유엔총회 정치위, 14개국 군축안 채택</p> <p>20 베트남군, 佛軍점령지인 디엔비엔푸를 기습 점령</p>

195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6 • 보병 제29사단 창설 • 군인전시수당 급여규정 (대통령령 제842호) 공포</p> <p>28李大통령, 자유중국 방문, 반공통일전선 결성 공동성명</p>	<p>27 金日成, 중공 방문후 귀환</p>	
12	<p>4 정치예비회담, 공산군측이 소련을 중립국 자격으로 참가시킬 것을 고집함으로써 교착상태</p> <p>7 앤더슨 美해군장관 내한</p> <p>12 정치예비회담 무기휴회 (표결방법에 의견 대립, '54년 1월 12일 결렬 선언)</p> <p>15 제1야전군사령부 창설 (사령관 대장 白善燁)</p>	<p>4 북한, 중공정치회담 문제에 관한 회담방법에 대해서 성명 발표</p> <p>7 南日 외상, 유엔총회에서 공산군측의 잔학행위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성명 발표</p> <p>21 공산군측, 반공포로에 대한 설득업무 재개</p>	<p>3 유엔총회, 공산군측의 포로학살에 관한 경고결의안 가결</p> <p>4 • 미·영·불 3巨頭 회담(아이젠하워, 처칠, 라니엘) 개최(버뮤다) • 蘇·이스라엘 국교 재개</p> <p>8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유엔에 국제원자력기구 창설을 제안</p> <p>14 NATO 이사회, 파리에서 개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4 • 美합동참모본부 의장 래드포드 제독 내한</p> <p>• 한·미 고위군사회담을 진해에서 개최(한국측: 대통령, 외무, 국방부장관. 미국측: 합참의장, 국방차관보, 주한미 대사)</p>		<p>24 미·일 경제협정 조인</p> <p>26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주한미 지상군 감축조치로 육군 2개 사단의 단계적 철수를 발표</p> <p>31 소련, 제2차대전중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은 함정 186척을 미국에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p>

# 195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卞외무부장관, 인도군의 불법행위에 강경한 태도 재천명</p> <p>4 항공수당 급여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853호) 공포</p> <p>9 卞외무부장관, 인도군의 반공포로에 대한 군법재판의 불법성에 대하여 성명</p> <p>11李大통령, 미군 2개사단 철수에 반대성명</p> <p>14 제2국민병 소집 실시</p> <p>15 국회,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 동의</p> <p>18 해양경비대, 독도에 영토 표지 설치</p> <p>19 스티븐슨 美육군장관 내한</p>	<p>9 중공외상, 한국정치회담 재개(예비회담) 제의</p> <p>15 전후복구를 위한 폴란드 기술단 평양 도착</p>	<p>6 미·영·불, 對유고 원조협정 조인</p> <p>7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공산군에 의한 한국 재침시 중공본토를 직접 강타하겠다고 언명</p> <p>14 英·이란 정식외교관계 부활</p> <p>19 美상원의교위, 한·미 상호방위조약 승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0 印度관리군으로부터 반공 포로 인수 완료(한국인 7,582명, 중국인 14,227명)</p> <p>21 중공포로, 자유중국으로 이송</p> <p>23 테일러 美제8군사령관, 주한미군 2개사단 철수를 발표(제40·45사단)</p> <p>29 외국군인, 군속의 명예계급 수여규정(대통령령 제 869호) 시행</p> <p>30李大통령, 태평양동맹 결성을 촉구하는 담화문 발표</p>	<p>20 • 북한, 반공포로 석방을 비난 • 친공포로 인수 거부(28일 북한·중공 적십자사의 명의로 인수 347명)</p> <p>25 북한·중공간 직통철도 운행에 대한 협정체결</p> <p>30 南日 外相, 미국의 북한·중공포로들을 억류한데 대한 성명발표</p>	<p>21 美, 세계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티라스호 진수</p> <p>25 미·영·불·소 4개 의상회의 개최(베를린)</p> <p>31 미·필리핀 고위회담, 태평양방위전략 토의</p>
2	<p>1 • 해병 제1여단 창설 • 한국정치회담 예비회담 재개</p> <p>5 •李大통령과 헐 유엔군사령관 및 테일러 美제8군사령관 등 진해에서 비밀군사회담 개최(한국군 증강문제 협의) • 군에 최초로 타자기 보급</p>		

195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7 • 인도관리군 철수개시 • 군인전시수당 급여규정 (대통령령 제871호) 공포</p> <p>12 李대통령, 한국군의 印支 戰 桴견을 제의</p> <p>14 육군참모총장에 丁一權 대장 임명</p> <p>16 정규군인 신분령(대통령령 제870호) 공포</p> <p>17 • 국방부, 임시합동참모회의 설치(초대 의장 李亨根 대장) 및 임시합동참모본부 설치(대통령령 직속기관) • 합동참모회의 규정 공포(대통령령 제873호)</p> <p>20 卞외무부장관, 제네바 한국정치회의는 대공유화책이라고 비난</p> <p>21 중립국 포로송환위원회 해체</p> <p>22 판문점 정치예비회담 종결 선언</p>	<p>7 인민군창건 6주년기념 평양시 경축대회</p> <p>8 金日成, 중공군의 계속 북한잔류언명</p> <p>14 북한, 유엔 북한조사단 입국을 거부</p> <p>20 조국전선중앙위 제31차 회의 개최</p>	<p>12 美대통령, 한국군의 印支 戰 지원 거부</p> <p>18 미·영·불·소 외상, 베를린 회의에서 제네바 한국정치회의 개최일자(4. 26) 합의</p> <p>24 美국무부, 한국참전 16개국에 제네바회의 초청장 발송</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5 시리아에서 쿠데타 발생
3	<p>5 • 군사정전위에 한국장교 처음으로 파견 •李大통령, 국제반공적십자군 창설을 제의</p> <p>7 캐나다 수상 일행 17명 내한</p> <p>8 국방부, 임시합동참모회의 및 합동참모본부 해체</p> <p>14 주한 美제45사단 제1진 離韓</p> <p>15 육군 의무기지사령부 창설(마산)</p> <p>21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제1·제2·제3사단 작전지휘권 인수</p>	<p>4 북한, 제네바 정치회담 참가 결정</p> <p>12 訪中 북한대표단(단장 金應基) 중공 향발</p> <p>21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p> <p>23 북한 내각 개편</p>	<p>1 미국, 비키니 수역에서 원폭 실험</p> <p>8 미·일 상호원조협정 조인</p> <p>16 델레스 美국무장관, 美대통령은 미국 및 동맹국에 침략이 있을 경우 즉각 보복 지령권이 있다고 언명</p> <p>22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에 재선</p>

195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8 민병대 발족</p> <p>31 미국동해·공군사령관 내한</p>	<p>30 북한·중공간 소포·우편물 교환협정 체결</p>	<p>29 서독 대통령, NATO조약에 서명</p>
4	<p>1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로 개칭</p> <p>3 국산 정찰기 부활호 명명식(김해)</p> <p>13 월 유엔군사령관, 한국군 증강문제 협의차 내한</p> <p>24 딘 미대통령 특사 내한(제네바회담 문제 협의차)</p>	<p>1 입북한 국군장교들에게 조선인민군 군사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민족보위상 명령제0174호 발표</p> <p>23 南日 일행, 제네바 도착</p>	<p>12 딜레스 미국무장관과 이튼 영국외상 회담(런던)</p> <p>17 이집트, 나세르 정권수립</p> <p>23 蘇, 호주와 단교</p> <p>24 蘇, 몰로토프 外相 제네바 도착</p> <p>26 제네바에서 한국·印支 등 문제로 19개국 회의 개최</p> <p>28 동남아 首相회의 개최(콜롬보)</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 • 독도에 민간수비대원 20명 파견 • 제6군단 창설(국방부분부 일반명령(육)226호)</p> <p>3 국방부 연합참모본부 설치</p> <p>6 밴플리트 美대통령 특사 내한, 한국군 증강 및 군수문제 등 협의(6.12, 6.21에 3차에 걸쳐 내한)</p> <p>14 육군정훈학교 창설</p> <p>15 육·해·공군 장교계급장 표지 통일 시행</p> <p>16 월슨 美국방장관 내한,李大통령과 요담</p> <p>20 제3대 민의원의원 총선거</p> <p>21李大통령, 국군 印支파병 재차 제의</p> <p>31 한국과 유엔 한국부흥위원단간에 한국경제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p>	<p>1 북한, 중공간 직통화물열차 개통</p> <p>2 조국전선중앙위, 제네바 정치회담에 관련한 호소문 발표</p>	<p>7 호지명軍, 디엔비엔푸 점령</p> <p>13 미국, 수소폭탄 실험 완료 발표</p> <p>15 美국무부, 한국전쟁백서 발표</p> <p>17 밴플리트·장개석 회담에서 한·중방위동맹 문제 협의</p> <p>19 미국·파키스탄 군사협정 조인</p>

195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 주한 美제40사단 제1진 離韓</p> <p>15 • 한국참전 16개국, 제네바회담 결렬에 공동성명 발표                      • 진해 해군공창에서 수상항공기 비행실험                      • 鎭海에서 제1회 반공아시아민족대회 개최</p> <p>20 제3대 민의원의원 총선거</p> <p>27 정부, 국무총리에 卞榮泰 임명</p>	<p>3 북한, 북경간 직통 여객열차 개통</p> <p>8 전후복구 지원을 위한 중공기술자일행 북한 도착</p> <p>17 대동강 철교 개통식</p> <p>19 南日 북한 휴전회담대표, 제네바회담에 대한 성명 발표</p> <p>22 南日, 동독 방문</p> <p>25 북한·소련 外相회담(모스크바)</p>	<p>3 동남아 방위문제 협의를 위한 5개국 군사회담(미·영·불·호주·뉴질랜드)</p> <p>20 제네바회의 결정에 따라 월남, 17도선으로 분단</p> <p>25 미·영 巨頭회담(워싱턴)에서 동남아 방위문제 협의</p> <p>1 일본 방위청 및 육·해·공 3자위대 발족</p> <p>7 美대통령, 중공의 유엔가입 반대 성명</p>
7	<p>6 • 교육총본부 설치                      • 제1군관구 사령부 창설</p> <p>10 • 군인 임시진급령 공포                      • 병 진급령 공포                      • 국방과학연구소령 공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1 병기 기지사령부 창설</p> <p>25李大통령 방미, 한국·미국간의 군사·경제원조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30일)</p> <p>27 오산에 미군용사 참전비 제막</p>	<p>15 국립 중앙박물관 개관</p>	<p>12 영국수상, 중공의 유엔가입 반대 성명</p> <p>21 印支 휴전 성립</p>
8	<p>12 한·미회담, 국군증강 및 예비군의 구식장비 대체에 합의</p> <p>20 월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4개 사단이 철수하여도 여하한 공산침략에도 한국 방위에 자신이 있다고 발표</p> <p>26 美제5공군사령부, 주한 美제트 공군력을 일본으로 철수하였다고 발표</p>	<p>12 ·평양시에 김일성 광장, 스탈린 통로, 모택동 광장, 인민군거리 개통식 ·모란봉극장, 모란봉운동장 준공식</p> <p>13 ·조선해방전쟁기념관 개관 ·국립 개성역사박물관 개관</p>	<p>17 美대통령, 자유중국방어에 관한 중대 성명</p> <p>24 美대통령, 공산당 불법화 법안에 서명</p>

195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 한국전쟁중의 전사자 시체 교환 개시(10. 11까지 유엔군 4,023구, 공산군 13,528구)</p> <p>2 정부, 독도 무장화 결정</p> <p>15 월 유엔군사령관, 한국군 증강문제 협의키 위해 내한</p> <p>21 카투사 정원조정(20,000명에서 10,472명)</p> <p>27李大통령, 월 유엔군사령관 등 한·미 군사회담 개최하고 한국군 증강 및 대한원조문제 협의</p>	<p>6 중공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사임, 신임 등화 임명</p> <p>18 북한, 중공군 40만명 철수 발표</p> <p>28 金日成, 중공 방문</p>	<p>8 SEATO조약 기구 결성</p> <p>21 제9차 유엔총회 개막</p> <p>28 서독의 재군비문제 토의 위한 9개국 회담 개최(런던)</p>
10	<p>3 정부, 수복지구 행정권을 유엔군으로부터 인수</p> <p>6 한·미간에 한국조병창 설치 합의</p> <p>17 자유중국 군사사절단 내한</p>	<p>4 중공군 7개 사단, 북한으로부터 철수(87,894명)</p>	<p>12 소련·중공 공동선언(대일 국교 정상화)</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0 ESCAP(유엔 아·태 경제 사회위원회) 가입</p> <p>31 제2군 사령부 창설</p>	<p>30 양강도, 황해남·북도 신설</p>	<p>20 미·영·불·서독 4개국 회의 개최(파리)</p> <p>22 NATO 이사회, 서독가맹 승인</p>
11	<p>1 국방부직제령 개정(대통령령 제814호)</p> <p>17 ·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 합의 의사록 체결</li> <li>· 下국무총리·테일러 美 제8군사령관간에 38도선 이북 수복지구 행정권의 한국 정부 이양완료 서한 교환</li> </ul> <p>20 美 제8군사령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p> <p>23 한·미 군사회담, 한국군 증강문제 합의</p>	<p>10 백두산 산림철도 준공</p> <p>18 財政相 최창익을 해임하고 이주연 임명</p> <p>22 북한 군사정위, 남·북한 민간인들의 자유왕래 제의</p>	<p>1 美 육군부, 테일러 美 제8군사령관을 미극동지상군사령관으로 겸직 임명</p> <p>9 미·일 首腦회담(워싱턴)</p> <p>22 유엔총회, 덴마크의 그린랜드 합병 가결</p>

195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28 북한·소련간 우편물 소포 교환협정 및 전신전화 연락에 관한 협정 조인	29 동구제국·중공참가 모스크바회의 개최
12	<p>2 제1군사령부 제5군단을 배속받음(한국군이 전선 84마일 담당)</p> <p>8 卞국무총리, 유엔정치위에서 중공군 철퇴, 38도선 철폐, 휴전협정 폐기를 주장</p> <p>9 공군, 제트기 조정훈련 개시</p> <p>15 •李大통령, 적성감시위원단 축출에 담화 • 제2군관구, 제3군관구, 제5군관구사령부 창설</p> <p>17 국군정원 책정 한·미간 협의사항(720,000명)</p> <p>18 국회, 4括5入 개헌안 통과 선포</p>	<p>7 폴란드기술단, 철도·운수 부문 복구원조차 평양 도착</p> <p>17 북한·루마니아간 비상업 지출에 관한 의정서 조인</p>	<p>2 美·자유중국 상호방위조약 조인</p> <p>10 美국방부, 중공이 아직도 한국전 포로 2,800명을 억류중이라고 발표</p> <p>16 소련, 佛에 파리협정 비준하면 佛·蘇조약 파기한다고 통고</p> <p>17 NATO 이사회 개최</p> <p>30 佛 국민의회, 서독 재군비를 가결, 파리협정 전부 승인</p>

# 195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3 래드포드 美합참의장 내한, 북한 재침략시에는 원자무기 사용 언명</p> <p>10 해병 제3연대 창설</p> <p>14 한·미 군사회의, 해군력 3배 증강을 협의</p> <p>15 · 제6군관구 사령부 창설 · 해병 제1사단 창설</p> <p>24 美제24사단 선발대, 일본에서 한국 도착(주한 미해병대와 교대)</p> <p>28 한·미 군사원조회담 개최</p> <p>29 미국 해군 선박대여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 조인</p>	<p>14 북한·폴란드간 군사원조에 관한 협정 조인(1954~1957)</p> <p>20 건설성, 도시경영성 신설, 화학건설공업성을 화학공업성으로 개칭</p> <p>27 북한·동독간 과학기술협조협정 조인(동베를린)</p>	<p>10 유고·중공, 정식외교관계 수립</p> <p>17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오키나와의 무제한 관리 선언</p> <p>25 소련, 대독일 전쟁상태 종결 선언</p> <p>28 美국회, 자유중국 방위 권한 결의안을 의결</p> <p>31 유엔안보리 개최(대만문제)</p>

195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7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99호)</p> <p>9 육군본부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p> <p>14 丁一權 육군참모총장, 자유중국 방문, 공산침략에 공동투쟁할 것을 협의</p> <p>15 · 자유중국 장교 시찰단 제1진(25명) 방한 · 윌슨 미국방장관, 주한미군 감축 없다고 언명(기자회견)</p> <p>17 국방부직제 공포</p> <p>18 金性洙 전 부통령 서거</p> <p>20 보병 제30사단, 제31사단 창설</p>	<p>5 중공지원군 제407부대가 신축한 서평양·고원·정주기 관구 준공식 거행</p> <p>10 월맹주재 대사 徐哲 임명</p> <p>11 중공 부주석 朱德, 평양 방문</p> <p>15 南日 북한外相, 대일본 수교 제의</p>	<p>6 美제7함대, 대만방위 위해 대만 해협에 집결</p> <p>8 말렌코프 소련수상 사임, 후임에 불가닌 취임</p> <p>15 美국무부, 해외주둔 미군 137만명이라고 발표</p> <p>18 미국, 네바다에서 원폭실험 개시</p> <p>19 SEATO 조약 발효</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7 정부, SEATO 조약 가입을 재의	25 南日 북한外相, 일본과의 경제·문화 관계 수교 재차 재의	24 • 바그다드 조약 조인 • 美정부, 한국전 참전 16개국 대표자회의에서 공산측의 휴전협정 위반으로 군사력 균형이 깨졌으며, 주한 유엔군 및 한국군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강조
3	1 육군본부 서울 遷都式  4 국방부, 동·서해안의 봉쇄 및 호송임무를 한국 해군 단독으로 수행한다고 발표  9 영국 하링 원수 한국 방문  14 해군대학 창설  18 주한 美제1해병사단 離韓  20 보병 제32·제33사단 창설	2 북한·소련간 1955년도 상품 상호제공 의정서 조인  10 南日 북한外相, 남·북한 병력 10만명으로 감축하자고 재의  25 중공 인민지원군사령부, 3~4월에 북한에서 6개 사단 철수 결정	2 극동지역 美외교관회의, 한국·대만·월남을 연결하는 아시아 전력배치문제를 협의  7 美정부, 美극동군사령관에 테일러 장군 임명  16 • 美대통령, 아시아사태가 비정상적인 경우 원자무기 사용을 언명 • 佛수상, 수소폭탄제조 개시 발표

195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29 스티븐슨 美육군장관 한 국 방문		
	30 한·미군사회의 진해에서 개최		
	31 국회, 유엔 및 참전 16개국에 휴전협정 파기 결의문 발송	31 북한 주둔 중공군, 신의주 거쳐 철수 개시	
4	1 · 테일러 대장, 유엔군 및 美극동군사령관에 취임 · 램니처 대장, 美제8군 사령관에 취임		5 처칠 영국수상 사임, 후임에 이든 취임
	6 · 제2군사령부, 全軍에 대한 군수지원업무 수행(육군 본부로부터 인수) · 주한캐나다군 철수		
	7 파코스 소장, 군사정전위원회 美수석대표에 취임		
	15 해군본부, 서울 복귀	9 조선중앙방송국 준공식	
	19 피핀 태국수상 내한		
	20 보병 제35·제36사단 창설	20 중공군, 북한에서 철수 완료(6개 사단 52,192명, 전차 67대, 각종 포 1,758문)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7 민병대 해체</p> <p>9 민병대령 폐지령 공포</p> <p>12 제1고사포 여단 창설</p> <p>13 자유중국 軍事使節團 내한</p> <p>16 주한미군, 후방사령부 해체</p> <p>20 • 보병 제37·제38사단 창설 • 여군훈련소 창설</p> <p>22 주한 美군사고문원조단 설치(주한미군 철수 준비)</p> <p>29 한·미간 병기창 건설에 관한 협정 조인</p> <p>30 孫元一 국방부장관, 군사원조 사절대표로 渡美</p>	<p>1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142호 발표</p> <p>17 일본대표단, 북한 방문 (아시아제국 회의)</p> <p>25 在日朝鮮民戰 해체하고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결성 대회 개최</p>	<p>7 西歐同盟 정식 발족</p> <p>9 NATO 이사회, 서독 가입 승인</p> <p>14 바르샤바조약 조인</p> <p>24 소련, 旅順을 중공에 이양하고 소련군 철수</p>

195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5 • 램니처 대장, 유엔군 및 미국동군사령관에 취임</p> <p>• 화이트 대장, 美제8군사령관에 취임</p>	<p>13 북한·일본간 어로협정 조인</p>	<p>12 완 태국외상, 한·중·일의 SEATO 가입 반대 언명</p>
	<p>20 • 보병 제39·제50사단 창설</p> <p>• F-86항공기 5대 최초로 인수</p> <p>21 • 한·미간 군사·경제회담 개최(워싱턴)</p> <p>• 북한군 공군대위 이운용, 소위 이은승, 야크기로 여의도비행장 착륙</p>	<p>22 북한·중공간 '55년도 문화교류계획서 교환</p> <p>25 6·25전쟁시 전사한 인민군 및 중공군 장병들의 추모담 정초식(해방산·모란봉)</p>	<p>20 유엔창설 10주년기념 특별총회,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채택</p> <p>30 美, 해외활동본부(FOA) 해체</p>
7	<p>1 • 한·미 원자력협정 假調印(워싱턴)</p> <p>• 야전군사령부령, 군단사령부령, 후방군사령부령, 군관구사령부령 공포</p> <p>16 정부, 5개년부흥계획 시안 발표</p>	<p>20 소련주재 북한대사, 李尙朝 임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25 美극동지상군사령부 및 제8군사령부 서울에 이동 결정		28 美육군, 원자포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발표
8	2 한·미 군사원조회담 개최 (워싱턴)		1 미·중공 대사급 회담 개최 (제네바)
	7 한·미 군사원조회담에서 한국군 10개 사단 보급지원 협약	7 보천보에 건립한 김일성 동상 개막식 거행. 조국해방전쟁기념관 다시 개관	6 제1회 원·수폭금지대회, 히로시마에서 개최
	8 연합참모본부설치법 공포 (법률 제367호)	12 세계평화대회 일본측 대표단 북한 방문	8 국제원자력회의 개막(제네바)
	13李大통령, 휴전협정 즉각 파기 담화 발표	13 중공 부주석 주덕, 8·15 해방 10주년기념축전 참가차 평양 도착	13 소련, 병력 64만명 감축 발표(12월 12일 감축 완료)
	14李大통령,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철수에 관한 성명 발표		
	15 정부, 환율 500 : 1로 조정		
	16 한·미 군사원조회의 개최(서울)		

195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7 T-33 항공기 10대 인수</p> <p>29 한·미간 미 해군선박 추가 대여(18척)에 관한 교환 각서 조인</p> <p>30 육·해·공군 기념일(육군 : 10월 2일, 해군 : 11월 11일, 공군 : 10월 1일)을 대통령령 제1084호로 제정 공포</p>		<p>21 美극동군사령부, 일본에 어네스트 존 로켓포 일본 도착 발표</p>
9	<p>1 • 조병창 창설 • 전국 인구조사 실시</p> <p>6 휴전감시위원단의 敵性國家(폴란드, 체코)대표 철수</p> <p>20 孫元一 국방부장관, 敵性國 감시위원단 철수에 언급</p>	<p>3 호주 평화옹호위원단 북한 방문</p>	<p>1 美국무장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해체를 주장</p> <p>4 중공·자유중국간 금문도·廈門지역에서 치열한 포격전 전개</p> <p>9 소련·독일 수뇌회담 개최(모스크바)</p> <p>16 아시아민족 반공연맹 대회 개최</p> <p>20 소련·동독, 주권 회복 諸協定 조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3 육군의 정훈, 공병, 병참, 포병, 보병, 수송, 정보, 부관, 경리, 통신, 병기학교령 공포	30 중공군 6개 사단 북한으로부터 철수(휴전후 2차)	
10	5 4년제 육군사관학교 첫 졸업식(11기) 6 후버 美국무차관 일행 한국 방문 14 레이시 주한美대사 사임 22 美하원 군사위원단 일행 한국 방문	10 북한·체코간 상호과학기술원조협정 조인 13 일본무역협회 간부 북한 방문 15 북한·일본, 상품교역협정 조인 18 일본 국회의원 일행 북한 방문(조·일 무역에 관한 담화 발표)	11 라오스 휴전협정 조인 25 소련·동독 우호협력조약 조인 26 월남공화국 성립 선언 (대통령 고던 디엠)
		26 • 중공군 6개 사단 북한으로부터 철수 완료 • 제2차 일본 국회의원단 북한 방문	

195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1 공군, 대구비행장에서 제5 혼성비행단 창설 및 제1훈련비행단 개편	9 북한, 대남 전기공급 제의	11 유엔정치위, 한국대표 초청안 가결(44대 5)
	17 • 정부, 평화선 수호에 공군 출동을 언명 • 국방부, 평화선 침범 日 어선에 발포 성명	17 북한외상, 유엔에서 한국 문제 토의에 대한 성명 발표	17 자유중국, 在인도 한국 포로 인수를 제의
12	7 부러커 美육군장관 일행 내한, 주한미군 불철수 언명	7 북한·소련간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조인	13 소련·인도, 공동선언(평화 5원칙 확인)
	21 육군 제1훈련소 폐소 (제주)	15 박헌영, 간첩죄로 최고재판소에서 사형 판결	21 유엔총회, 한국에 유엔군 墓地 설치안 가결
	22 보건사회부, 美제8군에 근로기준법 적용 요청		
	24 토머스 美해군장관 일행 내한, 한국방위문제 협의		

# 195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국방부, 국회연락장교단 설치</p> <p>2 쿠알즈 美공군장관 일행 내한, 한국공군의 제트화 언명</p> <p>3 래드포드 美합동참모본부 의장 내한, 군사원조문제 협의</p> <p>23李大통령, 딜레스 美국무 장관의 전쟁 일보직전 성명에 언급하고 반공포로 석방의 진의를 해명</p> <p>30 육군 특무대장 金昌龍 소장 피살</p>	<p>12 · 북한·중공, 대북한 원조제공에 관한 협정서 조인</p> <p style="padding-left: 20px;">· 북한,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p>	<p>5 유고의 티토·이집트 나세르, 공동성명에서 동서군사블록 비난</p> <p>17 일본·소련, 외교관계 교섭 재개</p> <p>31 美·日 巨頭會談, 중공문제 협의(워싱턴)</p>
2		<p>2 북한적십자,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p>	

195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3 원자력에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미간 협력을 위한 협정 서명</p> <p>9 주한 美군사고문단장에 하모니 소장 임명</p> <p>20 · 육군본부직제령 공포 · 해군본부직제령 공포</p> <p>23 한·미 군수물자 현지구매절차에 합의</p>	<p>13 전국 인민자위대 열성자대회 개최</p> <p>17 북한·일본, 상품교역협정을 북경에서 체결</p> <p>27 북한·일본 적십자간 회담 및 공동성명 발표</p> <p>28 朝·蘇 과학기술원조위원회 제1차 회의 및 공동성명 발표</p>	<p>3 인도, 한국인 포로 57명을 브라질에 인도</p> <p>6 美·英, 바그다드 조약국에 원조제공 약속</p> <p>8 영국·말레이시아 독립협정조약 조인</p> <p>14 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미코얀과 흐루시초프, 스탈린 비판 연설</p> <p>18 동독의회, 국방성과 군 창설 의결</p> <p>21 영국, 한국, 및 일본주둔 영국군 철수계획 발표</p> <p>25 중공의 모택동, 百花齊放, 百家爭鳴 방침 발표</p> <p>27 바르샤바 정치협의회, 동독군의 동조약기구군 편입안을 가결</p> <p>28 蘇·유고 원자력협정 조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5 한·미 조병창 설치 협정 조인</p> <p>15 주한미군, 원자전 훈련 실시</p> <p>17 딜레스 美국무장관 내한,李大통령과 한국통일문제 논의</p> <p>24 와일랜드 美전략공군사령관 내한, 한국공군 증강 문제 협의</p> <p>29 이승만 대통령, 대학생 징집 보류전폐 언급</p>	<p>10 적십자회, 일본 大村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교포석방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p> <p>23 북한·불가리아간 '56년도 상품유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p> <p>26 북한·소련간에 연합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 조인(모스크바)</p>	<p>1 美원자력위, 태평양 핵무기실험 위한 위험수역 설정</p> <p>5 蘇·美에 정찰용 기구를 소련상공에 띄웠다고 항의</p> <p>7 美국방부, 해병대를 지중해에 파견한다고 발표</p> <p>9 아시아 반공대회, 반공기구현장 채택을 가결(마닐라)</p> <p>13 딜레스 美국무장관, 태국 방문 원자력협정 조인</p> <p>22 미·일 기술협정 조인</p> <p>23 파키스탄 공화국 성립</p>

195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 국방부, 학적보유 장병 복교 발표</p> <p>11 한·미간 군납업자 면세 조치협정 조인</p> <p>13 군묘지령 공포</p> <p>30 미국동공군 수뇌회담에 金貞烈 공군참모총장 참석</p>	<p>7 북한·중공간 경제원조협정 조인</p> <p>23 노동당 3차 전당대회</p> <p>30 金日成, 노동당 서기장에 재선</p> <p>8 歴史家민족위원회 결성</p>	<p>7 蘇·中共간 경제원조협정 조인</p> <p>12 램니처 유엔군사령관, 美 하원에서 대한원조 증가를 역설</p> <p>17 코민포름 해체</p> <p>26 英·蘇 수뇌회담, 공동성명 발표</p> <p>28 프랑스군, 월남에서 철수 완료</p> <p>30 미국동공군 수뇌회담 개최(마닐라)</p> <p>5 미국, 에니웨독에서 원폭 실험 개시</p> <p>8 래드포드 美합참의장, 美 하원에서 한국휴전협정을 더 지킬 수 없다고 경고</p>
5	<p>5 • 李대통령, 한국통일을 위해 중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대통령후보자 申翼熙 유세중 이리시에서 급서(23일 국민장)</li> <li>• 밴플리트 전 美제8군사령관 내한</li> </ul>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9 북한·동독간 상호기술자 교환협정 조인</p> <p>11 북한적십자회,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p> <p>14 북한·몽고간 문화협조협정 체결</p> <p>15 입북한 국군장병들을 위한 평양시 환영대회 개최</p> <p>25 뉴질랜드 평화옹호대표단 북한 방문</p>	<p>9 미·필리핀 배상협정 조인</p> <p>16 ·佛·蘇 수뇌회담(모스크바) ·英, 몬테베르 섬에서 원폭실험</p> <p>21 美, 비키니에서 수소폭탄 투하실험</p> <p>29 日·中 무역협정 조인</p>
	<p>14 로버트슨 美국방차관보 내한, 무기 추가공급을 언명</p> <p>15 정·부통령 선거</p> <p>16 주한 美대사에 다우링 임명</p> <p>18 전국에 비상경계령 선포</p> <p>26 金用雨 6대 국방부장관 취임</p> <p>28 ·한·미, 장비 및 물자처분에 관한 협정 조인(7. 2 발효) ·정부, 원자력 5개년계획 작성</p> <p>29 한국전 참전국회의, 중립국감시위원단의 해체에 관한 결의문 채택</p>		

195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31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일주일 이내 철수를 통고	31 인민군병력 8만명 축소에 관한 성명 발표	
6	1 화이트 美제8군사령관, 敵再侵時 즉각 보복에 대한 성명 발표  7 중립국감시위원단, 全員 철수에 합의  9 • 중립국감시위원단, 한국 3개 港에서 판문점으로 철수 • 金국방부장관, 공산군측에 세균전 및 유도탄 기지 건설을 항의  27 육군참모총장에 李亨根 대장, 연합참모본부장에 丁一權 대장 임명	1 金日成, 소련 및 동구 방문(~19일)  2 북한, 외국군 철수와 통일을 위한 관련국 회의를 제의  10 외무성, 중립국감시위원회가 남북한의 특정한 출입항의 시찰소조를 잠정적으로 철수함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6 북한·루마니아간 무상원조제공협정 조인	8 美·오스트리아 원자협정 조인  13 영국, 수에즈운하에서 최종적으로 철수  23 SEATO 본부를 방콕에 설치  28 폴란드에 반정부 폭동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5 정부, 중공의 유엔가입 반대성명 발표</p> <p>7 • 공군대학 창설 • 다우링 주한 미국대사 부임(14일 신임장 제증)</p> <p>20 • 화학기지창 창설 • 통신기지창 창설</p> <p>23 자유중국 공군참모총장 일행 한국 방문</p> <p>30 공병기지창 창설</p>	<p>1 북한·알바니아간 기술 및 과학기술협조 협정 조인</p> <p>2 남북통일촉진협의회 결성 대회</p> <p>12 북한적십자사, 한국적십자사에 수재민 원조 협의</p> <p>22 북한무역상사와 日·朝무역회 대표단간 상품청부계약서 조인</p> <p>24 일본 학생대표단 북한 방문</p>	<p>12 소련·이집트 원자력협정 조인</p> <p>18 네루·티토·나세르회담 (푸리오니)</p> <p>19 美대통령, 한국 등의 유엔가입 촉구해 언급</p> <p>21 美洲대통령회담, 파나마에서 개최</p> <p>26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 수에즈운하 국유화를 선언</p> <p>29 수에즈문제로 美·英·佛 3개국 회담(런던)</p>

195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3 • 래드포드 美합참의장, 한국에 신무기 도입 발표</p> <p>• 부산 국제시장 大火災 발생</p> <p>15 대통령(李承晩)·부통령(張勉) 취임식 거행</p>	<p>1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p> <p>4 북한·소련 경제원조협정 조인</p> <p>18 북한적십자회, 국제적십자연맹에 남한 수재민 구호하겠다고 전문 발송</p> <p>30 북한노동당 중앙위, 부수상 崔昌益 등 제명</p>	<p>3 영국, 수에즈문제로 비상사태 선언, 이튼 수상 군사조치 발표</p> <p>4 중공, 미국인 기자단 입국허용 발표</p> <p>10 美·日 잉여농산물 차관협정 조인</p> <p>16 수에즈문제와 관련, 국제회의 개막(런던)</p> <p>21 중공 제3차 日人戰犯 354명 석방 발표</p> <p>27 영국, 호주의 마라링카에서 원폭실험 개시</p> <p>3 SEATO 군사고문관회의 개최</p>
9	<p>1李大통령, 美의 극동정책은 패배와 유화주의로 전략되었다고 경고 성명</p>	<p>2 북한·중공간 두만강 유역치수공정에 관한 의정서 교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1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 1173호)</p> <p>2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장면 부통령 피격사건 발생</p>	<p>8 월북자 군사정치학교 제1기 졸업식</p> <p>20 국제원자력기구 창립총회 개최</p>	<p>11 蘇·印度 공동성명 발표</p> <p>29 서독·佛 수상회담에서 사르지역 반환에 합의</p>
10	<p>3 스티프 美태평양함대사령관 내한</p> <p>26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협약에 서명</p>	<p>2 루마니아 정부대표단 평양 도착</p> <p>12 일본 국회의원단 북한 방문</p> <p>13 인도 국회의원단 북한 방문</p> <p>27 외무상, 유엔총회 제12차 회의 의장과 유엔사무총장에 서한 발송</p>	<p>23 헝가리 반정부 폭동 발생</p> <p>25 이집트·요르단·시리아 군사조약 조인</p>

195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31 북한·소련간 민간항공협정 조인	29 이스라엘군, 이집트 진격 31 영국·프랑스군 수에즈로 진격(수에즈전쟁 발발)
11	7 •李大통령, 헝가리 국민에게 협조 용의 표명 • 공군 F-51기, 서해 상공에서 훈련중 북한기의 불법사격으로 추락(2대) • 국방부, 전장병에게 휴가 중지 시달 10 李亨根 육군참모총장, 북한병력 남하배치를 발표	2 북한·몽고간 경제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3 북한, 이집트에 대한 英·佛 무력사용 반대성명 발표 7 최고인민회의, 한국국회와 남한사회 인사들에게 보내는 서한 및 남북한 평화통일에 관한 선언 채택 8 조선중앙통신, 유엔군측 군용기의 북한영공 침공과 관련 항의 보도	1 소련군 대부대, 헝가리 침입 2 유엔총회, 수에즈에서의 停戰결의안 채택 3 이라크군, 요르단 진주 4 소련군, 부다페스트 점령 5 • 유엔총회, 중동경찰군 창설 결의 • 영·불군, 포트사이드 (Port Side)에 투입 6 美대통령에 아이젠하워 재선 8 헝가리 폭동 종결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2 화이트 美제8군사령관, 한국에서 전쟁 재발 않는다고 언명</p> <p>17 3군 참모총장, 평화선 침범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성명 발표</p> <p>20 김창룡 소장 피살사건과 관련, 姜文奉 중장 소환심문 시작(22일 6명 추가 구속)</p>	<p>11 노동신문, 중공의 유엔가 입을 지지 보도</p> <p>18 북한적십자위원회, 이집트에 원조제공 제의</p> <p>30 외무상,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p>	<p>12 제12차 유엔총회 개막</p> <p>13 아랍 8개국 수뇌회담 개최(영·불의 이집트 철수 요구)</p> <p>23 美·日 원자력 세목협정 조인</p>
12	<p>3 한·미 합동군사회담 개최(동경)</p>	<p>6 일본정부, 재일교포 20명을 국제적십자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북한 도착 14일)</p>	<p>3 英·佛, 이집트에서 즉시 철수를 발표</p> <p>11 NATO 이사회 개최</p> <p>17 蘇·폴란드 駐留 군사협정 조인</p> <p>18 일본, 유엔 가입</p>

195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1 유엔총회에서 한국대표, 1,000만명의 진정서를 제시하고 유엔가입 호소</p> <p>24 화이트 美제8군사령관, 휴전협정으로 인해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경고</p>	<p>21 내각,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위생방역위원회로 개편하는 결정 제118호 채택</p>	<p>22 영·불, 수에즈 철수 완료</p>

# 195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6李大통령, 휴전협정 폐기 하고 군비강화를 강조</p> <p>7·정규군인신분령개정 공포(총참모장을 참모총장으로, 준사관을 준위로 각각 개정)</p> <p style="padding-left: 20px;">•사병진급령 공포</p> <p>14·국방부, 국방연구원 설치</p> <p style="padding-left: 20px;">•해병대 개정령 공포</p> <p>17 공군, 중앙항로 교통통제소(ARTCC) 미군으로부터 인수</p> <p>25·준사관·하사관 임용규정 공포</p>	<p>5 평양 광산저수지 제1단계 공사 완료</p> <p>8 몽고에서 보내온 밀 5천 톤 전달식</p> <p>12 외무상, 유엔감시하 총선안 결의를 부인하는 성명 발표</p> <p>24 북한, 소련의 유엔가입안 지지성명 발표</p>	<p>2 유엔정치위, 한국문제 우선 토의안 가결</p> <p>5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중동교서 발표</p> <p>11 유엔총회에서 유엔감시하 統韓총선 결의안 가결</p> <p>14 石橋 일본수상, 한국의 평화선 반대 성명(독도 영유권 주장)</p> <p>23 美·英 등 13개국, 한국유엔가입안을 유엔政委會 제출</p> <p>24 소련, 유엔政治委에서 북한 및 월맹 등의 유엔가입안 제출</p>

195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5 · 육·해·공군 사병 및 준사관 규정 공포(명칭) 하 사-상등병 이등중사-병장 일등중사-하사 이등상사-중사 일등상사-상사</p>	<p>31 적십자위원장, 남북서신 교류 위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서한 발송</p>	<p>29 美제7함대, 대만방위사령부와 지휘권 분리</p> <p>30 유엔政委, 한국·월남의 유엔가입안 통과</p>
2	<p>5 閣議, 군사재판 3심제 의결</p> <p>7 美 페어레스 상호안전보장 계획 조사단 내한</p> <p>13 국방부, 각군에 후생사업 중단지시</p> <p>15 · 해군관구령 공포 · 해군보급창령 공포</p>	<p>4 개성에 인민군·중공군 전사자들의 묘비 제막</p> <p>9 세계民靑회의에 참가하는 민청대표단, 베를린 향발</p>	<p>16 미국, 주서독미군사감계 획을 NATO·西歐聯에 정식 통고</p> <p>17 자유중국,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반공동맹 창설을 제의</p> <p>19 중공내륙 티베트에 반공 봉기사건 폭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0 姜文奉 중장, 김창룡사건 결심공판에서 군장성간의 단결과 특무대의 개편 등 요구		
	22 정부, 亞洲반공동맹에 일 본 참가 반대 특별성명 발 표	22 북한·동독간 '57년도 상 품교류 및 지불에 관한 협 정 조인(베를린)	
3			1 美, 중거리 탄도유도탄 (IRBM) 발사성공
			2 · 美·佛 首腦회담, 對중동 문제 평화적 해결 합의, 공 동성명 발표 · 美 원자력부대 창설
	12 曹正煥 외무부장관, 재일 교포 북송운운의 日 首相발 언을 비난	5 그레테 위트코프스키 동 독국가 계획위원회 제1부 위원장 북한 방문	
	16 육군사관학교를 화랑대로 명명		20 美·英 버뮤다회의 개막
	23 테일러 美육군참모총장과 한국군사당국자간에 최신 무기도입 및 휴전협정문제 등 협의		
	24 韓·美 군사회담 개최(워 싱턴) 한국측, 한국군 현대 화를 촉구		28 알바니아에서 반공 봉기

195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30 金用雨 국방부장관, 유엔 본부 방문하고 북한의 휴전 협정 위반 진상을 설명  31 방공포병학교 창설		30 美·英·佛, 이집트의 수에 즈운하 운영관리안을 원칙 적으로 승인
4	2 李대통령, 유도탄 도입 등 군사력 증강을 역설  17 강문봉 중장, 김창룡사건 과 관련 追訴軍裁에서 사형 언도(19일 李대통령 무기 로 감형 지시)  19 육군 항만사령부령 공포  23 정부, 일본의 SEATO 가 입반대 성명 발표	1 체코 수상 윌리암 쉬로키 평양 도착  2 李대통령, 유도탄 도입 등 군사력 증강을 역설  9 북한군, 강제송환된 포로 1명 사형  17 북한·폴란드간 과학기술 협정 조인  18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3 레드포드 美합참의장, 한 국군 신무기 무장안을 아이 젠하위 대통령에게 건의  8 이집트 수에즈운하 완전 재개  11 蘇, 싱가포르 자치안 협 정 조인  19 아이젠하위 美대통령, 중 동지역 被侵國에 원조제공 언명  23 이라크군, 요르단 침공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24 • 한국과 영국의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 한·미 항공협정 조인</p> <p>26李대통령, 한·일간의 正 常回復을 위한 성명 발표</p> <p>29 한·미 군사실무자회담에 서 제트비행단 설치 등에 합의</p>		<p>24 美, 제6함대에 지중해 출 동을 명령</p> <p>25 • 유엔安保理, 수에즈운하 문제로 회의 소집 • 일본, 在日 2차대전 한 국인 전범자 148명을 석방</p> <p>27 중공, 당중앙위에서 정풍 운동에 관한 지시 공포</p>
5	<p>8李대통령, 한국내 유도탄 기지 설립에 찬동</p>	<p>7 내각, 남한에 구호미 10만 석 무상제공안 결정 제43 호 채택</p> <p>16 북한군, 연평도에서 한국 기관선 나포</p>	<p>6 NATO가맹 5개국군, 북부 이탈리아에서 전자전 연습</p> <p>8 美·자유중국, 대만에 원자 기지 설치안 합의</p> <p>10 마라도아 미유도탄부대 자 유중국 도착</p> <p>15 英, 크리스마스섬에서 제 1회 수폭 실험</p> <p>16 美국무부, 한국에 원자사 단 派韓을 주장</p>

195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8 정부 연합참모본부 의장에 劉載興 중장, 육군참모총장에 白善樺 대장 임명</p> <p>22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對 韓 신무기 제공 고려중이라고 언명(6. 30정식 통보)</p>	<p>18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 한국 민의원의장에게 10만 석 구호미 제공에 관한 서한 발송</p> <p>25 적십자중앙위, 한국적십자사 총재에 남북이산가족 서신연락에 관한 서한 발송</p> <p>30 북한외무상 南日, 한국에 신무기 반입을 비난 성명 발표</p>	<p>30 美, 네바다에서 대대적인 핵실험 개시</p>
6	<p>1 韓·美간에 유엔군주둔지諮問委 설치에 합의</p> <p>10 소집명령공고 규정 시행</p> <p>21 유엔군측, 공산군측에 휴전협정 13조D항 폐기 통보</p>	<p>4 보천보전투 20주년 양강도 기념보고 대회(보천읍)</p>	<p>2 일본수상, 韓·일·중·월남 등 중립동맹을 제안</p> <p>7 · 美, 바그다드조약기구 軍事委會 가입 · 美·蘇, 군축비밀회의 개최</p> <p>11 美, 대륙간탄도탄 1차 실험 실패</p> <p>20 · 美·日, 재일 미군철수와 관련, 공동성명 · 한국전 참전 16개국, 새로운 휴전문제에 관한 회담 개최에 동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22 국방부, 전군에 비상대기령	26 • 북한, 유엔군측의 휴전협정 13조D항 폐기 통고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 • 북한, 軍事停戰委에서 새로운 정치회담 제의	22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개최
	27 美공군, 신형 F-100제트기 75대 오산비행장에 배치 발표		25 중공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30 델레스 美국무장관, 중공 정권 불승인 재천명
7	1 • 유엔군사령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 • 육군항공학교 창설	7 월맹 胡志明 일행, 북한 방문  16 일·북한 협회 일본측 대표단, 북한 방문	5 소련에 내분폭발, 친스탈린 파인 말렌코프·모로토프·카가노비치·세피로프 축출
	5 국방부 과학연구소 분석 시험·감정 및 설비사용규칙 시행		15 美·파키스탄간 아주·중동 집단방위체 강화합의에 관한 공동성명
	6 제7대 국방부장관에 金貞烈 취임		19 美, 空對空 핵탄두로켓 발사 성공(최초)
	15 美국방부, 주한 미군의 핵 무기화 착수를 발표		25 美陸軍, 10만명 감축 착수

195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29 국제원자력기구 정식발족
8	<p>1 • 공군 제33구조비행단 창설(김포)</p> <p>• 美 제1기병사단 한국으로 이동</p> <p>8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p> <p>19 데커 유엔군사령관, 한국군 2개 사단 연차감축을 언명</p> <p>22 • 주한 영국군 철수</p> <p>• 정부, 공무원 6,000명 감원 결정</p> <p>26李大통령, 한국군 감축과 신장비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명</p>	<p>9 적십자회, 남한 수재민에 2천만원의 원조 제의</p> <p>21 전쟁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협정에 가입</p> <p>27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선거(215명)</p> <p>30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총비서 북한 방문</p>	<p>8 美상원, 한·미통상조약 비준</p> <p>18 미국정부, 한국군 25만명 감축 언급</p> <p>26 蘇, ICBM발사 성공</p> <p>27 일본, 최초로 원자로에 점화(東海村)</p>
9	<p>6 美태평양지구 부사령관 캐논 중장 내한</p>		<p>4 NATO, 북대서양 해역에서 2개월간 해·공 원자화 부대의 연습개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5 인천시 만국공원에 맥아더 동상제막</p> <p>16 허터 美국무차관 내한, 한국 국방문제 토의</p> <p>18 월남 고딘 디엠 대통령 한국 방문</p> <p>24 스티프 美태평양지구사령관 내한, 한국군 감축에 불찬성한다고 언명</p>	<p>11 과학원 대표단 소련 향발</p> <p>23 안톤 유고브 불가리아 수상 평양 도착</p>	<p>9 유엔안보리에서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한국의 유엔가입안 부결</p> <p>10 유엔 특별총회, 헝가리문제 토의 개시</p> <p>16 태국 쿠데타 발생</p> <p>19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지하 핵실험</p> <p>26 함마술드 유엔사무총장 재선</p>
10		<p>1 원조가축 전달식 위한 몽고정부대표단 평양 도착</p> <p>2 북한·버마간 무역협정 체결</p> <p>3 南日 外相, 유엔총회에 북한대표 참석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p>	

195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5 주한 美제24사단을 제1기 병사단으로 개칭(15일) 발표</p> <p>14 한강 浮橋 개통</p> <p>29 딜레스 美국무장관, 주한 미군 불철수를 언명</p>	<p>11 북한·소련 양 과학원간 과학협조협정 체결</p> <p>14 평양창건 1530주년기념 경축대회 개최</p> <p>18 •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 북한·월맹간 과학기술 협정 체결(하노이)</p> <p>26 소련과학원 총회 참가차 대표단 모스크바 향발</p> <p>29 南日 외상, 유엔총회의장 및 사무총장에게 남한만이 유엔가입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비난하는 서한 발송</p>	<p>4 蘇, 사상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p> <p>15 중·소, 신무기에 관한 협정 조인</p> <p>19 서독, 대유고 단교 통고</p> <p>23 미·영 수뇌회담, 美의 對 유고 원조 중지결정</p> <p>26 미국, 대한경제원조액 2억 1천500만달러 결정</p> <p>27 유엔총회, 한국·월남의 유엔가입자격 재확인</p>
11	<p>8 美태평양지구 지상군사령관 화이트 대장 내한</p>	<p>3 金日成, 소련 10월혁명 40주년 식전에 참석차 모스크바 향발</p>	<p>3 소련, 스푸트니크 2호 인공위성 발사 성공</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6 해군본부, 동해 어로구역을 북위 38도35분, 동경 128도22분으로 확대설정발표</p>	<p>27 보구미르 린스키 체코 민족보위상, 북한 방문</p>	<p>19 유엔政委, 참전 11개국 통한결의안 결의</p> <p>21 동·서독 통상협정 조인</p> <p>29 유엔총회, 통한결의안(유엔감시하 자유선거) 가결</p>
12	<p>1 군인의 길, 국방부훈령 제 28호로 제정</p> <p>4 金의무부차관, 참전재일 학도의용군 700여명의 귀환조치 추진을 언급(기자회견)</p> <p>10 주한 외교사절단, 獨島를 시찰</p> <p>15 래드포드 전 미국연합참모본부 의장 내한</p>	<p>5 노동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 개최</p> <p>13 아시아·아프리카 단결회의 참가대표단 카이로 향발</p> <p>16 북한·소련간 이중국적자에 대한 협약 체결</p>	<p>5 蘇, 첫 원자력잠수함 진수</p> <p>7 美, 첫 인공위성 발사 성공</p> <p>12 美·중공대사급회담(제네바) 중단</p> <p>17 美, ICBM 시험발사에 성공</p>

195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9 양유찬 주미대사, 자유세계에 상호평화의존선언 채택을 제의</p> <p>31 한·일간 양국억류자 상호 석방협정을 조인</p>	<p>31 중공·북한간 과학기술협정 조인(평양)</p>	<p>26 제2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개막(뉴델리)</p>

# 195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용산중학교 교감 간첩사건에 현역영관급 3명 죄상판명</p> <p>7 양유찬 주미대사, 美국무부에 對군원사감의 재고를 건의</p> <p>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가입</p> <p>12 국방부, 병역기피자 단속요강을 각지구 병사구사령부에 시달</p> <p>29 주한 유엔군사령부, 한국에 원자무기 도입사실을 정식발표</p> <p>30 국회기자실에서 육군중위 吳元根, 권총자살</p>	<p>7 적십자회, 일본억류교포 선처요구 전문을 國赤 및 日赤에 타전</p> <p>26 佛정부 대표단, 북한 방문</p>	<p>3 岸 일본수상, 李대통령 직접방문용의 언명</p> <p>9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연두교서 발표</p> <p>13 세계 저명과학자 9,236명의 핵실험금지 청원서 유엔에 제출</p> <p>27 美·蘇 문화교환협정 조인</p> <p>31 美, 인공위성 엑스프로라 제1호 발사 성공</p>

195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3 주한 미군, 원자포와 어네스트 존 로켓을 공개</p> <p>8 주일 美유도탄대대, 한국으로 이동</p> <p>12 한·미 고위군사회담에서 한국측, 美國의 감군요구에 동의</p> <p>16 KNA 여객기 (DC-13형) 피랍(탑승자 3월 6일 귀환)</p> <p>19 美국무부, 주한미군 불철수를 발표</p> <p>20 북한 MIG-21 전투기, 철원 영공 침범</p> <p>21 데커 유엔군사령관, 한국군의 원자무기훈련을 확신</p>	<p>1 인민군대와 인연이 깊은 기관단체기업소중에 인민군 창건 10주년 칭호를 부여한 데 대한 결정 제15호 채택</p> <p>5 인민군 창건 10주년 경축미술전 개관</p> <p>8 金日成, 인민군 제324군 부대 방문</p> <p>16 북한·중공간 공동성명서 발표</p> <p>19 金日成·周恩來, 공동성명을 통해 중공군 철수계획을 발표(1958년까지 완전 철수)</p> <p>20 북한주둔 중공군사령부, 중공군을 '58년말까지 완전 철수하며 제1단계 철수를 4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성명발표</p>	<p>14 美국무부 대변인, 중공의 주한외국군 철수 제안에 북한에서 우선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하자고 제안</p> <p>18 美국무부, KNA여객기 납북사건은 북한간첩의 강도행위라고 비난</p> <p>19 美국무부, 주한미군 불철수 성명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2 통일이람공화국 대통령에 나세르 이집트대통령 피선  25 미국, 통일이람공화국을 정식 승인
3	1 韓·越간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6 · 휴전선 비무장지대 상공에서 북한포화로 美제트기 1대 추락(17일 조종사 생환) · 남북 KNA탑승자 34명 중 26명 서울 귀환  12 해군, 한·미 연합원자전 훈련 실시  15 한·미 원자력협정 수정 조인  31 한·미간, 한국군 6만명 감축 원칙에 합의	1 외무성, 남북한 민간항공기 문제에 대하여 성명 발표  3 노동당 제1차 대표자 대회에서 천리마운동 실시 결정(김두봉 숙청, 반김일성 쿠데타 기도 죄목)  11 金日成, 철수하는 중공군 환영대회에서 연설  15 중공군 환송 평양시민대회 개최	8 예멘왕국, 통일이람공화국에 정식 가입  31 그로미코 소련외상, 핵실험의 일방적 중지 언명
4	1 제1전투단 창설(특수임무부대)		

195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10 공군 C-46 항공기 납북 기도 미수사건 발생	10 내각전원회의, 원자·수소 무기시험 일방적으로 중지한 소련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	19 불가닌 소련수상 해임, 후임에 흐루시초프
	18 해군본부, 연평도에 경비 함정 증가 배치	18 북한·동독간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평양)	
	19 국방부 지리연구소 설치		
	25 벤테레스 터키수상 내한	25 3월 15일~4월 25일간 중공군 8만여명 철수완료 발표	
	28 영국 극동함대사령관 그래드스톤 제독 내한		
5	1 중부전선에서 어네스트 존 로켓과 원자포 시범사격		3 미국, 크리스마스島 수역의 핵실험 일시 중지하고 위험수역을 해제  6 중공, 통한문제 對英回輸에서 유엔군철수후 극동회의 개최를 제의  10 중공, 대일본교역 중단 통고  19 아랍연방국 정식 발족
	2 제4대 민의원선거 투표 실시	3 訪蘇대표단(단장 鄭一龍) 모스크바 향발	
	4 정부, 섬머타임제 실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30 더글라스 美공군장관 내한	30 불란서 기자대표단, 북한 방문  31 북한 군사대표단, 소련과 체코 방문 위해 평양 출발	22 일본 총선거(岸信介 재선)
6	4 · 韓·美간 원자력평화협정 수정에 합의 · 국방부, 문교부, 정교사 분할 입대원칙 합의  8 해군, 서해안에서 무장간첩과 총격전(3명 사살, 1명 생포)	5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16 의과학연구원 개원  24 중공군이 7월 11일~8월 30일까지 2단계 철수한다고 발표	1 佛 드골 장군, 수상에 취임  16 美국방부, 해병 1개대대 지중해 파견을 발표  30 중공, 최초로 실험용 원자로 완성
7		1 金日成, 2단계로 철수하는 중공군을 방문  8 南日외상, 일본에 억류중인 한국인의 남한송환 반대. 즉시 북한에 송환 요청	1 서방측, 대공산권 금수품 완화조치  11 스위스, 핵무장화를 결정  13 수에즈운하 분규 종식

195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14 강원도 영월군 上東에서 우라늄광 발견	15 북한, 남한의 미군철수 요 구 성명발표	14 이라크 혁명(공화제 선언)
	31 • 정부, 외화 40만달러로 원자로 구입 결정 • 한·서독 공사관을 대사 관으로 승격	17 북한, 美·英군의 레바논 출병에 대한 비난성명 발표	15 미군 레바논 출병, 제6함 대 상륙개시
8	1 공군 제11비행단 창설	20 포로송환 희망자 불송환 보장의 한국측 서면요구를 거절	17 英, 요르단에 파병
	5李大통령, 한국군 대폭감 축을 반대, 장비현대화를 역설(외신기자 회견)	21 호루시초프 소련수상, 북 경 방문	26 미국, 인공위성 엑스플로 타 제4호 발사 성공
		2 중공과 상품상호 납입회 담차 李周淵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북경 향발	31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북 경 방문
		7 제2차 재외유학생 열성자 회의 개최	1 미국, 태평양 존스톤島에 서 미사일에 장치한 핵탄두 의 초고공 폭발실험에 성공
			2 요르단 후세인왕, 아랍공 화국 해체 선언
			5 중공, 강대국 정상회담 제의
			8 중동문제를 위한 유엔 특 별총회 개막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11 美제7함대사령관 버클리 중장 내한	13 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과학전람회 개관 15 중공군 철수 제2단계 완료 발표	11 美국무부, 중공 불승인 정책 재확인 22 美·英 핵실험 중지 성명 23 중공, 대만 긴장사태 유발(미제7함대 출동) 24 중공·캄보디아 우호조약 체결 26 인도·파키스탄 휴전 성립
	28 부러커 美육군장관 내한 29 유재홍 연참의장 대만 방문	30 水豊발전소 복구재건공사 준공식 거행	
9	1 李대통령, 대만사태에 집 단력 발동 강조	1 평양 외국어학원 개원 4 인민공화국 창건 제10주년 기념 과학토론회 개최 6 조·소 친선협회 蘇대표단 평양도착 7 중공군, 9월 25일까지 3단계 철수 발표	4 • 美대통령, 대만의 안보문제에 대한 특별성명 발표 • 중공, 영해 12해리 선언

195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8 해군, 무장간첩선 나포 2명 사살, 4명 체포	9 평양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전람회를 소련이 개최	9 딜레스 미국무장관, 대만 사태에 관한 성명
	13李大통령, 대만사태에 대한 미국정책 지지성명		15美·중공 대사급회담 재개(바르샤바)
	15해병대, 강화도에서 무장간첩 6명과 교전		16·美, 잠수함에서 유도탄 발사 성공 · 제13차 유엔총회 개최
	22스타닌트라 태국 육군참모총장 내한		23 영국, 크리스마스섬에서 핵폭발실험에 성공
	24美 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 쿠퍼 대장 내한		25북한주둔 중공군 제3차 철수 개시(10. 26 철수완료)
30화학학교 창설(전남 광주)	26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30소련, 핵실험 재개	
10	1한·태국, 국교수립 외교사절교환에 합의	3북한·중공 친선우호협회 창설(북경)	1미국, 항공우주국(NASA) 설립
	6육군, 인천 앞바다에서 무장간첩선 및 간첩 김상구 외 4명 체포		4美·日 안보조약 개정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9 매켈로이 미국방장관 내한		
	10 육군 제2군사령부 숙군 단행(장교·사병·70명 구속)	11 金日成, 알바니아 군사대표단 집견	11 美, 달 로켓 파이어니어 발사
	16 테일러 美육군참모총장 내한	18 북한·월맹간, 과학기술협정 조인(하노이)	16 美정부, 對韓방위원조액 2억2,000만달러 확정 발표
	27 美국무부, 공산군측의 철수요구를 거절하고 유엔군의 계속 주둔을 발표	26 북한, 중공군 북한에서 완전 철수했다고 발표	21 덜레스 美국무장관,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과 회담
	28 美태평양함대사령관 홈즈 제독 내한	28 북한, 중공군의 철수와 관련한 성명 발표	29 美국정부, 개발차관 한국 우선제공 약속
			31 핵무기 실험금지 회담 개최(제네바)
11	5 李대통령, 월남 방문, 한·월 공동성명 발표	1 전반적 의무교육제 실시	
		6 외무성, 유엔에서 북한참가 거부하는 결의채택과 관련 성명 발표	

195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9 메키 美태평양함대 해병 대사령관 내한</p> <p>26 딜레스 美국무장관, 한국 군일부 감축을 발표</p>	<p>21 金日成, 中공·월맹 방문 위해 평양 출발</p> <p>26 金日成·毛澤東, 武漢에서 회담</p> <p>28 金日成, 월맹 방문</p>	<p>8 美국무부, 한국문제의 해 결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 대를 재천명</p> <p>11 유엔政委 자유중국대표, 남북한협상 불가하다고 역 설</p> <p>17 수단 쿠데타 발생</p> <p>28 美, 대륙간 횡단 유도탄 아틀라스 발사 성공</p>
12	<p>1 공군참모총장에 金昌圭 공 군 중장 임명</p> <p>8 국회, 보안법 개정안 심의</p>	<p>1 AK소총 개발 보급</p> <p>5 金日成, 上海市 환영군중 대회에서 연설</p> <p>8 북한·중공군 공동성명서 조인(북경)</p>	<p>4 일본·소련 무역협정 조인</p> <p>9 유엔안보리, 한국·월남 가 입안을 부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6 •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의 유도탄 보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이탈리아간 대사관 승격 합의</li> </ul> <p>24 • 보병 제20사단 및 22사단 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보안법 개정안 통과</li> </ul>	<p>29 북한·중공간 무상원조(중공화폐 8억元)를 결산함에 관한 의정서 조인</p>	<p>16 미국무부, 한국군에 1개 제트 전투비행단 증강계획 발표</p> <p>18 美 발사 ICBM 아틀라스, 지구회전궤도에 진입</p> <p>21 드골 佛수상, 대통령에 당선</p>

# 195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全軍군수지원 업무를 제 2군사령부에서 육군본부로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본부 일반참모부장 제도 실시</li> <li>• 보병 제29사단을 제20사단으로 개편</li> <li>• 대커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핵무기로 장비할 것이라고 언명</li> </ul> <p>7 공군기술양성소수 공포</p> <p>8 육군본부직제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1427호)</p> <p>21 국방부, 장교·준사관의 兵科 규정 시행</p>	<p>5 북한·동독간 과학기술협조 의정서 조인</p> <p>11 북한·폴란드간 과학기술협정서 조인</p> <p>14 노농적위대 창설</p> <p>20 金一을 내각 부수상에 임명</p> <p>30 북한·월맹간 우편물·전신교환협정 체결</p>	<p>1 쿠바에 정변(카스트로 혁명 성공)</p> <p>2 蘇, 달 로켓 발사 성공</p> <p>4 소련 부수상 미코얀, 미국 방문</p> <p>20 태국, 對중공 통상 금지</p> <p>30 일본의상, 북한에 송환을 희망하는 교포는 불원간 허가방침이라고 성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6 美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 위원회 위원장(드레이퍼), 원조관계 조사차 내한</p> <p>13 조정환 외무부장관, 대일 단교, 실행행사로 교포복송 저지한다고 발표</p> <p>18 • 국방부직제령 개정(대통령령 제1450호) • 보병 제28사단장 徐廷翥 준장, 대대장 정구헌 중령에 피살</p> <p>19李大통령, 일본의 교포복송은 추방이라고 비난</p> <p>23 육군참모총장에 宋曉贊 중장, 해군참모총장에 李龍雲 중장 임명</p> <p>28 대한적십자사 李範錫 대표를 제네바 파견</p>	<p>6 호루시초프·김일성 회담 (모스크바)</p> <p>8 조선인민군 추모탑 제막식(해방산)</p> <p>17 북한·중공간 항공운수 의정서 조인</p> <p>22 북한·중공간 문화협정 조인</p> <p>23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p> <p>26 일본공산당 대표단, 북한 방문</p>	<p>7 蘇·中共 경제원조 조인</p> <p>13 • 소련, 이집트의 아스완 댐 원조 승인 • 영국, 韓人복송은 휴전협정 위반이라 발표</p> <p>21 영국 맥밀란 수상, 소련 방문</p> <p>25 일본 전역에서 복송반대 교포민중대회 개최</p>

195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李대통령, 3·1절 기념식에 서 대일안전보장이 긴요하 다고 피력</p> <p>2노르웨이와 국교 수립</p> <p>25 터키 國防相 멘데레스 내한</p> <p>30 해병 상륙사단령 공포</p> <p>31 美국무부, 한국공군에 세 이버 제트기 증가를 발표</p>	<p>3 평양·모스크바간 정기항 로 개통</p> <p>5 노동신문, 미제침략군을 남 조선으로부터의 철거를 결 코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p> <p>22 일본사회당 대표단, 북한 방문</p>	<p>5 美, 터키·이란·파키스탄 3국 과 각각 우호방위조약 조인</p> <p>16 이라크·소련, 경제협정 조인</p> <p>21 서독·이탈리아 양국수상 회담(본)</p> <p>24 이라크, 바그다드조약에 서 탈퇴</p> <p>27 불가리아, 對美 국교 재 개</p> <p>1 드레이퍼 美대외군원조사 위원장, 한국 등에 군원 4 억달러 증가를 요청</p>
4	<p>1 제6군단을 제1군사령부에 배속</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0 렘니처 美육군참모차장 내한</p> <p>22 주한 유엔군사령관·美제 8군사령관에 매그루더 장군 임명(부임 6월 28일)</p> <p>23 국방과학연구소, 방사능 검출에 성공</p> <p>30 정부, 군정법령 제88호 적용 경향신문 폐간령</p>	<p>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崔庸健, 소련 방문 (10일 흐루시초프와 회담)</p> <p>7 노동신문, 침략군사블록인 SEATO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p> <p>13 북한·일본 적십자간 제네바에서 회담</p> <p>24 북한 崔庸健, 동독 방문</p> <p>27 제일교포 북송문제에 국제적십자사 개입 거부</p>	<p>8 아르헨티나, 소련·동독의 외교관 국외퇴거를 요구</p> <p>13 미·영·소, 핵실험중지회담 재개</p> <p>26 영국등 5개국, 방사능대책 훈련 개시</p>
5	<p>5 韓·美 연합상륙작전(거부) 훈련 실시</p>	<p>5 북한 崔庸健, 체코 방문</p> <p>6 북한·아랍연합공화국간 문화협정 비준서 교환</p>	<p>6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대한군사원조 계속 필요성을 강조</p>

195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9 張勉 부통령, 경향신문 폐간 조치는 인권유린이라고 천명</p> <p>20 육군 군법회의, 서정철 준장 피살범 정구현 중령 사형 집행</p> <p>22 • 국방부, 조병창 운영권을 미군으로부터 인수 • 북한 해군상위 박철웅 귀순</p> <p>30 주한 미군당국, 북한의 남침위기에 대처, 명령 30분후면 원자탄 투하 가능하다고 언명</p>	<p>13 북한, COMECON회의에 업저버로 참가</p> <p>22 북한, 한국정부의 이민정책을 비난</p> <p>25 북한 崔庸健, 헝가리 방문</p>	<p>11 美·英·佛·蘇 4대국 외상 회담 개최(제네바)</p> <p>22 드레이퍼 美대외군원조사위원장, 對韓 軍援增加는 시급하다고 下院에서 증언</p> <p>24 英·蘇 통상협정 조인</p> <p>26 티토 유고 대통령, 흐루시초프 소련수상의 회담요청을 거부</p> <p>28 美육군, 원숭이를 태운 로켓비행 실험에 성공</p> <p>30 서독·소련, 문화·기술협정 조인</p>
6	<p>1 제5차 아시아 민족반공대회 개막(서울), 14개국과 업저버 6개국 참가</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6 李대통령, 미국의 군사원조 없이 단독복진 가능하다고 언명</p> <p>11 정부, 교포복송문제와 관련 다우링 美대사와 각서 수교</p> <p>20 매켈로이 美국방부장관, 美하원 비밀회의에서 한국 방위력 충분하다고 증언</p> <p>29 주한유엔군 경제조정관실(OEC)을 美원조단(USOM)으로 개편</p>	<p>5 북한 최용건, 알바니아 방문</p> <p>6 북한, 주한미군 철수 호소문 발표</p> <p>13 북한 최용건, 몽고 방문</p> <p>27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p>	<p>11 일본적십자사, 북한적십자사와 교포복송계획에 합의</p> <p>15 美해군정찰기, 동해상에서 蘇機에 피격</p>
7	<p>15 미군으로부터 대공관제 경보기구 인수(오산 미공군기지)</p>	<p>2 북한·월맹간 과학기술의 정서 조인</p> <p>23 북한·이라크간 문화 및 통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p>	<p>1 서독 대통령에 뤼프케(기독교 민주동맹) 당선</p> <p>22 닉슨 美부통령, 소련 방문</p>

195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7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최초로 로켓 발사 · 국방부, 북한 무장선 1척 격침 5명 사살 2명 생포 발표</p> <p>28 육군본부, 金根培 준장 사건 기소내용 공표</p> <p>29 정부, 일본 및 제네바 주재 대표부에 교포 북송저지의 강경조치훈령 시달</p> <p>31 민족일보사건의 曹奉岩 前농림장관 사형 집행</p>	<p>27 노동신문, 미제침략군을 물러가라고 주장</p>	<p>31 中·日 통상협정 조인</p>
8	<p>1 赤城 일본방위청장관, 한국이 독도 침략했다고 의회에서 망언</p> <p>19 서해상에서 북한함정 불법남침, 아군의 사격으로 도주</p> <p>20 金국방부장관, 군인의 정치관여 불허를 언명</p>	<p>13 日·북한, 재일교포 북송협정 조인(캘커타)</p> <p>15 청진에서 蘇軍墓 이장식</p>	<p>1 일본, 한·일회담 무조건 재개, 억류자 상호석방을 수락</p> <p>4 國赤, 일본·북한 협정에 동의</p> <p>14 태국·월맹, 難民送還協定 조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25 중공·인도, 국경분쟁 표 면화  27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서 독수상과 회담
		30 노동당중앙위 상무위원 회 확대회의 개최	
9	2 美국방부 군사원조실태조 사단 내한  5 • 주일대표부, 부산에 억류 중인 일본어부 122명 명단 일본외무성에 전달 • 정부, 金大植 해병 중장을 해병대사령관에 중임 임명  11 • 공군본부, 공군비행단 창설 발표 • 주한 美해군사령관에 타 일이 소장 부임  12 의정부 남방에서 美 L- 19기 추락, 조종사 2명 순 직  19 국방부, 국방문화상 제정	7 소·북한, 원자력 평화이용 협정 조인	2 아이젠하워·드골 회담, 공 동성명 발표      12 소련, 우주로켓 투니크2 호 발사 성공  15 제14차 유엔총회 개막  18 흐루시초프, 유엔총회(제 14차)에서 전면군축을 제 의

195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3 렌돌프 美해병대사령관 부처 내한</p> <p>28 매켈로이 美국방부장관 내한</p> <p>29 영국 극동군사령관 헐 대장 내한</p> <p>30 국방부, 군 죄수 659명 8·15 특사로 석방</p>	<p>22 평양시 행정구역 대폭 확장</p> <p>25 金日成, 중공 방문</p> <p>28 金日成, 毛澤東과 회담</p> <p>30 중공 창건 10주년 평양 시 보고회 개최</p>	<p>25 아이젠하워·흐루시초프 회담</p> <p>30 흐루시초프, 유엔총회 마치고 귀국도중 중공 방문</p>
10	<p>1 • 제1전투단을 제1공수특전단으로 개편 • 한·미간 주한미군의 잉여물자처분에 관한 협정 조인</p> <p>13 히뉴켄 美국방차관보 내한</p> <p>20 정부, 중남미 이민계획을 수립</p> <p>25 자유중국 해군참모총장 黎玉靈 해군 대장 일행 10명 내한</p>	<p>7 체코 대통령 안토닌 노브트니, 북한 방문</p> <p>21 북한·헝가리간 과학기술 협조 의정서 조인</p>	<p>7 제7차 CENTO이사회 개최 (워싱턴)</p> <p>12 美·比 군사기지 일부 개정각서 조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6 2군 헌병참모부, 군내 하와이 근성시비의 발설로 전남 병사구사령관 李斗璜 대령 구속</p> <p>28 해군공창에서 모형 거북선 제작(美해군사관학교에 기증)</p>	<p>28 노동신문, 국토와 민족분열의 비운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주장</p> <p>29 네팔 친선대표단, 평양 도착</p>	<p>26 ANZUS이사회 개최(워싱턴)</p> <p>27 美국무부, 북한 공산당측의 統韓제안 일축</p>
11	<p>3 육군본부, 디젤차량 1,500대 미국으로부터 인수</p> <p>5 美태평양지구 지상군사령관 화이트 대장 내한</p> <p>6 在韓國 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국과 유엔간의 협정 조인</p> <p>7 해군연구위원회 설치</p> <p>9 美태평양지구 해군사령관 펠제독 내한</p> <p>13 해군, 경비부 직제 공포</p> <p>16 美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 오도넬 대장 내한</p>	<p>3 북한·월맹간 비무역지불을 위한 화폐환산비율과 청산에 관한 협정 조인</p> <p>6 소련 10월혁명 제42주년 기념 평양시 경축대회</p> <p>9 북한·네팔 친선협회 창설</p>	<p>2 유엔정치위, 군축에 관한 82개국 공동결의안 만장일치로 가결</p>

195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2 제25사단 비행대소속 문영석 중위, 내연의 처 한영숙을 동반 L-19기로 월북</p> <p>24 밀튼 美육군성차관 내한</p>	<p>23 노동당 대표단,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참가차 헝가리 향발</p> <p>30 民保相 명령 제317호, 전국군 중위 문영석에게 군사칭호수여 채택</p>	<p>17 영국·서독 수뇌회담 개막(런던)</p> <p>21 미·소, 과학·기술·문화협정 조인</p> <p>23 유엔총회 정치위, 한국문제 토의 개시</p> <p>24 미·영·소, 지상핵실험 탐지에 관한 회의 개최</p>
12	<p>2 前 美합참의장 레드포드 제독 내한</p> <p>10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29호)</p> <p>12 주한 美대사에 매카나기 부임</p>	<p>1 노동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p> <p>12 최고인민위 상임위의장 崔元澤 남한 각처에 보낸 서한이 非法적으로 압수당했다고 비난</p>	<p>1 미·소, 무역협정 조인</p> <p>3 미국, 한·미간 '60 ICA원조자금 1억8,000만달러 사용계획을 합의했다고 발표</p> <p>5 유엔총회, 언크라보고서 승인</p>

195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4 유엔군·美제8군사령관 매그루더 대장, 유엔군에 외출금지 명령</p> <p>29 국군정원 책정(한·미 의 사록에 의거) 630,000명</p>	<p>16 재일교포 제1진 975명, 淸津港에 도착</p> <p>23 재일교포 제2차 귀국선 청진항 도착</p>	<p>18 일본, 교포복송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기하자는 한 국측 요구를 정식 거부</p>

# 196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흑산도 서북방 해상에서 중공 무장 어선으로부터 해군 해안경비정(701호) 피습</p> <p>4 육군특무대, 대남간첩 金基中(32)을 검거 발표</p> <p>9 육군특무대, 철도국원을 가장한 간첩 閔範植(40세)을 체포</p> <p>13 부러커 美육군장관 내한</p> <p>15 육군 군수기지사령부 창설(제2군관구사령부 해체)</p> <p>26 서울역 구내 3번홈 계단에서 철도사상 집단압사사건 발생(27일 김일환 교통장관 사표)</p>	<p>2 북한·불가리아간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총회</p> <p>20 북한 외무상, 美·日 안보조약 조인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p> <p>26 李鍾玉을 부수상에 임명</p> <p>29 • 북한·몽고간 과학기술 협조협정 조인 • 북한·체코간 과학기술 협조협정 조인</p>	<p>4 CENTO 상설군사회의 개막(앙카라)</p> <p>12 미·영·소 3개국의 핵실험 정지회담 개막(제네바)</p> <p>19 美·日, 안보조약 조인</p> <p>28 중공, 버마 국경문제에 관한 협정 및 중공·버마 우호 상호불가침 조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 육군본부, 휘발유사건으로 楊國鏞 3군단장을 해임(4월 9일 구속)</p> <p>4 이승만 대통령, 해안경비대에 공산당보다 일본을 더욱 경계하라고 언명</p> <p>15 趙炳玉 민주당 대통령 후보, 美 윌터리드 육군병원에서 病死(25일 국민장)</p> <p>22 정부환율 650 : 1로 공정환율 공포</p> <p>26 동해북부선 철도기공식 (북평~간성)</p>	<p>7 인민군 총참모장 이건무 상장 사임, 김창봉 중장 임명</p> <p>22 소련군 창건 42주년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p>	<p>13 불란서, 원폭실험 성공</p> <p>16 영국, 국방백서 발표</p> <p>22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남미 4개국 방문 등정</p> <p>26 미국, 對쿠바 군사원조 중지</p> <p>28 흐루시초프 소련수상·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공동성명에 조인(자카르타)</p>
3	<p>1 한국과 태국, 대사급의 외교사절 교환 및 대사관 설치에 합의 공동성명 발표</p> <p>15 • 정·부통령선거 실시 • 마산에서 3·15부정선거 발단</p>	<p>20 남한에서 미국의 유도무기 발사를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p>9 저개발국 원조에 대한 회의 개최(3. 9~11, 워싱턴)</p>

196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9 美해군장관 프랭크 제독 내한</p> <p>30 육군본부, 예비병 소집안 발표</p>	<p>31 명천-길주-노동간 철도 전기화 공사 완공</p>	<p>21 자유중국, 장개석을 총통에 재선출</p> <p>23 흐루시초프·드골 회담(파리)</p> <p>25 美·아랍, 借款협정 조인</p>
4	<p>1 韓·美 해군선박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서명</p> <p>14 육군 제1사단 15연대 1대대장 강주홍 중령, 전방순찰중 보초병 오인 총격으로 순직</p> <p>19 · 4·19 학생의거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비상계엄선포. 15사단 서울진주(계엄사령관 송요찬 육군참모총장)</p>	<p>18 고등교육省 신설</p>	<p>1 美, 인공위성 타이로스 1호 발사 성공</p> <p>5 맥밀란·드골회담(런던)</p> <p>12 미·영·불 3개국 외상회의 개막(워싱턴)</p> <p>18 드골 불란서 대통령, 캐나다 방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21 주한 美대사 매카나기, 李대통령에게 4·19사태에 관한 美側 견해 전달	21 노동당중앙위, 남조선에 조성된 현사태와 관련하여 호소문 발표	24 아이젠하워·드골, 東·西 정상회담 방침에 합의(美캠 프 데이비드)
	26 李承晩 대통령 사임	25 내각, 혁명전적지를 정비 하며 문화후생시설 건설에 관한 명령 제16호 하달	
	27 許政 외무, 대통령 직무 대행	27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 의 개최하고 남한에 조성된 현사태수습을 위한 대책토 의 공동성명 발표	
	28 李起鵬 一家 4명 자살	29 길주-명천간 전기철도 개통	
	30 동해안에 무장간첩 출현 2명 사살, 2명 생포		
5	1 과도정부, 3·15부정선거 무 효 확인		1 미국의 U-2기, 소련의 우 랄 상공에서 격추
	2 李鐘贊 제8대 국방부장관 취임	2 북한·일본·중공간 공동성 명 발표	2 NATO이사회 개막(이스탄 불)
	7 매카나기 美대사, 許政 수 반에게 허터 美국무장관의 過政지지 각서 전달	8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10 알제리공화국 임시정부 대표단 북한 방문(~13일)	

196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9 4·19 순국학도 합동위령 제 거행</p> <p>27 정부, 비상계엄 해제</p> <p>29李大통령 부부, 하와이로 망명</p> <p>31 교육 총본부 해체</p>	<p>23 북한·중공간 국경하천운 항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p>	<p>16 美·英·佛·蘇, 東·西 정상 회담 개막(파리)</p> <p>27 터키 무혈 쿠데타 발생</p> <p>31 제6차 SEATO 이사회 개 막(워싱턴)</p>
6	<p>1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창설</p> <p>15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p> <p>19 아이젠하워 美대통령 내한</p> <p>20 허정, 아이젠하워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공동성명 발 표</p>	<p>1 8·15해방 15주년기념 인 민군 예술경연대회 개막</p> <p>3 북한·동독간 영사조약 체 결(평양)</p> <p>11 각 대학에 영예 軍人班 설치</p> <p>17 아이젠하워 美대통령의 한 국방문을 반대 배격하는 군 중대회 개최</p>	<p>20 공산블록내에서 중·소분 쟁이 최초로 표면화</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22 국회,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통과	24 미제 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군중대회 개최	23 美·日 신안보조약 비준 교환, 신조약 발효 25 佛·알제리, 停戰예비회담 개최
7	1 • 국방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제 실시 • 연합참모국 신설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 7 국방부, 정전위 한국대표에 孫昌國 육군 소장 임명 14 • 국방부, 근무소집을 15일간으로 단축 발표 • 해군사관학교 진정서 사건 발생 17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군중립 엄수 선서 18 해군, 동해안에서 간첩선 나포, 간첩 6명 생포 19 국방체제개편위에서 헌병사령부를 해체키로 결정	4 북한·소련과학원간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평양) 17 북한·알바니아간 과학협조의정서 조인	6 쿠바, 미국인 재산 국유화법 제정 10 드골 불란서 대통령, 알제리에 대한 평화계획 발표 16 소련, 중공에 파견중인 소련전문가 1,000여명을 1개월내에 철수한다고 통고

196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5 • 제1군사령관 유재홍 육군 중장, 예비역 편입원을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공군참모총장에 金信 공군 중장을 임명</li> </ul> <p>29 제2공화국 민·참의원 선거 실시</p> <p>30 • 김성주 사건과 관련 원용덕 중장을 군검수사반이 구속 건의(8. 3 구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 동해안에서 북한 함정과 교전, 북한군 3명을 생포</li> </ul>		<p>20 美원자력잠수함 조지워싱턴호, 폴라리스미사일의 수중발사에 성공</p> <p>25 일본, 재일교포 북송연장을 결정</p> <p>29 드골 블란서 대통령, 아데나워 서독수상과 회담(파리)</p> <p>31 蘇·중공간 국경분쟁 발생</p>
8	<p>1 해군본부, 海士집단 진정서 사건, 학생 61명중 주동 학생 6명 구속</p> <p>3 북한군 정낙현 소위 MIG-15기로 귀순(속초 북방 육군비행장)</p> <p>6 海士집단 진정 사건과 관련 부교장 채규남 대령을 구속</p>	<p>6 인민사회당 대회에 참가할 노동당대표단 평양 출발</p> <p>8 노동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 개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9 제2공화국 출범</p> <p>13 윤보선 대통령 취임</p> <p>23 • 張勉 내각 성립 • 玄錫虎 제9대 국방부장관에 취임</p> <p>29 정부, 연합참모본부 의장에 崔榮喜 육군 중장, 육군 참모총장에 崔景祿 육군 중장을 임명</p> <p>31 김창룡 사건으로 복역중인 孔國鍊 육군 준장 특사로 출감</p>	<p>13 평양대극장·혁명박물관·옥류교·옥류관·모란봉경기장의 준공식 거행</p> <p>15 김일성, 南北韓聯邦案제의</p>	<p>18 소련, 인공위성 2호 발사, 20일 회수, 개 2마리 무사 생환</p> <p>20 美國방부 해외군원국장, 팔머 대장, 장면 내각의 군사정책을 비난</p> <p>27 소련, 아랍공화국의 아스완댐 계획에 9억루블의 차관을 공여하는 협정에 조인</p>
9		<p>5 인민군 당위원회 확대전원회의 개최(金日成 참가)</p> <p>8 빌헬름 피크 동독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할 정부·당대표단 평양 출발</p>	<p>6 일본 자민당 對韓정책 발표</p>

196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2 • 權仲敦 제10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 • 美태평양군 총사령관 해리 D. 펠트 제독 내한</p> <p>13 국방부, 문교부와 '61년부터 전국 47개 대학서 ROTC 제를 실시키로 합의</p> <p>21 美태평양지구 육군총사령관 화이트 대장 내한</p> <p>26 美상호안전보장계획 조사단장 웨어링 등 4명 내한</p> <p>28 정부, 해군참모총장에 李成浩 해군 중장 임명</p>	<p>24 북한·몽고간 비상업적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울란바토르)</p> <p>25 북한, 쿠바간 외교관계 수립</p> <p>26 북한·일본 적십자 예비회담(니이가타) 개최</p> <p>29 북한·쿠바간 외교관계, 문화협조협정 체결</p>	<p>17 유엔 긴급총회 개최, 콩고문제 토의</p> <p>19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뉴욕 방문</p> <p>20 제15차 유엔총회 개막(14개국 가입을 승인)</p>
10		<p>1 일본 국회의원단 북한 방문</p>	<p>1 주은래, 김일성의 연방제 제안을 지지</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0 국방부 합동조사대 설치</p> <p>12 국방부, 年内 국군 3만명 감축 결정</p> <p>16 자유중국군 시찰단 黃鑣球 대장 등 일행 34명 내한</p> <p>21 정부, 주한 美군사고문단 설치협정 개정 서명</p> <p>25 국방부, 3군사관학교 통합계획 성안</p> <p>28 정부,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한 사항 재확인</p> <p>30 국방부, 국군종합체육대회 개최</p>	<p>12 民保相 김광협을 부수상으로 임명</p> <p>23 중공군사대표단·중공인민해방군 문공단과 함께 평양 도착</p> <p>24 중공인민지원군 참전 10주년기념 평양시 보고대회 개최</p>	<p>13 소련, 북한의 對蘇차관상환액중 1억9천만달러를 감면해 주고 350만달러의 액수에 대한 지불기간을 연기</p> <p>21 美맨스필드 상원의원,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統韓의 검토 필요성 역설</p>
11	<p>1 정부, 각부장관에게 관용차 사용금지 지시</p>	<p>1 북한·소련간 대여금 상환면제에 관한 의정서 조인</p> <p>6 남·북한간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경제위원회 조직 제의</p>	

196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6 국방부 조사대령 공포</p> <p>18 주한 美대사 매카나기 이 임</p> <p>30 정부, 申應均 예비역 육 군 중장을 국방부 차관보로 임명</p>	<p>13 북한·월맹간 무역협정 체결(하노이)</p> <p>19 북한·소련간 교역과 항해에 관한 조약 체결</p> <p>25 북한, 조린 蘇 부의상을 통해 유엔감시하에 한국통일선거 거절</p> <p>28 부수상 洪命燾 작가동맹 韓雪野, 다시 남북회담 및 문화교류 제의</p>	<p>8 미국, 케네디 대통령 당선</p> <p>11 월남, 쿠데타 발생</p>
12	<p>3 국방부 건설본부 설치</p> <p>20 정부, 국무원에 국토건설 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p>	<p>7 북한·오스트리아간 무역협정 조인(빈)</p> <p>14 재일교포 복송 1주년(복송교포 51,325명)</p> <p>20 노동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 개최</p>	<p>14 서방측 20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조약에 조인(파리)</p> <p>20 월남민족해방전선 결성</p>

196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7 직업군인 1,534명 전역되고 3만명 감군 완료</p> <p>29 국군정원 60만명으로 결정(한·미 합의에 의거)</p>	<p>27 북한·소련간의 통상경제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관하여 성명 발표</p>	<p>22 유엔 소련대표단, 統韓 및 남북한 경제·문화교류에 관한 북한측 제의문서를 유엔에서 배부</p> <p>28 IMF, 61년 1월 1일자로 圓貨의 對佛 환율 1,000 : 1을 승인</p>

### Ⅲ. 國防體制定立期

196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6 정부, 남북교류론 위험성을 경고</p> <p>8 •尹대통령, 무책임한 통일론을 경계 언명 •국방부, 3군훈련을 일원화 검토</p> <p>30 玄錫虎 제11대 국방부장관 취임</p>	<p>1 북한, 예멘간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p> <p>6 폴란드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진영 국가 군사학교들의 제3차 통신·사격경기에서 1위 획득</p> <p>14 북한·헝가리간 과학기술 협력 의정서 조인</p> <p>21 建設省을 신설</p>	<p>2 서독·소련 통상협정 조인</p> <p>4 美대통령, 쿠바와 단교선언</p> <p>18 아시아 4개국(한국, 월남, 자유중국, 필리핀) 외상회의 개막</p> <p>20 존 F. 케네디, 美제35대 대통령에 취임</p>
2	<p>1 정부, 환율인상(1\$ : 1,300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7 인민군 창건 13주년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	3 케네디 美대통령, 특별경 제교서 발표 7 佛·서독 수뇌회담 개최 12 소련, 흑성간 자동스테이 션(금성로켓) 발사 성공
	28 한·미간 경제기술원조 협 정 조인		
3		2 북한·소련간 항해조약비 준서 교환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1 미국, 평화부대 설치 7 리스크 美국무장관, 대만 수호를 언명 11 美대통령, 베를린협상 白 紙化 선언 12 유엔政委, 한국문제 북한 참석문제로 美·蘇간 격론
	15 미국, 한국에 평화군단 설치를 제의	20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19 미국, 한일회담에 仲介 확약
	25 주한 유엔군사령관·美 제 8군사령관 델로이 중장 임명 (7. 1 취임)	25 바르샤바조약국 정치위원 회 회의에 참가차 부수상겸 민보상 김광협 평양출발	28 공산권 정상회담 모스크 바에서 개최

196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7 동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 6척과 어부 43명 납북</p> <p>10 한·미 행정협정교섭 개시 (17일부터 실무자 회담)</p> <p>18 美제8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의 훈련권 인수</p>	<p>10 朝·蘇 친선협회와 소련 대외친선 문화연락협회연맹 및 蘇·朝 친선협회간에 협조에 대한 조인</p> <p>30 북한·알바니아간 통상항해조약과 장기통상협정 조인</p>	<p>3 美·英 수뇌회담(라오스 문제 토의)</p> <p>13 蘇, 보스토크 1호 有人 우주선 발사 성공</p> <p>28 일본, 자위대 24만명 증원안 중의원에서 통과</p>
5	<p>13 남북학생회담 호응 군중대회 개최(서울운동장)</p> <p>16 • 군사혁명 • 군사혁명위 설치 및 계엄령 선포 • 유엔군 금족령</p> <p>18 張勉 內閣 총사퇴 결의</p>	<p>6 남북학생회담 준비위원회 구성(평양)</p> <p>1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결성대회(위원장 洪命熹)</p> <p>16 북한·버마간 영사관계 설정과 경제문화관계 강화에 관한 성명 발표(랑군)</p>	<p>5 美, 有人우주선 발사 성공</p> <p>8 NATO 각료이사회 개막</p> <p>15 제네바 14개국 국제회의 개막</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19 •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 재건최고회의로 개편 • 윤보선 대통령 下野성명 발표 • 제1군사령부 및 각사단 혁명지시		
	20 제12대 국방부장관에 張 都映 취임	20 한국군사정권 반대 평양시 군중대회	
	26 국군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복귀(제30·33 예비사단, 제1공수특전단 및 5개 헌병중대 제외)		
	27 최고회의 비상계엄을 경제계엄으로 변경		
	28 최고회의, 부정축재자 발표	29 소련 제1부수상 코시긴, 북한 방문(~6월 6일, 북한의 통일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문제 논의)	31 美·佛 정상회담 개최(파리)
6	1 • 수도경비사령부 창설 • 장병 급식기준 변경 -백미 5홉에서 4홉으로 -압맥 1홉에서 2홉으로 • 한·미 독수리훈련 최초 실시	1 북한·몽고간 외교관계 설정기로 결정 공동성명 발표	3 비엔나에서 미·소 정상회담

196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6 정부, 국방장관 대리애 申應均, 육군참모총장에 金鐘五 육군 대장을 임명		
	10 국가재건최고회의법 공포		10 존슨 美부통령, 아시아주 방위 천명
	11 정부, 병역미필 공무원 9,200명 해임 결정		11 미국, 10개 예비사단 창 설
	12 제13대 국방부장관에 송요찬 취임	16 월남정부 대표단 평양 도착	21 美·日 정상회담(한국문제 등 논의)
	28 정부, 세계 70여개 국에 친선사절단 파견	29 金日成, 소련 방문	
7	1 • 공군작전사령부 창설 • 멜로이(Gay S. Meloy Jr.) 대장, 주한 유엔군사령관에 취임	2 金日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도착	2 영국군, 쿠웨이트에 진주 (이라크·쿠웨이트 분쟁에 대한 쿠웨이트 지원)
	3 • 반공법 공포 • 최고회의 의장에 朴正熙 소장 선출, 내각수반에 宋曉讚 임명 • 정부, 장성급 40명을 예 편 조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5 정부, 정치백서 공표	6 韓·蘇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10 제14대 국방부장관에 朴炳權 취임	10 金日成 북경 방문	
	18 국방부직제 개편(직종과 정원을 조정)	11 朝·中共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25 정부, 혁명백서 발표	18 북한·체코간 경제협력의 정서 조인	21 美, 크리슴 대위를 태운 인간로켓 2호 발사 성공
	26 육군, 愛民信條 5개항 제정 시행	26 북한·이라크간 문화교류협정 조인	27 러스크 美국무장관, 한국 지지 성명
8	2 • 정부, 일본과 한·일회담 재개 합의 • 송요찬 수반, 5개년 장기 경제개발계획 발표		
	5 군사원호청 개청		6 蘇, 보스토크 2호 우주선 발사 성공(치트프 소령 탑승)

196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1 내각, 병력미필자 국토건설단에서 개발사업 등에 투입방침 피력</p> <p>19 한·미 고위군사회담 개최(진해)</p> <p>25 ·북한군, 서부 군사분계선 월선 습격·도주(아군 1명 사망, 4명 중경상) ·정부, 내각수반 직속으로 기획통제관 신설, 각부에 기획조정관실 설치</p>	<p>10 북한·쿠바간 2개의 체신관계협정 조인(아바나)</p> <p>15 민족보위상 명령 제5호 하달(전투준비 강화, 전투정치훈련 강화)</p> <p>24 최고인민위 상임위, 북한·소련 및 중공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비준</p>	<p>12 아르헨티나 군사혁명</p> <p>13 동독, 베를린 경계선 봉쇄로 베를린 위기 고조</p> <p>22 케네디 美대통령, 서베를린의 자유수호 선언</p> <p>30 소련, 핵실험 재개, 100메가톤 폭탄제조에 착수</p>
9	<p>1 정부, 국토건설군 설치 준비위 발족</p>	<p>11 노동당 제4차 대회 개최(7개년 경제계획 채택)</p>	<p>1 阿·중남미 26개국 비동맹국 정상회담(베오그라드 현장 채택)</p> <p>6 미국, 핵실험 재개 결정</p> <p>16 미국, 네바다에서 핵실험 재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3 내각사무처, 10월 15일부터 공무원, 국가관리기업체 종업원의 신생활복 착용한다고 발표	22 북한·중공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  28 북한·불가리아 과학원간 과학협력협정 체결	18 함마술드 유엔사무총장, 비행기 사고로 사망  25 케네디 美대통령, 유엔총회에서 3단계 완전구축안에 대해 연설
10	2 • 연합참모본부령 폐지(법률 제746호) • 국방부 연합참모국 설치(각령 제179호) • 정부조직법 개편  5 李盟基 해군참모총장, 구축함 등 도입에 따른 담화문 발표  12 美해군참모차장 클라우드 V. 리케츠 제독 방한	2 북한·실론 친선협회 창립(콜롬보)  11 북한, 시리아 新군사정권을 승인	1 소련, 알바니아와 단교  7 케네디·그로미코 회담  11 맥밀란 영국수상, 그로미코 소련외상과 베를린문제 토의

196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3 한·미 연합지휘관회의 개최(한국방위계획 논의. 서울 美제8군사령부)</p> <p>20 제6차 한·일회담 개최</p>	<p>14 김일성, 소련 방문(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 참석)</p> <p>30 북한·말리 공동성명 발표(평양)</p>	<p>19 월남, 비상사태 선포</p> <p>31 소련공산당, 신강령 채택(평화공존 노선)</p>
11	<p>4 러스크 美국무장관 내한</p> <p>11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 일·미 방문 등정(~25일)</p> <p>12 朴正熙 의장, 池田 일본 수상과 회담</p> <p>14 朴正熙 의장,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p>	<p>2 소련 부수상 웨 베 모스크 프스키, 북한 방문</p> <p>8 농림, 건설성 신설</p> <p>11 朝·동독 과학기술협정 조인(평양)</p> <p>24 한·일회담 반대 배격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p>27 노동당 제4기 2차 확대전원회의 개최</p>	<p>4 유엔사무총장에 우 탄트 선출</p> <p>12 케네디 美대통령, 對蘇戰도 불사한다는 중대선언</p> <p>20 터키, 연립정부 수립</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 최고회의 朴正熙 의장 일 행 방미 결과보고회 개최</p> <p>13 한·서독 차관협정 조인</p> <p>19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 원 정원령 공포</p> <p>28 최고회의 상임위, 국토건 설단 특별계획법안 의결</p> <p>31 국방연구원을 국방대학원 으로 개칭</p>	<p>6 유엔총회와 관련한 비망 록 발표</p> <p>19 외무성, 제16차 유엔총회 정치위의 조건부 초청을 거 부하는 성명 발표</p> <p>26 인민군 당전원회의 확대 회의 개최(김일성 참석)</p> <p>29 북한·동독간 통상 및 항 해에 관한 조약 체결</p>	<p>1 언커크 전체회의</p> <p>8 美국무부, 월남백서 발표</p> <p>17 중공, 백두산 영유권을 주장</p> <p>21 케네디(美)·맥밀란(英) 회담 개최(버뮤다)</p> <p>25 영국·서독 정상회담</p> <p>26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p>

# 196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정부, 연호를 西曆으로 변경</p> <p>5 육군사격지도대 창설</p> <p>13 정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p> <p>15 韓·獨, 韓·伊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를 각각 교환</p> <p>16 제6차 한·일회담 재개</p> <p>20 군인사법 제정 공포(법을 제1006호)</p>	<p>5 중공 통상대표단 평양 도착</p> <p>23 동독 통상대표단 평양 도착</p> <p>30 美州會議의 쿠바 의결안 규탄 평양 군중대회 개최</p>	<p>4 미국, 월남 방위에 관한 성명 발표</p> <p>9 영국·서독수상 회담(본)</p> <p>13 중공·알바니아 경제협정 조인</p> <p>15 제16차 유엔총회 제2기 회의 개막</p> <p>19 NATO 가입국 회의 개막</p> <p>30 美州會議(외상회담)에서 쿠바 추방 가결</p>
2	<p>3 울산공업센터 기공식</p> <p>6 군인사법 시행령 공포</p>	<p>8 민족보위상 명령 제6호 발표(부대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태세 완비)</p>	<p>3 케네디 美대통령, 7일부터 對쿠바 무역금지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0 국토건설단 창단식 거행</p> <p>18 국방부 기구 개편</p> <p>23 공군사관학교 제10기 졸업식</p> <p>26 육군사관학교 제18기 졸업식</p> <p>27 한·미 고위회담 개최</p> <p>28 · 해군사관학교 제16기 졸업식 · 쉐이 美제7함대사령관, 한국 수역에 핵잠수함 배치 를 언명</p>	<p>23 북한·실론간 통상협정 체결(콜롬보)</p>	<p>10 美·蘇 간첩교환(U-2기 사건의 파워즈와 원자력간첩 R.아벨)</p> <p>11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미·영에 18개국 군축회의 제안</p> <p>20 미국, 최초 유인위성 발사 성공</p>
3	<p>1 정부, 봉급에 호봉제도 시행</p>	<p>6 노동당중앙위 제4기 3차 전원회의 개최</p> <p>8 · 朝·蘇 문화 및 과학협력 협정 체결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3차 대회에서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난하기 시작</p>	<p>2 버마에 군사혁명(네윈 장군 재등장)</p>

196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6 최고회의, 정치활동 정화 법안 통과</p> <p>17 한·미 고위군사회담(워싱턴)</p> <p>19 원자력연구소, 원자로에 점화</p>	<p>21 民靑 대표단 쿠바 향발</p> <p>30 북한·알바니아간 문화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평양)</p>	<p>14 제네바 軍縮委 개막(18개국 참가)</p> <p>18 佛·알제리 정전협정 조인</p> <p>23 아르헨티나에 군부 쿠데타</p> <p>27 러스크 美국무장관, 군축위에서 점진적인 지역적 조사방안 제의</p>
4	<p>2 美합동참모회의 의장 내한(주한미군 월남 불투입을 언명)</p> <p>3 최고회의 朴의장, 램니처 美합참의장과 버거 주한美대사 참석하에 한·미 고위 회담 개최</p> <p>9 美육군장관 내한(한국군 군사력 강화 등 논의)</p>	<p>5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0차 회의 개최</p>	<p>6 동남아연합 외상회담, 아시아 경제협력기구안 지지 공동성명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3 한·미 고위군사회담(군원 계획 등 합의)</p> <p>27 군인복제령 공포: 3군 사 병제급장 통일(각령 700호)</p>	<p>23 중공 국가인민회의 대표 단 평양 도착</p> <p>30 평양 역전에서 무궤도전 차 개통식</p>	<p>17 EEC외상회의, 영국 가입 문제로 결렬</p> <p>23 미인공위성 레인저 4호 달 에 도달</p> <p>24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재선</p> <p>25 미국, 태평양에서 핵실험 재개</p> <p>29 케네디 美대통령·맥밀란 영국수상 회담</p>
5	<p>1 한·미 고위군사회담(추가 국방비 재원문제에 합의)</p> <p>12 해군, 보조 예인함 2척 도입</p> <p>20 국군조직법 전문 개정 (합동참모회의와 합동참모 본부 설치)</p>	<p>1 최고인민위 상임위, 중공 전국대표자 대회 대표단장 彭眞에게 국기훈장 제1급 수여</p> <p>15 사회단체들, 朴正熙정권 단죄 규탄성명 발표</p>	<p>1 佛, 사하라사막에서 지하 핵실험 성공</p> <p>9 ANJUS이사회, 월남지원 에 합의</p> <p>12 美제7함대 항공모함, 기 동부대 신고 동남아로 출동 (미해병대 태국 상륙, 라오 스 내전으로 태국 국경선 보호 위해)</p> <p>19 미군 500명 태국 진주</p>

196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29 공군 항공창 준공		
6			1 인도, 중공·파키스탄 국경 획정 협정에 강경항의
		3 북한 친선대표단 튀니지 방문	2 아프리카 19개국 외상회 의 개최(라고스), 아프리카 현장 채택
		5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	
	9 긴급통화조치법 최고회 의 통과	8 라오스 군사대표단, 평양 방문	8 美·蘇 우주전문가 회의, 양국 우주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10 제2차 통화개혁, 10대1로 평가절하(환을 원으로) 시행		12 라오스 연립정부수립 협 정 조인
		15 북한·중공과학원간의 과 학협조에 관한 계획서 조인	14 유럽 우주조사기구 협약 조인
	18 최고회의, 정부조직법을 개정. 국토건설청을 건설부 로 승격	20 최고인민회의 제2기 11 차 회의 개최(한국국회 및 정당·사회단체에 보내는 서 한 채택)	22 美정부대변인,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신분협정을 협 상키로 합의했다고 언급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23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35호)	24 북한,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라는 비망록 발표  27 체코 방문 북한경제대표단 평양 출발	25 美·英·佛 3개국, 소련에 베를린 긴장완화를 위한 4개국 회의 제의
7	1 정부 산림녹화운동 전개  4 카투사 병력조정(10,472명에서 11,029명으로)  6 육군 판결심사위원회, 한강 인도교 폭파책임자 최창식 대령('50. 9. 21 사형 집행)에 12년만에 무죄 판결  8 學保兵 최영오 일병, 예인의 편지를 돌려보고 놀리는 고참병 2명을 M-1소총으로 살해(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	5 제105전차여단을 제105전차사단으로 개편  8 북한대표단 이라크 방문	2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방송연설에서 남북한 불가침조약 지지한다고 언명  3 알제리, 정식 독립  5 드골·아데나워, 유럽 정치통합 조속 결론 공동성명  8 美, 초고공 핵실험 성공

196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10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에 김동하 장군 선임		10 美통신위성, 국내 및 英·佛에 TV중계 성공
	14 • 월남 국회의장 트르옹 빈래 일행 내한 •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자원 중위 외 3명, 북한군에 피랍	14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중공 방문	16 • 18개국 군축위 재개 • 소련, 베를린 4개국 회의안 거부 발표
	18 공군참모총장에 張盛煥 공군 소장을 중장으로 승진 임명, 金信 공군 중장은 예편	20 • 공병국 예하에 1개 도하연대 창설 • 포병사령부 예하 203밀리 포병대대 창설(2개대대)	20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 소련 방문 26 佛, 핵무장 예산 성립
30 학도군사훈련(ROCT) 입소식 거행			
8	3 각의, 국군조직법안 전문 개정안 결의	2 노동당중앙위 제4기 4차 회의 개최	2 케네디 美대통령, 駐유럽 미군감축 불고려 성명
		8 북한·월맹간 문화협조 계획 조인	5 소련, 40메가톤급 핵실험 재개
		10 북한, 소련제 W급잠수함 2척 도입	8 제네바 군축위, 核禁감시소를 약 80으로 삭감하는 미국의 타협안 발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21 한·일회담 5개월만에 재개, 쌍방청구권 구체적 액수를 제시	15 북한·소련 친선협회 대표단 평양 방문	11 소련, 有人우주선 보스토크 3호 발사 성공  27 미국, 금성관측 위성 매리너2호 발사 성공(1호는 실패)  29 소련, 군축위에서 '63년 1월 2일부터 전면 핵실험 금지 제안
9	3 駐中 대사에 金信 장군 임명  5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월선, 습격·도주하는 북한군 3명 사살, 2명 생포  20 한·미 행정협정 교섭 1년만에 재개	1 군당위원회에서 붉은기 中隊運動 전개  3 쿠바에 대한 미국정책규탄 평양시 군중대회  18 북한·동독간 원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평양)	9 美 U-2기 1대가 중공 華東地區 상공에서 중공공군에 의해 격추  14 중공·인도 국경분쟁 발생(중공군 맥마흔線 침공)  18 제17차 유엔총회 개막 (~12월 21일)

196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2 북한·중공간 과학기술협조 의정서 조인(북경)	24 유엔총회, 한국문제를 의제로 채택
10	1 병역법 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163호, 2차 전문개정)  12 국민투표법 및 동 시행령 공포  15 국방부직속 지방병무청 설치(10개 지구)	2 폴란드 과학기술 전학단 평양 도착  8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 선거 실시(383명)  9 日·朝협회 일본 대표단 평양 도착  23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12주년 평양시 기념대회 개최	4 미국, 대쿠바 경제봉쇄령(쿠바 미사일 위기)  11 예멘, 사우디아라비아에 선전 포고  20 미국, 쿠바 해상봉쇄  22 케네디 美대통령, 쿠바에 소련 미사일기지 건설중이라고 발표. 쿠바 해상봉쇄를 성명  24 유엔安保理, 쿠바문제로 긴급회의 소집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26 美국방부, 한국공군을 현 대화하겠다고 김종필 중앙 정보부장에게 확약	26 노동신문, 중공·인도사태 와 관련 중공지지 사설 게재	26 美·蘇, 쿠바문제 협의 개 시
11	5 정부, 개헌안 발의 공고. 12 월 17일을 국민투표 실시 일로 확정	29 노동신문, 쿠바사태와 관 련 흐루시초프의 행동을 비 난하는 기사 게재	28 소련, 쿠바에서 미사일 철수 결정
	11 해군 705함, 미국 괌도에 서 수리중 태풍으로 침몰	5 북한·중공간 통상항해조약 조인	3 소련, 화성 로켓발사
	20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서 북한군의 습격으로 미군 1명 사망	8 朝·日 적십자사간 제일동 포 귀국협정 1년 연장에 대 한 성명 발표	6 국제적십자사, 쿠바의 소 련미사일 철수 감시 동의
	22 최고회의, 개헌안 국민투 표 가결 공포	12 군사위원단 대표 소련 방 문(원조 획득 실패)	20 미국, 쿠바 해상봉쇄령 해 제
		17 노동신문, 쿠바사태와 관 련 소련 비난	21 중공, 인도에 국경분쟁 휴전제의(인도에서 거부)

196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23 외무성, 中·印 국경분쟁과 관련 중공지지 성명	26 제네바 18개국 군축회의 재개
	30 국토건설단 해체 발표 ('63년 1월 1일부터 복무자를 제1예비역에 편입 조치)	29 소련 방문 군사대표단 출발(12월 5일 귀국)	29 케네디(美)·미코얀(蘇), 쿠바사태 토의
12	6 계엄령 해제('61. 5. 16 선포)	4 제12차 체코 공산당대회에서 북한대표, 소련을 간접비난 연설	1 네루 인도수상, 중공의 휴전제의 거부
	15 英親王 李垠 국적 회복	8 김일성, 중공·인도 분쟁에 중공 입장을 지지	3 쿠바에서 소련폭격기 및 미사일 철수 개시
	16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10 제4기 5차 노동당대회 개최(4대 군사노선 채택)	4 NATO, 核軍이사회 창설 승인
			8 인도, 駐중공 영사관 2개 폐쇄
			10 소련, 인민최고회의 개막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3 서해 연평도 부근에 북한 함정 침입, 아군과 교전 (아군 3명 전사)</p> <p>26 • 국방부직제 개편(차관보 2인에서 1인, 기획관리관제 신설)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헌법 제87조 의거)</p> <p>31 국토건설단 해체</p>	<p>20 외무성, 유엔총회 제17차 총회에서 또다시 통과시킨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을 무효로 인정한다는 성명 발표</p> <p>26 軍黨 전원회의 개최</p> <p>30 쿠바혁명승리 4주년 평양시 기념대회 개최</p>	<p>19 케네디·맥밀란 회담</p> <p>23 NATO, 핵군 창설에 합의</p>

#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8 한·미 영사협정 조인</p> <p>21 김동하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해임</p> <p>28 군인연금법 제정 공포 (법률 제1260호)</p>	<p>8 노동자誌, 중공노선 지지 논설 게재</p> <p>13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평양 도착</p> <p>1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美帝와 박정권이 남조선에서 군사통치를 연장하려고 책동한다고 성명</p> <p>31 民靑中央委 전원확대회의 개최</p>	<p>3 佛,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미국에 통보</p> <p>10 美심계원, 미의회에서 대한군사원조사업 시정책을 건의</p> <p>14 드골 佛대통령, NATO협정 불참가 및 英의 EEC가맹 거부를 표명</p> <p>21 드골 佛대통령과 아테나워 서독 수상, 파리에서 회담(佛·서독 협력조약 합의)</p> <p>22 미·영·소 3국 핵실험 정지교섭 개시(워싱턴)</p>
2		<p>4 民靑中央委, 남한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p>	<p>2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및 요르단과 교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1 한·미간의 미해군 선박 대차에 관한 협정 체결</p> <p>22 공군사관학교 제11기 졸업식</p> <p>26 • 민주공화당 창당대회 개최 • 육군사관학교 제19기 졸업식</p> <p>27朴국방장관, 혁명주체세력의 군복귀를 환영하는 성명 발표</p> <p>28 해군사관학교 제17기 졸업식</p>	<p>7 인민군 창건 15주년 행사</p> <p>22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평양 도착</p>	<p>6 美국방차관 訪日, 극동방위전략 및 경제협력관계협 의</p> <p>12 제네바 군축위원회 재개</p> <p>22 • 美국방부장관, 카스트로주의 말살방침 계속 언명 • 소련 국방상, 쿠바 공격 시 美본토 보복 경고</p>
3	<p>7 朴최고회의 의장, 제1군사령부 시찰</p>	<p>1 朝·인도 공동성명(영사관계 설정 관련)</p> <p>2 북한·우간다간 대사관 설치 합의</p>	<p>1 중공, 中·印 국경에서 완전 군대철수를 발표</p> <p>2 중공·파키스탄 국경협정 체결</p>

196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1 중앙정보부, 김동하·박림항·이규광·박창암 등 19명을 쿠데타 음모로 체포</p> <p>16 • 제15대 국방부장관에 金聖恩 취임 • 박정희 의장, 4년간 군정 연장을 제의</p> <p>22 재야 정치인, 약 300명 구국선언 및 군정 연장 반대 데모</p>	<p>9 북한·예멘간 대사관 설치 합의</p> <p>19 시리아 아랍공화국 신정부 승인</p> <p>22 중공 문화대표단 평양 방문</p> <p>24 북한·아랍공화국간 외교관계 설정</p>	<p>8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이데올로기상의 평화공존 불가능성 주장</p> <p>18 영·서독 국방상, NATO의 다변적 핵무기 구상 지지 성명</p> <p>22 케네디 美대통령, 한국의 민정이양을 요망</p> <p>29 美, 63번째 지하핵실험 실시</p>
4	<p>1 • 제1군관구사령부 해체 -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통합 • 공군 F-86D 1대가 북한군 포화로 판문점 북방에서 추락</p> <p>2 버거 주한 美대사, 케네디 친서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전달(한국사태 언급)</p>	<p>1 북한·헝가리간 보건협정 체결</p> <p>2 최초로 75톤급 대형탐식기증기 제작</p>	<p>1 페루·콩고 국교수립에 합의</p> <p>2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모택동이 참가하는 中·蘇 고위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서한을 공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3 국방부, 군수뇌급 비밀회의(~5일)</p> <p>16 김재춘 중앙정보부장, 군 일부 쿠데타 음모사건 전모 발표, 박림항 등 34명 군재에 송치</p> <p>18 합동참모대학 설치법 공포(법률 제1330호)</p>	<p>12 서남아프리카 청년대표단 평양 도착(~18일)</p> <p>18 4월 봉기 3주년에 제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평양시 군중대회 호소문 채택</p>	<p>5 소련, 미·소 수뇌간의 직통전화 설치의 미국안 수락</p> <p>10 美핵잠수함 드레스호 침몰로 승무원 129명 사망</p> <p>12 중공 劉少奇, 인도네시아 친선 방문</p> <p>17 영국, 최초의 원자력잠수함 트레트노드호 취항</p> <p>22 美국방부, 라오스 대책으로 제7함대에 예비 준비조치</p>
5	<p>11 박정희 의장, 제2군사령부 순시</p>	<p>9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2차 회의 개최</p>	<p>4 유고슬라비아 방문중인 러스크 美국무장관, 양국간의 무역, 우호강화에 합의</p> <p>7 美, 텔스타 2호 통신위성 발사 성공</p> <p>9 중공, 중·소 이념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 제안</p> <p>11 미국, 캐나다에 핵미사일 공여를 수락</p>

196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14 미국, 주한 유엔군사령관에 하우스 중장을 임명(8월 1일 취임)	13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회의 개최	
	15 한·미 기술자료교환 협정 체결		15 중공 劉少奇, 월맹에서 胡志明과 유고의 수정주의 비난 공동성명
	16 국군조직법 부분개정 공포(법률 제1343호)		
	17 한국군 최초로 구축함 1척 도입	17 유엔군 헬리콥터 북한에 불시착	
	20 연합참모국을 합동참모회의 및 합동참모본부로 개편	21 중공과학원 대표단, 평양 도착(~6월 12일)	20 터키 군부쿠데타
	23 정부, 합동참모회의 의장에 김종오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민기식 중장을 임명	30 실론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	22 NATO이사회, 플라리스 잠수함을 NATO군에 배치 결정
	31 합동참모본부직제령 공포(각령 제1325호)		31 美태평양함대사령관, 플라리스 잠수함의 태평양 배치 언명
6	1·제8대 합참의장에 金鐘五 육군 대장 재취임 ·육군참모총장에 閔璣植 육군 대장 취임	3 우간다 勞組대표단 평양 도착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15 해군, 평화선침범 일본어 선 나포, 일본정부 나포 중 지 요청	5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 장 최용건) 중공 방문  16 모택동·최용건 회담  20 民青中央委 제16차 전원 회의 개최  21 북한·중공간 과학기술협 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  23 崔庸健·劉少奇 공동성명 발표(북경)  28 북한·말리공화국간 경제 협조 및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16 소련, 남녀 승무원 태운 우주선 발사  20 미·소 직통전신협정에 조인  21 佛, 자국의 대서양함대 철 수를 NATO이사회에 통고  22 케네디 美대통령, 서구 맹방 방문  27 미국, 한국에 480호 양곡 20만톤을 공급한다고 발표  28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동 독 방문(체코슬로바키아·헝 가리·폴란드와 정상회담)
7	2 한일회담, 일본측은 한국 의 40해리 전관수역 제의 에 대하여 13해리 주장		1 ·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 령 재선 · 蘇, NATO와 바르샤바조 약국간의 불가침조약 제안  3 미국, 부분핵실험금지에 동의

196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2 '63국방대학원 졸업식</p> <p>26 하우스(Hamilton H. Howze) 대장, 주한 유엔군사령관에 취임</p> <p>29 휴전선 남방에서 북한군의 습격으로 아군 4명 전사, 적 사살 1명</p> <p>30 무장간첩 4명 서부전선 침투·교전(간첩 3명 사살, 1명 자살, 미군 1명 전사)</p>	<p>4 북한대표단, 알제리아 독립절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 출발</p> <p>17 북한·루마니아간 문화·과학협정 조인</p> <p>25 • 외무성, 휴전협정 체결 10주년 관련 비망록 발표 • 소련 경제대표단 북한 방문, 북한 의외로 냉대</p> <p>27 중공·체코대표단, 평양 도착</p> <p>31 외무성, 남조선에서 미군의 남조선 장기강점을 정당화하려는 미국무부의 성명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p>	<p>15 미·영·소, 핵실험금지 회담 개최(모스크바)</p> <p>20 蘇·中 회담 결렬</p> <p>22 미·영, 인도와 군사협정 체결</p> <p>25 미·영·소, 부분핵실험 금지조약에 가조인(8월 1일 정식 조인, 모스크바)</p> <p>26 일본, 국제개발기구에 가입</p> <p>27 美 國 무 부, 한국의 항구적 평화 성취시까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성명</p> <p>30 美 國 무 부, 북한군의 휴전선 침범 공격에 강력조치 취할 것이라고 성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4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유엔군을 공격, 2시간 교전</p> <p>11 송요찬 전 내각수반 구속(~18일 적부심사로 석방)</p> <p>15 육·해·공군 사병계급장 통일</p> <p>24 합동참모대학 창설(국일명 제17호)</p> <p>30 박정희 육군 대장 전역(중부전선 5군단에서 전역식)</p>	<p>1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체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p> <p>4 노동신문, 사실에서 美帝의 핵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주장</p> <p>10 소련제 W급잠수함(1,055톤) 2척 도입</p> <p>14 북한·버마간 친선협회 창립</p> <p>22 북한, 유고슬라비아를 수정주의자들이라고 비난</p> <p>24 북한·통일아랍간 국교수립에 합의</p> <p>30 북한·실론간 친선협회 창립</p>	<p>1 미·영·소 外相, 핵실험금지협정에 조인</p> <p>9 러스크 美국무장관 소련방문, 흐루시초프 소련수상과 흑해별장에서 회담</p> <p>15 중공, 부분핵실험금지조약에 관한 소련의 성명 반박</p> <p>19 서독, 부분핵실험금지조약에 조인</p> <p>20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유고 방문</p> <p>30 미국, 파키스탄의 중공접근 보복으로 차관 중단</p>

196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0 공군 제1훈련비행단을 제1전투훈련비행단으로 개편</p> <p>27 육군보통군재, 군 일부 쿠데타 사건 관련 金東河에 7년 언도</p>	<p>2 북한, 월맹에 토목건축기사를 파견하였다고 발언</p> <p>3 노동당중앙위 제4기 7차 전원회의 개최</p> <p>7 현대적 설비를 갖춘 국립 중앙도서관 준공</p> <p>15 중공 국가주석 겸 공산당중앙위 부주석 劉少奇 북한 방문</p> <p>19 북한·알바니아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p> <p>30 金日成 참석하에 평양학생소년궁전 개관</p>	<p>4 북한과 수교한 아랍공화국, 한국과도 외교사절급으로 승격시키자고 제의</p> <p>17 제18차 유엔총회 개막</p> <p>20 케네디 美대통령, 유엔총회에서 미·소 달세계 공동 탐험 제안</p>
10	<p>3 동학혁명 기념탑 제막식</p>	<p>5 • 金日成, 김일성 군사대학 7기 졸업식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고 연설 • 북한·영국간 무역협정조인</p>	<p>3 미·영·소 外相, 대기권 밖 핵무기 발사금지에 원칙적 합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5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 당선(투표율 84.99%) 4,692,644표 획득</p> <p>19 육군 제301병기대대장이득주 중령(36세) 등 일가족 6명이 탈영병 상병 고재봉에 의해 피살</p> <p>24 한·미 특수 핵물질 대역에 관한 협정 체결</p> <p>25 육군 제5헌병대대 창설</p> <p>29 한국올림픽위원회, 동경 올림픽의 참가 결정</p>	<p>14 日·朝 무역회 사무국장, 평양 방문</p> <p>21 북한올림픽위원회,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정식 成員으로 가입</p> <p>28 노동신문, 소련을 현대수정주의라고 비난</p>	<p>8 유엔총회, 베트남 조사단 파견 결정</p> <p>10 부분핵실험금지조약 발효</p> <p>12 아데나워 서독수상 사직, 신임수상에 에르하르트 지명</p> <p>23 소련공산당 이룬誌 코뮤니스트, 중공노선 저지에 全力集結을 전세계 공산주의자에게 호소</p> <p>26 흐루시초프 소련수상, 미국과 달에 대한 경쟁의사가 없다고 천명</p>

196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31 캄보디아왕국의 독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 평양 출발	30 모로코·알제리, 휴전협정 조인 31 모로코, 쿠바와 단교 선언
11	5 최고회의, 정부의 '64예산안을 반환. 재계획 통보  8 정부, 월남의 군사정부를 승인  13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홍정의 대위 사망, 2명 중상  22 · 새 국회법 공포 · 영친왕 李垕 56년만에 일본에서 환국	1 알바니아 정부 통상대표단 평양 도착  6 과학자 대표단, 중공 항발  15 朝·인도네시아, 통상·과학·문화기술협정 조인  18 최고인민위 상임위, 북한 일부 행정구역을 변경 및 신설함에 대하여 政令 발표  22 제18차 유엔총회와 관련하여 비망록 발표(조국통일문제 해결의 길)	1 월남, 군부 쿠데타(고 딘 디엠 대통령 피살)  7 美태평양함대사령관, 플라리스 잠수함의 태평양 배속을 성명  11 佛, 중공과 수교  16 중공, 인민대표자대회 개막  18 이라크, 쿠데타 발생  19 캄보디아, 미국 원조 대신 佛의 원조받겠다고 시사  22 케네디 美대통령 피살(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4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 케네디 美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방미</p> <p>25 • 박정희·존슨 회담(공동성명 발표) • 최고회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정년 65세로)</p>	<p>26 북한·캄보디아간 통상협정 체결</p>	<p>27 유엔총회, 군축·핵실험금지 등 결의</p>
12	<p>5 領空管理業務, 유엔군에서 교통부로 이관</p> <p>14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정(법률 제1508호)</p> <p>16 • 국군조직법 개정(법률 제1574호) •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702호)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설치(각령 제1754호)</p>	<p>3 지방대의원 선거 실시(100% 투표, 100% 찬성)</p> <p>6 과학자대표단, 동독·소련 향발</p> <p>9 일본 기자협회 및 실업계 대표단 평양 방문</p> <p>15 외무성, 주한미군 철수 및 언커크 해체요구 성명 발표</p>	<p>6 佛, 중공에 통상문호 개방</p> <p>9 유엔총회, 한국 단독초청안 가결</p> <p>13 유엔총회, 참전 14개국의 統韓결의안 가결</p> <p>16 NATO 각료이사회 개막</p>

196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7 · 제5대 대통령에 朴正熙 취임(제3공화국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헌법 발효</li> <li>· 제3공화국 탄생</li> </ul>	<p>19 쿠바혁명승리 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북한 친선대표단 평양 출발</p> <p>25 朝·日간 정기선박 配船에 관한 협약 체결</p>	<p>19 러스크(美)·버틀러(英) 외상회담</p> <p>25 키프로스 사태 악화로 미·영·NATO 등이 개입</p> <p>29 존슨(美)·에르하르트(西獨) 수뇌회담</p>

# 196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미터제 실시</p> <p>4 한·미 고위 경제·국방관계 회담 개최</p> <p>6 美軍票 일제히 갱신</p> <p>14 공군 F-86D 1대, 판문점 북방에서 북한 대공포화에 피격 격추(훈련중 무전기 고장으로 군사분계선 월선)</p> <p>18 • 제주도 야간통행금지 전면 해제 • 로버트 케네디 美법무 장관 내한(19일 이한)</p> <p>25 판문점 관광객중 2명 월북사건 발생(1명 자진, 1명 납치)</p>	<p>22 평양·신의주간 철도 전기화 공사 착공</p>	<p>7 佛, 중공을 정식 승인</p> <p>8 존슨 美대통령, 연두교서에서 평화를 위한 10개 방안 제시</p> <p>13 아랍 13개국 정상회담 (카이로)</p> <p>17 미국, 파나마 분쟁으로 단교</p> <p>26 佛, 중공을 승인(양국 외교관계 수립 동시 발표)</p>

196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8 리스크 美국무장관, 한·미간의 현안문제 협의차 내한(29일,朴·리스크 회담)		28 미군기 1대, 동독 상공에서 격추 30 월남 쿠데타 발생(쿠엔 칸 집권)
2	12 버거 주한 美대사, 미국은 한국방위 무기한 분담한다고 언명(관훈클럽 만찬회에서 연설) 22 학군사관 제2기 임관식 24 장성환 공군참모총장, '65년까지 한국공군 F-5A 제트기로 현대화한다고 언명 27 해군사관학교 제18기 졸업식 29 한·일 항공기 쌍무협정 체결	12 최고인민회의 제3기 3차 회의 개최 18 북한 최고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에게 서한 발송(미군 헬리콥터 조종사 문제에 대하여)	11 자유중국, 對佛 단교 선언 12 美대통령과 영국수상, 키프로스 파병 및 佛의 중공 승인문제 토의 24 버틀러 영국외상,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유엔상비군 제안
3	4 김성은 국방부장관, 현행 징집연령 35세를 30세로 인하한다고 언명	4 朝·日 정기 配船계약에 의해 기항하는 일본 첫 선박 남포항에 도착	3 존슨 美대통령과 윌슨 영국 노동당수 회담 4 유엔안보리, 키프로스 평화안 가결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6 공군사관학교 제12기 졸업식</p> <p>7 최초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국가안전보장회의 규정 심의)</p> <p>11 육군사관학교 제20기 졸업식</p> <p>20 백령도 근해서 어로작업 중이던 2척의 어선(어부 26명), 북한 경비정에 납북</p> <p>24 한·일회담 반대 데모</p>	<p>27 일본공산당 대표단 평양 도착</p>	<p>9 美·越南 합동사령부 설치</p> <p>10 미국 정찰기 RB-66, 동독에서 격추</p> <p>14 유엔평화군 제1진 키프로스 상륙</p> <p>19 군축회의 美대표, 2년간에 폭격기 480대 감축제의</p>
4	<p>1 • 金국방부장관, 육군은 호크유도탄으로, 공군은 F-5A기로 현대화한다고 언명</p> <p>• 한국군 최초의 호크방공유도탄부대 창설(제111호크방공포대대)</p>		<p>4 유엔안보리, 키프로스 평화유지군 창설을 만장일치로 가결</p> <p>5 미국의 맥아더 원수 서거</p>

196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6 정부, 맥아더 장군 장례식에 崔斗善 총리를 파견(국회는 張弼淳 부의장)</p> <p>22 박대통령, 시정의 일대쇄신을 위한 훈령(3호)을 내각에 지시(불법데모 저지 등 5개 항목)</p>	<p>18 오스트레일리아 공산당 당수, 북한 방문</p> <p>19 노동신문, 소련의 수정주의를 비난</p>	<p>8 미국, 무인우주선 발사</p> <p>16 佛, 독자핵무기 개발 선언</p> <p>28 佛, NATO 해군에서 철수</p>
5	<p>1 육군 제2군사령부 예하 학군단을 각 군관구 및 전투병과 교육사령부로 각각 예속 변경</p> <p>2 공식 환율, 255:1로 인상</p> <p>9 • 미국, 한국을 포함한 25 개국에 월남전 지원 요청 • 최두선 국무총리 사직, 새 국무총리에 丁一權 취임</p> <p>16 북한에 1년간 억류중이던 미국 조종사 2명, 판문점을 통해 귀환</p>	<p>14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중공 국가주석 유소기와 회견</p>	<p>2 베트남, 사이공 정박중인 미국 수송선을 폭파</p> <p>9 미국, 2인승 우주선 발사</p> <p>14 미코안 소련 제1부수상, 일본 방문(~27일)</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21 • 법원청사에 무장군인 침입                      • '64년도 제6차 국가안전 보장회의 개최(국군 월남지원에 관한 보고 및 국내외 정세보고)</p> <p>22 국회, 丁총리와 관계장관 출석시켜 法院 난입사건을 추궁(~23일)</p> <p>27 국회, 김성은 국방부장관 65:98로 해임건의안 부결</p>		<p>23 미국, 라오스에 미해병 2천명 출동령</p> <p>26 중공, 라오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제의</p> <p>27 • 미·소간의 영사조약 체결                      • 인도 네루 수상 서거</p>
6	<p>1 • 공군 제1전투훈련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                      • 공군비행학교 창설</p> <p>3 6·3서울대학생 데모사태로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사령관 민기식-육군참모총장)</p> <p>5 박정희 대통령, 버거 美대사·유엔군사령관과 요담</p> <p>6 공수특전단 장교, 동아일보사 침입</p>	<p>1 제117차 북송선, 청진항에 도착</p>	<p>6 美제7함대, 월남 항발</p>

196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7 계엄사령부, 계엄선포후구 속 348명(학생 168, 언론인 7, 폭력배 등 173명)</p> <p>25 유엔군 자유수호 참전기 넘비 제막</p>	<p>9 북한군, 한국의 6·3사태에 대해 전군에 전투준비강화령 하달</p>	<p>15 리스크 미국무장관, 상원 비밀회의에서 미군기가 라오스의 라오지구를 폭격했다고 증언</p> <p>16 중공, 미군기의 라오스 폭격은 중공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p> <p>21 소련의 프라우다지, 중공의 反蘇운동을 비난</p> <p>30 존슨 美대통령, NATO가 맹국들과 핵정보 공여확대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p>
7	<p>1 丁총리, 여야중진 초청하고 시국수습방안을 논의</p> <p>8 정부, 키프로스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위해 1만 달러 기증</p> <p>9 다야난다 태국 육군참모총장 일행 내한</p>	<p>8 월맹민족해방전선 대표단 평양 도착</p>	<p>3 드골 佛대통령, 에르하르트 서독수상과 회담(본)</p> <p>6 소련, 유엔가맹국에 유엔상비군 설치를 제안</p> <p>9 미국정부, 윈드롭 길맨브라운 신임 주한대사 정식 임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0 버거 주한 美대사 이임</p> <p>15 월남정부, 한국지원을 정식요청</p> <p>16 정부, 공군참모총장에 朴元錫 공군 중장 임명</p> <p>28 국회,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재석 142, 가 139, 부 0, 기권 3표)</p> <p>29 비상계엄령 해제</p> <p>31 국회, 국군 해외파견에 관한 안전 동의</p>	<p>10 조·일 상품전시회 개최에 관한 합의서 교환</p> <p>25 남부월남 인민투쟁지지위원회와 월남민족해방전선 대표간 공동성명 조인</p>	<p>23 佛, 독자적 핵군창설을 발표</p> <p>26 美洲외상회의, 대쿠바 단교 결의</p> <p>30 美레이저 7호, 사상최초로 달표면 촬영</p>
8	<p>2 국회,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결의</p> <p>3 · 한국정부, 월남정부에 지원 공한 발송 · '64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2 가네포 집행위원회에 참가할 대표단 평양 출발(9월 7일 귀국)</p>	<p>2 美구축함 매독스호, 통킹만에서 피격</p> <p>4 제2차 통킹만사건(월맹 PT 정 3척이 美구축함에 어뢰 공격)</p>

196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발족(대통령령 제1904호) • 브라운 신임 美대사 着任</p> <p>13 도마우 월남 부수상 내한</p> <p>19 '64년도 제9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국가안전보장 정책상의 재반 문제점과 대비책)</p> <p>27 보사부, 우리나라 전역을 콜레라 경계지구로 선포</p>	<p>5 통킹만사태에 따른 전군에 전투준비강화령 하달</p> <p>6 북한, 월맹지원 성명</p>	<p>5 美제7함대 항공기, 越盟 해군기지 4개소에 보복공격</p> <p>8 터키군, 키프로스 폭격</p> <p>23 월남학생 데모 폭동화</p> <p>25 월남 칸 대통령 사퇴 성명</p>
9	<p>5 한·미·월 군사실무합의서 서명(사이공)</p> <p>10 국회, 야당의 황태성 간첩사건 등 6개 특별 국정감사안 부결</p> <p>11 • 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파월(22일 월남 도착) • 국회, 4년만에 국정감사 실시</p>	<p>5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군사 고문 평양 방문</p> <p>13 朝·중공간 국경철도 공동개발에 관한 의정서 조인(길림)</p>	<p>4 英·佛, 미사일 공동생산협정 체결</p> <p>10 캄보디아, 對美 단교 선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5 정부, 한·미 고위회담 개최(정일권 총리, 부총리, 외무, 국방, 상공, 재무, 합참의장, 브라운 美대사, 번스틴 처장, 하우스 사령관)	15 인도네시아 과학자 대표단 평양 방문	
10	1 · 육군, 보병연대에 전투지원중대 창설 · 육군 제1·2·3·5·6 중박격포대대 창설(4.2인치 박격포대대) · 번디 美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내한 3 李東元·번디 공동성명 한일회담 성공지지 및 경제원조 계속 등 내용 포함 7 丁국무총리, 자유중국 방문차 출발(~14일) 9 북한선수 辛今円, 한국에 있는 아버지 辛文濬씨와 일본 동경에서 14년만에 상봉 11 한·자유중국 우호조약 가조인(대북) 14 장창선 선수(레슬링 플라이급) 동경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획득	8 동경올림픽대회 불참 철수 결정(~10일, 니가다에서 철수) 14 루마니아 노동청년동맹 대표단 평양 방문(10월 28일 귀국)	5 제2차 비동맹諸國 정상회담 개최(57개국 참가, 카이로)  10 동경올림픽 개막

196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1 • 군인가족수당 지급결정 (10월분부터 1인당 500원) • 김의태 선수(유도 중량급) 동경올림픽에서 은메달 획득</p> <p>31 한·월,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협정 체결</p>		<p>15 蘇에 정변, 흐루시초프 실각, 수상에 코시긴, 당제1서기에 브레즈네프 취임</p> <p>16 중공, 첫 핵실험</p> <p>25 일본 池田 수상 사임</p>
11	<p>1 정부, 對佛·對伊 어업 차관협정 수정계약 조인</p> <p>7 국회 국방위, 군원이관 문제 놓고 정부 추궁</p>	<p>1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북한 방문</p> <p>4 북한 군사대표단, 인도네시아 방문</p>	<p>1 베트남, 주월남 美공군기지를 포격(B-57폭격기 27기 파손)</p> <p>4 제36대 美대통령에 존슨 압도적으로 당선</p> <p>5 주은래 중공수상 소련 방문</p> <p>9 일본수상에 佐藤榮作 취임</p> <p>12 美핵잠수함, 일본 사세보항에 첫 기항</p> <p>14 미·서독, 방위협정 체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16 국회, 국방, 외무, 문공운 영분과위 본회의에 국정감 사 제출		
	19 포츠 美 AID 극동담당 차관보 내한		
	24 • 코만 태국외상 내한 • 국회 국방위, 군사원조 이관반대 결의		20 朝·日신문, 우 탄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등 유엔참 가 제의에 언어도단이라 반박
	27 한·자유중국 우호조약 체결		
	29 국회, 국토통일방안 결의 안 채택	29 조·월맹간 경제기술원조 협정 체결	28 소련시민, 주모스크바 미 ·영 대사관 습격(콩고 공수 작전에 항의)
12	1 嚴家淦 자유중국 행정원 장 내한		2 미군기, 월맹 폭격
	3 탈프 W. 알보로 美의원단 일행 14명 내한		
	4 한·서독 경제협력협정 가 조인		
	6 박대통령, 서독 방문	7 북한 군사대표단, 월맹 파 견	7 그로미코 소련외상, 유엔 총회에서 군축수뇌회의 제안
			8 미국, 태평양에 플라리스 잠수함 배치

196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1 정부, 한·일 2,000만달러 연불차관협정 체결</p> <p>14 한·독 정상공동성명 발표</p> <p>30 하우스 유엔군사령관, '65년중에 유도탄부대 발족한다고 언명</p>	<p>14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0차 전원회의 개막</p> <p>17 북한 군사사절단, 월맹 방문</p> <p>25 콩고 공화국 정부 대표단 평양 도착</p>	<p>17 영국, 중공의 핵위협을 공동으로 저지하라고 소련에 제의</p> <p>23 영국, 중공의 핵실험금지 수뇌회의 제안 거부</p>

# 196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 정부, 월남정부의 한국군 증파요청서 접수</p> <p>4 크리스토퍼 노래드 美국 무부 한국과장 내한</p> <p>8 각의, 한국군(비전투원 약 2,000명) 파월을 의결</p> <p>11 육군사병의 복무연한을 2년10개월에서 2년6개월로 단축</p> <p>22 · 박대통령, 행정사무 간소화 방안 지시                      · 전북 완주군 상공에서 F-86제트기 충돌사고 발생                      · 브라운 주한 美대사, 한국군의 월남파병 환영의사 표명</p> <p>25 제2한강교 준공 개통</p> <p>26 · 박대통령, 월남파병 담화문 발표                      · 한국군의 파월 결의안 국회에서 가결                      · 국회, 월남파병 동의</p>	<p>4 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교원대회 실시(~6일)</p> <p>9 외무성, 한국군의 월남파병관련 규탄성명 발표</p> <p>22 한국의 월남파병과 관련하여 비망록 발표</p>	<p>2 인도네시아, 유엔탈퇴 선언</p> <p>4 존슨 美대통령, 연두교서 발표(평화외교촉진 월남정책 불변을 시사)</p> <p>15 美·越 해군기, 월맹 폭격</p> <p>20 존슨, 2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p> <p>24 처칠 전 영국수상 서거</p> <p>27 월남 군부 쿠데타, 쿠엔칸 정권 장악</p>

196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5 주월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 부대) 결단</p> <p>6 부산 앞바다에 소련 잠수함 桴上</p> <p>7 국군과 유엔군에 대기태세령 발령</p> <p>9 파월장병 환송 국민대회 개최</p> <p>11 합동참모의장, 국방위에서 주방어선이 한강에서 서울 북방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p> <p>16 F-5A기, 한국에 첫 배치</p> <p>20 해군사관학교 제19기 졸업식</p> <p>22 학군사관 제3기 임관식</p> <p>23 육군사관학교 제21기 졸업식</p>	<p>9 외무성, 미군기들이 월맹을 수차에 걸쳐 폭격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p> <p>11 소련수상 코시긴, 북한 방문</p>	<p>4 • 소련수상, 월맹 방문 • 蘇·중공수상 회담</p> <p>7 미군, 월맹의 탄호이기지 폭격</p> <p>8 베트남 전면공세</p> <p>10 佛·印支평화회담 제의</p> <p>13 중공, 월남에 무력개입을 시사</p> <p>17 월맹에 소련 지대공미사일 도착</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4 • 공군사관학교 제13기 졸업식</p> <p>•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민방위개선위원회 설치</p>	<p>25 한·일회담 반대성명 발표 (외무성)</p>	<p>27 미국, 월남백서를 발표</p>
3	<p>5 삼척 부근 해상에서 북한 간첩선 나포(북한선원 6명, 상륙간첩 2명 생포)</p> <p>9 행정개혁위원회, 정부기구 개편안 작성</p> <p>11 국회 국방위, 병역법중 재학생들에 대한 전면 징집 연기 요구</p> <p>16 주월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 부대) 월남에 도착(한국출발 10일)</p> <p>17 국방부, 한·미 공군간 空域관리권 한국에 이관합의서 체결</p>	<p>3 북한대표단 소련 방문(유류공급문제 협의 위해)</p> <p>5 미군기들이 또다시 월맹에 폭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p>	<p>2 미군, 월맹에 대규모 폭격 (테일러 주월미대사, 보복 폭격에만 한정치 않는다고 언명)</p> <p>4 소·중공, 미·월의 월맹폭격에 경고 성명</p> <p>8 미해병 2개대대, 다낭에 상륙</p> <p>19 소련 보스토크 2호 우주선에서 인간 최초의 우주산책에 성공</p>

196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2 정부 단일환율제 실시</p> <p>30 군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대통령령 제2092호)</p>	<p>26 북한당국, 월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군을 파견하겠다고 발표</p> <p>31 소련, 북한에 미그-21기 제공</p>	
4	<p>1 일본, 한·일회담에서 평화선 消滅 명문화 요구</p> <p>5 공군 F-5A기 일부 도착 발표</p> <p>10 제9대 합참의장에 張昌國 육군 대장 취임</p> <p>13 정부, 국회에서 한·일협정 가조인 경위보고, 한·일회담 반대데모 학생 11명 구속, 32명 입건, 201명 즉재에 회부했다고 보고</p> <p>20 유엔군사령관에 비치(D. E. Beach) 대장 임명(6월 16일 취임)</p>	<p>9 김일성, 인도네시아 방문</p> <p>15 북한·인도네시아간 공동성명 조인(자카르타)</p> <p>20 김일성, 버마 방문</p>	<p>8 판반동 월맹수상, 월남전 해결 4개 조건 제시</p> <p>12 유엔사무총장, 114개국 군축회의 소집</p> <p>14 존슨 美대통령과 월슨 英수상 회담(월남 문제)</p> <p>18 소련, 필요시 월맹에 소련군 파견하겠다고 언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26 대청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제6대영호와 어부 12명 납북		27 드골·그로미코 회담(월남 문제 토의)
	29 마셜그린 미국무부 극동 담당 부차관보 내한(~5월 2일)		
	30 F-5A/B기 인수(A:16대, B:4대)		
5	2 로스토 美대통령 고문 내한	3 뉴질랜드 공산당위원장, 평양 도착	3 캄보디아, 對美 단교
	10 軍일부, 반정부 음모적발, 元忠淵 대령 등 7명 구속		
	14 월남정부, 한국군 전투부대 요청		13 서독·이스라엘, 전후 20년만에 수교
	16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5 美국무장관 러스크·소련 외상 그로미코 회담
	17 한·미 정상회담		16 월남 비엔호아 美공군기지에 대폭발사고(비행기 40대 손실)
	20 박정희 대통령,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과 회담		
	21 클롱 비테초테 태국 국방대학원장 내한		

196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23 한·미 행정협정 체결		25 중공군, 계급제 폐지
6	1 • 한국군 최초의 나이키 유도탄부대 창설(제222 나이키 방공포대대) • 김성은 국방부장관 방미 보고에서 국군 월남파병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부언	4 인도네시아 대통령 문화 사절단 평양 도착	1 중공, 미국의 월맹 폭격 방관 않는다고 강조 4 • 존슨 美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서독수상 회담 • 美 제미니 4호 발사, 화이트 소령 20분간 우주산책 5 佐藤 일본수상 한·일협정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조인 하겠다고 언명
		7 알제리 대통령 특사 평양 도착	
		10 청진~나진간 철도개통	
		12 알제리 군사대표단 평양 도착	
	15 박정희 대통령, 브라운 주한 美대사와 회담		
	17 육군본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5017호)		
	22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	19 한·일회담 반대하는 비망록 발표	
	26 월남수상, 국군의 파월을 정식 요청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28 한·미 고위군사회담, 월남 파병문제 검토		29 주월미군, 사이공 북방에서 처음으로 직접 전투에 참가	
	30 주한 프랑스 연락장교단 철수			
7	1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개최하고 월남 파병문제 토의		3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 소련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 말라고 서방측에 경고	
	2 閣議, 1개 전투사단 파월 결정			
	5 임진강에서 북한 소형잠수함 노획			
	8 북한, 한국군 월남파병으로 증강되는 무기와 장비만큼 월맹에 제공하겠다고 성명			
	9 • 국방부, 해병대 전투부대를 9월경 파월시키겠다고 합참의장서리가 밝힘 • 백구부대 및 군사원조단 460명 증파			9 존슨 미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월남에 미군 증파 천명(7만5천명선)
	10 김성은 국방부장관, 3개 예비사단을 전투사단으로 장비화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했다고 언급			12 월맹, 중공·소련과 원조협정 체결
	14 국회, 한·일협정 비준안과 국군월남파병안 발의	14 한국군 월남파병 분쇄 구탄 평양시 군중대회		
15 육군 제11·33·55 고사포대대 창설				

196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16 폭우로 한강주변 물난리 이재민 14만1,000명, 사망·실종 67명	16 朝·월맹, 경제·기술원조 협정 체결	16 소련, 세계최대의 위성 프로토타입 발사(무게 12.2톤)
	18 경기도 양주군 송추유원지에 무장간첩 3명 출현/교전(1명 생포, 2명 도주, 경찰 2명 전사)		
	19 李承晩 전 대통령, 하와이 마우날라니 요양원에서 서거	20 중공, 한국전 참전 대가로 백두산 근처의 수백평방마일의 북한 영토 요구	
	30 육군방첩대원, 김해에서 경찰서 난입 및 기자납치사건 발생	25 월맹인민회의 대표단, 평양 도착	28 미국, 주월미군 5만명 증파 발표(총 12만 5천명으로)
8	2 · '65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 · 朴·존슨 교환서신 공개, 사단규모의 전투부대 파월 승인 합의	3 쿠바대표단, 북한 방문	
	13 국회, 전투사단 파월안 가결(야당 불참)	13 월맹 친선대표단, 북한 방문	11 소련, 제네바 18국 군축위에서 핵전파 방지조약에 조인할 용의 있다고 언명

196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0 金국방부장관, 월남 한국 군총사령부를 설치키로 했다 다고 언급</p> <p>26 서울지구에 위수령 발동, 육군 제6사단 서울 진주</p> <p>31 丁국무총리, 정치학생·정치교수 추방 등 정부방침 7개항 발표</p>	<p>23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일행, 북한 방문(김일성과 회담)</p>	<p>14 美해병 제1사단(2,800명) 파월</p> <p>18 베트남, 비엔호아 기지 포격, 美 보병부대와 첫 교전</p> <p>26 코시긴 소련수상, 월맹대표들과 회담</p>
9	<p>2 • 정부, '66년도 예산안 국회에 제출 • 국방부, 서울에 진주한 6사단 서울 외곽으로 철수했다고 발표</p> <p>6 • 주월 한·미 군사실무약정 체결 • 한·월 군사실무약정 체결</p> <p>20 파월 청룡부대(해병 제2여단) 결단</p>	<p>6 월맹인민대표단, 평양 도착</p>	<p>2 인도·파키스탄간 정규군 교전</p> <p>4 유엔안보리, 인도·파키스탄 즉시 정전 요청을 결의</p> <p>11 소련, 인도·파키스탄 양국에 정전을 요청</p> <p>12 美 제1공수기동사단 파월</p> <p>20 중공, 海南島上에서 미군기 격추</p>

196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5 • 정부, 衛戍令 해제                      • 맹호부대(수도사단) 제 1진 270명 着越(24일 서울 출발)                      • 주월 한국군사령부 창설</p> <p>27 경북 영양·안동에 무장 간첩 출현, 일가족 2명 살해</p> <p>30 정부, 金利 현실화 실시 (저금 30%, 대부 26%)</p>		<p>22 인도·파키스탄 정전 성립</p> <p>25 미군, 월남에 야전군사령부 설치하고 월남정부군의 지휘권 장악</p>
10	<p>3 맹호부대(수도사단) 부산항 출발(해병 제2여단 포함. 9일 월남에 도착)</p> <p>4 강제구 육군 소령(당시 대위), 수류탄 위에 덮쳐 부하들 구하고 산화</p> <p>9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월남 감란 도착</p> <p>12 주월 한국군사령부旗 수여</p> <p>15 동부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북한군이 아군 습격/도주(아군 이승현 일병 피랍)</p>	<p>4 캄보디아 시아누크, 북한 방문</p> <p>10 노동당 창건 20주년 대회</p>	<p>5 佐藤 日首相, 관할권은 남한에 국한, 평화선은 사실상 소멸, 독도는 앞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공식 태도 천명</p> <p>12 동경, 10여만명의 한·일 회담 반대데모</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6 맹호부대(수도사단) 제3진 부산항 출발(22일 월남 도착)</p> <p>24 강원도 양구군 민가에 무장간첩 5~6명 출현, 김두표 중령 일가 3명 살해 도주</p> <p>26 맹호부대(수도사단) 제4진 부산항 출발(11월 1일 월남 도착)</p> <p>29 • 강화도 갯벌에서 조기 잡던 어부 109명 납북 • Phung Son 전투, 수도사단, 월남 참전후 최초로 적과 교전, 21:00부터 익일 02:30까지 베트남이 제1연대 1대대 3중대지역을 기습했으나 이를 격퇴(~30일)</p>	<p>18 헝가리 사회노동당 대표단, 북한 방문</p> <p>28 김일성, 중공인민대표단 접견</p>	<p>18 인도네시아, 공산당 불법화</p> <p>28 佛·蘇 의상회담</p>
11	<p>1 북한 해군대위 이필은 귀순</p> <p>4 Nui ca du 전투, 주월남 해병 제2여단의 최초 공세작전으로 제2대대 5중대가 공격 감행, 까두산 요새를 점령, 격파</p> <p>8 쿠엔 카오 키 월남수상 내한</p>	<p>1 북한·중공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p>	

196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0 국회, 한·중 우호조약 비준 동의</p> <p>15 · 한·월 기술협조조약 체결(민간기술자 1,000명 파월키로) · 육군 제101·102·103·105병원 창설(제1·2·3·5야전병원 해체)</p> <p>20 · 한·일 양국정부, 12월 23일 한·일조약 비준서 교환하기로 합의 · 미국의 '66 잉여농산물 원조 5,000만달러로 한·미간 합의</p> <p>23 · 정부, 민방위법안 확정 · 김성은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의 대한군원 이관은 '66년에 중단된다고 언급</p>	<p>11 과학기술협력 대표단, 폴란드·체코 향발</p> <p>15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17일)</p> <p>18 조·중 국경철도 공동운영 의정서 조인</p> <p>24 외무성, 월맹지원성명 발표</p>	<p>12 일본정부, 한·일조약 비준안 중의원 통과</p> <p>14 대만해협에서 중공·국부군 교전</p> <p>17 유엔총회, 중공가입안 부결</p> <p>21 뉴욕타임즈, 美核彈을 6년전부터 NATO제국의 항공기·미사일에 장비했다고 보도</p> <p>26 美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제7함대에 배치</p>
12	<p>2 정부, 식량생산 5개년계획 마련</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3 한·중 우호조약 발효('64년 11월 27일 조인)</p> <p>4 국회, '66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30억원 삭감)</p> <p>13 문교부, 학사등록제 성안</p> <p>18 한·일협정 비준서 상호 교환</p> <p>24 국방부, 육군·공군 27명의 장성급 '66년도 진급자 발표</p> <p>26 월남전, 크리스마스 휴전 약속 위반하고 베트남 전면 공세</p>	<p>5 • 보병 제42·43여단 창설 • 여자 고사포여단 창설</p> <p>11 북한 대표단, 월맹 방문</p> <p>20 전선 예비사단의 1개 연대를 경보병연대로 개편</p> <p>23 외무성, 유엔총회에 한국 단독 초청에 대한 비난성명 발표</p>	<p>4 미국, 제미니 7호 발사</p> <p>8 미국, 전략폭격기 삭감을 발표</p> <p>15 미국, 제미니 6호와 제미니 7호 사상최초로 랑데부에 성공</p> <p>21 유엔정치위, 한국 단독 초청안 가결</p>

# 196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월남 청룡1호작전, 해병 제2여단 2개 대대가 Tuy Hoa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16일)</p> <p>• 험프리 美부통령 방한 (월남 지원문제 협의)</p> <p>4 국무회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 별정직·일반직 봉급 30% 인상</p> <p>7 국무회의,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개정(직업군인 60%, 사병 100%)</p> <p>8 해군, 일본어선 2척 전관 수역을 침범 피해없이 방면</p>	<p>5 132/140밀리 방사포 36문을 장비한 방사포연대 창설 (총 5개 연대)</p> <p>18 조·월맹 무상원조에 관한 협정 조인</p> <p>19 북한, 미국의 월남전쟁 규탄성명 발표</p>	<p>3 험프리 美부통령, 극동 4개국에 월남평화 14개 항목을 발표</p> <p>4 • 월맹, 미국측 평화안 거부</p> <p>•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 월남평화협상 교섭중재로 월맹·중공·소련과 접촉개시</p> <p>• 인도, 파키스탄 수뇌회담 개최(~10일 타슈켄트) 평화수단으로 분쟁해결 지지</p> <p>15 소·월맹 공동성명 발표 (추가원조협정 조인)</p> <p>18 美제25사단 병력 7,000명 파월(미군 총 19만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4 전국 상주인구('65년 10월말 현재) 2,864만 7,176명으로 집계</p> <p>26 속초해상에서 북한함정 5척 침투 기관총 난사, 어선 2척 납치</p>	<p>29 북한, 월맹에 의용군 파견할 용의 있다고 표명</p>	<p>27 제네바, 18개국 군비축소위 4개월만에 재개, 미국 전면 핵금지 및 확산방지 조약을 제안</p> <p>29 월맹 호지명, 소·중공 등 공산국에 증원 요청</p> <p>30 美공군, 38일만에 월맹 하노이지역 폭격 재개</p>
2	<p>2 존슨 美대통령, 박대통령에게 친서, 한국군 월남증파를 촉구</p> <p>4 과학기술연구소 발족(소장 崔亨燮)</p> <p>7 박대통령, 말레이시아·타이·자유중국 순방 등정</p>	<p>3 외무성, 미군의 월맹 폭격규탄 성명</p>	<p>2 蘇, 군축위에서 핵방지를 제안</p> <p>3 · 소련 우주선 루나 9호 (31일 발사), 달에 軟着 · 美항공우주국 기상관측 위성 발사</p> <p>7 · 미·월남 수뇌회담 개최 (8일 공동성명 발표) · 파리, 불·서독 수상회담 (~8일)</p>

196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9 청룡2호작전, 해병 제2여단이 투이호아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25일)		
	10 박대통령, 방콕 도착 11일 정상회담에서 통상확대, 문화교류촉진을 합의	10 민족보위상 명령5호 발령(현 정세, 전투준비태세, 무기관리 철저)	19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새5개년계획('66~'70)을 승인(소비물자 생산에 치중)
	21 월남정부, 한국군 증파를 정식요청		20 월슨 영국수상, 크레믈린에서 코시긴 수상과 월남군축문제 토의
	22 험프리 美부통령 재차 내한, 23일 박대통령과 회담(한국군 증파조건 합의)		23 험프리 美부통령, 미군병사 1명이라도 군사분계선에 있는 한 미국은 한국의 안보 및 방위에 임하겠다고 발표
	25 한·미 정부, 파월증파조건 합의록인 브라운각서 서명		
		26 북한·중공간 문화협정 계획서 조인	26 존슨 美대통령, 주월미군 증강계획 발표
	28 국무회의, 주월 한국군 증파안을 의결		
3		1 소련정부 통상대표단, 평양 방문	1 · 존슨 美대통령, 월남문제 선거로 결정하자고 제의 · 소련 우주선 금성3호, 사상최초로 금성표면 도달 · 동독 유엔가입을 신청
	2 육군사관학교 제22기 졸업식		
	3 공군사관학교 제14기 졸업식		

월	한 국	북 한	국 . 제
3	<p>4 국군중과와 관련된 브라운각서 수교(1차 서한)</p> <p>5 해군사관학교 제20기 졸업식</p> <p>7 美정부, 한국군 월남중과 선행조건에 따른 양해사항 공식통고(브라운각서 2차 서한)</p> <p>12 맹호5호작전, 수도사단 제1연대와 기갑연대가 빈케 지역에서 작전전개(~13일)</p> <p>15 월남작전을 위한 해군수송부대 창설</p> <p>24 韓·日 무역협정조인</p> <p>31 金聖恩 국방부장관, 월남 중과와 관련 전투력증강 위해 육군 1개 사단, 해병 1개 사단을 창설한다고 발표</p>	<p>7 한국군 월남중과 결정에 관련하여 성명 발표</p> <p>22 최고인민회의, 월남전쟁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을 비난</p>	<p>4 美·英, 가나 신정권 승인 (17일 소련도 승인)</p> <p>7 존슨 美대통령, NATO 개편안에 반대성명</p> <p>12 佛, '69년에 NATO 탈퇴한다고 각서 발표</p> <p>16 미국, 인공위성 제미니8호 우주결합에 성공</p> <p>22 · 중공, 소련공산당대회 출석을 거부 · 자유중국, 장개석 총통 4선</p> <p>30 佛, NATO 통합군 이탈을 통고, 그의 14개국 현 통합군기구의 유지를 선언</p>

196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 육군, 전투발전사령부 창설</p> <p>2 일본어선, 홍도 서북방 공동규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어로방해</p> <p>9 육군 제7보충교육단 창설</p> <p>19 맹호부대(수도사단) 제26연대(혜산진부대) 월남 귀논에 상륙(13일 한국 출발)</p>	<p>1 주민 일제등록(3대 선조까지 성분조사)</p> <p>12 7개 군단을 5개 집단군으로 개편</p>	<p>1 주월 美태평양함대사령부 창설</p> <p>3 미군, 최초로 캄보디아 영내에 진입, 베트남 추격전 실시</p> <p>6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 월남 중립화 제안</p> <p>13 • 미국, 바르샤바회담에서 중공에 화평협상 제안 • 월남전, 베트남 사이공 공항을 포격 162명 사상, 28대 비행기 파손</p>
5	<p>1 국방부 의무국 신설(잠정)</p>	<p>1 북한, 노농적위대에 군복 지급</p>	<p>4 태국, 월남에 전투부대 파견키로 결정</p> <p>7 주월미군사령부, 캄보디아 및 라오스령 공격권이 있다고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7 경남 진양군에 간첩 3명 침투(1명 사살, 1명 생포, 1명 도주)</p> <p>19 로지 주월 美대사 내한,朴대통령과 회담(월남문제 처리)</p> <p>20 민방위개선위원회 해체와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가동원체제 연구위원회 구성(대통령령 제2537호)</p> <p>24 강릉에 간첩 3명 침투(1명 사살, 2명 도주)</p> <p>26 · 터키, 주한 터키군 철수계획 발표 · 일본 선망어선단 5척 거문도 남방 전관수역을 침범</p>	<p>23 김일성,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브레즈네프와 군사력증강 문제에 대한 회담</p>	<p>9 중공 서부지구 상공에서 연료재료를 갖는 핵폭발에 성공(3회째) 세계 제4의 수폭보유국이 됨</p> <p>23 영·서독 수상회담(~24일), NATO 위기 토의(런던)</p> <p>30 미국, 무인탐측기 서베이어 1호 발사(2일 달표면 착륙에 성공)</p>
6	<p>1 金聖恩 국방부장관, 1개사단 증파외에 군수지원부대 5,000명 파월 발표</p> <p>2 주한 유엔군사령관에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대장 임명(취임 9. 1)</p>	<p>1 5개의 방사포대대 창설(132/240밀리)</p>	<p>3 중공, 문화대혁명 개시</p>

196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4 張勉 전 국무총리 67세를 일기로 운명 국민장 거행 (~12일)	8 북한경제대표단 소련 방문	7 NATO 각료이사회 개막
	14 ASPAC 제1차 각료회의 개막(216일 서울)	14 朝·월맹 친선협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14 제네바 18개국 군축회의 토의 재개
6	20 육군 제9수용대 창설	20 북한·소련간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5 美, 주불란서 미군 철수
	22 한·미 국방장관회의(워싱턴), 한국군 현대화계획 협의		16 周恩來 증공수상, 루마니아 방문
	25 金基洙 주니어미들급 권투 세계선수권을 쟁탈(벤베누티에 판정승)		20 드골 佛대통령 訪蘇, 불·소 정상회담
7	1 육군 제333호크대대 창설 ('67년 12월 15일 233대대로 개칭)		24 SEATO 각료이사회 개막
			28 브라자빌 콩고, 육군반란 실패
			29 미군기, 하노이·하이퐁 폭격(월남전 확대)
			1 프랑스 NATO 탈퇴('69년 국민투표 부결로 NATO에 다시 복귀)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 월남증과 백마부대(제9사단) 결단, 사단장 李召東 소장</p> <p>7 주한 터키군 철수(연락장 교단만 잔류)</p> <p>8 러스크 美국무장관 내한,朴대통령과 회담</p> <p>9 한·미 행정협정 조인(발효 '67년 2월 9일)</p> <p>12 공군군수사령부 창설</p> <p>15 · 보병 제32사단, 예비사단에서 전투사단으로 증편          · 공군 제5공수비행전대를 제5공수비행단으로 증편          · 전국에 장마(~26일)로 인한 피해, 사망자 67명, 이재민 8만8,000명 피해액 21억 8,000만원으로 집계</p>	<p>5 朝·중공 과학기술협조의 정서 조인(북경)</p> <p>18 김일성, 미국의 전쟁확대책동 규탄하여 월맹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호지명에게 전문</p>	<p>4 미국, 일본에 월남지원 요청</p> <p>5 美, 최대의 인공위성 새턴 1B(29톤) 궤도에 진입</p> <p>7 제네바 군축위에서 소련대표 핵무기금지 국제회의 제의</p> <p>12 존슨 美대통령, 물자교류에 의한 중공과의 평화공존 등 대아시아정책을 표명</p> <p>15 일본정부, 북한기술자의 입국을 허용</p> <p>17 러스크 美국무장관, 중공의 월남전 개입시 중대사태 발생을 경고</p> <p>18 중공, 중공영토를 월맹후방기지로 제공한다고 발표</p>

196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5 '66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29 정부,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71) 각의 통과(성장률 7%)</p>	<p>22 • 남북한통일 연석회의 제의 •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일 기념행사('46년 7월 22일 결성)</p>	<p>30 미국 B-52기, 월남 17도선 DMZ를 처음으로 강타</p>
8	<p>2 주문진 해안에 무장간첩 3명 침투(1명 사살, 2명 도주)</p> <p>5 해군 고속수송함(아산, 응포함) 취역식</p> <p>8 • 육군 제636·987포병대대 해체 • 육군 제888포병대대 창설 • 육군 제866·877포병대대 창설</p> <p>9 투코작전, 주월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9중대가 진지방어중 월맹정규군 308사단 88연대 제5대대(+의 기습공격을 격퇴(~10일)</p>	<p>6 朝·쿠바 과학협정서 조인</p> <p>10 소련 기술대표단 평양 도착</p>	<p>6 • 美제4사단 귀농 상륙 • 동남아시아연합, 3외상 아시아제국에 의한 월남평화회의 제창</p> <p>8 중공에 문화혁명 격화, 당, 사회주의 새단계 주장</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5 나트랑에 주월 한국군 야전사령부 설치</p> <p>16 정부, 재네바 4개 전시협약 가입서를 스위스정부에 제출</p>	<p>12 노동신문, 蘇·中 路線 배격하는 자주노선 선언(노동신문, “자주성을 옹호하자” 논설 발표)</p> <p>15 노동신문, 蘇·中으로부터 주체를 선언</p> <p>18 북한적십자회에서 북송연장에 관한 성명 발표</p> <p>26 외무성, 일본정부의 북송 1년간 연장에 대해 성명 발표</p>	<p>14 美위성 루나 오비터 1호, 달주변 궤도에 진입(18일 달표면 촬영에 성공)</p> <p>21 중공에서 홍위대 선풍북경가두로 진출, 전국적 규모로 확대</p> <p>22 브라운 주한 美대사, 한국문제 유엔에 자동상정 불찬성 표명</p> <p>25 주월미군사, 주월미군 병력 30만 돌파를 발표</p>
9	<p>1 · 본스틸(Ch. H. Bonesteel) 美 육군 대장, 유엔군사령관 및 美제8군사령관에 취임</p> <p>· 정부, 해군참모총장에 金榮寬 대장을, 공군참모총장에 張志良 대장을 임명</p> <p>· 육군 제51사단 창설</p>	<p>1 1959년 이래 중지했던 북한군 휴가실시</p>	

# 196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 육군참모총장에 金桂元 육군 대장 임명</p> <p>5 백마부대(제9사단) 5,500명 나트랑 도착(8월 30일 서울 출발)</p> <p>17 金榮寬 해군참모총장, 한국근해에 소련·중공 잠수함 수십척 출몰했다고 발표</p> <p>23 맹호6호작전, 수도사단 3개 연대가 빈딘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11월 9일)</p> <p>24 황금작전 : 청룡(해병 제 2여단) 전부대가 추라이에 서 수색작전 전개(~28일)</p> <p>27 주월 한국군에 M-16소총 최초 지급</p>	<p>3 朝·월맹 무상원조협정 체결</p> <p>25 북한적십자중앙회위원회, 일본에 망명중인 평신정 선원 억류에 관련한 항의성명 발표</p>	<p>2 드골·시아누크, 주월외국군 철수 공동성명 발표</p> <p>4 중공 각처에서 홍위대 선풍의 폭도 정부와 충돌, 데모확대</p> <p>6 일본 각의, 한국 북양어선의 기항을 거부키로 결정</p> <p>7 바르샤바에서 美·중공 대사 회담</p> <p>8 네윈 버마 국가원수 미국 방문, 존슨 미대통령과 정상회담</p> <p>22 주유엔 美대사, 월맹의 4개조건의 토의용의를 표명</p> <p>23 러스크(미)·그로미코(소) 외상회담</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 전국 인구센서스 실시 총 인구 2,919만 4,379명</p> <p>7 金溶植 유엔대사 유엔사무 총장에 한국정부 각서(통한 문제 등 5개항) 전달</p> <p>21 • 박대통령, 파월 한국군 시찰 • 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기습으로 아군 6명 사망, 3명 중상</p> <p>24 박대통령,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 참석(마닐라)</p> <p>31 존슨 美대통령 방한</p>	<p>18 민족보위상에 김창봉 부상 임명</p> <p>19 외무상에 박성철 임명</p> <p>27 쿠바 대통령, 북한 방문</p>	<p>3 소련, 대월맹 무상원조협정 조인</p> <p>13 코시긴 소련수상, 공개적으로 중공 비난</p> <p>21 바르샤바 9개국 정상회담에서 對월맹지원에 합의</p> <p>27 중공, 핵유도미사일 병기 실험에 성공</p>
11	<p>2 • 박·존슨 공동성명 발표 (對韓 2차 5개년계획 지원, 미군 불감축, 국군현대화 촉진 등 12개 항) • 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기습으로 미군 6명, 카투사 1명 사망</p>		<p>2 캐나다 정부, 한국이민 1만 명을 요청</p> <p>3 미국 유인궤도 실험실의 예비실험으로 제미니캡슐의 발사회수에 성공</p>

196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4 유엔군사령관, 북한의 휴전선 습격사건에 항의각서 정전위 통해 김일성에 전달</p> <p>10 정부, 병력 45,000명 이상의 파월불가를 미국에 정식 통고</p> <p>13 일본어선 서해 어청도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어로방해 어획물 강탈</p> <p>21 캐나다 정부, 한국광부 초청('67년중 1,000명)</p> <p>23 해병 제5여단 창설</p> <p>29 동해상에서 조업중인 동성호 납북</p>	<p>5 북한 망명선 평신정 청진항에 도착</p> <p>22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 회의 개막(~23일)</p>	<p>4 유엔총회, 핵실험방지조약 촉진 결의를 채택</p> <p>5 아프리카통일기구(OAU) 수뇌회의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9일)</p> <p>11 • 이스라엘 대요르단 무력 충돌 • 미군, 캄보디아 국경에서 월남 최대작전 전개(25,000명 투입)</p> <p>13 캐나다 외상 소련 방문(~9일), 핵확산방지조건 등 촉구성명 발표</p> <p>24 유엔정치위, 핵실험 전면 정지요구 결의를 가결</p> <p>29 유엔, 중공 가입안 부결(57:46)</p>
12			<p>1 코시긴 蘇수상 프랑스 방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3 외무부, 휴전선 침범 등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각서 유엔에 전달</p> <p>13 동해상에서 명태잡이어선 해양호, 북한 함정에 남북</p> <p>26 한국, 캄보디아와 단교</p> <p>27 • 북한, 군사분계선을 침입 판문점 남방 유엔군초소를 충격 • 정부, 丁一權 총리 외무부장관 겸임 등 일부개각 단행</p>	<p>8 제8차 아시아 가네포대회에 참가했던 권투선수 김귀하 프놈펜에서 망명 요청</p> <p>19 북한·월맹간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하노이)</p> <p>20 이탈리아 공산당 대표단, 북한 방문</p> <p>29 • 북한의 對蘇 접근저지 위해 중공이 한·만국경에 1개 군단을 배치했다고 발표 • 조총련 의장 한덕수에 개 국기훈장 1급 수여</p>	<p>13 유엔정치위, 한국 우선초청안을 가결, 북한 동시초청안은 부결</p> <p>19 미국, 월남휴전 협상권을 유엔사무총장에 일임한다고 발표</p> <p>28 중공, 3,000킬로톤급 핵 실험</p> <p>30 영국, 월남평화 13개국 회의안 제시(미국은 수락, 소련은 거부)</p>

# 196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맹호8호작전, 수도사단 26 연대와 기갑연대가 전술책임지역 확장을 위해 공세작전 전개(~3월 2일)</p> <p>7 정부, '66년말 국내통화량 694억원으로 집계, 연간 128억원 팽창</p> <p>11 국군간호사관학교 창설</p> <p>16 韓·越간의 군공무수행중 피해에 대한 청구권협정 조인</p> <p>19 해군 56함 당진호(650톤 : 승무원 79명),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북한 2척의 포함에 피격 침몰(전사 11명, 실종 28명, 중상 12명, 경상 16명)</p> <p>24 丁총리, 아스팍 통한 월남전 해결 노력과 해군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교섭하겠다고 언명</p>	<p>19 한국 해군함정 격침 발표</p> <p>24 김일성, 김창봉, 최현이 비밀리에 소련 방문</p>	<p>1 라오스 총선거 프마수상파 압승</p> <p>2 베트남 48시간 신정휴전 종료, 북폭재개</p> <p>3 월맹, 영국의 3국 평화회담 제의를 거부</p> <p>25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중공학생과 蘇 경찰이 충돌</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9 백마1호작전, 백마(제9사단) 29·30연대가 나트랑, 닌호아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3월 5일)		27 미국, 아폴로우주선 테스트중 화재로 우주비행사 3명 사망 31 중공 북경에서 反蘇 데모, 蘇대사관에 난입
2	2 국방부, M-48전차 100대 연내 도입을 발표 3 북한군 중부 아군초소 습격/교전(북한군 1명 사살) 9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발효 및 그 시행을 위한 한·미합동위 개최(서울) 10 정부, 한일항공협정 조인	13 김일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 訪蘇	1 서독의 베르너 장관 동독을 조건부로 승인할 용의있다고 언급 4 미국, 달위성 루나 오비터 3호 발사 7 홍위병 데모, 蘇대사관에 난입 9 蘇, 英수상과 회담하고 미국이 월남 북폭 중지하면 월맹원조 중단하겠다고 제의 14 중남미 14개국, 비핵무장조약 조인 15 영국수상, 서독을 방문. 영국의 EEC 가입문제를 협의

196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2 해군사관학교 제21기 졸업식</p> <p>23 • 육군사관학교 제23기 졸업식 • 한·미간 한국노무단 (KSC) 지위에 관한 협정 조인</p> <p>24 • 공군사관학교 제15기 졸업식 • 정부, 총인구 2,920만 7,856명('66. 10. 1 현재)으로 발표</p>	<p>16 조·소 경제 및 군사원조 협정 체결(군원 1억 7천8백 만달러 획득)</p>	<p>20 키징거 서독수상, 국가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핵 정지협정에 조인 거부한다고 언급</p> <p>23 미군, 최초로 월남 17도 선 넘어 砲擊</p>
3	<p>1 육군, 보병사단 진지 교대 중지</p> <p>2 뤼브케 서독 대통령 방한 (~6일)</p> <p>4 학군사관 제5기 임관식</p> <p>7 정부, '67 행정백서에서 국군장비현대화를 계속 강화한다고 밝힘</p>	<p>1 일본 동경에서 조·일 무역 협회 정기총회 개최</p> <p>2 조·소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1967년도 상품상호납입에 대한 협정 체결(평양)</p> <p>3 인민군 정치일꾼회의 개최(~8일)</p>	<p>3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 하노이 대표와 회담(버마 랑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8 • 국방부, 정비의 날 제정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작교작전, 맹호(수도사단) 3개 연대와 백마(9사단) 28연대가 Tuy Hoa 지역에서 군단급 작전 전개(~5월 31일)</li> </ul> <p>14 정일권 국무총리, 존슨 美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 마치고 공동성명 발표 (한국군 현대화와 월남전의 공동수행)</p> <p>22 북한 중앙통신사 사장 이수근 위장 귀순</p> <p>31 백마2호작전, 백마 29·30 연대가 Ninh Hoa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4월 16일)</p>	<p>10 평양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흑백)</p>	<p>14 美국무부, 美·蘇고위관리들의 상호방문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한안보지원 재확인</p> <p>20 미·월 정상회담(괘도) 개최</p> <p>22 호지명, 존슨 美대통령에게 직접회담 및 북폭 중지를 요구</p> <p>29 佛, 원자력잠수함 제1호 진수</p>
4	<p>1 • 육군, 행정지원사령부 창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짜빈동 작전, 해병 제2여단 제3대대 11중대가 중대기지에서 월맹 2사단 제1연대의 공격을 저지(~7일)</li> </ul>		

196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2 타놈 태국수상 내한</p> <p>3 주월 한국군, 제11항공중대 창설</p> <p>5 북한군 서부 군사분계선 월선 침투/교전(적 3명 사살)</p> <p>6 홀트 호주수상 내한</p> <p>8 공군 제5수송비행단 소속 C-46기 서울 청구동 주택가에 추락, 사망 58명(주민 43명)</p> <p>10 • 휴전선에 총격전 무장괴한 6명 사살          • 任忠植(제10대) 육군 대장 합참의장 취임          • 제11항공중대 월남 나트랑에서 창설</p> <p>12 북한군 60명~90명 휴전선(중앙부 산악지대) 침범(사살 3명, 아군 전사 1명, 아군 휴전후 최초로 포병사격, 보병 제7사단 제56·57·637포병대대가 HE탄 585발 조명탄 87발 사격)</p> <p>16 북한간첩선 순위도 남방해안 침투(간첩 9명 사살, 6명 생포)</p>	<p>13 佛에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p> <p>14 김일성생일 55주년 재일 조총련대회 개최</p>	<p>5 키 월남수상, 월맹에 남북 회담 제의</p> <p>7 이스라엘·시리아군 교전</p> <p>13 周恩來 중공수상이 처음으로 劉少奇를 비판</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7 북한간첩선 1척(50톤급)을 격침 5명 생포</p> <p>28 • 북한군 7명이 서부지대 미군초소에 사격후 도주 • 김포지역에서 간첩 3명 사살</p>	<p>25 • 朝·폴란드 과학협조의 정서 조인(평양) •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p>21 워싱턴에서 개최된 월남 참전 7개국 제1차 외상회담에 한국대표 참석</p>
5	<p>3 제6대 대통령선거 투표 실시</p> <p>5 공화당 박정희 후보 당선 (568만 8,666표로, 윤보선 후보 452만 6,541표)</p> <p>11 국방부, 유엔군사령부에 서 북한 휴전선 남침시 발포할 수 있는 작전권 일부를 인수하였다고 발표</p> <p>16 해군, 교육기지사령부 창설</p> <p>22 북한군 서부 비무장지대 침투, 미군막사 폭파(미군 2명 사망, 19명 중상)</p>	<p>10 철도사령부 창설</p> <p>11 대동강 제2철교 개통</p> <p>13 朝·싱가포르 무역협정 체결</p> <p>24 헝가리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p>	<p>5 • 영국, 최초 위성 발사 • 미국, 달위성 루나 오비터 4호 발사</p> <p>10 美구축함 워커호, 日북해도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중 소련 구축함 베셀드니호와 충돌</p> <p>22 나세르 아랍연합공화국 대통령, 아카바만 봉쇄를 발표</p>

196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25 전남 광주 공군기지 준공		
	27 북한 경비정, 연평도 근해에서 한국어선단에 포격, 해군 25분간 엄호사격 교전		
6	3 북한 간첩선 삼척군 임원리 침투 좌초(간첩 20여명 사살, 1명 생포)		2 존슨 美대통령·윌슨 英수상, 중동문제 논의
	5 중동부전선, 지뢰매설 교육중 장병 8명 폭사, 18명 중상		5 중동전쟁, 아랍 각국 대 이스라엘 전면전
	7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099호)	7 제일 조선청년연맹 제8차 대회 개최(동경)	7 유엔안보리, 중동전 휴전 결의
	8 • 제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실시 • 뇌룡2호작전, 청룡(해병 제2여단) 전부대가 Binh Sun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15일)	8 인민군 종합군사 경기대회 개막(~18일)	
	13 삼척 앞바다에서 무장간첩선을 나포(2명 사살, 1명 생포)	9 제일 조총련 상공연합회 제16차 정기대회 개최	14 미국, 매리너 5호 금성로켓 발사
			17 중공, 최초의 수폭실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8 북한 무장간첩 40명 강릉 및 영월에 침투/교전(간첩 11명 사살, 1명 생포)</p> <p>29 • 험프리 美부통령 내한 (한·미 고위회담 개최) • 북한군 서부 군사분계선 월선 침투/교전(북한군 3명 사살)</p>	<p>28 북한, 아랍공화국에 군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p>	<p>23 미·소 정상회담(월남, 중동문제 등 토의)</p> <p>26 • 코시긴 소련수상 쿠바 방문 • 랑군에서 반중공 폭동, 대사관원 1명 刺殺</p> <p>27 러스크 美국무장관, 그로미코 소련외상과 핵확산방지 재개회담 개최</p>
7	<p>1 • 朴正熙 제6대 대통령취임식 거행, 험프리 美부통령, 사토 일본수상, 엄가연 자유중국 부총통 등 우방 38개국 사절 170명 및 시민참석 • 주월 한국 공군지원단 창설</p> <p>2 朴대통령, 한·미·일·자유중국 수뇌회담 개최</p>		<p>1 코시긴 소련수상, 파리에서 드골 프랑스대통령과 회담</p>

196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3 용머리 1호작전, 청룡부대 (해병 제2여단)가 빈선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8월 11일)</p> <p>8 중앙정보부, 동베를린 공작단사건 발표(국내 교수, 학생 등 315명 관련)</p> <p>9 홍길동작전, 맹호(수도사단), 백마(9사단), 전부대가 전술책임지역 내에서 수색작전 전개(~8월 26일)</p> <p>10 • 제7대 국회, 공화당의원만으로 단독개원 • '67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15 金국방부장관, 주월 한국군 전원에 국산 C레이션공급하기로 미정부와 합의했다고 언급(연간 공급량 30억원)</p> <p>18 월남참전 7개국 제2차 대사회담 개막(사이공)</p>	<p>12 蘇製 W급잠수함 2척 도입</p> <p>13 조국전선, 일본당국의 재일 조선인 귀국사업 파기책동과 관련회의 개최</p> <p>17 중동과의 불화로 중·조 조난자 구조협정 폐기</p>	<p>5 태평양지역 각료이사회 (ASPAC) 제2차 각료회의 개막(방콕), 한국대표로 박충훈 상공부장관 참석</p> <p>12 소련·동구 수뇌회담(아랍원조 공동성명)</p> <p>14 유엔 긴급총회 개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파키스탄 등의 수정결의안을 채택</p> <p>15 베트남, 다낭 美공군기지를 습격, 100여명 사상</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19 국방부, 군경합동수색대가 정읍에서 무장간첩 5명을 사살, 아군 1명 전사 발표		29 美항모 포레스탈호, 통킹 만에서 화재사건 발생(사상, 실종 201명, 비행기 63대 손실)
8	3 클리포드 테일러 美대통령 특사 내한, 한·미고위회담 개최하고 월남전 지원문제 협의  7 북한군, 판문점 남방 대성동 자유의 마을 앞에서 미군트럭 습격(아군 전사 3명, 부상 17명)  9 일본 동경에서 한·일 정례 각료회의 개최(한국대표 장기영 부총리, 일본대표 三木 외상)  10 북한군 서부 군사분계선 월선 아군 트럭 1대 습격(아군 3명 사망)  15 육군간호학교 창설	11 조·월맹간 무상군사 및 경제원조협정 조인  16 김일성, 중공·소련의 대국주의를 비판	8 동남아각료회의, ASEAN 설립 공동성명 발표

196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6 원주에서 전투경찰대 발대식 거행</p> <p>28 북한군, 미군 막사(판문점 동남 30미터)를 기습, 미군 3명 사망, 25명 부상</p>	<p>21 제22차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불법적으로 상정시키려는 미국의 범죄적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p> <p>25 모스크바에서 북한·일본 양측 적십자대표단 예비회담 진행(재일교포 북송문제연장)</p>	<p>22 북경의 영국 대리대사 공관에 데모대 난입, 대리대사 등 부상</p>
9	<p>4 샤프 美태평양지역 사령관 내한(5일 군사회담 개최) 군원문제 등 논의</p> <p>5 · 한·미 고위군사회담 개최(군원문제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간첩, 경원선 열차 폭파(초성리역 부근, 열차 4량 전복, 10명 부상)</li> <li>·朴대통령, 월남전에서의 북폭확대제한사항 철폐 요청</li> </ul> <p>13 북한간첩, 경의선 열차 폭파(운정역 부근, 화차 2량 전복)</p>		<p>3 월남총선, 대통령에 구엔 반 티우 당선(10. 31. 취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4 • 국방부, 전후전선에 전기철조망 및 대인레이더 방책 구축을 언명 • '67년도 제1차 국가안전 보장회의 개최(철도폭파사건에 대한 대책)</p> <p>15 • 비무장지대 방책공사 시작 • 한국 북양어선단, 알류산열도 근해에서 조난, 제7호 독항선(100톤급:선장 정남규) 침몰, 제8호 독항선(100톤급:선장 광용운) 행방불명 선원 28명 실종 • 주월 한국군사령부, 파월이래 8월말 현재 국군전사 1,032명이라고 발표</p>	<p>21 조선대학 인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p> <p>23 모스크바에서 日과의 재일교포 복송회담 결렬</p>	<p>17 중공, 영공을 침입한 美 무인기 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p> <p>21 태국, 육군 1,200명 월남전 참전 위해 사이공 상륙</p> <p>23 소·월맹간 무상원조 및 전면지원협정 조인</p>
10	<p>6 북한군 임진강 하구 아순찰정에 총격(아군 1명 실종)</p>		<p>4 영국 노동당 대회, 미국의 월남정책과 결별할 것을 의결</p> <p>5 주월 미군사령부, 월남전의 미군 사상자는 10만명을 넘으며, 그 반수 이상이 1967년도 피해라고 발표</p> <p>9 인도네시아, 대중공 외교단교</p>

196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31 丁총리 월남 제2공화국 초대 티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10 동독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  17 북한·소련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협정 조인	13 NATO 本部 및 상설이사회, 브뤼셀로 이전  15 사이공 미군사령부, 北爆美機손실은 700대가 넘는다고 발표  17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양국 월남중파를 결정  21 아랍연합군, 수에즈운하 지대에서 이스라엘 구축함을 격파
11	3 · 한·미 외상회담, 한국군 현대화 촉진 등 협의(워싱턴) · 북한, 동해상에서 조업중인 아 어선 12척과 어부 81명 납북	10 북한 군사대표단 쿠바 방문(단장 최용건)  22 쿠바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단장 멜라르미노 까스띠야마스)	5 월남정부, 베트남의 유엔 참석을 허용 성명 발표  22 유엔안보리, 이스라엘 철병과 전쟁상태의 종결, 현지에의 특사파견 등 내용의 영국안 채택  27 드골 佛대통령, 영국의 EEC 가입을 반대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5 동해 어로저지선 근처에서 북한, 한국 어로단에 총격, 어부 6명 사망, 8명 중상</p> <p>8 美 상·하 양원 합동협회의 의, 구축함 2척 대한대여를 승인</p> <p>13 동백림사건 공작단 선고 공판</p> <p>15 대간첩 봉쇄지침 발표 (대통령령 제15호)</p> <p>17 맹호 9호작전, 맹호(수도사단) 제1연대와 기갑연대가 푸캣군과 고보이 일대에서 수색작전 전개(~1월 30일)</p> <p>21朴대통령, 故 홀트 호주 수상 장례식에 참석후 존슨 美대통령과 단독회담하고 월남사태를 협의</p> <p>25 동해상에서 조업중인 아 장성호 등 4척과 어부 34명 북한군에 납북</p> <p>30 주월 한국군사령부, 파월 2년간에 교전 1,618회, 사상 12,690명, 포로 3,098명, 귀순 1,388명을 발표</p>	<p>17 노동신문, "대의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주권을 행사"라는 사실에서 독자노선 강조</p> <p>25 최고인민회의 제4기 대의원선거(457명)</p>	<p>5 월남정부, 베트남의 유엔 참석을 허용하겠다는 성명 발표</p> <p>10 중공, 베트남을 정식 외교대표로 승인</p> <p>20 美, 북폭제한을 완화(하노이 반경 32km의 원형지대 비행을 허용)</p> <p>27 캄보디아 국가주석 시아누크, 미국이 영토 침공을 계속하면 북한에 의용군을 요청하겠다고 경고</p>

#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 동해와 남해에서 심한 풍랑으로 어선 7척과 57명 실종</p> <p>4 동해 휴전선 부근에서 홍익호(6톤), 복인호(6톤) 피랍(어부 14명)</p> <p>6 • 대간첩대책회의 개최(1군 사령부에서朴대통령 참가) • 정부, 총인구 '67년말 현재 3,006만7,000명으로 집계 발표</p> <p>7 동해상에서 신광호 등 어선 3척 피랍(어부 31명)</p> <p>11 동해에서 북한에 의해 명태잡이어선 1척 피습, 6명 사망</p>	<p>3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에서 3대륙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주건을 설정</p> <p>17 각 道에서 김일성의 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회의</p>	<p>2 월남전, 新正休戰 끝나고 美의 北爆 재개</p> <p>4 프랑스정부, 월맹의 평화의사를 확인했다고 미국정부에 통보. 파리에서 월맹대표 북폭중지를 요구 성명</p> <p>8 바르샤바에서 美·중공 대사 회담(7개월만에 재개)</p> <p>9 코시긴 소련수상, 쿠브드 워르빌 佛외상과 모스크바에서 회담</p> <p>12 泰 타놈 수상, 월남에 1만2,000명 증파 발표</p> <p>13 日, 북한교포 17,000명을 잔무처리명목으로 북송합의</p> <p>17 美, 일반교서 의회에 제출. 월남평화와 달리화방위 등 기본방침 천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1 북한 무장공비 31명, 청와대 습격하고자 서울 침입(28명 사살, 2명 도주, 1명 생포)</p> <p>23 • 美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원산 앞바다(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에 피랍(승무원 83명, 사망 1명) • 육군본부, 특수사단지정(2사단 : 산악사단, 5사단 : 공수사단, 11사단 : 상륙사단)</p> <p>24 국군에 비상태세령 발령</p> <p>25 • 오키나와 주둔 2개 美 전투비행대대, 한국에 이동 • 정부, 북한 무장공비의 서울 침입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해 북한 규탄 각서를 유엔에 송부</p>	<p>22 북한, 무장공비의 서울출현 사건 보도</p> <p>23 북한, 미국의 푸에블로호 나포를 보도</p> <p>24 • 북한,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선장 로이스마크 부처의 고백 보도 • 일·북한 타결 보지 못한 채 교포복송회담 종결(1967. 11. 27~68. 1. 24)</p> <p>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인민군 창건 기념훈장제정에 대한 政令 발표</p>	<p>19 • 미국정부, 국방장관에 클리포드 임명 • 美 달탐색선 아폴로 5호 실험발사 성공</p> <p>23 • 美핵항모 엔터프라이즈호 출동(동해로) • 주한 美제8군 비상령 선포</p> <p>24 • 소련,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 중재요청 거부(26일 재거부) • 美, 판문점 군사정전위 통해 북한에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송환 요구</p> <p>25 존슨 美대통령, 푸에블로호 사건대책으로 예비군 소집</p>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6 박대통령, 북한도발에 대비, 美에 대한군원 강화 요청</p> <p>27 육군, 간첩대책으로 대구 모로 기동타격대 창설</p> <p>28 美원조 전천후요격기 F-102A 12대 김포 도착</p>	<p>27 북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p>	<p>26 美, 전군에 전투태세완비령 하달(푸에블로호와 관련하여)</p> <p>28 중공, 북한에 의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지지성명</p> <p>29 존슨 美대통령, '69년도 예산교서 발표, 국방비 42%로 사상최대 정부예산중 2위 차지</p>
2	<p>1 대간첩대책본부 설치</p> <p>2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관·북한간의 비공개회담</p> <p>5 김성은 국방부장관, 본스틸 유엔군사령관과 회담하고 미·북한 회담에 항의</p> <p>7 · 박대통령, 향토방위대의 필요성과 향군 250만 완전무장 위해 무기공장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언명 · 慶全線(진주-전주) 개통 · 국방부, 전장병에게 제대증지령</p>	<p>3 최고인민회의, 최용건, 박문규, 김창봉, 석산, 허봉학, 최광, 오진우, 오백룡에 영웅칭호 수여</p> <p>8 2·8절에 민족보위상 명령 12호 하달</p>	<p>7 日·蘇공산당, 4년만에 정상관계회복. 공동성명 발표</p> <p>8 존슨 美대통령, 한국에 추가군원 1억달러 의회에 요청</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9 존슨 美대통령, 한국의 안전과 방위다짐 친서를 한국에 전달</p> <p>12 벤스 美대통령특사 내한,朴대통령을 비롯 한·미 고위회담 개최</p> <p>13 각의, 병역의 6개월연장을 결의</p> <p>16 朴대통령, 연내 향군 100만명을 무장, 소총 100만정을 구입한다고 언명</p> <p>17 맹호 10호작전, 맹호부대(수도사단) 3개 연대가 Phu Cat일대에서 수색작전 전개 (~4월 1일)</p> <p>20 각의, 향토예비군법시행령을 의결</p> <p>21 국방부, 3월중으로 총227만명을 예비군으로 조직한다고 발표</p> <p>22 공군사관학교 제16기 졸업식</p>	<p>16 푸에블로호(美정보수집함) 전체선원, 사죄문 제출</p> <p>20 북한 민보상 金昌奉 소련을 방문, 한국군 장비강화에 따른 군사지원 요청</p>	<p>11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 코시긴 소련수상과 회담, 푸에블로호 사건과 월남문제 논의</p> <p>13 미국, 웨스트모얼랜드 사령관 요청으로 미군 15,000명을 월남에 증파한다고 발표</p> <p>15 이스라엘·요르단, 요르단강 휴전선에서 중동전후 최대의 격전</p> <p>20 미국, 북한의 푸에블로호 승무원 재판회부기도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경고</p>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3 해군사관학교 제22기 졸업식</p> <p>27 • 육군사관학교 제24기 졸업식 • 국가동원체제 연구위원회에 충무계획반 설치</p> <p>28 • 제16대 국방부장관에 <b>崔榮喜</b> 취임 • 재향군인회 제9차 전국 총회</p>		<p>24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 북 폭증지하면 월맹과 협상 가능하다고 타진결과 발표</p>
3	<p>6 학군사관 제6기 임관식</p> <p>7 육군 선봉중대 제도 실시</p> <p>11 국방부, 고령자(만 26~35세)의 징집을 4월 1일부터 보류하기로 결정</p>	<p>4 북한에 납북된 푸에블로호 승무원, 존슨 美대통령에게 북한 영해를 명령대로 침범했다고 공동서한 발송</p> <p>5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b>洪命燾</b> 사망</p>	<p>1 월남에서 북부작전지역을 담당할 전방 미군사원조사령부 신설</p> <p>11 존슨 美대통령, 대한추가 군원 1억달러를 의회에 승인 요청</p> <p>13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학생, 노동자 대규모 반정부 데모</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5 국방부, 간첩출몰에 대비, 한강이북 등산을 제한</p> <p>22 정부, 나프타 등 12개 공장을 포함하는 석유화학계열 공업단지 기공식(울산) 거행</p> <p>26 金海의 육군공병학교에서 육사 ROTC장교들 총돌, 15명 부상</p>	<p>14 북한·파키스탄간 총영사관 개설</p>	<p>17 · 워싱턴에서 金플 7개국 회의, 金의 2중가격제 사실상 해체 · 英정부, 런던 金시장을 3월중 계속 폐쇄하기로 결정</p> <p>22 존슨 美대통령, 웨스트모얼랜드 주월미군사령관을 참모총장으로 승진 발표</p> <p>24 유엔안보리, 이스라엘을 비난 결의</p>
4	<p>1 · 보병사단 전차중대 창설 (군단 배속중대 해체) · 향토예비군 창설,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식 거행</p> <p>2 · 제1·2기갑여단 창설 · 맹호 11호작전, 맹호부대(수도사단) 3개 연대가 Binh Dinh성에서 수색작전 전개(4월~27일)</p>		<p>2 美국방부, 北爆 정지는 20도 이북이라고 발표</p>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5 국방부, 9월부터 전국 고교·대학생 전원에게 군사 훈련 실시키로 결정</p> <p>10 국방부, 어선단 특별향군을 편성지시(무장 가능)</p> <p>12 각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공포(무기사용권 및 불심검문권 등 포함)</p> <p>14 북한, 판문점 남방 대성동 입구에서 미군차량 습격(미군 2명과 카투사 2명 사망, 미군 2명 중상)</p> <p>18朴대통령, 존슨 美대통령과 호놀룰루에서 회담(군원 및 월남문제)</p> <p>25 한국군에 M-16소총 공급하기로 한·미간에 합의</p>	<p>17 조선대학 인가(일본 소재)</p> <p>22 노동당 제4기 17차 전원회의 개막</p> <p>26 국방비를 33% 증가한 16억 1,744만원으로 확정(전예산의 30.9%)</p>	<p>3 월맹, 존슨 美대통령의 평화안 수락</p> <p>7 소련, 우주선 루나 14호 발사</p> <p>14 소련, 우주선 코스모스 213호 발사, 16일 214호와 도킹 예정</p> <p>18 美, 대한방위의무 및 안보지원 재확인</p>
5	<p>2·북한경비병들, 판문점 회의장에서 난동(미군 1명 부상)</p> <p>·국회국방위,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통과</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5 백마 6호작전, 백마부대 (제9사단) 3개 연대가 Hon Ma 일대에서 수색작전, 전개(~6월 27일)</p> <p>6 장교 피복 판매제도 채택</p> <p>14 국방부 전시사변시 예비역 등 소집전 보직 통보 발송 지시</p> <p>21 •한·에티오피아간 정상 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에티오피아 황제 귀국</p> <p>24 주한미군, 미군담당지역 일대에 전자탐지 설치를 발표</p> <p>25 崔국방부장관, 연례 한·미국방장관회의차 도미</p> <p>27 제1차 한·미 국방부장관 회의 개최(워싱턴)</p> <p>29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법률 제2017호)</p>	<p>11 千里馬 영예상을 제정함에 관한 내각결정 제19호 채택</p> <p>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권수립 20주년 기념훈장 제정에 대한 정령 발표</p>	<p>3 美·越盟, 월남평화 예비회담을 10일부터 파리에서 열기로 합의</p> <p>10 美·越盟 파리회담 개막</p> <p>24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국민투표실시에 국민들 반발데모</p> <p>29 유엔안보리, 로디지아에 全面 경제제재 결의</p>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4 예비군 교육·무기관리 등을 경찰에 위임하는 예비군설치법시행령 개정</p> <p>11 맹호 12호작전, 맹호부대(수도사단) 3개연대가 Phu Cat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7월 19일)</p> <p>12 유엔군사령부내에 한·미 합동참모기구 신설에 합의했다고 한국측 발표</p> <p>14 주월 한국군사, 북한군 심리전 요원이 2년 이상 베트남과 공동작전을 실시했다고 발표</p> <p>18 • 崔築喜 국방부장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제주도 이전에 찬성한다고 언명 • 제2차 세계대학 총장회의 개막(서울) 31개국 105명 참가(~20일)</p>	<p>14 朝·체코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p> <p>22 • 니에레레 탄자니아 대통령 김일성 방문 • 중앙통신, 영해상에서 美간첩함 격파 발표</p>	<p>12 유엔총회,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의결</p> <p>13 美 군사위성발사용 타이탄 3C 로켓 발사</p> <p>19 월남정부, 총동원령 선포</p> <p>20 주월 미군, 1961년 1월~68년 6월까지 미군 25,068명 전사, 15만529명 부상, 211명 실종, 공산군은 36만 3,935명 사살했다고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 美제5공군, 7월중 주한미 공군력 개편을 발표(F-4D 팬텀기는 철수하고 F-100C로 대체하되 증강시킨다고 발표)</p> <p>3 서울시내 집중호우(1시간에 60mm) 어린이 3명 압사 및 곳곳에 침수</p> <p>5 • 국방부, 향군법에 따라 제1보충역 35만8,000여명으로 향군 편성을 8월 10일 까지 끝내도록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군 공격에 대비 전투태세 3년계획(1968~70)과 방위산업 3년계획(1969~71)을 수립하며 한·미합동참모기구 설치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국가급 대비태세 훈련 실시(~7일, 태극연습 '68실시)</li> </ul> </li> </ul> </p> <p>10 • 육군전략통신사령부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 서울함 명명식 거행</li> </ul> </p> <p>19 주한 미군, 남해100기지에 군수기지 개발, 동해 ○○기지와 중부를 잇는 지하송유관망을 연내착공계획이라고 언급</p>	<p>2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金昌奉) 헝가리 방문</p> <p>8 朝·월맹간 군사·경제무상원조협정 조인(평양)</p>	<p>4 佛, 장거리 海對地 미사일 발사에 성공</p> <p>6 美, 대이스라엘 군원 재개 결정</p> <p>19 美·越南 정상회담(호놀룰루)</p>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2 번디 美국무차관보 내한, 월남전문제와 한국안보문제 등 협의</p> <p>23 '68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24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511호), 각 차관보 관장국 명시, 정훈국을 정훈섭외국으로 개편, 예비군국 설치, 의무국 설치(정식)</p>	<p>26 조국해방전쟁 승리15주년 평양시 경축대회 개최 (총참모장 崔光 보고)</p>	<p>22 체코슬로바키아 주둔 소련군 철수 완료</p> <p>31 • 美상원, 푸에블로호 석방 않는 한 어떠한 공산국가에도 원조 안주기로 가결 • 佛, 태평양 모로로아섬에서 핵실험 재개</p>
8	<p>1 아스팍각료이사회 폐막</p> <p>2 서울지검, 동양통신 필화사건에 기자4명 구속, 민기식 국회국방위원장 등 발설자 계속 조사</p> <p>4 북한휴전선 네 곳에서 남침 9명 사살, 국군 1명 전사</p> <p>5 제17대 국방부장관에 任 忠植 취임</p> <p>6 文亨泰 육군 대장 합참의장 취임</p>	<p>3 재일 조총련, 8·15기념행사 공동진행을 민단측에 제의</p>	<p>2 동구 6개국 정상회담,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화 승인</p> <p>4 이스라엘, 요르단 공격</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0 • 민기식 국방위원장 군 기밀 누설인책으로 사표 제출 • 포병 제888대대 창설</p> <p>20 북한 간첩선 제주도 해안침투/나포(간첩 12명 사살, 2명 생포)</p> <p>21 중앙정보부, 접선을 피하려던 북한 간첩선을 서귀포에서 포착 12명 사살 2명생포</p> <p>27 • 105군수사령부 창설 (미제1군단지역 한국군부대 군수지원 위해) • 제2차 한일각료회담 서울에서 개막</p>	<p>10 蘇, 핵발전기를 북한에 지원(발전량 10만kW)</p> <p>13 푸에블로호 승무원(16명) 북한기자와 회견</p> <p>25 전국국방체육대회 개막</p> <p>28 金策 동상 제막식 거행</p>	<p>10 티토 유고대통령,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정책을 지지하고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내정간섭 비난(프라하)</p> <p>16 美, 첫 多核탄두미사일 포세이돈의 발사 성공</p> <p>20 소련 및 바르샤바 조약군, 체코슬로바키아 침공</p> <p>27 • 蘇, 코스모스 236호 발사 • 그리스, 국민투표 실시 왕권제한한 새헌법 마련</p> <p>30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중앙위 개최. 두브체크 당 제1서기 자유화 포기를 시사</p> <p>1 이란에 대지진 발생(사망 1만여명)</p>
9	<p>3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병 육성책으로 임전태세, 경제성장 10%, 물가상승 6% 억제 등 발표(국무총리 대독)</p>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4 국회, 국방위원장 사표 부결</p> <p>6 崔외무부장관, 일본이 북한에 4,000만달러 상당의 공작기계류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에 강경 항의</p> <p>14 자유중국 군사지원단장 쉐인 중장, 주월한국군사령부 방문</p> <p>15 朴대통령, 호주·뉴질랜드 방문(25일 귀국)</p> <p>18 美태평양지구사령관 매케인 대장 일행, 주월한국군사령부 방문</p> <p>22 美태평양지구 해병대사령관 뷰즈 중장 일행, 주월한국해병 제2여단 방문</p> <p>23 육군방첩부대를 육군보안부대로 개칭</p>	<p>4 姜健 동상 제막식 거행 (사리원)</p> <p>7 북한, 창건 20주년 중앙경축대회 개최</p> <p>17 朝·폴란드간 과학기술 협조 의정서 조인(바르샤바) •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오진우) 동독 향발</p> <p>19 전국인민체육대회 개막</p>	<p>4 미국, 체코슬로바키아 사태와 관련하여 주서독미군의 일부 철수를 중지</p> <p>6 蘇, 체코슬로바키아와 협상 개시</p> <p>8 이스라엘, 아랍과 수에즈 운하에서 포격전</p> <p>12 알바니아, 바르샤바조약 기구에서 탈퇴</p> <p>18 필리핀 대통령, 사바領有法에 서명,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 정지, 英·美 말레이시아를 지지</p> <p>23 蘇, 코스모스 242호 발사 성공, 243호 계속 발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4 서부지역 비무장지대 침투한 적 7명 사살</p> <p>26 서울 北岳스카이웨이 준공</p>	<p>26 북한, 일본정부와 교포 북송회담 재개 않고 교포 북송재개 하겠다고 주일대사에게 통보</p>	<p>24 유엔총회 개막</p>
10	<p>1朴대통령 국군의 날 유사에서 제2의 6·25발발시는 즉각반격 통일의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고 언명</p> <p>15 • 육군 제2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창설 • 육군종합행정학교 창설</p> <p>16 문교부, '69년부터 1주 2시간씩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군사훈련 실시 발표</p> <p>19 대간첩작전본부, 중동부 및 동부전선에서 남하공비 5명 사살했다고 발표</p>	<p>3 이라크주재 대사에 한성암을 임명</p> <p>12 북한 올림픽위원회, 멕시코 올림픽대회 불참 발표 (북조선으로 호칭결정에 따른 조치임)</p>	<p>3 蘇·체코슬로바키아, 소련군 일시주둔협정에 합의</p> <p>4 蘇 코스모스 245호 발사</p> <p>12 美 국방장관, 서독에 핵무기 7,000기 배치를 발표</p> <p>13 멕시코 올림픽대회 개막</p> <p>17 유엔통계, 세계인구 34억 집계</p>

196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3 박정희 대통령, 홀리오크 뉴질랜드 수상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실시(24일 이한)</p> <p>31 판문점에서 美·북한비밀회담(푸에블로호사건 관계)</p>		<p>24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 개최</p> <p>31 존슨 美대통령, 북폭 전면중지와 파리회담에 베트남 참가에 동의</p>
11	<p>11 백마 9호작전, 백마부대(제9사단) 3개 연대가 Dong Bihn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14일)</p> <p>15 美구축함 1척(3,000톤급) 한국해군에 인도</p> <p>22 주한 유엔군사령부, 전술 헬리콥터 한국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발표</p>	<p>1 보병 제25여단을 보병 제25사단으로 개편</p> <p>16 외무성, 미국의 캄보디아 침략 규탄성명 발표</p> <p>25 외무성,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유엔총회 제23차 회의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와 관련 비망록 발표</p>	<p>6 제37대 대통령에 리처드 닉슨 당선</p> <p>12 蘇, 對美미사일 협상용의 표명하고 전면군축회담 제의</p> <p>25 소련·월맹간 새로운 원조협정 조인</p> <p>27 ·월남, 파리회담 참가 발표 ·소련 코스모스 255호 발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 주한 미군, 美제7함대 소속 일부 함대가 동해에서 훈련중이라고 발표</p> <p>3 육군 제2군사령부 청사 준공(대구)</p> <p>4 한·미 외상회담, 대한군원 증강문제 협의(워싱턴)</p> <p>5 정부, 국민교육헌장 선포</p> <p>12 육군, 미군으로부터 체트 추진식 헬기(UH-1형) 도입, 기동타격대 창설, M-16 소총도 지급하기로 합의</p> <p>21 최초의 고속도로(京仁京水) 개통식 거행</p> <p>23 판문점에서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 유해 1구 귀환</p>	<p>10 외무성, 라오스전쟁관련 대미 비난성명 발표</p>	<p>6 미·월맹, 파리확대회의 7 개항에 합의</p> <p>23 미·일간에 일본의 미군 사기지 148개 중 50개를 반환기로 합의</p>

# 1969년

월	한	북	국
	국	한	제
1	<p>6 국방부, '69년 1월부터 예비역 근무소집을 완전 중지키로 결정</p> <p>7朴대통령, 공무원의 부정 및 탈세에 관해 특별지시</p> <p>18 동해안경비사령부 창설</p> <p>26 주1회 라면 급식</p> <p>27 • 제1유격여단 창설 • 1차 한일 민간합동 경제위원회의(~29일, 워커힐) 개최</p>	<p>1 군사위원회, 한국군장병 월복자에 대한 현상 발표</p> <p>6 조선인민군黨 제4기 4차 회의(~14일), 김창봉, 최광, 허봉학 등 군부고위층 10여명 숙청</p> <p>10 중앙교육간부정치학교 창립</p>	<p>1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제로 발족</p> <p>6 佛, 대이스라엘 군원 중단</p> <p>10 스웨덴, 서방측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월맹을 승인</p> <p>25 제1회 월남평화 파리 확대회의 개최</p> <p>29 월남·베트콩, 2월 15~27일간 구정 휴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p>
2	<p>1 국방부 군특명검열단 설치</p> <p>6 국방부 병사부정방지안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7 정부, 주월국군 국내에서 TV 등 면세로 구입 법 개정</p> <p>19 제2유격여단 창설</p> <p>20 학군사관 제7기 임관식</p> <p>24 蔣經國 자유중국 국방부장 내한</p> <p>25 육군보안사,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일당 15명 검거 발표</p>	<p>7 인민군 총참모장 吳振宇, 총정치국장 안영환 임명</p> <p>18 북한 군사대표단 파키스탄 방문(북한제 포탄공급 교섭)</p>	<p>15 동독에 의한 서독·서베를린간 육상교통 제한 시작</p> <p>24 월맹, 미국과의 비밀접촉을 공표</p> <p>28 시리아에 쿠데타, 대통령을 감금하고 아사드 국방상이 정권 장악</p>
3	<p>1 정부, 國土統一院 발족</p> <p>3 • 미국 하원의원 일행 내한(~7일) • 중앙정보부, 李穗根을 검찰에 송청</p> <p>5 정부, 가정의례준칙을 공포</p>	<p>1 전방 각 사단에 1개 경비병대대 창설</p>	<p>2 중·소 국경 우수리 강변의 다만스키 섬에서 양군 무력 충돌</p> <p>10 유고슬라비아, 동구 공산당과의 정식 결별 선언</p>

196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1 포커스 레티나 작전의 미군 제1진 美본토에서 22시간만에 수원 도착(미군 5,500명 참가)</p> <p>15 丁一權 국무총리, 미군의 오키나와 철수의 경우 한국 기지 제공 용의를 표명</p> <p>16 • 북한 무장공비 8명 주 문진 침투(북한공비 7명 사살, 아경찰 1명 사망) • 포커스 레티나 한·미연합작전 개시(~20일)</p> <p>19 레어드 美국방장관, 한국에서 북한위협 심각함을 미상원에서 증언</p> <p>21 정부, 張志良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 임명</p> <p>25 태극연습을 을지연습으로 명칭 변경('69 을지연습 실시, ~29일, 청와대)</p> <p>28 • 육군사관학교 제25기 졸업식 • 金壽煥 서울대교구장, 로마교황청에서 첫 추기경에 선임</p>	<p>15 한·미군의 포커스 레티나 작전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p> <p>28 미국의 캄보디아 침략행위 규탄 성명 발표</p>	<p>14 닉슨 美대통령, ABM망 계획 발표</p> <p>15 • 중·소 국경 다만스키섬에서 다시 충돌 • 이스라엘 폭격기 요르단領 폭격</p> <p>22 印·파키스탄군 국경선에서 교전</p> <p>28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서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9 공군사관학교 제17기 졸업식</p> <p>31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3854호)</p>		
4	<p>2 · 안보회의, 비상기획위원장에 裵德鎭 장군을 임명 (3월 24일부)</p> <p>· 경제기획원, 제3차 5개년 계획안을 발표</p> <p>8 해군사관학교 제23기 졸업식</p> <p>11 韓·英 연합작전(폼리포트) 서해안에서 실시</p> <p>15 · 美해군정찰기 EC-121기, 동해상에서 북한에 피격 추락(승무원 31명 전원 사망)</p> <p>· 주한 미군 및 한국군 비상경계태세 돌입</p>	<p>1 중앙통신, 동백림 거점 간첩사건의 최종판결에 대해 논평 보도</p> <p>15 북한 MIG기 2대, 美해군정찰기 EC-121기를 동해상에서 격추 발표</p>	<p>2 가나 국가원수 앙크라 중장 사임</p> <p>3 중동문제에 관한 미·영·불·소 4대국 회의 개막(뉴욕)</p> <p>5 미국, 반전데모 격화</p> <p>7 월남정부, 월남평화 6개항제의</p> <p>14 핵 평화이용에 관한 미·소회담 개최(빈)</p> <p>15 · 중공, EC-121기 사건과 관련한 북한행동을 지지한다고 발표</p> <p>· 美정찰기 EC-121기 동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되어 추락</p>

196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6 • 박대통령, 미군기 추락 사건과 관련, 긴급안보회의 소집</p> <p>• 정부, 육군참모차장에 徐鍾喆, 1군사령관에 韓信, 2군사령관에 蔡命新을 각각 임명</p> <p>26 정부, 한국 방위력 증강을 촉구하는 공식문서를 美당국에 전달</p> <p>28 • 주한 미군의 軍票 갱신</p> <p>• 제889포병대대 창설</p> <p>30 주월 한국군·미국군간의 군사실무약정 체결</p>	<p>28 외무성, 미국의 캄보디아 침략행위 규탄성명 발표</p>	<p>17 닉슨 美대통령, 동해에서의 정찰비행은 전투기 호위하에 계속한다고 언명</p> <p>19 닉슨 美대통령, 정찰기의 피격시 무경고 보복을 시사</p> <p>21 美국방부, 핵항모를 포함한 23척의 기동함대가 한국동해에 전개중임을 발표</p> <p>23 美, 한국의 대간첩작전 장비 현대화를 위한 특별군사원조 1억달러 제공에 동의</p> <p>28 드골 프랑스 대통령, 27일 국민투표로 사임, 포에르 상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p> <p>30 美국방부, F-4 팬텀기 1개 전대(24대)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p>
5	<p>1 정부, 닉슨 美대통령의 한국 안보협력에 관한 친서 접수</p>		<p>1 朴忠勳부총리, 닉슨 美대통령을 방문 특별군사원조 요청</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5 정부, 북한도발을 규탄하는 각서를 유엔회원국 및 우방국 대표에 전달</p> <p>7 울산경비사령부 창설</p> <p>10 공군 제3훈련비행단 창설</p> <p>14 중앙정보부, 국회의원 등 60여명 관련된 유럽 및 일본을 통한 북한간첩단 사건 전모를 발표</p> <p>21 崔圭夏 외무, 방콕에서 로저스 미국무장관과 한 국방위력강화문제 협의</p>	<p>6 코시긴 소련수상, 북한 방문</p> <p>14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 포드고르니 북한 방문</p> <p>27 남예멘 아샤아비 대통령 북한 방문</p> <p>30 북한 군사대표단, 중공 방문(무기원조 요청)</p>	<p>3 • 美국방장관, 월맹 철병 조건을 명시 • 훗세인 인도 대통령 急死</p> <p>9 소련, 아랍공화국에 군사 지원 재개</p> <p>14 닉슨 美대통령, 상호철군을 포함한 월남평화 8개항 공표</p> <p>17 소련의 루나 5, 6호 금성에 도착</p> <p>18 미국, 아폴로 16호 발사</p> <p>22 • 제3차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 개최 • 美아폴로 10호 LM으로 달 착륙 테스트에 성공 15km 접근</p> <p>28 NATO 국방상회의, 지중해 함대 창설 결정</p>

196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 박대통령, 미WP지 회견에서 제주도를 미군기지로 제공용의 있음을 거듭 언명</p> <p>3 • 레이드 미국방장관,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중임을 증언 • 제2차 한·미 국방각료회의 개최(~4일, 서울) ①M16소총 및 탄약공장 설치, ②한국군 장비현대화, ③한국의 장기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미국의 지원확약 등 공동성명 발표</p> <p>4 • 백마 10호작전, 백마부대(9사단) 3개 연대가 Phan Thang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20일) • 육군 2083부대 내무반에서 내무반장이 카빈 난사, 사병 7명 사망</p> <p>8 북한간첩선 북평 연안 침투/격침(간첩 5명 사살, 아 민간인 5명 사망)</p>	<p>7 제68차 바르샤바 IOC총회, 북한의 호칭을 DPRK로 결정</p>	<p>2 남지나해에서 美구축함이 호주 항공모함과 충돌 침몰</p> <p>3 루마니아·중공 무역협정 조인</p> <p>5 모스크바에서 세계공산당회의 개최(75개국 참가하였으나 중공은 불참)</p> <p>6 흑룡강에서 중·소 국경 충돌</p> <p>8 닉슨 美대통령과 티우 월남 대통령, 미드웨이 섬에서 회담, 주월미군 2만 5천명 철수를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0 정부, 鄭光鎬 해병 중장을 대장으로 승진, 7월 1일자로 해병대사령관에 임명</p> <p>12 • 북한간첩선 흑산도 해안 침투/격침(간첩 15명 사살)                      • 美국방부, 한국예비군에게 소총 70만정 공급중임을 발표                      • 정부, 해상방위책으로 동서 양해안의 야간통금 실시를 검토</p> <p>16 전국 16개 교육대학에 학군단(RNTC)을 설치</p> <p>20 M16 소총공장 설립에 관한 한·미 실무자회담 개최 (~27일, 서울)</p>	<p>11 북한 군사대표단, 소련 방문(추가군원 요청)</p> <p>17 북한·몽고간 영사협정 체결</p>	<p>10 베트남, 월남에 임시혁명 정부 수립했다고 발표</p> <p>11 • 英탐험대 첫 북극 도보 횡단에 성공                      • 중공, 소련군이 신강지역에 침입하여 유혈사태를 물고왔다고 항의</p> <p>15 프랑스 정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58 : 42로蓬피두 승리(20일 취임)</p> <p>22 남예멘, 쿠데타 발생</p> <p>28 닉슨 美대통령, 동남아 5개국 방문 후 루마니아를 7, 8월에 방문한다고 발표</p>

196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 정부, 8월 21일 박대통령 방미, 닉슨 대통령과 회담 예정 발표</p> <p>8 미국,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한국정부에 공식 통고</p> <p>22 • 한·미 국방장관회의(감문제 토의) • '69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 • 한·필리핀 항공운수협정 체결</p>	<p>3 • 소련공산당대표단(단장 제1부수상 마주로프) 북한 방문 • 북한, 한국군이 캄보디아 침공하면, 캄보디아에 의용군을 파견하겠다고 발표</p> <p>26 어린이 체육시간에 사격 훈련 과목 삽입</p>	<p>3 • 주월 미군 제1진(814명) 철수 • 자유중국의 반공계릴라, 중공함정 3척을 격침</p> <p>9 닉슨 美대통령, 순 해외주둔군 10% 감축을 표명</p> <p>14 엘살바도르군, 온두라스에 침입(축구전쟁의 전면화)</p> <p>17 국회의사당 여의도에서 기공식 거행</p> <p>20 미국 아폴로 11호의 암스트롱, 올드린 비행사 LM에 移乘 달에 착륙</p> <p>21 美, 대중공무역 및 여행 제한 완화 발표</p> <p>25 닉슨 美대통령, 괌도에서 닉슨 독트린 발표</p> <p>30 닉슨 美대통령, 월남 방문 (월남전 해결 문제 토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31 로저스 美국무장관 내한, 朴대통령과 한국방위 및 집단안보문제 협의		
8	8 美제8군사령관 본스틸 대장, 주월한국군사령부 방문	3 노동당 대표단, 루마니아 공산당 제10차 대회에 참석키 위해 루마니아 향발 (단장 김동규)	2 • 닉슨 美대통령, 루마니아 방문, 영사문제조약 및 안보문제 등 논의 • 美 NASA국장 화성에 의 인간착륙은 82년에 가능하다고 부언
	17 朴대통령, US뉴스앤드월드 리포트지와 의 회견에서 제주도를 미군기지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		12 미국, 아폴로 11호 3우주비행사 기자회견
	18 특전사령부 창설		
	21 朴대통령 방미, 닉슨 美대통령과 두차례 회담, 22일 공동성명 발표	20 노동신문, 침략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범죄적 음모라는 제목하에 朴대통령 訪美를 비난	21 레이드 美국방장관, 10만 감군과 국방비 30억달러 (1970년도) 삭감을 표명
	25 美태평양지구사령관, 주월한국군사령부 방문		
	28 주월 한국군 제1차 철병		

196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29 한국공군, F-4D 팬텀전투기 6대 도입		
	31 레소토공화국 조난다 수상 방한	31 북한·쿠바간 경제 및 기술협조협정 체결(평양)	31 브라질 대통령 중병으로 신군사정권 수립됐다고 3군이 발표
9	10 국민성금으로 UH-1H 헬리콥터 5대 구입	10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崔賢) 폴란드 방문	3 호지명 월맹 대통령 사망(9일 국장)
	14 개헌안 국민투표 법안을 공화당 정우회 소속의원만으로 제3별관에서 122표로 전격 가결		11 소련수상, 월맹 및 중공 방문
	17 완도해상에서 해안경찰정 1척 북한 간첩선에 의해 침몰	18 국제기자대회 평양에서 개최 86개국 참가	15 美 NASA, 달 표면 물질, 연구결과 발표
	23 제151전투비행대대 창설(F-4D 팬텀기)		16 • 미국, 12월 15일까지 주월미군 3만 5천명 철수 발표 • 미국, ABM 탄두의 지하실험 실시
	24 해군 서흑산도 근해에서 50톤급 북한 간첩선을 격침		20 •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담, 유엔본부에서 개최 • 유엔총회, 한국문제를 제1과제로 상정기로 가결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5 美국방부, 주한미군 71년 중반까지 유지계획이라고 발표</p> <p>30 • 윌러 美합참의장 내한, 한·미합동 고위군사회담 • 용산에 용사의 집 완공</p>		<p>30 미국정부, 타이 주둔 미군 6,000명을 '70년 7월까지 철수한다고 발표</p>
10	<p>1 마이켈리츠(J. H. Michaelis) 미 육군 대장, 주한 유엔군 사령관에 취임</p> <p>7 정부, 南江 다목적댐 7년 7개월만에 준공</p> <p>17 改憲案 국민투표 실시</p> <p>18 북한군, 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미군차량 습격(미군 4명 사망)</p> <p>20 주월 한국군과 월남합참간의 군사실무 약정 체결</p>	<p>1 포병사령부 직속으로 3개 지대지 자유로켓대대(FROG-5) 창설</p> <p>15 일본기계기술전람회, 평양에서 개최</p>	<p>2 美, 알류산 섬에서 지하핵실험</p> <p>4 중공, 9월에 지하핵·수폭 실험 사실을 발표</p> <p>7 미·소, 해저군사이용 금지조약 초안을 제네바 군축위에 공동 제출</p> <p>15 월맹·소련, 군사·경제협정에 조인</p> <p>20 소·중공 국경문제회담(북경)</p>

196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2 레어드 美국방장관, 국방비는 삭감되나 NATO 및 주한미군은 71년까지 현수준 유지한다고 언명</p> <p>25 군특명검열단 자문위원회에서 통합군체제인 국군참모총장제 건의</p> <p>27 디오리 하마니 니제르 공화국 대통령 부처 방한(~31일)</p>	<p>23 인민군 부대장 및 정치장교회의 개최(~27일)</p>	<p>24 남예멘, 미국과 단교선언</p> <p>25 미·소 전략군비규제협상(SALT) 11월 17일부터 헬싱키에서 개최 예정 발표</p>
11	<p>1 美공군 F-4 팬텀기 울진군에서 추락</p> <p>3 美우주인 암스트롱, 콜린스, 올드린 등 3명 한국 방문</p> <p>7 美국방부, 한국·월남·자유중국에 5~6년 동안 F-5전투기 325대 공급계획 발표</p> <p>11 崔圭夏 외무부장관, 유엔정치위에서 북한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언커크 및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역설</p> <p>25 정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박각서 전달</p>	<p>3 외무성, 제24차 유엔총회정치위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안이 부결되고 한국 단독초청이 가결되는데 성명발표</p> <p>22 북한·월맹간 무상원조협정 조인</p>	<p>5 NATO 상임위, 바르샤바동맹이 제안한 全歐안보회담 원칙에 동의</p> <p>14 ·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 주월 필리핀군 철병발표 ·아폴로 12호 美우주선발사(19일 달에 착륙)</p>

196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28 월맹, 철군 및 비밀협상을 요망하는 미국제안에 합의
12	<p>3 8월 17일 임진강 하류에 서 북한군에 의해 격추당한 미군 헬리콥터 조종사 3명 108일만에 판문점을 거쳐 귀환</p> <p>10 육군 제2, 제3통신단 창설</p> <p>11 강릉발 서울행 KAL기 (YS-11A) 납북(승객 47명, 승무원 4명, '70년 2월 14 일 39명만 귀환)</p> <p>16 美제8군사령부, 미공군 팬텀 2개 전투대대 군산 도 착을 발표</p> <p>30 丁총리, 애그뉴 美부통령 과 마닐라에서 회담하고 대 한특별군원 5,000만달러 지 원문제 협의</p>	<p>1 노동당중앙위 제4기 제20 차 전원회의 개막(~5일)</p> <p>6 조·소 외상회담(모스크바) (朴成哲, 그로미코)</p> <p>8 적십자회중앙위, 재일조선 公民들의 귀국사업을 파괴 하려는 일본당국의 불법행 위 규탄성명 발표</p>	<p>3 NATO 국방상회의 개최, 재래식 무기의 공격에도 핵 보복 원칙에 합의</p> <p>6 서독, 동독에 불가침조약 협상을 제의</p> <p>11 이스라엘, 미국의 중동평 화안을 거부</p> <p>19 미국, 대공산권에 대한 비전략물자 금수조치 19년 만에 완화</p>

# 197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박대통령, 신년사에서 自 立경제 국토통일 방안 모색 강조</p> <p>8 유엔군사령부, 한국의 방 위력강화를 위한 주한 美공 군시설 보완을 발표</p> <p>9 박대통령, 비미국화정책에 대비 자주역량 강화를 언명</p> <p>20 제3사관학교 제1기생 임 관식(1970년부터 교육기간 52주에서 104주로 변경)</p> <p>26 美 상·하원, 대한특별군원 5천만달러 등 3억 5천만달러 통과</p> <p>27 정부, 駐日 대사에 李厚 洛 임명</p>	<p>21 북한 군사대표단, 이집트 ·시리아 방문</p> <p>31 중공·북한간 압록강·두 만강 항행협정 체결</p>	<p>4 베트남, 20개 도시에서 신 정 대공격</p> <p>15 레이드 美국방장관, 6월 까지 주월미군 30만 감축 을 발표</p> <p>20 · 이스라엘군, 요르단 공 격 · 미·중공 대사급회담 재 개</p> <p>24 바르샤바조약 7개국, 비 상기동군 편성</p> <p>25 닉슨 美대통령, 이스라엘 에 무기지원 합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 정부, 국가안보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매월 개최 결정</p> <p>12 월계작전, 맹호부대(수도사단) 3개 연대가 Binh Khe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 (~3월 4일)</p> <p>14 피랍 KAL기 승객 39명 (51명중) 귀환</p> <p>20 한·미, 美합정 대여기간 연장협정 체결</p> <p>23 일본정부, 한국의 被侵시 미국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p> <p>24 美 대외방위공약에 관한 상원의교위 소위원회, 한국 안보문제 전반에 걸친 청문회 개최</p> <p>26 정부, 안보회의의 개최</p> <p>28 국방부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 4688 호 (담당관제 신설)</p>	<p>14 중앙통신사, KAL기 승객송환문제에 관해 일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성명, 승객 관문점으로 송환</p> <p>26 북한 군사대표단, 알제리 친선 방문(~3월 24일)</p>	<p>4 서독·폴란드 국교정상화 회담 개최(전후 25년만에 처음)</p> <p>12 일본, 첫 인공위성 발사</p> <p>18 닉슨 美대통령, 외교교서를 의회에 제출(닉슨 독트린)</p> <p>20 美 국방백서 발표, ABM 확대 필요성 강조</p> <p>27 미·영·불, 對蘇 각서에서 베를린문제에 대사급회담을 제안</p>

197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 백마 11호작전, 백마부대 (제9사단) 3개 연대가 Khanh Hoa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18일)</p> <p>5 美안보회의,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문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발표</p> <p>10 제18대 국방부장관에 丁來赫 취임</p> <p>28 육군사관학교 제26기 졸업식</p> <p>29 美국방부, 한국 예비군용 소총 79만정 특별군원을 발표</p> <p>31 • 일본 JAL기(요도 호), 일본 적군파에 의해 김포에 불시착 • 공군사관학교 제18기 졸업식</p>	<p>2 북한·중공간 1970년도 화물상호납입에 관한 의정서 조인</p> <p>9 피랍 KAL기 잔류승무원 북한 영주 발표</p> <p>13 越南인민의 반민 구국투쟁지지 주간 설정(~19일)</p>	<p>5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발효</p> <p>19 東·西獨 수상, 전후최초의 정상회담 개최</p> <p>28 중공·일본간 정치회담(북경)</p>
4	<p>4 북한간첩선 격멸비열도 해안 침투/격침(간첩 17명 사살)</p>		<p>1 소련·중공, 2년만에 대사교환 합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8 美상원, 주한 미군 1개 사 단철수론 부각</p> <p>10 • 美, 70회계년도 대한군 원 1억 4,000만달러로 확정 • 해군사관학교 제24기 졸업식</p> <p>20 합동참모본부직제령 개정 (대통령령 제4938호)</p> <p>22 독수리 70-1호작전, 맹호·백마 전부대가 Song Cau 지역에서 합동작전 전개 (~5월 16일)</p> <p>23 한·미간에 M16소총공장 건설에 최종 합의</p> <p>28 을지연습 70실시(~5월 1 일, 청와대)</p>	<p>5 • 중공수상 周恩來, 북한 방문 • 사회안전성, JAL기 송환과 관련하여 공보 발표</p> <p>9 김일성·주은래 공동성명 발표</p> <p>25 소련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대표 총참모장 자하로프)</p>	<p>13 비동맹국 외상회의 개막 (51개국 외상과 8개국 업저버 참가)</p> <p>16 SALT 본회담 개시</p> <p>24 중공, 첫 인공위성 발사 성공</p> <p>27 美, 캄보디아에 무기공수 개시</p>

197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 英親王 李垠 별세</p> <p>5 · 각의, 향토예비군법 개정 안 공포(기피자 벌칙 강화 등) · 육군특수전사령부 설치 안 의결</p> <p>6 정부, 정부기업체의 병역 기피 직원 해직 통첩 시달</p> <p>18 丁국방부장관 일행, 주월 한국군사령부 방문</p> <p>22 육군본부 직제 개편(대 통령령 제5017호)</p> <p>23 캄보디아정부, 한국군 파 병을 희망</p> <p>25 정부, 병역 미필한 해외 거주 연예인 및 체육인을 소환 결정</p>	<p>7 인민군 총참모장(오진우), 소련 방문</p> <p>12 북한·노르웨이 공산당간 공동성명</p> <p>28 스톡홀름에 북한 공보관 개설</p>	<p>1 미·월연합군, 캄보디아 領 內의 공산군 소탕작전 개시</p> <p>5 시아누크, 북경에 망명정 권 수립을 발표</p> <p>9 NATO, 지중해 해군함대 창설</p> <p>25 중공·월맹, 신군사원조협 정 조인</p> <p>27 NATO이사회, 東西相互 군축과 구주 안보토의 참가 를 제창</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4 해군방송선, 서해안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승무원 20명 포함)</p> <p>13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5033호)</p> <p>22 북한간첩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간첩 1명 폭사)</p> <p>23朴대통령,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문제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언명(외신기자 회견)</p>	<p>15시아누크 북한 방문(원조요구)</p> <p>27반미·대만해방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p>11소·월맹간 경제·군사원조조약 조인</p> <p>22미·일 안보조약 연장</p> <p>25캄보디아 총동원령 선포</p>
7	<p>1정부, 우편번호제 실시</p> <p>5미국정부, 주한미군 6만 4,000명 중 2만명을 1971년 6월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을 한국에 통고</p> <p>7京釜고속도로 428km 개통</p> <p>8레이드 美국방장관 내한(주한미군 감축 논의)</p>		<p>1중동문제 4대국 회의 뉴욕에서 개막</p> <p>5월남참전국 외상회담 개최(사이공)</p> <p>8소련·이스라엘 대사회담('67년 단교 후 처음 개최)</p> <p>10미·영 외상회담 런던에서 개막</p>

197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1 한·미 고위군사회담 개최(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장비현대화)</p> <p>16 · 국회, 주한미군 감축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 및 對美 메시지 채택 · 호랑이 작전, 맹호 3개 연대가 Binh Khe에서 수색 작전 전개(~31일)</p> <p>21 제3차 한·미 국방각료회의 개최(호놀룰루)</p> <p>23 · '70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 · 한·미 국방장관 회담</p> <p>25 M16 소총공장 건설借款 美정부와 합의</p>	<p>11 박성철을 내각 제2부상에, 김만금·홍원길을 부수상에 각각 임명</p> <p>14 루마니아 군사대표단 평양 도착</p> <p>22 金日成, 통일전 남·북한 연방제 실시 용의 표명</p> <p>25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오진우) 중공 방문(중공의 군사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p> <p>31 군정위 북한측 수석위원에 한영옥 임명</p>	<p>13 실론, 북한 승인 발표</p> <p>15 주월 미군 5만명 제4차 철수 시작</p> <p>23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 중동평화의 미국제안을 수락 언명</p> <p>31 이스라엘 각의, 미국의 중동평화안 수락 결정</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6 · 沈興善 육군 대장, 제12대 합참의장 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li> </ul> <p>15 박대통령, 8·15선언(평화통일방안 제시)</p> <p>20 국방부, 병무국을 폐지하고 병무청을 창설(대통령령 제5280호)</p> <p>26 박대통령·애그뉴 美부통령 회담, 先장비현대화에 異見</p> <p>27 美국방부, 이미 주한미군 1만명이 철수했으며 추가로 1만명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p>	<p>14 수단 수상일행 북한 방문</p> <p>20 스위스 노동당대표, 북한 방문</p> <p>30 월맹주재 대사 金炳三, 몽고주재 대사 박금범 임명. 그리스 공산당대표단 북한 방문</p>	<p>12 서독·소련, 상호불가침조약 조인</p> <p>14 미·소 SALT 회담 폐막, ICBM 각 2,000기로 동결하는데 원칙적 합의</p> <p>17 중공, 시아누크와 무상군사원조협정 조인</p> <p>20 동구 7개국 정상회담</p> <p>25 중동평화협상, 유엔본부에서 개시</p> <p>28 미국, 소련에 중동휴전 감시 위한 미·소 평화군 창설 제의</p> <p>29 美, 중공통상완화(검열조항 폐지)</p>

197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1 국방부, 신청사로 이동(구청사는 병무청에 인계)		
		7 북한·체코슬로바키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	3 월남평화 파리회담, 9개월만에 개최
	12 美상원 외교위 사이밍턴 소위원회, 미국의 대한안보 공약에 관한 청문록 공표	15 소·북한,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	15 제25차 유엔총회 개막
	17 한·미 군사회담, 국군현대화안 협의		17 파리회담에서 베트남 수석대표, 8개항 和平 제의
	23 한국해병 및 영국해군, 동해상에서 연합상륙훈련 실시	22 검찰총장 정동철, 건재공업상 이용순 각각 임명	25 美국방부, 소련이 쿠바에 잠수함기지 건설중이라 발표
10	2 주월 한국군 창설기념작전, 맹호 3개 연대가 Binh Khe, Phu Cat 지역에서 수색작전 전개(~19일)		3 미·영 정상회담(중동 휴전 문제 논의)
	4 美국방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향후 3~4년에 걸쳐 15억달러 특별군원 재공에 관한 새로운 군원계획 작성	11 노동당창건기념관 개관	
	14 한·미 군사회담, 한국군 장비현대화 보장과 감군에 상호합의		13 캐나다, 중공과 국교수립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17 중공·북한, 경제·기술원 조협정 조인	16 로저스 美국무장관, 그로 미코 소련의상과 회담, 4대 국 회담 개최 합의  20 일본 최초로 방위백서 발표
11	5 美국방부, 주한미군의 감 군원칙에 따라 한국군의 휴 전선 전담 및 미군의 후방 담당원칙(계획)을 발표  29 주한 美軍司 당국, 주일 미군의 전폭기를 한국기지 로 배치 전환된다고 발표  30 한·미간 주월 한국군 장 비소유권, 한국으로의 이양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	2 북한 9년만에 노동자대회 (제5차) 개최  19 북한, 월맹에 경제·군사 원조 제공을 발표  20 金策정치군관학교 창립 25주년기념 보고회 개최	2 미·소 전략무기제한 회담 (헬싱키)  11 蘇, 루나 17호 발사 성공  18 서독·폴란드, 국교 정상화 조약에 가조인(바르샤바)  25 레어드 美국방장관, 하원 外援 세출위원회에서 한국 군 현대화 및 주한미군 감 축에 대해 증언

197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 崔외무장관, 애그뉴 美부 통령·국방부·국무부 관계위 원과 한국안보문제 협의 (워싱턴)</p> <p>3 북한 공군소령 박순국, 미 그-15기로 간성 해변에 착 륙 귀순</p> <p>7 제868·제878포병대대 창 설</p> <p>14 포병 제336표적탐지대대 창설</p> <p>21 유엔軍司, 駐日 美 EC- 121기 부대는 '71년 2월까 지, 팬텀기 3개 대대는 6월 까지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발표</p> <p>30 육군본부 직제 개편(대 통령령 제5457호)</p>	<p>6 북한, 모스크바에서 재일 교포 북송협상 재개</p> <p>9 북한·중공,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조인(북경)</p> <p>12 民保省, 북한공군기의 한 국귀환과 관련하여 성명 발 표</p> <p>23 남부월남 임시혁명정부 에 구호물자 원조 결정</p>	<p>2 NATO 국방상회의 개최, 방위분담 및 유럽안보문제 협의</p> <p>6 로저스 美국무장관, 주한 미군 2만 철군외에 철군계 획 없다고 의회에서 증언</p> <p>9 美하원, 한국군 강화에 2 억 5천만달러 등 추가 外援 案 통과</p> <p>15 소련 금성 7호, 금성에 도착(8월 17일 발사)</p> <p>17 제25차 유엔총회 폐막</p> <p>18 미·소 SALT 3차 회담 종료</p> <p>22 美상원, 1억 5천만달러의 對韓특별軍援을 확정</p>

# 197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3군 의무기구 통합에 따라 8개 국군통합병원 개원 • 국방부 조달본부 창설</p> <p>2 美상원 외교위원장, 대한 군원관계로 방한</p> <p>11 • 육군간호학교를 국군간호사관학교로 개편 • 국군 의무사령부 창설</p> <p>15 • 터키정부, 주한 터키연락장교단의 철수결정을 한국에 통보 • 육군 제1, 제2 군수지원사령부 창설</p> <p>20 朴대통령 국방부 연두순시</p> <p>23 북한간첩, 속초에서 서울로 향하던 KAL기 납북 미수(조종사 1명 사망)</p>	<p>18 북한·헝가리간 '71년도 보건 및 의과학부문 협조계획서 조인(평양)</p> <p>22 외무성, 미국이 印支전역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성명 발표</p>	<p>1 일본, 중공과의 국교회담 방침을 발표</p> <p>10 팔레스타인 게릴라, 요르단 전역에서 정부군과 교전</p> <p>13 아랍공화국, 미·영·불·소 4대국 평화유지군 창설 등 중동 3개 평화안 제시</p> <p>17 포드고르니 소련간부회의 의장, 아랍공화국에 對이스라엘전 지원 원자로 제공 등 선언</p> <p>18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 남북한 등 모든 분단국가들의 유엔가입 필요성 강조</p>

# 197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6 丁국방장관, 주월 한국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언명	27 북한 동계올림픽 선수단 평양 출발	31 미군지원하에 월남정부군, 대규모의 라오스 침공작전 개시
2	3 태국정부, 주한 태국군을 1973년에 철수한다고 발표  6 한·미 국방장관 회담(제4차) 서울에서 개최  7朴대통령, 국군현대화 등과 관련 특별담화(전후전선의 국군전담) 발표  8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5515호)  9 美정부, BA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내 군납품 매대를 중단한다고 발표	3 북한·소, 1971~75년도 물자상호공급 및 지원협정 조인(평양)  4 북한·동독, 1971~75년도 물자상호공급 및 지원협정 조인(평양)  8 김일성, 인민군창설 23돌 즈음, 인민군 권성린 소속 군부대 축하 방문  11 중앙통신·파키스탄 국제통신사간 보도교환에 관한 협정 조인(이슬라마바드)	1 미·월남군의 라오스영내 침공작전에 대해 코시긴 소련수상, 중대한 관심 갖는다고 경고  11 해저 군사이용금지조약 조인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9 육군 군수기지사령부를 육군 군수사령부로 개편</p> <p>21 독수리 71-1호작전, 백마 28·29연대, 맹호 26연대가 Tuy Hoa 지역에서 합동작전 전개(~3월 11일)</p> <p>28 주한 美軍司, 美제2사단이 3월초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며, 전휴전선 한국군이 전담한다고 발표</p>	<p>17 과학원 제27차 상무위원회 개최(~18일)</p> <p>25 외무성, 미국의 월맹에 대한 침공책동규탄성명 발표</p> <p>26 병상선수 한필화 외국기자 회견</p>	<p>18 미·영·불·소 4대국 외상 회담 개막(베를린·중동문제 협의)</p> <p>23 닉슨 美대통령, 외교교서에서 한국군 장비현대화에 대해 발표</p> <p>25 닉슨 독트린 공표(70년대의 미국외교정책)</p>
3	<p>3 한·미연합 공수기동연습 프리덤 볼트작전 실시</p> <p>5 카투사 정원 조정(11,029명 →7,240명)</p>	<p>1 조총련 중앙상위, 한·미연합 대공수작전에 관한 항의문 발표</p>	<p>2 바르샤바조약기구 국방상 회담 개막</p> <p>5 중공수상, 군수녀를 대동하고 월맹 방문</p>

197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2 한국군, 서부전선 美제2사단지역 20km를 인수, 처음으로 155마일 전후전선을 국군이 담당(관문점 제외)</p> <p>27 주한 美제7사단, 닉슨 독트린에 따라 駐韓任務 끝내고 離韓</p> <p>30 육군사관학교 제27기 졸업식</p> <p>31 • M16 소총 생산사업에 관한 한·미정부간의 양해각서 서명(4월 22일 발효, '68년 5월부터 협의 시작) • 공군사관학교 제19기 졸업식</p>	<p>6 캄보디아 정부 대표단, 북한 방문</p> <p>17 북한·중공, 압록강 수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의정서 조인</p> <p>25 • 식수절 제정 •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를 4월 12일에 소집 결정</p> <p>28 당대표단(단장 부수상 김일), 소련공산당대회 참석차 평양 출발</p>	<p>15 美, 중공여행 금지 조치를 20년만에 전면해제</p> <p>27 로저스 美국무장관, 외교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대한방위공약을 재천명</p> <p>30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중공을 포함한 5대 핵국가회의 소집 제안</p>
4	<p>1 • 각군 사병 계급장 변경 • 주한 美합동군사지원단(JUSMAG-K) 발족 • 美 저공 요격용 체플러 유도탄 및 발칸포로 장비된 대공포병대대를 주한 美제2사단에 배치</p>	<p>1 북한·소련과학원간 1971년~73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모스크바)</p>	<p>1 제24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루마니아·이탈리아 대표가 모든 공산당의 주권 및 독립추구(브레즈네프 독트린에 정면 도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9 해군사관학교 제25기 졸업식</p> <p>14 육군, 퇴직금제도 대폭개선</p> <p>19 崔圭夏 외무, 주월한국군의 단계적 감축 1단계 조치로 1개 사단 철수 발표</p> <p>21 독수리 71-1호작전, 맹호·백마 전부대가 Tuy Hoa지역에서 합동작전 전개(~5월 11일)</p> <p>24 제1포병대대 창설</p> <p>27 제7대 대통령선거</p>	<p>12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 개최</p> <p>①김일성 체제 강화</p> <p>②전인민 무장화</p> <p>③적극적인 외교망 확장</p> <p>15 북한 TV방송 개시</p> <p>17 金日成 생일축하 재일조총련 중앙대회 진행(동경)</p> <p>18 북한 군사대표단 루마니아 방문</p> <p>23 북한·중공과학원간 과학협조계획서 조인</p>	<p>10 미국 기자 6명,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 탁구팀을 수반하여 중공 방문</p> <p>14 닉슨 美대통령, 중공에 대한 통상·여행제한 완화를 포함한 새로운 5개 항목의 대중공 관계개선사항 발표</p> <p>17 이집트·시리아·리비아 등 3국을 통합한 신아랍연방국 수립을 선언</p>

197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4 북한간첩선(간첩 5명) 인천항 침투/도주(아경찰 1명 사망)</p> <p>5 美 레슬 육군장관 내한,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협의</p> <p>25 제8대 국회의원 선거</p>	<p>13 북한·쿠바, 과학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인(아바나)</p> <p>23 무산지구 전투승리 기념탑 제막식</p>	<p>16 닉슨 美대통령, NATO군의 일방적 감축은 역사적 과오라고 경고</p> <p>25 NATO 국방상회의 개막</p> <p>26 印·파키스탄, 국경에서 교전 개시</p> <p>27 소·아랍, 군사원조조약 체결</p>
6	<p>1 북한간첩선 추자도 해안 침투/격침(아공군 C-46기 피격)</p> <p>3 한국군, 미군으로부터 어네스트 존 로켓, 8인치 자주포, M48A2C 전차 등 신형장비 인수</p> <p>8 美하원 외교위, 한미관계 회고와 전망에 대한 특별 청문회 개최</p>	<p>7 칠레와 외교관계 수립</p>	<p>3 월남정부, 주월 한국군의 첫 철수를 '73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공식요청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2 주한유엔군측, 제317차 정전위에서 DMZ내의 군관계 사항 철거 및 남·북한 농민에 개방을 제의</p> <p>14 제155호크 유도탄대대 창설</p> <p>22 美육군장관, 미하원에서 주한미전투부대를 카투사로 보충하고 미군은 군사고문단, 심리전요원, 대공 미사일부대 등 전투부대 아닌 특수부대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증언(3월 8일자 비밀 증언 공개)</p> <p>23 북한 무장간첩 3명 경기도 문산지역 침투/교전(아군 12명 전사, 부상 19명)</p> <p>25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5681호)</p> <p>30 · 애그뉴 美부통령 내한 · 유엔군방송국(VUNC), 21년만에 폐쇄</p>	<p>20 외무성, 미·일의 오키나와 반환협정 조인을 규탄 성명</p> <p>25 반미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p>17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 조인</p> <p>23 · 소련의 샬류트·소유즈 유인 우주정거장, 우주체제 시간 최고기록 세워 · 람 월남외상, 주월한국군 상당수가 연말께 철수된다고 언명</p> <p>29 제네바 군축회의 재개, 미국 대표, 중공의 군축회의 참가 제의</p>

197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 · 군원이관 재개(한국군 월남파병으로 중단) · 한·미(연합) 제1군단 창설(미1군단 해체)</p> <p>13 제4차 한·미 연례안보협 의회의(명칭 개칭) 개최(서울)</p> <p>15 야전공병단을 해체하고 군단 공병여단 창설(4개 여단) (제2·3·5·6여단)</p> <p>19 을지연습 71 실시(~24일, 청와대)</p> <p>20 '71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22 군사정전위 신임 미국 (유엔군) 수석대표 프란시스 D. 폴리 해군소장 부임</p> <p>27 한·미간의 美 함정 대여 기간 연장협정 서명, 발효</p>	<p>3 북한·중공, 해난구조협력 협정 조인</p> <p>9 군사정전위 중공측 대표 판문점회담에 5년만에 복귀</p> <p>22 시아누크 평양 도착</p> <p>27 사로청호 탱크를 인민군에게 전달하는 집회 개최</p>	<p>1 월남전 파리평화회담의 월남 임시혁명정부 대표, 7개항의 새 평화안 제출</p> <p>10 美, 월남백서에서 미군 전사 4만 4,000여명, 전비 1,200만달러라고 발표</p> <p>13 일본, 극동평화 위해 자위대 장비현대화를 선언</p> <p>28 주은래 중공수상, 주한미군 철수 요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31 美아폴로 15호 달착륙, 두 우주인 사상최초로 9km 주행
8	7 金溶植 외무장관, 中·蘇와의 수교 용의를 표명	6 金日成,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인사들과의 접촉 용의를 표명	2 東歐정상회담 개최, 미·중공 접근에 따른 대책 토의 (크리미아)  4 美하원 본회의 1972년도 대한원조액 통과(무상차관 2억 3,940만달러, 군사차관 1,500만달러), 주한미군 사용장비 이양 1억 4,000만달러, 미군 잉여장비 이양 4,000만달러 등 합계 3억 9,840만달러와 경제원조 2,000만달러
	9 • 최초의 月人, 美 닐 암스트롱 내한 • 국기에 대한 맹세 제정	10 미국·조선 친선 공보센터 대표단 평양 도착	9 소련·인도, 평화우호협력조약 조인
	16 주월 한국군 1단계 철수에 관한 한·월 합의각서 서명	14 북한적십자회, 韓赤의 가족찾기운동 제의에 서신교환, 가족·친척의 자유방문을 위한 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	14 美하원 외교위, 한국문제에 관한 청문회(71년 6월)에서 한반도의 중립화안에 대한 논의 있었음이 밝혀짐
		18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오진우) 중공 방문(군사지원 및 안전보장문제 토의)	

197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3 실미도에서 탈출한 특수 부대요원 난동</p> <p>24 제19대 국방부장관에 劉載興 취임</p> <p>27 북한 무장간첩 4명 경기도 문산 침투, 교전(간첩 3명 사살, 아민간인 1명 사망)</p>	<p>23 북한적십자회, 8월 26일부로 관문점 파견원(2명)을 배치한다고 발표</p>	<p>19 루마니아 대통령, 소련 영도권에 전면 도전하고 전군에 경계령</p> <p>23 베를린문제에 관해 미·영·불·소 대사회담에서 최초 협정안 합의</p> <p>27 닉슨 美대통령, 베를린문제 4대국 협정안 승인</p>
9	<p>1 제1야전포병단 창설</p> <p>9 · 국방부, 주월 한국군 제1차 철수가 12월부터 개시된다고 발표 · 을지연습 '71 실시(~24일, 청와대)</p> <p>17 북한 무장간첩 3명 경기도 김포지구 침투, 교전(간첩 3명 사살, 아군 5명과 민간인 3명 사망)</p>	<p>8 북한·중공, 무상군사원조 협정 조인(북경)</p>	<p>2 이집트·수단·리비아를 합친 아랍공화국연방 정식으로 발족</p> <p>6 북유럽 5개국, 중공의 유엔가입 지지 공동성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19 육군본부에 전쟁기획위원회 설치(1972년 1월까지)		
	20 가족찾기 남·북한 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개최(판문점)	20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개최(판문점)	20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 남·북한 등 분단국가들의 유엔 가입의 필요성 강조
10	21 판문점에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가설	25 북한, 파키스탄에 소총 및 탄약 3,500톤 수송	21 제26차 유엔총회 개막
			30 핵전쟁위험 감소조치에 관한 미·소간 협정 조인
		6 제3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4 로저스 미국무장관, 유엔총회에서 중공 유엔가입을 지지하고 자유중국 의석확보를 호소
	15 정부,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 선포	15 북한·중공간 라디오 및 TV방송 협정 조인	25 유엔총회, 자유중국 축출·중공가입안 가결(찬성 : 76, 반대 : 36)
	26 劉國방부장관, 1972년 6월까지 주월 한국군 병력 5만명중 1만명을 철수한다고 발표		
	29 간첩선 소허사도 침투(4명 사살, 우군 경찰 1명 전사)	29 북한·월맹, 경제 및 군사원조협정 조인	27 티토 유고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197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 육군 제2조병창 창설</p> <p>4 주월 한국군, 캄보디아군 훈련계획 발표</p> <p>6 정부, 주월 한국군 제1단계 철수에 관해 성명 발표 (월남정부와 동시발표)</p> <p>9 위수령 해제(10월 15일 발령)</p> <p>14 沈함참의장, 미국의 대한군원 감축에 따라 중화기의 국내생산 추진중임을 발표</p>	<p>2 북한·루마니아 법률 상호협조조약 체결</p> <p>16 日·朝 우호축진의원연맹 결성(동경)</p>	<p>4 적십자국제위원회(ICRC), 인권문제에 관한 '72년 5월 회의에 남·북한을 동시 초청했다고 발표</p> <p>12 닉슨 美대통령, 12월과 1월에 주한미군 4,500명 철군계획 발표</p> <p>16 중공 유엔대표, 유엔가입 후 첫 연설에서 한반도분쟁 해결, 유엔군철수, UNCURK 해체, 침략자 결의 폐기 등을 주장</p> <p>27 ASEAN회의, 동남아의 중립선언</p> <p>29 닉슨 美대통령, '72년 2월 21일부터 8일간 중공을 방문한다고 양국 동시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4 주월 한국군 제1단계 제1제대 월남 출발, 12월 9일 부산 도착(청룡 제2대대 및 포병 제15중대 46/971명)</p> <p>6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언, 모든 국내체제를 전시체제화하는 6개 항목 비상사태 선언문 발표</p> <p>15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5874호)</p> <p>16 국산병기시제품(카빈소총, 기관총, 60밀리 박격포, 3.5인치 로켓발사기) 전시</p>	<p>7 외무성, 한국의 비상사태 선언을 비난</p> <p>13 북한·소련간 라디오 및 TV방송 협정 조인</p> <p>15 북한·소련간 나진항 이 용협정 체결</p>	<p>1 미국, 對인도 무기수출 전면 중단</p> <p>3 인도·파키스탄 전쟁 발발</p> <p>7 유엔총회, 인·파 전쟁 휴전 및 양군철수 요구 결의안 통과, 파키스탄 즉시 수락, 인도 거부</p> <p>11 동·서독, 동서 베를린 왕래 등 협정에 가조인</p> <p>15 월남참전국 주월대사 회의 개최</p> <p>18 인·파 전쟁 전면 휴전(동파키스탄 정부군, 인도에 항복)</p> <p>21 유엔안보리, 새 유엔사무총장에 쿠르트 발트하임 주오스트리아 대사 선출</p>

197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3 사이밍턴 美상원의원 일행, 주한미군 실태 시찰차 내한</p> <p>24 주월 한국군 제1단계 제2제대 월남 출발, 12월 29일 부산 도착(청룡 제1대대, 포병 제6중대 등 61/1, 074명, 육군 맹호 601포대 5/137명)</p> <p>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 제2312호)</p> <p>30 미군이 한국군에 위탁 관리해오던 전술자재를 한국군이 인수 완료</p>	<p>28 외무성, 한국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와 관련하여 내외 기자회견</p>	<p>22 제26차 유엔총회 폐막</p> <p>28 미·서독 수뇌회담, 유럽 주둔 미군의 계속 주둔 합의</p>

## IV. 自主國防期(前期)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4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대표 폴리 제독, DMZ 평화이용 4개항을 제의</p> <p>6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 다부동 전투 전승비 제막식 거행</p> <p>10 제14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개최</p> <p>11 •朴대통령, 총력안보체제 구축, 분단국 일괄처리 반대 강조</p>	<p>4 김일성, 중공 통상대표단 접견</p> <p>10 김일성, 日 요미우리신문 회견에서 남·북한 평화협정을 제의</p>	<p>3 •부토 파키스탄 대통령, 연금중인 라만 아와미 연맹 총재의 무조건 석방을 발표 (8일 석방, 10일 방글라데시에 귀환) •美대통령 중공 방문 선발대 북경 도착</p> <p>5 미·소 전략무기제한회담 재개</p> <p>6 •파리 월남평화회의 1개월만에 재개 •美국방부, 7함대의 인도양 상주를 표명 •미·일 수뇌회담, 오키나와를 5월 15일 일본 반환 등을 공동성명</p> <p>7 중공, 대기권 핵실험(13번째)</p>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1 •朴대통령, 신년사에서 방위산업 및 자주국방에 대해 강조</p> <p>•'72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72 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p> <p>15 朴대통령, 국방부 연두순시</p> <p>29 육군보안사령부, 대학교수 포함한 간첩 7개당 23명을 검거 발표</p>	<p>23 북한, 日·朝 우호축진의 원연맹과 무역축진을 위한 합의서 조인</p>	<p>13 닉슨 美대통령, 주월미군을 5월 1일까지 최고 6만 9천명 선으로 하는 철군계획을 발표</p> <p>20 닉슨 美대통령 연두교서 발표, 핵억지력 유지, 군사불개입 등 강조</p> <p>25 •蘇, 방글라데시를 승인</p> <p>• 닉슨 美대통령, 월남 평화 8개항 제시(월맹과의 협정성립후 6개월내 철군)</p> <p>26 월맹, 美의 신제안 거부</p> <p>30 日 사토 수상, 일본정부는 한국과 정식외교관계에 있으므로 북한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 • 육군정보사령부 창설 •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 전쟁기획실 설치</p> <p>4 서해상에서 한국어선 5척 북한에 납치되고 1척은 침몰</p> <p>7 주월 청룡부대(해병제2여단) 주력, 부산항에 개선</p> <p>11 劉載興 국방부장관, 티우 월남 대통령과 회담(16일 귀국)</p> <p>15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017호)</p> <p>19 군수사대, 군량 콩 1천포대를 빼돌린 소령 등 4명 구속</p> <p>21 공군 제106지원단을 해체하고, 제106전투지원단으로 개편</p>	<p>3 당 사회안전원 및 인민경비대 일꾼 연속회의 개최 (~27일)</p> <p>10 북한·일본, 진남포와 나가사키항간 정기화물선 항로를 개설키로 합의</p> <p>11 조총련, 대북한 무역을 맡을 조일수출상사 자본금 24억원으로 설립</p>	<p>3 • 월남평화 파리회담에서 월남 임시혁명정부가 7개항 제안 • 미·소, 제6단계 SALT 끝내고 공동성명 발표</p> <p>4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소련 방문 마치고 공동성명(소련, 추가 군사원조 약속)</p> <p>9 닉슨 美대통령, 외교교서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현대화 작업은 성공적이며, 남북적십자회담은 긴장완화의 징조라고 언급</p> <p>19 日·몽고간 외교관계 수립</p> <p>21 닉슨 美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첫 중공 방문</p>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4 주월 해병제2여단(청룡부대) 철수 완료</p> <p>28 안보문제연구소 발족(국방대학원 부설기구로)</p>	<p>24 북한외상 허담,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와 회담(모스크바)</p> <p>25 김일성 탄생 60돌 축하 조총련 동해호, 남포항 도착</p>	<p>27 美·중공 공동성명, 평화 5원칙에 합의, 미국은 대만을 중공의 일부로 인정, 제분야에서의 교류에 합의</p> <p>29 '72년 제네바군축위 개막</p>
3	<p>1 그린 美국무차관보 내한 (북경회담 내용朴대통령에 설명)</p> <p>2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북한에 비무장지대내의 요새화를 항의</p> <p>7 육군, 민통선 북방 농지 200만평을 영농지로 개방 방침 발표</p> <p>8 제10대 해군참모총장에 金圭燮 해군 중장 임명</p> <p>10 청룡부대(해병 제2여단) 서부전선 방위임무 부여, 부대배치</p>	<p>1 조·일 수출입상사 업무 개시</p> <p>3 북한·카메룬간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 공동성명 발표</p> <p>8 북한·루마니아간 1972~73년도 문화협정 체결</p>	<p>1 라만 방글라데시 수상, 소련 방문</p> <p>7 로저스 美국무장관, '71년도 외교보고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유연자세 표시</p> <p>9 자유중국, 소련과 관계정상화 용의 피력</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3 병무청 실무심사 동원위원회를 시·읍면에 설치키로 결정(병역면제자 심사)</p> <p>14 •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109호) • 한·미간에 M16 소총 탄약생산을 위한 4,400만달러 공여협정 조인</p> <p>15 제9병참 보급창을 대전 종합창으로 개편</p> <p>17 주월십자성부대(제100군 수사령부) 1진 부산항에 도착</p> <p>18 제209 이동외과병원 해체</p>	<p>12 북한·소련 무역협정 체결(모스크바)</p> <p>23 서두 수력발전소 건설 통수식 거행</p> <p>27 김일성, 인민군 구분대들을 현지지도, 동해지구 육해공군 지휘관들 접견</p> <p>29 최고인민회의 제4기 6차 회의를 '72년 4월 4일 소집을 공시</p>	<p>13 • 제1회 미국·중공대사, 파리회담 개최 • 영국·중공간 대사급 승격을 공동성명</p> <p>15 미국, 북한·월맹·쿠바에 대한 미국민의 여행제한을 1년간 연장 결정</p> <p>16 닉슨 美대통령 22~28일간 소련방문계획 발표</p> <p>28 제7차 미·소 전략무기 제한회담 폐막</p>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30 박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제28기 졸업식에서 평화 5개원칙 제시</p> <p>31 공군사관학교 제20기 졸업식</p>		<p>30 美의회, 잠수함 2척과 구축함 5척의 對韓대여 승인</p>
4	<p>1 · 주월 한국군 제1단계 철수완료 · 육군 조병창을 육군 제1조병창으로 개편</p> <p>6 해군사관학교 제26기 졸업식</p> <p>11 월남 An Khe 패스작전 전개(~25일)</p> <p>12 · 공군본부 직제 개정(국무원령 제6137호) · 을지연습 '72실시(~16일)</p>	<p>1 노동당 대표단, 이라크 방문</p> <p>5 · 시아누크 북한 방문 · 중공과 어업분야 상호협조협정 체결</p> <p>11 노동당중앙당학교를 김일성고급당학교로 개칭</p>	<p>6 이집트, 요르단과 斷交</p> <p>7 월남 공산군의 메콩 델타 대공세로 전선은 월남 전지역으로 확대</p> <p>9 우간다, 이스라엘과 단교</p> <p>10 세계 74개국 대표들, 제네바군축회의에서 타결된 생물학무기금지협정에 서명</p> <p>13 ASEAN 제5차 외상회담 개막</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7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8차 실무회의</p> <p>22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155호)</p> <p>25 육군 제2조병창을 국방부 조병창으로 개편</p> <p>26 육군 제2사관학교를 해체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 통합(육일명 제26호)</p>	<p>14 소련, 金日成에게 레닌 훈장 수여                      • 김일성에게 2중영웅 칭호 수여</p> <p>15 金日成 생일 60주년을 맞아 이날을 민족적 대명절로 제정</p> <p>19 남포혁명학원을 강반석혁명학원으로 개칭</p> <p>24 金日成 동상, 조선혁명박물관 개관</p>	<p>17 로저스 美국무장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이 종료됨과 동시에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는 종료되고 FMS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p> <p>19 월맹의 미그기·괘속정, 월남전 사상 처음으로 통킹만상 미함대를 공격, 월남 전지역 103곳에서 공산군 일제 공격</p> <p>21 美 아폴로 16호 5번째로 달표면 착륙</p> <p>25 福田 일본외상, ASPAC 존속을 희망</p>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27 주월사령부, 주월국군 기동타격대 편성</p> <p>30 국방과학연구소, 60·81밀리 박격포 개발 착수</p>	<p>28 김일성, 일본기자와 회견, 남북정치회담 조기개최 주장</p> <p>29 최고인민회의 제4기 6차 회의에서 '72년도 73억원 규모의 예산안 채택(~30일)</p>	<p>30 로저스 美국무장관 월맹 대공세에 핵지상군 제외한 어떠한 군사조치도 불사한다고 언명</p>
5	<p>2 李厚洛 중앙정보부장, 평양 비밀방문(~5일)</p>	<p>1 최고인민회의, 캄보디아 반미 구국투쟁을 지지한다고 성명</p> <p>2 이후락 한국 중앙정보부장 평양 도착, 김일성 방문(3일)</p> <p>6 북한·캄보디아 왕국간 공동성명 조인</p>	<p>1 월남정부군, 공산군 공격으로 캄트리 시를 포기</p> <p>2 키신저 美대통령 보좌관과 레дук토 월맹대표단 고문, 파리에서 비밀회담</p> <p>9 주은래 중공수상, 동남아 중립화 구상지지를 표명</p> <p>11 소련, 美의 월맹해상봉쇄 즉시 해제요구, 중공도 비난 성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7 구축함 DD-95함 도입</p> <p>18 • 한·미 고위군사실무자 회의 개최 • 국방부, 통합군 창설계획 보류</p> <p>29 북한 朴成哲 제2부수상 서울 비밀방문(~6월 1일)</p>	<p>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8월 20일을 공군절로 제정</p> <p>26 김일성, 美 NYT 부주필 솔즈베리·동경지국장 존엄리 기자 접견에서 남북한 연방제 실시를 제안</p> <p>30 日공명당 대표단(단장 다케이리 요시카쓰) 평양 도착</p>	<p>20 닉슨 美대통령 訪蘇등정 (전략핵무기제한협정에 조인 예정)</p> <p>22 실론 국, 국명을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변경</p> <p>26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정 조인</p> <p>31 NATO각료이사회(본) 全歐洲 안보회의 개최, 동서歐洲 무력삭감 등 공동성명</p>
6	<p>1 제13대 합동참모회의의장에 韓信 육군 대장 취임</p> <p>2 제20대 육군참모총장에 盧載鉉 육군 대장 취임</p>	<p>1 북한·칠레간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p> <p>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8월 28일을 해군절로 제정</p>	<p>1 칠레, 북한·월맹과 수교</p>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5 사이공에서 주월한국군 지휘관회의</p> <p>14 ASPAC 각료회의 개막 (서울)</p> <p>21 6·25 참전후 철수하는 태국군 환송식 거행(1950년 11월 7일 한국 도착)</p> <p>27 제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미공군사관학교에서 劉載興 국방부장관과 레어드 미국방장관 사이에 개최(~28일)</p> <p>30 경인지구 예비군 고사포 부대 배치완료(1970년부터 배치 시작)</p>	<p>13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장정환), 예멘 향발</p> <p>15 북한·칠레간 경제 및 기술협조협정 조인(평양)</p>	<p>3 미·영·불·소 4대국 외상, 서베를린에서 베를린협정에 정식 조인</p> <p>11 키신저 美대통령 보좌관, 한국에서 원하면 미군 계속 주둔</p> <p>16 키신저 美대통령보좌관, 주은래 중공수상과 회담(북경)</p> <p>24 佛, 태평양에서 핵실험</p> <p>27 로저스 美국무장관, SEATO 회의에서 북한을 DPRK로 호칭</p> <p>28 닉슨 美대통령, 9월 1일까지 주한미군을 3만 9천 명 선으로 감축한다고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4 정부, 조국평화 자주통일 원칙 등 7개 항목을 골자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서 발표</p> <p>5 •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6274호) • 문교부, 북괴를 북한으로 호칭하도록 각 부처 공보관에 지시</p> <p>7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남북공동성명의 영향을 검토</p> <p>20 '72년도 국방대학원 및 제 18기 합동참모대학 졸업식</p>	<p>4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의 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 발표</p> <p>8 외무성, 미국은 조선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성명 발표</p> <p>31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 제18차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 수상</p>	<p>3 인도·파키스탄 평화협정 조인</p> <p>11 코메콘 연례회의, 쿠바를 정회원으로 가입 결의</p> <p>14 부토 파키스탄 대통령, SEATO로부터 탈퇴 발표</p> <p>27 북경발 AFP통신, 임표가 쿠데타 기도후 비행기로 소련으로 도망하다 추락사망 보도</p> <p>1 일본 방위청, 4차방위력 정비 5개년계획안 확정(총비 5조 3,000억엔 규모)</p>
8	<p>1 4.2인치 박격포 및 105밀리 곡사포 개발 착수</p>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3	박대통령, 헌법 제73조의 긴급명령 발동,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2	우간다와 외교관계 수립  5 조·소 친선대표단, 소련 방문	7	주월 미군사령부, 주월미군 4만 4,000명, 주태국 미군 수는 4만여명이라고 발표
8	9	군수사기관, 병무부정사건 혐의로 車容泰 준장(전 경기병무청장) 외 관련장병 11명 구속	8	룩셈부르크의 김일성 연구 小組책임자 평양 도착	11	주월 미군사령부, 월남 잔류 최후의 미지상군 1,043명이 철수개시했다고 발표
8	23	마이켈리스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추가 철수 없다고 고별기자회견에서 언명	30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 5개 의제 합의문서 교환	28	닉슨 美대통령, '73년 7월부터 징병제 폐지 연설
9	1	연구발전사령부 책임하에 '73년 6월 30일까지 보병제 8 사단을 보병사단 개편시험 실시	3	소련공산당 대표단(단장 가스체프) 평양 도착	1	미·일 정상회담 개최(하와이)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5 제6차 한·일각료회담 개막(6일 폐막)</p> <p>7 정부, 주월 한국군 3만 7천명,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방침 결정</p> <p>8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 제정(국방부훈령 제143호)</p> <p>13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 개최(서울)</p> <p>20 •李世鎬 주월사령관, 12월부터 철수준비 진행중임을 언명          • 제1공수특전단을 제1공수특전여단으로 개편          • 제1유격여단을 제3공수특전여단, 제2유격여단을 제5공수특전여단으로 개편</p> <p>27 월남정부, 주월 한국군 철수 연기 요청</p>	<p>6 노르웨이에 북한 공보관 개설</p> <p>8 북한·세네갈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17 金日成, 일본기자와의 회견에서 남북연방제 실시 등 주장</p> <p>20 기록영화인 과수의 나라와 누에치기에서 새로운 방법이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 수상</p> <p>25 잠비아 정부 대표단, 평양 도착</p>	<p>5 뮌헨올림픽에 아랍계릴라 난입, 인질의 이스라엘선수단 11명 살해</p> <p>9 시리아 공군기, 이스라엘 점령하의 골란고원 상공에 침입, 이스라엘 공군기와 공중전</p> <p>14 美상원, 미·소 공격용 전략무기제한 5개년 잠정협정을 승인</p> <p>19 제27차 유엔총회 개막</p> <p>20 IPU이사회, 북한가입보류안 가결(19일 집행위원회에서 북한가입안 채택)</p> <p>27 田中 일본수상, 모택동 주석과 회담(북경)</p>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9 田中 일본수상 訪中, 국교회복 공동성명
10	1 朴대통령, 국군의 날 유사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국방력 증강 역설  5 • 주월 한국군사령부 작계 72-2 개선문 계획(주월 한국군 철수) 하달 • 해병대직제령 공포(대통령령 제6359호)  12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회담 개최(판문점)  16 한·미 양국, 무기 및 장비개발에 대한 정보교환 협정체결	3 노동신문, 日·中 관계정상화 환영 보도  8 전국 종목별 체육선수권 대회  9 북한·폴란드간 경제과학기술협의회 설치에 관한 협정 조인  11 북한·오트볼타 정부 대표단 공동성명 발표	2 닉슨 美대통령, 그로미코 소련외상과 회담  3 미·소 ABM(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조약 비준서에 서명  8 인도, 동독과 수교  10 서독, 중공과 수교(80번째 중공 승인국)  14 미·소 해운협정 조인  16 시드키 이집트 수상, 소련 방문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17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계엄사령관 盧載鉉(육군참모총장) 계엄사 포고 제1호 하달		
	18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19 확대 EC수뇌회담, 파리에서 개막
	21 유신헌법개헌안 공고		21 大平 일본외상, 訪蘇(일·소 평화조약의 교섭시작 등을 토의)
	23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5차 전원회의 개최(~26일) ①헌법개정문제 ②1973년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대하여 ③당원 교환 문제		
30 구축함 DD-96함 도입		30 훙 푼외상, 중공 방문 (~11월 2일)	
11		31 김일성, 극비리에 북경 방문(AFP가 11월 28일에 보도)	
			1 서독과 소련, 전후 최초로 레닌그라드와 함부르크에 총영사관을 개설  4 닉슨 美대통령, 남북한 화해는 세계평화조류의 일환이라고 언급

197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8 국방부, 군납품검사강화 등 군수물자조달 합리화 실적 발표</p> <p>12朴대통령, 헤이그 美특사 접견하고 월남협상 상황 청취</p> <p>13 주월 한국군사령부, 작계 72-3(판문점 계획) 하달 (철수시행계획)</p> <p>21 국민투표 실시(개헌)</p> <p>22 유신헌법안 확정(국민투표 찬성 91.5%, 24일 선거관리위원회 확정 공포)</p>	<p>7 군정위 북한측 수석대표에 김풍섭 소장 임명</p> <p>9 북한·파키스탄간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p> <p>16 북한·말라가시간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발표(평양)</p> <p>24 북한·아르헨티나 공산당간 공동성명 발표</p>	<p>7 美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애그뉴組 압승</p> <p>19 서독연방의회 총선거, 여당인 사회민주당 진출로 브란트정권 압승</p> <p>21 제2차 미·소 전략무기 제한회담 개막(제네바)</p> <p>23 미정부, 대중공접촉확대의 일환으로 미국적 선박금지 규제를 폐지</p>
12		<p>4 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창립 20주년 기념대회 진행</p>	<p>1 중공, 일본·소련간 영토분쟁에서 일본 입장을 공식 지지</p> <p>4 미·월맹간 파리 비밀회담 재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5 국민교육헌장 선포</p> <p>6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공포</p> <p>8 8인치 곡사포병대대 창설 (제808, 818, 828, 838 포병대대)</p> <p>27 · 朴正熙 대통령 취임 · 유신헌법 공포</p> <p>28 ·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6422호) · 육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423호) · 해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424호) · 공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426호) · 해병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359호)</p>	<p>7 김일성, 인민군 제696부대 표창</p> <p>12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선거 실시(541명)</p> <p>21 북한·기니간 경제 및 기술협정 조인</p> <p>25 김일성, 방북중인 중공외상 희봉비 접견</p> <p>27 북한, 민족보위성을 인민무력부로 개칭</p> <p>29 김일성 공화국 주석 추대 축하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p>17 닉슨 美대통령, 행정백서에서 남북한 대화에 만족 표명</p> <p>21 · 동·서독 기본조약 조인 · 미·소 전략무기제한회담 폐막, 미·소 조절위원회 설치 발표</p>

# 197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3 '73년도 제1차 국가안전 보장회의 개최('74국가안전 기본정책)</p> <p>26 劉載興 국방부장관, 주월 한국군 철수에 따른 초과병력 1만 9천명 체대 방침 천명</p> <p>30 주월 한국군 철수 개시 (선발대 100명 수원비행장 도착)</p>	<p>5 소련주재 대사 권희경, 15일간 관광비자로 프랑스 방문</p> <p>11 북한주재 유고슬라비아 대사관 개설</p> <p>23 월맹대표단, 북한 방문</p> <p>26 북한·월맹간 경제발전 및 국방력강화 무상원조 협정서 조인</p> <p>31 북한·토고간 외교관계 수립</p>	<p>1 영·에이레·덴마크 3개국의 가입으로 EC가입국이 9개국으로 확대</p> <p>8 레이드 美국방장관 의회에서 대한군원 계속 추구</p> <p>22 존슨 美대통령 서거(64세)</p> <p>27 베트남 평화협정 조인 (미·월맹·월남·베트콩 등 4당사자간)</p> <p>28 월남 전역에서 정전발효 (국지전은 계속 치열)</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3 맹호부대(수도사단) 1진 개선</p> <p>7 백마부대(제9사단) 1진 개선</p> <p>16 국가목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p> <p>17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 제2540호)</p> <p>18 제1군단사령부 이동(경기 가평 → 경기 벽제)</p> <p>23 주월 백마부대(제9사단) 철수완료</p>	<p>7 김일성, 인민군 창건 25돌 즈음, 군사종합대학 방문</p> <p>13 전국 붉은청년 근위대 기동선전대 예술소품 종합공연</p> <p>15 허담 외교부장, 파키스탄 부토 대통령 방문</p> <p>21 IPU 가입신청</p> <p>26 외교부장 허담을 부총리에 임명</p>	<p>2 미·월남·월맹·베트남의 4자 합동군사위 수석대표, 사이공에서 첫 회합</p> <p>5 캐나다·헝가리·인도네시아·폴란드 등 4개국 베트남 휴전 국제감시위원, 현지로 향발</p> <p>12 베트남 휴전발효후 첫 포로 상호 석방</p> <p>20 라오스 평화협정 조인</p>

197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7 제9대 국회의원 선거		27 월맹, 월남이 평화협정 준수할 때까지 미군포로 석방을 동결한다고 발표
3	1 •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창설 • 육군 1공병여단 창설		
	2 육군 항공병과 제정	2 북한·잠비아간 외교관계 수립	
	8 주월 맹호부대(수도사단) 철수완료(총연병력 312,953, 전투손실중 전사 227/3,579, 전상 439/7,941, 비전투손실중 순직 및 사망 65/1,089, 부상 112/2,470 실중 4)		6 田中 일본수상, 브레즈네프 소련 당서기장 친서를 통해 일·소 평화조약 협상 계속 희망
	9 • 국방부직제령 개정(대통령령 제16527호) • 국립묘지령 개정(대통령령 제2092호)		12 말레이시아, ASPAC 탈퇴 발표
		14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16일, 평양)	
		17 조국전선 의장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의장 權元澤 병사(79세)	
	20 주월 한국군 귀국환영대회 개최		19 월남, 베트남, 제1차 정치회담(파리)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2 수도사단을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개편</p> <p>27 육군 제1군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제1군에서 한·미 제1군단으로 이양</p> <p>30 육군사관학교 제29기 졸업식</p> <p>31 공군사관학교 제21기 졸업식</p>	<p>23 봉화 혁명사적관 개관식</p> <p>24 북한·리비아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29 미군, 베트남 撤軍 완료</p>
4	<p>6 해군사관학교 제27기 졸업식</p> <p>10 · 한국여자탁구팀 세계 체패(유고 사라예보) · 공군교육사령부 창설</p> <p>11 합동참모본부기구 개편</p>	<p>5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 회의</p> <p>6 스웨덴, 북한을 승인(서방측 국가로는 처음)</p> <p>10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 회의 폐막</p>	<p>3 · 닉슨 美대통령과 티우 월남 대통령 회담, 공동성명에서 베트남 협정 위협엔 적당한 강경대항조치를 취한다고 경고</p> <p>· 룬놀 크메르대통령, 전국에 국가위협사태를 선언</p> <p>· 프놈펜 위기 심각</p> <p>9 네덜란드, 월맹과 국교수교</p>

197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12 티우 월남 대통령 내한, 한·월 정상회담 개최	12 김일성, 이집트 군사대표단 접견	
	13 ·합동참모본부직제령 전문개정 공포(대통령령 제6631호) · 전시국가 지도회의본부 설치운영		13 미국, 크메르에 무제한 폭격 14 월남군, 크메르에 진격
	16 을지연습 '73실시(~21일 제3문서고)	16 김일성, 시아누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주장	
	17 연천 서북방에 침투한 무장공비 3명중 2명 사살, 1명 도주		19 로저스 美국무장관 외교 백서에서 한국의 군원 계속한다고 언명
	20 해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636호)		23 일본·동독간 국교교섭이 모스크바에서 타결
	28 육군보통군법회의의 尹必鏞 소장(전 수도경비사령관) 사건 10명에게 선고 공판	28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으로 제13차 이사회부터 가입	
	5	1 ·해군 항공대 정식 편성 · 군복·군용장구 단속법 발효	
5 전남 완도에 침투한 무장 간첩 2명중 1명 사살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1 탈영병 민간인 7명 사살 사건 발생(서울~전주)</p> <p>21 전 주월 한국군사령관(이세호) 월남전에 대한 귀국 보고(적사살 41,462명, 무기노획 20,900정, 책임지역 96% 평정, 전투손실 3,844명, 비전투손실 3,788명으로 보고)</p>	<p>9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서울에서 개최</p> <p>11 알제리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 인민무력부 환영연회 개최</p> <p>17 세계보건기구(WHO) 가입</p> <p>23 덴마크·아이슬란드, 북한 승인</p>	<p>9 호주·뉴질랜드, 佛의 예정된 남태평양 핵실험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p> <p>14 MBFR(상호균형 감축협상) 준비회의 재개(빈)</p> <p>17 워터게이트사건 공청회 개시</p> <p>21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브란트 서독수상, 유럽긴장완화 위한 공동선언에 조인(본)</p> <p>27 소련, 한국인(국내거주 : 유덕형)에 첫 입국허가</p>
6	<p>1 • 육군 제3군사령부 부대기 제정 • 제1발칸포병대 창설(수경사) • 각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의결</p> <p>10 국방부, 북한 남북조절위 합의사항 위반(휴전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시작)발표</p>	<p>1 • 북한, 아르헨티나와 외교관계 공동성명 발표 • 북한·핀란드와 외교관계 수립</p>	<p>6 姬鵬飛 중공외상, 처음으로 영국 방문</p> <p>8 중공, 월맹에 무상원조·군사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p> <p>14 NATO 각료이사회, 코펜하겐에서 개막</p>

197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20 육군 제055 탄약창 창설	20 나진항을 對蘇 무역항으로 개항	20 동·서 양독간 기본조약 비준서 교환 발효
	22 南海大橋 개통	22 북한, 노르웨이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21 닉슨·브레즈네프, SALT 기본교섭원칙 등에 조인
	23 박대통령,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	23 압록강 관개공사 완료	27 중공 원폭실험(통산 15 번째)
7	1 • 육군 제3군사령부 창설 • 육군 제107통신대대 창설 • 해군제1·3·5해역사령부 창설	28 UN상주 업저버 대표부 설치승인획득	3 유럽안보협력회의, 35개국 외상참가하에 헬싱키에서 개막
	10 국방과학연구소, 지뢰탐지기 개발 착수	30 말레이시아와 국교수립	
		10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평양)	
		15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 위한 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은 통일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18 미국 해군, 월맹수역의 기뢰제거작업 완료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0 • 어청도 서방 60마일 해상에서 간첩선(40톤) 1척 격침(간첩사살 3명, 고무보트 2, 통신기 2)                      • '73년도 국방대학원 및 제20기 합동참모대학 졸업식</p> <p>24 중앙정보부, 일본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간첩행위와 군에 침투 기도한 간첩 체포</p>	<p>27 • 아이슬란드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칠레주재 북한대사관, 폭탄 세례로 파손</p>	<p>29 田中 일본수상 訪美, 닉슨 美대통령과 두차례 회담</p>
8	<p>3 C-123항공기 도입</p> <p>8 金大中 실종사건 발생(일본동경, 8월 13일 귀가)</p> <p>27 포터 美국무부차관보 내한</p> <p>28 무궁화회의 최초실시(한국전략계획 검토·토의, 최초사단장급 이상)</p>	<p>4 북한·몽고간 경제원조협정 조인</p> <p>21 북한·스위스간 통상대표부 설치 합의</p> <p>28 남북조절위 북한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성명발표</p>	<p>6 소련·이란 수뇌회담</p> <p>22 닉슨 美대통령, 국무장관에 키신저 보좌관을 임명</p> <p>28 인도·파키스탄, '71년 인·파 전쟁의 포로송환협정에 조인</p>

197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30 중국공산당 제1기 중앙위원회 개최
9	1 육군 제1항공단 창설	1 김일성,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	
	3 포병 제858, 제898대대 창설	3 북한 최초로 UN 대표부 업무저버로 참가하기 위해 11명이 뉴욕 도착	5 비동맹국 수뇌회담, 알제리에서 개막
	6 한·미간에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자료 교환 부록서명(유재홍 국방부장관과 스틸웰 주한미군사령관)	7 북한정권창건 25주년기념식 참석차 중공·소련을 비롯 22개국 대표단, 북한방문	
	10 크레멘츠 미국방차관 내한		11 키신저 美대통령 보좌관(국무장관 지명자) 주한미군 감축 남북대화 성공해야 가능하다고 증언(상원외교위)
	12 제6차 한·미 연례안보협회의가 서울에서 개최(~13일)		14 라오스 평화의정서 조인
	14 각의, 해병대를 해군에 통합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의결		21 일본, 북베트남과 국교수립
		25 칠레와 외교관계 단절발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0 • 해병대, 해군에 통합                      • 국군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제2624호)                      • 해군본부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6889호)                      • 해병대직제령 폐지(대통령령 제6892호)</p> <p>11 옥포에 대형조선소 기공식</p> <p>15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식</p>	<p>3 기니비사우 독립을 승인</p> <p>13 인민군 지휘관 및 열성 자회의 진행</p> <p>14 자강도에 TV중계소 설치</p> <p>17 이집트와 시리아에 군사 원조 결정</p>	<p>1 유엔총회, 정치위 한국문제 토의시 북한대표를 초청키로 결정</p> <p>6 제4차 중동전쟁 발발(~25일)</p> <p>10 애그뉴 美부통령 사임</p> <p>12 닉슨 美대통령,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에 지명</p> <p>17 코시긴 소련수상,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카이로에서 회담</p> <p>18 美국무부, 북한조종사 13명이 중동전에 참가하고 있다고 발표</p> <p>23 美하원, 닉슨 대통령 탄핵 결의안 제출</p>

197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4 호남 남해고속도로 개통</p> <p>15 보병사단 4각편제 개편안 확정</p> <p>20 정부, 에너지대책위원회 구성</p> <p>29 M16소총공장 준공, M16 소총 시제품생산 시작</p>	<p>10 통혁당목소리 방송 주파수 증설</p> <p>15 유엔총회에서 李鍾玉 북한대표 연설</p> <p>16 대민족회의 소집을 한국에 제의</p> <p>27 유장식 남북조절위 부위원장, 한국의 장기영 부위원장에게 서한 발송</p>	<p>7 파키스탄, SEATO에서 정식 탈퇴</p> <p>14 키신저 美국무장관, 중공 방문 마치고 성명(연락사무소 확대·인사·무역교류의 추진 등)</p> <p>19 주한 미군 행정협정위원회, 한국에서 美 군표 사용 중지를 발표</p> <p>21 유엔정치위, 한국문제 양진영안 표결 않고 합의</p> <p>24 소련, 중공에 불가침조약 체결 다시 제의</p> <p>29 이스라엘·이집트 군사회담 결렬</p>
12	<p>3 제20대 국방부장관에 徐鍾喆(예비역 육군 대장) 취임</p> <p>6 육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준비태세 완비 지시)</p>	<p>5 남북조절위, 부위원장 회의 개최(판문점)</p>	<p>6 제럴드 포드 美부통령 취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1 남자 간호장교 제도 채택</p> <p>17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최근 주요 북한도발행위를 논의)</p> <p>27 서울시 상주인구 '73년 10월 1일 현재 628만9,556 명으로 밝혀짐</p>	<p>10 인도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평양)</p> <p>15 북한, 방글라데시와 외교 관계 설정, 발표</p> <p>26 북한·아프가니스탄간 대 사급 외교관계 설정</p>	<p>7 다안 이스라엘 국방상 訪 美, 키신저 美국무장관과 회담</p> <p>11 이스라엘·시리아, 골란고 원에서 戰車戰</p>

# 197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6 국방부, 북한 해군함이 5일 소청도 근해를 두 차례 침범했다고 발표</p> <p>8 정부, 긴급조치 1호(개헌 논의 금지), 2호(비상군법회의 설치)를 선포</p> <p>9 徐국방부장관, 긴급조치 위반·직권남용은 엄단할 것이라고 언명</p> <p>16 육군 제7피복창 해체</p> <p>18 • 박대통령,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 74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p>	<p>1 金日成 신년사에서 6개년 계획 완수 강조</p> <p>10 중앙통신사, 남한의 긴급조치 규탄 성명</p> <p>17 납북된 항일투사 박렬 사망(73세)</p>	<p>1 • 중공, 林彪 사건후 최대군수뇌 개편 • 아프가니스탄, 남·북한 동시 수교</p> <p>14 EEC 의상회의 개막(아랍산유국의 斷油 논의)</p> <p>19 • 중공, 소련 외교관 등 5명 간첩활동 혐의로 추방 • 이스라엘·이집트, 병력 철수협정 조인</p> <p>22 키신저 美국무장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한국영토라고 언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8 해군 제3·6 해역사령부 창설	23 북한·리비아간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  26 노동신문, 한국의 불가침 협정제의 비난(거절)	28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 쿠바 방문
2	1 M16소총 시제품 생산에 이어 정상적인 양산체제로 전환  9 제6군관구사를 해체하고 경인지역방어사령부로 개편  10 국방과학연구소, 106밀리 대전차포탄 개발  15 북한해군함, 백령도 서쪽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에 포격 1척 침몰, 1척 납북(어부 27명 포함)  16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신설  20 국방부, 월간 정훈 창간	15 부총리 金英柱 임명	8 美 有人우주선 스카이랩, 84일만에 귀환  11 석유소비회의, 워싱턴에서 개막  21 이스라엘군, 수에즈 서안에서 철수

197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2 충무 앞바다에서 해군 YTL 선 전복침몰로 해군신병·해양경찰 등 157명 익사(교육단 159기 신병 증렬사 참배 행사 도중)</p> <p>28 제11대 해참총장에 黃汀淵 해군 대장 취임</p>	<p>25 미국의 SR-71기가 북한전역을 고공비행했다고 비난</p> <p>27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부위원장 회의</p> <p>29 북한·가봉 공화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23 美 NYT지, 북한군이 최근 휴전선 가까이 재배치되었다고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p>
3	<p>2 한월의료원을 월남 사이공에서 개원(6층, 병상 500개)</p> <p>3 관문점 경비구역내에서 120명의 북한 경비원이 미군 3명, 한국군 1명에게 타박상과 UN군 세단 4대에 피해를 줌</p> <p>9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 개정(국방부훈령 제175호)</p>	<p>2 부메디안 알제리 대통령 평양 방문</p> <p>5 소련선박, 나진항에 최초 입항</p> <p>9 북한, 아시아경기연맹 가입</p> <p>16 북한·기니비사우간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p>	<p>1 영국 총선(2.8) 결과 노동당이 신승(노동 301, 보수 296, 자유 14, 기타 24)</p> <p>9 크메르공산군, 프놈펜 완전 포위</p> <p>12 풍피두 佛대통령, 브레즈네프 소공산당 서기장과 회담</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9 육군사관학교 제30기 졸업식</p> <p>30 공군사관학교 제22기 졸업식</p>	<p>20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 개막</p>	
4	<p>1 • 육군 제2군 관구사령부 창설 • 육군 제3군 관구사령부 창설</p> <p>4 정부, 한·일 대륙붕관계 협정 비준 동의를 국회 제출</p> <p>5 美 제7함대 미드웨이호 친선방문(부산)</p> <p>9 해군사관학교 제28기 졸업식</p> <p>12 국방부, 육군사관학교·제3사관학교 복제 개정</p>	<p>4 선전선동 열성자 대회 개최 (평양)</p> <p>5 북한, 칼라 TV방송 개시</p> <p>11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p> <p>12 인민문화궁전 준공</p>	<p>4 美 국방부, 국방백서에서 주한미군병력의 계속 유지를 밝힘</p> <p>5 日·蘇, 시베리아개발 추진 문서에 서명</p> <p>10 필리핀 루손島에서 日 패잔병 오노다 소위가 30년 만에 투항</p> <p>12 • 蘇, 화성 6호('73. 8. 5 발사) 화성에 도착 • 술제니친(蘇작가), 스위스에 영주</p>

197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8 버츠 美 농무장관 내한</p> <p>28 柳珍山 신민당총재 사망 (69세)</p>	<p>15 金日成 생일을 공휴일로 제정</p> <p>27 시에라리온 대통령 일행 평양 도착</p>	<p>14 美, 사우디 3억달러 무기 제공협정 조인</p> <p>16 제네바 25개국 군축회의 개최</p> <p>17 日·蘇, 사할린 한국인 201명 송환에 합의</p> <p>19 시리아·이스라엘 양군, 골란 상공에서 휴전후 최대의 공중전</p> <p>29 미·소 외상회담(제네바)</p>
5	<p>1 공군 제15전투비행단 창설</p> <p>9 북한, 미군헬기 2대에 4차례 사격공격(한강, 임진강 합류지점 동남방 상공)</p>	<p>7 제27차 WHO총회에 북한 참석</p> <p>13 세네갈 대통령 세미고르 방북 평양 도착</p> <p>14 북한·네팔간 대사급 외교관계설정 합의</p>	<p>7 미·소 외상회담(키프로스)</p> <p>9 美하원, 닉슨 대통령 탄핵심의 개시</p> <p>15 팔레스타인 게릴라, 이스라엘 국민학교 기습 점거 (인질 등 99명 사상)</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18 북한, 가이아나와 수교 합의	18 인도, 최초의 지하핵실험 실시(6번째 핵보유국으로)
	20 추자도에서 무장간첩 3명과 총격전, 1명 사살, 2명 도주		20 말레이시아·중공 국교 수립
6	7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대표, 북한은 미사일 등 최신장비를 도입하고 있다고 사진을 공개	9 인민군 총참모장 오진우, 이집트·시리아 방문차 출발	4 키신저 美국무장관, 대한 원조는 美안보와 실질적 관련된다고 국회에서 증언
	12 국방부, 울곡계획 1차수정(국군현대화계획과 울곡계획의 조정)		6 이스라엘·시리아 포로교환 완료
	20 • 국방부, M48전차를 M48A5 전차로 개조사업 착수 • 울지연습 '74 실시(~27일, 제3문서고)		7 일본의무성, 독도의 영유권을 다시 주장
	24 국방부, 북한은 항공기 도입 및 55만 정규군 훈련 강화 등 남침준비에 혈안이 라고 지적	24 북한, 공산 라오스와 대사급 수교 합의	9 소련·포르투갈 국교 수립
			18 NATO 각료이사회에서 대서양선언에 합의(오타와)
			23 인도신문, 인도 원자력위원회가 수폭을 개발중이라고 보도

197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28 강원도 거진 해상에서 어로보호작전중인 해경정 863호가 북한군함 3척에 의해 격침되고 아군 28명 납북		
7	2 부산 송도해안에 침투한 간첩선 1척 격침(아군 1명 전사)  6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190호)  16朴대통령, '74년도 국방대학원 및 제22기 합동참모대학 졸업식에서 先평화 後통일정책 재천명  18 KAL 707기(152명 탑승) 서울 북방 25마일 지점에서 북한군의 대공포사격을 받았으나 피해 없었음  20 어청도 해안에 침투한 간첩선 1척을 35마일 추적후 격침, 시체 5구 인양(아군 3명 부상)	2 북한, 아프가니스탄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5 북한·요르단간 대사급 수교 합의  20 중앙통신, 남한의 서해 어청도 서쪽에서 간첩선 격침 보도관련 규탄 성명	3 닉슨 美대통령 訪蘇, 지하핵실험 제한조약 조인  9 크메르 론놀정부, 무조건 평화협상을 공산측에 새로 제안  15 그리스계 키프로스軍 쿠데타  20 터키軍, 키프로스에 進攻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25 북한·라오스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조인 (브양트안)	23 그리스 군정, 7년만에 민정복귀. 망명중의 카라만리스 전수상 귀국하여 수상에 취임 28 美하원 법사위, 닉슨 탄핵소추의 제1조항인 사법방해를 가결
8	15 • 朴대통령 저격사건 발생. 8·15기념식장(국립극장)에서 영부인(육영수) 피격되어 서거(일본국적 일본거주 문세광 현장서 체포) • 서울시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간) 및 수도권 전철 개통 19 陸英修 여사 국민장 엄수	6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제61차 확대회의에서 대민족회의 소집요구 호소문 채택 19 중앙통신, 朴대통령 저격미수사건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발표	1 일본, 전후 첫 기갑여단 창설 9 닉슨 美대통령 사임 10 포드 美부통령, 제38대 대통령에 취임 14 그리스, NATO 탈퇴 선언 20 포드 美대통령, 부통령에 록펠러 지명

197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3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해제</p> <p>30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소집(日의 북한공작 기지화 대책을 논의)</p>		<p>31 주한 미군사령부, 태평양 사령부가 12월 31일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워싱턴 직할이라고 발표</p>
9	<p>1 군자녀 학비면제 실시(중·고등학교)</p> <p>9 崔斗善 박사 서거(국립묘지에 안장)</p>	<p>6 니제르와 수교</p> <p>7 야데마 토고 대통령 평양 도착</p> <p>16 북한,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p> <p>21 다다흐 모리타니아 대통령 평양에 도착</p>	<p>4 미국·동독 대사급 수교 조인(워싱턴)</p> <p>8 포드 美대통령, 닉슨 전대통령을 무조건 전면 사면</p> <p>12 에티오피아 군정, 셀라시에 황제를 폐위</p> <p>16 NATO사령관에 헤이그 美백악관 보좌관을 임명</p> <p>17 美 유엔대표부, 미군의 한국주둔은 한·미조약에 따른 것이며 유엔군과 미군과는 분리된다고 언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3 제7차 한·미 연례안보협 의회의가 호놀룰루에 있는 미태평양지구 사령부에서 개 최(~24일)	28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평양에 도착	25 유엔정치위, 한국문제토의 에 남북한 동시 초청키로 결의
10	1 • 육군 제11, 12병참직접 지원대대 창설 • 육군 제308병기정비대대 창설 • 육군 제12병참지원대대 해체 • 육군 제7, 9 공수특전여 단 창설  22 중앙정보부, 북한정치보 위부 지도원 공탁호가 6월 에 귀순해 왔다고 발표	7 제29차 유엔총회의 한국문 제토의와 관련하여 비망록 발표  17 북한, 유네스코에 가입   28 북한, 베네수엘라와 수교 합의	1 중공, 창건 25주년 맞아 문화혁명 때 숙청당했던 인 사, 대거 복권조치  4 필리핀, 소련·중공과 수교 키로 했다고 성명  21 美 사이명턴 의원, 유엔 정치위에서 미국의 핵무기 비축량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61만개분과 맞먹는 다고 공개  23 키신저 美국무장관 訪蘇, 브레즈네프와 회담  24 美공군, 사상 처음으로 ICBM의 機上발사에 성공

197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5 육군보안사령부, 일본거점 간첩단 8명 검거(정치·학교·경제·군 군수분야 침투기도)</p> <p>6 • 국립묘지령 개정(대통령령 제7377호) • 국군홍보관리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379호)</p> <p>15 제1땅굴 발견, 수색대가 고랑포 동북방 8km 지역에서 비무장지대를 수색중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발견(땅굴확인 굴착시 북측에서 사격, 교전)</p> <p>20 제1땅굴 내부조사중 북한이 설치한 부비추랩 폭발로 한국군 1명과 미군 1명 사망, 3명 중경상</p> <p>22朴대통령과 포드 美대통령 청와대에서 정상회담(미 대한방위공약 재확인)</p>	<p>18 남예멘 대통령, 북한 방문</p> <p>22 북한·남예멘간 경제 및 기술원조협정 체결</p>	<p>1 • 유엔총회, 키프로스 외군 철수안 결의 • 그리스 67년 쿠데타를 대역죄로 판정, 전대통령 등 49명 기소</p> <p>7 중공, 소련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p> <p>13 유엔총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추방안 가결</p> <p>23 포드 美대통령 訪蘇, SALT II에 관한 공동성명</p> <p>24 에티오피아 군부, 전 군사위원장 등 61명을 처형</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25 한국내 재래식 탄약 보급에 대한 한·미간 협의서 서명	25 북한대표 이종옥,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연설  27 북한, 보츠와나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26 ·田中 일본수상 사임 ·포드 美대통령, 미·소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상한선을 2,500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12	1 ·육군 제201, 202, 203, 206, 207, 211, 212, 215, 216 이동의과병원 해체 ·육군 제101, 102, 103, 105, 106 야전병원 재창설  4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실시 (유신체제 선도를 다짐)  6 국군영화제작소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7379호)  7 환율 20% 인상(480 : 1)	1 시아누크, 북한 방문  2 權敏俊, 유엔에서 한국대표 연설 비난 기자회견    8 모부트 자이레 대통령 평양 도착	1 ·APU총회 폐막성명에서 북한 땅굴구축 등 규탄 ·蘇 2인승우주선 소유즈 16호 발사  3 美국무부 관리, 미·소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핵공격 보복않기로 합의 시사    11 ·美하원 본회의, 대한군원 1억 4,500만달러 의결 (인권회복 인정시 2천만달러 추가) ·그리스, NATO서 철군  12 주한유엔군사, 작전명령권이 유엔에서 美합동참모본부로 귀속케 되었다고 발표

197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5 해군함정, 서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무장선 예인</p> <p>20朴대통령 영부인 저격살해범 文世光 사형 집행</p> <p>24 유엔군사령부, 해군함정에 예인되었던 북한선박을 북한이 인수의사를 표명해왔다고 발표</p> <p>30 육군 전략통신사령부 해체</p> <p>31 육군 제3사관학교의 초급대학설치법 공포(법률 제 2703호)</p>	<p>14 페루 수도 리마에 북한 무역대표부 개설</p> <p>20 북한·스위스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p> <p>30 • 북한, 호주에 대사관 설치 • 남한에 핵무기를 끌어들이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외교부에서 발표</p>	<p>20 에티오피아 군정, 사회주의정권 수립계획 발표</p> <p>22 美대통령, 중동전 재발우려 표명</p> <p>28 방글라데시, 비상사태 선포</p>

# 197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예비군 복제령에 의한 복장 착용(복제령 공포 '73. 10. 3)</p> <p>14 국무회의, 석가탄신일·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의결</p> <p>21 · 박대통령, 북한 도발가능성에 만반의 태세 갖추도록 유지(전국치안·예비군관계회의) · 한·미 군수협조단 설치</p> <p>22 · 국방부, 군무회의 개최하고 국방태세를 다짐 · 해군본부, 주요지휘관회의 개최</p> <p>23 국방부, 북한대남 비방방송 재개되었다고 발표</p> <p>30 한·미 1군단장, 홀링스워드 중장, 북한 “땅굴” 13개 더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언명</p>	<p>6 북한, 남북조절위 부위원장 조명일로 교체통보</p> <p>14 페루 수도 리마에 북한 무역대표부 신설</p> <p>31 외교부 대변인,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규탄 성명</p>	<p>1 크메르공산군, 수도 주변에서 대공세 개시</p> <p>18 중공, 인민대회에서 부수상에 등소평을 선출</p> <p>19 중공, 신헌법 발표(사회주의국가라 규정)</p> <p>27 포드 美대통령, 주은래 중공수상에게 회담제의</p> <p>31 미·소 전략무기제한회담 제네바에서 재개</p>

197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 해군 제2사관학교 창설</p> <p>4 이원경 정부대변인, 북한의 KBS TV 전파방해 경고</p> <p>12 유신헌법 국민투표 실시 (투표율 79.4%, 찬성 73.11%, 15일 가결 공포)</p> <p>15 거진 앞바다에서 북한 무장간첩선 격침(1명 생포)</p> <p>22 정부, 제14대 합동참모회의 의장에 盧載鉉 육군 대장, 제21대 육군참모총장에 李世鎬 육군 대장 임명(3월 1일자)</p> <p>26 소청도 서남방 22마일 지점에 월선한 북한어선단 검문·나포(한국함대 5척, 공군 73소티, 美공군 4소티사용, 북한어선 1척 침몰, 북한항공기가 작전지역 상공에 출현하였다가 이북으로 복귀)</p> <p>28 병무청, 우선소집지원제 폐지하고 체격·학력 등 순위에 따라 소집기로 결정</p>	<p>11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10차 전원회의 개최</p> <p>12 북한·잠비아간 무역협정 체결</p> <p>16 김일성, 3대혁명 전시관 참관</p> <p>27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p> <p>28 유엔주재 북한대표 이윤겸, 한국과 전면전쟁 용의 있음을 기자회견에서 주장</p>	<p>6 크메르공산군, 수도를 맹공격</p> <p>13 브레즈네프 蘇공산당 서기장, 영국수상과 회담(모스크바)</p> <p>26 ESCAP총회, 뉴델리에서 개막</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 합동참모대학 폐교(23期, 893명 배출)</p> <p>3 군사정전위 유엔측, 북한의 서해상공 침해를 항의</p> <p>19 철원북방 13km 지점에서 제2땅굴 발견('72년부터 철원지역에서 청취된 지하폭음을 집중분석하여 예상지역에 대한 시추작업실시로 발견. 3. 24 확인굴착 완료)</p> <p>21 귀순용사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남침준비상황 폭로</p> <p>24 북한 전투기 30대가 백령도 주변 침투(6대가 북방한계선을 남하 아군항공기와 3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복귀)</p> <p>28 육군사관학교 제31기 졸업식</p> <p>29 공군사관학교 제23기 졸업식</p>		<p>10 김일성혁명사상 학습반 제1차 전국학습경연대회 개최(~13일, 평양)</p> <p>23 평양제1사범대학을 김형직사범대학으로 개칭</p> <p>27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시작</p>		<p>2 레바논 내전, 정전 성립</p> <p>4 미·소 전략무기제한회담 제네바에서 재개</p> <p>10 월남공산군 대공세</p> <p>22 태국, 자국내 기지에서 프놈펜 보급중지를 미국에 요청</p> <p>24 포드 美대통령, 중동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p> <p>29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수에즈운하 재개 발표</p>	

197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 중앙정보부, 제일교포 간첩단 8명 검거 발표</p> <p>2 국방과학연구소, 105밀리 곡사포 연막탄 개발</p> <p>9 유엔군사령부, 북한 제2땅굴 수색중 폭발사고로 국군 장병 7명이 순직했다고 발표</p> <p>10 해군사관학교 제29기 졸업식</p> <p>11 무장간첩 2명 부산에 침투(1명 생포, 1명은 5월 3일 서울 우이동여관에서 체포)</p> <p>12 향토예비군 창설 12주년 기념식</p> <p>13 긴급조치 8·9호 선포</p> <p>15 · 해병기념관 개관식(후암동 舊해병대사령부) · 국방부, 대통령의 수도권 철수계획 재검토지시에 의거 FEBA "A"고수 전략 계획 수립</p>	<p>8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 개최</p> <p>15 모부트 자이레 대통령 방북</p>	<p>5 장개석 자유중국총통 서거</p> <p>12 크메르주재 美대사관 폐쇄</p> <p>16 크메르정부, 정전 제의, 시아누크 거부</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17 육군 주요지휘관회의, 현전선 사수 다짐		17 크메르공산군, 프놈펜시를 점령, 정부군 항복 23 포드 美대통령, 베트남 전쟁종결을 선언 30 南베트남정부, 무조건 항복 (30년전쟁 종지부)
5	2 전국 각지에서 총력안보 단합대회 개최  13 월남 난민 및 귀환교포를 태운 우리 해군 LST 2척 부산에 입항  14 국방부, 북한 헬리콥터의 특징을 국민에게 공개	30 호주, 북한에 상주대사관 신설  3 월남인민의 승리경축 평양시 군중집회 개최  7 세계기상기구 가입  8 북한·태국간 수교  16 북한·버마간 수교 합의	1 美국방장관, 월남전 이후의 아시아 전략구상 표명  6 포드 美대통령, 한국과의 유대강화 다짐  8 포드 美대통령, 정일권 한국 국회의장에게 對韓방위 조약의 불변, 주한미군의 계속 유지, 한국군현대화 계획 지원촉진을 다짐  14 미국,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핵실험  16 평양 방문 일본대표단원, 김일성이 남침땅굴을 판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힘

197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28 중공에 납치됐던 어선 수덕호 귀환	22 김일성, 동유럽제국 순방 (루마니아, 알제리아, 모리타니아, 불가리아, 유고) 25 북한·캐나다 외교관계 수립 합의	29 NATO 수뇌회의 개최 (브뤼셀)
6	5 부산침투간첩과 관련 국내고정간첩 등 7명 검거 6 한·미 1군단장(홀링스워드 중장) 9일작전계획 발표(기동방어에서 전방방어작전으로 전략변경, 한국정부가 1972년부터 요구했던 사항임) 9 · 북한 미그-21기, 백령도 상공 각 2대씩 4회 침범 (~27일)	3 쿠바 공산당 대표단, 평양 도착 5 북한·에티오피아간 수교 6 리비아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	1 포드 美대통령과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회담(찰스 부르크) 3 이스라엘군, 시나이반도에 서 철수 개시 5 · 수에즈운하 8년만에 재개 · 필리핀, 대자유중국 단교 결정 7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북경에서 모택동과 회담 9 OPEC 각료회의를 가봉에서 개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9 • 박대통령, 한국의 핵 개발 능력있음을 발표, 미국이 핵우산 걷는다면 핵개발로 단독안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명</p> <p>20 치안본부, 전경찰력을 안보위주로 전환하도록 지시</p> <p>25 6·25 25돌, 서울에서 조국수호 대행진</p> <p>27 정부, 방위세법 신설(7월 16일 방위세법 공포)</p> <p>28 무장간첩 2명 전남 광주 침투(1명 사살, 1명은 8월 1일 전북 완주에서 사살)</p> <p>30 전투예비군 편성</p>	<p>10 김일성, 아프리카·동유럽 방문 마치고 평양 도착</p> <p>17 인민군 친선사절단(단장 조명선 부총참모장) 중공 방문</p> <p>27 프랑스주재 통상사무소를 통상대표부로 승격</p>	<p>17 마리아나 군도, 주민투표로 미국의 자치령으로 결정</p>
7	<p>1 육군사격지도대를 사격지도단으로 개편</p> <p>2 국방과학연구소, 155밀리 곡사포탄 개발</p> <p>5 봉고 가봉 대통령 내한</p>	<p>1 루마니아 공산당 대표단, 평양 도착</p> <p>3 북한·리베리아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p>	<p>1 태국·중공간 국교 수립</p> <p>3 윤재일 재일거류민단장, 인도적 견지에서 조총련계 교포들의 추석성묘를 위한 모국방문을 환영한다고 성명 발표</p>

197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9 사회안전법안, 방위세법안, 민방위 기본법안, 교육관계법 개정안 등 4대 전 시입법안을 포함 21개 의안 국회 통과</p> <p>10 을지연습 '75 실시(~16일, 제3문서고)</p> <p>16 방위세법, 민방위법 신설(공포)</p> <p>17 세계기독교 반공대회를 서울에서 개최</p> <p>18 국방부, 육군 2차계획 수정(월남 적화통일 이후 북한의 위협 증대와 관련된 긴급소요 추가)</p> <p>19 '75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7 북한·소련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5년간 연장한다고 모스크바 방송이 보도</p> <p>17 북한, 콜롬비아 친선협회 결성</p> <p>22 정무원내 “국가검열위원회” 부활</p>	<p>6 슬레진저 美국방장관, 북한 남침 감행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강조</p> <p>11 키신저·그로미코, 전략무기제한협정 회담(제네바)</p> <p>14 35개국 유럽안보협력회의 개막</p> <p>30 유럽안보정상회의 개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 京仁사령부를 수도군단으로 개칭</p> <p>5 국무회의,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안 의결</p> <p>26 • 제8차 한·미연례안보협 의회의 개최(~27일, 서울) • 대성동 주민 1명, 북한군 2명에 의해 강제납북</p> <p>28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769호)</p>	<p>5 외교부, 한국의 유엔 단독 가입안 제출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p> <p>8 제30차 유엔총회에 공산측 결의안 제출</p> <p>9 북한·상투메 프린시페간 외교관계 체결(상투메)</p> <p>22 인민무력부, 캄보디아 혁명군대와 인민들의 승리축하 군인집회 개최</p> <p>25 북한, 비동맹회의 가입</p>	<p>3 포드·티토회담(베오그라드)</p> <p>5 미·일 정상회담(워싱턴)</p> <p>6 • 유엔안보리, 한국의 유엔 가입 신청을 7:6으로 부결 • 포드·三木 공동발표문에서 한국의 안전이 동아시아 평화에 필요함을 재확인</p> <p>20 키신저, 중동분쟁해결 위한 왕복외교 재개</p> <p>25 비동맹국 외상회의 개막(리마)</p> <p>30 워싱턴에서 10개국 재상회의</p>

197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 중앙학도호국단발대식 거행</p> <p>5 여군창설 25돌 기념식 거행</p> <p>8 육군본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792호)</p> <p>9 주한 미군시설에서 유엔기 칠거(8월 16일~)</p> <p>11 무장간첩 2명, 전북 고창 침투(1명 사살, 1명 도주)</p> <p>13 정체불명 선박, 김포 앞 해상 침투/도주</p> <p>22 민방위대 창설</p>	<p>1 스위스주재 북한대사관 개설</p> <p>3 중앙통신, 어선 松生丸 나포 발표</p> <p>15 김일성, 알제리 군사대표단과 르완다 특사 접견</p> <p>22 • 국가계획위원회 6개년 경제계획 성과 발표 • 군사위원회, 월북 군인 대우에 관한 8개항 결정, 채택</p>	<p>1 이스라엘·이집트, 시나이 협정 가조인(4일 정식조인)</p> <p>2 북한 경비정, 일본어선 松生丸에 발포, 4명 살상하고 어선 나포</p> <p>9 시아누크, 5년만에 프놈펜으로 귀환</p> <p>10 주한 미군사령부 대변인, 8월 16일부터 대부분의 주한 미군사시설에서 유엔기를 내렸다는 외신보도를 확인</p> <p>17 유엔운영위원회,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안과 공산안을 다같이 의제로 채택</p> <p>30 유엔정치위, 한국문제토의에 남북한 대표 초청기로 결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 장관급 장교계급장 변경</p> <p>2 임진각에 미군의 한국 참전기념비 및 트루먼 전 美 대통령 동상 제막식</p> <p>5 대흑산도 남쪽에서 북한 무장간첩선 격침(간첩 8명 사살)</p> <p>13 국립묘지관리소 직제령 공포(대통령령 제7846호)</p> <p>14 영동·동해 고속도로 개통</p> <p>16 동해에서 육·해·공군·예비군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p> <p>29 군정신전력강화 연구위원회 설치(위원장 육군소장 채항석, 위원 7명)</p>	<p>11 유엔총회 대표 이종욱, 제30차 유엔총회 참가차 평양 출발</p> <p>13 혁명열사 능 제막식 거행(大聖山)</p> <p>31 외교부, 유엔에서 공산측 결의안 통과에 관한 성명발표</p>	<p>7 소련·동독, 새 우호조약에 조인</p> <p>10 美국무부, 신형 제트전투기 60여대를 한국에 판매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p> <p>19 키신저 美국무장관, 북경 방문 등소평과 회담</p> <p>29 유엔정치위, 한반도문제 양측안 모두 가결</p>

197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7 국산 신예전투함에서 함대함미사일 시사 성공(밀물 2호작전)	6 북한주재 호주 대사관 철수 통고  8 북한·싱가포르간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 합의  18 김일성정치대학, 강건중 합군관학교 창립3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전투태세군 비령 제4호 하달)	1 인도·중공 국경에서 인도군 순찰대, 중공군에 피습 4명사망  10 서독대통령, 소련 첫방문  18 유엔총회, 한반도에 관한 서방측안과 공산안 모두 통과
12	4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9 하비브 美국무부 차관보,朴대통령에게 북경회담·신태평양 독트린 등에 대해 설명	3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평양시 근로자 군중집회 개최	5 포드 美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6 포드 美대통령, 필리핀 방문  7 포드 美대통령, 신태평양 독트린 발표  9 NATO 국방상회의

197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2 방위성금으로 구입한 팬 팀기 5대(필승 편대) 헌납식</p> <p>15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886호)</p> <p>24 · 공군본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892호)</p> <p>· 국군영화제작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893호)</p> <p>31 · 국군조직법 개정 공포(법률 제2829호)</p> <p>· 합동참모본부 기구 개편(합동참모회의 의장을 합동참모의장으로 그리고 지휘권 부여)</p>	<p>13 사로청 중앙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지지 성원성명을 발표</p> <p>27 군사정전위 수석위원에 한주경을 임명</p>	<p>14 소련·동유럽 7개국 외상 회의(모스크바)</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9 • 일병→상병 : 5~10개월 →7개월</p> <p>• 상병→병장 : 6~8개월 →8개월</p> <p>15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에서 영일만부근서 석유발 견했다고 발표</p> <p>23 북한 전투기 2대, 백령도 상공 침범</p>	<p>27 경제사절단(단장 공진태) 소련 향발</p>	<p>13 태국·라오스 국경에서 무력 충돌</p> <p>21 SALT II 타개 위해 키 신저·브레즈네프 회담</p>
2	<p>15 국방과학연구소, 전신·전 화단말기 KAN/TCC-29 개 발착수</p>	<p>22 당 대표단(단장 박성철) 소련공산당 제25차 대회 참가차 모스크바 도착</p>	<p>1 美 NYT지, 한국 원자탄 생산 가능하다고 보도</p> <p>7 중공, 수상서리에 華國峰 취임</p> <p>8 앙골라 내전, MPLA가 친서 방파 연정수도 팜보를 점령</p> <p>12 중공, 등소평을 走資派라 비판(反右傾化운동 격화)</p> <p>16 蘇, 무인우주선 소유즈 20호 귀환</p>

197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4 제25차 소련공산당대회 개최(10일간)
3	2 제1차 중앙민방위협의회 개최	4 최고인민회의, 한반도 긴장정세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 발표	1 • 美하원세출위, 76년 대한 군사차관 1억 2,000만달러 승인 • 포드 美대통령, 데탕트용어 안쓰고 힘을 통한 평화정책 추구할 것이라 언명
	5 한국군수산업진흥회(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발족	7 南日 부총리 사망	3 모잠비크 대통령, 로디지아와의 전쟁상태를 선언하고 국경을 폐쇄
		8 자이레·토고·탄자니아·모잠비크·브룬디 등에 주요 군사원조제공 개시	5 • 영국 파운드화 대폭락 • 세계인구 38억 9,000만명(74년도 유엔인구통계연감)
		10 북한·동독간 상품공급 및 지불협정 조인(베를린)	9 카터 美대통령,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발표
	11 치안본부, 25년간(1951~71)에 북한간첩 3,910명 검거했다고 발표	13 일본에서 전조한 화물선에 국호 인수	11 레바논, 베이루트 군관구 사령관이 군사쿠데타, 프란지에 대통령은 퇴진 거부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6 육군사관학교 제32기 졸업식</p> <p>27 공군사관학교 제24기 졸업식</p>	<p>15 사하라 아랍공화국 승인</p> <p>23 아프리카·남미 등지에 특사파견(토고 : 김석기, 페루 : 이창선, 리비아 : 공진태, 베냉 : 한시해, 탄자니아 : 박성철)</p>	<p>14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대소우호조약(7. 5) 파기를 선언</p> <p>16 해럴드 윌슨 영국수상 사임 발표</p> <p>21 주한 미군 참모장 싱글러블 소장,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반대 의사 발표로 해임</p> <p>23 브라운 美합참의장, 주한 미군 무기한 주둔을 의회에서 증언</p> <p>24 아르헨티나에 무혈쿠데타, 군사평의회가 정권장악. 우경 개발지상주의노선 표방(26일 비데라 육군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p> <p>29 美하원, 200해리 법안가결</p>
4	<p>1 朝聯系 재일동포 한식 성묘단 1진 50명 입국(28일까지 1,200여명 모국방문 예정)</p>		<p>5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수만군중, 고 주은래 수상 지지하는 폭동 발생</p> <p>7 중공 당중앙위, 등소평의 당적만 남기고 모든 직무를 해임. 또 화국봉을 당 제1수상으로 결정</p>

197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9 해군사관학교 제30기 졸업식</p> <p>18 로버트 D. 멀둔 뉴질랜드 수상 내한,朴대통령과 2차례의 정상회담</p> <p>30 제9차 세계반공연맹(WACL) 총회(66개국 300여명의 대표 참가)</p>	<p>12 동부전선 까치봉 동남쪽 비무장지대안의 한국군 초소에 총격</p> <p>13 앙골라와 수교합의 공동성명 발표</p> <p>26 제3차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막(평양)</p> <p>29 정무원 총리 金一 후임으로 朴成哲을 임명</p>	<p>8 美국무부·국방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 감축없다고 발표</p> <p>25 日 産經신문, 북한은 미그기·전차생산체제를 확립하고 휴전선엔 특공계릴라를 배치하는 등 전쟁준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p>
5	<p>7 烏竹軒 정화공사 준공식(강릉)</p>		<p>3 일본 방위청, 한반도가 일본안전에 중요하며, 한반도에 전쟁가능성 상존이라고 방위백서에서 지적</p> <p>5 멀둔 뉴질랜드 수상 중공 방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9 육군본부, 일반참모부 담당관 제도를 과장제도로 변경</p> <p>10 국방부, 소형함정용 전자전장비(KDJ-10) 개발 착수</p> <p>19 국방과학연구소 진해기 계창 창설</p> <p>20 국방부, M48A1 전차를 M48A5, M48A3 전차로 개조하는 사업착수</p> <p>27 제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호놀룰루에서 서중철 국방부장관과 린스펠드 미국방장관간에 개최(~28일)</p>	<p>14 인민무력부장 崔賢 해임하고 오진우 임명</p> <p>16 홍원길 부총리 사망</p> <p>18 이집트 군사사절단, 오진우 인민무력부장과 회담(평양)</p> <p>21 부토 파키스탄 수상 방북차 평양 도착</p> <p>27 북한·소련간 과학기술협정 체결</p>	<p>14 일본언론, 북한이 유럽·남미에서 일본인 여권으로 간첩활동하고 있다고 보도</p> <p>17 지스카르 佛대통령, 미국 방문</p> <p>20 NATO의상이사회 개막(오슬로)</p> <p>23 소련, 대모잠비크 국방력강력원조를 성명</p> <p>28 포드 美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 평화목적을 위한 核실험조약에 정식 서명</p> <p>30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소련 방문</p>

197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 해군, 제1海域司에 합동작전지휘소 운영</p> <p>11 소흑산도 서방 공해상에서 어선 1척, 중공어선에 피랍</p> <p>17 崔圭夏 총리, 일본 TV와의 회견에서 美軍援 중단되어도 한국에 큰 영향없다고 언급</p> <p>18 경제기획원,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확정 발표 (GNP 1,284달러)</p> <p>19 국방부, 무장공비 중동부 지역 침투(북한군 2명 사살)했다고 발표</p> <p>21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8161호)</p>	<p>1 북한·파푸아뉴기니아간 수교협정 공동성명</p> <p>4 말라가시 대통령 북한 방문</p> <p>11 북한주재 초대 니제르 대사 평양 도착</p> <p>15 조국전선중앙위원회 金萬金, 각 정당사회단체 망라한 남북대화 개최요구 성명 발표</p>	<p>1 蘇, 사할린 韓人 100명에 첫 출국허가, 일본은 심사에 착수</p> <p>2 日 産經신문, “한국도 1981년엔 원폭제조 가능하다”고 서울발 기사로 보도</p> <p>9 美의회, 대한 7,500만달러 상당의 레이더 및 보조장비의 판매를 승인</p> <p>16 미국 민주당, 한국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정강정책 채택</p> <p>21 OECD 각료이사회 개막</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4 구마고속도로 착공</p> <p>28 태백산 전술도로 개발공사('76년 10월 31일 개통) 완료</p>	<p>23 북한, 일본과 어민 우호 친선협회 발족</p>	<p>23 중공방문중인 프레이저 호주수상, 북한건제를 중공에 요청했다고 밝힘</p> <p>24 베트남, 남북통일 국회 첫 회의 개최</p> <p>27 유엔 산업통계연감, 북한 산업구조는 1차 產品 편중의 원시적이라 보고</p> <p>29 동베를린에서 유럽공산 당대회 개최(28개국 대표 참가)</p>
7	<p>3 박대통령, 미국독립 200주년 맞아 주한미군과 미국인에게 메시지 발표</p> <p>10 을지연습 '76실시(~16일)</p>	<p>2 적십자중앙위원회, 미국의 세균무기시험 책동 규탄성명</p> <p>6 고등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기 군사기술교육 강행</p> <p>21 북한·르완다 군사대표단 회담(평양)</p>	<p>2 통일 베트남 정식 발족</p> <p>9 駐태국 美8전투비행단, 한국에 이동 배치했음이 밝혀짐</p> <p>19 美 화성탐색선 바이킹 1호 화성에 軟着</p> <p>21 美 고위관리, 한국군에 레드 아이 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밝힘</p>

197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6 국방부, 울곡계획 3차 수정(북한의 전력증강 추세에 따른 장비획득 우선순위 조정)</p> <p>27 교통부, 6·25전적지 50곳 개발하여 반공교육, 관광에 활용키로 결정</p>	<p>23 유엔 북한 업저버 김형익, 4자회담 거부 표명</p> <p>30 북한, 코스타리카 정부 전복음모 개입</p>	<p>27 · 일본 매일신문, 주한미군의 서울 사수·요격체제로 전략적 재편을 했다고 보도 · 日, 다나카 前 首相을 록히드사건과 관련 구속</p> <p>30 日 産經신문, 북한이 개성 부근에 최신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보도</p>
8	<p>1 양정모 선수,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서 자유형 페더급에서 해방후 첫 금메달 획득</p> <p>5 북한군,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아군초소에 사격해 음(피해없음)</p>	<p>5 중앙방송, 전쟁임박 성명</p>	<p>3 프랑스정부, 한국에 2개 핵발전소 판매에 관한 협정이 서울에서 가조인됐다고 프랑스관리가 전언</p> <p>5 OPEC 재상회의 개막(빈)</p> <p>16 85개국 수뇌 참석하에 비동맹 수뇌회담을 개최(콜롬보)</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북한군이 도끼만행 사건 도발(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참살, 한·미군 각 4명씩 8명 부상). 미제8군 휴가군인에 귀대령, 예비경계 돌입(~9월 7일). 북측제의(8월 25일)로 9월 16일부터 공동경비구역 분할경비 방안 발효</p> <p>19 •美 2개 비행대대를 한국에 급파 •주한미군·한국군 DEF-CON 2발령</p> <p>21 •주한 美軍司, 문제발단의 나무절단제거(B-52 및 F-111 항공기와 200명의 기동타격대 그리고 무장 헬기의 지원하에 110명의 특수임무요원이 45분간 미루나무 제거) •'76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8월 18일 판문점사태 대책)</p> <p>22 '76년도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8월 18일 판문점사태 대책)</p>	<p>19 김일성, 인민군·노동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정규군과 예비군에 전투태세 명령 하달</p> <p>20 김일성, 미국에 유감의 뜻 담은 메시지 전달</p> <p>22 노동신문, 남북적십자 회담 무용주장</p>	<p>20 미국, 미드웨이 항공모함과 해병을 한국에 파견</p>

197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23 '76년도 제3차 국가안 전보장회의 개최(8월 18 일 판문점사태 대책)		
	24 '76년도 제4차 국가안 전보장회의 개최(8월 18 일 판문점사태 대책)		24 美국방부, B52기의 한 국에서 훈련비행을 발표
	26 '76년도 제5차 국가안 전보장회의 개최(8월 18 일 판문점사태 대책)		
	27 한국은행, 1975년 우리나 라 1인당 국민소득은 430달 러(20만 8천원)라고 발표		
9	1 군사정전위, 8·18사건으로 판문점 분할경비, 민간인 자유통행, 북한초소 철거 등 합의		
	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 할경비 실시		6 소련 최신전투기 미그25 기, 일본 하코다테 공항에 비상착륙 조종사 벨랭코 중 위 미국망명을 희망
	8 DEFCON 2 해제		9 모택동 증공 당주석 사망 (82세)
	17 군인의 길 개정공포(국 방부 훈령 212호)	10 김일성, 모택동 사망과 관련 증공대사관 조문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9 북한 노동당 정치공작원 金用珪(40세)가 거문도에 침투했다가 동료간첩 2명 살해후 자수</p> <p>30 어선 신진3호(23명 승선) 동해에서 어로작업중 북한경비정에 피랍</p>	<p>19 최용건 부주석 사망</p> <p>21 유엔주재 북한대표 權敏俊,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 철회에 관한 성명발표</p>	<p>21 • 제31차 유엔총회 개막 • SALT II 제네바에서 재개</p> <p>30 키신저 美국무장관, 3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휴전에 직접 관계되는 4자회담 개최의 목적과 개최장소 협의를 위한 남북예비회담의 즉각 개최를 제의</p>
10	<p>1 박대통령, 국군의 날 담화에서 북한도발하면 엄청난대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p> <p>2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형 기관단총 개발착수</p>	<p>6 북한 유엔대사 권민준, 키신저의 한국문제 3단계 회담개최안을 정식으로 거부</p> <p>12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12차 전원회의 개최</p> <p>13 중앙통신, 나포 한국어선(신진3호) 송환 보도</p>	<p>1 소련 프라우다지, 대중공 국교정상화를 호소</p> <p>4 키신저 美국무장관, 美전국논설위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에 중대한영향 미칠 것이라고 경고</p> <p>7 화국봉 중국공산당주석 취임</p>

197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14 '76년 8월 30일 동해에서 납북됐던 신진3호 어부 23명 전원 귀환	22 주스웨덴 북한대사관원 5명, 추방령 받고 철수	15 덴마크 정부, 덴마크주재 북한공관원 전원을 마약 등의 밀수·밀매죄로 추방령 행사, 이후 계속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전역으로부터 수사 추방령 확대
	20 국방과학연구소, 24TON 공기 주입식 부교개발		
11	26 내무부, 비행금지구역 침범 때는 경고없이 사격하므로 신속대피 등 민방공요령 발표	26 주핀란드 공관원 4명, 밀수사건 추방령으로 철수	25 美 US뉴스앤드월드 리포트지, 한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76년 중반까지 미국의 경제·군사원조 136억달러를 받음으로써 전월남 236억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수원국이라고 보도
	9 李洪保 귀순병, 기자회견에서 북한실정 폭로(8월 3일 귀순)		3 美대통령에 카터 민주당 후보 당선, 부통령엔 몬데일
	10 자수간첩 金用珪, 25년만에 가족상봉		12 로디지아 군대변인, 로디지아 내전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폭로
	13 한국·사우디 항공협정 서울에서 가서명		13 美 유력지,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한·일 양국 및 美국무부는 강력반대라 보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4 덕적도 북방에서 어로선 보호중이던 해경정 침몰, 선장 순직, 4명 실종</p> <p>17 정부, 제3차 경제계획목표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 1인당 GNP 698달러</p> <p>23 한국전쟁중의 순직중군 기자 추념비 기공식 거행 (문산)</p>	<p>17 허담, 유네스코 주재 상설대표부 설치를 유네스코 서기국에 통보</p> <p>23 통혁당 중앙위원회, 한국의 유신정권규탄 백서 발표</p>	<p>14 일본망명 미그25기 소련에 인도</p> <p>16 카터 보좌관들, 주한미군 철수결정을 한·일 양국정부와 협의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p> <p>28 린스펠드 美국방장관, 한국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 성급한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p> <p>30 미국, 한국에 F4E 팬텀기 〇〇대를 판매토록 계약 체결</p>
12	<p>3 박대통령, 육군 제3사관학교 순시</p> <p>5 전군 지휘관회의, 최전선에서 북한 분쇄다짐</p> <p>7 정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을 국회에 제출</p>	<p>11 중앙인민위원회, 부총리에 이종욱·계응태 임명</p>	<p>3 유엔, 환경파괴무기 금지를 결의</p> <p>7 유엔사무총장에 발트하임 재선</p> <p>9 NATO 이사회 개최</p>

197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5 국회의장단, 국회내에 평화통일협의회 구성에 합의</p> <p>18 제2차 한·인도간 무역회담 폐막</p>	<p>15 줌베 탄자니아 부통령, 평양 도착</p> <p>26 알함디 예멘공화국 대통령 북한 방문</p>	<p>14 중·소 국경회담 재개</p> <p>15 서독, 슈미트 수상 재선</p> <p>17 OPEC 긴급회의, 원유가 2중 가격으로 인상</p> <p>30 일본, 영해 12해리 선언</p>

# 197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해군 도서방어부대를 개편</p> <p>• 미국의 대한무상군사원조 종결</p> <p>•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 개정(국방부훈령 제216호)</p> <p>12朴대통령, 연두회견에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반대 않겠다고 언명, 식량원조도 제의</p> <p>13서울시 현재인구(76년 10월 1일) 725만 4,958명으로 집계</p> <p>30국방과학연구소, 1/4톤 차량 개발 착수</p>	<p>1 • 김일성, 신년사에서 경제건설 6개년계획의 차질을 공식 시인</p> <p>• 김일성, 신년사에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p> <p>18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파키스탄 향발. 12월 5일 귀국)</p> <p>19군사위원회,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월북해 오는 남한군 복무자의 대우에 관한 결정 발표</p> <p>25북한, 평양방송을 통해 한국의 불가침협정 제의를 간접 거부하고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p>	<p>4 • 한·미간 미국의 200해리 경제수역내에서 한국어선의 어로활동을 규제하는 새 어업협정에 조인(워싱턴)</p> <p>•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희교도 자치 발족후에도 계엄령체제 유지한다고 언명</p> <p>13 福田 일본수상과 카터 차기美대통령 전화회담, 수뇌회담 경제협력 등에 합의</p> <p>19美국방부, 마버릭 공대지 미사일 200기의 대한판매를 의회에 통고</p> <p>20카터 39대美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인권, 핵금지 강조</p> <p>25美 새행정부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주한미군은 극동 안정에 긴요하다고 의회에서 증언</p>

197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3 해군, 대잠수함 헬기(ALT-Ⅲ) 2대 최초 도입</p> <p>14 국군정신전력학교설치령 공포(대통령령 제8443호)</p> <p>17 국방부, 북한군전사 이석모(18세)가 허기에 못이겨 지난 1월 6일 귀순했다고 발표, 북한참상도 폭로</p>	<p>1 평양방송, 한국측의 대북 한식량원조 제의를 거부</p> <p>8 김일성, 인민군 제384군부대 축하방문</p> <p>28 池炳學 인민무력부 부부장(상장) 사망</p>	<p>2 수단, 남부의 공군부대가 반란</p> <p>3 에티오피아, 권력투쟁 쿠데타로 원수 등 7명 살해</p> <p>4 소련, 미국의 AP통신기자를 추방(미국도 6일 소련 타스기자 퇴거령)</p> <p>5 • 美 육군성, 국방예산의 설명을 위한 의회보고에서 주한미군의 변화는 한반도의 동요와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 • 美, 핵실험 2~4년 정지. ICBM은 사전통고 등 SALT 체결의 결의 표명</p> <p>24 日 共同통신, 북한노동당이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정했다고 보도</p>
3	<p>1 해군 피복판매제도 실시</p>		<p>1 소련의 반체제 60명이 체코의 인권운동현장 77에 동의표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5 해군, 구축함 2척 도입 (DD-90, 99함. 한국도착 6월 30일)</p> <p>29 육군사관학교 제33기 졸업식</p> <p>30 공군사관학교 제25기 졸업식</p> <p>31 해군, 구조함 도입(RS-5, 한국도착 5월 12일)</p>	<p>23 북한·말리간 우호협회 발기회의 개최</p> <p>29 북한·리비아간 우호협회 결성집회 개최</p>	<p>3 • 蘇·동구 9개국 공산당 이데올로기회의(소피아) 개최 • 밴스 美국무장관, 인권 억압국에 원조삭감을 검토 중이라 언급</p> <p>4 로디지아, “백인전용철폐 등 인종차별법” 수정</p> <p>9 카터 美대통령, 주한 미지상군은 4~5년내에 걸쳐 철수시키며 공군은 장기간 주둔할 것이라고 언명</p> <p>21 • 중공, 가뭄에 긴급동원령 •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 인권외교는 내정간섭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p> <p>23 카터·福田, 공동성명에서 남북한 대화재개, 주한미군 신중 감축·방위공약준수 등 언급(워싱턴)</p>

197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 국방부, 정신교육의 날 제정 시행</p> <p>13 정부, 북한과 수교국인 수단과 대사급수교 합의</p>	<p>4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13차 전원회의 개최</p> <p>24 인민군 창건 45주년기념 보고회 개최</p> <p>26 최고인민회의 제5기 7차 회의 개막</p>	<p>3 아프리카 5국가 수뇌회의 개막</p> <p>7 카터 美대통령, 플루토늄 재처리연기, 일·서독의 재처리인정 등 새 핵정책 발표</p> <p>8 대북의 중공군사전문가, 북한 핵미사일 전문가 27명이 중공에서 핵미사일 연구중이라 전언</p> <p>14 로저스 美육군장관, 주한미군 서전트 핵미사일(地對地)을 철수하고 지대공 허클리스는 한국군에 이양하기 시작했다고 언명</p> <p>15 美국방부, 주한미군기지는 육군 24개, 공군 2개라고 발표</p>
5	<p>1 국방부, 장교에게만 시행하던 피복구매권 제도를 하사관에게도 시행</p>		<p>1 국제원자력기구, 오스트리아에서 핵연료관계회의의 60개국이 참가</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3 중부전선에서 철책작업중인 아군 2명에 북한군 기습공격 (아군 1명 사망, 1명 부상)</p> <p>10 간첩선 2척 삼천포 해안 침투/도주(어로지도원 1명 납북)</p> <p>11 한·미 양국, 주한미군 감축문제 협의 개시</p> <p>18 국방부, 울곡계획 4차수정 (주한미군 철수 보안을 위해 제기된 추가소요 반영)</p> <p>24 하비브 미국무차관·브라운 합참의장 등美대통령 특사, 주한미군 철군문제 협의 위해 방한(~27일)</p>	<p>9 봉고 가봉 대통령 북한 평양 도착</p> <p>20 북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상주대사관 개설</p>	<p>3 미·베트남 국교정상화협상 파리에서 개최</p> <p>5 카터 美대통령 영국 방문</p> <p>9 미·영·독·불 4대국 수뇌회담 (런던. 대탕트문제 등 협의)</p> <p>12 북한대의원, 일본입국(정치가 그룹으로는 日입국 첫 케이스)</p> <p>16 브라운 美국방장관, 한반도전쟁위험은 배제할 수 없으며, 한국피침 때는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타임지와 의 회견)</p> <p>17 美하원예산위, 국제관계위에서 주한미군 철수해도 한국군에 현대무기 제공하면 한반도 균형은 불변이라 지적</p> <p>26 카터 美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주한 美지상군 철수해도 정보·관측부대는 잔류할 것이라 언명</p>

197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형 소총 개발 착수(XB-7형)</p> <p>9 해군, 대잠헬기(ALT-Ⅲ) 4대 도입</p> <p>10 주한미군 일부 철수에 대비한 보완책 강구를 위한 한·미군사실무자 회의 개최</p> <p>19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기 고리1호기에 점화 (출력 59만 5천kW)</p> <p>23 육군, 창군 이래 최대 화력 시범</p>	<p>13 김일성, 방북한 공산 라오스 수상 카이슨 폼비와 면담</p> <p>22 외교부, 6·25사변을 미제의 북침이라고 강변하는 비망록 발표</p>	<p>14 아르헨티나 북한과 단교</p> <p>16 美상원, 주한미군 철수 지지 결의를 부결</p> <p>20 美 뉴욕타임즈지, 미CIA가 75년부터 고성능전파로 한국 청와대를 도청했다고 보도</p> <p>24 하비브·브라운, 한반도에 전쟁위협 있으면, 주한 미지상군 철수 일정을 수정하겠다고 의회에서 증언</p> <p>28 밴스 美국무장관, 미국은 중공·월·북한과의 대립 종식을 선언하고 관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언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30 북한, 신생국 지부터 승인	30 • 미국, 차기 전략폭격기 B-1 배비계획 중지 • SEATO 해체
7	1 호크, 나이키, 발칸, 에리콘의 기지정비는 美본토와 스위스에서 실시하던 것을 金星社에서 실시	1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  3 7·4남북공동성명발표 5주년기념 보고회 개최	1 • 美상원, 중성자탄두 개발을 승인 • 美국방부, 대륙간 유도탄 미니트맨의 생산중지를 결정  6 美국방부, 7,600만달러 규모 대한군사판매 결정을 의회에 통고  7 중공 미그19기, 대만에 망명
	8 을지연습 '77실시(~14일)		
	10 하비브 美국무차관, 주한 미지상군 철수계획 및 보완책 협의차 내한		
	14 미군 CH-47헬기가 동부 전선에서 착오로 월선, 피격(미군 3명 사망, 생존자 1명 피랍)	16 김일성, 방북중인 PLO대표단과 면담	
	25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회의가 서울에서 서종철 국방부장관과 브라운 미국방 장관 사이에 개최(~26일)		26 일본외무성, 한국귀환 희망하는 사할린 교포중 339명의 일본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

197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31 강반석 사망 45주년 기념 중앙추모회 개최	31 미국백악관, 카터 대통령이 '78년말까지 중공승인 견해를 밝혔다'고 발표
8	15 해군구조함 도입(RS-6, 한국 도착 10월 11일)  20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1호기 시험송전 개시  25 금산 제2위성통신 지구국 완공  30 국방과학연구소, 8인치 곡사포 고폭탄 개발	1 • 200해리 경제수역 실시 • 최고사령부 명의로 해상군사경계선 설정(50해리) 발표  3 김일성花 지정, 노래창작 보도  24 티토 유고 대통령 평양 도착	19 美 네바다에서 지하핵실험 실시  20 美, 목성, 토성탐사기 보이저 2호 발사  29 유엔사막회의 개막(나이로비)
9	1 육군본부에 전력증강위원회 설치		1 카터 美대통령이 티토 유고 대통령에 소·중공·북한 방문시 미국의 대한정책실명을 당부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일본신문이 보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5 국군정신전력학교 창설</p> <p>12 •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68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묘지관리소 직제 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8686호)</li> <li>• 국군홍보관리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687호)</li> </ul> <p>26 국군보안부대령 공포(대통령령 제8704호)</p> <p>30 국방과학연구소, 무인항공기 개발 착수</p>	<p>1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가입</p> <p>15 벤계마 적도기니 대통령, 김일성과 면담</p> <p>20 네윈 버마 대통령 북한 방문</p> <p>26 외교부장 허담, 비동맹외상회의 참가차 미국 향발</p>	<p>3 미국, 10월 3일로 만료되는 미·소 제1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의 제한연장을 단념키로 방침 결정</p> <p>7 美 WP지, 한국의 방위문제와 관련된 미대통령 검토각서(PRM 10) 내용을 보도</p> <p>20 제32차 유엔총회 개막</p> <p>24 미·소, SALT I 협정에 관한 공동성명</p> <p>27 주한 미군 철수 1단계 조치로 3개미사일 대대를 해체했다고 日紙 보도</p>
10		<p>7 김일성, 방북중인 폴포트 캄보디아수상 환영 군중대회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과 협상할 것을 표명</p>	<p>3 미·소, 인도양 군축의 現狀동결에 합의</p> <p>7 동독에서 반소련 폭동</p>

197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8 육군, 사단단위 최대규모 전방전개연습(쌍용연습: 제 32, 62사단 참가)		9 蘇, 유인우주선 소유즈 25호 발사(12일 도킹에 실패하고 귀환)
	12 국방부, 육군경비행기 1대가 항로착오로 월북했다고 발표		12 EC회의, 스페인 가맹을 승인
	26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에서 10월 20일 보수작업 중이던 한국군 대대장 유운학 중령과 오봉주 일병이 북한측에 의해 피랍됐다고 발표(보병 제20사단)	31 러시아 10월혁명 6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대표단 파견(단장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임춘추)	16 밴스 美국무장관, NBC TV회견서 미국외교의 우선순위 ①중동평화 ②SALT ③南阿문제라고 언급
11	11 이리역에서 화약수송열차 폭발 참사발생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선거 실시(579명)	17 소련, 제32차 유엔총회에서 데탕트 선언을 제안
		14 유엔식량기구(FAO) 가입	19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이스라엘 방문
			22 美국방부, F16전투기 60대 대한판매를 건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24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 개최(청와대)	30 조선인민군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제시	30 • 蘇, 시베리아에서 최대급의 지하핵실험 실시 • 미군 호川기지, 32년만에 일본에 반환
12	6 국방부·주한 美軍司, 5일부터 한·미 대잠수함 연합훈련중이라고 공동발표	5 바베이도즈(남아메리카)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16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767호)	8 동독대표단 평양 도착(단장 에리히 호네커 국가평의회회장)	10 蘇, 2인승 유인우주선 소유즈26호 발사(11일 살류트 6호와 도킹)
	20 제21대 국방부장관에 盧載鉉 예비역 육군 대장 취임	11 북한·동독간 영사협약 및 경제과학기술협정 조인	12 카터 美대통령, 의회에 한국에 관한 보고서 제출
		13 노동당 제5기 15차 전원회의 개최	14 중동평화회의가 이집트·이스라엘·미국·유엔 4자대표 참가하에 카이로에서 개막
			31 베트남, 캄보디아 침공.

# 197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8 朴대통령, 헬기, 대포 탄약, 장갑차, 함정, 레이다, 미사일은 생산하고 있으며 항공기산업과 특수전차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기자회견에서 피력</p> <p>24 美신예기인 F15기, 전술 배치 위해 오산에 도착</p>	<p>21 인민군 창건일을 2월 8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하였음을 각서로 주재국에 통보할 것을 각 해외공관에 지시</p> <p>26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한국내 정당·사회단체에 붙은편지 우송</p> <p>28 노동당 제5기 15차 전원회의 개최</p>	<p>6 카터 美대통령, 주한 미지상군 잔류 결정</p> <p>14 카터 美대통령,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겠으며 남북 직접협상을 지지한다고 언명</p> <p>24 소련원자로 탑재 군사위성, 캐나다 북서부에 추락</p>
2		<p>1 외교부, 남북교차 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 반대 비망록 발표</p>	<p>2 · 美정부, 대의회보고 자료에서 주한미군 2사단 일부가 80년 후에도 잔류한다고 발표</p> <p>· 美국방장관 보고, NATO 방위력강화 방침을 역설</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1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소련군 창건 60주년 기념행사 참가차 모스크바로 출발	5 베트남, 캄보디아에 정전 제안  22 브라운 美국방장관, 대의회 증언에서 한국 피침시전술비행단, 본토 육군부대 등의 즉각 개입을 언명
3	4 •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875호) • 국립묘지관리소 직제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8876호)  7 한·미합동 팀스피리트 '78 작전개시(~17일) 병력 11만 동원, 랜스미사일, F111기 등 최신풜기 참가  31 국방과학연구소 KM-15, KM-18 화학작용제 개발	6 외교부, 팀스피리트 '78 한미합동 작전훈련 비난 성명 발표	8 美국방부 와이드 차관보,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미 본토에서 지상군 투입된다고 美의회에서 증언  18 중공 전국과학자대회 6,000명 참가리에 개막  21 자유중국 새 총통으로 장경국 행정원장 선출

197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3 육군사관학교 제34기 졸업식</p> <p>4 공군사관학교 제26기 졸업식</p> <p>7 해군사관학교 제32기 졸업식</p> <p>21 대한항공 여객기, 소련기 총격받고 무르만스크에 강제착륙</p> <p>26 후방사단 포병 전방투입</p> <p>28 거문도 해안에 침투한 간첩선 격침(아군 1명 전사)</p> <p>30 국방과학연구소 2<math>\frac{1}{2}</math>톤 차량 개발 착수</p>	<p>2 모스크바~평양간 정기항로선 1L-62호 취항</p> <p>12 북한, 일본에 대륙붕 특별조치법 심의보유 요구</p> <p>21 F. 변함 가이아나 수상 평양 도착</p> <p>28 보카사 중앙아프리카 황제 및 알리 모하메트 북멘 수상 각각 평양 도착</p> <p>4 알베르 르네 세이셸 대통령 북한 방문</p>	<p>7 카터 美대통령, 중성자탄 생산 연기지시</p> <p>21 카터 美대통령, 주한미군 철수계획 일부 수정 발표</p> <p>25 카터 美대통령, 중성자탄 제조를 전면 중지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거부</p> <p>28 중·소 국경회담 재개 위한 예비회담(북경)</p> <p>3 카터 美대통령과 福田 일본수상 회담(워싱턴)</p>
5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2 국방부·주한 미군사, 한미 연합사령부 발족을 발표</p> <p>19 정체불명 선박, 동해 거진해안 침투/격침(86명 생포, 6월 13일 송환)</p>	<p>5 華國鋒, 中共黨 主席 金日成과 3차례 회담</p> <p>19 중앙통신, 표류 북한어선 제6122호를 격침시켰다고 한국정부 비난</p> <p>20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평양 도착</p>	<p>5 華國鋒, 평양 방문중 주한 유엔사 해체, 미군철수 주장</p> <p>16 蘇, 80년 모스크바올림픽에 한국기자 12명 입국을 허용</p> <p>23 유엔 군축특별총회(~7월 1일)</p> <p>30 NATO 제5차 수뇌회의(워싱턴)</p>
6	<p>16 멸공 특전훈련 실시(~17일, 양수리)</p>	<p>14 하바리마니 르완다 대통령, 방북차 평양 도착</p>	<p>7 카터 美대통령, 소련의 긴장완화란 끊임없는 침략적 투쟁을 의미한다고 대소비난</p> <p>12 밴스 美국무장관, 북한이 남침하면 핵 사용 성명</p> <p>13 소련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중공을 비난</p>

197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3 을지연습 '78실시(~28일)</p> <p>27 정체불명 선박, 백령도 해안 침투/총돌격침(1명 사망, 5명 생포, 7월 3일 4명 송환, 1명 귀순)</p>	<p>27 북한·카메룬간 친선협조에 관한 조약비준서 교환</p>	<p>22 터키수상·브레즈네프 소공산당 서기장 회담(모스크바)</p>
7	<p>6 朴正熙 후보, 제9대 대통령에 당선</p> <p>20 고리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p>	<p>1 북한·서부사모아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p> <p>11 중공 화국봉 평양 방문, 석유공급 약속</p> <p>23 군친선대표단(단장 : 오극렬 중장) 북경 향발</p>	<p>2 뉴스위크지, 북한의 경제실책과 한국의 발전으로 김일성은 궁지에 몰려 있다고 북한 생활특집에서 밝힘</p> <p>10 美국무부 고위관리, 미·일·소·중공은 한반도 전쟁회피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언급</p> <p>12 미·소, SALT II에서 미국은 신형미사일 제한을 제안</p> <p>17 선진 7개국 수뇌회의(본)</p> <p>21 반세르 볼리비아 대통령 사임하고 베레다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p> <p>25 비동맹외상회의 개막(베오그라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27 제11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가 美 캘리포니아 주 샌디아고에서 노재현 국방장관과 美 브라운 국방장관 사이에 개최(~28일)		
	28 한·미 군사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美 샌디아고)하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임무·기능을 담은 전략지침1호 시달		
	31 소련체류 한국여자 배구 선수단과 국내 보도기관과의 국제통화(일본중계)로 한·소간 첫 통화		
8	1 국방과학연구소, 105밀리 곡사포 조명탄 개발		6 로마교황 바오로 6세 급서 (80세)
	10 韓·濠, 원자력협정 체결		12 일·중공 평화우호조약 조인
	19 카밀 지부티공화국 수상 내한	17 북한의 최장 淸川橋 개통	14 북경방송, 소련이 대한관계 개선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 24 한국학자 4명 이민재·김현규·원병오·장순우, 제14차 국제자연보존연맹 총회 참석차 소련 입국

197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26 방위산업확대진흥회의 개최		25 중공·베트남, 국경선에서 유혈충돌
9	6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서울에서 개최		6 미국·이스라엘·이집트 3국 수뇌, 캠프데이비드에서 중동평화회담 개시
	9 朴鍾圭 사격연맹회장, 서울개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참가를 촉구	9 북한정권 창건 30주년 기념대회	9 소련, 핵불사용 국제조약 제안
	18 주한 美공군, 오산비행장에서 조기경보기(AWACS)를 보도진에게 공개	12 김일성, 방북 중인 중공 부수상 등소평과 회담	19 제33차 유엔총회 개막
	26 •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백곰) 개발 발사성공으로 세계 7번째 미사일개발국으로 등장 • 다련장 로켓포 시험사격(구경 130밀리, 28연장, 사거리 20km)	23 북한·알제리간 장기무역협상 체결(알제리)	
	28 북한군 하사 권정훈, 중부전선으로 귀순		30 유엔안보리, 나미비아에 유엔군 파견 결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 군단포병사령부에 군단포병 예·배속부대에 대한 행정·군수업무수행 시작</p> <p>2 盧載鉉 국방부장관, 국회답변에서 독도에서 문제생기면 군부에서 직접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고 강조</p> <p>5 무장간첩 3명, 철원군 침투 (아군 3명 사망, 1명 부상)</p> <p>17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대사 간에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 교환</p> <p>25 국방과학연구소, 155밀리 곡사포 RAP탄 개발</p> <p>27 주한 유엔군사, 판문점 부근에서 북한 제3땅굴(길이 1,635m, 높이 2m, 너비 2m, 군사분계선 넘어 435m 침투) 발견했다고 발표</p>	<p>13 북한·소련간 태평양 서북해역에서 과학탐사 공동작업 실시</p> <p>30 중앙통신, 제3땅굴은 한국이 파놓은 것이라고 모략성명 발표</p>	<p>2 美에비에이션·위크·테크 놀러지, 한국형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60~100마일로 휴전선에서 평양에 도달가능하다고 보도</p> <p>16 새 교황에 폴란드인 보이티와 추기경을 선출, 21일 요한바오로 II 세로 즉위</p> <p>18 카터 美대통령, 중성자 폭탄으로의 전용가능 신형 지대지미사일 핵탄두 생산을 명령</p> <p>25 등소평 訪日중 福田 수상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거론, 남북한 직접대화와 전쟁 위험성없다에 견해 일치</p> <p>31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협상재개</p>

197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7 한·미 연합사령부(CFC) 창설(사령관 베시 대장, 부사령관 柳炳賢 대장)</p> <p>8 美 F4D기 12대, 한국에 고정배치시키기 위해 대구 기지에 도착</p> <p>22 주한미군 500명 1차 철수</p>	<p>9 외교부, 한·미 연합사령부 발족과 관련, 비난성명 발표</p> <p>18 북한·동독간 영사협력의 정서 조인</p> <p>26 노동당 제5기 17차 전원회의 개최</p>	<p>3 소련·베트남 우호협력조약 조인</p> <p>15 아이슬란드 여객기 콜롬보 상공에서 추락, 승객 200명 사망</p>
12	<p>13 주한미군 전투부대 1진 219명 철수</p> <p>16 국방부, 울곡계획 5차 수정(지대지 유도탄 시험사격과 주한미군 철수 협상에 따른 조정)</p> <p>27 朴正熙 제9대 대통령 취임</p>		<p>5 EC 수녀회의</p> <p>14 美 에어로 스페이스紙, 미국정부가 F16기 60대의 대한판매 동의했다고 보도</p> <p>21 ·미·소 SALT II 외상회담 개막(제네바) ·미·이스라엘·이집트 외상, 캠프데이비드에서 새협상 개시</p>

197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31 주한 미군, 1차년도 계획 3,400명 철수완료</p>	<p>31 북한·소련간 나진항 통한 화물수송량 증대를 주요내용 으로 하는 의정서 조인</p>	<p>30 일본경제신문, 한국이 일· 중공항로 한국영공 통과 허 용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p>

# 197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0 국방과학연구소(ADD)부설 국방관리연구소 창설</p> <p>19 박대통령,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p> <p>30 국방과학연구소, 대형합정용 전자장비(KDJ-25) 개발 착수</p>	<p>23 조국전선중앙위, 남북대화재개에 대한 한국측 1·19제의에 긍정적 반응 성명 발표</p>	<p>1 미·중공 국교 정상화</p> <p>7 프놈펜 합락, 캄보디아 신정부수립 발표</p> <p>14 美 WP지, 북한은 세계 5위인 지상군 56만~60만을 보유한 것으로 미군사정보국과 중앙정보국에 의해 밝혀졌다고 보도</p> <p>16 이란 팔레비국왕 출국</p> <p>26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한 외교적 중재 언명</p>
2	<p>2 베시 주한 유엔군사령관, DMZ 북쪽에서 15개의 북한땅굴을 탐지했다고 발표</p>		<p>2 소련, 모스크바통신을 통해 북한 조국전선 성명지지</p> <p>5 이란, 잠정 회교정부 수립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8 국방부, 무기체계획득관리 규정 개정(국방부훈령 제 245호)	13 북한, 이란 신정부(회교 공화국) 승인	7 등소평 중공 부수상, 미국 방문 마치고 訪日  10 카터 美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  17 중·월분쟁(~3월 5일)  18 소련, 중공에 대해 베트남에서 즉각 철수 촉구
3	1 · 한·미 팀스피리트 '79작전 개시(~17일) · 전투경찰대대를 군에 배속(전경 제701, 702, 703, 705대대는 31사단으로, 전경 제706, 707대대는 제2군관구로)  5 한국군수산업진흥회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개칭	5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단 간 제2차 회의 개최	1 미·중공, 워싱턴과 북경에 각각 대사관 개설  5 중공군, 베트남에서 철군 개시  26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조인, 30년 동안의 교전 상태에서 종지부
4			3 중국, 중·소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의 不延長을 통고

197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6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 대표단, 남북대화 결렬 책임전가 성명 발표</p> <p>25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개최(평양)</p>	
5	<p>4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내한,朴대통령과 회담</p>	<p>2 쿠르트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북한 방문</p> <p>4 노동신문, 나진항이 소련 기지로 제공되었다는 설에 비열한 허위 날조라고 부인</p> <p>20 시아누크 북한 방문</p> <p>21 • 북한·그라나다간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 우산지구전투승리 40주년 김일성 동상 제막식</p> <p>31 주은래 증공수상 동상 제막(홍남비료 연합 기업소)</p>	<p>10 밴스 美국무장관, 미·소 SALT II 타결 발표</p> <p>13 카터 美대통령, 한국은 핵무기개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p> <p>15 NATO 국방상회의</p> <p>27 이집트, 이스라엘, 국경 개방 선언</p> <p>30 NATO 14개국 외상회담 (네덜란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7 국방부,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제정(국방부훈령 제253호)</p> <p>29 카터 美대통령 내한</p>	<p>13 노동당 제5기 18차 전원회의 개최</p> <p>26 중앙통신, 김영삼 총재의 김일성 면담 용의 표명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p>	<p>2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헝가리 방문</p> <p>5 슈미트 서독수상, 미국 방문</p> <p>8 미국정부, 80년후반의 실전배치를 위해 이동식 신형대륙간 유도미사일 MX의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고 발표</p> <p>18 카터·브레즈네프, 수뇌회담 끝내고 미·소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등 4개 문서에 정식 조인</p> <p>22 카터 美대통령, 북한 남침 때는 美지상군 재투입할 것이라고 선언</p> <p>30 ASEAN 외상회의</p>
7	<p>1 한·미 2차 정상회담 후 21개항 공동성명 발표. 미군의 계속주둔보장, 남북한·미 3고위당국대표회의 개최</p> <p>3 한국종합전시장 개관</p>		

197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5 중부전선으로 북한군 강형순 소위 월남 귀순</p> <p>6 국방부, 근속 30주년 기념 휘장 수여제도 제정</p> <p>9 치안본부, 삼척거점 무장간첩 24명 검거 발표</p> <p>21 삼천포 근해에서 북한무장간첩선 격침(간첩 6명 사살, 아군 6명 전사)</p> <p>25 일본방위청장관 내한(한·일 국방관계 협의)</p> <p>27 북한군 부소대장 안찬일 상사 서부전선 고랑포지역으로 귀순</p>	<p>10 외교부 대변인, 한·미양국이 제의한 3당국회의 거부 성명 발표</p> <p>13 마웅 마웅카 버마수상 북한 방문</p> <p>22 중앙통신, 카터 美대통령 미군철수 동결과 관련 비난 성명 발표</p>	<p>7 美 NYT紙, 한반도는 독일과 다르며, 김일성은 평화 조성 인물이 아니라고 보도</p> <p>20 카터 미대통령, ① '81년까지 주한미지상군 철수 중지, ② 그후의 철군문제는 '81년에 재평가, ③ 호크 방공대대의 미사일은 한국군에 이양한다 발표</p> <p>24 유엔안보리 긴급이사회, 유엔긴급군의 시나이반도 주둔 중지를 결정</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송경호 하사 귀순</p> <p>23 울지연습 '79실시(~28일)</p> <p>29 •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579호)                      • 국립묘지관리소 직제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9581호)                      • 국군신문제작소 직제개정(대통령령 제9580호)</p>	<p>1 북한, 파리에서 한국무역직원 납치 기도</p> <p>12 노동신문, 삼척 거점 간첩단 사건관련, 애국적이며 정당한 투쟁이라고 선동</p> <p>21 북한·니카라과 신정부간 외교관계 수립</p> <p>29 평화통일위, 남한의 민방위훈련을 전쟁책동이라 비난</p>	<p>17 영국 제인해군연감(79-80판)에서 북한잠수함 16척, 함정 588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p> <p>19 蘇 2인승 우주선 살류트 3호, 우주체재 175일의 신기록 내고 귀환</p> <p>27 먼데일 美부통령, 중공 방문</p> <p>30 제2차 쿠바위기 발생</p>
9		<p>11 대동강 텔레비전공장 완공(평양)</p>	<p>5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79-'80군사력밸런스보고서에서 북한병력 67만 2,000명으로 평가</p>

197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6 공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636호)	21 인민군 총참모장에 전 공군사령관 오극렬 임명  26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박중국) 모잠비크 방문	16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변  18 제34차 유엔총회 개막  26 CENTO 해체  30 日 요미우리신문, 일·중공 항로의 한국영공 통과 추진중이라고 보도
10	5 보병 제21사단지역에 무장간첩 침투	9 세쿠투레타 기니 대통령 북한 방문  17 노동신문, 부산학생 소요 사태에 한국정부의 탄압행위 비난 발표	1 미국 지배하의 파나마 운하 관리운영권, 76년만에 미국·파나마 공동위원회로 이관  2 일본정부, 國後島 등 북방 영토의 소련군 배치에 엄중항의  12 화국봉 중공수상 유럽(불·서독·영국) 방문차 북경출발  17 중공·소련, 관계정상화회담 개막(모스크바)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8 • 제12차 한·미연례안보협 의회의가 서울에서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브라운 美국방 장관 사이에 개최(~1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시위와 관련 부산에 비상계엄령 선포</li> </ul> <p>20 마산, 창원에 위수령</p> <p>26朴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경호 실장 차지철도 사망)</p> <p>27 • 전국(제주도 제외)에 비상계엄령 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권한대행에 崔圭夏 총리 취임</li> </ul> <p>28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전두환 소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계획 범행이라고朴대통령 시해 사건 1차 수사결과 발표</p> <p>30 정승화 계엄사령관, 민생 안정에 관한 담화문 발표, 李燾性 육군참모차장을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p>	<p>21 한국 부산사태와 관련하여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p>26 인민군 사로청 일군 대회 개최</p>	<p>23 • 일본, 환태평양 공동체 창설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베트남 비밀회담 (방콕)</li> </ul> <p>28 美, 박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신예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한국에 급파, 키티호크 항공모함 등 기동타격대도 한국해역으로 이동</p> <p>31 소련정찰기 2대, 美기동함대 활동 감시 위해 대한해협 통과</p>
11		<p>1 루이스 카브랄 기니비사우 대통령 북한 방문</p>	

197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3 朴正熙 대통령 국장 엄수</p> <p>15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품질검사단 설치</p>	<p>8 북한·기니비사우간 문화·기술·항공협정 조인(평양)</p>	<p>4 이란 회교도, 미대사관 점거, 60명을 인질</p> <p>9 美상원 외교위, SALT II 가결</p> <p>12 카터 美대통령, 대사관인질사건과 관련, 이란 원유 전면 수입정지 결정</p> <p>29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p>
12	<p>5 육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674호)</p> <p>6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에 崔圭夏 총리를 선출</p> <p>12 12·12사태 발생</p> <p>13 · 盧載鉉 국방부장관, 김재규 범행관련혐의로 12일 밤 정승화계엄사령관을 연행, 후임에 이희성 대장을 임명했다고 발표 · 제23대 육군참모총장에 이희성 대장 취임</p> <p>14 周永福 공군예비역 대장, 제22대 국방부장관에 취임</p>	<p>10 노동당중앙위, 제5기 19차 전원회의 개막</p>	<p>5 오히라 일본수상, 중공 방문</p> <p>10 이란 호메이니옹, 대미협상 거절</p> <p>12 NATO 외상·국방상 각료이사회, 전역 핵전력의 현대화와 소련에 대한 전역 핵협상제안을 결정한 성명을 채택</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8 정부, 합동참모회의의장에 柳炳賢 육군 대장을 임명</p> <p>20 육군보통군법회의, 김재규·김계원 등 7명에 사형선고</p> <p>21 崔圭夏 대통령권한대행, 10대 대통령에 취임</p> <p>26 전군 지휘관회의, 북한도발 즉각 응징태세 강화 등을 다짐</p> <p>28 위کم 한·미 연합사령관, 전방시찰에서 군은 정치 초연·방위 전념 강조</p> <p>29 수도권 방어방벽 준공</p> <p>31 • 육군본부, 교육참모부를 통합, 작전교육참모부로 개편 • 국방대학원에 석사과정 설치인가('81년부터 시행)</p>	<p>18 인민군 당위원회 확대회의 개최</p> <p>21 김유순 북한올림픽위원장, 대한체육회장 앞으로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에 남 북한 통일팀 출전 제의</p>	<p>15 국제사법재판소, 이란 미 대사관 인질의 즉각석방 촉구 판결</p> <p>17 유엔총회, 인질금지 국제협정 채택</p> <p>18 미국, 이란에 인질재판 때 해상봉쇄 등 비폭력 군사행동을 취하기로 결정</p> <p>25 아프가니스탄 親蘇 쿠데타, 蘇軍 개입 속에 아미 대통령 추방되고 카르말 전 부수상이 전권 장악</p>

#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국방기획관리제도(PPBS) 시행</p> <p>19 국방부,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을 박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김재규 등의 내란을 방조한 죄명으로 18일 계엄 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송치했다고 발표</p> <p>24 정부, 북한의 12일자 총리급회담 제의에 대한 회신에서 북한에 인민공화국 호칭 첫사용</p> <p>26 최대통령, 국방부 연두순시</p>	<p>8 적도기니 정부사절단(단장 E. 리케사) 방북환영 연회참석</p> <p>12 김일성, 이집트 부통령 호시니 무바라크와 회담</p> <p>21 북한올림픽위원회, 모스크바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인회담을 판문점에서 갖자고 일방적으로 통보</p>	<p>3 미국, 對대만 무기수출재개를 발표</p> <p>4 카터 美대통령,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對蘇 곡물수출제한, 모스크바올림픽 참가 거부검토를 포함하는 對蘇 대항조치를 발표</p> <p>23 카터 美대통령, 일반교서를 발표(카터독트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8 • 창군이래 최대 동계훈련인 필승기동훈련 실시 (~2월 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고등군법회의, 김재규 등 6명에 사형, 유석술에 징역 3년 선고</li> </ul> <p>29 이회성(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김계원을 무기로 감형, 김재규 등 6명 형량 확인</p> <p>30 육군군수학교 창설</p> <p>31 해군, 거북선 원형복원, 진해만에서 진수식(전장 113척, 폭 34척, 길이 21척)</p>		
2	<p>5 남북조절위 서울측, 남북 회담을 위한 서울측 실무대표에 김영주, 정종식, 이동복 임명</p> <p>7 남북간 직통전화 3년반만에 재개통</p>	<p>4 북한·이집트 1980년도 상품유통에 관한 의정서 조인 (평양)</p> <p>5 총리회담 북측, 실무대표 명단 발표(수석대표 현준극)</p>	<p>2 美국무부, 북한 남침에 대비 주한미군 무기·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힘</p> <p>5 美국무부,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의 통제사회라고 지적</p>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14 국토통일원, '78년현재 남북한의 GNP는 473억 5,000만 대 91억 9,000만달러 5.2대 1이며, 1인당 GNP도 북한 541달러, 한국 1,279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힘	8 북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11 휴즈 태평양지구 美공군 사령관, 북한남침 때 B52기 즉각 투입하겠다고 밝힘
	15 국무회의, 학도호국단 간 부선거제·군대식 편제 호칭 없애는 등 학도호국단 운영 개선 방안 의결	15 元山-高原 鐵道電氣化 工事 완공(원산역)	
	19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남북실무자 대표 판문점에서 2차 대좌, 실무회의 운영방법 등 6개항 합의(3월 4일 3차 접촉예정)	27 북한·소련 1980년도 상품상호공급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모스크바)	27 영국 로이드선박협회, 한국의 79년 조선수주가 127만톤으로 세계 6위라 발표
	28 적의 기습가장 수도권 방어훈련(방패 '80 실시)		
	3 1 팀스피리트 '80한미연합작전 훈련개시(~4월 10일)		
6 朴正熙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사형확정된 박흥주(41세) 대령 총살형 집행	6 조총련, 3·1절 61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팀스피리트 '80훈련 비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804호)</p> <p>14 한·미 제1군단을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로 개편</p> <p>18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남북실무대표회의 판문점에서 4차 접촉 가짐</p> <p>23 한강하구 침투 무장공비 3명 전원 사살</p> <p>25 포항 근해에서 북한 간첩선 1척을 해·공군 합동작전으로 격침, 아군 2명 사상, 어부 4명 사망 및 실종</p> <p>27 무장간첩 3명 금화 부근 침투, 교전(간첩 1명 사살, 1명 도주, 아군 1명 전사, 1명 부상)</p>	<p>11 중공무역대표단(단장 무역부장 陣介) 평양 도착</p> <p>24 김일성, 방북중인 르완다 정부대표단과 면담</p>	<p>7 일본통상성, 북한의 '79년 대일무역은 '78년도에 비해 수입 63%, 수출 47%가 증가했다고 집계</p> <p>25 大平 일본수상, 한·일 합동군사훈련은 집단자위권이 아닌 한 가능하다고 중의원에서 증언</p>
4	<p>3 육군사관학교 제36기 졸업식</p>	<p>3 노동신문, 3월 25일 일본 大平수상의 한·일 합동군사훈련 가능성 시사 비난</p>	<p>4 소련, 아프가니스탄과 “소련군대 일시적 주둔조건에 관한 조약”의 비준 발표</p>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6 공군사관학교 제28기 졸업식</p> <p>8 첫 국산구축함 울산함 진수식</p> <p>9 해군사관학교 제34기 졸업식</p> <p>11 한·미 항공회담(워싱턴)에서 미국 항공기의 서울경유 중공행을 허용</p> <p>12 월남의 사이공함락 때 억류당했던李大鎔 공사, 安熙完 영사, 徐丙鎬 영사 등 3명 5년만에 석방되어 귀국</p> <p>14 최규하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을 임명</p> <p>16 한국 최초의 청평 양수발전소 준공(용량 20만kW 발전기 2대)</p>	<p>5 카운다 잠비아 대통령, 김일성 초청으로 평양 도착 평양시 환영집회 개최</p> <p>17 북한, 짐바브웨 공화국 승인</p>	<p>11 중·소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 실효</p> <p>14 주일 미군사령관 겸 美 공군사령관 윌리엄 긴 중장, 주한 미군기를 신예기 F14, 15, 16기로 전면 대체하고 A10기 1개 대대를 상주시킬 것이라고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21 • 예비군 동원훈련 실시 ('80 쌍용훈련, ~26일)</p> <p>•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에서 광부 700여명 유혈난동(東原 탄좌) 어용노조대결, 임금인상 문제로</p> <p>30 계엄사령부, 전군 지휘관회의 개최, 노사분규 학원소요의 폭력은 엄단 결의</p>	<p>23 오극렬 인민군 총참모장 북한군 창립 48주년(4. 25) 기념보고회</p> <p>25 김일성, 북한군 창립 48주년을 맞아 북한군 부대시찰 전투력 강화 독려</p>	<p>25 미국,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미대사관직원 50명의 인질구출작전 실패</p>
5	<p>1 정부, 남태평양의 키리바티 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3 '79년도 우리나라 조선탄주는 222만 1,555톤으로 세계 2위라고 수출입은행이 발표</p> <p>4 코암·일본석유, 한·일 대륙붕 5소구에 대한 시추 착수했다고 발표</p> <p>5 몰디브 공화국 자밀 수상 내한</p>	<p>2 헨리코 비오 국제적십자사 이사장 방북 평양 도착</p>	<p>2 미국, ALCM(공중발사순항미사일)의 생산개시 발표</p> <p>4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사망</p> <p>6 美하원, 우리나라의 핵개발에 쓰일 저농축 우라늄의 적기공급보장 결의안 통과</p>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7 육본, 제11, 13 특전여단 이동지시</p> <p>11 崔대통령 중동 방문(~15일)</p> <p>17 비상계엄령 전국확대, 광주에 학생·시민 대규모 데모사태 발생</p> <p>18 광주사태 발생(~27일)</p> <p>19 • 계엄군 출동(특전 4개 대대, 제11병참경비대대) • 계엄사, 정치활동 중지 발표</p>	<p>7 김일성, 티토 유고 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베오그라드 도착</p> <p>17 룩셈부르크에서 영국·서독·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그리스·터키 등 7개국의 親北人士 모아 통일지지대회 개최</p> <p>19 • 駐蘇대사 權熙京, 소련 최고회의 제1부위원장 구스네스프에 신임장 제출 • 북한과학원·체코과학원 간 1980~81년도 상호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평양)</p>	<p>7 화국봉 증공수상,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와 루마니아 대통령 차우세스쿠와 각각 회담</p> <p>9 카터 美대통령, 미국의 기본외교정책 발표</p> <p>12 美국무부, 한국의 비무장지대 남방에서 미군순찰대가 북한군과 총격전이 있었다고 발표</p> <p>14 NATO 外相·國防相회의에서 NATO 방위계획 앞당겨 실시키로 합의</p> <p>18 중국, 최초로 남태평양을 향해 ICBM 실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21 • 정부, 국무총리서리에 박충훈,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김원기 등 새 내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희성 계엄사령관, 광주사태에 이성을 회복하고 질서유지 당부</li> <li>• 진도개 “돌” 발령</li> </ul> <p>24 10·26사태의 김재규·박선호·이기주·유성욱·김태원 등 5명 교수형 집행</p> <p>25 특별담화 발표(22:30), 육군본부 작전지침 하달, 광주 진입</p> <p>27 계엄군 작전개시(03:20), 08:00 정상회복</p> <p>30 • 계엄사령부, 전군 지휘관회의 개최, 노사분규, 학원소요의 폭력은 엄단하기로 결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태세 변경, 진도개 “셋”(18:00)</li> </ul>	<p>22 북한적십자사, 남북된 해양호의 송환요구에 조사가 끝나면 협조 용의있다고 밝힘</p> <p>24 인도 주체사상연구학회 대표단(단장 C. B. 무게르디) 평양 도착</p> <p>27 조총련, 광주소요사태관련 성명 발표</p> <p>29 청진조선소, 14,000톤급 화물선 염분진호 진수</p>	<p>22 미국무부, 광주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는 성명 발표</p> <p>24 유엔인구연감, 서울이 687만 9,454명으로 세계 9위 인구 집중도시라고 밝힘</p> <p>26 미국 “스윙전략” 포기, 카터 대통령 결정</p> <p>27 華國鋒 중공수상, 일본 방문</p> <p>29 美, 대중공정책 6개조치 발표</p>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31 · 대통령 보좌기구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엄사 발표, 광주사태 희생자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 41명 사망, 재산 피해 5,200만달러 추정</li> </ul>	<p>31 6·1 국제아동 30돌기념 중앙보고회(평양학생소년궁전)</p>	
6	<p>2 · 全斗煥 中情部長 서리 사표, 국군보안사령관·국보위 상임위원장만 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日本共同通信 서울지국 폐쇄</li> </ul> <p>5 · 崔圭夏 대통령, 국보위 상임위원 30명(장성 18, 공무원 12) 임명, 13개 분과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엄사령부, 광주사태 당시 사망자는 148명이라고 명단 발표, 사회불안 배후조종자 21명을 지명수배</li> </ul> <p>9 제5회 한·미 경제협의회 개막(~10일, 서울)</p> <p>12 경제기획원, '79년말 우리나라 총인구는 3,760만 5,000명(남자 1,896만 2,000명, 여자 1,864만 3,000명)</p>	<p>2 6·3 韓·日회담 반대데모 16주년 관련보고회 개최(모란봉극장)</p> <p>5 소련,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대표단 평양도착</p> <p>6 북한 경제대표단 잠비아 방문</p> <p>10 백학림(인민무력부장) 軍代表團 이끌고 중국 방문후 귀국</p>	<p>4 홀부르크 美·국무차관보, 미·중·일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17 계엄사령부, 부정축재·국기문란 혐의로 329명 지명 수배		
	18 계엄사령부, 金鍾泌, 이 후락, 이세호, 김진만, 김종락, 박종규, 이병희, 오원철, 장동운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결과 발표, 축재금액 총 853억 1,154만원		
	20 정부, 행정자문위원회 신설		20 美공군 당국, C141기를 개조, 공중급유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14시간 논스톱으로 비행한다고 발표
	21 서산 앞바다 무장간첩선 1척 격침(간첩 8명 자폭, 1명 생포)		
	22 세계은행, 한국의 국민학교 취학율은 100%로 개발도상국 중 1위라고 발표	23 중앙통신, 최근의 한국내 광주사태와 관련한 성명 발표	23 駐감보디아 베트남군, 태국領에 침입(~25일)
	24 남북 총리회담 개최 위한 제9차 실무대표 접촉		
	29 북한주민 이영우(35) 한강 하구로 귀순	25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30주년 관련 평양시 군중대회	
	30 한강 12번째 다리인 성산대교(길이 1,410m) 개통		30 독·소 정상회담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 위관급 장교 계급장 변경</p> <p>4 • 첫 國產火力發電所(남제주 화력발전소) 준공 • 戒嚴司, 金大中 등 37명의 내란음모사건 수사결과 발표</p> <p>18 • 중앙정보부장에 유학성 육군대장을 전역과 동시 임명 • '80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26 주한 미군 부사령관, 북한이 대부분 무기를 자체생산하고 있다고 밝힘</p> <p>31 文公部,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취소</p>	<p>7 북한·중공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체결 19주년 기념행사</p> <p>18 김일성, 스티븐 솔라즈 미국하원의원과 평양에서 회담</p>	<p>27 팔레비 전 이란국왕, 망명지인 미국에서 병사</p>
8	<p>1 국보위, 신원기록 일체정리하고 연좌제 폐지키로 결정</p> <p>9 한국·피지공화국 상공장관회담 개최</p>	<p>5 歷史學者代表團, 국제역사학위원회 제15차대회 참가(루마니아)</p> <p>14 인민무력부, 평양주재 각국대사관 무관 초치</p>	<p>8 美 CIA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비가 GNP의 11.4%로 세계 3번째라고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5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對日무역적자 누계 178억 달러로 경제기획원 분석</p> <p>16 崔圭夏 대통령 下野, 박충훈 국무총리서리 대통령 권한을 대행</p> <p>20 · 남북총리회담 개최 위한 제10차 실무대표 접촉 · 국보위상공분과위, 중공업통폐합방안 발표</p> <p>21 · 전군 지휘관회의, 兪斗煥 장군을 국가원수로 추대 결의 · 을지연습 '80 실시(~26일)</p> <p>22 전두환 육군대장 전역</p> <p>24 정부, 油類값 15% 인상</p> <p>27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 11대 대통령에 당선</p>	<p>18 김일성, 버마工業代表團 親見(단장 제1공업상 친세)</p> <p>22 사회주의국가 청소년 친선국제여자농구대회(~27일, 평양체육관)</p>	<p>21 소련 원자력잠수함, 오키나와 근해에서 사고</p>
9	<p>1 · 전두환 11대 대통령 취임 · 105밀리 곡사포 ICM탄 개발</p>		<p>1 중공, 집단지도체제 추진</p>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3 5·17조치후 109일만에 대 학 개교</p> <p>4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대남 비방방송 재개(휴전선 11개 지역)</p> <p>6 외무부, 북한의 대남비방 방송 즉각중지 촉구</p> <p>12 韓赤, 남북적십자본회의 무조건 열자고 北赤에 제의</p> <p>17 육군보통군법회의, 김대 중에 사형선고</p> <p>19 韓·佛 어업협정 체결</p> <p>20 제105회 정기국회 폐회</p>	<p>2 레스틴 전 미국무부 부대 변인 북한 초청으로 평양 방문</p> <p>3 중앙통신, 평안남도에서 1,500년 전의 고구려 벽화 고분이 발견되었다고 보도</p> <p>9 평양방송, 북한은 멕시코 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했다고 보도</p> <p>20 김일성, 알베르 르네 대 통령과 환담(평양)</p> <p>22 대동강 TV수상기 조립공 장 준공</p>	<p>2 • 중공, 최초 소득세법 채택 • 리비아·시리아 통합선언</p> <p>18 美국방부, 한국 등에 패 트리옌트 신예 미사일로 대 체할 것이라고 발표</p> <p>23 伊東 일본의상, 제23차 유 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안정 위해 남북대화 촉진 강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26	남북 총리회담, 서울측은 11월 3~8일에 개최제의 • 각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국가보위대책회의로 의결				
	29	정부,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 공고	29	김일성, 재 캐나다 反韓人士 최흥희와 면담		
	30	'81년도 예산안 확정(7조 5,371억원 규모)				
10	1	공군작전사령부 전술항공 통제본부(TACC) 운영				
	3	국방부, 방위성금(73. 12~80. 9) 총 382억 8,500만원으로 밝힘 • 전두환 대통령, 개천절경축사에서 남북 총리회담 조속개최 촉구	7	노동신문, 남북 총리회담 불응 밝힘		
	8	제61회 전국체육대회 개막(~13일, 전주)	10	북한, 10년만에 제6차 당대회 개막(~14일, 김정일 후계자 공식화)	10	미국, 한국에 F-16 48대를 81년 중반 배비한다고 발표
			13	소련공산당 대표단 북한 노동당대표와 환담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15 調節委員會 서울측,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주장 반박, 대화를 통한 통일방안 촉구		17 • 중공, 26차 대기권 핵 실험 실시 • 미·소 유럽전역 핵무기 제한을 위한 예비회담 개시 (제네바)
	19 송요찬(1918~) 전 내각 수반 별세		20 그리스, NATO 군사기구에 복귀
	27 제5공화국 헌법공포식 (세종문화회관)	23 중국인민지원군조선전선 참전 30돌 평양시 기념집회(2·8문화회관)	
	29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사회정화위원회 설치		
	31 지하철 2호선 1구간(잠실~신설동) 개통		
	11	3 • 횡간도 무장간첩 3명 침투 전원 사살(민간인 1명 사망) • 立法會議, 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안 의결	5 중앙통신, 피랍된 해왕호 6, 7호 선원을 송환한다고 밝힘
6 제1회 국제군인 태권도선수권대회(서울)서 한국 우승		12 북한·동독간 81년도 상품거래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7 • 언론기관 통·폐합 • 한·미합참의장회의에서 한국방위 위해 한·미연합 방위전력 증강에 의견 합의</p> <p>25 신아일보 등 5개 신문 및 4개 통신사 終刊(30일 TBC, DBS 방송국도 終放)</p> <p>26 외무부, 金大中 재판관련 對韓 內政간섭발언 경고</p> <p>28 민주정의당 창당 선언</p> <p>29 민주사회당 창당 선언</p>	<p>20 조국전선, 한국의 각계인사 156명 앞으로 김일성이 제의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 발송</p> <p>25 外交部대표단(단장 부부장 金忠) 인도 向發</p> <p>27 김일성, 방북중인 스페인 공산당 수상 S. 카릴요와 회의</p>	<p>20 중공, 江青 등 4人幫 첫 재판, 전국에 비상령 선포</p> <p>23 蘇, 극동에 초음속 전략 폭격기 백파이어 20대 배치 보도(日 朝日신문)</p> <p>30 메이얼 美육군참모총장, 주한 미제2사단을 경보병사단으로 개편한다고 발표</p> <p>5 바르샤바조약국 긴급수뇌 회담 개최(모스크바)</p>
12	<p>1 • 남해안 미조리 침투 간첩선 1척 및 무장간첩 3명 사살 • KBS 컬러TV 첫 방영</p> <p>2 大清多目的뎀 준공</p>	<p>1 우간다 군사대표단(단장 티토 오케로 사령관) 평양 도착</p>	

198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2 국방부 한·미 연합유류지원본부에 관한 합의(CPSC) 각서 서명</p> <p>13 브라운 미국방장관 내한 (全대통령 및 국방부장관 주영복 요담)</p> <p>15 국방부, 징집연령 19세로 인하, 군복무기간도 30개월로 단축</p> <p>16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공대공 전투훈련장 운영 합의각서 체결</p> <p>19 예비군교육 훈련대상 연령 조정(35세→33세)</p> <p>22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p> <p>23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소집, 북한도발에 대한 전투태세 강화 다짐 ·입법회의, 언론기본법 제정</p> <p>25 외무부, 비동맹외교강화 방침 발표</p>	<p>17 북한·몽고 정부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울란바토르)</p> <p>22 북한·불가리아간 과학협조사업계획(1981~82) 조인 (평양)</p> <p>24 북한·짐바브웨간 친선협회 결성(평양)</p>	<p>9 美, 폴란드사태와 관련 全軍 비상계엄령</p> <p>12 브라운 美국방장관, 스즈키 日本수상 회담(일본의 방위력증강 요구)</p> <p>21 이란, 美人質 석방보조금 조로 240억달러 알제리 은행에 예치 요구</p> <p>23 日共同通信,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등 全權을 金正日이 장악했다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9 • 정부, 공무원 윤리헌장 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리비아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li> </ul> <p>30 • 국군조직법 개정(군무원 인사법 포함) 법률 제 334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활주로 긴급보수 등 합의각서 교환. 한·미 공군간 공대공 전투훈련장 설치 합의각서 서명</li> <li>• 해군, 한국형 구축함 제1호(울산함 FFK - 951) 인수</li> </ul> <p>31 '80년 경제성장 마이너스 5.7% 기록</p>	<p>26 북한·루마니아간 상품유통 및 지불의정서 조인</p>	<p>26 伊東 일본외상, 소련이 폴란드 침공할 경우 일본은 미국 및 西方同盟과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힘</p>

## V. 自主國防期(後期)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3 韓·美 정상회담 개최, 주한미군 철수계획 백지화 등 14개항의 공동성명 발표</p> <p>12 전두환 대통령 1·12 對北 提議(시정연설), 19일 북한 거부</p> <p>15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A-10 전개 주둔지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p> <p>19 국가안전기획부, 3개 고정간첩망 15명 검거 발표</p> <p>21 대간첩대책중앙회의 개최(중앙청)</p> <p>24 정부, 비상계엄 456일만에 해제</p> <p>27 국립묘지 현충관 신축 개관식</p>	<p>10 노동신문, 6·25동란시 납북된 金圭植 박사가 50년 12월 10일 평북 만포에서 신병치료중 운명했다고 발표</p> <p>17 조선노동당대표단 페루 向發(단장 金永萬, ~2월 2일)</p> <p>25 노동신문, 전두환 한국 대통령의 1·12제의에 재언급, 분열주의적인 정체를 은폐하기 위한 속셈에서 출발했다고 비방선전</p>	<p>12 美 國 務 部, 1·12 제의는 한반도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p> <p>14 일본정부, 미국이 제의한 美·日·獨 3국안보체제 구성안 거부</p> <p>20 미국, 레이건 대통령 취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8 全斗煥 대통령 미국 공식방문(~2월 7일)		28 에콰도르軍, 페루 침공
2	1 · '81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 全斗煥 대통령,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과 회담		
3	全斗煥 대통령·레이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14개 항의 공동성명 발표	6 노동신문, 全斗煥 대통령의 방미발언 가운데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 등을 강조한 부분 언급, 지역분단의 영구화를 미제에 호소한 것이라고 비방	6 美·소말리아, 군사협정 합의
13	정부, 레바논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합의	9 스웨덴 外務省代表團, 평양 공식방문(~13일)	
14	외무부, 외교관에 정년제(계급, 연령) 적용		
18	한국·케냐外相, 정치·경제·문화 등 협력관계 확대키로 한 공동성명 발표	16 조선노동당/일본사회당, 동북아지역 비핵화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3 한국·인도, 공동경제회의 개최(무역확대, 합작투자 등 논의)</p> <p>25 全斗煥 후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p>		<p>20 위킴 주한 미군사령관,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대한방위체계 강화 위해 NATO형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p> <p>21 홍콩紙, 중공은 백두산을 그들의 영토로 간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p>
3	<p>1 · 학생군사교육제도 변경 (일반대학 : 1·2·3학년을 1·2학년으로, 전문대학 : 1·2학년에서 1학년으로) ※ 1개 학년 120시간에서 64시간으로 · 학군사관 제19기 임관식</p> <p>2 국방부, 전장병에 국난극복기장수여(대통령령 10231호)</p> <p>3 제5공화국 출범, 12대 全斗煥 대통령 취임</p>	<p>3 3·1절 62주년 기념보고회를 통해 허찬숙 조국전선서기국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격렬한 대한·미 비난선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10 • 제15대 공군참모총장에 이희근 공군 대장 취임 • 공군 지하전술항공통제 본부 준공	14 김일성, 초청 방문한 아 스카다 이치오(飛鳥因一 雄) 일본사회당 대표단장과 동북아지역 비핵지대 설정 문제 및 공동선언문제에 관 해 회담	23 EEC 10개국 정상회담 (~24일)
	17 蔚山火電 4·5·6號機 준 공		
	25 국방부, 戰時 한국 국적 선박 지원관련, 한·미간 합 의각서 서명		
	27 美 국방부, F16 신예전투 기 36대에 대한 판매계획 발표		
	30 盧信永 외무부장관, 중공 과의 관계 가능성 시사		
4	1 정부, 폴란드·체코와 국제 전화 개설		
	2 한국·프랑스 외상회담 개 최		
	3 육군사관학교 제37기 졸 업식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4 공군본부, 김해기지 주한 미군요원 응급치료 합의각서 서명</p> <p>5 金斗煥 대통령, 중공이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한다면 미국도 북한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힘(미타임지와의 회견에서)</p> <p>6 공군사관학교 제29기 졸업식</p> <p>9 • 해군사관학교 제35기 졸업식 • 국가안전기획부, 고정간첩 박창석 등 13명 검거 발표</p> <p>14 공군본부, 주한 미군 조종사 항공생리교육훈련 지원협정 서명</p> <p>16 국방부, 북한군 이복재 하사 중부전선으로 귀순 발표</p> <p>18 국회, 全大統領의 1·12제의 지지결의안 채택</p>	<p>15 김일성 생일, 각종 기념행사</p> <p>19 4·19의거 21주년과 관련 한국청년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 등을 선동(모란봉극장, 평양시 보고)</p>	<p>12 미국, 왕복우주선 콜롬비아號 발사성공(~4월 15일 귀환)</p> <p>16 레이건 美대통령, NATO사 무총장과 폴란드사태 논의</p> <p>17 롱 美대평양함대사령관, 북한의 10만 규모 특수부대 보유에 경고</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20 國政자문회의 발족(위원 25명)		
	21 • 국방부, 한·미 연합사 연합예산발족위원회 각서 서명 • 로버트 데이비드 멀둔 뉴질랜드수상 夫妻 訪韓 (~25일)	23 체코정부대표단, 대북경제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참가차 평양 도착	24 美국무부, 신속배치사령부 설치결정 발표  27 美국무부, F-16 신예 전투기 36대 대한판매계획 발표  28 와인버거 美국방장관,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밝힘
	24 한·뉴질랜드 공동성명 발표, 자원분야 合作투자 가능성 계속 검토 시사		
5	29 • 제13차 한·미연례안보 협의회의가 美 샌프란시스코 제6군사령부에서 주영북 국방부장관과 와인버거 美국방장관간에 개최(~30일)	29 김일성, 야시르 아라파트 PLO 의장에게 친선협력 증진을 강조하는 전문 발송	
	1 • 전투병과교육사령부를 교육사령부로 개편 • 각의, 군속을 군무원으로 명칭 변경	1 탄자니아 혁명당 청년동맹대표단 방북차, 평양 도착  3 김일성, 방북중인 시리아 인민회의 대표단과 면담 (단장 S. 슬레이만)	2 일본, 미국과 무기공동개발에 합의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8 盧信永 외무부장관, 中·蘇와 언제든지 修交 翁의있다고 국회에서 언급</p> <p>9 정부, 제17대 합참의장에 윤성민 육군 대장, 제13대 해군참모총장에 李銀秀 해군 대장 임명</p> <p>18 최신구축함 경기함 취역식</p> <p>19 한·일 대륙붕 5 및 7 小區탐사 완료</p> <p>20 북한에 피랍된 남진호 선원 19명 속초항에 귀환</p> <p>23 공군본부, 한·미공군 한국내 합동작전정보센터 양해각서 서명</p>	<p>7 김일성, 방북중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대표단 면담</p>	<p>8 한반도 안정이 세계평화에 긴요하다고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밝힘</p> <p>20 미국, 한국에 탱크(M551 세리던) 1,000대 판매키로 결정</p> <p>27 美하원, F-16기 36대 대한 판매 승인</p>
6	<p>5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의 정상회담을 북한당국에 제의, 체육·문화·경제교류도 제의</p> <p>·국무회의, 주미대사에 柳炳賢 전 합동참모의장을 임명 결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8 全대통령, 청와대에서 국군 모범 용사 60명 접견·격려</p> <p>9 국가안전기획부, 일본을 거점으로 한 우회침투간첩 손유형(52세, 일본 대판거주) 등 6명 검거</p> <p>16 韓·佛 경제실무회담, 佛 核 플랜트공급, 원자력 분야 협력키로 합의(파리)</p> <p>19 한·미 기동훈련, 동지나해에서 실시(~22일)</p> <p>20 정부, 북한에 1·12 및 6·5제의수락 촉구성명 발표</p> <p>25 · 全斗煥 대통령, 아세안 5개국 순방동정 ·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창설</p> <p>27 全斗煥·수하르트 韓·印 尼 공동성명 발표</p> <p>29 全斗煥 대통령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차기 수상과 회담</p> <p>30 한·말레이시아 조달·생산에 관한 공동위원회 토의서 서명</p>	<p>1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일행(단장 현준국) 일본 방문</p> <p>14 김일성, 방북중인 아랍사회부총당 대표단(단장 바테탈 안싸리) 면담</p>	<p>16 日·朝의원연맹, 북한의원단과 상호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동경)</p> <p>25 美 국방부, 주한미군이 총 37,883명이라 발표('81년 3월 31일 현재)</p>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 全斗煥 대통령 李光耀 싱가포르 수상과의 정상회담, 동아지역의 평화 및 안정 등 협의 공동성명 발표(~2일)</p> <p>4 • 육군헬기 추락 13명 순직 • 全斗煥 대통령,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 全斗煥 대통령, 프렘 태국수상과 정상회담(경제협력, 통상 등 협의)</p> <p>16 全대통령, 정무제2장관에 盧泰愚 전 보안사령관을 임명</p> <p>21 • 무궁화회의 육군대학에서 개최(~8월 28일) • 한국·서독 국제학술회의 개최(서울)</p> <p>28 해군본부, 진해 군항내 연합작전 상황실의 건설 등 합의각서 서명</p>	<p>2 全斗煥 대통령의 6·5제를 金日成이 거부</p> <p>5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총비서, 조·소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체결 20주년 즈음, 김일성에 축전</p> <p>6 북한 조국전선중앙위 소집, 全斗煥 대통령의 6·5제의를 비난</p>	<p>4 쿠바, 아바나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한국 초청</p> <p>7 美공군, 최신예 F16 전투기를 외국에는 최초로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p> <p>9 모스크바, 북한의 羅津港을 蘇의 해상기지로 사용 시사</p> <p>28 일본 방위청, 북한 군사력은 한국보다 우위이며 이것은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30 정부, 국민해외여행 확대 위한 새 여권법 시행규칙 공포</p> <p>31 국가안전기획부, 전남 진도에서 암약중인 고정간첩 7명 검거</p>		
8	<p>3 해양경찰대, 최신예 고속 경비함 진수식(마산)</p> <p>4 • 북한 확산기 도발 1주년 국방부 반박성명 • 정부, 새 여권법령 시행</p> <p>6 국방부, 수도경비사령관 박세직 육군 소장을 월권행위로 보직해임과 동시 예편시켰다고 발표</p> <p>12 북한 미그-21기 2대 백령도 상공침범</p> <p>13 정부, 정부기구 대폭 축소개편 방침 발표</p> <p>24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병설통제 및 제설작업 협정 서명</p>	<p>4 하페즈 방글라데시 국회의장 일행 평양 방문</p> <p>6 북한, 조국전선중앙위 소집, 全斗煥 대통령의 6.5제의를 비난</p> <p>26 북한, 미군정찰기 SR-71기에 미사일 공격</p>	<p>25 솔라즈 美하원의원, 한반도내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 철수반대의사표시</p>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8 외무부,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동방 500m 까지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p> <p>31 • 제3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에 박노영 육군 대장 취임 • 북한 민간인 배병관씨 임진강으로 귀순</p>		<p>27 美국방부, 북한은 25일 한국 영공에서 임무수행중 인 美정찰기에 미사일 공격했으나 실패했다고 발표</p> <p>30 짐바브웨 언론, 북한은 짐바브웨에 100여명의 군사고문단 파견 및 1,650만 달러 제공했다고 보도</p>
9	<p>1 정전위 유엔군측 대표, 북한의 美정찰기 미사일 공격 및 백령도 영공침범에 항의</p> <p>8 을지포커스랜즈 '81연습 (~26일)</p> <p>10 • 동부전선 아군 GP에 북한군 기관총 사격 • 한·일 정기각료회의 개막</p> <p>11 국방부, 북한군이 10일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아군 초소에 총격을 가해왔다고 발표</p>	<p>9 9·9절 경축연회 김일성 참석하에 금수산 의사당에서 열림(공산정권 창립)</p>	<p>9 레이건·베긴 수상 정상회담 개최(~11일, 워싱턴)</p> <p>11 이스라엘 베긴 수상(訪美中) 미국에 基地제공 제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4 을지 연습 '81실시(~19일)</p> <p>15 '81 쌍용훈련(~20일)</p> <p>23 경제기획원, 우리나라 외채가 1981년 6월말 현재 244억2천7백만달러라고 발표</p> <p>30 • 국방정보본부령 공포 (대통령령 제1047호) • IOC 총회,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 결정</p>	<p>23 홍콩紙, 중공은 백두산에 인공위성관측소를 설치했다고 보도</p> <p>27 제185차 북송교포 38명 청진항 도착</p> <p>28 金日成, 방북중인 알제리 군사대표단 접견</p>	<p>14 미국, 주한미공군에 F-16기 8대 배치</p> <p>15 제36차 UN 정기총회 개막</p> <p>24 국제전략문제연구소(영국) 남북한 군사력불균형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p> <p>25 美국무부, 1억1,000만달러 규모의 항공기 부품을 대한 판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p> <p>29 와인버거 美국방장관, 소련이 북한조종사를 분쟁지역에 파견, 대리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p>
10	<p>2 盧信永 외무부장관, 발트 하임 유엔사무총장과의 회담(유엔본부)에서 남북한의 유엔가입 및 남북대화 재개 협조 요청</p>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4 방위산업물자 전시회 개최(방산진흥회 주최)</p> <p>6 솔라즈 美하원 아·태위원장,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한반도 안보가 일본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다짐</p> <p>7 周永福 국방부장관, 국회에서 북한의 남침 땅굴이 적어도 12개 있다고 밝힘</p> <p>10 • 시마가 자메이카 수상 내한(~13일) • 제62회 全國體戰 개막(~15일, 서울)</p> <p>12 카라소 코스타리카 대통령 내한(~14일)</p> <p>13 한국·쿠웨이트와 항공협정 체결</p> <p>15 해군사관학교 제36기 순항훈련분대 출항</p>	<p>5 동독정부 대표단(단장 H. 나이펠트 부총리) 경제 및 科·技術協議委員會 회의 참가 평양 도착</p> <p>6 김일성, 訪北中인 시리아 軍 대표단 접견</p> <p>10 고려연방(안) 제시 1주년 관련, 평양시 보고대회(평양 대극장)</p> <p>11 김일성, 訪北中인 아라파트 PLO의장에 조선영웅칭호 및 금별메달·국기훈장 수여</p>	<p>5 美국무부, 한·미외상회담(워싱턴)에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p> <p>10 서독, 核미사일 반대시위(본에서 약 25만명 가두시위)</p> <p>12 • 미국, 이집트와 수단에 군사원조 약속 • 소련, 미국에 대해 이집트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p> <p>15 레이건 美대통령, 외교정책 대원칙 천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6 올림픽 고속도로 기공식 거행</p> <p>17 ·大宇 玉浦造船所 준공 (연생산 120만톤) ·韓·오만 항공협정 가조 인</p> <p>22 보건사회부, 1962~81년 9월까지 해외이민인구 71개 국 44만 4,210명 집계 발표</p> <p>26 韓·美 商工長官會談(~ 27일, 서울), 한국산 TV 등 수입규제 철폐키로 함</p> <p>27 서울 한강 원효대교 준 공</p> <p>29 한·니제르 외상회담 (~30일)</p> <p>30 중립국감시위원단에 배 속된 체코슬로바키아군 사 병 1명이 판문점에서 망명</p> <p>31 연천 서북방 15km 지점 에서 북한군이 520여발의 기관총 사격을 가해옴</p>	<p>16 조세 A. 산토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문차 평양 도착</p> <p>19 북한·앙골라간 경제·과 학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p> <p>26 불가리아 무역대표단 평 양 도착</p> <p>27 金日成 著作選集 14, 15 권 출판(노동당출판사)</p>	<p>24 레이건 美대통령, 소련이 서구 겨냥한 미사일을 철수 않는 한 미국의 핵무기 유 럽배치계획 포기 않겠다고 밝힘</p>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 육군, 헌병휘장 개정</p> <p>2 •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530호)            • 국립묘지관리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531호)            • 국군홍보관리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532호)            • 제2차 한·미 정책협의회 개막(~3일, 서울)</p> <p>3 외무부, 북한은 자이레 등 11개국에 총 1,540명 군사요원을 파견했다고 발표</p> <p>6 • 안기부, 학원침투 암약한 재미·일동포 간첩 3개파 9명 검거 발표            • 經企院, 80년 人口 및 주택센서스('80년 11월 1일 기준)에서 총가구수 796만 8,000, 총주택수 546만 3,000채로 집계</p> <p>8 프렘 태국수상 내한(~10일)</p> <p>10 공군본부, 한국 수원기지 MPN-14 레이더 운용 서명</p>	<p>2 金日成綜合大 창립 35주년기념보고회(인민문화궁전)</p> <p>4 평양방송, 북한의 영공을 통과할 동경~북경간 직통항로 개설 위해 유엔 민간항공기구와 합의했다고 밝힘</p> <p>9 조·소간 '82년도 어업부문 협조의정서 조인(모스크바)</p>	<p>7 소련, 불세비키혁명 64주년기념 대규모 군사행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11 보안사령부, 학원침투 압약한 재일동포 2세 등 고정간첩 2명 검거발표		11 일본 외무성, 非核3原則에 따라 어떤 형태의 핵이든 일본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힘
	15 • 레인지 104알파협조 절차 서명 • 마이어 美육군참모총장 내한, 16일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양국간의 군사현안 논의	15 소련 두브나核研究所 대표단, 북한원자력위원회 초청으로 평양 도착	
	17 공군본부, 비무장지대 항공표지판 설치. 한·미간 합의각서(수정 1호 포함) 서명		17 짐바브웨, 북한은 최근 짐바브웨에 탱크 등 전투장비를 공급했다고 밝힘
	18 한국형 경비함 동해함 진수식	18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반한 인사의 북한 방문 비호성명 발표	20 남아공紙, 북한은 모잠비크와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
	24 먼데일 전 美부통령 내한(~25일), 全斗煥 대통령, 盧信永 외무부장관 등과 회담에서 한국과 중공의 공식관계 설정을 희망한다고 밝힘		
	26 리비아, 서울에 常駐대사관 개설		26 모스크바방송, 5년후 한국 핵무기 자체생산 가능 보도
	27 국방부, 한·미군예산 발족위원회 회의록 합의서명		

1981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8 국방목표를 국방부 정책 회의에서 의결</p> <p>30 공군본부, 美공군과 한국 공군간 양해각서(미 책임사항) 서명</p>	<p>29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白學林) 잠비아 방문</p>	<p>30 東·西獨 군축협상 개최 (제네바)</p>
12	<p>10 북한군 금화북방 4km 아군초소를 향해 자동소총 300여발 사격 도발</p> <p>14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전술통신장비 한국기지 전개 양해각서 서명</p> <p>16 정부, 제24대 육군참모총장에 黃永時 육군 대장을 임명</p> <p>17 全斗煥 대통령, 한·미 연합사 방문, 북한도발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취하도록 당부</p> <p>18 '81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1 A. 밀튼 오보네 우간다 대통령, 김일성 초청으로 정 부대표단 이끌고 방북</p>	<p>1 美·蘇 군축회담 개막(~4일, 제네바)</p> <p>14 이스라엘, '67년 中東戰에서 탈취한 골란고원(시리아領) 전격 합병</p> <p>15 미국정부, 對폴란드 원조 전면중단 결정</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2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소집. 북한도발 행위 등 논의</p> <p>24 • 공군본부, 우발사태 발생시에 대한항공기 이용. 전시 대한항공사 동원지원 한·미간 합의각서 서명 • 존슨 美합참의장, 주영 북 국방부장관 방문</p>	<p>22 김일성, 조자양과 회담</p>	<p>22 위컴 한·미 연합사령관, 북한은 10만명 규모의 세계 최대의 특공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명</p> <p>24 美 언론, 북한은 니카라과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했다고 보도</p> <p>31 가나에 군사쿠데타, 리만 대통령 실각</p>

#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병무청, 장병 적령 조정 (20세에서 19세로) • 대간첩대책본부장을 합참본부장에서 합참의장으로 변경</p> <p>3 문교부, 중고교생의 교복과 머리형을 자율화</p> <p>5 해방이후 36년간 실시해 온 야간 통행금지 해제(접적·취약지역 제외)</p> <p>7 북한주민 김용준씨 중부 전선으로 귀순</p> <p>12 예비군 수송협회 창립</p> <p>20 •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10706호) •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대구기지에서 미공군기 운영 양해각서 서명</p>	<p>1 朝總聯, 한국 민정당의 2천년대 통일론 비난 담화</p> <p>6 노동신문, 논설 통해 폴란드사태와 관련해 계엄령선포 옹호·미국의 파괴음해책동을 비난하는 등 최초의 공식태도 표명</p> <p>8 외교부, 한국군 전력증강계획과 관련, 비난성명 발표</p>	<p>3 일본 외무성, 한·일본경제협력문제타개 위해 양국고위실무자 회담 제의</p> <p>7 佛政府, 니카라과 좌익정권과 무기공급협정 체결</p> <p>11 美국무부, 대중공관계 악화우려 대만에 F-16, F-5G機 제공 거부</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1 대간첩대책중앙회의 개최(중앙청)</p> <p>22 金斗煥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남북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 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고 북한에 제의, 26일 북한은 이를 거부</p> <p>25 귀순용사 김용준, 북한은 주민성분을 10계층으로 분류 불량으로 지목된 주민들을 집단 강제이주시키고 있다고 폭로</p>	<p>22 당대표단(당비서 金永南) 태국·방글라데시 방문</p> <p>25 말타대표단(外相 트리보나) 공식방문차 평양 도착</p>	<p>23 유엔군측, 북한에 남북한 군사훈련 상호 참관제의</p>
2	<p>1 통일원, 남북한 20개 시범 사업을 북한에 제의</p> <p>2 국방부, 장교 양성제도 개선 발표. 단기사관후보생제도 학사 12주, 3사관후보생(전문대) 24주</p> <p>5 • 해군본부, 한·미 해군연합 군수협조위원회 양해각서 서명 • 공군수송기 C-123 제주도에서 추락, 특전부대 장병 53명 전원 순직</p>	<p>2 폴란드 무역대표단 방북</p>	<p>1 레이건 美대통령, 친서보내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방안 지지</p> <p>2 美언론, 한국의 신뢰도는 세계 39위 북한은 103위라고 보도</p> <p>9 美합동참모본부, 소련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의 공격적 군사력 증강에 대처, 주한미군 강화를 의회에 건의</p>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1 周永福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p> <p>12 안기부, 경기도 미법도에 서 20년간 암약한 일가족 간첩 3명 구속 발표</p> <p>13 • T/S '82훈련실시(~4월 26일) • 정부, 육군 일반병 지원 제 실시키로 함</p> <p>14 북한 외항선장 강덕훈, 싱가포르에서 제3국 통해 귀순</p> <p>22 해군본부, 한·미 해군간 유조함 링컨 대역 합의각서 서명</p> <p>23 위컴 주한 미군사령관, 한반도 긴급사태시 탄약·전쟁물자를 신속공급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한·미각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힘</p> <p>24 내무부, 민방위교육훈련 46세 이상 면제</p>	<p>10 북한, 한국이 제의한 20개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성명발표</p> <p>15 김정일 40회생일 조선영웅칭호 및 금별메달·국기훈장 1급 수여받음</p> <p>22 許談(부총리겸 외교부장) 金日成 특사로 알제리, 오트볼타, 쿠바, 헝가리, 유고 방문(~3월 18일)</p>	<p>12 소련, 베트남에 해군기지 건설 위해 군전문가, 기술자 파견</p> <p>16 美 국방부, 한국에 개량형 호크미사일 170기와 723기의 로켓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p> <p>23 EC 외상회담, 소련상품 수입제한 합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6 재향군인회 제23차 전국 정기총회  28 정부, 보스턴 등 6개 영사관 폐쇄	28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선거(615명, 김정일 최초로 대의원에 피선)	28 레이건·趙紫陽, 上海聲明 記念 친서교환하고, 美·中 共관계 확대다짐
3	2 학군사관 제20기 임관식  9 스톱스 정전위 유엔대표, 북한은 DMZ에 12개 이상의 땅굴을 파고 있다고 밝힘  12 육군, 군마 28필을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기증(농고 실습용)  16 정부, 중앙청 민족박물관 이용계획 확정발표  19 서울올림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金相浹 전고대총장 선임  20 귀빈전용 벨-412헬기 2대 도입	4 북한·중국간, '82년도 상품 교류의정서 조인(평양)  13 김일성, 시아누크와 면담  16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최흥희, 최중화 부자에 의한 전두환 대통령 위해 음모사건과 관련 북한의 배후조종 사실을 부인하는 성명 발표	3 美정부, 공중근접지원기 A10기 6대를 한국배치  8 NATO 합동기동훈련  10 美국방부, '81년말 현재 주한미군병력은 39,319명 이라고 밝힘  15 소련, 유럽에 SS20, 300 基 배치  16 위컴 주한 미군사령관, 미하원 군사위에서 북한은 세계최대의 기습부대를 창설하고 있다고 증언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2 공군본부, 한·미간 수원 기지 공동사용 양해각서 서명</p> <p>26 국무회의, 병역법시행령을 개정 의가사병역 혜택 확대</p> <p>30 제14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가 서울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캐스퍼 와인버거 미국방장관간에 개최(~31일)</p>	<p>24 당역사연구소,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최신판을 출판</p> <p>29 李鍾玉(총리),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장 면담(평양)</p>	<p>22 스위스政府, 유엔가입결정</p> <p>23 • 美 有人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3차비행(~31일) • 과테말라에 쿠데타</p> <p>30 미국정부, 중공과의 협상 위해 대만에 무기판매 보류</p>
4	<p>1 •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군무원으로 임용 • 공군본부, 한·미간 오산 공군기지 합동보안 및 법률 집행 협정서 서명</p> <p>6 육군사관학교 제38기 졸업식</p> <p>7 공군사관학교 제30기 졸업식</p> <p>9 해군사관학교 제36기 졸업식</p>	<p>3 노동당중앙위 제6기 5차 전원회의 개최</p> <p>5 북한방송, 최고인민회의에서 요직 대부분 유임보도</p> <p>6 김일성 생일축하 중공대표단(단장 장광하) 평양 도착</p>	<p>4 영국, 對아르헨티나전쟁 不辭宣言</p> <p>7 영국, 포클랜드주변 200해리 전쟁해역 선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12 북한은 사상범 10,500명을 8개지역에 집단수용하고 있다고 월남귀순용사 등이 폭로	12 김일성, PLO대표단, 폴리스리오 해방전선 대표 면담 (평양)	
	13 안기부, 서울·안동서 25년간 암약해 온 안승윤 일당 등 3개 간첩망 18명 검거 발표	13 해주~사리원간 전기철도 개통식	
	21 화천북방 26km 적GP서 아군측에 박격포로 도발 (쌍방초소간 270분 총격전)	24 인민군 창건 50주년 중앙경축보고회(2·8문화회관에서)	21 이스라엘, 9개월만에 휴전 깨고 레바논 남부 팔레스타인 기지 맹폭 단행
	25 조지 부시 美부통령 내한(~27일), 임시국회에서 연설		
	26 경남 창녕경찰서 宮柳지에서 禹範坤 순경,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에게 총기난사, 사망 56명, 부상 35명		29 美국방부, '70년대 세계군사비에서 북한은 GNP의 14%(139억달러), 한국은 5%(174억달러)로 발표
5	1 전우신문 발송제도 개선 (조간신문사 연합발송체제 이용)		2 영국 핵잠수함, 아르헨티나 순양함 제네랄 벨그라노호 격침. 5백여명 사망·실종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4 어음사기 李哲熙·張玲子 부부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p> <p>7 제112회 임시국회 개회 (~11일)</p> <p>8 정부, 경로헌장 선포</p> <p>9 • 국방부, 한·미 수송동원 지원협정 시행지침 합의 • 라이베리아공화국 국가원수 새뮤얼 K.도 국민구제위원회 의장 내한</p> <p>15 거진해안으로 무장공비 2명 침투, 1명 사살, 2명 도주</p> <p>17 철원북방 14km 지점에서 북한군 아군 순찰대에 기총사격</p> <p>21 정부, 대폭개각 발표, 국방부장관 등 11개 장관을 경질</p>	<p>3 김일성, 방북중인 멕시코 국회 대표단 및 미 친북해 외교포 최덕신 등과 면담</p> <p>9 카보베르데 공화국 대통령 북한 방문(~13일)</p> <p>18 인민군 친선참관단(단장 인민무력부부장 박규국) 중공 방문차 북경 도착</p>	<p>14 美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에 로버트 W. 세네월드 대장 임명</p> <p>20 미·소, 유럽核군축협상 재개(제네바) • 영국, 포클랜드 공격명령</p> <p>21 영국군 1천명, 東포클랜드 산카를로스 기습상륙작전, 교두보 확보</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24 • 제23대 尹誠敏 국방장관 취임</p> <p>• 제18대 합참의장에 金潤鎬 육군 대장 취임</p> <p>29 육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833호)</p>	<p>26 조국전선 韓·美修交 100주년즈음 성토문 발표</p>	<p>24 소련공산당, KGB 의장 유리 안드로포프를 黨書記에 임명</p> <p>25 교황, 사상최초 영국 방문 발표(5월 28일~6월 3일)</p> <p>30 스페인 NATO 가입(16번째 회원국)</p>
6	<p>1 성남시 서쪽 상공에서 공군수송기 C-123 추락으로 장병 53명 전원 순직</p> <p>4 • 제3대 한·미 연합사령관 취임(로버트 W. 세네월드 대장)</p> <p>• 부하장병을 위해 폭발하는 수류탄을 던쳐 장렬히 산화한 고 강재구 소령의 살신성인비 제막(홍천 북방 강재구공원)</p> <p>5 • 제16대 공군참모총장에 金相台 공군 대장 취임</p> <p>• 육군교육사, 광주에서 충남 유성지역으로 이동</p>	<p>3 普天堡戰鬪勝利 45돌기념 보고회(普天堡)</p> <p>5 前캄보디아 주석, 시아누크 訪北(~20일)</p>	<p>2 미국의 방위 우선순위가 한국 등 태평양권은 북미, 나토, 페르시아만에 이어 3순위라 보도(워싱턴포스트지)</p> <p>5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p>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7 · 거진 서북방 9km 지점에 서 북한군이 아군초소를 향해 무차별 사격 · 자이르공화국 모부투 대통령 방한(~10일)</p> <p>10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구전기선로 합동사용 양해각서 서명</p> <p>11 국방부, 주한 미군간 코드 합동점유 합의서명</p> <p>24 정부, 총리에 金相浹(고대총장)을 임명</p> <p>25 · 국방부, 동맹국 전쟁에 비물자(WRSA) 이양에 관한 미합의각서 체결 · 한국형 전차에 관한 협정서(국방부, 한·미회의 3자간) 체결</p> <p>28 육군본부, 美제8비행단과 토지건물 및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서명</p> <p>29 한국중공업 창원종합기제공장 준공</p>	<p>8 외교부 대변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관련 비난성명 발표</p> <p>25 6·25 제32주년기념 평양시 군중대회</p> <p>30 북한 중앙통신, 팔·아랍국에 파병용의 밝힘</p>	<p>7 비동맹국외상회의(아바나, 북한의 주한외국군 철수 및 UN군사령부 해체제의 거부)</p> <p>8 이스라엘군, 베이루트 이남 全海岸 장악</p> <p>24 이스라엘, 베이루트포위망 압축</p> <p>25 프랑스 우주인 동승, 소련 소유즈 T6 발사 성공</p> <p>28 美 有人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4차 비행(7월 5일 귀환)</p> <p>30 통일일보(일본), 북한군 장성 등 중공 동북부 한인 자치구로 망명했다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김진모 등 3명 구속발표</p> <p>10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항공기 이륙최저치 적용(6개부대) 서명</p> <p>19 한·자메이카,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킹스턴)</p> <p>21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합동제반통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p> <p>27 국방부, 수도권방어 대비 정규훈련</p> <p>31 · 공군작전사령부 신축청사 준공 · 金斗煥 대통령, 鎭海기자회견에서 태평양 정상연례회담 실현을 위한 5개항원칙 제시</p>	<p>3 PLO 의장 아라파트, 김일성의 派兵用意 표명에 대한 감사 전문</p> <p>10 김일성, 잠비아 육군사령관 마시케 면담</p>	<p>1 중공군 사상 처음으로 戰術核兵器使用 가상한 기동훈련실시</p> <p>8 소련, 시리아에 탱크, 지대공미사일 등 무기공급</p> <p>13 이란·이라크領 침공으로 양국간 전면전 확대</p> <p>16 美 맨해튼 연방지법, 통일교 문선명 목사에게 탈세 혐의로 18개월 징역형선고</p> <p>18 뉴스위크紙, 북한은 김정일 세습 반대한 軍장성 12명을 숙청했다고 보도</p>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3 외무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요구 비망록, 주한일 대사 통해 일본정부에 전달</p> <p>7 국립묘지관리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884호)</p> <p>15 全斗煥 대통령,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동포에게 개방선언(8·15경축사에서)</p> <p>16 全斗煥 대통령, 아프리카 4國 및 캐나다 순방등정(~31일)</p> <p>19 국방부, 북한주민 이현주(20세) 서부전선을 넘어 귀순 발표</p> <p>21 '82훈련 을지포커스퀀즈 실시(~27일)</p>	<p>3 조선학생위원회, 일본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규탄담화발표</p> <p>14 在北平和統一促進協, 조국해방 37주년 즈음, 美·日 罪行을 고백하는 백서 발표</p> <p>17 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쟁희상기 붉은햇발 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全5권 출간</p>	<p>2 美 국방부, 특별보고서에서 한국과 북한은 일부무기류를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힘</p> <p>5 日 文部省, 참의원에서 교과서 왜곡수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힘</p> <p>6 日 本 松野 國土廳長官 안중근의사에 관한 망언</p> <p>17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지명했다고 홍콩지가 보도</p> <p>25 중공, 한국과의 交易금지령. 吉林省에 있는 광개토태왕비를 처음으로 내년 1월중에 외국인 공개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28 DMZ에서 주한미군 조세프 화이트 일병 실종, 9월 20일 유엔군사 자진월북 발표		
9	9 국산전투기 F-5F(초음속제트기) 출고, 공군에 이양(타이거 II의 시험비행 성공)	6 북한·소련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지정서 조인 (평양)	
	10 안기부, 서울과 충북을 거점으로 암약해온 간첩단 29명 검거발표		12 중공, 제1차 당중앙위원 전체회의에서 胡耀邦을 당 총서기로 임명
	15 세네월드 주한 유엔군사령관, 한·미협회 연설에서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가능성에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	15 김일성, 중국 공식방문차 평양 출발(~26일)	
		16 김일성, 중공 방문차 북경도착후 조권욱, 등소평 등과 면담	17 西베이루트내 팔레스타인 난민 1,800명 학살
		18 김일성, 중공 방문 중 등소평과 지방시찰(사천성 성도시)	18 日 産經신문, 중공은 북한에 최신 A5전투기 20대 이상 제공했다고 보도
	27 외무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주일공사 통해 39개항 시정자료 전달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8 • 정부, 한강종합개발 기 공식 거행 • 슬츠 美국무장관, 이범석 외무부장관과 회담(뉴욕) 대 한방위공약 재확인</p> <p>29 7월 3일 북한경비정에 납북된 제5마산호와 선원 35명 전원 속초항에 귀환</p> <p>30 국방부 확대정책회의에서 1985~89년 중기국방기본정 책 결정</p>		<p>30 • 영국전략문제연구소, 세계 군사력 비교 보고서에 서 북한병력은 78만 4천 명으로 발표 • 東·西베이루트 통합선언</p>
10	<p>2 한·일 외무부장관, 유엔본 부에서 회담 갖고 일본 역 사교과서 왜곡문제 및 경제 협력 협의</p> <p>5 육군본부, 미군에게 한국 육군 수의단 장교에 대한 교육의뢰 합의</p> <p>8 해군사관학교 제37기 순 항훈련분대 출항</p> <p>10 외무부, 레마는 정부로부터 평화유지군 파병요청을 공식 으로 받았다고 밝힘(12월 2일 정부는 이 요청을 거절)</p>	<p>5 軍 各급군사학교 교원대 회 개최</p> <p>9 북한·중공간 청진항 대어 협정 체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6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한(~19일),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 전대통령 태평양정상회담 제의에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중공군 오염근 미그-19기로 귀순, 31일 본인의사에 따라 자유중국으로 인도</li> </ul> <p>19 한·인도 합작 LNG공장 건설 합의</p> <p>20 국방부, 한·미 공군간 항공관제 등 긴급정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p> <p>22 (주)대우, 한국전 당시 노획한 김일성 승용차 미국에서 7만 5,000달러에 매입</p> <p>25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기지출입통제소 검색절차 합의각서 서명</p>	<p>18 慈江道 狼林郡 상신원~하신원간 열차개통</p> <p>19 釜馬事態 3주년 관련 평양시 보고회 개최</p> <p>23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북한 방문</p> <p>29 평양, 카다피 리비아원수 북한 방문(~11월 2일)</p>	<p>16 슐츠 미국무장관, 이스라엘이 유엔기구에서 축출되면 미국 對유엔 지원중단 경고</p> <p>22 홍콩 주간지, 미국과 북한은 1970년부터 1981년 사이에 31만달러 규모의 직접무역이 있었다고 보도</p> <p>24 日 朝日신문, 소련의 대한관계개선 움직임 보임</p> <p>27 중공, 총인구 10억 817만 5,288명이라고 발표</p>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 • 육군본부, 야간훈련의 날 제정 • 육군체육지도대 창설</p> <p>5 尹誠敏 국방부장관, 북한은 GNP의 24%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p> <p>10 레바논 정부로부터 평화유지군 파병요청을 공식으로 받았다고 외무부가 밝힘, 12월 2일 정부, 이 요청을 거절</p> <p>12 안기부, 모국방문을 가장한 채일동포 등 간첩 13명 검거 발표</p> <p>17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p> <p>18 한국형 해군경비함 첫 진수</p>	<p>1 김일성, 방북중인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과 단독회담 및 상호간 훈장교환</p> <p>3 평양, 북한은 리비아와 친선 및 협력에 관한 동맹조약 체결했다고 발표</p> <p>11 김일성, 방북중인 짐바브웨 군사대표단과 면담</p> <p>12 • 김일성,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 사망(11월 10일) 조전 • 김일성, 신임 안드로포프 서기장에게 취임축전 • 軍 砲兵대회 개최</p> <p>15 오극렬 참모총장, 방북중인 우간다 민족해방군 총참모장 D. 오조크 주재 고별연회 참석</p>	<p>2 • 스위스紙, 소련인의 잇단 서울방문은 한·소간 해빙조짐이라고 보도 • 中共방송, 중공거주 한국인은 176만 870명이라고 밝힘</p> <p>7 레바논 정부, 한국·영국·네덜란드 및 스웨덴 등 4개국 파병요청</p> <p>17 도널리 주일미군사령관, 한반도 유사시 한·일은 美와 공동으로 對蘇 방위필요성 강조(일본언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19 육군본부 한·미간 카투사 요원을 위한 P·X운영에 관한 협정 서명	20 북한·일본간 청진항 사 용합의	21 일본언론, 日·中共무역중 계지로 1983년부터 淸津港 을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
	23 한·미 연합사 공중화력 훈련실시		
	29 국방부, 한·미간 한국형 전차에 관한 양해각서(부록 1, 특수장갑사용) 체결	29 불가리아정부대표단 방 북	
12	1 육군본부, 한·미간 한국육 군 의정장교 실무교육 양해 각서 체결	3 · 김일성,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과 회견 · 미·日·한국 3角軍事동맹 비난 · 미국 당국에 평화협정체 결제의 수락 촉구	9 미국방부, 하원증언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미국의 안 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 밝힘
	10 경제기획원, 1982년 10월 1일 현재 서울시 상주 인구 891만 481명, 가구수 200만 6,678가구로 집계		
	17 '82년도 국방대학원 졸업 식 거행		
	21 韓·터키 정상회담, 통상 증진 및 경제협력확대 합의 (~23일)	19 북한, 라틴아메리카 친선 협의 연차 총회 개최	19 美 NYT紙, 북한은 1982 년 이란에 8억달러 규모의 군수품을 공급했다고 보도

1982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8 제14대 해군참모총장에 吳慶煥 해군 대장 취임</p> <p>30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군 산 공군기지내 토지 등 공 동사용에 관한 협정서 체결</p> <p>31 세네월드 유엔군사령관, 한·미 연합사의 육·해·공군 의 현대화 계획을 적극 추 진하겠다고 언명</p>	<p>23 북한·태국간 친선협회 결 성</p> <p>28 조총련 제103차 조국방 문단 평양 도착</p>	<p>23 아베 일본외상, 한국의 안정이 일본 및 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부언</p> <p>28 홍콩紙, 북한은 10년동안 정규군 80만명 수준증강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p>

#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공직자 윤리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구 0시 현재 3천 964만명 남자, 36만 6천 400명 더 많음</li> <li>• 육군, 급여 중앙지급제도 시행</li> <li>• 병무청 징집연령 하향조정(21세→20세)</li> <li>• 육군3사관학교 고교졸업자선발 2년제 과정 폐지</li> <li>• 육군 병과장 휘장폐용 시행</li> </ul> <p>9 朴順天 여사 별세</p> <p>11 나카소네 일본수상 내한, 한·일 정상회담(1차)에서 안보긴밀협조에 의견일치 (~2일 공동성명 발표)</p> <p>18 全斗煥 대통령 국정연설,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논의할 4개 당면과제 제시</p> <p>19 메이어 美육군참모총장 방한(~23일), 북한 남침할 경우 미군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언명</p>	<p>4 북한·몽고간 '83년도 상품 상호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평양)</p> <p>8 김일성, 중공군 부총참모장 楊勇 사망 관련해 호요방·등소평에게 弔書</p> <p>18 북한·헝가리간 상품유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서 조인</p>	<p>1 일본, 미국에 군사기술판매, 무기금수정책 15년만에 파기</p> <p>5 동경~상해직선민항로 개설, 한국비행, 정보구역통과에 한·일·중공 합의</p> <p>7 서독대통령, 의회해산, 3월 총선 실시키로 함</p> <p>19 美국방위비밀문서, 소련이 페르시아만 침공시 미국은 북한·소련해안을 공격한다고 지적</p>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5 한·미 행정협정 개정추진. 미군소포, 이사집 100% 조사할 수 있게 협의</p> <p>31 북한 IL-28 폭격기 1대 백령도 영공 침범</p>	<p>27 북한, 김정일 생일 준비 위해 일본에 방탄특수차 99대 주문</p>	<p>21 제3대 CFA사령관 취임 (루이스 C. 메네트리 중장)</p> <p>24 · 소련위성 동체 인도양에 추락 · 일본방위청국장, 유사시 대한해협봉쇄 표명</p> <p>28 외신보도, 북한 김정일 호화 자동차 99대 日本에 특별주문 발표</p>
2	<p>1 · 육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042호) · 해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043호) · 공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044호) · 육군, 일반참모회장 확대 패용 시행 · 국방부, 북한공군기 1대가 2월 31일 밤 8시 25분경 백령도 상공을 침공했다고 발표 · '83팀스피리트 훈련실시 (~4월 8일)</p> <p>3 尹誠敏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p>	<p>1 북한, 준전시상태 돌입(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구실로)</p> <p>3 외교부 대변인, 팀스피리트 '83 규탄성명 발표</p>	<p>1 美·蘇, 전략무기감축회담 재개(제네바)</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7 金斗煥 대통령, 한국방위 산업 적극지원 등 솔츠 美 국무장관 예방받고 요담</p> <p>10 李鍾贊 전 육참총장 별세(67세) 육군장(14일)</p> <p>14 한·미 야사 근무장병 부대표지 부착</p> <p>22 국방부, 정책회의 한국형 전차사업 협정서 수정결정</p> <p>25 •북한 미그-19기 귀순, 이웅평 대위 해주상공 남하 중 아군기가 유도착륙(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동시 입체전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힘) • 재향군인회 제24차 정기 전국총회</p>	<p>4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주 소대사 N.M. 시바니코프와 요담</p> <p>16 조총련, 日本 전지역에서 주한미군 철수요구 서명운동 실시(~4월 30일)</p> <p>21 인민무력부, 2·8문화회관에서 소련군대 창건 65주년관련 기념사진전시회 개최</p>	<p>5 일본, 한국의 요청받고 남 북한 유엔동시가입 추진</p> <p>23 소련, 극동에 전력증강, SS-20을 배치, 한·중공의 핵무기 목표한 것이라고 그로미코 외상이 언급</p>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6 국방부 군무회의, 육군정 보병과 창설계획 결정	26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주 시리아 대사 하니 하비브와 면담	
3	1 학군사관 제21기 임관식  2 千寬宇 민족통일협회의 회 장, 남북한 당국 및 정당, 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수 락 촉구  4 귀순한 李雄平 대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전쟁준비 상황 폭로  14 니메이리 수단 대통령, 全大統領 초청으로 내한 (~17일)  15 • 정부, 유엔해양법 협약 에 서명 • 한·수단 정상회담  18 정부, 레바논 전후복구에 기술자 150명 파견	1 조총련, 東京 시마공원서 주한미군 철수요구 중앙대 회 개최  5 김일성, 에티오피아 경제 대표단과 면담  15 콩고대통령 응케소, 주한 미군철수 및 고려연방안 실 현주장 등 공동성명 발표	1 제7차 비동맹회의 개최  3 한·일 주요해협에 美 미사 일 배치 검토  5 미국, 북한 유엔대표 한시 해에게 재입국 비자발급  9 • 蘇, 한국적화통일전략 추 진, 유사시 중공장악, 日 고 립화라고 와인버거 보고서 경고 • 소·중공, 북한남침 견제 어려워 한국군 개선만이 역 지력 유지라고 美 국방부 차 관보가 밝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9 내무부, 민방위훈련을 예고제로 실시키로 함. 예고 없는 사이렌은 적공습</p> <p>22 말레이시아 국왕 내한</p> <p>24 한국은행, 1982년도중 GNP 5.4% 성장 발표</p> <p>28 육군사관학교 제39기 졸업식</p> <p>31 공군사관학교 제31기 졸업식</p>	<p>21 북한·니카라과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조인</p> <p>31 북한·동독간 과학협조사 업계 획서(1983~84년도) 조인</p>	<p>23 • 레이건 美대통령, 전략 방위구상(SDI) 발표 • 美, 미사일 킬러 핵무기 개발, 대량보복에서 요격체제로 전환 • 美 하원군사위, 대한군사차관 전액 통과</p> <p>27 소련, 亞·太地域司令部 시베리아 동부에 신설</p>
4	<p>1 • 학생군사교육통제 2군관 할에서 교육사로 변경 • 부대훈련주기 설정시행 (4. 1부터 1984. 3. 31까지)</p> <p>2 • 해군사관학교 제37기 졸업식 • 한국형 잠수정 진수</p>	<p>2 외교부, 최근 니카라과 내란 관련해 산디니스타 지지하는 성명 발표</p>	<p>5 美 챌린저호 목표궤도 진입 실패</p>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4 제15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가 워싱턴에서 尹 誠敏 국방부장관과 와인버 거 美 국방장관간에 개최 (~15일)</p> <p>20 육군참모총장 표지기 제 정시행</p> <p>22 尹 誠敏 국방부장관, 북한 이 한·미 군복 대량수입했 다고 국회국방위에서 답변</p> <p>30 육군본부, 한·미간 북한 지상군 전투서열회의 행정 절차 합의 서명</p>	<p>6 북한항공기, 평양~모스크 바간 정기노선 취항</p> <p>10 그레나다 수상, 모리스 비숍 방북</p> <p>16 김일성, 방북중인 스웨덴 공산당 위원장 R·웨르네니 와 접견</p> <p>24 ·알베르 르네 세이셀대 통령 방북(~5월 3일) ·북한군 창건 51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보고 오극렬)</p> <p>29 중공군 6·25참전 내용의 전쟁영화인 비류강의 새전 설 제작완료</p>	<p>6 미·일에 핵무기 배치했다 고 타스통신 주장</p> <p>10 소련간첩 일본에서 100 여명이 활약하고 있다고 일 본 경제신문이 보도</p> <p>20 蘇, 소유즈 8호 우주선 발사</p> <p>25 국제회의연맹(IPU) 이사 회 개막(헬싱키)</p> <p>2 한국에 중성자탄 배치 검 토라고 美 책 앤더슨 칼럼 니스트 주장</p>
5	<p>5 중공 민항기 1대 춘천기 지에 불시착</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7 • 북한군 신중철 대위 귀순(양구북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공 민항총국장 沈圖(심도) 중공측 공식대표단장으로 내한</li> </ul> <p>13 한강 순시선(안전지도, 홍수 재난 방지) 진수</p> <p>14 해군, 한국형 경비함 진수</p> <p>18 피랍 중공기 본국으로 이륙(김포)</p> <p>21 스톨츠 UN군측 대표, 정전위에서 비무장지대안 쌍방군사시설을 철수하자고 제의</p>	<p>8 통혁당 대변인, 미국의 중성자탄 한국배치계획과 관련해 비난하는 담화 발표</p> <p>16 팀스피리트 '83한·미합동 훈련과 관련해 2월 1일부 발령되었던 준전시태세 돌입 명령 해제</p>	<p>17 • 미국·이스라엘·레바논 3國, 레바논 철군협정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련 의학자, 核全面戰이 발생하면 세계인구 20억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li> </ul>
6	<p>3 제19대 합참의장에 李基百 육군 대장 취임</p> <p>4 보리豊作 664만섬 돌파</p>	<p>2 김정일, 중공 방문(비공식)</p> <p>3 보천보전투승리 46주년기념, 양강도 보고회</p>	<p>4 한국방위전략은 미국식 채택으로 지형에 안맞아 허점 있다고 美국방부 자문위에서 지적</p>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9 북한 주민 정범호(44세) 연천 서북방으로 귀순	9 6·10만세시위투쟁 57주 평양시 보고회(평양 모란봉 극장)	13 중공 거주 한인 176만명 인 것으로 북경 週報가 보도
	15 다목적 한국형 경비함 안양함 진수	15 당중앙위 제6기 7차 전원회의 개최(~17일)	16 소련, 안드로포프 서기장 국가 원수로 피선
	16 주한 유엔군사령관 북한 전투력 2배로, 60일 전쟁물자 비축하고 있다고 언급		21 체코 프라하 시민 300명 '68년 이후 처음 반정부시위
	19 대간첩대책본부, 임진강 하류 임월교에 침투한 무장 공비 3명 사살	21 덴마크 국회대표단 방북	30 蘇, 핵잠함 곧 극동에 배치
30 이산가족찾기운동 전개 (KBS 주관)			
7		1 김일성, 페루 미주인민혁명 동맹대표단과 회담	
	5 국방부, 근속 30주년 기념 기장수여제도를 임관일 기준 장군만 수여제도에서 입대(입교)일 기준 전 장교·하사관으로 확대조정		12 중공, 유엔기구행사에 한국대표 입국거부, 정부 유엔에 중공의 회의 개최 불허 요청
	6 · 한국적십자사, KBS 이산가족찾기 캠페인 관련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 서울 IPU총회, 중공 가입제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3 첫 立法예고제 실시, 병역법 개정안 예고</p> <p>17 남북 이산가족 재회 촉진대회 개최</p> <p>21 헤이그 전 美국무장관 국방대학원에서 강연</p> <p>27 세네월드 한·미 연합사령관, 휴전 30돌 맞아 북한 남침 때에는 최전방에서 분쇄한다고 피력</p> <p>29 · 피키프 한·미 연합사령부 참모장, 헬기공격대의 창설을 추진중이라고 발표 · 人口 29일 밤 10시 51분 28초에 4,000만 돌파</p> <p>30 국방부,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규정개정(국방부훈령 제308호)</p>	<p>24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남한측 적십자총재의 1천만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제의에 비난성명 발표</p> <p>28 북한, 대일무역중계지로 청진항을 증공에 개방기로 협정 체결</p>	<p>17 일본, 귀화 외국인의 본명 사용을 허용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p> <p>21 蘇, 亞洲위협 방관 안해, 레이건 방한은 북한 도발에 썩기라고 헤이그, 국방대학원 강연에서 밝힘</p> <p>26 美국무부,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 399명이라고 밝힘</p>
8	<p>1 귀순용사 신중철 육군소령으로 임관</p>		<p>1 美국무부, 차드에 대공무기 등 군원제공 발표</p>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5 · 동해안 월성 원자력발전소 남방 5km 해상으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간첩선 아군 공중공격 받고 침몰 · 중공정기여객기 한국비행 정보구역 첫 통과</p> <p>7 · 중공조종사 손천근, 중공제 미그-21기를 몰고 귀순 · 서울·경기 일원에 휴전 후 처음으로 공습경보 발령</p> <p>13 해군, 울릉도 동방근해에서 무장간첩 모선 1척 격침</p> <p>15 독립기념관 기공식</p> <p>20 '83을지연습실시(~26일), 북한기습대비태세 검토</p> <p>26 · 내무부, 전시 국민행동요령 발표 · 한·일 외무부장관 회담(동경)</p>	<p>2 이란 회교공화당 대표단, 오스트레일리아 공산당 대표단 방북</p> <p>11 김일성, 방북중인 인도 공산당 대표와 회담</p>	<p>2 리비아 공군기, 1일에 이어 차드에 전략도시인 파야라르고 공습</p> <p>8 베트남, 캄란을 蘇해군기지로 제공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개</p> <p>13 에디오피아군, 소말리아 침공</p> <p>20 워싱턴포스트지, 미·소 하트라인 개선 위해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p> <p>25 미·소 향후 5년간 소련이 매년 900만톤의 미국산 곡물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곡물협정을 체결</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31 • 국방부, 군장교도 교통 법규 위반 민간차량을 단속 키로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대 한·미 연합사령부(CFC) 부사령관에 이상훈 육군 대장 취임</li> </ul>	<p>31 • 김일성, 방북중인 스페인 공산당 중앙집행위원 S. 카릴리요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소련간 경제과학기술협의회 개최(25일~, 모스크바)</li> </ul>	
9	<p>1 • 소련전투기, 사할린 부근에서 KAL기를 격추, 탑승자 269명 전원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장관회의 개최(~2일,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li> </ul> <p>7 KAL 합동위령제(동대문운동장)</p> <p>15 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이사회에 對蘇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p>	<p>12 김일성, 방북중인 루마니아 당정대표단과 접견</p> <p>19 몽고 인민민족회의 제1비서 J. 바보미세 방북 평양도착</p>	<p>2 • 레이건 美대통령, 소련의 KAL기 격추는 야만행위라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안보리, 한국·미국의 요청으로 KAL격추사건 진상규명 위해 소집</li> </ul> <p>5 • 캐나다 정부, KAL기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 국영항공사 소속 항공기 몬트리올 국제공항 착륙을 60일간 금지시킨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이건 美대통령 KAL기 격추사건으로 전략물자금수 등의 對蘇 제재조치 발표</li> </ul> <p>20 제38차 유엔총회 개막(~12월 20일)</p>

1983년

월	한 국	부 한	국 제
9	<p>22 · '84년도 예산 10조 4,167억원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美문화원 사제폭탄 터져 1명 사망, 5명 부상</li> </ul> <p>27 한국가톨릭 순교자 金大建신부 등 103명 성인 탄생</p>		
10	<p>1 金斗煥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17명에게 삼정도 하사</p> <p>7 육군, 장교외투 개정</p> <p>8 金斗煥 대통령 서남아 대양주 6개국 순방 등정</p> <p>9 버마 랑군 시내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공작원이 장치한 폭탄 폭발, 참배를 준비중이던 서석준 부총리 등 한국 고위관리 17명 순직 (1명 13일 사망). 전대통령 6국 순방취소하고 급거 귀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군경 비상경계 돌입</p>	<p>4 소련 당기관지 프라우다 대표단(단장 부주필 E. 파세쿠) 방북</p> <p>6 북한·중국간 합자건설한 태평만 수력발전소 댐축조 공사 완료</p>	<p>1 IKAO총회, 소련 KAL기 격추만행규탄하고 IKAO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승인</p> <p>8 소련, KAL기격추사건 이후 극동 방공사령부 개편</p> <p>10 버마정부, 아웅산사건 진상 조사 위해 특조위 5인구성</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1 • 합참의장 표지기 제정 • 순국유해 17위 환국</p> <p>13 순직 외교사절 17위 합동국민장</p> <p>15 국방부, 버마사건 관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p> <p>16 '83쌍용연습 실시(~21일)</p> <p>19 보안사령부, 북한의 지령 받고 일본을 통해 위장침투한 간첩 4개망 1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p> <p>2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총격도발</p>	<p>14 중공 군대표단, 인민일보 대표단 방북</p> <p>17 에디오피아 국가원수 H. M. 멩기스투 방북</p> <p>30 북한, 소련, 쿠바, 3國이 그레나다와 군사협정 체결</p>	<p>11 • 미국, 한국에 대북 보복 자제 당부, 소련에 북한 억제 요청(日 공동통신 보도) • 레이건 美대통령, 방미 중인 오학겸 중공외무장관과 한반도 긴장에 관해 논의 • 버마경찰, 폭발사건 용의자 2명 체포, 1명 사살</p> <p>12 日本 前首相 田中, 록히드 뇌물사건 관련 징역 4년 실행</p> <p>25 미군, 유혈쿠데타로 집권한 그레나다 군부에 의한 좌경화를 막기 위해 그레나다 침공후 점령</p>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 정부, 새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개시</p> <p>5 국방부, 버마의 대북한 응징에 따라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가능성에 대비 전군에 경계강화 명령 • 全斗煥 대통령, 산유 버마 대통령에 대북한조치 환영 전문</p> <p>7 국회, 12개 상임위 열고 정부보고를 접수, 황영시 육군참모총장 외무·국방위에서 북한도발을 응징할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밝힘</p> <p>10 해군사관학교 제38기 순항훈련분대 출항</p> <p>12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14일)</p> <p>13 레이건 美대통령 육군 제1군단 방문</p>	<p>1 평양만수대 예술단 중국 방문</p> <p>5 외교부, 버마정부가 아웅산 국립묘지 암살폭발사건과 관련 응징조치 발표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p> <p>7 폴란드 통일로동당일꾼 대표단 방북</p> <p>15 외교부 대변인, 美대통령 방한관련, 발표된 한·미공동성명(11월 14일) 비난 성명</p>	<p>1 그레나다 침공작전에 참가한 美해병대 병력 그레나다에서 완전철수</p> <p>4 • 버마정부, 아웅산폭파가 북한 특공대의 소행이라면서 북한과 단교, 북한승인 취소 전공관원 추방 • 폭탄트럭, 레바논주둔 이스라엘군사령부에 돌진 폭발 70여명 사상</p> <p>6 북한공관원들 버마 출국</p> <p>7 일본정부, 버마폭파관련 북한관리 입국금지</p> <p>11 레이건 美대통령, 북한도발하면 美 직접 반격 경고</p> <p>15 북한군 민홍구 하사 일본에서 제3국 추방결정</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5 • 교황 요한바오로 2세 1984년 5월 3~7일 방한 발표 •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p> <p>28 국방부, 한·미간 한·미연합군 합의서 교환</p> <p>29 공군본부, 북한 기습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군의 통합방공훈련(~12월 1일) 실시</p>	<p>25 루마니아 수상 다스칼레스쿠 방북</p> <p>29 소련, 북한간 제14차 어업공동회의</p>	<p>22 서독, 미국의 INF퍼싱 II 배비를 승인</p> <p>23 소련, INF협상의 무기한중단을 통고</p> <p>30 방글라데시 정부, 18명의 주재소련외교관 추방. 소련 문화원 폐쇄</p>
12	<p>2 • 합동참모본부, 탕고 병커 합동지휘소 특수정보시설(SCIF) 개선에 관한 합의각서 교환 • 소련폭격기 9대 독도근해 출현</p> <p>3 대간첩대책본부, 부산 다대포 해안을 침투하던 간첩 2명 생포 및 간첩선 격침 발표</p>	<p>3 가이아나 공화국 대통령 공식방문(~5일)</p>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5 尹誠敏 국방, 한·미 안보 협력문제 협의 위해 방미</p> <p>8일 와인버거 美 국방장관 과 회담, 한국에서 155대 자주포생산 합의</p> <p>7 국방부, 확대정책회의에서 3군의무부대 통합결정</p> <p>8 尹誠敏국방부장관, 한국형 전차시제품 출고식 참석 (미국 디트로이트시 셀프리지 공군기지)</p> <p>12 정부, ICAO집행이사회에서 격추된 KAL기가 첩보 비행중이었다는 소련측 주장은 근거있는 것이라고 KAL기 격추의 전적책임을 지라고 요구(책임배상)</p>	<p>7 북한, 체코간(1984~85) 보건협조에 대한 집행계획서 조인(프라하)</p> <p>13 북한, 11월 일본으로 밀항한 북한군 하사 민홍구를 송환하기 위해 일본선박 18富士丸과 선원 5명을 억류</p>	<p>6 코스타리카 정부, 버마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과 단교</p> <p>8 소련, 제네바 START회담 재개 거부, 모든 미·소간 핵무기감축협상창구 봉쇄</p> <p>9 · 랑군지구 인민법원 제8 특별재판부, 테러범 진모와 강민철에 사형선고 · 소련, 미 신형미사일 서구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핵미사일 추가배치계획, 우스티노프 소련국방장관 밝힘</p> <p>10 소련 최신예 미그31기 4~5대를 사할린에 배치, 日산케이신문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4 • '83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 • 多大浦간첩 기자회견서 북한은 대남공작원 1,600명 양성하고 있다고 폭로</p> <p>16 정부, 鄭鎭濬 육군 대장을 제25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p> <p>21 한국형 초계전투함(동해·수원·강릉·안양함) 합동 취역식</p> <p>22 국방부, 확대정책회의에서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 결정</p> <p>24 육군, 제주도 휴양소 개관(지상 6층, 지하 1층)</p> <p>27 병무청, 대학생징병검사를 자동연기하는 등 병역관계 법령을 통합정비('84년부터 시행)</p>	<p>22 북한, 불가리아간 '84년도 상품 상호납입 및 지불의정서 조인</p>	<p>14 • 美戰艦 뉴저지함 등 레바논내 시리아진지 함포사격 실시 • 알포신 아르헨티나 대통령, 장성 47명을 전격퇴진시키는 등 대폭 군부 개편</p> <p>15 빈, 상호균형감군회담(MBFR) 바르샤바조약축의 차기회담 재개거부로 10년 만에 무기연기</p> <p>20 아프리카 코모로회교 연방공화국, 랑군만행규탄 위해 對북한 단교 발표</p> <p>22 西사모아, 랑군만행응징 위해 對북한 단교 발표</p>

1983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8 팀스피리트 '84훈련을 '84년 2월~4월까지 한·미군 20만 7천명 참가 실시한다고 한·미 동시 발표</p> <p>29 • 국군체육부대령 공포 (대통령령 제11288호) • 국방부, 한·미군간 미방위물자 전시이양 합의각서 서명 • 한·미(주한미군)물자개발준비태세 사령부간 합의각서 서명</p>	<p>29 前캄보디아 국가주석 시아누크, 평양 도착후 김일성과 면담</p>	<p>29 아르헨티나 민간정부, 대량학살 고문혐의로 前대통령 등 장성 9명 군재회부</p> <p>30 터기, 대북한 무역의정서 폐기(버마사건관련)</p> <p>31 나이지리아 무혈쿠데타 발생</p>

# 198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한·브루나이, 대사급 외교관계 수교</p> <p>· 육군, 전투모 외형변경 (사병은 3월 20일 이후)</p> <p>5 통일원, '82년말 현재 한국의 GNP는 북한의 4.8배라고 발표</p> <p>10 국방부, 군정신전력 지침서 발간</p> <p>11 국군체육부대 창설, 육군 사격지도단을 체육부대 사격대로 편입</p> <p>17 직장예비군여단 창설(성남공업단지)</p>	<p>3 에티오피아 경제대표단 (단장 재정부장 K. 덴카) 평양도착</p>        <p>10 북한, 종래의 대미 직접 협상에 한국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주장</p>	<p>2 · 1983년 12월 31일 쿠데타로 세후사가리 대통령을 축출한 나이지리아의 군부지도자 모하메드 부하리 소장, 19일 최고군사심의회를 구성</p> <p>· 시리아, 1983년 12월초에 포로로 잡은 美해군조종사 로버트 굿맨(26세)을 석방</p> <p>5 아르헨티나 인권위, 전군 정당시 600여명을 암매장한 모가지 발견, 10일에도 482구 암매장 묘가 있음이 밝혀짐</p> <p>10 레이건 美대통령,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한과 미·중공의 4자회담 제의</p>       <p>17 유럽 군축회의, 스톡홀름에서 개막, 솔츠 美국무장관 誤判 핵전 방지방안의 마련을 촉구, 18일 그로미코 蘇외무부장관 연설, 이날 美·蘇 외무장관 회담</p>

198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9 '83년말 현재 외채총액 401억달러로 집계</p> <p>21 대간첩대책중앙회의 개최 (청와대)</p>	<p>18 金日成, 중앙아프리카 정부 대표단 접견(단장 국제협조부장 S. 미셀)</p> <p>22 중국철도대표단(단장 진박여) 중·조 국경철도협정 30주년기념행사 참가 평양 도착(~28일)</p> <p>27 북한, 요직개편 부주석에 이종욱·정무원 총리에 姜成山 임명</p>	<p>18 蘇, 동독에 새로운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데 이어 체코에도 새 핵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p> <p>23 바티칸에서 개막된 핵겨울학술회의에서 핵전대 기온이 급강하한다고 경고</p> <p>24 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유럽배치의 미제미사일을 철수하면 美와 대화 재개용의 있다고 밝힘</p>
2	<p>1 ·'84팀스피리트훈련 실시 (~4월 30일) ·군인공제회 설립</p> <p>4 호크 호주수상 내한(~7일)</p> <p>6 캐나다, 한국에 원자로 기술제공</p> <p>8 尹誠敏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p>	<p>1 북한, 1983년 현재 40개 사단, 25개 여단 보유한 것으로 밝힘(美육군부 보고서)</p> <p>4 전투동원태세('84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p>	<p>6 日 방위청이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朝日新聞)</p> <p>7 美국무성, 한국전 재발시 즉각 개입표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9 통일전망대 1차 준공</p> <p>14 남·북한연락관, 판문점에서 3년6개월만에 재회. 국무총리 대북서한 전달</p> <p>15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IR-982 작전참가 항공기관제절차합의</p> <p>18 • 베이루트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3명 레바논 사태로 철수 • 노동부, 이란·이라크전확전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 1만 5천명에 대한 단계별 철수계획 마련</p> <p>23 손斗煥 대통령, 군·경 전상자 의료혜택 확대지시</p> <p>24 • 재향군인회 제25차 정기 전국총회 • '83년도 도태항공기(32대) 기념전시용으로 활용, 미국측에 승인협조</p>	<p>20 소련해상선박대표단(단장 부부장 게레부르노브) 평양 도착</p>	<p>9 유리 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사망, 14일 장례식</p> <p>11 이란·이라크전 격화. 이라크, 이란 국경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p> <p>13 소련공산당 중앙위, 새 서기장에 콘스탄틴 체르넨코 선출(국방위원장 겸임한 것으로 알려짐)</p> <p>24 레바논 휴전합의</p>

198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5 육군, 제대별 책임제 교육 훈련시범	27 북한·소련간 해상운수에 관한 회담의정서 조인(평양)	28 UN항공전문가, 소련은 민항기를 확인 않고 KAL기 격추했다고 ICAO에 보고
3	2 학군사관 제22기 임관식		2 체르넨코 소련공산당 서기장 취임후 첫 주요연설서 대미관계개선 희망을 표명
	5 정부, 한·영 항공협정 체결		5 레바논 비상각의, 대이스라엘 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 회교민병전투 중지하고 휴전
	6 ICAO 이사회, 소련의 KAL기 격추를 규탄한 美側결의안 채택	9 북한, 부주석 김일(75세) 사망(11일 국장)	6 중공, '88서울올림픽 참가 표명
	15 총무처, 1977년~84년까지 士官學校출신 사무관 588명으로 집계		
	16 ·병무청, 6개월이상 실행자의 군복무소집을 제외시킨 것을 3년미만 수행자도 입대토록 선병지침을 변경 ·국방부, 한·미 공군간 대구관제탑에 위치한 초단파 고주파시설운용 합의각서 체결	22 북한·소련간 과학기술분야 협조 협정 조인(모스크바)	16 동·서 상호균형감축회담(MBFR) 빈에서 개막  21 팀스피리트 작전에 참가중이던 美항공모함 키티호크호(80,800톤)와 동해에서 蘇비토르 1급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5,200톤)이 충돌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4 포항부근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중 미군헬기 추락, 美 해병 18명, 한국군 11명 등 탑승자 29명 전원 사망</p> <p>27 해군, 개선형 초계전투함 진수</p> <p>30 육군사관학교 제40기 졸업식</p>	<p>24 기계공업대표단(단장 이자방) 소련 방문(~30일)</p>	<p>26 日·中共, 한반도전쟁억지 노력합의</p>
4	<p>2 국가안전기획부, 1978년 홍콩에서 실종되었던 최은희와 신상옥 감독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고 발표</p> <p>3 • 정부, 감사원장에 黃永時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서리) • 합천 다목적댐 기공식</p> <p>4 해군사관학교 제38기 졸업식</p> <p>6 • 공군사관학교 제32기 졸업식 • 대우중공업, F-16기 동체 국내생산계약</p> <p>7 해군, 부산 다대포침투 간첩선 인양작업 실시</p>	<p>2 북한 중앙통신사·소련 타스통신사간 보도교환협조 협정 조인(평양)</p> <p>4 金日成 니카라과 黨정부, 군사대표단 접견</p> <p>6 당 정치국원겸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백룡(71세) 사망(8일 국장)</p>	<p>1 蘇항공모함 민스크호, 남지나 해상에서 미국 소형구축함 해럴드 홀드호에 조명탄 8발을 발사, 3발이 명중되었다고 발표</p> <p>3 기니의 중견장교들 무혈 쿠데타성공(18일전 25년간 통치해 오던 아메도 세쿠투레 대통령 사망)</p> <p>4 레이건 美대통령, 소련에 화학무기 추방을 제의</p> <p>6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 10일 사상 처음으로 위성우주 수리에 성공 13일 귀환</p>

# 198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8 한·중국간 첫 국제전화 개통	8 자메이카 주재대사 유영흡 임명	8 중국, 최초의 실험용 통신 위성 발사
	9 ·해군, 부산 다대포침투 간첩선 인양 · 제1차 남북한 체육회담이 북한측 퇴장으로 결렬	9 페루 아메리카 인민혁명 동맹 대표단(단장 국제비서 K.로카)평양 도착(~17일)	13 · 타이군, 베트남군의 대공세로 비상경계에 돌입 · 니카라과 정부군과 반정계릴라 2개지역에서 격전
	15 마르텐스 벨기에 총리 방한(~18일)	15 姜成山 총리, 우간다 총리 오테마 알리마디와 회담(평양)	16 소련, 핵잠수함 24척 태평양함대 전력을 강화
	20 칼리파 카타르국왕 방한(~22일)	21 북한·동독간 경제·과학 기술협의위 제8차 회의의 정서 조인(평양)	19 레이건 美대통령, 26일부터 6일간의 중공 방문을 위해 워싱턴 출발
	22 하우 영국 외무부장관 방한(~25일)		23 앙골라 반군, 폭탄차로 외국인 숙소를 폭파, 소련 및 쿠바고문단 등 200명 사망
	24 해군, 한국형 전투구축함 서울함 진수		
	25 대한적십자사, 중공거주 한국인의 상호방문을 위해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중공에 제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 美국무장관 방한, 레이건 대통령의 중공 방문 결과를 설명차</p> <p>3 교황 요한바오로 2세 방한</p> <p>9 • 제16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가 서울에서 윤성민 국방부장관과 와인버거 美국방장관간에 개최(~10일) • 한·미 연합공지훈련(승진훈련장) 실시</p> <p>10 국방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자 양해각서 체결</p> <p>15 전두환 대통령, 안보정세 보고회의에서 북한의 경제파탄으로 무력도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p>	<p>4 胡耀邦 중공공산당서기장 평양을 방문(~11일)</p> <p>16 김일성, 소·동구권을 방문(~7월 1일)</p> <p>18 오토볼타 군사대표단(단장 국방상 바프티스트린가니), 북한 방문(~22일)</p> <p>21 북한·소련간 경제·과학 기술협조 의정서 조인(평양)</p>	<p>2 미·중공 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日·朝日신문 보도</p> <p>4 체르넨코 소련공산당 서기장, 대서방 핵협상 재개 거부</p> <p>12 일본과 중공이 군사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日 産經신문)</p> <p>16 중공과 베트남군, 국경에서 격전</p> <p>18 • 이라크 전투기, 이란 하르그島 남쪽에서 2척의 대형선박을 공격 • 페르시아만 위기고조로 북해산원유 및 金값이 폭등 보험료도 3배로 인상</p>

198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22 대법원, 중공민항기 납치범 6명의 형량을 원심(징역 6~4년)대로 확정</p> <p>24 세네월드 한·미 연합사령관, 이임기자회견에서 비무장지대에 더 많은 땅굴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힘</p> <p>27 동두천시 하봉암에서 군집단 난동사건 발생</p> <p>30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p>	<p>30 1,400톤급 화물선인 비류강호 진수(청진조선소)</p>	<p>30 이라크기, 페르시아만 하그르島 근해에서 대형선박을 공격</p>
6	<p>1 제4대 한·미 연합사령관에 윌리엄 립시 대장 취임(유엔군사령관 겸임)</p> <p>5 정부, 제17대 공군참모총장에 金仁基 공군 대장을 임명</p>	<p>2 북한, LA올림픽 불참 발표</p> <p>3 6·3투쟁 20주년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p> <p>6 루마니아 군사대표단(단장 군참모장 왓실리 밀리아상장) 북한 방문(~12일)</p>	<p>4 美해군 군함이 1일 페르시아만에서 쿠웨이트 화물선을 호위했다고 쿠웨이트 관계자가 발표</p> <p>5 인도정부군, 시크교의 黄金寺院을 공격, 시크교도 260명을 사살(10일 시크교도사병들 폭동을 일으켜 군사령관 1명 살해)</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7 육군본부, 한·미간 야전군 사령부 항공대 잠정운용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		8 미국무부, 1952년~53년에 美정부가 反 이승만 쿠데타 음모를 검토한 사실을 30년만에 공개
	11 북한군, 철원부근 비무장 지대서 아군초소에 총격 도발		10 미군, ICBM 요격실험에 성공
	12 개방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14 • 방미중인 중공 국방장관 12일 레이건대통령, 14일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회담. 대중공 무기판매에 합의 • 레이건 美대통령 미·소 정상회담 제의
	25 국방부, 한·미간 WRSA 이외 비축물자의 한국판매 합의각서 체결	28 중공 군사대표단(단장 북주군구사령관 장용휘), 북한 방문	
7	1 화물선 元進號(1만5천톤), 페르시아 이라크 공군기의 미사일 2발을 맞고 대파, 선원 4명 부상, 10일 23명 전원귀국(정부, 페르시아 북위 27도30분 이북에의 운항을 금지)	1 김일성, 45일간 일정의 소련·동구권 순방 마치고 열차편으로 청진역 도착	1 중공, 일본의 새 검정교과서가 여전히 왜곡돼 있다고 비난
		2 불가리아 동력자원대표단, 프랑스 조선연구소대표단 북한 방문	2 이란, 이라크가 계속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

198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2 육군헬기 충북 영동군에서 추락, 제2군사령관 김홍한 대장 등 5명 순직(14일 육군장)</p> <p>28 북한군 조병찬(24세) 하사 한강하구 해엄처 귀순</p>	<p>5 북한·탄자니아간 체신업 무협정 조인</p> <p>6 김일성, 당중앙위 제6기 9차 전원회의에서 소련 및 동구 7개국 순방 성과보고</p> <p>12 IOC 부위원장(A.쿠마르) 북한 방문차 평양 도착</p> <p>22 S.M. 마셀 모잠비크 대통령 일행 방북(~24일)</p>	<p>3 솔츠 미국방장관, 도부리닌 소련대사와 회담, 미국이 9월의 우주무기제한회의 개최를 무조건 수락</p> <p>6 이라크 반체제단체, 폭탄차로 이라크군 본부를 습격, 수십명 사상자 냄</p> <p>12 베트남군 1개사단, 중공 雲南省 국경지대를 공격, 양국군 공방전 전개</p> <p>17 美·蘇, 워싱턴~모스크바간 하트라인의 현대화를 위한 협정을 가조인</p> <p>9 나카소네 일본총리, 핵적재 미군함의 일본기항을 거부</p>
8	<p>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p> <p>14 정부, 전두환 대통령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p> <p>15 한·미 단일탄약 지원체제 보상요율에 관한 단일탄약 보급체제의 양해각서 서명</p>	<p>11 김일성, 우간다 부통령겸 국방장관 P. 무안가와 면담</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8 • 84을지연습 실시(~23일) • 국방부 확대정책회의에서 국군정보부대 통합을 결의</p> <p>22 민방위본부, 관측병의 착오로 KBS 1, 2, 3 라디오 방송과 2개 FM에서 23초동안 경제사이렌 경보</p> <p>31 중부내륙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집중호우(~9월 4일), 190명 사망·실종, 1,318억원 재산피해</p>	<p>16 중앙방송, 일본어선 예비스마루호를 군사경계선 불법침입 명목으로 나포, 조사중이라고 발표</p> <p>22 김일성, 적도기니 대통령 및 말타수상과 확대정상회담</p> <p>31 김일성, 리비아혁명 15주년관련 카다피 대통령에 축전</p>	<p>22 유엔안보리, 북한의 량군 폭탄테러와 무장침투를 규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보고서를 채택</p> <p>27 호주 등 남태평양국가 14개국, 남태평양의 비핵지대화에 합의</p>
	<p>9</p> <p>1 국방부, 3군 의무부대를 통폐합</p> <p>4 정부, 崔相和 해군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제15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p> <p>6 金斗煥 대통령 일본 공식 방문(~8일)</p>	<p>5 인민무력부, 정권수립 36돌 기념 영화감상회 개최(외국 무관 초청)</p> <p>8 북한, 합영법 제정, 외국자본·기술도입 추진</p>	<p>3 태풍 아이크호, 필리핀을 강타, 최소한 328명 사망</p> <p>4 美공군, 새로운 B1B기를 최초로 공개</p>

198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14 한국형 전투구축함 충남 함 진수	13 북한, 앙골라에 지상군을 파견, 쿠바군을 지원(남아공스타지 보도)	20 콜프Ⅱ급 소련 핵잠수함, 동해에서 화재로 표류	
	15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개관(인천 남구 오연동)	17 북한·헝가리, 과학기술협정 조인(평양)		
	17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전투 재출동 상호정비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24 대구에서 무장간첩 1명 출현, 주민 2명 살해후 자살			
	27 '84 세계기독교장교대회를 웨라톤 워커히에서 개최 (~10월 3일)			29 수재물자 명목으로 한국에 물자제공(쌀 5만석, 시멘트 10만톤, 직물 50만m 등)
10	1 국군의 날 기념식 여의도광장에서 국산병기 위용 보임	3 김일성, 탄자니아혁명당 대표단(단장 당사상비서 N. 모이그)과 면담	1 중공, 건국기념일 군사퍼레이드에서 자체개발한 ICBM을 선보임	
	2 • 국방부, 한·미 8군간 FMS 한국군 유류 표본시험 합의 각서 교환 • 정부, 6.25 부역자 신원 기록 삭제 발표			5 방북중인 일본 참의원 우쓰노미야 도쿠마 일행 면담
				5 美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13일 귀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2 '84쌍용연습 실시(~27일)</p> <p>23 육군본부, 북한지상군 전술교범 작성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 서명</p> <p>27 제13회 국제군인유도선수권대회 개막(12개국)</p>	<p>22 세계기상기구(WMO) 사무국장 지오오피오바시 방북차 평양 도착</p> <p>25 중공군의 한국전쟁참전 34주년을 맞이하여 朝·中 友誼塔(높이 20m에서 30m로) 확장준공</p>	<p>20 중국공산당, 제12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 자본주의 경제개혁안을 채택하고 폐막</p> <p>27 서구동맹(WEU)의상·국방상회담, 로마선언 채택</p>
11	<p>5 해군사관학교 제39기 순항훈련분대 출항</p> <p>7 金斗煥 대통령, 창설 6주년 맞은 한·미연합사를 시찰</p> <p>8 국방부, 한·캐나다간 정부 품질업무 상호제공 양해각서 서명</p> <p>11 스위스 항공기, 북경-김포 첫 운항</p>	<p>4 김일성, 동독사회통일당, 드레즈덴 한스 모도로브 면담</p> <p>13 소련·북한간 국경회담</p>	<p>1 간디 인도총리 경호원 2명에게 피살, 새 인도총리에 그녀의 장남인 라지브 간디 취임</p> <p>6 레이건 美대통령 선거에서 압승</p> <p>8 美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사상 처음으로 고장 위성을 회수하는데 성공 16일 귀환</p> <p>12 蘇, 폭격기 1대 일본 영공 침입, 日 전투기 40대 긴급 출격</p>

1984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5 처음으로 남북한 경제회담 판문점에서 개최</p> <p>21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연합방위능력향상 위한 캠프허프리의 시설물 건설 합의각서 교환</p> <p>22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p> <p>23 소련인 마투조크씨 판문점에서 망명, 북측 경비병 군사분계선 150m 남하침범, 총격전(북한군 3명 사살, 아군 1명 전사)</p>	<p>19 김일성, 오스트리아 사회당, 국제비서 하게르 면담</p> <p>23 북한·중국, 압록강 수력발전 이사회(제37차) 회의 (평양)</p> <p>26 북한·소련간 국경선 통과에 관한 조약에 가조인 (평양)</p> <p>27 판문점 총격사건 관련해 평양시 군중규탄대회 개최</p>	<p>28 와인버거 미국방장관, 미군은 해외분쟁지역에 최후 수단으로만 개입할 것이라고 언명</p> <p>30 美·蘇, 매년 정기적으로 두차례씩 핵확산금지에 관해 회담하기로 합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6 합동참모본부, 한·미군간 공용통신 보안장비 운용계획에 관한 합의각서 교환</p> <p>13 '84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3 폴란드 통일노동당 대표단(단장 당부부장 A.노브르스키) 평양 도착</p> <p>10 북한, 서울올림픽 개최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p> <p>16 김유순 올림픽위 위원장, 사마란치 IOC위원장 앞으로 88올림픽 개최지 변경 요청 내용의 서한 발송</p> <p>22 김일성, 소련국방장관 사망과 관련해 체르넨코 서기장에게 조의전문 발송</p>	<p>1 美해군의 원자력항모 칼빈슨호(81,600톤)와 항모 미드웨이호(62,000톤)를 주축으로 하는 기동함대, 일본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여 동해에 진입</p> <p>3 •인도 중부, 보팔시 소재 유니언 카바이드사(美회사) 살충제 공장에서 유독가스(메틸 이소시아네이트) 폭발</p> <p>•NATO 국방장관회담이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 국방장관회담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p> <p>20 蘇국방장관 드미트리 우스티노프 사망(76세), 후임에 국방 제1차관 세르게이 소콜로프 원수를 임명</p>

# 198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4 정부, '85 팀스피리트훈련에 북한참관 제의</p> <p>10 제4대 한·미 연합야전군 사령관에 제임스 E. 모어 중장 취임</p> <p>15 국방부, 1973년 1월~84년말까지 기탁된 방위성금이 528억원이라고 발표</p> <p>19 尹誠敏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p>	<p>7 중앙통신, 한·미 팀스피리트훈련 비난 및 전군 경계태세명령이 하달됨을 발표</p> <p>9 팀스피리트훈련 트집잡아 남북경제회담(1. 17), 적십자회담(1. 22)을 연기하고 부총리회담을 열자고 제의</p> <p>10 북한, 아이보리코스트와 수교</p> <p>14 '85 팀스피리트훈련 참관 거부</p>	<p>7 미·소 군축회의 재개(~8일, 제네바)</p> <p>9 레이건 美대통령, SDI계획의 계속 추진을 강조하고 미·소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 있음을 언명</p> <p>10 蘇, 기존 4개 戰域司 외에 레닌그라드에 북서戰域司를 새로 설치(日 産經신문 보도)</p> <p>12 존 베시, 美합참의장으로 첫 출근을 공식 방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1 • 金斗煥 대통령,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한 작전체제를 각 지역단위로 확정하도록 대간첩대책중앙회의에서 지시 •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수원기지 항공관제절차 합의	21 김일성, 전 캄보디아 국가주석 노르돔 시아누크와 면담	
	22 고리원전 5호기(95만kW) 완공	22 북한·인도기자동맹 협정 조인	22 레이건 美대통령 2기 취임, 대소군축협정 체결, 예산동결, 연방예산 적자 축소 등의 실현 다짐
	25 제4위성통신지구국 준공 (충북 보은)	24 김일성, 적도기니 군사대표단 접견	24 • 그레나다, 북한과 단교 • 미국 고성능 첩보위성(시긴트)을 적재한 디스커버리호 발사
	29 공군본부, 한·미간 대한민국내 항공교통관제 양해각서 교환	27 기니 군사대표단(단장 국방장관), 북한군사구분대(2개) 군사훈련 참관	
2	1 • '85 팀스피리트훈련 실시 (~4월 30일) • 공군본부, 한·미간 청주공군기지 항공교통관제 절차 합의	1 북한·말타 경제 및 기술협정서 조인(발레타)	1 美 정부, 휴즈사 헬기 17대 북한에 불법수출한 서독사의 수입특권 박탈
	5 국방부, 백령도 부근 공해상에서 어선 2척(어부 21명)이 북한 경비정에 납북되었다고 발표	4 노동신문, 팀스피리트 '85 한·미 연합훈련 개시 관련 북한 예비전쟁 운운으로 비난논설 발표	5 美 국방부, F4E 전투기 4대의 對韓 판매계획을 의회에 통보

198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2 12대 총선, 투표율 84.6%</p> <p>13 총선결과 판명, 민정 148석, 신민 67석, 민한 35석, 국민 20석, 기타 5석</p> <p>15 정부, 미국과 대북한 헬기유출관련 한·미 공동상설회의 개최</p> <p>23 립시 한·미 연합사령관,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 밝힘</p> <p>26 재향군인회 제26차 정기 전국총회</p>	<p>19 소련군 창건 67돌관련 평양시 주둔 구분대 기념집회 개최(2·8 문화회관)</p> <p>24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100% 투표, 100% 찬성으로 28,793명의 대의원 선출)</p>	<p>11 워커 미국 주한대사, 대북한 헬기밀매사건 재발방지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p> <p>12 레이건 美대통령, 군축회담 관계없이 스타워즈계획 강행 언명</p> <p>23 북한은 짐바브웨에 장갑차 20대 인도, 조작교관 6명 파견했다고 짐바브웨 매스컴 보도</p>
3	<p>2 학군사관 제23기 임관식</p> <p>5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 잠정 운영(국방부훈령 재245호)</p> <p>6 육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656호)</p>	<p>1 동독민족인민군 창건 2주년관련,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기념집회 개최</p>	<p>1 日 방위청, KAL기 피격전후의 소련전투기 교신 비디오표 중의원서 처음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7 국방부정책회의, 국방과학연구소 조직검토</p> <p>20 국가안전기획부, 서울, 안동거점 金撤(72세) 등 간첩단 4개망 14명 검거 발표(8명 구속)</p> <p>23 국방부, 중공어뢰정 유인 경위를 설명하고 승무원중 사망 6, 부상 2명에 대한 구조요청을 받아 부상자를 가료중이라고 발표</p> <p>26 정부, 중공측 각서를 통한 사과·해명을 받고 승무원 13명과 시체 6구 및 어뢰정을 28일 공해상에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p> <p>28 정부, 중공어뢰정 인도, 중공외교부 한국에 감사 성명</p> <p>29 육군사관학교 제41기 졸업식</p>	<p>1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팀스피리트 '85 훈련 관련해 3개항의 비난백서 발표</p> <p>29 북한·동독과학원간 협정서 조인(동베를린)</p>	<p>11 蘇, 새 공산당 서기장에 미하일 고르바초프(54세) 선출, 동·서 긴장완화, 레닌의 평화공존정책 계속 추구 선언</p> <p>20 美공군, 스팅거미사일 한 국에만 배치되어 있다고 확인</p> <p>23 중공외교부, 중공어뢰정 1척이 훈련중 실종되어 수색중이라고 발표</p>

198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3 공군사관학교 제33기 졸업식</p> <p>18 제40차 국제군인체육회 총회(~27일, 웨라톤 워커힐)</p> <p>22 국방부, 한·미간 한국형 전차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확인)</p> <p>24 全斗煥 대통령 방미(27일 한·미 정상회담)</p> <p>25 국방부, 한·미간 한국형 전차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부록 2, 일반 및 실업보완)</p>	<p>2 소련공산당 대표단(단장 국제부장 브르즈비치 라흐만), 김일성과 면담(평양)</p> <p>10 김일성, 시리아 국방부 상, 아와트바크 면담</p> <p>15 김일성,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등 9명의 군고위간부들을 대폭 승진 조치</p>	<p>1 美 국방부, 소련 극동지역에 53개 사단 지상군, 공군기 1,700여대, SS20 미사일중 3분의 1이 배치되었다고 밝힘</p> <p>2 美, F-16 신예전투기를 日 基地에 첫배치</p> <p>5 日 항공자위대, '84년 중 소 핵요격을 위해 944차례 발진했다고 밝힘</p> <p>7 蘇, 美의 정상회담 제의 수락, 고르바초프 서기장 중거리 핵미사일의 유럽배치를 11월까지 중지하겠다고 선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1 육군박물관 개관(육군사관학교)</p> <p>3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청주기지내 항공기 리베트민트 주기장 건립 양해각서 교환</p> <p>6 파키스탄 지아 대통령 방한(~10일)</p> <p>7 제1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워싱턴에서 윤성민 국방부장관과 와인버거 미국방장관간에 개최(~8일)</p> <p>17 제2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제3차회담 6월 20일 개최 합의</p> <p>29 한·이라크 항공협정 체결</p>	<p>3 호요방 중공 당총서기 북한 방문(~6일)</p> <p>16 북한·중공, 압록강·두만강 수자원공동개발 합의 (인민일보)</p> <p>23 김일성, 日 사회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소·중공 동거리외교 강조</p>	<p>3 美, F-16전투기 16대 태국에 판매</p> <p>14 이라크, 북한이 5,000만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갚지 않는다고 비난</p> <p>17 • 중공, 압록강·두만강 수자원 공동개발 합의 • 중공, 미국 군함의 상하이 기항이 핵무기 적재 논란으로 취소되었다고 발표</p>
6	<p>1 • 제20대 합동참모의장에 鄭振權 육군 대장 임명 •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필승사격장 기상지원 합의 각서 교환</p> <p>7 尹誠敏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에서 광주사태 사망자는 당시 발표대로 191명이라고 답변</p>	<p>4 군사정전위 북한 수석대표 이태호(소장) 이행, 중공 향발(~14일)</p>	

198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5 후세인 무하마드 에르샤드 방글라데시 대통령 공식 방한(4박 5일)</p> <p>24 국방부, 한·이탈리아 국방부간 방위체계협력에 관한 합의각서 교환</p> <p>30 尹誠敏 국방부장관, 북한은 미제헬기 87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p>	<p>11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중공군 광주군구사령원 우태충과 면담</p> <p>19 김일성, 중공군 광주군구사령원 우태충과 면담</p> <p>25 6·25 미제 반제투쟁의 날 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김일성 광장)</p>	<p>10日 讀賣신문, 미국이 주한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합동훈련을 제의했다고 보도</p> <p>11 蘇, 우주탐사선 1호, 금성 착륙</p> <p>28 蘇, 미그-23기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日 産經신문이 보도</p> <p>29 · 蘇, 리비아에 신형 SA5 미사일 제공했다고 美 ABC TV가 보도 · 美 전략공군의 B1B 첫 취역</p>
7	<p>1 ·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소방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 · 정부, 19인치 컬러TV 비롯 235개 품목 수입개방 (자유화율 87.7%)</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4 육군본부, 한·터키간 군사 대학 피교육생 교류협정 체결</p> <p>8 • 李應俊 초대 육군총참모장(94세) 별세(10일 육군장) • 정부, 바하마와 외교관계 수립</p> <p>15 • 국방부, 한·말레이시아간 목록자료 교환협정 체결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실무 접촉</p> <p>19 • 조지 챔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 수상 방한(6일간 체류)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실무 접촉</p> <p>23 제1차 남북 국회회담 예비회담 9월 25일 개최 합의</p>	<p>9 북한 김정일, 당군부 기관장약</p> <p>12 김일성, 일본 世界紙 편집국장과 후계자 문제, 남북한관계, 대일관계 등에 대해 회견</p>	<p>4 중공, 국경병력을 감축했으나 소련은 중·소 국경에 100만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p> <p>5 일·중공 핵협력협정에 가조인</p> <p>8 레이건 美대통령, 미변호사협회 연설에서 북한·이란·리비아·쿠바·니카라과를 국제판 살인주식회사로 낙인</p> <p>18 스톨피 美국무부대변인, 소련의 북한에 대한 미23기 공급을 확인</p> <p>27 우간다 무혈쿠데타, 오브테 대통령 실각, 오켈로 장군이 정권 장악(29일 국가원수에 취임)</p>

198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30 국방부, 한국형 전차에 관한 양해각서(부록3, 특수장갑 보완) 체결		30 • 소련은 북한에 미그23기 10대를 추가공급, 모두 14~16대로 늘어났다고 日産經신문 보도 • 미·일·소, 앵커리지-동경-하바로프스크간 긴급연락용 통신망 설치 예비협정 합의(민간항공기 안전운행용)  31 • 일·중공 외상회담(동경) 원자력 협정에 정식 조인 • 미·소 외무회담 개최(헬싱키)
8	1 정부, 통일원장관에 朴東鑣 국회의원을 임명	7 日 북한전문가, 북한은 유사시 한국에 대해 사용키 위해 '60년말부터 각종 세균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밝힘	9 美 도크 바네트 교수, 방한 회견시 중공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한국과의 교역도 계속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힘  11 소련 타스통신, 소련 함대가 친선방문차 북한 원산에 기항하고 있다고 밝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5 金斗煥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 표명</p> <p>19 '85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실시(~30일)</p> <p>22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실무대표단 접촉</p> <p>25 국방부, 중공폭격기 1대(승무원 3명)가 24일 이리시에 불시착, 항법사는 사망, 조종사는 중상을 입고 대만 망명을 희망했다고 발표, 찰과상을 입은 통신사는 본국 송환요청</p> <p>26 한적대표단 84명 남북적십자 제9차 본회담(~29일) 참석키 위해 평양 향발</p> <p>31 韓哲洙 육군대장 제5대 한·미 연합부사령관 취임</p>	<p>14 김일성, 소련 당대표단(단장 제1부수상 알리에비치 알리에프) 및 군사대표단(단장 국방성 제1부수상 아비노비츠 페트로브)과 회담</p> <p>16 아가다 바코바라 몰타 대통령, 북한 방문</p> <p>22 탄자니아 대통령, 金日成 초청으로 평양 도착(~24일)</p> <p>26 북한·소련간 관광교류분야협정 체결(평양)</p> <p>27 남북적십자 본회담(~28일 평양)</p>	<p>14 월포워츠 美국무부 차관보, 蘇의 대북한 美23기 지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심각하며 미국은 북한의 군사우위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힘(미 WP紙)</p> <p>15 윌터즈 美유엔대사, 중공 방문중 미국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찬성한다고 피력</p> <p>23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남북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합의에 환영성명 발표</p> <p>27 나이지리아에서 군부 무혈쿠데타 발생</p>

198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 예비군복 복제개정(얼룩무늬→국방색 전투복)</p> <p>2 학생군사교육업무를 육군본부, 각군으로 인계</p> <p>18 제4차 남북경제회담 개최(판문점), 5차회담 11월 20일 개최 합의</p> <p>20 남·북한 고향방문단 서울과 평양에 도착, 남·북한 각각 151명씩 23일까지 3박4일간 체류(23일 귀환)</p> <p>25 제2차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판문점)</p> <p>27 육군, 건군 제37주년을 맞아 중부전선에서 '85 필승 특전훈련 실시</p> <p>30 국군의 날 경축 제1회 호국가요제 개최</p>	<p>3 또마 쌍카라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북한 방문</p>	<p>7 소련, 일본 북해도 근해서 대규모 상륙훈련 실시 중이라고 日 産經신문 보도</p> <p>13 美 국방부, 궤도상의 위성을 파괴시키는 위성요격무기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p> <p>23 솔츠 美 국방장관,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임을 희망한다고 언급</p> <p>25 제프리 하우 영국 외무장관,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한의 조기 유엔가임을 희망한다고 언급</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 • 한·미 육군간 시험평가 자료교환 합의각서 체결 • 한·미 육군간 전투발전 세미나 합의서 체결</p> <p>6 백령도 근해 공해상에서 제2계영호(부산 86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납북 (18일 북한 송환을 발표)</p> <p>11 육군교도소를 성남에서 장호원으로 이전</p> <p>19 해군본부, 부산 청사포 앞 바다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간첩선 1척을 격침</p> <p>22 盧信永 국무총리, 유엔총회에서 연설(한국의 평화정착 6개항 선언)(29일 백악관 예방, 30일 슬츠 미국무장관과 회담)</p>	<p>5 디디에르 라르시카라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북한 방문</p> <p>7 蘇, 북한에 미그23기 10대를 추가 제공했다고 日 産經신문 보도</p> <p>12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북한 방문</p> <p>18 부주석 박성철, 제40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가입 반대 표명</p>	<p>18 부시 미국 부통령, 중공이 미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고 중공 방문후 피력</p> <p>24 레이건 美대통령, 유엔총회에서 연설, 미·소 군축회담, 지역분쟁 등 주요문제에 대한 미국입장 천명</p>
11	<p>1 • 보안사, 군부·학원·산업계에 침투해 소요를 획책한 간첩 5개망 16명 검거 발표 • 학생중앙군사학교 창설</p>		<p>1 영국 전략문제연구소, 북한의 병력은 86만 8천명이라고 발표</p>

1985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7 해군사관학교 제40기 순항 훈련분대 출항</p> <p>13 대전 국립묘지 준공(대지 1백만평)</p> <p>19 한국, 남극 자원보존협약 가입</p> <p>21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p> <p>25 월포워츠 美국무부 차관 보, 미·소 정상회담 내용 설명 위해 내한(~26일)</p>	<p>10 에티오피아 정부대표단, 북한 방문, 북한·에티오피아 간 영사협정 조인</p> <p>19 북한, 정무원 조직 개편</p> <p>26 박성철 부주석, 인도 방문(~29일)</p> <p>27 평양경유 동경-북경 항로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p>	<p>2 레이건 美대통령, 공격용 미사일을 50% 감축하자는 소련측 제의를 수락했다고 발표</p> <p>5 日. 産經신문,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개 기갑군단을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p> <p>19 미·소 정상회담 6년만에 열려(~20일, 제네바) 13개항 공동발표문 발표, 정상회담 정례화, 핵감축협상 체결 등 합의</p> <p>23 美, 소련비행기 직항 '86년 4월부터 재개합의(타스통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 북적 대표단, 남북 제10차 회의 참가차 입경</p> <p>3 • 국방부, 한·미 합동항공 교통관제 등 양해각서 체결 •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 담 개최</p> <p>12 국방대학원 졸업식, 순대통령,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인내와 성의로 추진 다짐</p> <p>16 제26대 육군참모총장에 박熙道 육군 대장 취임</p> <p>21 공군사관학교, 서울 대방동에서 충북 청원군 남일면 신캠퍼스로 이전</p> <p>31 육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825호)</p>	<p>3 북한·싱가포르 의상회담 (싱가포르)</p> <p>16 김일성, 이탈리아 공산당 대표단(단장 국회의원 루치마리오) 접견</p> <p>26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지대공미사일(SAM) SA3형 약 30기를 공여받았다고 日産經신문이 보도</p>	<p>4 레이건 美대통령, 로버트 맥팔레인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의 사표 수리, 후임에 존포인 텍스터 해군 준장을 임명</p> <p>9 美국방부, 한국에 처음으로 방공용 스타링거미사일을 판매할 것을 잠정적으로 승인했음을 의회에 보고</p> <p>14 蘇, 日에 대해 극동지역 핵전 방지를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p> <p>23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李鵬에게 소·중공간의 관계개선 희망</p> <p>26 소련, 북한에 새로이 대공미사일(SAM) SA3형 약 30기를 공여, 북한은 이를 평양 주변에 배치했다고 부언</p> <p>30 미·중공, 평화 핵협력협정에 관한 외교각서 교환</p>

# 198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방위병 복무기간 연장(14개월→18개월) 및 입영제도를 개별입영으로 개선</p> <p>3 북한군 임종철 하사 중부전선에서 귀순, 월남</p> <p>8 제24대 국방부장관에 李基百 예비역 육군 대장 취임</p> <p>16 국방부정책회의, 해·공군사관학교 교장 계급 상향조정 및 국방부 산하기관장 임기제 검토</p>	<p>10 日 産經신문, 북한은 새 포병군단을 편성했다고 보도</p>	<p>5 소련은 감차카반도에 군사령부를 신설했다고 日 産經신문 보도</p> <p>8 美, 퍼듀大 물리학팀이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제5의 힘을 발견했다고 미언론 보도</p> <p>14 日 産經신문, 소련은 사할린 거주 한국인 출국을 유대인 방식으로 허용할 것을 시사했다고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p> <p>15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2000년까지 핵무기의 완전폐기 제의</p> <p>18 美 국방차관보, 소련은 SS20 미사일을 아시아에 162기 배치했다고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1 대간첩대책중앙회의 개최(청와대)	20 북한, 팀스피리트 '86 훈련을 트집삼아 모든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	28 美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후 공중폭발, 승무원 7명(여 2명) 전원사망
2	1 李基百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 보고  4 국방부, 한·미간 한국육군간호장교단 훈련계획 합의서명  6 국방부정책회의, 美製 500MD 계열 헬기의 북한 유출에 대한 종합대책  10 '86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4월 25일)  14 국군체육부대 상무체육관 준공	11 외교부, 남북상호군사연습중지 제의	3 美 우주탐사선 파이오니어 12호, 헬리혜성에 3,800만km까지 접근 근접촬영  5 레이건 美대통령, 아시아에 배치된 蘇SS20 미사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유럽에 배치된 미·소 양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제거하자는 군축안 제의  6 美합참본부 보고서, 동아시아에 미군의 전진배치 필요성 지적

198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1 중공군조종사 진보충 미그-19기를 몰고 심양기지 발진후 서해 영공 통해 한국에 착륙, 제3국 망명 요청, 정부 3월 6일 망명 허용</p> <p>26 재향군인회 제27차 정기 전국총회</p>		<p>25 •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 마르코스 별도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으나 곧 사임 • 미국 등 서방 각국, 아키노 새정부를 승인</p>
3	<p>2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지상유도 접근관계의 권한 및 책임의 위임에 서명</p> <p>4 학군사관 제24기 임관식</p>	<p>3 세리케 적도기니 수상 북한 방문(~6일)</p> <p>8 카스트로 쿠바수상, 북한 방문(~11일)</p>	<p>4 美 NYT지, 발트하임 전 유엔사무총장이 나치조직에 가담했었다고 보도</p> <p>6 蘇, 헬리혜성 탐사선 베가 1호, 헬리 핵 근접사진 전송</p> <p>9 美 WP지, 미국은 극비작전지휘기구로 208 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보도</p> <p>12 켈리 美국방차관, 미하원에 대한군사차관 2억 3,000만달러로 증액 요청</p>
	<p>19 공군사관학교 제34기 졸업식</p>	<p>19 平南 남덕천-덕남간 철도전기화 공사완료(15km)</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0 李基百 국방부장관, 북한 전력 65%를 전방에 배치 수도권 기습시간을 8분대로 단축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힘</p> <p>26 해군사관학교 제40기 졸업식</p> <p>27 육군사관학교 제42기 졸업식</p>	<p>21 북한, 한국측의 남북국회 회담 예비접촉 제의</p> <p>23 북한은 미제 헬기로 특별부대를 편성했다고 보도</p>	
4	<p>1 제18차 한·미 연례안보협회의가 서울에서 이기백 국방부장관과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간에 개최(~3일)</p> <p>5 全斗煥 대통령, 영국·서독·프랑스·벨기에 등 유럽 4개국 순방 등정, 각국 정상과 회담 갖고 4월 21일 귀국</p>	<p>1 김일성, '85년 12월에 북경을 방문했다고 북경 외교소식통을 인용 보도(日 조일신문)</p> <p>2 북한, 팀스피리트 '86훈련을 이유로 한국측의 경제회담재개 제의 거부</p> <p>7 김일성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막(~9일)</p> <p>16 미국의 리비아 공습을 비난하는 정부성명 발표</p>	<p>7 中瞭望紙, 소련이 극동에 미그23기를 비롯 미그31기까지 배치했다고 보도</p> <p>8 美정부, 레이더 등 5억 5천만달러어치의 최신군사 전자장비를 중공에 판매하겠다고 밝힘</p>

198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24 동해안 거진해상에서 곡선박 1척 격침	24 軍창건 54주년관련, 중앙보고대회 등 개최(2·8문화회관)	26 蘇,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파손 사고로 3,000명 이상 사망
5	1 군 양곡포장 단위 조정 (60kg→40kg)  2 • 올림픽대로 개통(신행주대교~암사동 36km) • 국방부, 한·미간 전술정보전대 연합정보 기능합의서 체결  6 국방부, 향토예비군 명칭을 복무구분에 따라 동원예비군을 제1전투군, 일반예비군을 지역전투군으로 개칭	16 코스타리카 인민당 총비서 에르와르도 모라 발베르데, 북한 방문(~24일)  27 영국공산당 총비서 고든 매클린, 세번째 북한 방문(~30일)  29 한·미측의 남침위협 경고와 관련, 이를 비난하는 조국전선백서 발표	1 이란·이라크, 6년여간의 전쟁종식을 위한 8개항 계획에 합의  28 와인버거 美국방장관, 미·소 제2단계 전략핵무기제한협정(SALT II)의 군비제한 조항을 8월부터 파기 시사  30 교황 요한바오로 2세, 마르쿠스주의는 죽음의 이데올로기라고 언급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 원전 5·6기 준공(경남 고성, 각 95만km)</p> <p>8 국방부, 한·미 당국간 탄약 현대화 협정</p> <p>9 공군본부, 한·미간 계기비행/특별시계비행 협조절차 합의</p> <p>12 국방부, 한·미간 대량공수물자 하역장비(ATD) 등 관련합의각서 체결</p> <p>14 국립묘지관리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929호)</p>	<p>3 보천보전투승리 49돌기념 양강도 보고회 개최</p> <p>9 인민무력부장 吳振宇, 남·북·미국 3군사 당국자 회담 제의</p>	<p>4 중공외교부, 개정된 일본 역사교과서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왜곡, 미화하고 있다고 비난</p> <p>5 미하원 외교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결의안과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 및 한반도 긴장완화 결의안 채택</p> <p>9 •美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조사위 최종조사보고서에서 챌린저호의 사고원인을 추진로켓 연결부분의 이음새 결함 때문이라 발표 • 중공 신화사통신, 중공은 중·일 전쟁의 역사를 왜곡 기술한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을 시정 요구하는 각서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보도</p> <p>15 일본방위청관리, 제2회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한·미·일·중공) 동경에서 개최. 북한은 '85년이후 소련으로부터 항공기를 대량도입하고 개성주변에 9개 기감사단을 전진배치했다고 밝힘</p>

198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7 •해경, 충남서산 앞바다에서 표류중인 중공선박(선원 19명) 1척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발표</p> <p>• 국방부, 오진우 북한인민무력부장이 판문점을 통해 이기백 국방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왔다고 발표 (립시 유엔군사령관에게도) 국방부 서신 접수 거부</p> <p>21 • 냉동제 생산공장에 관한 한·미 공군간 양해각서 체결</p> <p>•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미공군 소유 전쟁예비탄약 저장 양해각서 체결</p> <p>26 국군 올림픽지원부대 현판식</p> <p>27 金斗煥 대통령, F-16기의 필승보라매 명명식에서 안보태세강화는 선택의 여지 없는 절대적 명제이며, 무제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p>	<p>20 북한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정식 추대될 것이며 소련 및 동구국가 순방할 것이라고 보도(日 공동통신)</p> <p>22 디우프 세네갈 대통령, 북한 방문(~25일)</p> <p>23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의</p> <p>26 트라오레 말리 대통령, 북한 방문(~29일)</p>	<p>17 매카시 美제7함대사령관, 미해군은 8월말 또는 9월초에 최신에 FA 18 함재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3 국방부, 한·사우디간 군사 협정 체결</p> <p>9 • 정부, 제21대 합참의장에 吳滋福 육군 대장 임명 • 참모업무 수행절차를 위한 제3군/한·미 야사간 양해각서 체결</p> <p>11 한·미 공군간 기지보완 합의각서 체결</p> <p>14 '86올지연습 실시(~19일)</p>	<p>4 북한·소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25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소련 양 비행대의 상호방문 및 소련 합정 북한 방문</p> <p>8 과학원 부원장(신문규) 일행, 소련 방문</p> <p>21 조국전선 결성 40주년 기념 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p>2 성바오로2세, 해방신학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학전통에서 이탈할 수 없다 강조</p> <p>4 일본 공동통신, 중공은 북한·소의 군사유착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p> <p>5 필리핀 반미 시위격화, 좌익 군중 5,000여명 경찰과 충돌</p> <p>9 美, 아시아 등 재외 20개 공군기지를 핵적재 전폭기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미하원 청문회 자료)</p> <p>10 일·중공, 원자력협정 체결</p> <p>11 美 해군함정 2척, 중공의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군함의 입항금지 발표 1년만에 상해 입항</p> <p>16 미국, 미·소는 핵금지회담을 6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p> <p>18 일본방위청, '87회계년도 방위비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3조 5,800억엔 요구키로 함</p>

198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31 육군, 스테인리스개발 평식기 보급	25 이삼 안나예브 시리아 외무담당 국무상, 북한 방문(~29일)	28 고르바초프 蘇서기장, 아프가니스탄 蘇軍 6개 연대를 연내 철수시키겠다고 밝힘
8	1 ·한·미 공군간 비행자료 단말기(FDT) 운영절차 합의각서 체결 · 접근관제소간 항로교통관제업무 합의각서 체결(접근관제 권한 및 책임 이양) 5 철원북방 12km지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총격도발(쌍방 초소간 800여발 총격전) 7 국방부정책회의, 한·미 연합사 구성군사령부 지휘체제 변경 결정 18 제11차 국제군사사학회 서울대회(쉐라톤 워커히)	4 파키스탄 국회대표단(단장 상원부의장 모아마드 알리칸), 북한 방문(~12일)  11 8·15해방 41주년기념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4 美 워싱턴타임즈지, 소련은 북한의 원산항을 제2의 캄란항화하고 있다고 보도  8 美하원, 소련이 핵실험 유예정책을 지속하면서 미국도 대부분의 핵실험을 1년간 중지키로 가결  11 미·소 모스크바 핵군축회담 개최(~12일)  16 日 朝日신문, 蘇체르노빌 원전, 핵사고(4월 25일)는 45년 광도투하 원폭보다 30~40배의 방사능을 방출할 것으로 蘇보고서를 통해 보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19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서 북한군 총격도발	19 외교부, 소련의 핵실험중 지 연장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0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한 국공군의 비상대기 항공기 주기시설의 건축/운영 합 의서 체결	20 중공청년대표단 206명, 북한 방문(~9월 2일)	
	25 해군본부, 한·미간 유도 탄 고속함(PGM 351) 대여 연장 협정서 체결		25 일본 공동통신, 북한은 최근 소련해군 함정의 남포 항 기항을 허용했다고 보도
	26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행정군수지원에 관한 양해 각서 체결		31 美 NYT지,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 분석에서 한국 2,200달러, 북한 900달러로 추정
9	3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총격도발	2 軍총참모장 吳克列을 단 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 루마니아·헝가리·동독을 방 문(~20일)	
	4 국가안전기획부, 서울사대 교수 이병호 등 간첩단 7명 검거 발표		
	8 삼성반도체통신, 최첨단 반 도체인 256KD램 개발에 성 공		

198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1 호남고속도로 4차선 개통</p> <p>14 김포공항 1층 입국장에서 폭탄 폭발로 5명 사망, 30여명 부상</p> <p>20 제10회 서울아시아게임 개막(~10월 5일) 25개 종목, 27개국 4,797명 참가</p> <p>29 崔兪洙 외무부장관, 뉴욕서 솔츠 美외무장관과 회담, 한반도 정세, 양국간 정세문제 등 협의</p>	<p>19 • 중공 秦基偉 북경 군구 사령관 방북, 김일성 군총참모장 오극렬과 면담 • 쿠체 니제르 국가원수 북한 방문(~21일)</p> <p>24 야루젤스키 폴란드 당 제1서기, 방북하여 김일성과 회담(~28일)</p>	<p>16 제41차 유엔총회 개막 159개 회원국, 5개 업저버 국가대표 참석</p> <p>21 유럽군축회의, 우발전쟁 방지를 위한 일련의 군사정보관리 조치에 잠정 합의</p> <p>26 국제원자력기구 특별회의(빈) 52개 참가국들 핵사고에 관한 국제협력증진협정에 서명</p>
10	<p>9 해군본부, 한·미 해군간 한·미 주요방위물자 이양 합의 각서(No. 2 시행) 체결</p>	<p>3 이선념, 중공국가주석, 북한 방문중 김일성과 회담</p>	<p>1 미국, B-1B 전략폭격기 1개 비행대 실전배치</p> <p>11 미·소 정상회담(레이카비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13 주한 유엔군사령관, 정전 위, 유엔측 수석대표에 펜 들리 소장 임명	13 남예멘과 최초로 무역협 정 체결	20 로널드 헤이스 美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소련과 북한 이 지난주에 동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
	18 해군사관학교 제41기 순 항훈련분대 출항	22 북한 김일성, 소련 방문 하여 고르바초프와 두차례 정상회담(~26일)	
	24 중공조종사 정채전(26세) 미그-19기 몰고 귀순 망명	27 사리원경기장의 대규모 개축 확장공사 완공(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대비로)	
	26 '86쌍용훈련(~31일)		
	30 이규효 건설부장관, 북한 의 금강산 수전댐 건설은 하류지역의 안전을 위협하 는 것으로 공사중지 촉구		
11	1 공군본부, 한국공군 및 미 해군간의 연료, 자원합의 각서 체결	2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 원 선거(655명 선출)	5 美해군함선 3척이 중국 靑島에 입항(~11일)
	5 국제 한국전참전 향군연맹 제3차 총회(엠버서더 호텔)	6 소련 10월혁명 69주년 맞 아 각종 친소우호 기념행사 개최	
	6 李基百 국방부장관, 북한 의 금강산댐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자위책 강구 성명 발표		

1986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4 주한 美8군사령부, 중장 거리 랜스미사일을 극동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p> <p>17 • 국방부, 북한은 17일 대남 확산기로 김일성 피격 사망을 방송했다고 발표 (18일 사망설은 사실무근으로 판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참모본부, 한·미간 한국정보지원체제 터미날 설치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li> <li>• 주한미군 부동산 해체에 따른 협의서 제출</li> </ul> <p>26 국방, 건설, 문공·통일원 4부장관 합동담화, 북한의 금강산 댐, 축조위협에 대응할 평화의 댐 건설 발표</p> <p>27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개최</p>	<p>18 • 바트문흐 몽고국가원수, 방북, 20년 유효 친선협조조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 대회를 11년만에 개최(인민문화회관)</li> </ul>	<p>13 美·蘇 핵실험금지회담 (~25일, 제네바)</p> <p>25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 인도 방문</p>
12	<p>3 외무부, 한국은 남극조약 및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적대적 사용금지협약(EN-MOD)에 가입했다고 발표</p>	<p>1 소련 군사대표단(단장 군 총정치국장 리지체프 대장), 북한 방문하고 북한군의 훈련상황 평가(~6일)</p>	<p>4 온두라스, 니카라과 정부군의 월경침공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5 제14차 한·일 정기각료회담 개최(~6일, 동경)</p> <p>7 육·해·공군의 군건사육을 육군에서 통합지원</p> <p>10 환태평양 국가회의 개막 (서울)</p> <p>15 육군본부, 한·미 육군간 미육군 급수지원 협정서 체결</p> <p>16 한국·북한·일본·중공, 아시아 태평양지역 해상수색 구조회의 개최(~20일)</p> <p>19 '86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23 한국국방연구원법 공포 (법률 제3861호)</p>	<p>16 미국 공산당 전국위원장 (헨리 윈스톤) 病死에 당 중앙위원회 弔電발송</p> <p>17 중앙방송, 청천강하류 간척사업에 군병력 투입하여 추진, 착공했다고 보도</p> <p>25 북한,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 관한 백서 발표</p> <p>29 북한, 제8기 제1차 최고 인민의회 개최(~30일), 국가주석에 김일성, 총리에 이근모 선출, 김일성 남북한간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p>	<p>6 레이건 美대통령, 對이란 무기 밀매사건은 정책수행에 실수였다고 발표</p> <p>11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발효</p> <p>16 美국무부, 한국군사판매차관(FMS) 공여계획 종결을 발표</p> <p>19 중공 상해 대학생 2,000여명 민주화 시위, 20일, 21일 전국 7개 도시로 확산</p>

# 198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예비군 얼룩무늬 복장을 현역과 동일한 국방색 전투복으로 개정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보안업무시행규정(육규230) 전면 개정</li> <li>• 국방부, 한·독간 목록자료 협정에 서명</li> </ul> <p>7 • 李基百 국방부장관, 장병이념교육강화 지휘서신 하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총격도발</li> </ul> <p>12 金斗煥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중대결단 없도록 합의 개헌 촉구</p> <p>15 북한의 김만철일가 11명 배편으로 북한 탈출, 20일 일본 쓰루카항 도착, 2월 10일 서울의 누나와 상봉</p> <p>21 대간첩대책중앙회의(청와대) 개최</p> <p>27 국방부, 한·불 군수물자에 관한 품질보증기술협정 체결</p> <p>28 李基百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p>	<p>14 祖平統,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 대한 호응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p> <p>21 무가베 짐바브웨 수상, 북한 방문(~23일)</p>	<p>1 북경 대학생들, 민주화 시위 계속</p> <p>12 美국방부 보고서, 소·북한 밀착이 극동에 중대위협이라 지적. 미합참 보고서, 북한공군력 증강 사실 밝힘</p> <p>27 헤이스 美태평양군 사령관, 소련의 미그-31기 및 AS15 순항미사일의 극동 배치 사실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30 북한 이근모 총리·오진우 인민무력부장, 공동명의의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2월 14일 노신영 총리·이기백 국방장관 최고책임자 회담 촉구)	
2	<p>18 국방부, 한·미간 한국형 전차에 관한 양해각서(부록 4, ROYALTY FEE) 체결</p> <p>19 • 팀스피리트 '87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시(~5월 9일) • 대학생 전방훈련 선택 제도 시행</p> <p>20 한·미 연합사령관 메네트리 대장 취임</p> <p>28 정부, 강원도 화천댐 상류에서 평화의 댐 착공</p>	<p>12 북한, 남북한체육회담(로잔)에서 서울올림픽 종목 북한 배정안 원칙수락</p> <p>18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준비 위해 社勞靑 초급일군대회 개최</p> <p>27 외교부,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p>	<p>13 蘇, 동해·태평양 해역에서 대규모 기동훈련(~19일)</p> <p>19 일본, 첫 지구관측 위성 MOS 1호 발사</p>
3	<p>2 • 학군사관 제25기 임관식 • 한국국방연구원 개원(구 국방관리연구소)</p>	<p>2 북한·중공·소련·몽고간 철도화물 수송의정서 조인(평양)</p>	

198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6 슌츠 美국무장관, 중공 방 문후 내한, 全대통령과 현 안 논의</p> <p>7 북한군 유천수(24세) 하 사 서부전선으로 귀순</p> <p>9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p> <p>12 재향군인회 제28차 정기 전국총회</p> <p>15 日本對韓經濟交流촉진 사절단 내한(279명)</p> <p>17 盧信永 총리, 李基百 국 방부장관, 북한의 대남서한 에 대한 회신에서 水資源회 담(3월)과 적십자 및 경제 회담(4월)을 우선 개최후 총리회담 갖자고 제의</p>	<p>10 므위니 탄자니아 대통 령, 북한 방문, 농업분야 지원요청(~13일)</p> <p>11 대동강 상류에 成川갑문 준공</p>	<p>6 • 국제 유가, OPEC 산유 량 감축으로 배럴당 18달 러선 돌파 • 쏫 여객선, 헤럴드 오브 엔터 프라이즈호 벨기에 앞 바다에서 전복, 160명 사망</p> <p>13 WHO, 세계 AIDS 등록 환자 91국에 4만 2,404명으 로 집계</p> <p>17 • 미·소·일·EC, 핵융합原 電 공동연구키로 합의 • 아미티지 美국방차관 보, 북한이 필리핀 반군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증언</p> <p>23 美국방부, 소련이 한국을 목표로 한 미사일 훈련을 실 시했다고 蘇군사력 보고서 에서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5 • 全斗煥 대통령, 盧泰愚 민정당 대표에게 정국주도권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사관학교 제43기 졸업식</li> </ul> <p>26 국방부 정책회의(제39주년) 국군의 날 행사계획 검토결정</p> <p>27 공군사관학교 제35기 졸업식</p> <p>31 해군사관학교 제41기 졸업식</p>		<p>28 싱가포르 유조선 페르시아만에서 미사일 피격으로 한국인 선원 5명 사망</p>
4	<p>13 • 全斗煥 대통령, 현행헌법으로 1988년 2월 정부이양하고 대통령 선거를 年内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키 벨 벨리즈 총리 방한(~17일), 한국과 대사급 수교합의</li> </ul>	<p>11 북한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제3차 집행위원 확대회의에서 북한 통일방안 지지서명 확대 유도</p>	<p>3 일·프랑스 전문가들, 일본은 40년동안 지켜온 평화주의 정책에서 재무장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p> <p>13 미·소 외상회담(~14일, 모스크바)</p>

198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14 全斗煥 대통령, 言基法 개정. 金壽煥 추기경, 개헌의 꿈이 깨져 국민에게 슬픔을 주었다는 부활절 메시지 발표</p> <p>18 盧泰愚 민정당대표, 內外信 기자회견('88년 정권교체와 내각제 합의개헌 노력 재개)</p> <p>19 崔兪洙 외무부장관, 태국 방문(~24일)</p> <p>22 땅벌 '87 훈련실시(~25일)</p> <p>25 한·미 공군간 大川사격장 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p>	<p>14 북한, 한반도 화해·쌍무관계 개선 위한 실질조치를 미국에 요구</p> <p>18 평남 덕천소재 승리자동차공장에서 지형조건 맞는 자동차 생산독려를 위한 열기모임 개최</p> <p>25 軍창건 55돌 기념행사</p>	<p>16 蘇외무부, 아주 증거리 핵배치는 한국, 일본에 핵을 설치한 미국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주장</p> <p>23 美·蘇군축회담 제8차회의 개최(제네바)</p>
5	<p>4 · 국방부, 한·미간 탱고지휘소 확장공사 합의각서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미공군 통신케이블 매설작업 한계 및 책임(안)에 대한 각서 서명</li> <li>· 공군본부, 美공격헬기대대 등의 전투운영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li> <li>· 합동참모본부, 전구자동차지휘통제/정보관리체계(TACCIMS) 공동참여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li> <li>· 한·미 탱고지휘소 확장공사 합의각서 체결</li> </ul>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5 제19차 한·미 연례안보협 의회의가 워싱턴(펜타건) 에서 李基百 국방부장관과 와인버거 미국방장관간에 개최(~7일)</p> <p>6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 부개정(일반예비군을 지역 전투군으로 개칭)</p> <p>8 李基百 국방부장관, 미국 으로부터 F-16기 36대를 도입중이며 전투기의 공동 생산도 추진중이라고 밝힘</p> <p>10 섬머타임제 실시(~10월 11일)</p> <p>11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경 호 경비에 관한 한·미간 합 의각서 체결</p> <p>14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항 로 관제소간 협조절차 체결</p> <p>20 과학기술처, 1996년까지 실험용 위성발사 내용의 우 주개발계획안 마련</p>	<p>5 인민군 協奏團 창립 40돌 맞아 代이은 근위대·결사 대로 준비해 나갈 것을 다 짐하는 기념보고회 개최</p> <p>11 소련, 해군 대표단(단장 국방부상겸 해군사령관 울 라지미르 체르나빈 대장), 북한 방문(~16일)</p>	<p>11 피지 쿠데타 발발</p> <p>16 소련, 신대형로켓 에네르 기아 발사성공</p> <p>17 ·미군함 스타크호 페르시 아만에서 이라크기에 피격 37명 사망, 18일 레이건 대 통령, 페르시아만을 항해하 는 미군함에 경계강화령 내 립, 20일 아지즈 이라크 외 무장관 조종사가 이란함정 으로 오인했다고 해명</p>

198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27 제5대 한·미 연합야전사령관 취임(번톤 D. 패트릭 중장)	21 김일성, 중국 방문(~26일)  31 노동신문, 올림픽 전종목이 서울에서만 개최되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도	17·일본 경제신문, 蘇태평양함대가 작전해역을 동해에서 태평양까지로 확대했다고 보도  28 서독청년 루스트군, 체스나 경비행기로 소련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 착륙, 30일 蘇국방장관 해임
6	3 전두환 대통령, 제4차 평통 자문회의에서 최고책임자 회담 촉구  4 동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 국산소형 잠수함 선보임  5 제18대 공군참모총장에 徐東烈 공군 대장 취임  8 우산유 버마 대통령 방한(~12일), 교역확대, 기술협력 등 합의		1 서독은 소련이 제의한 중거리·단거리 핵미사일 철거안을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수락  5·WHO, AIDS 환자가 111개국에서 5만 1,751명에 이르렀다고 경고 ·중공, 신강위구르 자치구에서 '84년말 이래 첫 지하핵실험 실시  7 일본 공동통신, 美정부는 북한이 日에서 수입한 대형트럭을 미사일발사대로 개조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3 국방부 군무회의, 정년 및 진급최저 복무기간 개선안 결정</p> <p>16 육군본부, 한·미육군간 카투사 병력충원 합의 서명</p> <p>17 국방부, 북한군 홍명진 중사 1명이 철원부근 비무장지대를 넘어 귀순해 왔다고 발표</p> <p>23 원전 7·8호기 준공(전남 영광, 발전설비용량 19만 kW)</p> <p>24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p> <p>25 제5대 한·미 연합사령관 취임(루이스 C. 메네트리 대장)</p>	<p>9 · 비동맹회의 평양에서 개막 · 김일성, 외채 상환연기 촉구</p> <p>19 북한·중앙아프리카간 신규 경제협력사업 모색 위한 공동위 의정서 조인(평양)</p> <p>23 쿠바산 식료품·의약품·화장품·신발류 등 경공업 제품 전람회 개최(평양)</p> <p>25 美帝반대투쟁의 날 37주년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p>	<p>17 소련 공산당, 영공침범과 관련 방공군 모스크바 지구 사령관 등 대규모 숙청</p> <p>18 美下院外交亞太小委, 여야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대한결의안 채택</p> <p>20 일본 讀賣신문, 소련은 일본의 불법수출기기를 장착한 저소음 핵잠수함을 태평양 해역에 실전배치했다고 보도</p> <p>22 美 국무부, 군의 간여는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p>

198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7 귀순 북한군 중사, 북한은 명동거리 모형을 만들어 침투, 파괴훈련중이라고 폭로</p> <p>29 盧泰愚 민정당대표 6·29 선언,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 김대중씨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등 시국수습을 위한 8개항 선언, 30일 全대통령에게 건의</p>		<p>27 美상원 본회의, 對韓민주화 결의안 통과</p> <p>29 일본 讀賣신문, 소련은 캄차카 반도 남단에 陸·空통합 사령부를 설치했다고 보도</p>
7	<p>1 육군, 보급경제 확인감독의 날을 군수지원태세 확인의 날로 개칭</p> <p>4 국방부 군무회의, 3군공통 품목 통합구매 결정</p> <p>13 내각 대폭개편, 총리에 김정열 전 국정자문위원, 제25대 국방부장관에 정호용 육군참모총장 기용(취임 7.14)</p>	<p>1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26주년기념 영화감상회 및 연회 개최 (평양)</p> <p>3 7·4남북공동성명발표 15주년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p>	<p>2 美국무부,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시국수습방안을 즉각 수락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p> <p>7· 美국방부, 세계군사현황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84년 현재 78만명으로 세계 8위로 분석 · 소련, 지하핵실험 실시 (금년 9회)</p> <p>11 세계인구 50억의 날, 유엔 제정</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6 국방관리회계제도 시범 (육군 제9사단)</p> <p>21 전국에 큰비로 피해 막심(24일 전군에 동원령)</p>	<p>15 군정치일군 대표단(단장 소장 김덕현), 소련·루마니아 방문키 위해 향발</p> <p>23 ·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가 업저버로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협상을 '88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하자고 제의(미국무부 이를 거부) · 남북한 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5개항 성명 발표</p>	<p>20 유엔안보리, 이란·이라크 전쟁 즉시 휴전요구 결의를 채택</p> <p>22 소련우주선, 소유즈TM3호 발사(시리아인 1명 포함 3명 우주비행사 탑선)</p> <p>31 소련, 미·소 포괄군축회담에서 전략무기삭감에 관한 조약 초안 제출</p>
8	<p>3 정부, 북한에 남북외무장관회담 개최를 제의</p> <p>15 독립기념관 개관</p> <p>17 울지포코스렌즈 '87연습 실시(~22일)</p> <p>31 제6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취임(정진태 대장)</p>	<p>7 인민군최고사령부, '87년 12월까지 장병들을 10만명 감축할 것이라 발표</p> <p>17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총참모장 오극렬) 중공 향발(~26일)</p> <p>19 空軍節 40주년 기념보고대회 개최</p>	<p>18 蘇타스통신, 110번째 원소 발견 보도</p>

198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4 제16대 해군참모총장에 김중호 해군 대장 취임</p> <p>13 시거 美국무차관보 내한 (~10월 1일)</p> <p>18 한국형 전차명명식 및 화력시범(88전차) 승진훈련장</p> <p>24 국방부, 한·미 정부간 군사기밀보호 보안협정</p> <p>26 · 국방부 군무회의, 해병 지휘체제 검토, 통합방공작전체제 개선안 결정 · 소말리아와 국교수립</p> <p>30 국방부, 주한 볼리비아 무관부 상주개설</p>	<p>10 인민무력부, 북한의 병력이 42만명이라 발표</p> <p>23 북한 해군경비정, 일본 선박 2척 나포</p> <p>26 김일성, 도이다카코 일본 사회당위원장과 회담</p>	<p>4 蘇, 영해침범 서독청년 루스트군에 강제노역 4년형 선고</p> <p>15 · 미·소, 양국 수도에 핵 위험감소센터(NRRC) 설치 협정 체결 · 美, PLO 워싱턴사무소 폐쇄 조치</p> <p>18 미·소, INF 전폐 합의 공동성명 발표</p>
10		<p>2 북한 허담, 북한은 언제라도 미국과 직접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日 매일신문과의 회견에서 밝힘</p>	<p>1 일본 사회당, 일본정부에 對北韓관련 정상화 촉구</p> <p>3 이란·이라크, 정식단교·양국대사관 폐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7 제31진영호, 백령도 서쪽 공해상에서 조업중 북한 경비정에 피격·침몰 (선원 11명 사망, 1명 구조)</p> <p>10 포드 전 미국대통령, 일 해연구소 초청으로 방한 (~12일)</p> <p>23 • 국방부, 한·말 과학기 술자 교환협정 체결 • 한국형 초계전투함 원 주함 진수</p> <p>26 제2회 국제군인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p> <p>27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찬성 93.1%, 29일 순대통령 개헌안 확정 공포)</p>	<p>6 日외무성, 북한에 억류중 인 선원의 석방문제대책을 협의, 김일성이 공식협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했다고 밝힘</p> <p>15 나포했던 일본어선 제1 요싱마루와 제18요싱마루 및 선원을 일본으로 송환</p> <p>23 김일성, 동독 인민군대표 단(단장 동독민족보위성 부 상겸 인민군 총참모장 프리 스 히트렐레스)과 면담</p>	<p>19 美해군, 페르시아만에 있 는 이란의 해상석유기지 공격 파괴(유조선의 미사 일 공격에 대한 보복)</p> <p>20 美 뉴욕 증시, 1929년 대 공황이후, 최악의 폭락사태</p> <p>21 蘇 모스크바 방송, 북한의 병력은 60만명이라 보도</p>

198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29 국방부 정책회의,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안 결정	30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말 리 군사대표단(단장 세꾸 리 국방장관)과 회담	30 미·소 외상 워싱턴에서 INF전폐조약 조인을 위한 회담 개최
11	1 ·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1973년 10월 10일 해체) · 육군, 쌍용훈련(~5일)  2 해병대사령부령 제정 공 포(대통령령 제12265호)  4 해안선 야간통행금지 해 제  6 국방부, 1973년 12월~87 년 9월 국민의 방위성금 468억 5,600만원으로 밝힘  9 경제기획원 '85 인구·주택 센서스에서 총인구는 4,044 만 8,486명(세계23위), 총 가구수 957만 1,000 가구로 집계  16 낙동강 하구둑(2,400m) 준공	3 김일성, 방북중인 노르돔 시아누크와 면담  6 사회주의 10월혁명 70주 년 평양시 기념집회 개최  11 평양방송, 한국은 조국전 선·조통연합회의 對韓서신 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잠 정조치로 상호비방중지 등 5개항을 제의했다고 보도	2 일본정부, 북한을 탈출해 한국명명을 요청중인 민홍 구 전 북한군 하사 석방  11 영국제 전략문제연구소, 군사력균형(1987~88)에서 병력은 한국이 62만 9,000 명, 북한은 83만 8,000명으로 밝힘  12 일본사회당 보고서, 소련 은 대북한 군원증가는 아시 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21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서 북한군 총격도발로 아 군 1명 부상		
	24 鄭炳宙, 前특전사령관 金 晉基 前육군헌병감 공동기 자회견에서 12·12 사태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명백 하다고 밝힘	25 노동신문, 북한은 12월의 대통령선거가 끝난후 서울 올림픽 참여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보도	26 홍콩 파이코노믹리뷰지, 북한은 경제난으로 한·미 와의 타협을 통해 군비삭 감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도
	27 국방부, 전군 지휘관회의	27 방글라데시 민족당총비 서 사호무하짐 후세인 일 행 평양 도착	
	29 KAL보잉707여객기, 승 객 등 115명을 태우고 바 그다드에서 서울로 오던 중 버마근처의 안다만 바 다 상공에서 폭발·추락(탑 승객 115명 전원 사망)		
30 범국민운동추진위, 평화 의 댐 건설지원 모금액, 652억 4,000만원으로 발표		30 고르바초프 蘇서기장, 미 국이 72년의 ABM(요격미 사일) 협정을 위반하지 않 는 한 미국의 SDI계획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밝힘	
12	1 공군본부, 한·미 북한공군 전투서열 회의 행정절차 합의각서 체결	1 東歐소식통, 북한이 서울 올림픽 거부운동을 벌이더 라도 중공은 이에 참가할 것이라고 북한에 통보했다 고 밝힘	

1987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3 중부고속도로(서울~대전 145.3km) 개통				2 美 LA 타임즈지, 한국군 부 개입의 결과로 권력을 잡는 어떠한 정부도 미국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4 국군조직법 개정(법률 제 3994호) 공포				3 • 일본 경제신문, 북한은 보유전투기의 약 3분의 1인 299대를 휴전선 80km 이내로 전진배치 했다고 국제 군사소식통을 인용 보도 • 美 WP지, 매네트리 주 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서 전술 핵을 사용할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 • 美·蘇, 大量有人 탐사계획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	
	7 정부, KAL기 폭파혐의자 하치야 마유미의 신병인도를 바레인에 요청		6 세계민주청년연맹위 위원장 왈리드 마쓰리·총서기 체르베네 빌모쓰, 평양에서 진행될(12. 8~11) 세계민주청년연맹집행위원 회의 참가차 방북		4 美, 발전용량 3,810kW의 최대 상업용 핵발전소 준공	
					7 日本 공안당국 소식통, KAL기 실종사건을 대남 무력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김정일 측근세력에 의해 자행된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9 한·바레인, KAL기 폭파 혐의자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의 死體를 한국측에 인계키로 합의</p> <p>14 '87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15 • 육군본부, 지상구성군 사 작전중 1군단 지원의 美 2사단 책임규정 체결 • 한국 남극과학기지 건설팀, 킹조지섬에 도착(16일 기공식 거행)</p> <p>29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에서 GNP대비 한국은 북한의 5.5배라고 발표</p> <p>31 제22대 합참의장에 崔世昌 육군 대장 취임</p>	<p>8 세계민주청년연맹집행위원회 회의 개막(평양)</p> <p>11 오극렬 군총참모장, 중공군, 심양군구사령관 유종성과 회담</p> <p>14 최고사령부, 10만군 병력을 감축했다고 발표</p> <p>28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주 소련대사 바르토크비치와 회담</p>	<p>8 美·蘇 정상회담(~10일, 워싱턴), 중거리 핵전력(INF)폐기협정에 조인, 서울올림픽, KAL기 사건도 논의</p> <p>14 일본 방위청, 소련 극동군에 최신예 최대 특수정보함이 배치된 사실이 처음 확인되었다고 밝힘</p> <p>19 중공 중국신문, 중공은 산둥·교동 반도를 대외적으로 완전개방해 외국의 자본·기업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보도</p> <p>29 홍콩 언론, 중공은 한국·중공간 직접무역에 대해 북한측 양해를 얻었다고 보도</p> <p>31 • 일본정부소식통, 일본은 한·중공 국교수립추진 등 한국의 대중공 관계개선 구상을 외교경로를 통해 중공에 전달하고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일본 매일신문, 일본정부는 한·중공 관계개선이 괄목할 만큼 추진될 경우 대북한정책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5 • 안기부, KAL858기 폭파사건은 서울올림픽 참가 신청 방해를 피한 북한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대남공작원 김승일(70세)과 김현희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p> <p>18 國防大賞 시상식(청와대)</p> <p>19 李奎浩 駐日大使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일본정부에 북한과의 교류를 제한할 것 등의 對北韓 制裁조치 요청</p> <p>20 서울올림픽조직위, 올림픽회관 광장에서 161개 올림픽참가 신청국 국기제양식 거행</p> <p>21 대간첩대책중앙회의(청와대) 개최</p>	<p>18 시리아 정부, 군사대표단(히크마트 알 쉐하비 총참모장) 방북(~26일)</p> <p>21 중앙통신, 군사훈련 중단 등 남북한간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게 될 것이라고 보도</p> <p>24 노동신문, 미국과 남한당국에 군축협상 수락 촉구</p>	<p>16 중공, 북한의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남북한 양국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p> <p>18 일본 TBS-TV방송, 북한은 해외공작원 훈련을 위해 일본, 마카오 등에서 젊은 여성을 납치해 공작원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고 최은희·신상옥 부부의 말을 인용 보도</p> <p>20 美 國 軍 部, 미국은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북한을 국제적 테러국가로 규정하는 등 3개항의 대북한 제재조치를 발표</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27 국방부, 향토방위작전용 배낭세트 향방소대당 1세트 제작보급	27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미국의 남한내 핵기지화 규탄 담화	26 • 일본정부, KAL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인적교류제한 등 7개항의 대북한 제재 조치 발표 • 유럽공동체(EC),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된 대북한 규탄 공동성명 발표
2	4 국방부, 한·미간 155밀리 자주포 공동생산 양해각서 수정1호 체결 5 鄭鎬溶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	5 祖平統, 서기국 보도 제 435호 발표, 해군 화생방부대 창설관련 9 박길연 유엔 북한상임대표, KAL기 폭파사건은 남한당국의 자작조작극이라 밝힘(기자회견에서)	4 美, 미사일관련 컴퓨터시스템 등 첨단기술에 대한 對西方 금수조치 완화 6 중국, 국산 최신형전투기(F-8 II) 실전 배치 8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 아프가니스탄 철병일정 발표(3월 15일 협정조인, 5월 16일 철수개시, 10개월간에 철수 완료) 10 한·일 정부, 북한의 KAL기 폭파 만행을 심의하도록 유엔안보리의 소집을 요청
	11 • 제6공화국 초대 내각의 국무총리에 李賢宰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내정 • 국방부 확대정책회의 '88서울올림픽대회 지원체제구성(안) 결정		11 국제조종사연맹(IFALPA), 북한을 범법국가로 규정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12 팀스피리트 '88훈련개시 (~5월 11일)</p> <p>16 합동참모본부, 한·미군간 장기연합연습계획 수립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p> <p>17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총격도발(북한측 오발 시인)</p> <p>22 국방부, 군에 대한 언론 보도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보도</p> <p>23 재향군인회 신축회관 준공(지상 12층, 지하 3층)</p> <p>25 · 제13대 盧泰愚 대통령 취임 · 군사법원법 시행(군법회의→군사법원)</p> <p>26 · 제26대 국방부장관에 吳滋福 취임 · 육군, '53. 10. 2~'59. 6. 19 실시되다가 중지된 제2훈련소 훈련병 면회제도 부활(29년만에 면회 허용)</p>	<p>21 · 오극렬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후임에 최광 기용 · 김정일花 育種 · 정부군사대표단(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소련군대 및 해군함대節 70돌 행사참가차 평양 출발</p> <p>25 노동신문, 서울 미문화원 점령사건을 “미제에 대한 애국적 항거”라고 찬양</p>	<p>13 소련, 세미파라친스크에서 20~150Kt급 지하핵실험</p> <p>15 · 미·일본, 일본남부 규슈 지방에서 대규모 해·공군 합동군사훈련 실시 · 미국, 네바다실험장에서 150Kt급 지하핵실험</p> <p>22 소련국방상, 중·소 국경의 소련 지상병력의 실질병력 감축 발표</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29 이란·이라크, 상호 수도에 미사일공격 개시
3	1 • 예비군 연한제 교육 실시 • 동원지정된 차량표지방법 페인트에서 접착식 스티카로 변경 3 학군사관 제26기 임관식	3 노동신문, 노태우 대통령의 서울올림픽대회 초청 거절	2 • 중국 광명일보, 레닌의 제국주의론 비판하는 논문 게재 • 중국, 對韓 교역 촉진창구로 홍콩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함 5 소련, 국영기업에 경쟁을 보장하고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사기업장려법안 마련 8 슐츠 美국무장관, 오학겸 중공의상과 2차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및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논의
	11 정부, 3단계 해외여행 자유화방안 마련(1988년 35세, 1989년 30세, 1990년 완전자유화)		
	17 吳滋福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	17 부산문화원 방화사건 6돌기념 평양시 보고회(사로청 중앙회관)	
	18 吳滋福 국방부장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19 일본경제신문, 미국의 한국내 전시 비축사업은 미군 감축의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3 • 해군본부, 한·독 해군간 품질보증협약 체결 • 해군본부, 한·독 해군간 교육훈련협약 체결</p> <p>25 공군사관학교 제36기 졸업식</p> <p>26 김창화(30세), 어성일(31세), 북한을 탈출해 중공을 거쳐 한국에 망명</p> <p>28 국방부, 한·영 군수물자 등에 관한 정부품질보증 양해각서 체결</p> <p>29 • 국립묘지 호국관 개관 • 육군사관학교 제44기 졸업식</p> <p>31 국방부, 한·미 야전사를 위한 행정 및 군수지원 합의각서 체결</p>	<p>21 팀스피리트 '88 훈련실시에 관한 최고사령관 전투동원태세 명령하달(훈련중지 촉구)</p>	<p>27 일본 공동통신, 미국은 일본에 비밀군사 기술특허를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보도</p> <p>28 북한, 蘇와 6개월 동안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해 왔다고 밝힘(제레미아 美태평양함대사령관)</p> <p>30 中·蘇, 서울올림픽후 한국에 무역사무소를 각각 개설할 것이라고 밝힘</p>
4	<p>1 육군, 분대장 양성교육제도 개선</p>	<p>2 4·3제주도항쟁 40돌기념 평양시 보고대회(모란봉극장)</p>	<p>1 치탈렌코 蘇국동연구소장, 소련은 극동에 경제특구 설치 검토중이라고 밝힘</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7 해군사관학교 제42기 졸업식</p> <p>11 육군본부, 전시항공전력 통합운영을 위한 한·미간 합의각서 체결</p> <p>19 한국형 구축함 전남함 진수식</p> <p>20 · 국방부, 수도권 9개 지역에 대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 국방부 정책회의, 620지역 군무원임대아파트 건립 검토(안) 결정</p>	<p>3 · 조국전선 대변인, 일본당국의 제일조선인 출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재입국 거부관련 담화 발표 · 광주사태 치유방안 관련 보도 발표</p> <p>4 · 김일성종합대학 학생회, 6·10 남북학생대표 실무회담 수락 · 남한당국 노동운동 탄압 규탄 평양시 노동자 집회(중앙노동자회관)</p> <p>19 소련 군사대표단(국방성 제1副相 대장 표트르 루세브) 방북</p>	<p>4 에티오피아·소말리아, 11년만에 국교회복</p> <p>6 소련·아프가니스탄, 소련군철수 등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p> <p>23 홍콩 성도일보, 한국과 중국은 서울올림픽기간중 KAL기의 중공영공 통과를 합의했다고 보도</p> <p>25 美 워싱턴포스트紙, 한·미간 미군감축 연계 등에 관해 공개논의를 개시했다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29 • 재향군인회 제30차 정기 전국총회 • 공군본부, 필승사격장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 체결	29 김영남 외교부장, 소련의 상 세바르드나제와 회담 (모스크바)	29 美, 한국에 방위비 분담, 대필리핀 경제지원 요구
5	1 김정민, 북한사회안전부 소속 전 고위간부 4월 19일 유럽주재 한국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3 합동참모본부, 한·미 상호 운용성위원회 양해각서 체결  4 국방부, M-16소총 제3국 수출 미의원 주장 일축	1 朝平統,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기자회견(4월 21일) 관련 공개문장 발표	6 • 일본 産經신문, 한국정부는 미국 등을 통해 북한과 대북경제원조 제공의사를 전달했다고 한국소식통을 인용 보도 • 일본 共同통신, 美행정부는 아·태지역에 주둔한 미군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美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다고 보도  7 일본언론, 고르바초프 蘇 서기장은 동해연안국가들의 평화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 北·日, 蘇·中이 참가하는 環동해국제회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사회당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9 李洪九 통일원장관, 남북 대화와 관련 쌍방의 의사를 전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현단계에서 남북 대화 및 북방정책은 국민의 합의에 대한 정부의 추진이 바람직하며, 1년, 혹은 3년 단위 시한부로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힘</p> <p>11 태프트 美 국방차관·오자복 국방장관과의 회담(서울)에서 한·미 연합방위 증강에 한국의 기여금 증액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작전 중인 미해군 항공기의 정비를 위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p> <p>17 吳滋福 국방부장관, 제6차 5개년계획(1987~1992) 재정운영방안과 관련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과의 군비경쟁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방위비 증가율을 무작정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p> <p>18 국방부, 한·미 서울지휘본부건설 합의각서 체결</p>	<p>10 오진우(인민무력부장) 루마니아 군사대표단 면담</p> <p>12 소련 태평양함대전대원산 입항(사령관 케아호와토브 상장)</p> <p>16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군사대표단 인솔 중국 방문, 진기위 국방부장과 회담</p> <p>17 인민무력부 부부장에 김문섭 대장을 기용</p>	<p>10 · 홍콩 星島晚報, 중국은 대북한 송전량을 줄이고 무기공급량은 감축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고 보도</p> <p>· 미 월스트리트저널紙,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미해군 방위비를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보도</p> <p>17 日 産經신문, 허담 북한 노동당정치국원이 올림픽 참가, 유엔가입 및 남북대화 재개문제 등 협의 위해 4월말~5월초 서울을 방문했다고 보도. 한국정부는 17일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부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20 국방부, 민정당 당직자 초청 안보정세 브리핑</p> <p>27 평화의 댐 1단계 축조 공사 준공</p>	<p>19 등소평은 오진우와의 회담에서 중공은 한반도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힘</p>	<p>20 美 LA타임스紙, 美노드롭사의 F20전투기의 한국 도입과 관련 아시아문화여행사와 호텔사업 합자투자 명목으로 박종규 전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625만달러를 지불했었다고 보도</p> <p>23 美 WP지, 한국의 학생운동은 최우선과제였던 민주화 투쟁을 뒷전으로 미루고 통일과 반미감정을 최대 이슈로 부각시켰다고 보도</p> <p>26 메네트리 주한 미군사령관, 미상원 청문회에서 주한 미지상군이 철수한다면 한국군의 전쟁역지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증언</p>
6	<p>1 국방부, 입주영농 등 편의 위해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p> <p>4 국방부, 연합군사령부 통신비용 분담에 대한 한·미간 양해각서 체결</p>	<p>3 보천보전투승리 51돌기념 보고회(양강도 보천군)</p>	<p>4 일본 東京신문, 蘇는 사할린 거주 한국인의 일시귀국 허가문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7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 의회가 서울에서 오자복 국방부장관과 칼루치 美국방 장관간 서울올림픽의 안전 개최 보장 및 방산·기술협력분야 논의를 위해 개최 (~9일)</p> <p>8 • 국방부, 한·미 상호 군수 지원협정 체결 • 국방부, 한·미 방산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p> <p>10 올림픽지원사령부 발대 식(성남시)</p> <p>11 제27대 육군참모총장에 李鍾九 육군 대장 취임</p>	<p>8 軍停委 북측 수석위원, 6·10 남북학생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파견(판문점) 통보</p> <p>9 • 남북학생회담 북측학생 대표단 개성 도착 • 반일 6·10 만세시위 62 돌기념 평양시 보고회(모란극장)</p>	<p>6 美정부, 7,800만달러 규모의 하푼 대함미사일을 한국에 판매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p> <p>11 • 하라 일본 중의원, 蘇는 사할린 거주 한인교포들의 고국방문을 검토중이며, 서울올림픽 후는 구체화될 것이라고 소련 방문 후 귀국기자회견에서 밝힘 • 한·중 조선업계 7~8월 경 협의기구 구성 등 실무 회담 갖기로 함</p> <p>12 美 NYT지, 광주사태 당시 한국군은 병력이동에 관해 미국과 사전협의했다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5 국방부, 野黨(3당) 당직자에 안보정세 브리핑</p> <p>17 서울항공, 보잉737기 6대를 GPA社와 임대계약 체결</p> <p>24 동해에서 해군 대규모 해상훈련(통일-88)</p> <p>30 한국 서울올림픽대회 선수단 642명 확정 발표</p>	<p>13 • 남북학생회담 실현 위한 남한학생들의 투쟁지지 전국대학생연합회 대회(모란봉극장) • 8·15남북학생회담 지지</p> <p>18 북한 직맹위원장 김봉주, 6·10 남북학생회담 무산관련 담화</p> <p>26 •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잠비아 군사대표단 면담 • 6·25 반미투쟁의 날 즈음 각지 군중대회(함흥, 사리원, 혜산시)</p>	<p>16 환태평양 합동해상기동훈련(~8월 5일). 미·일·캐나다·호주 등이 참가</p> <p>24 美, 필리핀주둔 F-5전투기 1중대 등 5개부대 457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힘</p>
7		<p>2 祖平統 대변인, 8·15 북남학생회담 지지 성명</p> <p>4 • 김일성 하바롭스크시 도착 • 남북학생회담 북측대표, 국토종단대행진 및 8·15학생회담 토의의제 제시</p> <p>6 김일성 청진 도착</p>	<p>1 미·소 INF 전폐조약 이행확인을 위한 상호사찰 활동 개시</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7 • 국방부, 언론중진 초청 안보정세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대 한·미 연합야전사령관에 에드윈 H. 비바 중장 취임</li> <li>• 盧泰愚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 발표, 상호교류 이산가족 생사확인, 교역문호 개방, 남북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미·일관계 개선</li> </ul> <p>8 정부, 중공을 중국으로 공식 호칭키로 결정</p> <p>14 국방부, 한·미간 미공군 증원군용저장탄(MAGUNM) 지역운영지시에 대한 합의서 체결</p> <p>15 • 공군본부, 한·미 상호 소방지원협정서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한·미간 한국의 모든 시계비행규칙(VFR) 비행계획 등 협조절차 체결</li> </ul> <p>16 슬츠 美국무장관, 서울을 림픽의 성공을 확신하고 한국정치 발전과 변화의 제도화를 지지한다고 내한 도찰성명에서 언명</p>	<p>11 祖平統 위원장 허담, 盧 대통령의 7·7관련 비난 성명</p> <p>15 북한, 한국정부가 남북대 학생들의 조국순례대행진과 친선체육대회경기를 갖자고 한 제의에 대해 학생들의 교류문제를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서한을 거부</p>	<p>7 미국, 금년 8번째 지하핵 실험(소련과학자 30명 참관)</p> <p>8 蘇, 화성탐사선 발사</p> <p>18 이란·이라크, 정전에 관한 유엔안보리 의결 598을 수락</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9 吳滋福 국방부장관, '75년 7월 방위세 신설 이후 '87년말까지의 징수총액을 13조 5,101억원이라고 국회 국방위에서 밝힘</p> <p>22 국방부, 전군 지휘관회의 개최</p>	<p>20 조명록 공군대표단 중국 방문</p> <p>21 북한, 8월 평양에서 남북 국회 연설회를 개최하자고 제의</p> <p>26 북한,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림픽 참가 협상 용의있다고 밝히고 공동주최 문제도 국회회담에서 함께 다루자고 제의</p> <p>28 •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 부국장 윤민호 중장 사망 • 김일철 해군전대사령관 소련 방문</p>	<p>28 美, 화학무기 생산시설 위치 공개</p>
8	<p>1 정부,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고문방지협약에 가입키로 하고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결정</p> <p>2 국토통일원, 1989년부터 매년 대학생 40여명씩 국비로 중국·동구에 파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시킬 것이라고 밝힘</p>	<p>3 시아누크 부처, 김일성 접견</p>	<p>2 蘇 프라우다지, 한반도 문제해결은 남·북한의 정치협상뿐이라고 주장</p> <p>3 蘇, 세스나 경비행기로 불법착륙한 루스크군 서독 추방령(타스통신)</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4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8·15남북학생회담에 관한 공청회 개최</p> <p>6 대학생 300여명, 광주 美 문화원에 화염병 던짐</p> <p>10 서울지방 36.6도로 30년 만에 최고온도 기록</p> <p>11 대한적십자사, 남북 이산 가족찾기 신청 접수</p> <p>18 · 盧泰愚 대통령, 오자복 국방부장관에게 2000년대를 지향한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토록 지시 · 818계획 추진, 군사력 건설 군구조 개선(군사작전, 지휘체제 정립)</p> <p>19 남북 국회회담, 양측의 준비접촉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p>	<p>8 중앙통신, 8·15 남북학생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학생 1만여명이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국토종단 통일대행진을 시작했다고 보도</p> <p>15 남북 학생회담 북측학생 대표단 판문점 도착</p> <p>17 인민무력부 대변인, 남북 민족 합동음악축전 지지담화</p> <p>21 외교부대변인, 이란·이라크전 종식관련 담화</p>	<p>11 일본 공동통신, 미·일은 대전차·잠수함·전차방해·미사일추적 등 4개부문의 무기공동연구개발에 합의했다고 보도</p> <p>20 이란·이라크 휴전협정 발효</p> <p>23 서울올림픽 성화 채화, 그리스 올림피아 헬라신전 봉송 시작</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4 • 오자복 국방부장관, 오홍근 기자 테러사건과 군관련 의혹을 규명하도록 군기관에 경찰과 합동수사 지시 • 육군본부, 한·미간 특별지도 제작활동에 관한 내규 합의 체결</p> <p>25 국방부, 육군범죄수사단은 오홍근 기자 테러사건의 용의자로 육군정보부대 소령 등 현직군인 4명의 신병을 확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발표</p> <p>26 • 남북 국회회담, 제4차 준비회담(판문점 평화의 집) • 국회국방위원회, 오자복 국방부장관, 이종구 육군참모총장 등을 출석시켜 오홍근 기자 테러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소재 추궁</p> <p>30 국방부,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기자 테러사건 수사결과 발표</p>	<p>26 윤이상 음악토론회(평양 국제문화회관)</p> <p>30 북한창건 40돌기념 중앙연구보고대회(인민문화궁정)</p>	<p>29 蘇, 체공시험 우주인들의 건강점검을 위해 미르우주정거장에 도킹할 유인우주선 발사</p> <p>1 美, 서독내에 배치중인 퍼싱II 미사일 9기를 미국으로 철거시킴으로써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 철거개시</p>
9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3 • 정부, 북한·공산권자료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였다고 발표 • 소련 불쇼이발레단 내한 공연(세종문화회관)</p> <p>8 방위성금 폐지</p> <p>9 국방부 확대정책회의, 군 인사법 개정안 결정</p> <p>12 제94차 IOC 정기총회 개막(~16일)</p> <p>13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에 합의</p> <p>17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막(~10월 2일)</p>	<p>2 • 북한올림픽위 서울올림픽대회 불참 최종확정 발표 • 외교부, 한국정부수립 40주년 유엔총회 의제 상정 비난</p> <p>3 중앙통신,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p> <p>8 김일성, 고려연방제 통일안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선행조건 미군철수,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p> <p>9 9·9절 경축 평양시 100만 군중시위 및 야외 뿔불행진</p> <p>16 최광 총참모장, 군사대표단으로 체코와 핀란드 방문(~27일)</p>	<p>2 방글라데시에 대홍수 500여명 사망</p> <p>8 蘇, 올림픽 전후 23일간 KAL기의 영공통과를 허용키로 함</p> <p>10 일본 産經신문, 한·중 양국은 인천~청도 직행 페리를 90년도에 취항키로 한국선주협회와 중국 산둥속운수공사가 합의했다고 보도</p> <p>17 고르바초프 蘇서기장은 한국과의 경제관계수립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日 시사통신)</p>

월	한 국	부 한	국 제
9	<p>19 • 국방부는 일본 신문들의 소련비행기가 독도영공을 침범했다는 보도에 침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부는 일본의 소련기 독도비행 항의와 관련 독도는 우리영토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하라고 대사관에 훈령</li> </ul> <p>20 노태우 대통령, 美 NBC-TV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평화통일에 노력의 의지를 보이면 주한미군의 감축에도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힘</p> <p>24 해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2523호)</p>	<p>23 혜산~만포 전철화 공사 착공(만포 청년역)</p> <p>29 김일성, 한덕수 조총련의장 접견</p>	<p>18 일본언론, 일본정부는 소련군용기가 16일 독도상공을 비행한데 대해 영공을 침공했다고 소련정부에 항의한 사실을 보도</p> <p>24 蘇 이스베스티야지, 소련은 50년간 외국인의 방문을 금지시켜온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조치규정을 철폐했다고 보도</p> <p>28 • 蘇, 미국의 소리(VOA) 모스크바 지국개설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합동군사훈련 실시(~10월 15일)</li> </ul> <p>29 미·일·캐나다 등 서방12국, 사상 최대규모의 유인우주정거장 공동건설협정에 서명</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30 국방부, 국회 5공비리 특 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5공 화국 초기 국보위의 삼청계 획('80. 8. 4)에 의해 실시 된 삼청순화교육 및 근로봉 사에 강제수용된 인원은 1 만 16명이라고 밝힘		30 소련공산당중앙위, 권력 개편 대폭 단행, 고르바초 프 제2인자에 메드베데프 를 임명하고 그로미코 등 원로급 전원 제거
10	1 국방부, 국회 5공비리 軍 事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학원소요와 관련 1981년 11월~83년 11월까지 강제 징집된 대학생은 447명, 정 훈교육중 5명이 사망했다 고 밝힘	1 서천지구 전안비료공장 착공	1 중국, 군계급제 도입 실시
	2 제24회 서울올림픽 폐막 (우승 소련, 한국 금12개로 4위)	3 조국평화통일, 반미·반정 부 시위관련 보도	3 蘇, 유엔예비군 창설 제안
	10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제트유 현물상환에 관한 내 규 체결	4 김책 제철연합기업소, 제2 차 200일 전투 재개	
	13 해군사관학교 제43기 순 항훈련분대 출항		13 중·소, '89년에 등소평과 고르바초프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동시 발표
	15 장애인올림픽 개막(~24 일)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8 盧泰愚 대통령, 국가원수로 처음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을 주제로 연설</p> <p>20 • 盧泰愚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유엔총회에 제의한 동북아 평화협회의 구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적 여건을 적극 조성하여 나가기로 합의(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시설공병대 지원 합의각서 서명</li> <li>• 국방부 확대정책회의, 하사관 계급명칭 및 계급장 제식 검토</li> </ul> <p>24 제1차 한·미 육군안보지원회의를 육군회관에서 개최(~11월 4일)</p> <p>25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개설(북한대변인, 헝가리 비난 담화발표)</p>	<p>18 미국의 태평양지역 육·해·공군 합동훈련관련 성명 발표</p> <p>19 북한, 강석주 외교부부장, 유엔총회연설에서 남한 최고당국자의 방북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미군철수, 1차 예비회담을 주장</p> <p>20 리봉원 상장,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 소련 방문</p>	<p>18 蘇, 유엔군축위에서 처음으로 해군력 현황 공개</p> <p>22 크메르루지, 캄푸치아분쟁 종식 위해 국제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8 공군본부, 한·미 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 편제 등 양해각서 체결</p> <p>31 '88쌍용훈련(~11월 4일)</p>	<p>26 조평통 대변인, 盧대통령 유엔연설관련 담화 불가침 선언 등 제의에 주목</p>	
11	<p>1 • 공군교육사령부 신기지로 이전 • 노태우 대통령, 한국과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를 비롯한 미 협정개정 등 양국 현안들을 진지하게 논의중임을 밝힘</p> <p>3 • 盧泰愚 대통령,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4개국 공식방문(~14일)차 출국 • 국방부,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억 6,100만여평을 해제한다고 발표</p> <p>8 국방부, 어로구역통제 완화</p>	<p>1 美 스텐피드대 관계자들, 스텐피드대 부설 국제전력 연구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은 최근 학자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p> <p>2 인민군 친선 참관단 허국성 중장 중국 방문(~16일)</p> <p>5 장충 천주교회 첫 공개 (日 조일신문)</p>	<p>3 유엔총회, 폴·포트파의 복권제지와 베트남군의 캄푸치아 철수 요구하는 ASEAN결의안 채택</p> <p>9 제41대 美대통령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당선 미국의 상·하 양원의원 선거에서 승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4 • 공군본부, 한·미 공군 간 한국 방공식별내에서 비행하는 육군항공기 중앙 관제서(CRL) 부록 합의각서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한·미간 비행장 피해복구 지원협정서명</li> </ul> <p>18 국회광주특위, 청문회를 열고 金大中 평민당총재, 李燾性 전 기업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 발포명령자 추궁</p> <p>21 現代綜合商社,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원산지 그대로 표시된 모시조개 40kg을 첫 수입(22일 통관)</p> <p>22 • 국방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254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묘지관리소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2545호)</li> <li>• 국방부, 한·미 한국 특정비행장 공동사용 합의각서 체결</li> </ul> <p>25 문교부, 대학생군사교육 1989년 1학기부터 폐지키로 결정</p>	<p>16 북한 이근모 정무원총리 12월 중순께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갖자고 이현재 총리앞으로 서신 발송</p> <p>17 백두산에 正日峰 명명</p> <p>20 김일성 교시 관철 위한 사리원 카리비료 연합기업소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결의 모임</p>	<p>16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 소련은 시장경제와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융화시킨 혼합경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p>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8 • 韓銀, 1988년 우리나라 경상 GNP 1,560달러, 1인당 GNP 3,700달러로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신분상실 군장성 8명 명예회복 조치</li> </ul>	<p>28 노동당중앙위 제6기 14차 전원회의 개최(~30일)</p> <p>30 오재원 상장(만경대혁명학원원장) 사망</p>	<p>29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 새헌법상 대통령격인 최고회의의장의 권한을 대폭 제한, 각 공화국의 자치권 확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선언</p>
12	<p>1 • 국무회의,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기구도 대폭 축소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보충역제도 통폐합</li> </ul> <p>2 • KAL기 폭파범 김현희, 검찰신문에서 1987년 11월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친서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원 김승일과 함께 KAL858기를 폭파한 혐의사실 모두 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삼청교육 피해신고를 1988. 12. 12~89. 1. 20까지 접수한다고 발표</li> </ul> <p>5 노태우 대통령, 대폭 개각(총리에 강영훈, 국방부장관에 이상훈 전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p>	<p>2 유럽회의(브뤼셀), 한국은 통상장벽을 철폐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p>	<p>1 美-스페인 신방위협정 서명</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6 제27대 국방부장관에 이 상훈 취임		6 슐츠 美국무장관, 日 朝日 신문과 회견에서 북한이 노 대통령의 남북 직접대화제 안에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도전적인 정책을 포기한다면 미·북한관계는 개선될 것이라고 표명
	8 국방부, 한·미간 155밀리 자주포 공동생산 양해각서 체결	9 祖平統, 신임 국방부장관 발언 비난	8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유엔총회 연설에서 동서 양 진영간의 군축협상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동구권 주둔 소련군 5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
	13 '88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	11 외교부대변인, 43차 유엔 총회 고르바초프 연설지지 담화. 소련의 군축조치에 부합되게 주한미군 철수요구	
	14 국방부, 전군 지휘관회의	14 조·소 사회과학자 아·태 지역문제 및 한반도 정세토론(~16일, 모스크바)	
	16 국민안보교육장 을지전 망대 준공	15 북한·가이아나간 공보협정 체결	15 일본 讀賣신문, 슬로비요프 주일소련대사와 인터뷰에서 소련은 한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17 국방부, 신분상실 군장성 4명 명예회복 조치		

1988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8 윤이상 음악회(모란봉극장)</p> <p>19 소련 무장력 총참모부 일꾼대표단 방북(부총참모장 브로네슬라브 오멜리체브)</p> <p>20 연형묵(정무원 총리),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 실무대표 접촉제의(대남편지)</p> <p>22 12월중 제네바 제3국, 소련의상 세바르드나제 및 부상 로가초프 방북(~24일)</p> <p>23 김일성, 세바르드나제 소련의상 접견 고르바초프 친서 전달</p>	<p>18 뉴욕타임즈紙, 조지 부시 차기 미국대통령의 안보팀은 이제까지는 다루지 못한 한국과 유럽주둔 미군을 포함한 모든 안보문제들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보도</p> <p>19 세바르드나제 소련의무장관 일본방문중 소련정부는 현재 사할린에 살고 있는 한국인중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82명에게 이미 출국을 허가했다고 밝힘</p> <p>20 美 LA타임스지, 美법무부는 노스럽항공사가 '84년 한국에 대한제트전투기 공급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용한 775만달러중 일부를 이 회사 간부들이 수령했는지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p> <p>23 세바르드나제 방북 환영연에서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 민족화합과 이익균등의 원칙에 입각해 접근해 나가겠다”고 언급, 한반도 2개의 국가 첫 공식화</p>
	<p>20 · 李相薰 국방부장관, KBS-TV 인터뷰 · 해군본부, 한·미 해군 연료교환협정 체결</p> <p>22 홍보관리소 직제령 개정 (대통령령 제12546호)</p> <p>23 아시아나항공(제3민항)이 오전 10시 50분 서울~광주 노선 첫 취항</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8 姜英勳 국무총리, 북한 정무원 총리 연형묵에게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제의</p> <p>29 국방부, '88국방백서 발행.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전력 지수에서 65% 열세이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연합 전력도 70%수준이라고 평가</p> <p>30 무기 체계 획득 관리 규정 개정(국방부훈령 제382호)</p> <p>31 • 전쟁기념사업회법 제정 공포(법률 제4076호) • 예비군 재해 및 휴업보상제도 신설(시행 '89. 6. 16)</p>	<p>27 사회과학원 李朝實錄 번역본 중국연변 사회과학원 및 연변대학에 기증</p>	<p>26 日本 언론, 북한은 요도호 납치범 시바다의 변호인 3명의 북한입국을 허가했다고 일·조관계 소식통을 인용 보도</p> <p>27 소련 북대서양함대 전력 대폭 증강 항공모함 바쿠호(3만 7천톤), 핵추진 최신 순양함 미하일 칼리닌호 2만 8,000톤 배치</p>

#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9 육본, 명예선언장교 5명을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군복무규율 제38조(집단행위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p> <p>11 李相薰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p> <p>13 예비역장교 진급제도 시행(중·대위)</p> <p>19 연산 122만 5,000톤 규모의 광양제철 제11 냉연공장 준공</p> <p>21 대간첩대책중앙회의 개최(청와대)</p>	<p>1 김일성, 노대통령과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야당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등 초청</p> <p>9 인민무력부, '89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는 대화분위기를 고의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비난 담화 발표</p> <p>16 북한, 평양인민 FM방송을 금년 1월 1일부터 남쪽으로 송출, 새 대남공세 시작</p>	<p>4 美해군 전투기 2대, 지중해 상공에서 리비아 전투기와 치열한 공중전 끝에 리비아기 2대를 격추</p> <p>7 · 히로히토 일본국왕, 87세를 일기로 사망, 아키히토 왕세자, 제125대 일본국왕에 즉위, 새 연호 헤이세이(平成)로 시행 · 화학무기금지국체회의 개막(~11일, 파리) 145개국 참가</p> <p>21 조지 부시 美대통령 당선자 제41대 대통령에 취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6 정부, 주한 미군의 방송 (AFKN)을 유선화하거나 UHF채널로 전환하는 것을 미군측과 협의중</p> <p>27 '89 팀스피리트훈련 실시 (~4월 26일)</p> <p>31 戰爭紀念事業會 발족</p>		<p>27 조지 부시 美대통령, 히로히토 日王 장례식 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p>
2	<p>1 • 한국·헝가리 대사급 공식외교관계 수립, 공산국가와 첫 공식 외교관계 • 이상훈 국방부장관, KBS 1 TV와 '89국방시책 회견 • 국방부, 항공기 정비지원에 관한 한·미간 합의각서 체결</p> <p>3 서울지검공안1部, KAL기 폭파범 金賢姬를 국가보안법, 항공법 등의 위반사항 6개 죄목을 적용, 사건발생 1년2개월만에 서울 형사지법에 불구속 기소</p> <p>17 군인사법 개정</p> <p>21 • 국방부, 한·미간 김해기지 재보급시설 개선 합의각서 체결 • 한·미간 연합수송이동본부 시설개선 합의각서 체결</p>	<p>1 북한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산 무연탄 2만톤 남북직항로를 통해 인천항으로 직수출</p> <p>2 외교부, 韓·헝가리 수교와 관련, 헝가리와의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킨다고 발표</p>	<p>15 소련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완료</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p>24 재향군인회 제31차 정기 전국총회</p> <p>25 국방부 군무회의, '89올곡 사업 집행추진계획 의결</p>	<p>23 외교부,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 지지성명 발표</p> <p>25 브여야 부룬디 대통령, 북한 방문(~27일)</p> <p>28 3·1절 기념보고회에서 팀 스피리트훈련 등 대남 비난</p>	<p>24 히로히토 日王의 장례식, 세계 163개국과 27개 국제기관의 조문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동경의 신주쿠교엔에서 거행</p> <p>25 체코에 유학중이던 북한 학생 2명 한국에 정치적 망명 요청</p> <p>28 美공군, 전략정찰기 SR-71, 1989년 10월 1일에 퇴역을 발표</p>
3	<p>1 새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시행</p> <p>3 학군사관 제27기 임관식</p> <p>14 '89 팀스피리트훈련 실시</p>	<p>8 이집트 군사대표단(단장 군총참모장 아브샤나프 중장), 북한 방문(~13일)</p>	<p>5 조지 부시 美대통령, 기존 스타워즈계획을 이동식 미사일 배치에 의한 전략무기 방어계획으로 전환하는 핵전략 수정</p> <p>15 이스라엘 시나이반도 다바지구를 이집트에 반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0 팀스피리트훈련 중 헬기 추락으로 美해병대원 34명 중 19명 사망, 15명 중경상</p> <p>21 육군사관학교 제45기 졸업식</p> <p>22 • 군인 명예전역제도 신설 • 盧泰愚 대통령, 공안관계 장관회의 주재</p> <p>23 체코에서 망명한 북한유학생 김은철, 조승근 기자회견</p> <p>27 일반대학생 군사교육 폐지령 공포</p> <p>28 공군사관학교 제37기 졸업식</p>	<p>21 북한 평양방송, 한국군 사병 김태식(24세)의 월북 보도</p> <p>25 북한 조선중앙방송, 문익환 목사 일행 북경을 경유해 항공기편으로 평양 도착했다고 보도</p> <p>28 김일성, 문익환 목사와 면담</p>	<p>19 일본 법무성, 한국여행자 숫자사상 최초로 미국을 벗어나고 수위를 차지했다고 발표</p> <p>24 美공군, SDI 연구용 델타스타 위성발사에 성공</p>
4	<p>1 • 한국자유총연맹 발족 • 군사문제연구위원회 발족</p> <p>3 蘇연방 서울사무소 개설</p> <p>4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 사형 구형</p>		<p>2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 쿠바 방문 우호협력조약에 조인(~4일)</p> <p>4 NATO, 조약조인 40주년 기념행사(브뤼셀본부)</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7 해군사관학교 제43기 졸업식</p> <p>8 육군본부, 한·미간 地圖, 차트 제작 및 측지 합의각서 체결</p> <p>10 공군본부, 작전 기상지원 기능 상호협조각서 교환</p> <p>11 공군본부, 한·미공군간 훈련 및 우발사태시 기상대 시설의 준비 협조사항 교환</p> <p>13 · 공안합수부, 문익환 목사, 유원호씨 김포공항 도착즉시 구속 · 동·서해 어로통제구역 대폭 완화</p> <p>14 · 제23대 합동참모의장 鄭鎭根 육군 대장 취임 · 제7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羅重培 육군 대장 취임</p> <p>20 외환은행, 소련에 1천만 달러 첫 차관 제공</p>	<p>5 천도교 창도 129주년 기념식 거행(중앙위 위원장 최덕신이 보고)</p> <p>7 최고인민회의 제8기 5차 회의, 89년도 예산(3백35억 5천만원)안 확정</p>	<p>7 소련 마이크급 핵잠수함, 노르웨이 해안에서 화재발생, 침몰(42명 사망, 27명 구조)</p> <p>12 WPO외상회의, NATO에 전술핵 삭감·폐기협상 제의</p> <p>15 호요방 전중국공산당 총서기 심장병으로 사망</p> <p>19 NATO 핵계획단회의(국방상회의) 개최(~20일, 브뤼셀)</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25 국방부,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개정(국방부훈령 제390호) 공포</p> <p>27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한·미공군 재난통제 양해각서 교환</p> <p>30 ·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지역운영지침서 교환 · 월남참전용사 모임인 타이한중앙회 창립대회 개최 (보라매공원)</p>	<p>23 조자양 중국공산당 총서기 북한 방문</p>	<p>25 고르바초프 체제 강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 110명 숙청</p>
5	<p>1 합동참모본부, 한·미 영상교환협정서 체결</p> <p>2 한·미 양국, 美제8군사령부를 '90년 중반까지 수도권 밖으로 완전 이전시키고 용산 美제8군 골프장은 내년 중 한국에 반환키로 합의</p> <p>3 · 국방부, 경제적 군운영 우수부대로 육군 제5397부대 등 10개 부대에 시상 · 부산 동의대 피랍전경 구출중 농성 대학생 방화로 경찰관 6명 소사</p>	<p>1 중앙인민위원회, 능라도 인민대경기장을 5월 1일(5·1) 경기장으로 개명</p> <p>2 중앙방송, 한국통일원 대변인의 평양축전 남한인사 초청에 대한 논평 관련,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p> <p>3 외교부, 한반도 핵전쟁위협 증대 관련 비망록 발표</p>	<p>2 아라파트 PLO의장, 佛 TV회견에서 PLO현장은 무효라고 선언</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4 • 공군본부, 한·미간 백령도 레이더기지 VCR 장비 운영 및 관리합의서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전우들을 구하고 산화(4월 6일 승진훈련장)한 공완택 병장, 대전국립묘지에 안장</li> </ul> <p>8 • 공군본부, 한·미간 황성공역 공용사용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방위연구소 연구원 진바 미노루 준장 외 15명 방한</li> </ul> <p>15 盧泰愚 대통령, 교육지원비 1992년에 GNP 4%선인 7조원까지 증액키로 발표</p> <p>19 정부, 헝가리와 항공협정 가조인, 공산권 취향 발판 마련</p> <p>21 국방부, 한·미 야사지휘본부 확장공사 합의각서 체결</p>	<p>14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 김일성 초청으로 북한 방문 (~17일)</p> <p>16 외교부, 미국의 파나마개입은 내정간섭·무력침략이라고 규탄 담화 발표</p>	<p>4 중국 천안문사태 발생, 30만 이상의 중국학생과 노동자들 천안문 광장에서 정치적 자유 요구하면서 시위</p> <p>6 북한의 동영준(24세)과 김운학 등 폴란드에 유학중인 2명의 학생 자유진영으로 망명</p> <p>11 부시 美대통령, 파나마에 1개여단 증파 결정</p> <p>13 소련, NATO 단거리 핵미사일 현대화하면 새로운 핵미사일 개발하겠다고 경고</p> <p>15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 소련 수뇌로서는 30년만에 중국 공식 방문(~18일). 국가 및 당 관계정상화 선언</p> <p>18 중·소 양국, 국경지대에 배치된 군사력 감축 등 18개항에 합의하는 공동성명 발표</p> <p>20 중국, 천안문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조자양 총서기 실각, 이붕 총리 당총서기 겸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24 • 국방부, 한·스페인 방산협력 개념서 교환 • 국방부, 한·미 상호운용성위원회 양해각서 체결</p> <p>31 • 국방부, 민간인 출입통제선 대폭 북상 조정, 통제 없이 영토 출입가능 • 공군본부, 한·미군간 작전 기상지원기능 상호협조 사항 교환</p>	<p>22 북한·체코간 원자력 협조 의정서 조인</p> <p>24 조선역사학회 회장 전영률, 사회과학원 교수 김석형, 김일성종합대학교수 박시형, 남북 역사학자회담 제의(공개 서한)</p> <p>25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단장 리봉원 상장), 체코·루마니아 방문(~6월 9일)</p>	<p>27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을 주요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지적소유권 분야 11월까지 다시 결정</p> <p>29 조지 부시 美대통령, NATO 정상회담에서 미전투병력 20% 감축과 유럽주둔병력 93년까지 27만 5천명으로 감축 제안</p>
6	<p>2 21세기위원회 발족(국가장기발전을 위한)</p>	<p>1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체코·동독 방문(~8일)</p> <p>3 보천보전투승리52돌기념 양강도보고회 개최(보천군)</p>	<p>3 • 중국 계엄군 천안문 시위대에 발포, 5천~7천여명 사망, 1만명 이상 부상 • 이란의 호메이니 사망, 후계자로 하메네이 대통령(49세)을 선출</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5 • 제19대 공군참모총장에 鄭用厚 공군 대장 취임</p> <p>• 연합지형분석반 창설에 따른 한·미간 합의각서 교환</p> <p>8 국방부, 한·미간 전쟁예비 탄약 현대화 협정 개정서 체결</p> <p>15 • 국방부, 육군본부 이전 보고회</p> <p>• 현역장교·군무원 등 21명, 군사기밀누설 수백만평 땅투기 31억 6천만원 채김</p> <p>17 국립묘지관리소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2733호)</p> <p>20 국회광주특위답변에서 美 국무부는 공수특전단은 투입사실을 몰랐으며 제20·31사단 모두 통제권 밖에 있었고, 5월 19일 사태 참상만 보고받았다고 발표</p>	<p>5 한국의 천주교 신부 문규현 일행 평양 도착</p> <p>6 문규현 신부, 평양 장충성당에서 통일기원 촛불미사 집전</p> <p>7 노르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주석 일행 북한 방문</p> <p>15 남조선 6월항쟁 2돌기념 평양시보고회 개최(2·8문화회관)</p> <p>18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실무대표단, 청년학생축전 협의차 북한 방문</p>	<p>7 인도, Trishul 지대공미사일(사정거리 25km) 발사실험 성공</p> <p>12 소련을 방문중인 김영삼 민주당총재 지난 6월 북한의 허담과 회담, 한반도 통일 평화문제 등 논의했다고 관변측이 밝힘</p> <p>15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베를린 장벽 조기 철거 가능성 시사</p> <p>23 미국, 일부 상원의원들 주한미군 3년간 1만명 철수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감축법안 제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7 • 국가안전기획부, 작년 8월 방북하여 허담과 통일논의한 평민당 徐敬元 의원 구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령 공포(대통령령 제12738호)</li> </ul> <p>30 국방부, 공군본부 이전 보고회</p>	<p>25 아라파트 PLO 의장, 북한 방문(~26일)</p>	<p>24 중공당중앙위 전체회의, 신임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중앙당 정치국원겸 상해시 당서기 강택민을 선출</p>
7	<p>1 • 육군과학수사연구소를 국방과학수사연구소로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육군 88사격단을 국군체육부대 사격훈련대로 편제 변경</li> <li>• 국방부, 한·미간 폭발물처리 운영절차규정 교환</li> </ul> <p>6 A-306(춘천)의 접근관계 지원절차 합의서 체결</p> <p>7 해군, 한국형 초계전투함 진수식</p> <p>8 한국과학기술원, 김명환교수(57세)팀 세계 2번째로 슈퍼컴퓨터 개발, 1초에 25억회 연산 가능</p>	<p>1 •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G. 무가베 일행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축전 개막(능라도 경기장)</li> </ul> <p>4 김일성, 탄자니아 대통령 니에레레와 단독회담</p> <p>8 평양축전 폐막. 세계 5대륙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p>	<p>1 중국공산당, 당수립 68주년 기념식을 갖고 당원들의 이데올로기 탈선 단속을 지시</p> <p>6 미국, INF 미사일 퍼싱 LA169基 폐기 완료</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11 해군 해로연구회 주최 제 1회 국제해양심포지엄 개막 (~12일)</p> <p>14 전쟁기념사업회 현판식 (삼각지 구 육군본부) 거행</p> <p>17 • 국방부, 한·미간 폭발물저장기술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의향서 서명 • 제2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워싱턴에서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체니 미국 방장관간에 개최(~19일)</p> <p>18 • 국방부, 한·미간의 한 국내 방위물자생산에 따른 기술사용 양해각서 체결 • 공군본부, 신도안지역으로 이동</p> <p>19 제21차 한·미 안보회의, 방위비 분담 7천만달러로 증액 '92년부터는 9천만달러로 증액 합의</p>	<p>12 북한·알바니아간 문화계 획서 조인</p> <p>15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이 임하는 주이란대사 사이드 모하메드 레자와 면담</p> <p>19 군사정전위 북측 수석위원 최의웅, 유엔군측에 임수경양의 신변안전보장 각서요구(전화통지문)</p>	<p>10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3차례 B-2 스텔스기 시험 가동</p> <p>11 美국방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육군과 공군력 급속한 현대화로 '96년쯤 북한능가 전망 평가</p> <p>13 일본 伊東市해안에서 수증화산 폭발·대지진 공포 갈수록 확산</p> <p>17 美공군, B-2 폭격기 비행 시험 성공</p> <p>18 美·蘇, 화학무기금지협정 초안에 합의</p> <p>19 미국, 북한에 핵시설 감시 위한 IAEA의 안전수칙 협정 체결 촉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2 육군본부, 공군본부, 계룡대 이전 현판식 거행</p> <p>26 李相薰 국방부장관, 수해 지역에 군병력 최대지원토록 특별지시</p> <p>27 대한항공 KE803편 DC10기,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추락 78명 사망</p> <p>29 군사정전위 중국인민지원군 소속 쉰 슈카이(左修凱) 소령부부 판문점에서 망명</p>	<p>21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 출정 선언(백두산), 평화협정 체결,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미군철수 등 주장</p> <p>23 체육회담 북측대표단, 8월 10일 판문점에서 제3차 체육회담 개최 제의</p> <p>2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한국정부의 임수경양 판문점 통과 귀환 불허방침을 비난</p> <p>31 외교부, 임수경양 판문점 통과 관련한 지난 29일 미국무부 논평을 비난</p>	<p>22 소련첩보기 10대 북한기지 이용 대남첩보활동, 한국 접근하여 북과 군사강화</p> <p>23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승리</p> <p>24 부시 美대통령, 육군장관에 미카엘 스타(64세)을 임명</p> <p>26 소련 타스통신, SS-12 및 SS-23 短射程 미사일(사정거리 500~1,000km) 총 957기 폐기완료 발표</p> <p>31 부시 美대통령, 의회의 FSX 계획의 조건부 승인 결의안 거부</p>
8	<p>2 국방부, 한·미 탱고지휘소 수정 합의각서 체결</p>		<p>1 미국·호주, 호주북부지역에서 캅카루 '89 합동기동훈련 실시(~31일)</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3 북한군 정용철(19세) 상병 중부전선으로 월남 귀순</p> <p>4 남북한 당국자, 수차례 비밀접촉, 박철언 정무제1장관과 북한외교부 부부장 한시해와의 정상회담 등 협의</p> <p>7 • 국방부, 자유교 통제권에 관한 한·미 합의각서 제출 • 노태우 대통령, 계룡대 휘호 하사</p> <p>11 계룡대 명명식 및 기념비 제막식</p> <p>15 全大協 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양과 밀입북했던 문규현 신부 귀환</p> <p>18 국방부, 주한 미군사령부로부터 자유교 통제권 인수</p>	<p>8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韓赤총재에 전화통지문 전달, 임수경양의 귀환과 관련 8월 11일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p> <p>12 허담 당비서, 임수경양과 면담</p> <p>14 소련 군사대표단(단장 국방성 부상겸 반항공총사령관 대장 드레찌야크), 방북(~18일)</p>	<p>5 중국 최고실권자 등소평 심장병 악화로 북경으로 급속 사망이후 대비 착수</p> <p>9 일본의 새총리에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자민당총재 선출, 외무 나카야마, 재무에 하시모토로 하는 각료전원 교체</p> <p>11 파나마, 유엔안보리에 군사감시단 파견을 요청</p> <p>12 일본, KAL기 폭파사건 관련, 對북한여행 제한조치 해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1 '89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실시(~9월 1일)</p> <p>27 북한군 이기영(23세) 하사 강화도로 귀순</p>	<p>21 외교부, 한국정부의 유엔 단독가입계획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p> <p>25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군총참모장 최광), 중국 항발(~31일)</p> <p>28 북한 북쪽 국경지대에 경제특구 건설, 이미 철도·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중국 동북경제보가 보도</p>	<p>21 일본 조기경보기 1991년부터 95년 사이 12대 구입, 아시아 최강 방공망 구축</p> <p>23 李鵬 중국 국무원총리, 자유경제체제 포기 개혁노선 탈피 시사</p> <p>25 일본 방위청, '90년도 국방비 4조 1,690억엔(전년도 대비 6.35% 증액)을 의회에 요청</p>
9	<p>4 • 한국인 평균수명 70.1세, 남자 66.9세, 여자 73.3세, 올해인구증가율은 0.97%</p> <p>• 제17대 해군참모총장에 金鍾浩 해군 대장 취임</p> <p>9 전 인민군부참모장 李相助, 박철언 정무1장관과 남북문제 논의, 6·25 김일성이 도발했다고 언급</p>	<p>1 백남준(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 단장)·김성길(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 단장), 각각 한국측 수석대표에 전화통지문 발송. 제3차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9월 18일에, 제3차 체육회담을 9월 13일에 각각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p> <p>9 북한 정권수립 41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평양)</p>	<p>1 미·일 정상회담(워싱턴)에서 한반도문제 및 미·일 안보협력 논의</p> <p>2 중국 차이나데일리紙, 중국군 병력 100만 감축계획 공표</p> <p>8 蘇 유인우주선 소유즈, 미즈 우주정거장과 도킹</p> <p>9 윌리엄 크로 美합참의장, 10년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10 북한군, 김남준(27세) 소위, 김광춘(24세) 상사, 간호원 임정희(24세) 등 3명 한강하류로 해엄처 귀순	10 祖平統, 안기부의 임수경 밀입북사건 조사결과 발표 규탄 성명	10 일본 경제신문 조사, 2천년대 일본 라이벌은 한국, 일기업인 75.5%가 경계
	11 노태우 대통령, 국회연설, 남북연합체제통일 중간단계로 새공동체통일안 제시		11 핵확산방지조약 재검토회의 준비위원회 개최(~15일, 제네바)
	12 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 한·미 군사정보협력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6 체코 군사대표단(단장 민족보위상 밀란 와츨라비크)	12 일본 방위청, '89년도 방위백서 발표
	17 북한 간첩호송원 서영철(26세) 한강하류로 해엄처 귀순	방북,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회담	17 일본 방위청, 소련 최신에 핵추진 정보수집함(SSV-33호)의 극동배치 발표
	18 국방부, 국산장비 화력시범(승진훈련장)	18 북한 군사대표단(중장 지기선), 모잠비크·이집트 방문(~10월 13일)	18 중국 최고지도자 등소평, 후계자에 중국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을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보도
	19 • 한국, 내년부터 미국·영국·캐나다·일본·호주 등과 함께 환태평양 합동훈련에 첫 참가 • 퀘일 美부통령 방한(~21일)	22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군총참모장 최광), 루마니아·불가리아 방문차 향발	24 소련, 북한에 경제개혁 강력요구, 시장경제원리 채택, 경제협력도 국가상대아닌 기업단위로 전환 등
	25 사할린동포 391명 첫 단체인국, 한민족체전 재소련대표단 146명도 입국		25 제33차 IAEA 총회 개막(~29일, 비엔나)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6 • 제70회 전국체전과 세계 한민족체육대회 개막, 50개국 동포 참가</p> <p>• 국방부, 한·이탈리아간 국방장비 등에 관한 정부품 질보증 양해각서 체결</p>	<p>27 판문점 남북적십자 실무 대표회담에서 제2차 예술단·고향방문단 교환 및 제11차 본회담 개최문제 토의</p> <p>29 루마니아 군사대표단(단장 민족보위장관 와실레 밀리아) 방북(~10월 5일)</p>	<p>27 체니 美국방장관, 소련의 극동 태평양지역 군사력 증강 및 북한과의 군사협력 우려 표명</p> <p>28 • 마르크스 전 필리핀 대통령 사망</p> <p>• 헝가리 국방상,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지, 군사독자노선 선언</p>
10	<p>3 국방부, 한·미 해군간 전시 해군탄약저장 합의각서 체결</p> <p>7 •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제 44차 세계성체대회 집전키 위해 내한</p> <p>• 해군사관학교 제44기 순항훈련분대 출항</p>	<p>2 중국 군사대표단(단장 당 중앙군사위 부비서장 유하청), 방북(~11일)</p> <p>4 캄보디아 주석 노르돔 시아누크 일행 訪北(~11월 3일)</p> <p>9 고려연방제안 제시 9돌기념 평양시 보고회</p>	<p>1 중국 최고지도자 등소평 4대 기본원칙 고수 선언, 사회주의 毛澤東노선 표방 등 불변</p> <p>3 교황 방한 앞두고 터키 테러단체 회색늑대 비상, 공항정비 강화</p> <p>5 영국의 Military Balance, 일본의 국방예산을 세계 2위로 발표</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17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 회담, 방위비 분담 점진 증액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은 불변하기로 합의</p> <p>19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황성기지 특별 시계비행규칙 양해각서 체결</p> <p>26 ·해군, 한국형 구축함 전담함 취역식 ·국방부, 한·미간 야전사령부 지역본부 수정 합의각서 체결</p>	<p>13 소련 해군대표단(단장 해군함대 총정치국 제1부총국장 알렉세이 쏘로킨 대장), 방북(~17일)</p> <p>3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주최 비핵평화지대창설 토론회 개최</p>	<p>13 한 소련군 장성의 회견에서 소련은 한국전쟁 개전초부터 휴전까지 계속 북한을 지원했다고 한국전 참전을 공식 시인</p> <p>18 동독, 호네커 실각, 신임에 곤 크렌츠 당서기장 취임</p> <p>26 뉴욕타임즈, 북한 핵무기연 1개 제조가능, 플루토늄연간 6~7kg 생산 보도</p> <p>29 가이후 일본수상, 일본의 방위력 증강 필요성 역설</p> <p>30 미·소 화학무기금지회담(제네바)</p>
11	<p>1 군사문제연구소 개소식</p> <p>4 중부전선 철의 3각지대,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준공식</p>	<p>1 북한, 미국과 북경에서 5차 접촉, 통일안과 핵안전협정 가입문제 거론</p> <p>5 김일성 중국 방문(~7일)</p>	<p>1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콘트라 반군과의 휴전폐기 발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0 공군본부, C-130 수송기 도입 환영식</p> <p>21 해군본부, 한·불 대잠전 회의 합의각서 체결</p>	<p>6 북한, 소·동독에 메시지. (사회주의 승리 위해 투쟁 하자고)</p> <p>9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금년내 제네바 또는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외교부 성명 발표</p> <p>12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인민군총참모장 최광) 이집트 방문후 귀환</p> <p>14 “북한사회의 인권” 국제 심포지엄 발표, 북한 8개 수용소에 정치범은 10명뿐</p> <p>16 崔德新(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祖平統 부위원장), 75세로 사망</p> <p>24 일본 북해도 신문보도, 김일성 내년 은퇴, 4월에 김정일에 주석 승계 전망</p>	<p>6 폴란드 공산당 파산 선언</p> <p>7 · 소련, 불세비키혁명 72돌, 모스크바에서 1만명 시위 · 미국 첫 흑인 주지사, 흑인시장 당선</p> <p>9 東獨, 국경전면개방, 西獨 移住 및 자유왕래 허용, 베를린장벽 28년만에 무너짐</p> <p>11 동독, 270만명에 서독형 비자 발급</p> <p>14 체코, 해외여행 자유화</p> <p>20 루마니아, 개혁 거부선언</p> <p>21 일본 퇴역장교들, 南京대 학살 사건 시인</p>

1989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25 북한군 김선일(23세) 하사, 중부전선으로 귀순</p> <p>27 예비군 연한 33세로 국회 국방위 정부안을 가결</p> <p>29 대처 영국총리와 盧대통령, 영국총리공관에서 정상회담 한·영 합작 플랜트 수출합의</p>	<p>25 평양-모스크바-소피아간 정기항로 개통</p>	<p>26 • 중국, 북경 한국무역사무소 허용 방침(日 시사통신 보도)</p> <p>•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논문 프라우다 신문에 발표</p>
12	<p>1 국방부, 한·미 공군간 FR-4C 항공기 상호정비지원 양해각서 교환</p> <p>2 해군, 한국형 구축함 제주함 취역식</p> <p>8 • 한·소, 영사관계 수립 8일부터 발효</p> <p>•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p>	<p>1 북한·중국간 90년도 기상분야 교류계획 의정서 조인(평양)</p> <p>3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방북한 이란 군사대표단(단장 군총사령관 모호센 레자이)과 회담</p>	<p>1 • 比 쿠데타군, 대통령궁 폭격, 아키노 안전, 미전투기 개입 진압</p> <p>• 고르바초프 바티칸 방문해 교황과 회담, 소·교황청 수교 전격합의, 소련은 곧 종교자유 보장하는 법률 채택할 것이라고 다짐</p> <p>2 미·소 몰타 정상회담 개막(~3일, 지중해)</p> <p>8 • 蘇, 프라우다 사설 “공산당 통치권” 폐지 시사</p> <p>• 쿠바·중국·루마니아 동구 개혁 일제 비난</p> <p>• 체코, 비공산 연정 시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4 · '89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MANDATORY 상태하에서 이착륙시 책임한계 양해각서 교환</li> </ul> <p>20 · 李相薰 국방부장관, FX기종 차세대 전투기로 FA-18기 구입 생산키로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소련, 폴란드 등 공관장파견 준비 지시</li> </ul> <p>29 합동참모본부, 야전사에 대한 전술지휘/통제 통신지원 협의각서 교환</p>	<p>12 OAC, 95년 동계아시아 게임, 북한 개최 결정(한국 포함 전회원국 초청 조건으로)</p> <p>19 일본·북한 우호촉진의원 연맹 대표단(단장 日중의원 위원 구노 유지), 방북</p> <p>21 6차 남북체육회담 서울·평양에서 공동사무국 설치 합의</p> <p>23 제2차 조선인민군 사roč 일군대회 개막(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최광 총참모장 등 참석)</p> <p>26 루마니아사태와 관련해 차우세스쿠 부처의 처형사실 보도, 이온 일리에스쿠를 의장으로 하는 구국위원회를 루마니아에 새로운 정부로 공식 승인</p>	<p>14 소련의 사하로프 박사 사망</p> <p>15 파나마, 대미 전쟁상태 선언하고 노리에가 군사령관을 국가 최고지도자로 공식 임명</p> <p>20 미국, 노리에가 체포 위해 파나마에 군사개입</p> <p>22 · 루마니아 공산독재정권 민중시위 5일만에 붕괴, 차우세스쿠 대통령 도망치다 체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門 완전 개방</li> </ul> <p>25 루마니아 TV,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대통령 부처 처형 보도</p>

## VI. 國防態勢發展期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 • '83년에 보·포·기·화학 학교를 통합, 전투병과 학교로 창설된 것을 환원</p> <p>• 병무청, 향토예비군 복무 연한을 35세에서 33세로 인하</p> <p>5 원로 체육인 손기정씨, 베를린올림픽에서 받은 청동 투구를 국군체육부대에 영구기증</p> <p>6 • 국방부 대변인, 김일성 신년사의 콘크리트장벽문제에 대한 반박문 발표</p> <p>• 대한항공 여객기, 파리행에 소련영공 첫 통과</p>	<p>1 • 유엔 단독가입 및 대화 창구 일원화 반대</p> <p>• 콘크리트장벽제거를 전제로 남북자유왕래 전면개방을 위한 최고위급 협상제의</p> <p>4 체코, 유학생 800여명, 특별기편으로 지난주에 급거소환</p> <p>5 노동당 제6기 17차 전원회의 개최(~9일)</p> <p>8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국국방부의 콘크리트장벽 부정성명을 파렴치한 현실기만이라고 비난</p> <p>9 • 외교부, 미국과 북경에서 6차 접촉(1. 5) 발표</p> <p>• 중앙방송, 한반도 비핵지대화 위한 3자 협의 요구</p>	<p>3 美국방부, 미국의 파나마 침공 당시 미국사상 처음으로 여군이 참가해 주도했다고 밝힘</p> <p>5 • 소련 타스통신, 소련과 합자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사업개시도 못하고 실패했다고 보도</p> <p>• 美국무부, 미국·북한이 북경에서 남북대화 등 상호실질문제를 토의키 위해 제6차 접촉을 가졌다고 밝힘</p> <p>9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내에 주둔하고 있는 8만명의 소련군을 '90년말까지 철수하라고 요구</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10 • 국방부, 주한 미군사령부 팀스피리트 '90훈련의 병력·장비 등의 규모가 '89년 수준보다 10% 축소된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 제6546부대 미공군 제32정보부대간의 합의 각서 교환</li> </ul> <p>11 육군본부, 여군병과를 폐지하고 보병, 부관, 정보, 경리, 정훈, 병참, 의정 등 7개 병과로 전환</p> <p>12 대한항공, 소련 아에르 플로트항공과 서울·모스크바 간 정기항로 개설에 합의</p> <p>15 • 합동참모본부, 818기획단/사업단 창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한·미간 미공군 탄약 한국공군 탄약시설 내 저장 양해각서 교환</li> </ul> <p>19 국방부, 대간첩대책회의 개최(국방부 제1회의실)</p>	<p>11 북한 제1차 남극탐험대(단장 장기봉), 평양 출발</p> <p>17 북한방문중인 홍콩기자들, 휴전선 콘크리트장벽 확인 실패(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紙)</p> <p>18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북한군대장 김광진), 소련 향발</p>	<p>11 체니 美국방부장관, 행정부의 예산긴축 및 동구권 자유화에 발맞춰 향후 5년 동안 390억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발표</p> <p>13 소련 언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인종분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p> <p>14 몽고 5,000여명 시민,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p> <p>17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 모든 아시아지역에서 소련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언명</p> <p>18 美국무부, 북경에서 미국·북한 제7차 고위외교관 접촉을 가졌다고 발표</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	<p>20 공군본부, 한·미 항공기술정보업무에 관한 합의각서 교환</p> <p>29 국방부, 주한 미공군의 대구, 광주, 수원기지의 철수를 골자로 한 주한 미공군 기능통합 및 기지 재조정계획 발표</p>	<p>21 북창화력발전 연합기업소, 공업용수관 건설착공</p> <p>24 訪蘇 북한 군사대표단 귀국(단장 김광진 대장)</p> <p>26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현 채취공업위원회를 해체하고 광공업관련 2개부서를 신설했다고 보도</p> <p>31 북한·베트남간 외교관계 수립 40주년기념집회 개최(천리마문화회관)</p>	<p>24 일본, 미·소에 이어 달탐사 인공위성 발사</p> <p>29 부시 미국대통령, 총 1조 2,300억달러의 '9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p> <p>31 겐서 서독 외무장관, 동·서독이 통합되어도 서독은 나토에 잔류할 것이라고 밝힘</p>
2	<p>1 여군훈련소 해체, 여군학교 창설</p> <p>2 국방부, 철도수송 군수지원을 위한 시행 약정서 체결</p> <p>5 통일원, 제3국에서 남북한 합작사업을 허용키로 밝힘</p> <p>7 李相薰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p>	<p>2 북한·불가리아간 90년도 상품 상호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p>	<p>1 체니 美국방부장관, 美상원 군사위청문회에서 소련은 '95년까지 유럽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시킬 것 같다고 증언</p> <p>5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 개막(~7일) 공산당권력독점을 보장한 헌법 제6조의 폐지 등 급진개혁안 채택</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2	8 국방부·외무부·경제기획원, 군축문제 적극대응 위한 안보정책업무대책단 구성	8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팀스피리트 '90훈련 구실로 진행중인 남북대화 전면중단 성명발표	8 평양북쪽 90km 지점 영변 일대에 원자력발전소로 보이는 시설물 건설중(일본 도카이대학 정보기술센터 사카다 소장 확인 발표)
	13 · 주한 유엔군사령부, 북한군이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아군에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 · 공군본부, 여군항공기 및 지상장비 정부지원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13 제4차 남미주 공산당회의, 2·4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와 장벽철거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했다고 보도(중앙방송)	13 미·소·영·프·동·서독, 통독과 관련된 안보문제 관할할 "6개국 통독기구" 설치에 합의
	15 ·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상훈 : 체니) · 제42주년 국군의 날 행사계획단 발족	19 북한, 북한측 콘크리트 장벽 확인을 위한 한국 참관단을 조직해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제의	15 소련 라트비아공화국 의회, 라트비아공화국을 연방내의 자유독립국가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결의
	21 주한미군의 감축과 작전권 이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무·국방장관 그레그 주한 美대사 매네트리 주한 미군사령관이 외무장관 공관에서 회동	21 노동신문, 남북경제합작과 교류실현을 강조	20 일본 요미우리신문, 동소평 중국 최고실력자는 대한관계 정상화방침을 김일성 북한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보도
	28 군인의 길(훈령) 폐지	27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전군에 전투동원준비령 하달(중앙방송)	22 체코 CTK통신, 소련과 체코는 체코주둔 소련군의 전면철수에 합의했다고 보도  23 체니 美국방장관, 아·태지역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아시아지역 순방을 마치고 언명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1 • 국방부, 전우신문을 국방 일보로 제호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복무신조 제정시행</li> <li>• 병사용 군용담배 백자(시가 200원)를 술(시가 500원)로 대체 보급</li> </ul> <p>2 • 李相薰 국방부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남침용땅굴은 20여개로 추산된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 개정(국방부훈령 제398호)</li> </ul> <p>3 • 학군사관 제28기 임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땅굴 발견(양구 북방)</li> <li>•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AN/GRC-171 송수신기의 관리이관 협정서 서명</li> </ul> <p>5 • 육군군수학교를 육군군수관리학교로 개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유류수하절차협약 양해각서 체결</li> </ul> <p>6 육군사관학교 제46기 졸업식</p> <p>8 한필성·한필화 남매 분단 40년만에 샷포로 지도공항에서 상봉</p>	<p>4 당원 돌격대 창립 10주년 보고회 개최</p> <p>6 인민무력부, 제4땅굴은 한국의 날조품이라고 주장(대변인 성명)</p>	<p>2 가이후 일본총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화요청·인적교류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힘</p> <p>5 소련 타스통신, 소련 3개 공화국 최고회의 및 지역 소비에트선거에서 급진개혁파의 옐친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 대의원에 당선되었다고 보도</p> <p>7 스톨텐 베르그 서독 국방장관, 서독내 미국화학무기를 7월부터 전면 철수한다고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9 • 해군사관학교 제44기 졸업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 팀스피리트훈련 개시</li> </ul> <p>12 • 국방부, '90 팀스피리트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폴란드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에 대한 단일지휘권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처리</li> </ul> <p>14 '90 팀스피리트 한·미 연합상륙훈련 실시</p> <p>16 공군사관학교 제38기 졸업식</p>	<p>11 • 평양북도 각 시군내에 중소형 발전소 20개 건설 완료(중앙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강도, '90 팀스피리트 훈련 규탄 군중대회 개최(중앙방송)</li> </ul> <p>14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 평양 도착, 김일성·김정일·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영접(~16일)</p>	<p>16 • 국제인권연맹, 방북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받은 임수경양의 석방요구 탄원서를 유엔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무부, 1988년 1월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취해진 북한여행금지조치를 해제</li> </ul> <p>18 • 동독, 독일재통일을 재결정하게 될 자유총선거 실시, 기민당 등 독일연합 압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워싱턴포스트紙, 미국이 한국 등에 통신수신소를 설치하고 각국의 전자통신을 도청해 오고 있다고 보도</li> </ul>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3	<p>22 정부, 체코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23 정부, 불가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24 국방부, 환태평양 '90해상 훈련(림팩)에 참가할 한국형 구축함 2척(마산·서울함) 출항(훈련 : 4.2~5.21)</p> <p>26 정부, 몽고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30 • 재향군인회 제32차 정기 전국총회 • 소련 항공기, 김포공항에 첫 취항</p>	<p>21 전 캄보디아 국가주석 노르돔 시아누크 일행 평양 도착</p> <p>22 당·정 대표협의회, 휴전선 콘크리트장벽(한국의 대전차 방어방벽) 공동조사제 의의 대남편지 채택</p> <p>24 민민전방송, 방소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의 한·소 국교 조속수립 발언을 두개의 조선조작을 위한 국제환경조성 목적이라고 비난 방송</p> <p>29 문익환 목사 구원단체위원회, 문목사 임수경양의 석방 및 콘크리트장벽 철거를 주장하는 성명 발표</p>	<p>19 소련 모스크바 라디오, 한국인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을 4월 1일부터 방영한다고 보도</p> <p>22 체니 美국방장관, 주한 미군 단계 감축안을 마련했다고 밝힘</p>
4	<p>1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한국전술항공통제체제 양해각서 교환</p>		<p>1 • 일본 외무성, 재일 한국인 3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함 • 소련 모스크바 방송, 소련거주 한국인 이산가족찾기 방송 시작</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2 • 북한 유학생 남명철, 박철진, 소련에 유학중 한국에 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참모본부, 전구통신비용분담에 관한 한·미 합의서 교환</li> </ul> <p>4 국방부, 한·미 양국정부는 야전사령부(CFA)를 해체키로 하는 등 국방관련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힘</p> <p>15 평화방송(PBC), 한국천주교가 설립 개국</p> <p>19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군사작전 영공사용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p> <p>20 • 한국형 초계전투함 영주함 취역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비행장 피해복구지원 협정서 교환</li> </ul>	<p>6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의訪蘇를 비난, 남북한 긴장격화</p> <p>8 중앙통신, 한국의 모 주식회사 회계사 강훈구(28세)가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보도</p> <p>14 박성철 부주석, 김일성 특사자격으로 짐바브웨 독립기념행사 참가차 향발</p> <p>17 중국군 친선참관단(단장 해군상장 이요문), 평양 도착</p> <p>20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중국해군상장 이요문과 회담</p>	<p>6 일본 매일신문,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장차 한·소간 외교관계 수립방침을 밝혔다고 보도</p> <p>11 오학겸 중국 부총리, 한국과 수교원칙에 동의한다고 아·태 변호사 회의 간담회에서 밝힘</p> <p>20 스미르노프 소련 역사학자,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났다고 밝힘</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4	<p>24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미공군 저장시설에 단일탄약 보급체제 비용분담 합의각서 체결</p> <p>30 국방부 무궁화회의 개최 (~6월 22일)</p>	<p>24 북한군 창건 58주년기념 중앙보고회 개최</p> <p>27 북한·소련, 경제 및 과학 기술협의위원회 제24차 회의 의정서 조인</p> <p>28 콘크리트장벽 조사 위한 국제조사단 콘크리트장벽 존재확인 주장(중앙방송)</p> <p>30 민민전방송, 북한정권과 소련, 동구권 정권과의 차이점 새로운 형태의 정권이라 강조</p>	<p>27 • 일본 후생성, 징용한국인 명단을 한국정부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요청하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p> <p>• 힐즈 미 무역대표, 한국은 미국 통상법 수퍼 301 조의 우선 협상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힘</p> <p>30 美국무부, 북한·리비아 등 6개국을 국제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p>
5	<p>1 • 불교방송(BBC) 개국</p> <p>• 국방부, 한·미 한강방류 통제체제 합의각서 교환</p> <p>• 국방부, 한·미간 주한 미 특전사 파견대 건설 합의각서 교환</p> <p>• 해군본부, 한·미 포항해군기지 주기장 및 유도로 확장 합의각서 교환</p> <p>• 국방부, 한·미 탱고 1, 2 시설개선 합의각서 교환</p> <p>• 한·미 통신소 대화생방 보호공사 합의각서 교환</p>	<p>2 • 묘향산 보현사, 석탄절 기념법회 진행</p> <p>• 콘크리트장벽 조사 위한 국제조사단, 평양 출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3 백마고지 전적지를 종합 전적지로 개발 준공</p> <p>7 합동참모본부, 한·미 을지 포커스렌즈 '90연습 합의각서 교환</p> <p>10 국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국방부 세미나(힐튼호텔) 개최</p> <p>12 국방부, 무공수훈 정장 미지급자 대상으로 훈·포장 찾아주기 운동 전개(~20일)</p> <p>13 정부, 한·미 주한미군방송(AFKN)을 UHF채널로 이전에 타결</p>	<p>5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유엔 특별총회(4. 23~5. 1)에서 연설</p> <p>8 조선인민군 공군비행대(대장: 홍성률 중장), 소련을 공식방문</p> <p>10 김일성, 방북한 야시르 아라파트 PLO의장과 회담</p> <p>13 무하마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방북</p> <p>14 •북한,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를 5·28 판문점에서 미국측에 인도할 방침(중앙통신) •소련군대 및 해군함대 총정치국 대표단(단장 중장 올라지에르 그레베뉴크) 방북</p>	<p>10 나토 국방장관회의, 소련의 단거리 핵무기 감축을 촉구</p> <p>11 도이 일본사회당 위원장,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해 아시아국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p> <p>15 필리핀, 정식 필리핀주재 미군기지의 임대연장을 불허한다고 미국에 공식통보</p> <p>18 동·서독, 화폐 및 경제통합협정에 조인</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5	<p>24 노태우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아키히토 일왕 만찬사에서 통석의 순 밝힘</p> <p>25 공군본부, 한·미 공군간 한국공군 및 美육군간의 연료지원 합의서 체결</p>	<p>24 • 김일성 북한주석,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할 것을 주장 •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p> <p>28 북한, 판문점 통해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5구 미국 측에 인도</p>	<p>24 •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독립선언을 유보하면 2~3년에 독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힘 • 부시 미국대통령, 대중국무역최혜국(MFA)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힘</p>
6	<p>3 盧泰愚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위해 미국 방문(~8일)</p> <p>7 盧泰愚 대통령, 북한이 무력통일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군사력도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p> <p>9 청와대, 한·소 및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북방정책, 남북관계, 대소련 대책반을 운영키로 함</p>	<p>1 북한, 남북한 병력을 각각 10만명 이하로 하자는 한반도 군축안 제의</p> <p>4 • 북한, 한반도 군축과 관련 미국을 포함한 3자협상을 열자고 주장 • 소련 공군대표단(단장 공군 총사령부 제1부총사령관 겸 참모장 공군중장 알렌친 팔민), 평양 도착</p>	<p>1 소련, 한반도를 통과하는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건설협력을 일본에 제의</p> <p>3 소련, 시장경제에로의 전환의 첫 조치로 모스크바시에 기초상품거래소 개설</p> <p>8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전유럽안보기구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힘</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11 제28대 육군참모총장에 李鑣三 육군 대장 취임</p> <p>12 국방부, 한·미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 체결</p> <p>18 국방부, 美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에서 전액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p>	<p>11 김일성 북한주석, 남북한은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p> <p>13 • 북한, 韓·蘇 회담을 격렬히 비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거부 • 북한, 對 제3세계 무기수출(중화기)액 세계 15위 차지</p> <p>17 홍콩 모닝포스트紙, 북한은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p> <p>20 북한, 남북고위회담, 예비회담과 국회회담 준비 접촉을 각각 재개하자고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에 제의</p> <p>21 북한·미국 학자토론회 진행(중앙방송), 인민문화궁전</p>	<p>12 동·서독 정부, 베를린을 통독의 수도로 만들기로 결의</p> <p>15 • 가이후 일본총리, 북한은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았을 뿐 비합법정부가 아니라고 밝힘 • NATO, 소련은 유럽 단거리미사일의 철거를 조기회담을 통해 제의했다고 밝힘</p> <p>22 파벨 美합참의장,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계속 검토할 것이나 아시아에서 완전철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6	<p>25 • 李相薰 국방부장관, 메네트리 주한 미군사령관,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9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각서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6·25 제40주년 기념기장 제정(국방부훈령 제399호)</li> <li>• 국방부,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 기본 양해각서 체결</li> </ul> <p>26 제6대 한·미 연합사령관에 로버트 리스카시 대장 취임</p> <p>29 국군조직법에 대한 MBC-TV 시사토론회에 이상훈 국방부장관 출연</p>	<p>23 •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관련 각종 행사진행(중앙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한국전투함 3척 북측 서해영해 침입주장</li> </ul> <p>28 서독 국회 외교위 위원장, 한스 스테르젠 일행, 평양 도착</p>	<p>23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서기장직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공산당 창당대회 연설을 통해 밝힘</p> <p>28 소련, 핵원료 생산금지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제네바군축회담에서 제의</p>
7	<p>1 국방부, 군납 농산물 조달체제를 각군 급양대와 단위농협간 직접조달체제로 개선</p> <p>2 외무부, 시르추크 駐韓소련영사처장대리 등 한정된 여행제한구역을 벗어났다고 경고</p>	<p>2 중국 신화사통신, 강택민 중국 총서기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대표단에게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구했다고 보도</p>	<p>1 뉴욕타임즈紙,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김일성 주석에게 민주화 압력을 가하기 위해 활동중이라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4 북한, 한반도 통일문제 협상회의 소집을 주장	4 美 워싱턴타임즈紙, 북한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자본국과의 유대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11 李相薰 국방부장관, 한·미간 KFP협상 타결됐다고 발표	9 인민일보, 한국전투함이 7월 5일 장산곶 근처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 보도	5 美 워싱턴포스트紙, 북한의 최근 미사일발사사업 실패를 보도
	14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16 북한 백두산에 지상과도식 삭도설치(중앙방송) (백두교, 향도봉에 정유소)	8 중국인 紫正,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종단, 강원도 철원을 거쳐 한국정부로 망명
	18 국방부, 한·미 오산 통신 시설 및 군산 재발전건설에 대한 한·미 국방부간 합의 각서 서명	18 콘크리트장벽해체 남북공동추진위원회 구성 제의(북측 위원장 부총리 장철)	12 모스크바 방송, 북한은 한반도가 동·서독의 2+4형태로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19 국방부, 징병검사와 관련 뇌물받은 병무청 이준희 차장 면직	20 허담(祖統 위원장),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한 자유왕래 허용 발표 관련, 거부성명 발표	20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모든 재산의 사유화 등이 포함된 500일 러시아공화국 경제기획안을 마련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7	<p>23 3부(국방부·법무부·통일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측이 주장해온 콘크리트장벽에 대한 공동조사 제의</p> <p>26 해군, 군수지원함 진수</p> <p>30 국방부, 휴전선일대의 대전차방어용 콘크리트구조물을 내·외국인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밝힘</p> <p>31 • 공군본부, HTACC/KCOIC 시설관리 양해각서 체결                      • 국방부, 한·불 방산협력 의향서 교환                      • 국방부, 한·불간 천마사업 상호지원 협정서 체결</p>	<p>23 연형묵 정무원 총리, 對 南서신 통해 남북한 당국·정당협상회의 제의</p> <p>25 연형묵 정무원 총리, 강영훈 총리에 전화통지문 전달. 한국정부의 3부장관의 회담제의를 거부하며 27일 남북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정당수뇌 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p> <p>29 외교부 대변인 성명발표, 소련의 대한수교 움직임을 비난</p>	<p>22 몽고, 공산혁명이후 첫 다당제 자유총선 실시</p> <p>23 클라크 캐나다 국무장관, 북태평양지역국가들은 나토와 같은 안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의</p>			
8	<p>1 국군조직법 개정 공포(법률 제4249호)</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10 국방부, 전방지역 대전차 장애물 처음으로 공개(~9월 8일)</p> <p>20 을지 포커스렌즈 '90연습 실시(~25일)</p>	<p>2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대장 김봉률), 짐바브웨 향발(~23일)</p> <p>6 조선인민군 열사탑 제막(원산)</p> <p>7 인민군 참관단(단장 대장 전문섭), 중국방문후 귀환</p> <p>13 범민족대회 개막 및 조국통일 백두·한라대행진 출정식 거행(백두산)</p> <p>15 • 북한, 현역군인 5명, 학술회의 참석차 11월에 방미 예정(11월 14일~17일 한·미 안보협회의의 제6차 연례학술회의(버지니아, 알링턴) 참석) • 북한, 플루토늄 생산준비 완료</p> <p>16 공군사령관 조명록 상장, 방북 소련 공군비행대 참모장 유리 모로조프 소장과의 면담</p> <p>23 중국 군사친선대표단(단장 국방부장 秦基偉) 평양 도착</p>	<p>2 • 동·서독, 개정된 서독 선거법에 따라 12월 2일 통일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협정 체결(12월 14일 실시, 수도는 베를린) •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점령</p> <p>15 소련 타스통신,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솔제니친 등 1966~88년 사이 시민권 박탈된 모든 소련인들의 시민권을 복귀시켰다고 보도</p> <p>19 사천왕사 왔소 축제, 재일동포 300여명 참가한 가운데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8	<p>24 국무회의, 국군의 날 및 한글날은 관련부서만 휴무 하도록 하고 익일 휴무제를 폐지하기로 의결</p> <p>31 李相薰 국방부장관, 부조리 원천 제거, 병역의무 형평성 보장을 위한 병무행정 쇄신방안에 관한 기자회견</p>	<p>27 북한, 기상위성수신소 준공(평양방송)</p> <p>30 조선인민군 해군전대(대장 권상호 중장) 소련 방문을 마치고 귀환</p>	<p>30 부시 美대통령, 페르시아만 주둔 미군 방위비를 한·일 등 우방국에 분담 요구</p>
9	<p>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7일, 서울)</p> <p>7 브래디 美재무장관, 청와대 방문하고 걸프전 경비로 3.5억달러 지원요청</p> <p>9 60여년만의 집중호우(~12일)에 군헬기 178대, 고무보트 549정 투입하여 주민 12,331명 구조(고양부근 한강제방 334m 붕괴복구활동에 병력 14,800여명과 중장비 1,800여대 투입)</p>	<p>2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남북한 총리회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방문</p> <p>3 일본자민당·사회당 대표 6명 북한 방문</p> <p>8 9·9절 42주년 중앙보고대회 진행(2·8문화회관)</p>	<p>4 남북한·미국 등 21개국이 참가한 제2차 블라디보스토크 아·태 지역회의 개막(~6일)</p> <p>9 일본 매일신문, 소련은 일본에 대해 북한과 관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10 제20대 공군참모총장에 韓周奭 공군 대장 취임</p> <p>12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해주대교 부근 한강제방 터져, 지도·일산·원당·화전 등 침수, 사망·실종 124명, 이재민 10만 8,000여명 발생</p> <p>17 미국, 페르시아만 방위비 분담금으로 4억 5,000만달러를 한국정부에 요구</p> <p>18 한강제방 붕괴지역 복구 완료 개통식</p> <p>20 걸프사태 종합지원방안 청와대에 보고</p> <p>24 정부, 걸프사태 종합지원방안 발표</p> <p>28 · 걸프사태 부대파견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국방부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기념관 기공식 거행</li> <li>· 한·스위스 품질보증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li> </ul> </p>	<p>14 북한, 미국과 북경에서 제12차 외교관 접촉 가짐</p> <p>17 이성호(北赤위원장 대리), 적십자본회담 재개문제와 관련해 김상협 韓赤총재에 電通</p> <p>27 북한 노동당·외교부, 일본정부와의 수교회담을 제의</p> <p>28 북한, 개풍군에 남한 전투기 침입 주장</p>	<p>13 일본정부, 일본주둔 미군의 유지비 부담을 일축</p> <p>18 체니 美국방장관, 1991년부터 서독 등 10개국 150개소의 미군기지를 폐쇄한다고 밝힘</p> <p>25 楊尙昆 중국 국가주석, 대만에 대해 1국가 2체제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을 촉구</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9	<p>29 • 합동참모본부 기구 개편 (대통령령 제13109호).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수행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합참의 편성 및 기능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110호)</li> <li>• 해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111호)</li> <li>• 공군본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112호)</li> <li>• 해병대사령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113호)</li> </ul>	<p>29 북한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개최 (2·8문화회관)</p>	
10	<p>1 • 국방정보본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1311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li> <li>• 국방부, 표지장을 10종에서 25종으로 패용제도 확대</li> <li>• 해군본부, 서울시 예산지원(29억원)으로 거북선 건조, 한강에 취항</li> </ul> <p>5 합동참모본부 현판식(국방부 정문) 거행</p>	<p>1 북한·베트남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제2차회의의 정서 조인(평양)</p> <p>2 북한, 일본 국제전신전화(KDD)를 양국간 위성통신으로 사용 개시</p> <p>4 일본 동경신문, 김일성 북한주석은 일본과의 교섭을 조속히 추진해 6개월 이내에 수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p>	<p>1 • 가이후 일본수상, 일본은 북한과 공식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美대통령, 남북한 동시 유엔에 가입한다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li> </ul> <p>2 전기침 중국외교부장, 한국과 중국의 관계접근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p> <p>5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상의 마지막 미합의 부문인 장거리 핵무기 감축 논의를 위한 4차회담 개최</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8 제28대 국방부장관에 李鍾九 예비역대장 취임</p> <p>10 국방참모대학 창설(국방대학원내)</p> <p>13 남북통일축구대회 대표단 (단장 체육부장관 정동성), 관문점 통해 귀경</p> <p>15 국방부, 한·영 방산물자 조달협력 양해각서 체결</p> <p>16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9일, 평양)</p> <p>20 북한군 신광호(24세)중사 중동부전선으로 귀순</p> <p>23 국방부, WRSA 지정 미전차 비축에 관한 한·미간 합의각서 서명</p> <p>27 자유로 사업 기공식(오두산)</p>	<p>11 • 북한, 일본 어선 후지마루호 선장 및 기관장 석방 •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5·1 경기장)</p> <p>13 북한, 금강산에 김정일 칭송문구 각인(내금강 오선봉에 “조선의 영광, 민족의 자랑 김정일” 외금강 만수봉에 “주체의 향도 김정일” 각 글씨의 높이 10여m)</p> <p>16 제2차 남극탐험대(단장 기상 수문국 부국장 장기봉), 남극 향발</p> <p>23 중국군 한국전 참전 40주년 즈음해 압록강다리를 조·중 친선다리로 명명</p> <p>24 중국군 6·25 참전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p>	<p>7 일본 동경신문, 정부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락, 협정을 조기에 체결토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p> <p>23 일본정부, 일본·대만간의 영토분쟁과 관련 釣魚臺 군도(일본명 침각열도)는 일본영토에 속한다고 공식 천명</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0	<p>29 해군사관학교 제45기 순항훈련분대 출항</p> <p>30 '90 쌍용훈련(~11월 3일) 실시</p>	<p>30 북한, 미국과 북경에서 13차 실무접촉에서 유해송환 등 양국관계 전반에 관해 협의</p>	
11	<p>1 • 李鍾九 국방부장관, 차세대 전투기사업(KFP) 전면 재검토 방침 발표(기자 간담회에서 美 맥도널 더글러스사(MD)의 가격인상 요구에 따라)</p> <p>• 해군본부, 제9차 한·미 해군회의 합의각서 교환</p> <p>6 한국·소련간 직통전화(4회선) 개통</p> <p>8 국방부, 북한의 군사력이 99만명으로 '89년보다 1만명이 증가했다고 '90년 국방백서를 통해 밝힘</p>	<p>1 북한, 한국 전투함 1척이 북한 서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평양방송)</p> <p>2 북한, 조건부로 핵사찰에 동의(IAEA 사무국장 日 니혼게이사이 신문회견)</p> <p>5 소련 10월혁명 73주년 기념집회 개최(천리마 문화회관)</p> <p>9 예성강 水路 완공(82km)</p> <p>10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김광진 대장) 중국 향발</p>	<p>3 소련 몰다비아 공화국 의회, 자체군대를 결성키로 결의</p> <p>5 • 美 뉴욕타임즈紙, 美 국방부는 페르시아만에 파견키 위한 전투부대출신 예비역을 소집키로 했다고 보도</p> <p>•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 1983년 KAL기 격추사건은 소련측의 고의적인 공격이었다고 자서전을 통해 주장</p> <p>12 • 美 워싱턴타임즈紙, 북한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p>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p>13 • 국방부, 한·미간 155밀리 자주포 공동생산 양해각서 수정(2호)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A12(후속 합의각서, 시행지침에 대한 수정 1호) 교환</li> <li>• 제2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회가 워싱턴에서 이종구 국방부장관과 체니 미국방장관간에 개최(~15일)</li> </ul> <p>14 • 한·미 군사위, 팀스피리트 훈련을 지속하되 축소하는데 잠정합의하고 평시 작전권의 한국측 환원을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한·미간 폭발물 저장 안전기술 연구개발의 향서 체결</li> </ul> <p>20 李鍾九 국방부장관, 보안사개편안을 91년 중반기에 확정하고 도심지역의 32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힘</p> <p>23 국방부, 한·印尼 상호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p> <p>26 국방부, 한·미 항만방어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p>	<p>13 1989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41억 7,000만달러로 GNP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집계</p> <p>14 트로티모프 평양주재 소련 무역대표, 북한의 대소련 채무총액은 39억 4,700만달러라고 밝힘</p> <p>16 북한, 95년까지 3~6개의 핵폭탄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케 된다고 보도</p> <p>23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이란 및 타이 방문차 평양 출발(11월 27일 이란 라프산 자니 대통령 면담)</p>	<p>12 • 美워싱턴포스트紙, 북한은 독자개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준비중이라고 보도</p> <p>19 유럽, 재래식 전력(CFE) 감축협정 서명</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1	28 李鍾九 국방부장관, 국정 감사에서 군 전화번호 일부 공개 밝힘	28 남북한 90년 송년 통일 전통음악회에 33명의 북측 음악인을 참석키로 합의했다고 밝힘	
	29 정부, 사우디로부터 의료 지원단 파견에 대한 환영의 사 공식접수	29 중앙통신, 북한과 일본은 양국간 위성통신망 개설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	29 유엔, 多國籍軍 무력행사 승인
12	1 • 대통령훈령 제28호 개정, 시행 • 합참, 차량표지판 개선 시행	1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태국 수도 방콕 도착(3일 차 티차이 추나반 수상 겸 국방상 상견)	2 •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소콜로프 필리핀주재 대사를 초대 한국주재 대사로 임명 • 미국 39번째의 왕복우주선 콜롬비아호 발사
		3 일본 국제전신전화사, 북한과 전화 및 텔렉스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4 노동신문, 북한과 소련이 중국측에 두만강 하구 항행권을 인정했으며 북간도지역이 3국의 경제특구로 개발될 것이라고 보도	4 소련 최고회의, 고르바초프 권한 강화의 연방체제 개편안을 승인
		5 북한 해군대표단(단장 김일철 상장), 소련 향발	5 소련 인민대표회의,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정치·경제적 위기해결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할 것을 요구
	7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1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4일, 서울)</p> <p>12 낙도 위급환자 후송 위해 새벽 비상출동한 공군헬기 추락, 6명 전원 순직</p> <p>15 '90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p> <p>18 국방부, '91년부터 지역방위협의회 요청시 예비군도 방법순찰활동 실시한다고 발표</p> <p>19 F-86F 전투기 명예 퇴역식</p> <p>20 합동참모본부 임시막사 (ISO-WALL) 신축 준공</p> <p>24 국방부, 의료지원단 파견 준비지침 마련</p> <p>27 제8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진영 대장 취임</p>	<p>11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해줄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보도(미국 월스트리트 저널)</p> <p>14 일본 경제신문, 중국은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의 대금 결제지연으로 원유수출량 감축을 통보했다고 보도</p> <p>18 북한, '90년 7월 한국으로부터 사랑의 쌀 800여톤 인수(日 마이니찌신문)</p> <p>20 소련 노보스틴 통신, 북한은 노보스틴 통신 평양지국을 폐쇄키로 했다고 보도, 프라우다 평양주재 사무실도 폐쇄</p> <p>24 장충성당, 예수성탄 대축일 전야기도회 진행(평양방송)</p>	<p>10 미국·소련, 양국의 장거리 전략 핵미사일을 1/3씩 감축키로 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협상을 휴스턴에서 개최</p> <p>15 신화사 통신, 한국은 페르시아만 사태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터키에 2,000만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p> <p>20 일본정부, 19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의 방위비를 22조 7,500엔으로 확정하는 등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임시각료회의에서 결정</p> <p>27 일본 공동통신,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93년부터 가족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p>

1990년

월	한 국	북 한	국 제
12	<p>28 • 국방부, 국방부조달본부를 국방군수본부로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여군단 해단식 및 인사참모부 여군처로 승격, 전환식('91. 1. 1부) 거행</li> </ul> <p>29 국방부, 걸프전 의료지원단 파견 준비실무협상팀·현지조사단 사우디 파견</p> <p>30 정부, 사우디 정부의 의료지원단 파견요청 접수</p> <p>31 • 국방부 조사대를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정신전력학교를 국방정신교육원으로 개편</li> <li>• 국방군수본부령(대통령령 제13209호) 공포</li> </ul>	<p>28 북한·중국간 1991~92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북경)</p> <p>30 인민무력부, 북한주재 각국 대사관 무관들을 위해 소연회 개최</p>	<p>28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한반도 안정·평화통일 위해 소련은 국제적 협력·보증이 필요할 경우 참가용의가 있다고 밝힘</p> <p>29 • 이라크, 유엔안보리의 철수 시한내 철군거부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국방차관, 이라크의 화학무기사용시 대량보복을 경고</li> </ul> <p>30 이라크, 페르시아만 전쟁 대비 송유관에 지뢰 매설</p>

## 第2部 國防關係 文獻



# I. 國防關係 法令(制定當時)

## 가. 軍 政 期

### 美陸軍 太平洋地區 總司令部 布告 第1號

1945. 9. 7.

朝鮮住民에게 布告함.

美國 陸軍太平洋最高指揮官으로서 下記와 如히 布告함.

日本國 天皇과 政府와 大本營을 代表하여 署名한 降伏文書의 條項에 依하여 本官 麾下의 戰勝軍은 今日 北緯 38度 以南의 朝鮮地域을 占領함.

오랫동안 朝鮮人이 奴隸化된 事實과 適當한 時期에 朝鮮을 解放 獨立시킬 決定을 考慮한 結果 朝鮮占領의 目的이 降伏文書 條項履行과 朝鮮人의 人權 及 宗教上의 權利를 保護함에 있음을 朝鮮人은 認識할 줄로 確信하고, 이 目的을 爲하여 積極의 援助와 協力을 要求함.

本官은 本官에게 附與된 美國 陸軍太平洋 最高指揮官의 權限을 가지고, 이로부터 朝鮮北緯 38度 以南의 地域과 同地의 住民에 對하여 軍政을 設立함에 따라서 占領에 關한 條件을 下記와 如히 布告함.

第1條 朝鮮北緯 38度 以南의 地域과 同 住民에 對한 모든 行政權은 當分間 本官의 權限下에서 施行함.

第2條 政府, 公共團體 또는 其他의 名譽 職員과 雇傭人과 또는 公益事業, 公衆衛生을 包含한 公共事業에 從事하는 職員과 雇傭人은 有給無給을 不問하고, 또 其他 諸般重要한 事業에 從事하는 者는 別命있을 때까지 從來의 職務에 從事하고, 또한 모든 記錄과 財産의 保管에 任할 事.

第3條 住民은 本官 及 本官의 權限下에서 發布한 命令에 卽速히 服務할 事. 占領軍에 對하여 反抗行動을 하거나 또는 秩序保安을 攪亂하는 行爲를 하는 者는 容恕없이 嚴罰에 處함.

第4條 住民의 所有權은 此를 尊重함. 住民은 本官의 別命이 있을 때까지 日常의 業務에 從事할 事.

第5條 軍政期間中 英語를 가지고 모든 目的에 使用하는 公用語로 함.

英語와 朝鮮語 또는 日本語間에 解釋 및 定義가 不明 또는 不同이 生한 때는 英語를 基本으로 함.

第6條 以後 公布하게 되는 布告, 法令, 規約, 告示, 指示 及 條例는 本官 또는 本官의 權限下에서 發布하여 住民이 履行하여야 될 事項을 明記함. 下 布告함.

於 橫濱

美國 陸軍太平洋地區 最高司令官

美國 陸軍元帥 더글라스·맥아더

### 軍政法令 第28號

1945. 11. 13.

第1條 國防司令部의 設置

朝鮮의 終局의 獨立을 準備하며, 世界國家에 依하여 朝鮮의 主權과 大權의 保護, 安全에 必要한 兵力을 急速히 準備하며, 民官安寧의 維持와 民間의 無秩序에 對하여 民權을 擁護하는 民間警察機關의 補助 及 宗教·言論의 自由, 財産權을 維持하며,

必要的 陸·海軍의 召集, 組織, 訓練準備를 始作하며, 國民의 政府革命을 保護키 爲하여 茲에 朝鮮 軍政廳 國防司令部를 設置함.

**第 2 條** 軍務局의 創設 及 陸·海軍部의 設置 朝鮮政府 軍務局을 政府의 局으로서 創設함. 軍務局內에 陸軍部, 海軍部를 設置함. 現存 警務局, 軍務局은 國防司令部의 監督指揮下에 置함.

**第 3 條** 警察 軍事機關의 禁止 如何한 者와 團體라도 如何한 種類의 警察, 陸·海軍 軍事活動의 召集, 訓練, 組織, 準備 及 警務, 軍務局의 管轄에 屬하는 行動을 行使치 못함. 但 國防司令官 或은 國防司令官이 認定한 其 權利附與 代行機關의 書面認可를 得한 時는 除外함.

**第 4 條** 罰 則 本令의 條規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에 依하여 處罰함.

**第 5 條** 施行期日 本令은 1945年 11月 13日 午前 零時부터 有效함.

在朝鮮 美國 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 陸軍少將 에·비·아놀드

### 軍政法令 第42號

1946. 1. 14.

**第 1 條** 朝鮮政府 運送局 海事課, 海岸警備의 모든 義務, 職務, 記錄, 財產 及 職員은 航海의 補助에 關한 것(燈臺事務) 外에는 茲에 此를 朝鮮政府 國防局에 移轉함.

**第 2 條** 朝鮮政府 法務局 史의 研究課 及 近代朝鮮法典起草課의 모든 義務, 職務, 記錄, 財產 及 平民職員을 茲에 朝鮮政府 官房總務課에 移轉함.

**第 3 條** 本令은 1946年 1月 18日 24時에 效

力을 生함.

在朝鮮 美國 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 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軍政法令 第63號

1946. 3. 29.

警務局의 國防司令部 監督指揮下에서의 離脫에 關한 件.

**第 1 條** 警務局의 國防司令部 監督指揮下에서의 離脫.

朝鮮政府 警務局은 茲에 國防司令部 監督指揮下에서 離脫함.

**第 2 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10日後에 效力이 生함.

朝鮮軍政長官

美國 陸軍少將 아취·엘·러취

### 軍政法令 第64號

1946. 3. 29.

朝鮮政府 各部署의 名稱

**第 1 條** 範 圍

朝鮮政府의 重要部署는 爾後 茲에 部 또는 處로 함.

本令은 部署의 既存權限, 機能 또는 任務를 變更치 않음.

此法令에 規定한 區別 及 名稱은 法令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變更치 못함.

**第 2 條** 局을 部로 改稱

朝鮮政府의 左記名 部署는 爾後 部로 함.

(가) 前 農務局은 農 務 部

(나) 前 商務局은 商 務 部

(다) 前 遞信局은 遞 信 部

(라) 前 學務局은 文 教 部

(마) 前 財務局은 財 務 部

(바) 前 法務局은 司 法 部

- (사) 前 國防司令部는 國防部
- (아) 前 警察局은 警務部
- (자) 前 保健厚生局은 保健厚生部
- (차) 前 公報局은 公報部
- (카) 前 交通局은 運輸部

**第 3 條 課를 處로 改稱**

左記 朝鮮政府 各 部署를 爾後 處로 함.

- (가) 前 會計課를 會計處
- (나) 前 外務課를 外務處
- (다) 前 總務課를 總務處
- (라) 前 人事課를 人事行政處
- (마) 前 地方課를 地方行政處
- (바) 前 企劃課를 企劃處
- (사) 前 財産管理課를 管財處

**第 4 條 部**

部는 如次 細別함.

- (가) 部는 局으로
- (나) 局은 課로
- (다) 課는 係로
- (라) 係는 班으로

**第 5 條 處**

處는 如次 細別함.

- (가) 處는 署로
- (나) 署는 課로
- (다) 課는 係로
- (라) 係는 班으로

**第 6 條 監督官의 職名**

第4條 及 第5條에 表示한 細別 部署의 監督官職名은 爾後 如次함.

- (가) 部에 對해서는 部長으로, 處에 對해서는 處長
- (나) 局, 署, 課, 係 及 班에 對해서는 各 局長, 署長, 課長, 係長, 班長

**第 7 條 補佐役의 職名**

監督官의 補佐役이 就任하였을 때에 其 職名은 如次함.

- (가) 部, 處는 次長
- (나) 局, 署, 係, 班은 副局, 署, 課, 係, 班長

**第 8 條 規定된 職名의 使用**

規定된 職名만이 朝鮮政府內에 配置된 軍務員 及 公務員에 適用함.

**第 9 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에 效力을 生함.

朝鮮 軍政長官

美國 陸軍少將 아취·엘·러취

**軍政法令 第86號**

1946. 6. 15.

朝鮮警備隊 及 朝鮮海岸警備隊

**第 1 條 國防部 改稱, 軍務局의 廢止**

朝鮮政府의 國防部는 茲에 國內警備部로 改稱함.

朝鮮政府의 國內警備部의 軍務局은 茲에 廢止함.

1945年 11月 13日附 法令 第28號 第2條는 茲에 廢止함.

**第 2 條 朝鮮警備隊**

朝鮮警備隊가 茲에 創設되고, 1946年 1月 14日附로 國內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朝鮮政府 豫備警察隊를 準備할 目的으로 國家 代行機關으로서 活動함.

朝鮮警備隊는 國內警備部의 朝鮮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 3 條 朝鮮海岸警備隊**

朝鮮海岸警備隊가 茲에 創設되고 1946年 1月 14日附로 朝鮮 沿岸 海上의 近海岸 及 島嶼巡察을 維持하기 爲한 朝鮮政府 海防兵團으로서 活動함. 朝鮮海岸警備隊는 國內警備部의 朝鮮海岸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 4 條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이 茲에 制定되며 及其는 當時 及 到處에서 朝鮮警備隊를 管理함.

**第 5 條 朝鮮海岸警備廳에 對한 規程**

朝鮮海岸警備廳에 對한 規程이 茲에 制定되고 及其는 當時 及 到處에서 朝鮮海岸

警備隊를 管理함.

**第 6 條 有效期日**

本令은 發布日 效力을 發生함.

朝鮮 軍政長官

美國 陸軍少將 아취·엘·러취

**軍政法令 第189號**

1948. 5. 10.

海岸警備隊의 職務

首題의 件에 關하여 立法의 審議와 法律 制定이 있을 때까지 下記에 依함.

**第 1 條** 本令은 西紀 1946年 6月 15日附 法令 第86號(朝鮮警備隊 及 朝鮮海岸警備隊)에 依하여 創設된 朝鮮海岸警備局의 權限 及 職務의 範圍를 明確히 함을 目的함.

**第 2 條** 運送部 海事局 所管이던 船舶檢査에 關한 一切의 任務, 職能, 計錄, 基金 及 職員은 茲에 統衛部 海岸警備局에 此를 移管하며 船舶檢査에 關한 其他 一切의 權限도 此를 海岸警備局 管下에 置함.

**第 3 條** 法令 第86號 第3條 規程中 「朝鮮 海岸警備隊가 茲에 創設되고…… 朝鮮 沿岸 海上의 近海岸 及 島嶼巡察을 維持하기 爲한 朝鮮政府 海防兵團으로서 活動함」이라 한 規定은 此를 茲에 左와 如히 敷衍함.

가. 沿岸海라 함은 國際法上의 領海를 意味함. 北緯 38度 以南 朝鮮의 領海의 定義를 下와 如히 定함.

나. 領海라 함은 朝鮮海岸 沿岸에 沿在하는 各 港口, 停泊地, 灣江 及 其他海口와 또한 沿海線으로부터 海上 1海哩(리-구) 또는 3哩(마이루)以內의 沿海域을 包含함.

**第 4 條** 運輸部 海事局 船舶檢査課 所管과 高級船員 及 一般海員의 免許 及 證明免許 及 證明의 停止 及 取消, 海上事故의 調查, 船員配置에 關한 要求事項, 船員의

市民權에 關한 要求事項, 船員의 點檢 及 訓練에 關한 要求事項의 實施, 航海日誌에 對한 管理, 商船乘組員의 雇傭, 解雇, 保護 及 厚生, 事故 發生後 船主와 高級船員의 責務履行의 實施, 發動船 運轉手의 免許에 關한 一切의 任務, 職能, 記錄, 財產, 基金 及 職員은 茲에 此를 統衛部 海岸警備局에 移轉함.

**第 5 條** 本令에 抵觸되는 一切의 法律, 法令, 命令, 規則, 指令 及 指示 또는 其 部分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此를 茲에 廢止함.

1914年 4月附 法令 第7條(朝鮮船舶法)及 1935年 1月附 法令 第2號(朝鮮船舶安全法)는 前項의 法令中에 包含함.

**第 6 條** 本令은 公布後 10日부터 效力을 發生함.

上建議함 民政長官 安在鴻  
上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윌리엄·에프·핀

**軍政法令 第197號**

1948. 5. 25.

朝鮮海岸警備隊의 船舶搜索權

本件에 關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下記에 依함.

**第 1 條** 本令은 船舶 及 그 乘組員에 關한 法律의 施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朝鮮海岸 警備隊에게 必要한 警察力을 附與함을 目的으로 함.

**第 2 條** 朝鮮海岸警備隊의 士官, 准士官 及 下士官은 北緯 38度 以南의 公海 及 航海할 수 있는 水域에서 訊問, 調查, 臨檢, 押收, 搜索 及 拘束의 權限이 附與되며 그 義務를 負擔함. 그 目的으로 士官, 准士官 及 下士官은 法律의 規程에 依하여 何時를 莫論하고 乘船, 訊問, 船舶에 關한 書類의 調查, 船舶의 臨檢, 搜索, 其他 法

律을 施行함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음. 犯罪가 있는 境遇에는 그를 逮捕하며 陸地에 逃亡한 境遇에는 即時 追跡하여 逮捕 其他 法律에 許容된 適宜의 措置를 取함. 犯罪가 있을 境遇에는 (가) 그 船舶 또는 그 貨物(船中에 있는 또는 그 船舶이 南朝鮮에 搬入하였던 것을 莫論하고)을 沒收하며 (나) 그 船舶을 罰金 其他 刑罰에

處하여 境遇에 依하여서는 罰金 其他 刑罰의 執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그 船舶을 拿捕함.

第3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上建議함 民政長官 安在鴻  
上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다블유·에프·뎀

## 나. 政府樹立 以後

### 大韓民國憲法

1948. 7. 17.

####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대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이 選舉된 代表로써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晚

####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의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 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 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查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即時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第11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祕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教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教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家,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障한다.

**第15條** 財產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產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產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행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教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教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教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舉할 權利가 있다.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 第3章 國 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32條 國會는 普通, 直接, 平等 秘密選舉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國會議員의 選舉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33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回 十二月二十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四分之一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舉를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第36條 國會는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舉한다.

第37條 國會는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第39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但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本條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第45條**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46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判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의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의 發議는 議員 五十人以上의 連署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の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47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三分之二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第4章 政 府

### 第1節 大 統 領

**第51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52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53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 投票로써 各各 選舉한다.

前項의 選舉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の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の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 三分之二 以上の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二次投票을 行한다. 二次投票에도 三分之二 以上の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을 行하여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在任中 在任한다.

**第56條**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三十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舉한다.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關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舉한다.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

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58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59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第60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第61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63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64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65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을 授與한다.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 第2節 國務院

**第68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國策을 議決한다.

**第69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國會議員 總選舉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70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71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2條** 다음 的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 政策에 關한 事項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6. 戒嚴案, 解嚴案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9. 行政 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 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12. 行政 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

營에 관한 事項

13.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 第3節 行政 各部

第73條 行政 各部長官은 國務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長官을 統理監督하며 行政 各부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74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 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行政 各부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 第5章 法 院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三分之二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을 아니할 수 있다.

## 第6章 經 濟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的 地下資源, 水產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重要的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가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

理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9條** 第八十五條 乃至 第八十八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消하거나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十五條 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7章 財 政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 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を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豫算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國會는 一箇月 以內의 假豫算을 議決하고 그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 第8章 地方自治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舉는 法律로써 定한다.

## 第9章 憲法改正

**第98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 써 한다.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國會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即時 公布한다.

## 第10章 附 則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四千二百七十八年 八月 十五日 以前의 惡質의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二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舉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 國會議長은 大韓民國 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七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 承 晚

## 政府組織法

법률 제 1 호  
1948. 7. 17.

###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政府의 行政組織의 大綱을 定하여 統一의이고 體系있는 國務遂行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依하여 모든 行政機關을 統轄하고 國務總理·行政各部長官·地方行政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第 3 條 行政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院·部·處·廳 또는 委員會로 하고 그 補助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秘書室·局·課로 한다. 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은 法律로써 定하고 그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4 條 各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에 支廳 또는 分局을 둘 수 있다.

第 5 條 各 行政機關에는 法律이 定하는 所

管事務의 範圍內에서 特히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博物館·科學館·圖書館·藝術院·技術院·試驗所·研究所 等の 文化施設, 公共施設과 審議會, 委員會 等の 諮問機關이나 調查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 6 條 本法에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모든 機關과 施設을 設置할 때에는 반드시 豫算上의 措置가 併行하여야 한다.

第 7 條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 定員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 2 章 國務院과 國務總理

第 8 條 國務總理는 國務會議에 附議할 案件을 總括하고 調整한다.

第 9 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各部長官을 統理하며 行政各部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第10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政府提出의 法律案·豫算案 其他의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며 一般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報告한다.

第11條 國務總理는 所管行政事務에 關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第12條 國務總理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定하는 國務委員이 臨時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3條 다음에 列舉한 者는 國務會議에 列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1. 本法에서 規定하는 各處長
2. 法律로써 特히 指定하는 者

### 第 3 章 行政各部

第14條 政府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두고 部に 長官 1人을 둔다.

1. 內務部
2. 外務部
3. 國防部
4. 財務部
5. 法務部
6. 文敎部
7. 農林部
8. 商工部
9. 社會部
10. 交通部
11. 遞信部

第15條 內務部長官은 治安·地方行政·議員選舉, 土木과 消防에 관한 事務를 掌理하고 地方自治團體를 監督한다.

第16條 外務部長官은 外交·外國과의 條約·協定과 在外僑民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17條 國防部長官은 陸·海·空軍의 軍政을 掌理한다.

第18條 財務部長官은 政府의 會計·出納과 國債·租稅·貨幣·金融·專賣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19條 法務部長官은 檢察·刑政과 司法人事行政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20條 文敎部長官은 教育·科學·技術·藝術·體育 其他 文化各般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21條 農林部長官은 農產·山林·畜產·蠶業·食糧·水利와 農地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22條 商工部長官은 商業·水產·鑛業·工業·電氣·度量衡·特許와 貿易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23條 社會部長官은 勞動·保健·厚生과 婦女問題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24條 交通部長官은 陸運·水運·航空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25條 遞信部長官은 郵便·電信·電話·簡易保險과 郵便貯金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26條 行政各部長官은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하며 所管事務에 對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第27條 行政各部長官은 主管事務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主管이 明白하지 아니한 事務로써 2部以上이 關聯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그 主管을 決定한다.

第28條 行政各部長官은 主管事務에 對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制定, 改正 또는 廢止를 必要로 할 때에는 그 案을 作成하여 國務會議에 提出할 수 있다.

第29條 行政各部에 次官 1人을 둔다.

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事務를 總轄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 第 4 章 國務總理所屬機關

第30條 國務總理所屬下에 總務處·公報處·法制處와 企劃處를 두고 處에 處長 1人을 둔다. 但 必要에 依하여 次長 1人을 둘 수 있다. 各 處長은 所屬事務를 總轄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31條 總務處長은 國務院의 庶務·會計·文書·人事와 榮譽授與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32條 公報處長은 法令의 公布·情報·宣傳·統計·印刷·出版과 著作權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33條 法制處長은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法律·命令案의 起草·審査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34條 企劃處長은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財政·經濟·金融·產業·資材와 物價에 관한 綜合的計劃의 樹立과 豫算編成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35條 企劃處에 經濟委員會를 둔다.

經濟委員會는 企劃處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統領이 選任한 다음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農林部·商工部·財務部·交通部·遞信部·社會部와 內務部에서 各 1人

2. 産業·金融界에서 4人
  3. 學界에서 2人
- 經濟委員會는 國務會議에 提出할 綜合的 財政·經濟計劃에 關하여 國務院의 諮問에 應한다.

### 第 5 章 考試委員會

- 第36條** 考試委員會는 大統領所屬下에 公務員資格의 考試와 銓衡을 行한다.
- 第37條** 考試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長 1人과 委員若干人으로써 構成한다.
- 第38條** 모든 公務員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務員任用에 關한 法律의 定하는 外에 依하여 考試委員會의 考試 또는 銓衡을 받아야 한다.
- 第39條** 考試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 6 章 監察委員會

- 第40條** 監察委員會는 大統領所屬下에 公務員에 對한 監察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公務員中에는 國會議員과 法官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 第41條** 監察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長 1人과 委員 8人으로 構成한다.
- 第42條** 監察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第43條** 監察委員會는 公務員의 違法行爲 또는 非行이 있을 때에는 事實을 審査한 後 證憑에 依하여 委員過半數로 懲戒를 議決한다.  
懲戒가 議決되면 所管行政長官에게 移送하여 施行케 한다. 但 憲法 第46條에 列擧된 公務員의 懲戒는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 第44條** 監察委員會는 監察上 必要한 때에는 關係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書類의 提出·檢閱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 第45條** 監察委員은 政治에 參與하지 못하며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 第46條** 監察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 第47條** 監察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附 則

- 第48條** 本法은 國會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第49條** 本法 施行時에 現存하는 行政機關의 引受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政府組織法을 이에 公布한다.

### 國防部 訓令 제 1 호

1948. 8. 16.

“본관이 금번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아울러 大統領令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을 兼職하게 되었다. 이에 責任의 至重至大함을 실감하면서 軍政初부터 國軍 建립을 목표로 묵묵히 분투하여 온 壯志가 國家와 民族의 요청에 보답하고자 하는 報國至誠을 위하여 天地神明의 加護를 기원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취임 초에 隸下部隊 및 學校實情을 파악함에는 時日을 尙需하는 바이다. 오직 國軍建立에 挺身하는 壯志 奮發의 同心戮力을 확신하고, 아래 條目을 훈령하니 철저히 준수, 실천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1. 金일부터 陸·海軍 各급 將領은 大韓民國의 國防軍으로 편성되는 영예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장병 奮發은 오직 勤勉, 盡忠, 報國의 精神으로 새로운 國軍으로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엄수하며, 職責에 극진하고, 軍紀를 엄수하여 陣에 協동하는

국군의 미덕을 發揚하라.

2. 美軍政이 結末되고, 新政府가 수립되는 현 전환기를 맞이하여 확고한 정신으로 流言蜚語에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더욱 積極에 근면, 忠實하라.

3. 國가가 새로 탄생한 때인만큼 刷新한 精神으로 生氣潑刺한 청년 國軍을 편성하는 동시에 강력한 統制力과 예민한 協同力으로 精誠, 團結하여 화평, 친절히 全國民의 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 全國民을 생명을 바쳐 애호하라.”

## 國軍組織法

법률 제9호  
1948. 11. 30.

### 第1章 總 則

第1條 本法은 陸·海軍을 포함한 國防機關의 設置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定하여 軍政, 軍令의 有機的이고 體系있는 國防機能의 遂行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國軍은 陸軍과 海軍으로써 組織한다.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 者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에 服務할 義務가 있다.

第3條 大統領은 國軍의 最高統帥者이며 大韓民國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國軍統帥上 必要한 命令을 發할 權限이 있다.

第4條 大統領의 帷幄下에 下의 機關을 두며 그 職制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가. 最高國防委員會와 그 所屬 中央情報局  
나. 國防資源管理委員會  
다. 軍事參議院

### 第2章 國防部

第5條 國防部長官은 軍政을 掌理하는 外에 軍令에 關하여 大統領이 附與하는 職務를 遂行한다.

第6條 國防部次官은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國防部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7條 國防부에 參謀總長과 參謀次長을 두고 그 밑에 陸軍本部和 海軍本부를 두며 必要에 依하여 其他의 補助 또는 諮問機關을 둘 수 있다.

陸軍本部和 海軍本부의 職制와 其他 必要한 機關의 設置 및 事務範圍는 政府組織法 第3條의 規定과 關係없이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條 參謀總長과 參謀次長은 國軍 現役 將校中에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서 大統領이 任免한다.

參謀總長은 國軍의 現役 最高將校이다.

第9條 參謀總長은 大統領 또는 國防部長官의 指示를 받아 國防 및 用兵 等에 關하여 陸·海軍을 指揮統轄하며 一切의 軍政에 關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한다.

參謀次長은 參謀總長을 補佐하며 參謀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0條 陸軍本부에 陸軍總參謀長, 海軍本부에 海軍總參謀長을 두며 이는 參謀總長의 建議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서 大統領이 任免한다.

第11條 陸軍總參謀長은 參謀總長의 命을 받아 陸軍本부를 統理하며 隸下 陸軍官衙學校와 部隊를 指揮監督한다.

海軍總參謀長은 參謀總長의 命을 받아 海軍本부를 統理하여 隸下 海軍官衙學校와 部隊를 指揮監督한다.

### 第3章 陸 軍

第12條 陸軍은 正規軍과 護國軍으로써 組織한다.

陸軍正規軍이라 함은 平時, 戰時를 莫論하고 法律에 依하여 恒時 存在하는 常備軍을 말한다.

陸軍의 兵種은 步兵, 騎兵, 砲兵, 工兵, 機

甲兵, 航空兵, 防空兵, 通信兵과 憲兵 等으로써 構成한다.

陸軍에 參謀, 副官, 監察, 法務, 兵站, 經理, 軍醫와 兵器 其他의 部門을 둔다.

陸軍護國軍이라 함은 法律에 依하여 一定한 軍事訓練을 받은 者와 其他로써 組織하는 豫備軍을 말한다.

陸軍의 組織과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 陸軍에는 平時에 師團과 國防上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其他部隊을 둔다.

陸軍은 師團單位로 編成하며 軍事行政과 戰略上 目的으로 大韓民國을 數個 師團管區로 나눈다.

師團管區의 設置와 師團 및 其他 必要한 部隊의 配置編成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陸軍護國軍의 兵力은 陸軍正規軍의 現役 兵力에 準한다.

**第14條** 師團長과 大統領令이 定하는 其他 部隊長은 參謀總長의 建議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며 所管部隊를 統率한다.

## 第4章 海 軍

**第15條** 海軍은 正規軍과 護國軍으로써 組織한다.

海軍正規軍이라 함은 平時, 戰時를 莫論하고 法律에 依하여 恒常 存在하는 常備軍을 말한다.

海軍은 本科와 各部門으로써 構成한다.

各部門에는 技術, 軍醫, 經理와 法務 其他를 둔다.

海軍護國軍이라 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商船의 船員, 一定한 軍事訓練을 받은 者와 其他로써 組織하는 豫備軍을 말한다.

海軍의 組織과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6條** 海軍에는 平時에 艦隊, 基地와 國防上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其他 部隊를 둔다.

軍事行政과 戰略上 目的으로 大韓民國 海域을 數個 海軍管區로 나눈다.

海軍管區의 設置와 艦隊, 其他 必要한 部隊의 配置編成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海軍護國軍의 兵力은 海軍正規軍의 現役 兵力에 準한다.

**第17條** 艦隊司令官과 大統領令이 定하는 其他 部隊長은 參謀總長의 建議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며 所管艦隊 또는 部隊를 統率한다.

## 第5章 軍人의 身分

**第18條** 國軍將校는 大統領이 任免한다. 但 將官級 將校의 任免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要한다.

將校의 服務年限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 및 士兵의 任免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9條** 國軍에 服務하는 者로서 軍人 以外에 軍屬을 둔다.

軍屬이라 함은 軍에 服務하는 文官을 말하며 그 任免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0條** 國軍現役과 召集을 當한 軍人 및 軍屬은 軍事法令의 適用을 받는다.

軍人, 軍屬에 對한 審判은 原則적으로 會議에서 行하며 罪와 審判의 手續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6章 其 他

**第21條** 教育, 禮式, 服制, 給與 其他 軍事 行政上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章 附 則

**第22條** 本法에 依하여 制定하는 大統領令으로서 軍事機密上 必要로 하는 것을 公布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3條 本法에 依하여 陸軍에 屬한 航空兵은 必要한 때에 獨立한 空軍으로 組織할 수 있다.

第24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國防部職制

대통령령 제37호  
1948. 12. 7.

第1條 國防부에 國防部本부와 陸軍本부 및 海軍本부를 둔다.

第2條 國防部本부에 祕書室, 第1局, 第2局, 第3局, 第4局 및 航空局을 둔다.

第3條 祕書室은 機密事項, 官印의 管守, 文書 其他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4條 第1局은 國軍의 人事의 統制, 軍備에 關聯된 諸施設의 統制, 動員, 兵務, 防衛, 對外交渉, 援護, 撫恤 其他 軍事行政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5條 第2局은 軍人精神의 涵養, 思想善導, 宣傳 및 報道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6條 第3局은 國軍의 軍需와 營繕의 統制, 財産管理 및 厚生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7條 第4局은 調査, 防諜 및 檢察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8條 航空局은 航空隊에 關한 行政, 人事의 基本運用의 企劃, 教育, 技術 및 整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9條 陸軍本부에 陸軍參謀副長을 둔다.  
參謀副長은 總參謀長을 補佐하며 總參謀長이 事故가 있을 때는 其 職務를 代理한다.

第10條 陸軍本부에 人事局, 情報局, 作戰教育局, 軍需局, 護軍局 및 下記의 各室을 둔다.

高級副官室

監察監室

法務監室

憲兵監室

財務監室

砲兵監室

工兵監室

通信監室

兵器監室

醫務監室

兵站監室

第11條 人事局은 陸軍 軍人의 補任, 賞勳 其他 人事에 限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2條 情報局은 軍事情報, 逆情報 및 偵察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3條 作戰教育局은 陸軍의 運用, 作戰, 教育, 編制, 裝備 및 動員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4條 軍需局은 陸軍軍需品의 調達, 補給의 企劃, 統制와 監督 및 財産管理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5條 護軍局은 陸軍護國軍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6條 高級副官室에 高級副官을 둔다.  
高級副官室은 陸軍本部內의 庶務, 人事, 文書 其他 行政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7條 監察監室에 監察監을 둔다.  
監察監室은 陸軍部隊의 檢閱 및 特殊事項 調査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8條 法務監室에 法務監을 둔다.  
法務監室은 陸軍의 法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9條 憲兵監室에 憲兵監을 둔다.  
憲兵監室은 軍事警察 및 軍紀, 風紀의 維持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0條 財務監室에 財務監을 둔다.  
財務監室은 陸軍의 豫算, 決算 其他 財政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1條 砲兵監室에 砲兵監을 둔다.  
砲兵監室은 砲兵에 關한 運用, 教育, 戰技 및 器材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2條 工兵監室에 工兵監을 둔다.  
工兵監室은 工兵에 關한 運用, 教育, 資材

와 測量 및 築城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3條** 通信監室에 通信監을 둔다.

通信監室은 陸軍通信에 關한 運用, 敎育, 監査 및 補給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4條** 兵器監室에 兵器監을 둔다.

兵器監室은 陸軍兵器에 關한 行政, 補給 및 技術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5條** 醫務監室에 醫務監을 둔다.

醫務監室은 陸軍의 醫事, 衛生, 藥事 및 獸醫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6條** 兵站監室에 兵站監을 둔다.

兵站監室은 陸軍의 衣糧, 器材, 裝具, 其他 軍需品の 補給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7條** 海軍本部에 海軍參謀副長을 둔다.

參謀副長은 總參謀長을 補佐하며 總參謀長이 事故가 있을 때는 其 職務를 代理한다.

**第28條** 海軍本部에 人事敎育局, 作戰局, 經理局, 艦政局, 護軍局 및 下記의 各室을 둔다.

監察監室

法務監室

憲兵監室

醫務監室

兵器監室

**第29條** 人事敎育局은 海軍 軍人, 軍屬에 補任, 賞勳 其他 人事 및 敎育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0條** 作戰局은 海軍의 作戰, 情報, 通信, 水路, 報道 其他 海軍行政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1條** 經理局은 海軍의 財政, 軍需, 衣糧, 財産管理 其他 經理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2條** 艦政局은 海軍所屬의 艦艇, 船舶과 港灣施設에 關한 企劃과 運營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3條** 護軍局은 海軍護國軍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4條** 監察監室에 監察監을 둔다.

監察監室은 海軍部隊의 檢閱 및 特殊部隊

의 調査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5條** 法務監室에 法務監을 둔다.

法務監室은 海軍의 法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6條** 憲兵監室에 憲兵監을 둔다.

憲兵監室은 軍事警察 및 軍紀, 風紀의 維持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7條** 醫務監室을 둔다.

醫務監室은 海軍의 醫事, 衛生 及 藥事に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8條** 兵器監室에 兵器監을 둔다.

兵器監室은 海軍의 兵器에 關한 整備 및 技術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9條** 陸·海軍의 協調와 連繫의 圓滑을 期하기 爲하여 國防部에 聯合參謀會議을 둔다.

聯合參謀會議는 參謀總長에 隸屬하여 陸·海軍의 作戰, 用兵과 訓練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審議한다.

**第40條** 聯合參謀會議는 參謀總長을 議長으로 하며 下記의 人員으로써 構成한다.

參謀次長

陸·海軍總參謀長 及 參謀副長

航空局長

第1局長

第3局長

國防部長官이 指名하는 陸·海軍將校

**第41條** 聯合參謀會議의 業務遂行의 要領에 關하여는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第42條** 國防部の 各局室에는 課를 둘 수 있다.

課의 設置 및 事務範圍에 關하여는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第43條** 國防部 公務員의 種類와 定員은 別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兵役臨時措置令

대통령령 제52호  
1949. 1. 20.

### 第1章 總 則

- 第1條 本令은 兵役法을 施行할 때까지 兵役制度의 臨時措置에 關한 緊急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本令에 依한 國軍編入은 志願에 依한 義勇兵制로서 한다.  
志願은 個人으로서의 志願에 限한다.
- 第3條 本令에 依하여 募集된 兵員의 兵役은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現 役
  2. 護國兵役
- 第4條 護國兵役에 服하는 者는 戰時, 事變의 境遇 또는 本人의 志願에 依하여 그 一部 또는 全部를 別로 定하는 바에 따라 現役に 編入할 수 있다.

### 第2章 服役 및 服務

- 第5條 第3條의 兵役區分에 依한 服役年限 및 就役區分은 아래와 같다.
1. 現役의 服役年限은 1年으로 하고 現役兵으로 募集된 者와 護國兵으로서 現役に 編入된 者가 이에 限한다. 但 護國兵으로서의 服務年限과 現役年限은 通算한다.
  2. 護國兵役의 服務年限은 2年으로 하고 護國兵으로 募集된 者가 이에 服한다.  
護國兵은 自宅通勤을 原則으로 한다. 但 特別한 勤務와 教育 訓練上 必要한 境遇에는 一定한 期間 在營케 할 수 있다.
  3. 護國兵役에 있는 將校의 服務年限은 5年, 下士官의 服務年限은 3年으로 하고 그 服務는 各 現役に 있는 將校와 下士官에 準한다.
- 第6條 國軍의 將兵은 現役을 先位로 補

充하고 護國兵役의 兵籍 編入을 次位로 한다.

第7條 國軍의 將兵은 그 採用된 날로부터 그 所屬聯隊의 兵籍에 編入한다.

陸·海軍本部 總參謀長은 必要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將兵의 兵籍의 所在를 變更할 수 있다.

第8條 護國兵役 各 部隊所屬의 將兵의 兵籍은 該部隊의 編成 擔任 現役部隊長이 管理한다.

第9條 將兵은 傷痍, 疾病 其他 身體 또는 精神의 異常이 있어 軍務를 堪當치 못한 者 또는 이에 準하는 事由로 因하여 軍務에 適當하지 못한 者를 除外하고 個人의 事情 其他 如何한 事由로써든지 그 兵役을 免除할 수 없다.

### 第3章 階級 및 任免

第10條 國軍幹部의 任免은 將校는 大統領이 發令하고 下士官은 聯隊長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直屬 團隊長이 發令한다. 但 護國兵役 所屬將校의 臨時的 任免과 下士官의 任免은 그 編成 擔任 聯隊長이 發令한다.

第11條 國軍所屬 兵員은 入隊日로부터 辭令狀없이 二等兵을 被命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12條 護國兵役에 있어서의 將校 以下の 階級은 現役將校 以下에 準한다. 但 護國兵役에 있어서의 階級은 現役に 있어서의 階級과 通用하지 못한다.

### 第4章 幹部의 補充과 兵員의 募集

#### 第1款 通 則

第13條 幹部 및 兵員은 思想健實, 身體健康, 能力 優秀한 者로서 在隊間 連帶責任을 질 만한 確實한 保證人과 推薦인이 있는 者 中에서 이를 選拔, 採用한다.

第14條 幹部 또는 兵員으로 入隊를 決定

한 者가 疾病 其他 避치 못할 事故로 因하여 入隊期日에 入隊치 못할 境遇에는 31日(護國兵에 있어서는 20日)以內 入隊의 延期를 許可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期日이 經過하여도 事故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次期에 入隊케 하거나 또는 服役을 免除한다.

**第15條** 幹部 또는 兵員으로 入隊한 者가 入隊直後 疾病 其他 身體 또는 精神의 異常으로 因하여 31日(護國兵에 있어서는 20日)以內에 治愈할 可望이 없거나 또는 勤務를 堪當할 수 없다고 認定된 者는 退隊케 하여 次期에 入隊케 하거나 또는 服役를 免除케 한다.

**第16條** 國軍將兵 志願者의 志願도 招募檢査(身體檢査와 資格審査를 總稱한다)는 志願者의 居住地 招募區에서 行한다. 但 將校志願者에 限하여 中央招募委員會의 再審을 要한다.

第2款 幹部의 補充

**第17條** 幹部의 補充은 志願者中 第13條,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符合한 者로서 招募檢査에 合格하여 所定의 教育을 畢한 者로서 한다. 但 護國兵에 있어서는 所定의 教育을 필하기 前 臨時 採用할 수 있다.

**第18條** 將校志願者의 資格 및 補充의 要領은 다음과 같다.

役種	採用區分	資 格	年 齡 標 準	補 充 要 領
現 役	特別採用	將校의 軍事經歷者로서 知識, 技能이 豊富하여 國軍의 重任을 擔當할 수 있는 者	1. 將官級 65歲까지 2. 領官級 60歲까지 3. 尉官級 50歲까지	採用後 即時任用
	普通採用	1. 將校의 軍事經歷者로서 現役 將校될 素質이 있는 者 2. 下士官, 兵의 軍事經歷者로서 素養能力이 優秀한 者	40歲까지	主로 尉官級 速成教育後 任用
	普通採用	3. 中等學校 卒業者 및 이와 同等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서 現役將校됨에 適合한 者	19歲로부터 25歲까지	正式教育後 任用
護 國 兵 役	特別採用	將校의 軍事經驗이 豊富하여 各 그 職分에 應하여 國軍의 重任을 擔任할 만한 手腕과 技能이 있는 者	1. 聯隊長 또는 60歲까지 大隊長級 2. 中隊長級 50歲까지 3. 小隊長級 40歲까지	臨時 採用後 若干의 速成教育을 實施하여 正式任用
	普通採用	1. 下士官, 兵의 軍事經歷者로서 素養能力이 優秀하여 護國 兵役將校될 素質이 있는 者 2. 軍事知識과 統率能力이 優秀하여 護國兵役將校될 素質이 充分한 者	1. 大隊長級 60歲까지 2. 中隊長級 50歲까지 3. 小隊長級 40歲까지	各 그 素養에 應하여 所定의 教育을 實施한 後 正式任用

第19條 准士官 志願者의 資格 및 補充의 要領은 다음과 같다.

役種	採用 區分	資 格	年 齡 標 準	補 充 要 領
現 役	正式 採用	1. 現役兵으로서 進級한 者 2. 護國兵役으로서 轉役한 者		
	特別 採用	准士官, 下士官의 軍事經歷者로 서 現役 准士官, 下士官됨에 適 합한 者	35歲까지	速成教育後 任用
	普通 採用	兵의 軍事經歷者로서 素養能力 이 優秀한 者	35歲까지	所定の 教育後 任用
護 國 兵 役	特別 採用	准士官, 下士官의 軍事經歷者로 서 素養能力이 優秀하여 護國 兵役 准士官, 下士官됨에 適 합한 者	38歲까지	臨時採用後 若干의 速成育成을 實施한 後 正式任用
	普通 採用	1. 兵의 軍事經歷者로서 素養 能力이 優秀한 者 2. 軍事知識이 相當하고 統率指 導의 能力이 있는 者	35歲까지	所定の 教育後 正式 任用

第20條 前2條의 規定의 年齡標準은 志願者의 精神, 體力 및 技術能力 등이 特히 優秀한 者에 限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3款 兵員의 募集

第21條 兵員은 募集年 1月 1일부터 12月 31日까지의 사이에 滿17歲로부터 滿28歲에 達하는 者로서 下記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志願者 中 招募檢査에 合格한 者로서 充足한다.

1. 第13條의 要件을 具備한 者
2. 軍事教育을 받은 者
3. 青年團體 등에 있어서 訓練을 받은 者

第4款 招募區 및 招募官

第22條 幹部 및 兵員을 募集하기 위하여 招募區를 두고 招募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招募區를 다시 檢査區로 區分한다. 招募區의 區域은 陸軍總參謀長이, 檢査區는 第22條에 規定한 招募區 招募委員長이 各各 이를 定한다.

第23條 陸軍의 幹部 및 陸·海軍의 兵員을 招募하기 爲하여 陸軍本部에 陸軍 中央招募委員會를 各 招募區에 招募區 招募委員會를 設置한다.

各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및 委員으로써 構成한다.

第24條 陸軍中央招募委員會의 委員長은 陸軍總參謀長으로서 充當한다. 委員長은 監督募兵官으로서의 副委員長 以下의 招募事務를 統理한다.

副委員長은 陸軍總參謀長이 指名한 先任 兵科將校로써 充當한다.

副委員長은 中央招募審查委員長으로서 委員長을 補佐하여 中央委員을 指揮하며 招募區에 對한 將兵의 人員을 配賦하고 將校要員의 再審과 師管區 募兵官 以下의 招募事務(幹部와 兵員의 募集檢査 및 이에 關聯한 事務)를 統理한다.

委員은 陸軍總參謀長이 指名한 兵科將校

의 醫務部將校 및 海軍本部에서 派遣된 海軍將校로써 充當하고 副委員長을 補佐하여 招募事務를 分掌하며 陸軍將校要員의 再審에 任한다.

海軍本部에서 派遣된 海軍將校는 海軍委員으로서 主로 海軍兵募集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25條** 招募區 招募委員會는 各 招募區에 있어서 다음의 招募事務를 執行한다.

1. 將校要員의 最初의 審査報告
2. 下士官 및 兵의 招募

**第26條** 招募區 招募委員會의 委員長은 各 師(旅)管區마다 陸軍總參謀長이 指名한 師(旅)團長 또는 高級兵科將校로써 充當한다.

委員長은 師管區募兵官으로서 師管內 招募事務를 統轄한다.

副委員長은 各 招募區마다 陸軍總參謀長이 指名한 聯隊長 또는 兵科領官으로서 充當한다.

副委員長은 招募區 募兵官으로서 擔任招募區內的 招募事務를 執行한다.

委員은 各 招募區마다 委員長의 指命 또는 陸軍本部에서 派遣한 兵科 및 醫務部將校로써 充當한다.

委員은 招募區 募兵檢査官 또는 招募區 募兵醫官으로서 招募區 募兵官의 招募事務의 執行을 補佐하며 將校 以下 要員의 資格審査 또는 身體檢査를 分掌 執行한다. 招募區 募兵醫官을 醫務將校로 充當치 못할 경우에는 陸軍總參謀長의 認可한 地方 醫를 代充할 수 있다.

**第27條** 招募事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檢査區마다 招募區 募兵署를 設置한다.

招募區 募兵署에 事務員을 두어 庶務에 從事케 한다.

募兵署 事務員은 陸軍下士官, 同 普通文官으로서 充當한다.

**第28條** 海軍의 招募事務는 兵員에 있어서는 陸軍本部에서, 幹部에 있어서는 海軍

本部에서 管掌한다.

**第29條** 海軍 幹部要員의 招募事務를 爲하여 海軍本部에 海軍中央招募委員會를 各 海軍基地 또는 海軍總參謀長의 指定한 地區에 海軍基地 招募委員會를 設置한다.

前項의 各 招募委員會의 組織과 業務는 第23條 乃至 第27條의 規定에 準한다.

**第30條** 監督募兵官 以下 招募事務 擔當官은 關係行政官廳 및 警察官廳에 對하여 招募事務의 援助를 請求할 수 있으며 該請求를 받은 行政官廳 및 警察官廳은 그 要求에 應하여 招募事務를 援助할 義務가 있다.

#### 第 5 款 招募檢査

**第31條** 募兵署의 開設期日, 場所, 取締 其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招募區 募兵官이 이를 決定한다.

**第32條** 資格審査와 身體檢査는 招募區 募兵署內에 設備한 檢査場에서 이를 實施한다.

**第33條** 資格審査와 身體檢査의 標準 및 體格等位는 別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34條** 招募區 募兵官은 招募檢査의 事務를 監督하고 檢査를 받은 者의 合格與否를 決定한다.

**第35條** 招募區 募兵醫官은 身體檢査를 實施하여 그 體格等位를 決定한다.

**第36條** 招募區 募兵檢査官은 招募檢査를 받은 者의 資格 및 身上에 關한 審査를 分掌한다.

**第37條** 應募者는 募兵官의 告示하는 바에 依하여 募兵署에 出頭하여 所要의 登錄을 한 後가 아니면 招募檢査를 받을 수 없다.

**第38條** 現役兵 및 護國兵의 兵籍의 編入 處分은 陸·海軍 總參謀長의 指示에 依하여, 師(旅)團長 또는 海軍基地司令官이 決定하는 兵員의 入隊는 國防部長官의 規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 5 章 特 典

**第39條** 公私勤務員, 勞務者 其他의 被雇傭

자가 國軍編入을 志願하여 招募檢査에 出頭할 때에는 그 責任者 또는 雇傭主는 이에 要하는 期間(往復日數를 包含)의 休暇를 주어야 한다.

第40條 幹部 및 兵員의 推薦者는 保證人이 되며 該幹部 또는 兵員의 그 在隊間所爲에 관한 責任을 진다.

## 第6章 雜 則

第41條 招募檢査를 받은 者와 그 帶同者의 旅費 및 其他의 費用은 應募者의 自費로 한다.

###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令 施行의 細則에 關하여는 別로 國防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 海兵隊令

대통령령 제80호  
1949. 5. 5.

第1條 海軍에 海兵隊를 둔다.

第2條 海兵隊는 海軍作戰에 依한 陸上戰鬪에 任하는 同時에 駐屯地域의 警備任務를 遂行한다.

第3條 海兵隊에 司令官을 둔다.

司令官은 海軍總參謀長에 所屬하여 所屬部隊를 指揮統率한다.

第4條 海兵隊의 編成 및 配置는 海軍總參謀長이 定한다.

第5條 統制府, 警備府 所在地에 있는 海兵隊는 特別한 規定, 指示 또는 命令이 없는 限 當該司令長官 또는 司令官의 指揮統率을 받는다.

第6條 司令官은 海軍總參謀長의 認可를 얻어 本令에 規定한 以外의 事項에 關하여 海兵隊規程을 定할 수 있다.

###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兵 役 法

법률 제41호  
1949. 8. 6.

## 第1章 總 則

第1條 大韓民國 國民된 男子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兵役에 服하는 義務를 진다.

第2條 大韓民國 國民된 女子 및 本法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兵役에 服하지 않은 男子는 志願에 依하여 兵役에 服할 수 있다.

第3條 兵役은 常備兵役, 護國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 및 國民兵役으로 區分한다.

常備兵役은 現役 및 豫備兵役으로, 補充兵役은 第1補充兵役 및 第2補充兵役으로, 國民兵役은 第1國民兵役 및 第2國民兵役으로 各各 區分한다.

第4條 現役に 服하는 者는 現役兵, 豫備兵役에 服하는 者는 豫備兵, 護國兵役에 服하는 者는 護國兵, 後備兵役에 服하는 者는 後備兵, 補充兵役에 服하는 者는 補充兵, 國民兵役에 服하는 者는 國民兵이라 稱하고, 第1 또는 第2의 區分이 있는 兵役은 各各 第1 또는 第2를 附加하여 稱한다.

第5條 護國兵役은 戰時, 事變 其他 國防上의 必要 또는 本人의 志願에 依하여 現役に 編入할 수 있다.

前項의 編入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6條 6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刑된 者는 兵役에 服할 수 없다.

第7條 志願에 依하여 兵籍에 編入된 者의 兵役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 2 章 服 役

第 8 條 第 3 條의 兵役區分에 依한 服役年限 및 就役區分은 下記에 依한다.

項	區分 役種	服 役 年 限		就 役 區 分
		陸 軍	海 軍	
第 1	現 役	2年	3年	現役兵으로 徵集된 者 및 護國兵으로서 現役兵에 編入된 者가 이에 服한다. 現役兵은 現役在營中 在營케 한다.
第 2	豫 備 役	6年	5年	現役 또는 護國兵役을 畢한 者가 이에 服한다.
第 3	後備兵役	10年	10年	豫備役을 畢한 者가 이에 服한다.
第 4	護國兵役	2年	3年	實役に 適한 者로서 護國兵으로 徵集된 者가 이에 服한다. 護國兵은 命令에 依한 外는 自宅에 起居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 5	第 1 補充兵役	14年	1年	實役に 適한 者로서 그 年所要의 現役 및 護國兵役의 兵員數를 超過한 者中 所要의 人員이 이에 服한다.
第 6	第 2 補充兵役	14年, 第 1 補充兵役을 畢한 者는 13年		實役に 適한 者로서 現役, 護國兵役 또는 第 1 補充 役に 徵集되지 아니한 者와 海軍의 第 1 補充役을 畢한 者가 이에 服한다.
第 7	第 1 國民兵役			後備役을 畢한 者와 軍隊에 正規의 教育을 畢한 第 1 및 第 2 補充兵으로 該兵役을 畢한 者가 이에 服한다.
第 8	第 2 國民兵役			常備兵役, 護國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 第 1 國民兵役 에 있지 아니한 年齡 滿 17 歲로부터 滿 40 歲까지의 男 子가 이에 服한다.

第 9 條 前條 第 1 乃至 第 7 에 規定한 服役은 其服役年限에 不拘하고 年齡 滿 40 歲를 限度로 한다. 但 戰時, 事變 其他 國防上의 必要에 依하여 年齡 滿 45 歲까지 延長할 수 있다.

第 10 條 現役兵으로서 第 7 章에 規定한 訓練을 修了한 者의 在營期間은 1 個年 以內 短縮할 수 있다.

第 11 條 現役兵으로서 前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않는 者의 在營期間은 軍事上 支障이 없는 限 60 日 以內 短縮할 수 있다.

第 12 條 現役兵으로서 1 年 6 個月 以內에 教育을 修了할 수 있는 兵種에 屬한 者의 在營期間은 前 2 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短縮할 수

있다.

第 13 條 現役兵으로서 在營中 다음의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者는 在營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1. 品行이 端正하고 學術, 勤務 외의 成績이 優秀한 者
2. 定員에 超過된 者

第 14 條 護國兵으로서 現役兵에 編入된 者에 對하여는 第 10 條 乃至 第 13 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15 條 第 10 條 乃至 第 13 條의 規定에 依하여 在營期間을 短縮하는 때에는 未入營期間 또는 歸休期間을 現役期間內에 算入한다.

第 16 條 護國兵役으로서 現役に 編入된 現

役兵의 護國兵役에 服役한 期間은 現役期間에 通算한다.

**第17條** 現役, 護國兵役 또는 補充兵役은 現役兵, 護國兵 또는 補充兵으로 徵集한 年度의 9月 1日부터 起算한다.

戰時, 事變 其他 必要한 때에는 前項에 規定한 起算日을 變更할 수 있다.

**第18條** 下記의 各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服役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1. 戰時 또는 事變에 臨한 때
2. 出師의 準備 또는 守備나 警備上 必要한 때
3. 航海中 또는 外國勤務中인 때
4. 重要한 演習 또는 特別한 觀兵을 舉行할 때
5. 天災, 地變 其他 避치 못할 事由로 因하여 不得已할 때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延長한 期間은 次期間에 服할 兵役의 期間에 通算한다.

**第19條** 在營中 本人이 아니면 家族(同一戶籍 또는 寄留籍內에 있어 世帶를 같이 하는 者에 限한다)의 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者는 그 確證이 있는 때에 限하여 現役을 免除하고 다른 兵役에 轉役한다. 但 故意로 그 事由를 發生케 한 者는 例外로 한다.

**第20條** 現役兵, 護國兵, 豫備兵, 後備兵 또는 補充兵으로서 疾病 또는 身體나 精神의 異常으로 因하여 當該兵役에 服할 수 없는 者는 그 兵役을 免除하고 다른 兵役에 轉役한다. 但 다른 兵役도 堪當치 못할 者에 對하여는 兵役을 免除한다.

**第21條** 前 2條의 規定에 依하여 轉役하는 者가 服할 兵役의 種類와 服役期間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22條** 現役兵으로서 入營前 또는 入營後 6年 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刑된 者의 在營中 刑의 執行을 받은 日數와 在營中 逃亡日數는 現役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第3章 徵 集

**第23條** 每年 9月 1日부터 翌年 8月 30日 까지(徵集年度라 稱한다)에 있어서 20歲에 達한 男子(徵兵適合者라 稱한다)는 本法中 特別한 規定이 있는 者 外는 徵兵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24條** 定期의 徵兵檢査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25條** 本籍地 또는 寄留地의 府尹, 區廳長 또는 邑·面長은 每年 1月 乃至 2月中에 次徵集年度 徵兵適合者(大統領令으로 指定하는 者는 例外로 한다)에 對하여 期日과 場所를 指定한 登錄通知書를 發送하여 出頭를 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通知書를 받은 者는 期日과 場所를 어김없이 出頭하여 該通知書를 提示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但 徵兵適合者가 有故한 때에는 戶主 또는 世帶主가 이를 代理한다.

府尹, 區廳長 또는 邑·面長은 既 登錄者(要徵集者라 稱한다)에게 登錄證明書를 交付한다.

**第26條** 府尹, 區廳長 또는 邑·面長은 要徵集者 名簿를 作成하여 每年 3月 31日까지 그 正本을 所管兵事區司令部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27條** 兵員을 徵集하기 爲하여 徵兵區를 設置하고 徵兵區는 다시 徵募區로 區分한다.

**第28條** 現役兵과 護國兵의 徵集員數는 이를 徵兵區에 配賦하고 이 兵員을 다시 徵募區에 配賦한다.

前項에 規定한 配賦는 徵兵區 또는 徵募區의 要徵集者로서의 假定數를 基準으로 하여 命達한다.

**第29條** 徵兵區 또는 徵募區는 配賦한 兵員을 當該徵兵區 또는 徵募區에서 充足키 어려울 때는 그 不足數를 다른 徵兵區 또는 徵募區에 配賦하여 徵集할 수 있다.

**第30條** 徵兵檢査는 要徵集者의 登錄地區에서 行한다. 但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者에게 限하여는 登錄地 以外의 徵募區에서 行할 수 있다.

**第31條** 要徵集者가 徵兵檢査를 받을 年度에 檢査를 받지 못할 때에는 次年度에 徵兵檢査를 行한다.

**第32條** 身體檢査를 받은 者로서 現役兵, 護國兵 또는 第1補充兵으로 徵集된 者는 다른 徵募區로 轉屬한 境遇라도 轉屬前의 徵募區의 配賦人員으로 充當徵集한다.

**第33條** 身體檢査를 받은 者는 下記와 같이 區分한다.

1. 實役に 適合한 者
  2. 國民兵役에 適合하나 實役に 適合하지 못한 者
  3. 兵役에 適合하지 못한 者
  4. 兵役의 適否를 判決하기 어려운 者
- 前項에 規定한 區分의 標準은 大統領令의 定한 바에 依한다.

**第34條** 實役に 適合한 者는 體格等位의 優劣에 따라 各 徵募區의 配賦人員에 應하여 現役兵, 護國兵 및 第1補充兵의 順序로 이를 徵集한다. 但 體格等位가 同一한 者는 本法中 特別한 規定이 있는 者外는 兵種마다 抽籤法에 依하여 徵集順序를 定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集된 者의 屬할 兵種은 各 徵募區의 配賦人員에 應하여 그 身材, 藝能 및 職業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實役に 適合한 者로서 現役兵, 護國兵 및 第1補充兵에 徵集되지 않는 者는 이를 第2補充兵으로 徵集한다.

現役兵 및 護國兵으로 徵集될 者로서 그 屬할 兵種이 決定된 者는 本人의 志願에 依하여 第1項에 規定한 抽籤에 參加하지 않고 現役兵 또는 護國兵으로 徵集할 수 있다.

**第35條** 國民兵役에 適合하나 實役に 適合

하지 못한 者는 徵集하지 아니한다.

**第36條** 兵役에 適合하지 못한 者는 兵役을 免除한다.

**第37條** 兵役의 適否를 判定키 어려운 者는 徵集을 延期하되 그 適否가 決定될 때까지 每年 徵兵檢査를 行한다.

**第38條** 要徵集者가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徵集을 延期할 수 있다.

1. 禁錮以上の 刑에 該當한 犯罪로 因하여 公判中인 때
2. 犯罪로 因하여 拘禁中인 때
3. 刑의 執行停止中인 때
4. 假出獄中인 때
5. 少年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感化院, 矯正院 또는 病院에 收容中인 때
6. 矯正院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假退院中인 때

前項의 規定은 實役に 適合한 者로서 아직 徵集順序가 決定되지 아니한 者에게 準用한다.

前 2項에 依하여 徵集이 延期된 者는 그 事由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徵兵檢査를 行한다.

**第39條** 徵兵檢査를 받은 者가 現役兵으로 徵集됨으로 因하여 그 家族(同一戶籍 또는 寄留簿內에 있어 世帶를 같이하는 者에 限한다)의 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者는 그 確證이 있을 때에 限하여 2年間 徵集을 延期한다. 但 故意로 그 事由를 發生케 한 者는 例外로 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集이 延期된 者가 그 延期期間內에 그 事由가 끝나면 事由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徵兵檢査를 行한다.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集이 延期된 者가 그 延期期間이 지나도록 그 事由가 끝나지 못하면 그 期間이 지난 해의 다음 해에 徵兵檢査를 行하여 第1補充兵으로 徵集하거나 또는 第2國民兵役에 編入한다. 第1項의 延期期間은 徵兵檢査를 받은 해

9月 1日로부터 起算한다.

**第40條** 要徵集者로서 大統領令으로 指定된 學校에 在學하는 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年齡 滿26歲에 達하기까지 徵集을 延期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集이 延期된 者에 對하여는 在學의 事由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徵兵檢査를 行한다. 但 學校를 卒業한 날부터 6個月 以內에 다른 學校에 入學하는 者에 對하여는 徵集延期의 事由가 繼續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延期된 期限이 滿了되어도 在學의 事由가 끝나지 않은 者는 期限이 滿了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徵兵檢査를 行한다.

**第41條** 外國에 在留하는 者에 對하여는 本人의 志願에 依하여 年齡 滿26歲에 達하기까지 그 徵集을 延期한다. 但 大統領令으로 指定한 者는 例外로 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集이 延期된 者는 그 事由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徵兵檢査를 行한다.

**第42條** 前條의 規定은 國外를 定期的으로 往復하는 大韓民國 船舶의 船員에게 準用한다.

**第43條** 家族(同一戶籍 또는 寄留簿內에 있어 世帶를 같이하는 者에 限한다) 二人 以上이 現役兵으로 同時에 在營함으로 因하여 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때에는 그 確證이 있는 때에 限하여 1人의 在營期間中 다른 者의 入營을 延期할 수 있다.

**第44條** 第17條第2項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入營이 延期된 者에게 準用한다.

**第45條** 現役兵으로 入營할 者가 疾病 其他 避치 못할 事由로 因하여 入營期日에 入營키 어려운 때 또는 第38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31日 以內 入營을 延期할 수 있다.

**第46條** 現役兵으로 入營할 者가 前條에

規定한 入營延期 期間內에 入營키 어려운 때에는 다시 徵兵檢査를 行하지 않고 다음에 入營할 期日에 入營케 한다.

前項의 規定한 期日에 入營키 어려운 者에 對하여는 다시 徵兵檢査를 行한다.

**第47條** 現役兵으로 入營할 者가 入營할 때 行하는 身體檢査의 結果, 疾病 또는 身體나 精神의 異常으로 因하여 31日 以內에 治療할 可望 또는 勤勞를 堪當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者는 歸郷케 하고 第19條 및 第20條 規定의 適用을 받는 者 外에는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8條** 第45條 乃至 前條의 規定은 護國兵으로서 護國兵役에 編入될 者에 準用한다.

**第49條** 現役兵과 護國兵에 缺員이 生한 때에는 服役 第1補充兵 中에서 그 徵兵順序를 따라 이것을 補缺入營시킬 수 있다. 第29條의 規定은 前項의 補缺入營을 準用한다.

**第50條** 下記에 揭記한 者가 徵集된 때에는 第30條第1項에 規定한 抽籤에 參加하지 아니한다. 但 2人 以上이 있는 때에는 그 者만에 對하여 抽籤法으로 徵集順序를 定한다.

1. 第4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該當한 者
2. 第41條第2項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該當한 者
3.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該當한 者
4. 第47條의 規定에 該當한 者
5. 第71條第1項의 規定한 罪를 犯하여 處刑된 者
6. 第73條의 罪를 犯하여 處刑된 者
7. 第74條의 罪를 犯하여 處刑된 者
8. 第75條의 罪를 犯하여 處刑된 者

前條에 揭記한 者의 徵集順序는 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抽籤한 者의 上位로 하고 同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集된 者의 徵集順序는 前項에 揭記한 者의 上位로 한다.

第51條 第71條, 第73條 乃至 第75條에 規定한 罪를 犯하여 處刑된 者에 對하여는 第39條, 第43條의 規定에 依한 延期를 아 니한다.

第52條 戶籍이나 寄留簿 記載의 抹消 또 는 遺漏 其他의 事由로 戶籍이나 寄留簿 에 記載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本籍이나 寄留가 없는 者로서 徵兵檢査를 받아야 할 者를 發見할 때에는 發見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徵兵檢査를 行한다.

第53條 徵兵檢査를 받은 者가 戶籍 또는 寄留簿에 記載되어 있는 生年月日의 訂正으로 因하여 徵兵適齡 未滿이 된 때에는 下記의 各號의 1에 該當한 者를 除外하고 다시 徵兵檢査를 行한다.

1. 現役이나 護國兵役中인 者 또는 現役이나 護國兵役을 畢한 者
2. 補充兵으로서 教育召集인 者 또는 그 召集을 畢한 者

第54條 第31條, 第37條, 第38條第3項, 第39條第2項 및 第3項, 第40條第2項 및 第3項, 第41條第2項, 第42條, 第46條第2項, 第47條, 第53條 또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兵檢査를 받은 者가 年齡 37歲를 超過할 때에는 徵集을 免除한다. 前項의 年齡은 第17條第1項에 規定한 起算日에 있어서의 年齡이다.

第55條 第1補充兵으로서 第49條의 規定에 依하여 現役兵 또는 護國兵의 補缺로 充當되어 現役兵 또는 護國兵役에 服하게 된 者의 이미 服한 第1補充兵役의 期間은 이 를 現役 또는 護國兵役期間에 通算한다.

第56條 第45條 및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늦게 入營한 者 또는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補缺로서 늦게 入營한 者라도 그 在營期間의 計算은 늦지 않게 入營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犯罪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늦게 入營한 者는 例外로 한다.

前項의 規定은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依

하여 召集이 延期된 者로 延期間內에 召集에 應한 者에게 準用한다.

第57條 志願에 依하여 兵役에 編入된 者로서 兵籍에서 除籍된 者가 大統領令의 定한 期間 服役하지 않은 者일 때에는 다시 徵兵檢査를 行한다.

#### 第 4 章 召 集

第58條 歸休兵, 豫備兵, 後備兵, 補充兵 또는 國民兵은 戰時, 事變 其他 必要에 依하여 召集한다.

第59條 歸休兵은 在營兵의 補缺 其他의 必要가 있을 때에 召集할 수 있다. 服役 第1年次의 豫備兵은 警備 其他 必要에 依하여 歸休兵을 召集하여도 兵力이 不足한 때에 召集할 수 있다.

第60條 豫備兵 및 後備兵은 兵務(勤務와 演習 等)의 目的으로 豫備役과 後備兵役을 通하여 8回 以內 召集할 수 있다.

前項에 規定한 召集은 1年 1回로 하고 1回의 日數는 陸軍에 있어서는 35日 以內, 海軍에 있어서는 70日 以內로 한다.

第61條 護國兵은 教育의 目的으로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召集한다. 第19條의 規定은 前項의 召集에 準用한다.

第62條 第1補充兵은 教育의 目的으로 120日 以內에 召集할 수 있다.

第63條 補充兵으로 軍隊教育을 받은 者는 第60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召集할 수 있다.

第64條 兵務나 教育에 召集된 者가 召集中 犯罪로 또는 正當한 事由없이 兵務나 教育을 缺한 때에는 그 缺한 日數 또는 回數를 兵務나 教育日數 또는 回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前項의 規定은 正當한 事由없이 召集의 期日에 遲參한 때에 準用한다.

第65條 歸休兵, 豫備兵, 後備兵 및 補充兵은 召集되지 아니한 年度에 限하여 每年

1回, 國民兵은 必要에 依하여 簡閱召集을 行할 수 있다. 簡閱召集 1回의 日數는 3 日 以內로 한다.

**第66條** 歸休兵, 豫備兵, 後備兵 또는 補充兵으로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兵務召集 또는 簡閱召集을 免除할 수 있다.

1. 他人으로 充當할 수 없는 職에 있는 官吏 또는 官吏 待遇者
2. 邑·面·洞會長, 區廳長, 兵事係, 收入役 其他 이에 準할 職에 있는 者
3. 國會 其他 이에 準할 會의 代議員으로 그 會期中에 있는 者, 但 召集中에 있는 者는 國會議員에 限하여 會期中 召集을 解除할 수 있다.
4. 外國에 旅行 또는 在留하는 者
5. 國外를 定期的으로 往復하는 大韓民國 船舶의 船員

**第67條** 召集된 者가 疾病 其他 避치 못할 事由로 因하여, 應召키 어려운 때에는 20 日 以內 召集을 延期할 수 있다.

召集된 者가 第38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여 召集期日에 應召키 어려운 때,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召集을 延期받은 者가 그 延期期間에 應召키 어려운 때에는 召集期日 또는 召集年次를 變更한다.

召集된 者가 入營할 때에 行하는 身體檢査에 있어서 疾病 또는 身體와 精神의 異常으로 因하여 勤務를 堪當치 못할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召集期日 또는 召集年次를 變更하거나 召集을 免除한다.

**第68條** 召集된 者가 召集됨으로 因하여 그 家族(同一戶籍 또는 寄留簿에 있어 世帶를 같이하는 者에 限한다)의 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者는 그 確證이 있는 때에 限하여 召集을 免除한다. 但 故意로 그 事由를 發生케 한 者는 例外로 한다.

## 第5章 特 典

**第69條** 現役下士官에 있는 豫備役 및 後

備役 將校以下 또는 補充兵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軍事援護를 받을 수 있다.

**第70條** 現役下士官, 兵, 1個年 以上 召集中에 있는 豫備役과 後備役 下士官, 兵 및 補充兵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租稅 및 公課를 免除할 수 있다.

## 第6章 罰 則

**第71條** 兵役 또는 召集을 免할 目的으로 逃亡, 潛匿, 身體破損 其他 詐僞의 行爲를 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第72條** 公職 又は 醫師의 職에 있는 者로서 兵役을 免除케 할 目的으로 證明書 또는 診斷書에 虛僞記載를 하여 行使케 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第73條** 現役兵으로 入營할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入營期日에 늦어 10日 乃至 20 日을 經過할 때에는 1年 以下の 禁錮에 處하고 戰時에 있어서 5日 乃至 10日을 經過한 때에는 2年 以下の 禁錮에 處한다.

前項의 規定은 志願에 依하여 兵籍에 編入되어 服務하는 者 및 召集된 豫備兵, 後備兵, 補充兵에 準用한다.

**第74條** 要徵集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徵兵 檢査를 받지 않는 때에는 4個月 以下の 禁錮에 處한다.

**第75條** 徵兵適齡者 또는 戶主나 世帶主가 正當한 理由없이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2個月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第76條** 本章의 規定은 國外에서 犯한 者에게도 適用된다.

## 第7章 青年의 軍事訓練

**第77條** 青年에 對하여는 兵役에 編入될 때까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軍事訓練을 實施한다.

**第78條** 在學中에 있는 中等學校 以上の

生徒 및 學生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軍事訓練을 實施한다.

## 第 8 章 雜 則

第79條 府尹, 區廳長 또는 邑·面長은 第8條에 規定한 兵役(第2國民兵役을 除外)에 있는 者를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戶籍 또는 寄留簿의 欄外에 兵役種類의 略符號를 附하여 둔다.

第80條 本法中 戶主에 關한 規定은 戶主가 未成年者 또는 禁治產者일 때에는 戶主의 法定代理人에게 戶主 또는 戶主의 法定代理人이 아직 決定되지 못할 때 또는 避치 못할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家族中 家事를 擔當한 者에게 適用한다. 世帶主에 關하여는 前項에 準한다.

第81條 本法의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前項의 大統領令에는 그 違反者에 對하여는 2個月 以下の 懲役 또는 5萬圓 以下の 罰金を 科하는 罰則을 規定할 수 있다.

### 附 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兵役臨時措置令에 依하여 國軍에 編入된 者는 本法이 施行될 때에는 本法의 定한 바에 依하여 그 服役을 律한다.

## 國家保安法

법률 제10호  
1948. 12. 1.

第 1 條 國憲을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다음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와 幹部는 無期, 三年 以上の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2.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一年 以上 十年 以下の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3. 그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三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第 2 條 殺人, 放火 또는 運輸, 通信機關建造物 其他 重要施設의 破壞 등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을 組織한 者나 그 幹部의 職에 있는 者는 十年 以下の 懲役に 處하고 그에 加入한 者는 三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的 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 등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大統領은 그 結社나 集團의 解散을 命한다.

第 3 條 前 2條의 目的 또는 그 結社, 集團의 指令으로써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煽動 또는 宣傳을 한 者는 十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第 4 條 本法의 罪를 犯하게 하거나 그 情을 알고 銃砲, 彈藥, 刀劍 또는 金品을 供給, 約束 其他의 方法으로 自進幫助한 者는 七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第 5 條 本法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할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 6 條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關하여 虛偽의 告發偽證 또는 職權을 濫用하여 犯罪事實을 捏造한 者는 當該內容에 該當한 犯罪規定으로 處罰한다.

###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兵役法施行令

대통령령 제281호  
1950. 2. 1.

### 第 1 章 服 役

#### 第 1 款 通 則

第 1 條 陸軍의 現役兵(歸休兵을 除外한

다) 및 護國兵은 이를 所屬部隊의 兵籍에 編入한다.

陸軍의 歸休兵, 護國兵, 豫備兵, 後備兵, 第1補充兵과 第1國民兵 및 陸軍 또는 海軍의 第2補充兵(海軍에 召集된 者를 除外한다)과 徵兵終結處分을 거친 第2國民兵(海軍에 召集된 者를 除外한다)은 登錄地所在의 兵事區의 兵籍에 編入하여 그 兵事區司令官의 管轄에 隸屬시킨다.

陸軍의 未入營現役兵은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登錄地의 兵事區의 兵籍에 編入한다.

國防部長官은 必要가 있을 때에는 그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兵終結處分을 畢하지 아니한 第2國民兵(海軍에 召集된 者를 除外한다)을 登錄地所在의 兵事區의 兵籍에 編入하여 그 兵事區司令官의 管轄에 隸屬시킬 수 있다.

海軍의 現役兵, 護國兵, 豫備兵, 第1補充兵, 第1國民兵, 海軍에 召集된 第2補充兵 및 第2國民兵은 그 登錄地를 管轄하는 警備府의 兵籍에 編入한다. 但 國防部長官은 必要에 따라 그 兵籍의 所在을 變更할 수 있다. 特히 必要한 때에는 兵役法 第15條에 規定하는 外에 現役期間內에 本 入營期間 또는 歸休期間을 들 수 있다. 境遇에 있어서 當該 未入營期間에 相當하는 期間을 延長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延期한 期間은 豫備役期間에 이를 通算한다.

**第2條** 兵役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1의 兵役을 마치고 他의 兵役에 就役할 때에는 따로 辭命을 使用치 않고 1의 兵役을 마친 日字의 翌日으로써 兵役에 服하는 것으로 한다.

前項의 規定은 兵役法 第8條第8項 및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兵役의 就役 또는 畢役に 이를 準用한다.

**第3條** 現役兵으로서 入營하게 된 때에는 따로 辭命을 使用하지 않고 兵科의 區分

에 따라 最初級의 兵에 被命된다.

入營後의 進級에 關하여는 本令中 別途規定이 있는 外에는 國防部長官이 이를 定한다.

前項의 規定은 入隊하게 된 護國兵 및 召集된 補充兵과 第1國民兵에 이를 準用한다.

第2款 在營期間의 短縮

**第4條** 兵役法 第10條 및 同法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在營期間의 短縮에 關하여는 國防部長官이 이를 定한다.

兵役法 第10條에 規定하는 訓練의 修得의 程度에 關하여는 國防部長官이 文敎部長官과 協議하여 이를 定한다.

**第5條** 戰時, 事變 其他 國防上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兵役法 第10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在營期間의 短縮은 이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短縮하는 期間을 縮小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款 服役延期

**第6條** 兵役法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服役期間의 延長 및 그 解止는 國防部長官이 隨時 이를 定한다. 但 航海中 또는 外國勤務中인 때의 海軍兵의 服役期間의 延長 및 解止는 海軍人事局長이 이를 實施할 수 있다.

時機切迫하여 國防部長官 또는 海軍人事局長의 命命을 기다리기 어려운 때에는 第68條第1項에 揭示한 者는 그 部下에 對하여 必要한 期間을 定하여 服役期間의 延長을 專行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國防部長官 또는 海軍人事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7條** 護國兵, 豫備兵, 後備兵, 補充兵 또는 國民兵으로서 戰時 또는 事變에 臨하여 召集된 者가 應召의 日字에 있어서 護國兵役, 豫備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 또는 國民兵役의 期間을 超過하게 될 때에는 前條에 規定한 國防部長官에 命命 또

는 召集解除의 命令이 있을 때까지 그 服役期間을 延長한다.

第 4 款 特殊한 轉役 및 免役

第 8 條 兵役法 第21條의 規定에 依하여 轉役하는 者가 服할 兵役의 種類는 下와 같다.

1. 兵役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現役이 免除되는 者는 이를 第1補充兵役에 服하게 하고 兵役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現役으로서 現役이 免除되는 者가 在營 3個月 以上인 때에는 이를 豫備役에, 在營 3個月 未滿인 때에는 陸軍에 있어서는 第1補充兵役에, 海軍에 있어서는 第2補充兵役에 服하게 한다. 但 豫備役 또는 第1補充兵役도 堪當치 못할 것으로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 이를 第1國民兵役에 服하게 한다.
2. 兵役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護國兵으로서 護國兵役이 免除되는 者는 豫備役 또는 第2補充兵役에 服하게 한다. 但 豫備役 또는 第2補充兵役도 堪當치 못할 것으로 認定하는 者는 이를 第1國民兵役에 服하게 한다.
3. 豫備役으로서 豫備役 및 後備兵役을 堪當하지 못할 者 또는 後備兵이나 補充兵으로서 그 兵役을 堪當하지 못할 者는 이를 第1國民兵役에 服하게 한다.

前項 各號의 規定에 依하여 陸軍의 歸休兵, 豫備兵, 後備兵 또는 補充兵을 轉役시키는 處分은 召集當하였을 때, 部隊編入中인 때 또는 陸·海軍의 病院에 收容中인 때에 限하여 이를 實施한다.

兵役法 第19條 乃至 第21條 및 前 2項의 規定에 依한 陸軍兵의 現役 또는 護國兵役의 免除와 轉役 및 兵役免除의 處分은 部隊에 編入中인 者에 對하여는 聯隊長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權限이 있는 部隊의 長이 그 外的 者에 對하여는 兵事區司令官이 이를 실시하며 海軍兵의 現役 또는 護國兵役의 免除轉役 및 兵役免除의

處分은 警備府司令官이 이를 實施한다.

第 9 條 第58條의 規定은 兵役法 第19條에 依한 現役免除에 이를 準用한다.

第 5 款 服役期間의 計算

第10條 兵役法 第43條의 規定에 依하여 入營이 延期된 者의 服役期間의 計算은 이와 同年에 있어서 入營하는 一般의 者의 服役期間의 計算과 같다.

第11條 兵役法 第19條 同法 第20條 및 本令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轉役하는 者의 服役期間은 下와 같다.

1. 現役 또는 護國兵役이 免除되어 豫備役に 編入된 者의 豫備役期間은 前에 服한 期間을 通算하여 陸軍에 있어서는 8年, 海軍에 있어서는 7年으로 한다.
2. 法 第8條의 就役區分 順序에 依하지 아니한 轉役의 境遇에는 그 中間兵役의 服務年限을 合算한 期間으로 한다. 但 補充兵役에 轉役한 境遇에는 14年으로 한다.

## 第 2 章 徵 集

第 1 款 通 則

第12條 本令中 登錄地라 함은 兵役法 第25條第2項의 登錄을 畢한 者의 本籍地 또는 寄留地를 말한다.

登錄 및 寄留地는 本籍地로 看做한다.

第13條 師團長은 本章 中の 規定을 適用하기 어려운 島嶼에 있어서는 道知事와 協議하여 그 規定에 不拘하고 適切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 2 款 登 錄

第14條 兵役法 第25條에 規定한 寄留地라 함은 北緯 38度 以北에 本籍이 있는 者 및 無籍者의 現住地를 말한다.

第15條 徵兵適齡者는 그 本籍地 또는 寄留地의 市長, 區廳長 또는 邑·面長에게 前年 6月 乃至 7月中에 徵兵適齡者 申告를 하여야 한다. 但 下의 各號의 1에 該

當하는 者는 申告를 要하지 아니한다.

1. 國軍의 兵役에 編入된 生徒學生
2. 前號의 者로서 兵役이 免除된 者
3. 志願에 依하여 現役に 服役中인 者
4. 志願에 依하여 現役に 服役中인 者로서 現役을 맞은 者 또는 現役除隊, 豫備役除隊, 補充兵役 免除 또는 兵役에 免除된 者
5. 法 第6條 또는 第54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는 本籍地 또는 寄留地의 市長, 區廳長 또는 邑·面長은 前項에 依하여 遺漏없이 申告를 하도록 督勵하여야 하며 自進하여 徵集適齡을 調査하여야 한다. 兵役法 第25條第2項의 但書 및 同法 第80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告에 準用한다.

#### 第3款 徵兵區

**第16條** 徵兵區는 이를 師管區 및 兵事區로 區分하고 그 區域은 陸軍 管區表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但 徵兵事務執行中 陸軍管區表의 改正이 있을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現在 執行中의 徵兵事務에 限하여 從前의 區域에 依하여 實施할 수 있다.

兵事區는 徵募區를 分割하며 徵兵事務執行을 爲하여 必要가 있을 때에는 徵募區를 다시 檢査區로 分割할 수 있다. 徵募區 및 檢査區의 區域은 國防部長官이 이를 定한다.

**第17條** 師管區內에 있는 部隊의 兵員은 그 師管區에서 이를 徵集함을 原則으로 한다.

部隊의 位置, 種類 其他의 事務에 依하여 1個 乃至 數個의 師管區에서 當該部隊의 兵員을 徵集할 수 있다.

#### 第4款 徵兵官

**第18條** 徵兵官은 最高徵兵官, 師管區徵兵官, 兵事區徵兵官 및 徵募區徵兵官으로 區分한다.

**第19條** 最高徵兵官은 國防部長官 및 內務部長官으로서 이에 充當하며 全國徵兵의

事務를 統轄한다.

**第20條** 師管區徵兵官은 師團長으로서 이에 充當하며 師管區內 兵事區司令官이 行하는 徵兵事務를 統轄한다.

**第21條** 兵事區徵兵官은 兵事區司令官,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으로서 이에 充當하며 兵事區司令官을 首班으로 하여 徵兵事務를 主管한다.

**第22條** 徵募區徵兵官은 兵事區司令官이 師團長에게 申告하며 任命하는 領官以上の 將校(以下 軍徵兵官이라 稱함)와 市長, 區廳長 또는 郡守로서 下記 區分에 依하여 이에 充當하며 軍徵兵官을 首班으로 하여 徵兵事務를 執行한다.

1. 市에 있어서는 軍徵兵官 및 市長
  2. 區에 있어서는 軍徵兵官 및 區廳長
  3. 郡에 있어서는 軍徵兵官 및 郡守
- 行政區域에 變更이 있을 境遇에 徵兵事務執行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兵事區徵兵官은 그 해에 限하여 從前의 區域에 依하게 할 수 있다.

**第23條** 前條의 徵募區徵兵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軍徵兵官에 있어서는 兵事區司令官이 指名하는 그 部下의 領官以上の 將校, 市長, 區廳長 또는 郡守에 있어서는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이 指名하는 課長以上の 官吏가 徵兵官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24條** 師管區 徵兵醫官, 兵事區 徵兵醫官, 徵募區 徵兵醫官은 每年 徵兵事務執行中 이를 둔다.

師管區 徵兵醫官은 師團長에 屬하여 師管區內의 身體檢査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兵事區 徵兵醫官은 兵事區司令官에 屬하며 兵事區內의 身體檢査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徵募區 徵兵醫官은 軍徵兵官에 屬하며 徵募區內의 身體檢査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徵募區 徵兵副醫官은 徵募區 徵兵醫官을 補佐한다.

**第25條** 師管區 徵兵醫官은 師團 軍醫部長

으로서 이에 充當한다.

兵事區 徵兵醫官은 兵事區司令部 高級 陸軍軍醫官으로서 이에 充當한다.

徵募區 徵兵醫官은 陸軍 軍醫少領 또는 陸軍 軍醫大尉로서 이에 充當한다.

徵募區 徵兵副醫官은 陸軍 軍醫尉官中 若干人으로서 이에 充當한다.

**第26條** 戰時 또는 事變에 臨하여 前條의 規定에 依하기 困難할 때에는 徵募區 徵兵醫官은 尉官以上の 陸軍軍醫官, 徵募區 徵兵副醫官은 醫師 免許證을 가진 者로서 이에 充當할 수 있다.

**第27條** 身體檢査를 받은 者가 僅少한 島嶼에는 徵募區 徵兵副醫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第28條** 師團長 또는 師團 軍醫部長이 遠隔한 地에 있기 때문에 師管區徵兵官 또는 師管區 徵兵醫官이 그 職務를 行하기 困難할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命하는 者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第29條** 徵兵署에 事務員을 두어 庶務에 從事하게 한다.

前項의 事務員은 陸軍 下士官 또는 軍屬과 道, 特別市, 郡, 市 및 區의 公務員 또는 警察官吏로서 이에 充當한다.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은 必要가 있을 때에는 邑·面長 또는 洞會長에 命하여 當該 邑·面 또는 洞會의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項에 規定하는 事務員의 職務를 補助하게 할 수 있다.

#### 第 5 款 兵員配賦

**第30條** 每年 徵集하는 現役兵, 護國兵 및 補充兵의 員數는 國防部長官이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各 師管區에 配賦한다.

**第31條** 師團長은 그 師管區에 配賦된 人員을 各 兵事區에 配賦하고 兵事區司令官은 그 兵事區에 配賦된 人員을 各 徵募區에 配賦한다.

#### 第 6 款 徵兵檢査

**第32條** 徵兵事務(徵集順序의 決定에 關한

事務를 除外한다)를 執行하기 爲하여 徵募區마다 每年 兵事區徵兵署를 設置하며 檢査區를 設置한 境遇에는 檢査區마다 이를 設置한다.

徵集順序에 關한 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兵事區에 每年 兵事區整理 徵兵署를 設置한다.

**第33條** 兵事區徵兵署는 市長, 區廳長 또는 郡守가 이를 設置한다.

兵事區整理 徵兵署는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이 이를 設置한다.

**第34條** 兵事區司令官, 道知事 및 特別市長은 徵兵署의 取締에 關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徵兵署에 出張한 憲兵 또는 警察官吏는 徵兵事務에 對한 違法行爲와 徵兵署 取締에 關하여 徵募區徵兵官의 指揮를 받아 服務한다.

**第35條** 徵兵處分을 取消하고 다시 處分을 할 때와 其他 臨時로 徵兵處分을 하기 爲하여 必要가 있을 때에는 第3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臨時로 徵兵署를 設置할 수 있다.

**第36條** 徵兵署 開設의 期日, 場所 其他 開設에 必要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兵事區司令官은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과 協議하여 이를 定한다.

**第37條** 市長, 區廳長 邑·面長은 要徵集者 名簿에 依하여 徵兵檢査를 받은 者에게 國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兵檢査 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徵兵檢査 通知書를 받은 者는 所定事項을 遵守하여 徵兵署에 出頭하여야 한다.

**第38條** 身體檢査는 兵事區徵兵署에 設置한 身體檢査場에서 實施한다.

**第39條** 兵役法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標準 및 同法 第34條第1項에 規定하는 體格等位는 下記와 같다.

1. 實役に 適合한 者는 身長 1.50m 以上の 身體健康한 者로 하며 그 體格의 程

도에 應하여 이를 甲種 및 乙種으로, 乙種은 이를 다시 第一乙種 및 第二乙種으로 나눈다.

2. 國民兵役에 適合하나 實役に 適合하지 못한 者는 身體가 1.50m 以上の 者로서 身體가 乙種의 次位에 있는 者와 身長 1.45m 以上 1.50m 未滿의 者로서 本條 第3號 및 第4號에 該當하지 않은 者로 하고 이를 丙種으로 한다.

3. 兵役에 適合하지 못한 者는 身長 1.45m 未滿의 者와 疾病 또는 身體나 精神의 異狀이 있는 者는 이를 丁種으로 한다.

4. 兵役의 適否를 判定키 어려운 者는 이를 戊種으로 하며 戊種은 身體檢査를 받은 해에 있어서는 疾病中 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甲種 또는 乙種으로 判定하기 어려우나 다음해에 이르면 甲種 또는 乙種에 合格할 可望이 있다고 認定하는 者

資格의 等位와 疾病 또는 身體나 精神의 異常에 의하여 第一乙種, 第二乙種, 丙種 또는 丁種으로 된 細部の 標準은 國防部長官이 이를 定한다.

**第40條** 兵役法 第36條에 規定한 兵役에 適合하지 못한 者라 함은 身體檢査의 結果에 依하여 兵役에 適合하지 못하다고 判定된 者를 말한다. 但 다음의 疾病 또는 精神의 異常이 있는 者는 身體檢査前 일지라도 兵役에 適合하지 못한 者로 認定하여 兵役을 免除한다.

1. 全身畸形
2. 不治의 精神病으로서 監視 또는 保護를 要하는 者
3. 癲
4. 兩眼盲(眼前 3分之 1m에 있어서 視標 0.1을 視別할 수 없는 者)
5. 兩耳聾
6. 聾어리
7. 腕關節 또는 足關節 以上으로서 肢를 缺한 者

**第41條** 但 徵兵官은 身體檢査의 事務를 監督하며 身體檢査를 받은 者의 兵種의 選定에 臨한다.

**第42條** 徵募區 徵兵醫官은 身體檢査를 받은 者의 體格等位의 決定에 臨한다.

**第43條** 徵募區徵兵官인 市長, 區廳長 또는 郡守는 徵兵檢査를 받을 者의 身上에 關한 調査에 臨한다.

**第44條** 邑·面長 또는 洞會長은 徵兵署에 出頭하여 徵兵官을 補助하여야 한다.

**第45條**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役兵, 護國兵 및 第1補充兵의 徵集에 關하여는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各 徵募官에 配賦된 現役兵, 護國兵 및 第1補充兵은 甲種 및 乙種의 者로 身長 1.60m 以上の 者로부터 이를 徵募한다. 但 身長 1.60m 以上の 者로서 配賦人員을 充足하지 못할 境遇에는 各 體格等位에 對하여 一律로 漸次 身長을 低下시켜 配賦要員을 充足할 수 있다.
2. 現役兵, 護國兵 및 第1補充兵에 徵集할 者의 體格等位의 優劣에 依한 徵集順序는 甲種, 第一乙種, 第二乙種의 順으로 한다.

**第46條** 徵兵檢査에 依하여 定하는 兵種은 區分에 依한다.

陸軍兵	兵科兵	步兵, 騎兵, 砲兵, 工兵, 兵站兵, 通信兵, 其他
	技術兵	兵器兵, 其他
	衛生兵	衛生兵, 其他
海軍兵	本科兵, 技術兵, 其他	
空軍兵	本科兵, 技術兵, 其他	

前項에 規定하는 兵種의 區分은 現役兵, 護國兵 및 補充兵으로서 徵集될 者에 對하여 行한다.

**第47條** 徵集順序의 決定은 兵事區徵兵署의 事務終了後 兵事區 整理徵兵署에서 徵募區마다 兵事區徵兵官이 이를 行한다.

第48條 道知事는 市長 또는 邑·面長, 特別市長은 區廳長 또는 洞會長으로 하여금 整理徵兵署에 出頭시킬 수 있다.

第49條 徵集免除, 兵役免除 및 徵集延期の 處分은 本令中 特別한 規定이 있는 外에는 本人의 登錄地 所在의 徵募區를 管轄하는 兵事區徵兵官이 이를 行한다.

第50條 現役 護國兵役 및 補充兵役에 編入하는 處分은 第30條의 規定에 依한 配賦에 依하여 本人의 登錄地所在의 徵募區를 管轄하는 兵事區司令官이 이를 行한다.

第51條 現役 護國兵役 및 補充兵役 編入과 徵集免除의 處分은 이를 徵兵終決處分이라 稱한다.

第52條 現役 護國兵役 및 補充兵役 編入과 兵役免除 및 徵集延期處分은 證書로써 이를 本人에게 通知한다.

徵集免除의 處分은 簡便한 方法으로 本人에게 通知한다.

第7款 現役兵 入營 및 護國兵 入隊

第53條 現役兵의 入營과 護國兵의 入隊는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54條 兵役法 第43條 乃至 第46條 및 同48條의 規定에 依한 入營 및 入隊의 延期の 處分은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兵事區司令官이 이를 行한다.

第55條 兵役法 第47條의 規定에 依하여 歸鄉케 하는 處分은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陸軍에 있어서는 聯隊長 또는 이와 同等 以上の 權限이 있는 部隊의 長이 海軍에 있어서는 海軍人事局長이 이를 行한다.

前項의 規定은 護國兵으로서 入隊한 者에 對하여 兵役法 第48條의 規定에 依한 歸鄉處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56條 兵事區司令官은 現役兵 入營 또는 護國軍 入隊時에 疾病 또는 身體나 精神의 異常으로 因하여 常備兵役 또는 護國兵役을 堪當하지 못할 者에 對하여는 徵集을 免除하며 永久히 兵役을 堪當하지

못할 者에 對하여는 兵役을 免除한다.

第8款 現役兵 및 護國兵 補缺

第57條 臨時로 現役兵 또는 護國兵에 多數의 缺員이 生한 때에는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補充할 수 있다.

第9款 徵集延期

第58條 兵役法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徵集延기는 軍事援護에 關한 法令에 依하여 救護할 可望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는 이를 行하지 아니한다.

第59條 兵役法 第39條에 規定한 徵集延期에 關하여 兵事區徵兵官이 行한 處分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本人 또는 그 家族은 師管區徵兵官에게 訴願할 수 있다.

그 訴請의 裁決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最高徵兵官에게 訴願할 수 있다. 但 訴願한 境遇에도 處分의 行은 이를 停止하지 아니한다.

訴願書는 處分을 받은 날이나 裁決書의 交付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到着하도록 이를 發送하여야 한다.

第60條 前條의 訴願書는 徵集延期에 關한 處分 또는 裁決을 한 徵兵官을 經由하여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兵官이 그 訴願을 받을 때에는 前에 行한 處分 또는 裁決에 關한 書類를 添附하여 上級の 徵兵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61條 現役編入의 處分이 있는 後 入營期日까지에 兵役法 第39條第1項에 規定한 事故가 生한 時의 徵集延期の 處分은 兵事區司令官이 이를 行한다.

### 第3章 召 集

第62條 召集은 本令中 따로 規定이 있는 外에는 召集을 받은 자의 登錄地 所管의 陸軍에 있어서는 師團長이, 海軍에 있어서는 警備府司令官이 이를 掌理한다.

第63條 召集은 召集令狀으로 本人에게 通

知한다. 但 必要가 있을 때에는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른 方法으로 이에 代用할 수 있다.

**第64條** 兵役法 第58條의 規定에 依한 召集과 그 解除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實施한다.

**第65條** 兵役法 第58條의 規定에 依한 陸軍의 召集定員의 配當 其他 必要한 準備는 師管區內에 있어서는 兵事區司令官이 이를 行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配當이 있을 때에는 이에 依하여 兵事區司令官이 召集할 者를 決定한다.

兵役法 第58條의 規定에 依하여 海軍에서 召集할 者(海軍의 兵籍에 編入되고 있는 者에 限함)는 海軍人事局長의 決定에 依하여 警備府司令官이 이를 行한다.

**第66條** 第58條의 規定에 依한 召集事務에 從事하는 者는 本令 및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常時遺漏없이 그 計劃 其他 準備를 하여 召集實施에 支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67條** 兵役法 第59條의 規定에 依한 召集은 國防部長官의 命에 依하거나 또는 그 認可를 받아 師團長 또는 統制府司令官이 이를 實施한다.

**第68條** 다음 및 揭記한 者는 時機緊急하여 命을 받을 餘裕가 없을 때에는 單獨으로 兵役法 第58條 또는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依한 召集을 專行할 수 있다. 但 이 境遇에는 事實을 遲滯없이 國防部長官에게 報告를 하여야 한다.

1. 陸軍에 있어서는 兵團長, 師團長, 衛戍地司令官, 聯隊長(獨立隊長을 包含한다), 이와 同等 以上の 權限이 있는 軍隊指揮官, 要塞司令官 또는 分遣隊長
2. 海軍에 있어서는 聯合艦隊司令官, 統制府司令官, 警備府司令官 또는 艦艇長  
前項의 1號 및 第2號에 揭記한 者는 召集에 關하여 師團長 또는 警備府司令官과

同一한 權限을 가진다.

**第69條** 兵役法 第60條 乃至 第63條의 規定에 依한 召集은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師團長 또는 海軍人事局長이 그 期日, 人員, 部隊 및 日數를 定한다.

第84條의 規定은 前項의 召集에 이를 準用한다.

**第70條** 兵役法 第7章에 定하는 課程 또는 이와 同等以上으로 認定하는 課程을 修得한 補充兵(國防部長官이 定하는 者를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兵役法 第63條의 規定에 依한 召集을 하지 아니한다. 但 兵役法 第7章에 定하는 課程과 이와 同等以上으로 認定하는 課程을 修得하지 못한 第1補充兵으로서 當該 兵事區 또는 警備의 管區에 있어서는 兵種別의 召集人員을 充足하지 못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71條** 兵役法 第60條 乃至 第63條의 規定에 依한 召集을 받은 者의 登錄地所在의 師管區內의 部隊 또는 警備府로 한다. 但 陸軍에 있어서는 必要있을 때에는 他 師管區內에 있는 部隊에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當該師管區를 管轄하는 師團長이 그 召集을 管掌한다.

**第72條** 簡閱召集은 이를 받은 者의 登錄地의 師管區 또는 警備府의 管區에서 行한다. 但 陸軍에 있어서는 當該 師管區를 管轄하는 師團長이 그 簡閱召集을 管掌한다.

**第73條** 國防部長官은 簡閱召集의 執行이 不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執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4條** 僻地에 있어서 簡閱召集에 參加할 者가 極少數인 때 其他 不得已한 때에는 師團長 또는 警備府司令官은 簡閱召集의 執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5條** 師團長은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陸軍의 簡閱召集의 時期와 人員을 定하여 이를 兵事區司令官에게 示達하여야 하며 또 그 部下인 兵科將校에 簡閱召集 執行官을 命하여야 한다. 但 師團

長은 그 部下가 아닌 兵科將校에게 그 在職하는 部隊의 長과 協議하여 簡閱召集 執行官을 命할 수 있다.

海軍人事局長은 海軍의 簡閱召集의 時期 및 人員을 定하여 이를 警備府司令官에게 示達하여야 하며 警備府司令官은 그 部下인 兵科將校에게 簡閱召集 執行官을 命하여야 한다.

**第76條** 陸軍의 簡閱召集의 場所, 區域 및 日程은 兵事區司令官이 定하고 海軍 簡閱召集의 場所, 區域 및 日程은 警備府司令官이 定하여 師團長 또는 海軍人事局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77條** 兵役法 第66條第1號에 揭記하는 者の 兵務召集 또는 簡閱召集의 免除에 關하여는 當該 官廳이 미리 그 者の 登錄地, 役種, 兵種, 徵集年, 豫備役編入年, 官等級, 姓名 및 理由를 記하여 所屬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但 所屬長官이 指定한 者は 그 認可를 받은 者로 看做한다. 前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以外の 者에 對한 兵役法 第66條의 規定에 依한 兵務召集 또는 簡閱召集의 免除은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兵事區司令官 또는 海軍人事局長이 이를 行한다.

**第78條** 兵事區司令官 및 警備府司令官은 定期 또는 臨時로 地方行政廳의 召集事務를 檢閱하며 또는 部下의 將校로 하여금 이를 檢閱하게 할 수 있다.

道知事, 特別市長, 憲兵司令官 및 憲兵隊長은 關係召集事務를 檢閱하며 또는 그 部下로 하여금 이를 檢閱하게 할 수 있다.

**第79條** 道知事 및 特別市長은 召集에 關한 通知를 받은 때에는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召集에 關係있는 管下 官公署의 長에게 이를 通知하는 同時에 召集에 關하여 必要한 協力을 하여야 한다.

**第80條** 召集事務를 管掌하는 警察署長은 兵事區司令官 또는 警備府司令官으로부터 召集令狀의 送付를 받은 市長, 區廳長 또

는 邑·面長은 이를 整備하여 召集될 者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81條** 召集事務에 關하여 師團長 또는 警備府司令官이 定하는 道知事, 特別市長, 憲兵隊長 및 그 所屬의 公務員은 이를 遵守하여야 한다.

道知事 및 特別市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는 外에 兵役法 第85條에 規定하는 召集의 準備 또는 實施에 關하여 師團長 또는 警備府司令官으로부터 臨時要求를 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 또 自進하여 召集을 容易케 하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第82條** 本令에 定하는 外 召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 第4章 雜 則

**第83條**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하여 다시 徵兵檢査를 받을 者は 다음에 揭記한 期間을 通算하여 1年 未滿인 者로 한다. 但 兵役이 免除된 者は 例外로 한다.

1. 現役 또는 護國兵役에 服한 期間
2. 兵籍에 編入된 陸軍의 諸生徒 또는 海軍의 諸生徒로서의 隊附의 期間 또는 練習하기 爲하여 海軍의 艦船에 乘組한 期間
3. 召集된 期間

**第84條** 前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가 다시 現役に 服하게 된 때에는 前條에 揭記한 期間을 通算하여 服役케 한다.

**第85條** 陸軍 또는 海軍兵의 兵種은 軍事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86條** 兵役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시 徵兵檢査를 받을 者에 對하여는 그 前에 行한 兵役의 處分은 本令中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事由發生의 日字로써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87條** 上級徵兵官은 下級徵兵官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또는 取消後 다시 處分

을 命令할 수 있다. 但 師管區徵兵官은 最高徵兵官의 認可를 얻어 이를 行하여야 한다.

兵事區徵兵官 또는 徵募區徵兵官이 自己가 行한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는 것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또는 取消後에 다시 處分을 할 수 있으며 이 境遇에는 國防部長官이 定하는 外에는 最高徵兵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兵事區司令官이 行한 處分을 取消하거나 또는 取消한 後에 다시 處分을 하여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前2條의 規定에 準하여 國防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第88條** 國外에 있는 者의 徵集延期에 關하여는 大使, 公使 및 領事官으로 하여금 그 事務의 一部를 擔當시킬 수 있다.

**第89條** 徵兵署의 諸費, 徵兵檢査를 받은 者의 旅費 및 現役兵入營, 護國兵入隊의 旅費는 이를 官給할 수 있다.

疾病 또는 身體나 精神의 異常으로 因하여 監視 또는 保護하는 者로 하여금 徵兵檢査를 받게 하기 爲하여 또는 入營이나 入隊하게 하기 爲하여 看護人을 同行하게 한 때에는 그 看護人의 旅費는 이를 官給할 수 있다.

**第90條** 徵兵事務가 終了한 때에는 兵事區司令官 또는 師團長은 管內徵兵事務의 狀況을 直接 上級의 徵兵官인 師團長 또는 國防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國防部長官은 徵兵事務 全般의 狀況을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91條** 警察官署의 長은 市長, 區廳長 또는 邑·面長으로부터 兵事實務 執行에 關하여 協力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92條** 登錄所在地의 徵兵區를 爲하여 設置한 兵事區徵兵署 閉鎖後에 身體檢査를 要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他 徵募區를 爲하여 設置한 兵事區徵兵署에서 身體檢査

를 行할 수 있다.

徵兵檢査開始前 또는 兵事區 內의 兵事區徵兵署 閉鎖後 徵集順序 決定前에 있어서 身體檢査를 要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身體檢査를 行한다.

**第93條** 空軍에 關하여는 本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海軍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94條** 本令의 細則은 國防部令으로 이를 定한다.

## 第5章 罰 則

**第95條** 本令 또는 本令을 施行하기 爲한 法令에 規定한 届出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3個月 以下の 懲役 또는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96條** 本令 또는 本令을 施行하기 爲한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兵事事務를 擔當한 公務員이 所定의 手續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職務에 怠慢하여 兵事事務에 支障을 惹起시킬 때에는 2個月 以下の 懲役 또는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97條** 郵便配達 其他 文書 傳達人으로서 正當한 理由없이 本令 또는 本令을 施行하기 爲한 法令에 規定한 兵事關係書類를 傳達하지 아니하거나 遲延시키거나 또는 破毀하는 者는 1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前項의 規定은 家族 또는 第三者로서 兵事に 關한 書類를 傳達 또는 通知하여야 할 義務를 가진 者에 準用한다.

## 附 則

檀紀 4282年度 徵集은 本令에 規定한 各條의 期日에 依하지 아니할 수 있다.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軍人服務令

대통령령 제282호  
1950. 2. 28.

- 第1條 本令은 軍人の 服務에 關한 根本 基準을 明示하여 軍紀를 確立하며 獻身報國의 軍人精神을 昂揚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本令에 있어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軍人, 軍教育機關의 生徒, 學生 및 召集中의 護國兵役, 豫備兵役, 補充兵役과 國民兵役의 軍人을 말한다.
- 第3條 軍人은 大韓民國에 對하여 忠誠을 다하며 그 職責을 完遂하여야 한다.
- 第4條 軍人은 軍紀를 嚴守하고 上官의 命令에 絶對服從하며 誠實히 法令을 遵守하여야 한다.
- 第5條 軍人은 上官을 尊敬하고 部下를 愛護하여 和睦團結하여야 한다.
- 第6條 軍人은 清廉儉朴하고 武勇을 崇尚하여야 한다.
- 第7條 軍人은 浪費하여 家産을 蕩盡하고 또는 그 分에 넘치는 負債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8條 軍人은 信義를 固守하며, 名譽와 品位를 維持하여야 한다.
- 第9條 軍人은 職務의 内外를 不問하고 權力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0條 軍人은 服裝을 端正히 하며 言動을 삼가야 한다.
- 第11條 軍人은 그 職에 있고 없고를 不問하고 軍의 祕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 第12條 軍人은 直接 間接을 不問하고 本務 以外의 다른 業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 第13條 軍人은 上官의 許可없이 그 職場 및 勤務地를 떠나지 못한다.
- 第14條 軍人은 政治運動에 參加하거나 軍務 以外의 일을 爲한 集團의 行動을 하지 못한다.

第15條 軍人은 職務에 關하여 慰勞, 謝禮 其他 名義의 如何를 不問하고 金品 또는 饗應을 받지 못한다.

第16條 軍人은 그 所屬部下로부터 贈與를 받지 못한다.

第17條 軍人은 大統領의 許可없이 外國政府로부터 榮譽 또는 贈與를 받지 못한다.

第18條 本令은 軍에 服務하는 軍屬에 準用한다.

##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防禦海面法

법률 제104호  
1950. 3. 2.

第1條 大統領은 戰時 또는 內亂에 際하여 特히 必要할 때에는 區域을 定하여 防禦海面을 指定할 수 있다.

前項의 指定과 解除는 國防部長官이 告示한다.

第2條 緊急을 要할 때에는 統制府司令長官 또는 警備府司令官은 前條의 指定을 行하여 告示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遲滯없이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大統領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指定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國防部長官은 遲滯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條 防禦海面에 있어서는 日沒부터 日出까지 國軍에 屬하는 以外의 船舶은 統制府司令長官 또는 警備府司令官의 許可없이 出入 또는 通航할 수 없다.

第4條 海軍基地의 區域이 防禦海面에 屬할 때에는 國軍에 屬하는 以外의 船舶은 統制府司令長官 또는 警備府司令官의 許可없이 出入 또는 通航할 수 없다.

第5條 防禦海面을 出入, 通航 또는 碇泊하는 船舶은 그 一切의 行動에 關하여 統

制府司令長官 또는 警備府司令官의 指示에 應하여야 한다.

第6條 統制府司令長官 또는 警備府司令官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防禦海面에 있어서의 漁獵, 採藻 其他 軍事上 障害가 될 行爲를 禁止 또는 制限할 수 있다.

第7條 本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違反하는 船舶에 關하여는 統制府司令長官 또는 警備府司令官은 船路를 指定하여 防禦海面에서 退去시킬 수 있다.

第8條 第3條 乃至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船舶의 長 및 그 職務를 代行하는 者는 3年 以下の 懲役 또는 2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9條 第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下の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 附 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學生軍事訓練實施令

대통령령 제577호  
1951. 12. 1.

第1條 高等學校 및 그와 同等以上の 學校의 男學生에 對하여 軍事에 關한 基礎의 知識과 實技를 授與하고 그 資質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軍事訓練을 實施한다.

第2條 前條의 軍事訓練은 現役將校 또는 豫備役將校로써 擔當케 한다.

第3條 國防部長官은 各學校의 軍事訓練의 統一의 指導를 하기 爲하여 文敎部長官의 要請에 依하여 文敎부와 서울特別市 및 各道에 現役將校를 配屬시킨다.

第4條 軍事訓練의 內容에 關하여는 文敎部長官이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한다.

第5條 學校軍事訓練 檢定試驗合格者 處

遇에 關한 事項은 따로 이를 定한다.

### 學生軍事訓練實施令施行規則

국방부령 제16호  
문교부령 제29호  
1953. 4. 1.

第1條 軍事訓練을 實施하는 學校의 長(以下 學校長이라 한다)은 當該學校의 學則과 軍事訓練實施에 必要한 施設(運動場을 包含한다)에 顯著한 變動이 있을 때에는 隨時 文敎部長官과 國防部長官(以下 所管長官이라 한다)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2條 軍事訓練을 實施중인 學校로서, 學級이 增減되었거나 또는 當該學校가 廢止되었을 때에는 文敎部長官은 遲滯없이 國防部長官에게 通報한다.

第3條 學校長은 每年度마다 學年別, 學級別, 學生現員을 4月末日 現在로 5月 10日 까지 所管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4條 學校設立者(國立學校는 除外한다)가 軍事助教를 採用하였을 때에는 別紙 第1號書式에 依하여 그때마다 履歷書를 添附하여 所管長官에 報告하여야 한다. 但 私立學校(大學은 除外한다)에 있어서는 所管道知事 또는 特別市教育委員會를 거쳐야 한다.

第5條 學校長은 配屬將校와 軍事助教의 每月의 勤務狀況을 別紙 第2號書式에 依하여 翌月10日 까지 所管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但 公立學校와 私立學校(大學은 除外한다)에 있어서는 所管道知事 또는 特別市教育委員會를 거쳐야 한다.

第6條 配屬將校는 軍事訓練을 擔當하는 外에 訓練用資材와 裝備를 保管할 責任이 있다.

第7條 軍事訓練實施令(以下 令이라 한다) 第4條의 訓練內容이라 함은 訓練科目과 實施方法 및 教範 등을 말한다.

第8條 軍事訓練時間은 다음과 같다.

學校種別	學年別	每週의時間數	1年間의時間數
高等學校 또는 이와 동등한學校	1	4	156
	2	4	156
	3	4	156
初級大學	1	4	140
	2	4	140
大學 (醫科大學 除外)	1	2	70
	2	2	70
	3	2	70
	4	2	70
醫科大學	豫科 1	2	70
	豫科 2	2	70
	本科 1	2	70
	本科 2	2	70

前項의 訓練時間外에 每學年 5日以上の 野外訓練을 實施하여야 한다.

第9條 令 第4條의2의 規定에 依한 學生 軍事訓練實施狀況의 報告는 別紙 第3號 書式에 依하되, 每月分을 翌月 15日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前項의 報告書는 所轄兵事區司令官을 서 처야 한다.

第10條 軍事訓練査閲(以下 査閲이라 한 다)은 年1回 또는 2回 施行한다.

第11條 兵事區司令官은 別紙 第4號書式에 依한 査閲計劃書를 作成하여 國防部長官 에게 提出하는 同時에 査閲擔當將校의 指 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兵事區司令官은 前項의 査閲計劃을 當該 學校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前2項의 提出, 申請과 通知는 査閲實施 30日前에 하여야 한다.

第12條 査閲擔當將校가 査閲을 畢한 때에 는 實施狀況을 遲滯없이 所管長官에게 報 告하여야 한다.

第13條 配屬將校는 卒業豫定者에 對하여 2月 末日까지 軍事訓練成績를 檢定한 後 第6號書式에 準하여 兵事區司令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但 中途에 退學하는 者 로서 第14條의 基準에 達할 者에 對하여 는 그때까지의 成績를 檢定할 수 있다.

兵事區司令官은 前項의 報告書에 依據하 여 別紙 第5號書式에 依한 檢定證을 交付 하여야 하며 每年 4月末日까지 別紙 第6 號書式에 依한 學生軍事訓練檢定集計表를 作成하여 所管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4條 檢定證은 高等學校 또는 이와 동 等한 學校에 있어서는 420時間 以上(野 外演習時間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初級 大學과 大學에 있어서는 252時間 以上の 訓練을 받은 者로서 訓練成績이 60點 以 上인 者에 交付한다.

第15條 配屬將校는 別紙 第7號書式의 學 生軍事訓練檢定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號書式

軍事助教採用報告書

採 用 年 月 日	出身學校	兵役服務 年 數	兵種階級	年 齡	姓 名	擔當學年 및 擔當訓練時間數

第2號樣式

勤務狀況報告書

配屬將校分

出勤	出張	公休	赴任 途中	年暇	公暇	請願 休暇	慰勞 休暇	褒賞 休暇	缺勤	總日數	遲參	早退	特勤	訓練實施 時間數	階級 職名	姓 名	摘 要

備考: 左側에 1月부터의 累計를 朱書할 것

軍事助教分

出勤	出張	公休	公暇	赴任途中	缺勤	病暇	忌暇	年暇	總日數	遲參	早退	特勤	訓練實施時間數	階級職名	姓名	摘要

備考：左側に 1月부터의 累計를 朱書할 것

民兵隊令

대통령령 제813호  
1953. 7. 23.

第1條 民兵隊는 隊員으로 하여금 生業에 從事하면서 軍事訓練을 받으며 아울러 鄉土防衛에 協助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前項의 目的을 爲하여 隊員에게 必要한 學科教育을 實施할 수 있다. 但 國民學校 卒業程度 以上の 學歷을 가진 者에 對하여는 이를 實施하지 아니한다.

第2條 民兵隊는 戰時中 兵役法 第58條에 依하여 召集한 歸休兵, 豫備兵, 後備兵, 補充兵 및 國民兵으로써 組織한다. 前項의 召集은 徵集年齡을 中心으로 하여 年齡順으로 行한다. 前2項의 召集에 있어서는 公務員과 學生은 除外한다.

第3條 民兵隊는 國民學校單位로 設置하되 그 名稱은 所在地區, 市, 邑, 面名을 冠하고 같은區, 市, 邑, 面內에 2個以上の 民兵隊를 둘 때에는 區, 市, 邑, 面 아래에 「第1」, 「第2」의 順位로 冠한다.

第4條 民兵隊의 訓練과 教育에 있어서는 當該國民學校의 施設을 利用한다.

第5條 民兵隊員의 隊別所屬을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兵事區司令官(以下 所轄兵事區司令官이라 한다)이 當該地를 管轄하는 區廳長, 市長 또는 郡守(以下 所轄區廳長, 市長, 郡守라 한다)와 協議하여 定한다. 民兵隊員은 本人의 軍事經驗과 學歷程度를 參酌하여 이를 甲班과 乙班으로 나눌 수 있다.

第6條 第1條에 規定한 訓練과 教育은 自宅에서 往來하면서 받되 食事와 被服은 隊員의 自擔으로 한다.

第7條 民兵隊에 隊長을 두되 當該國民學校長이 이에 當한다. 隊長은 隊務를 掌理하며 隊의 班을 編成한다.

第8條 軍事訓練은 民兵隊所在地區, 市, 邑, 面內에 居住하는 軍事經驗이 있는 者中에서 所轄兵事區司令官이 指名한 者가 擔當한다. 但 當該區, 市, 邑, 面에 擔當할 者가 없을 때에는 兵事區司令官이 따로 措置한다. 學科教育은 當該國民學校教師中에서 校長의 推薦으로 兵事區司令官이 委囑한 者가 擔當한다.

第9條 隊長과 軍事訓練 또는 學科教育을 擔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執務 또는 擔當期間中 國防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當을 支給한다.

第10條 軍事訓練과 學科教育의 內容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第11條 軍事訓練과 學科教育은 隊員의 生業에 支障이 없는 時期와 方法을 擇하여 行하여야 한다. 軍事訓練實施에 있어서는 強壓的이거나 其他人權을 蹂躪함과 같은 所爲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12條 軍事訓練은 年90時間 內外를, 學科教育은 年180時間 內外를 基準으로 依하여 實施한다.

第13條 民兵隊는 그 所在地를 管理하는

警察署長(以下 所轄警察署長이라 한다)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治安維持에 協力하여야 한다.

前項의 要請은 郷土防衛上 危急한 때에 限한다.

民兵隊가 第1項의 協力을 할 때에는 軍事訓練을 擔當하는 在郷軍人이 引率指揮하여야 한다. 但 軍事訓練을 擔當하는 在郷軍人이 引率할 수 없는 境遇에는 隊長이 指定하는 者가 引率指揮한다.

**第14條** 民兵隊員은 特別한 制服이나 制帽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며 日常着用하는 服裝을 着用한다. 但 訓練時와 其他 國防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는 國防部長官이 定하는 胸章을 佩用한다.

**第15條** 民兵隊員은 武器를 携帶할 수 없다. 但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出動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6條** 民兵隊는 民兵隊 또는 民兵隊員의 資格으로써 團體的으로나 個人的으로 政治에 關與하거나 政治運動을 할 수 없다.

**第17條** 兵事區司令官은 所轄區廳長, 市長, 郡守를 通하여 그 管內民兵隊運營에 關한 事務를 統轄한다.

所轄區廳長, 市長, 郡守는 民兵隊運營에 對한 一般的인 監督責任이 있으며 警察署長은 當該地域內의 民兵隊員의 非行을 團束할 責任이 있다.

**第18條** 民兵隊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國庫가 負擔한다.

前項의 經費는 手當, 旅費, 備品費, 消耗品費와 雜費에 限한다.

民兵隊의 經費는 國防部豫算에 計算하여 所轄區廳長, 市長, 郡守를 通하여 令達한다.

**第19條** 누구든지 名目の 如何를 不問하고 民兵隊의 經費에 充當할 目的으로 金品の 寄附를 要求, 募集하거나 또는 이에 類似한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民兵隊나 民兵隊員의 金品寄附의 要求 募集行爲도 또한 禁止한다.

**第20條** 民兵隊의 軍事訓練에 關하여는 所轄兵事區司令官이 民兵隊所在地附近學校에 配置된 配屬將校로 하여금 監督하게 한다.

前項의 配屬將校는 年2回 軍事訓練實施狀況을 査閱하여야 한다.

**第21條** 民兵隊의 學校教育에 關하여는 兵事區司令官이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教育監으로 하여금 監督하게 한다.

前項의 教育監은 所屬獎學士로 하여금 隨時教育狀況을 視察, 調査케 하여야 한다.

**第22條** 前2條에 依한 監督上 또는 査閱上 必要로 出張하는 境遇에는 國內旅費規程 또는 軍人旅費規程에 依한 旅費를 支配한다.

**第23條** 民兵隊員으로서 戰鬪에 準할 行爲로 因하여 傷痕을 받거나 殉職한 境遇에는 그 本人 또는 遺族은 警察官의 境遇에 準하여 補償金이나 年金을 받거나 또는 救護를 받을 수 있다.

**第24條** 民兵隊에 關한 事項을 管掌시키기 爲하여 國防部に 民兵隊總司令部를 둔다. 民兵隊總司令部에는 民兵隊總司令官을 둔다.

**第25條** 民兵隊總司令官은 現役 또는 豫備役의 陸·海·空軍將官級 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民兵隊總司令官은 國防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으며 民兵隊에 關하여는 兵事區司令官을 指揮監督한다.

**第26條** 本令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戰時勤勞動員法

법률 제292호  
1953. 9. 3.

**第1條(目的)** 本法은 戰爭完遂 또는 災害復舊에 必要한 重要業務에 從事케 하기 爲하여 國民의 勤勞를 動員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動員의 制限) 本法에 依한 勤勞動員은 戰爭完遂 또는 戰爭에 基因한 災害를 復舊함에 必要한 다음의 業務에 限하여 行한다.

1. 物資의 生産 修理 또는 保管에 關한 業務
2. 運輸 또는 通信에 關한 業務
3. 衛生 또는 救護에 關한 業務
4. 土木, 建築 또는 鐵道, 鐵路 港灣의 施設改修에 關한 業務

第3條(動員年齡) ①本法에 依한 勤勞動員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年齡 滿17歲以上 滿40歲 未滿의 男子로 한다. 但 兵役法의 適用은 排除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年齡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政官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4條(動員의 種類) ①本法에 依한 勤勞動員은 다음 3種으로 한한다.

1. 1種動員: 單純한 勞務에 從事하는 境遇로서 1年中 60日以內의 期間에 限한다. 但 特別한 必要가 있거나 또는 本人의 同意가 있는 境遇에는 90日까지 할 수 있다.
2. 2種動員: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專門의 技術經驗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境遇로서 1年中 6月以內의 期間에 限한다.
3. 3種動員: 單純한 勞務에 從事하는 境遇로서 1年中 20日以內의 期間에 限하여 團體 또는 個人을 動員한다.

②滿25歲 未滿의 者는 1種動員과 2種動員에 依한 動員을 하지 아니한다.

第5條(動員申請) ①本法에 依한 勤勞動員의 配置를 받고자 하는 者는 當該業務를 所管하는 主務部長官을 經由하여 社會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被動員者의 人員數, 就業場所, 作業種類, 動員期間, 賃金, 其他 勤勞條件을 明示하여야 한다.

第6條(動員命令) ①社會部長官은 前條에

依한 申請이 있을 때 戰時勤勞動員委員會의 議決을 얻어서 勤勞動員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地方行政의 長에게 動員命令을 發한다.

②戰時勤勞動員令은 社會部長官, 內務長官, 國防部長官, 農林部長官과 商工部長官으로 構成하고 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

第7條(管理命令) ①前條의 境遇에 있어서 社會部長官은 勤勞動員을 申請한 者에 對하여 勤勞條件 其他 被動員者의 管理에 對하여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申請者가 前項의 命令에 違反하는 境遇에는 社會部長官은 動員을 解除할 수 있다.

第8條(動員令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動員命令을 받은 地方行政의 長은 被動員者를 決定하여 動員令狀을 發한다.

第9條(動員令狀의 內容) 動員令狀에는 被動員者의 就業場所, 作業種類, 動員期間, 賃金 其他 勤勞條件을 明示하여야 한다.

第10條(出頭義務) ①動員令狀을 받은 者는 指定한 時日과 場所에 出頭하여야 한다.

②動員令狀을 받은 者로서 疾病 其他 不可避한 事故로 因하여 指定한 時日과 場所에 出頭하지 못할 境遇에는 地方行政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가 있을 때 그 申告가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地方行政의 長은 動員을 猶豫하여야 한다.

第11條(動員의 解除) 被動員者를 使用하는 者로서 被動員者가 疾病 其他動由로 因하여 動員에 不適用하거나 또는 動員의 必要가 없게 되었을 境遇에는 當該 地方行政의 長에게 動員의 解除를 申請하여야 한다.

第12條(離脫의 禁止) 被動員者는 動員期間中 正當한 理由없이 就業場所를 離脫하지 못한다.

第13條(解除命令) ①社會部長官은 動員을 解除하고자 할 境遇에는 被動員의 就業地

를 管轄하는 地方行政의 長에게 動員解除 命令을 發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動員解除命令을 받은 地方行政의 長은 即時로 動員解除令 狀을 被動員者에게 發한다.

**第14條(旅費의 負擔과 賃金의 先拂)** ①被 動員者가 動員令狀에 依하여 出頭할 境遇 動員이 解除되어 歸鄉할 境遇 또는 被動 員者 或은 그 家族의 老篤 或은 死亡으로 因하여 被動員者를 使用하는 者의 通知에 依하여 家族이 出頭하고 或은 被動員者를 使用하는 者의 許可를 얻어 被動員者가 一時 歸鄉할 境遇의 旅費는 被動員者를 使用하는 者가 支給하여야 한다.

②1種動員과, 2種動員의 該當者로서 令狀에 依하여 出頭할 時는 使用者로부터 賃 金 30日分에 該當한 金額을 그 家族에게 先拂하여야 한다.

**第15條(管理의 調査)** ①社會部長官은 必 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被動員者를 使用하는 場所에 臨檢하여 調査를 行하고 被動員者를 使用하는 者에 對하여 勤勞條 件 其他被動員者의 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使用者가 前項의 命令에 違反할 境遇에 는 社會部長官은 動員을 解除할 수 있다.

**第16條(治療費와 慰藉料)** ①被動員者를 使用하는 者는 被動員者가 業務上 傷痕를 입 거나 疾病에 걸렸을 境遇에는 이에 對한 治療費를 支給하여야 하며 이로 因하여 動員이 解除되어 本人 또는 家族의 生計가 困難할 境遇에는 賃金과 諸手當 150 日分 以上の 扶助料를 支給하여야 하며 業務上의 原因으로 死亡하였을 境遇에는 賃金과 諸手當 300日分 以上の 慰藉料를 支拂하여야 한다.

②第14條와 前項의 費用은 使用者가 直接 支給할 수 없는 境遇에는 政府가 支給 하고 使用者는 國庫에 納入한다.

**第17條(被動員者의 職場保護)** ①被動員者

가 動員되기 前에 在職하던 職場의 使用 者는 動員期間中 被動員者를 解雇하거나 其他 被動員者에게 不利益한 行爲를 할 수 없다.

②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被動員者가 動員 職場에서 받는 賃金이 從來의 職場에서 받은 賃金에 未達할 때에는 그 不足額은 從來의 使用者가 支給하여야 한다.

③被動員者가 動員中 死亡하였을 境遇에 는 被動員者가 動員되기 前에 在職하던 職場의 使用者는 30日分 以上の 平均賃 金과 諸手當에 該當하는 金額을 勤勞者에 게 支給하여야 하며 2年以上 勤續한 者에 對하여는 그 年數 1년에 對하여 30日 分式을 10年以上 勤續한 者에 對하여는 10年을 넘는 1년에 對하여 90日分式을 加算한다.

**第18條(動員의 免除)** 다음 各號의 1에 該 當하는 者는 第4條에 規定한 1種動員 2種 動員에 依한 動員을 免除한다.

1. 公務員中 政府가 指定하는 者
2. 政府가 指定하는 學校의 教員과 學生, 生徒
3. 農業과 重要生産業務에 從事하는 者로 서 政府가 指定하는 者
4. 前項各號에 依하여 政府가 指定할 때 에는 戰時勤勞委員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19條** 本法 第3條第2項, 第10條第1項과 第 12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20條** 本法 第7條第1項의 命令에 違反하 는 者, 第11條第1項, 第14條의 規定에 違 反하는 者,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臨檢調査를 拒否하거나 命令에 違反하는 者와 第16條의 規定에 違及하는 者는 6 月以下의 懲役 또는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1條**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前條의 違反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前條의 罰金을 科한다.

**第22條(動員協議會)** ①勤勞動員에 關한 重要事項을 協助하기 爲하여 中央, 서울特別市, 道, 市, 區, 郡, 邑, 面에 戰時勤勞動員協議會를 둔다.

②戰時勤勞動員協議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3條(期間計算)** 勤勞動員의 始期는 出發日로부터 起算되며 第4條에 規定된 動員期間이 滿了되면 其翌日로부터 動員은 自然解除된다.

#### 附 則

**第24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後에 施行한다.

**第25條** 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26條** 大統領令 第6號 徵發에 關한 特別措置令中 徵用에 關한 部分은 無效로 한다.

**第27條** 本法施行前 大統領令 第6號 徵發에 關한 特別措置令에 依하여 徵用된 者中 單純한 勞務에 從事하는 者는 이를 本法의 1種動員에 依하여 動員된 것으로 看做한다.

#### 各軍總參謀長 및 海兵隊司令官 任期規程

대통령령 제825호  
1953. 10. 27.

**第1條** 本令은 陸·海·空軍 總參謀長 및 海兵隊司令官(以下 總參謀長 및 司令官이라 한다)의 任期에 關하여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總參謀長 및 司令官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1次 重任할 수 있다.

**第3條** 大統領은 總參謀長 및 司令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그 任期가 滿了

되기 2個月前에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그 後任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第4條** 大統領은 第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總參謀長 및 司令官을 更迭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任期內에 解任할 수 있다.

**第5條** 大統領은 總參謀長 및 司令官이 關位된 때에는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即時 그 後任者를 任命하여야 한다.

**第6條** 本令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國防部令으로써 定한다.

####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令 施行時 總參謀長 및 司令官의 職에 있는 者의 任期는 本令 公布日로부터 計算한다.

#### 正規軍人身分令

대통령령 제845호  
1951. 12. 14.

#### 第1章 總 則

**第1條** 本令은 現役に 服務하는 正規軍人(以下 軍人이라 한다)에 適用할 人事行政의 根本基準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軍人은 將校, 准士官 및 下士官으로 한다.

#### 第2章 階級 및 分科

**第3條** 將校는 將官, 領官, 尉官으로 區分하고 將官은 元帥, 大將, 中將, 少將, 准將으로, 領官은 大領, 中領, 少領으로, 尉官은 大尉, 中尉, 少尉로 한다.

准士官은 陸軍과 空軍에 있어서는 准尉로, 海軍에 있어서는 1等准尉와 2等准尉

로 한다.

下士官은 陸軍과 空軍에 있어서는 1等上士, 2等上士, 1等中士로, 海軍에 있어서는 兵曹長, 1等兵曹, 2等兵曹, 3等兵曹로 한다.

第4條 將校, 准士官 및 下士官의 分科에 關하여는 따로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 第3章 任 命

第5條 將校는 士官候補生으로서 正規의 課程을 修了한 者中에서 總參謀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國防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軍所定의 教育을 畢한 者를 將校로 任命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將校로 任命되는 者中에서 法務, 軍醫, 軍宗, 技術科로 任命되는 者에 對하여는 當該部門에서 勤務한 期間은 다음 比率에 依하여 現役に 服務한 것으로 看做한다.

勤務期間	加算比率
3年以上	2年
6年以上	4年
9年以上	6年
12年以上	7年

第6條 准士官은 總參謀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 任命한다.

下士官은 總參謀長이 任命한다.

准士官, 下士官의 任命에 關한 事項은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第7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軍人에 任命될 資格이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禁治產者와 準禁治產者
3.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5. 懲戒免職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2年

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6. 法令에 依하여 公民權이 停止 또는 剝奪된 者

第8條 將校로 任命 또는 軍人으로 轉役될 者의 最高年齡과 最低年齡은 다음과 같다.

	最 高 年 齡(滿)	最低年齡
大 領	47歲	38歲
中 領	43歲	34歲
少 領	40歲	31歲
大 尉	38歲	27歲
中 尉	33歲	24歲
少 尉	30歲	21歲

(准士官 및 下士官으로부터 任命된 者는 35歲)

### 第4章 進 級

第9條 進級은 正規進級과 臨時進級으로 區分한다.

第10條 正規進級은 進級年限이 經過한 者로서 上級の 職責을 堪當할 수 있는 者中에서 進級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1階級式 進級시킨다.

前項의 進級年限은 다음과 같다.

大 領	3年
中 領	4年
少 領	3年
大 尉	4年
中 尉	3年
少 尉	2年
2等准尉	4年
2等上士	3年
1等兵曹	
1等中士	2年
2等兵曹	
2等中士	
3等兵曹	1年

進級審査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1條 臨時進級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

에 의하여 그職位에 따라 3階級까지 進級시킬 수 있다.

第12條 將官級將校中 大將 및 中將은 그職位에 따라 臨時階級으로 한다.

第13條 將校 및 准士官의 進級은 總參謀長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 行한다. 但 將官級將校의 進級은 總參謀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統領이 行한다.

下士官의 進級은 總參謀長이 行한다.

第14條 進級審査委員會에서 同一階級에 對하여 3次 落選된 者는 進級對象者가 될 수 없다.

### 第5章 服 役

第15條 現役停限年齡은 다음과 같다.

#### 現役停限年齡

元 帥 終 身	(法務, 軍醫, 軍宗科)
少將以上	60歲 (64歲)
准 將	57歲 (62歲)
大 領	56歲 (60歲)
中 領	52歲 (57歲)
少 領	49歲 (54歲)
大 尉	45歲 (50歲)
中 尉	40歲 (45歲)
少 尉	40歲
准 士 官	54歲
下 士 官	40歲

第16條 軍人으로서 現役停限年齡에 達한 者는 豫備役に 編入한다. 但 現役に 服한 期間이 20年 以上인 者는 願에 依하여 退役에 編入할 수 있다.

第17條 前2條에 不拘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現役停限年齡에 關係없이 그 服務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1. 戰時, 事變 또는 國家非常事態에 臨할 때
2. 出師의 準備 또는 守備와 警備上 必要한 때
3. 航海中 또는 外國勤務中인 때

4. 重要한 演習 또는 觀艦式 또는 觀兵式을 舉行할 때

5. 天災, 地變 其他 避치 못할 事由로 因하여 不得已할 때

第18條 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는 將校로 任命된 後 10年 以上 其他의 將校는 5年 以上을 現役に 服務하여야 한다.

第19條 將校로서 義務年限을 服務한 者 또는 准士官 및 下士官은 本人의 願이 있을 때에 豫備役に 編入한다. 但 戰時事變 또는 國家非常事態下에서는 例外로 한다.

第20條 軍人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豫備役に 編入한다.

1. 編成에 있어 過員으로 될 때
2. 休職이 되어 1年을 經過하여도 復職되지 아니할 때

第21條 將校의 轉役은 國防部長官이 行한다. 但 將官級將校의 轉役은 大統領이 行한다.

准士官 및 下士官의 轉役은 總參謀長이 行한다.

### 第6章 休職 除籍

第22條 軍人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1. 生死不明인 때
2. 戰傷 또는 公傷을 除外한 傷痕, 疾病으로 因하여 6個月 以上 勤務하지 못한 때 但 本人이 願하는 때에는 6個月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3. 刑事事件으로 軍法會議에 回附되거나 一般法院에 起訴되었을 때

休職은 官位를 保有하나 職務에 從事하지 못하며 休職中에는 俸給의 半額을 받는다.

第23條 軍人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除籍한다.

1. 戰歿軍警遺族과 傷痕軍警年金法 第4條 各號의 1에 該當한 때

2. 失蹤되었을 때
3. 死亡하였을 때  
除籍은 兵籍에서 除外되며 俸給을 받  
지 못한다.

**第24條** 將校의 休職 및 除籍은 國防部長  
官이 行한다. 但 將官級將校에 對하여는  
大統領이 行한다.  
准士官 및 下士官의 休職 및 除籍은 總參  
謀長이 行한다.

### 第7章 身分保障

**第25條** 軍人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官位를 喪失하지  
아니하고 終身 그 官位를 保有하며 禮遇  
를 받는다.

1. 軍法會議의 判決 또는 懲戒處分에 依  
하여 罷免 또는 不名譽 除隊되었을 때
2. 禁錮 以上の 刑을 받은 때
3. 大韓民國 國籍을 喪失한 때

**第26條** 元帥는 豫備役 또는 退役의 期間  
中에도 報酬를 받는다.

### 第8章 其 他

**第27條** 豫備役 및 退役에 服하는 軍人의  
服役期間 召集 其他에 關하여는 따로 大  
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8條** 本令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2個月을 經過한  
後에 施行한다.

本令施行前에 將校, 准士官 또는 下士官  
에 任命된 者에 對한 階級再調整 其他 身  
分措置는 따로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 鄉土豫備軍設置法

법률 제879호  
1961. 12. 27.

**제 1 조(목적)** 본법은 향토예비군(이하 예  
비군이라 한다)의 설치조직과 편성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기)** 예비군은 향토방위와 병참  
선 경비 및 후방지역 피해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조(조직과 편성)** ①예비군은 예비역 무  
관과 제1 예비병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  
한 경우에는 제2 예비병도 편입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연대, 대대, 중대로 편성한다.  
③전향의 연대, 대대, 중대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하여는 강령으로 정한다.

**제 4 조(훈련)** ①예비군은 제2조의 임무수행  
을 위하여 그 소속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②전향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횟수와 일  
수에 관하여는 강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출석하  
지 아니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 5 조(정치불관여)** ①예비군은 집단 또  
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전향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 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강령으로 정한다.

###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軍人事法

법률 제1006호  
1962. 1. 20.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법은 군인에게 적용할 인

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사관생도, 간부 후보생, 병 및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된 자에게 적용한다.

## 제 2 장 계급 및 병과

### 제 3 조(계급)

(1) 장교는 장관, 영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2)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3) 하사관은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4)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제 4 조(서열)**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전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기타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 5 조(병과)** 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병과

①육 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공병과, 통신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및 경리과

②해 군

전투병과, 기술병과 및 전문병과

③공 군

전투병과, 기술병과 및 일반병과

④해 병 대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공병과, 통신과, 병기과, 수송과 및 항공과

(2) 특수병과

①육 군

의무과(군인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의 5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무과, 군종과 및 여군과

②해 군

의무과, 법무과, 경리과, 군종과 및 시설과

③공 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④해 병 대

보급과 및 경리과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 제 3 장 복 무

### 제 6 조(복무의 구분)

(1)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2) 장기복무 장교는 사관학교 졸업자 및 단기복무 장교중 선발된 자로 한다.

(3) 단기복무 장교는 간부 후보생 및 대학생 군사훈련과정 출신장교 및 전향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4)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 제 7 조(의무복무기간)

(1)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장기복무 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②단기복무 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단 공군의 기본병과 장교는 4년으로 한다.

③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④하사관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4년, 해군 및 해병대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단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대학생 군사훈련과정 출신자 및 여자 군인은 3년으로 한다.

(2) 군인으로서 국비 또는 초청국의 부담에 의하여 외국에 유학한 자 및 국내 군 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되 복무기간의 가산은 수학 또는 위탁교육을 의무복무 연한내에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가산하며 의무복무 연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하였을때는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가산한다. 단 그 가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3) 법무장교로서 법원에서 실무를 한 자와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그 수료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제 8 조(현역정년)**

(1)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단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에는 예외로 한다.

①연령정년

- 원수 종신
- 대장 60세
- 중장 60세
- 소장 56세
- 준장 54세
- 대령 50세
- 중령 47세
- 소령이하 43세
- 준사관 50세
- 하사관 45세

②근속정년

- 소장 33년
- 준장 31년
- 대령 27년
- 중령 24년
- 소령이하 20년

준사관 27년

하사관 24년

③계급정년

- 중장 6년
- 소장 7년
- 준장 8년
- 대령 9년
- 중령 8년
- 소령 8년
- 대위 7년
- 중위 5년
- 소위 3년

(2) 법무, 군종 및 의무장교의 연령정년은 전항 제1호의 경우에 불구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60세를 초과하여 복무할 수는 없다.

**제 4 장 보 임**

**제 9 조(임용)**

- (1)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단 고시 이외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銓衡)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 (2) 고시 또는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1)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임용될 자격이 없다.

-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②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限定治產者).
- ③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

⑥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報酬)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제11조(장교의 임용)** 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①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②간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

③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을 마친자로서 선발된 자.

④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⑤전시에 있어서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자.

⑥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1)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단 전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③목사, 신부 또는 학사학위를 가진 대덕(大德)지위의 승려(僧侶)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④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전항 단서(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자의 당해부문 종사기간은 각령의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1) 장교의 임용은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행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단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2) 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단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하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이 행한다. 단 참모총장은 장관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임용연령 제한)**

(1)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단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0세로 할 수 있으며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 그 최고연령에 5년을 가산할 수 있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사관	20세	35세
하사관	18세	27세

(2) 전항의 규정은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보직)**

(1) 장교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

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  
라야 한다.

(2) 여단급 이상의 전투를 주 임무로 하  
는 부대의 장은 육군 및 해병대에 있어서  
는 보병, 기갑 및 포병병과 출신장교, 해  
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전투병과 출신 장  
교로써 보한다.

(3) 특수병과에 임명된 장교는 기본병과  
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4) 보직에 관하여 본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임기)

(1) 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특수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본법에 특  
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  
한다.

(2) 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 이전에 해임되지 아니  
한다.

- ①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 ③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④전투작전상 필요할 경우

#### 제18조(연합참모회의의장 임명)

(1) 연합참모회의의장(이하 연합의장이  
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장관급 장  
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내  
각수반의 제청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임명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2) 연합의장은 재임기간중 군에서 복무  
하는 현역장교 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  
진다.

(3) 연합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연합의장은 그 직에서 해면된 때 또  
는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  
역된다.

#### 제19조(참모총장등의 임기)

(1)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당해

군 장관급 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  
에 의하여 내각수반의 제청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임명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단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내신  
(內申)으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여야 한  
다.

(2)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재임  
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3)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전시, 사변중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4) 참모총장은 그 임기를 마친 후 또는  
그 직에서 해면되고 연합의장으로 전직되  
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5)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에서 해면된  
때 또는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역  
된다.

제20조(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  
장관급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  
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 ①각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 ②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 ③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 제21조(병과장 임명)

(1) 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2) 병과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된 때 또는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역된다.

(4) 전 각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 ①육군에 있어서는 공병감, 통신감, 화  
학감, 병기감, 병참감, 수송감, 법무감,  
부관감, 헌병감, 경리감, 의무감 및 군  
종감
- ②해군에 있어서는 법무감, 의무감, 보  
급감, 시설감 및 군종감

③공군에 있어서는 법무감, 의무감 및 군종감

④해병대에 있어서는 보급감 및 경리감

### 제 5 장 능 령

#### 제22조(능률증진)

(1) 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評定)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참모 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기회의 공정)** 군인은 기본교육, 보수교육 및 기술교육을 받기 위하여 군사교육 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한다.

### 제 6 장 진 급

**제24조(진급)** 장교 및 하사관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1계급씩 진급시킨다.

#### 제25조(진급권자)

(1)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행한다. 단 대장진급은 본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행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며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진행(專行)할 수 있다.

(2) 하사관의 진급은 하사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

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 지휘관이 명한다.

#### 제26조(진급 최저 복무기간)

(1)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진급될 계급	최저 복무기간
소 장	준장으로서 2년
준 장	대령으로서 3년
대 령	중령으로서 4년
중 령	소령으로서 4년
소 령	대위로서 4년
대 위	중위로서 3년
중 위	소위로서 2년
상 사	중사로서 3년
중 사	하사로서 2년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복무기간을 마친 장교중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그 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진급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진급인원은 당해 계급 전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진급될 계급	최저 복무기간
준 장	대령으로서 2년
대 령	중령으로서 3년
중 령	소령으로서 3년
소 령	대위로서 3년

#### 제27조(원수임명)

(1)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중에서 임명한다.

(2) 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내각수반의 제청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행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제28조(특정직위의 계급부여)**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는 자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2계급 이상의 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그 임기의 2분의 1을 경과할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 (1)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
- (2)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 (3) 전항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단 상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인 장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4)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계급의 위원으로 2회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 (5)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제31조(진급발령 및 삭제)**

- (1)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32조(진급낙천)**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중령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된 자는 진급낙천자로 한다.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원계급 복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위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원계급에 복귀한다.

**제 7 장 전역 및 제적**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 (1)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단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2)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전향 단서(但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

**제36조(정년전역)**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현역 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히 전역된다.

**제37조(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 ②저능률자.
  -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계급에서 2회 진급 낙천당한 장교. 단 1회 진급 낙천당한 소위는 전역심사 없이 전역시킨다.
  - ④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 (2)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 (1) 전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중에서 전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3)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전역보류)** 본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그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제40조(제적)**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 ① 사망하였을 때
- ②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 ③ 파면되었을 때
- ④ 제10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⑤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

**제41조(퇴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퇴역한다.

- ①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 ② 연령정년에 달한 자.
- ③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 ④ 여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제4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

**제43조(전역 및 제적권한자)**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단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 제 8 장 권 리 및 의 무

**제44조(신분보장)**

- (1) 군인은 제적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급을 보유하며 예우(禮遇)를 받는다.
- (2) 군인은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

**제45조(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 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

**제46조(휴가)** 군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휴직)**

(1) 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ㄱ.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 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2)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49조(휴직의 기간)**

(1) 전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 전역된다.

(2) 전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사건의 계속(繫屬)기간으로 한다.

**제50조(부당한 전역 및 제적에 대한 소청)**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부당하게 전역 또는 제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그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소청 심사위원회)**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하에 인사소청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인사소청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판정방법 및 소청 제기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 9 장 보수(報酬)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 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제54조(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이병(罹病),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이병(罹病)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역 또는 제적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제10장 징 계

**제56조(징계사유)**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율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背馳)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57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이를 파면, 강등, 정직 및 감봉으로, 경징계는 이를 영창,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파면은 그 관직을 박탈함을 말하며 병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하함을 말한다. 단 장교로부터 준사관으로, 하사관으로부터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③ 정직은 그 직책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한다. 단 정직은 병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액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한다.

⑤ 영창은 부대 합정의 영창 또는 기타 구금장에 감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하사관 또는 병에 한한다.

⑥ 근신은 연습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5일 내로 한다.

⑦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 제58조(징계권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의 장은 소속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①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관서의 장

② 장관급 장교 이외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에 대하여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투사령관, 비행단장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관서의 장

③ 장관급 장교 이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중징계는 연대장, 합정장, 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④ 하사관 및 병에 대한 경징계는 중대장, 해군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강등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장교의 파면 및 장관급 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② 준사관의 파면 및 장관급 장교 이외의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

③하사관의 파면은 참모총장.

**제59조(징계위원회)**

(1)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 이상으로써 구성한다.

(3) 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관서에 설치한다.

**제60조(항고)**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관서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단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 강등 및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고를 받은 부대의 장 및 국방부장관은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補則)**

**제62조(상훈 및 복제)** 군인의 상훈 및 복제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4조(위임규정)** 해군참모총장은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9조, 제43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5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조(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본법에 의하여 보임 및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중 본법 제19조와 제21조에 규정한 직위에 있는 장교의 임기는 각각 당해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 5 조(동전)** 본법시행에 있어서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장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은 당해 임시진급 일자로부터 가산한다.

**제 6 조(동전)** 본법 시행당시 간부후보생으로 있거나 간부후보생 고시에 합격한자 및 장기복무를 지원한 병 또는 하사관 후보로 있는자는 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7 조(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에 한하여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대위, 소령 및 중령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제 8 조(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에 한하여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위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을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동전)** 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되기 전에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계급

정년에 달한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1회의 진급선발 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역을 보류한다.

**제10조(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10년 이상 복무중인 장교는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기타 장교에 대한 복무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동전)** 본법 시행전에 임시진급한 장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軍人事法施行令

閣令 제426호  
1962. 2. 6.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서열)**

(1)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①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하사관 후보자는 하사관 다음순위로 한다.

②동일계급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한다.

③전호의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동일한 때에는 하위 각 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에 의하고 그 순위에도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일자순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임용날짜가 동일한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2)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열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병과장은 당해군 당해 병과내에서 복무하는 장교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4) 하사관 및 병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 2 장 복 무

**제 3 조(장기복무장교의 전형)**

(1)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는 의무복무기간 또는 제4조 단서에 규정된 복무연장기간을 만료하기 1년전에 장기복무 지원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신체조건, 연령, 경력과 근무성적 및 군사교육과정과 그 성적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할 때에는 구술고사 또는 필기고사를 과할 수 있다. 단 전투에서 발군(拔群)의 공을 세웠거나 간부후보생과정 또는 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단기복무장교의 복무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불합격된자 및 장기복무를 원하지 아니한 단기복무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2년을 1기로하여 복무연장을 할 수 있으며 전 현역복무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장기복무장교의 전역지원)** 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원할 경우에는 4년의 복무를 마치기 전에 전역원을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현역복무기간 계산)**

(1)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현역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임용 또는 진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강등된 자에 대하여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통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5조에 규정된 진급예정자 명단에 기재된 자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4) 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무단탈영 또는 도망기간
- ② 휴직 및 정직기간
- ③ 사비유학을 위한 휴가기간

**제7조(유학기간)**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유학자의 수학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 제3장 임 용

**제8조(응시자의 학력)** 사관생도, 간부후보생 및 대학군사훈련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 사관학교의 생도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 간부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단 4년제 대학 졸업자만으로서 군의 소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또는 준사관, 하사관 및 병 중에서 간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 (3) 대학군사훈련생은 대학재학중인 자

**제9조(고시)**

- (1)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는 필기고사,

신체검사 및 구술고사로 한다.

(2)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고사와 검사 이외에 실기고사를 과할 수 있다.

(3)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된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력기간 환산)**

(1)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그 100% 범위 내에서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시 및 최초 진급시에만 적용하되 중위로부터 기산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경력기간 환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교임용 자격)** 법 제11조제5호에 규정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 또는 귀순한 장교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제4장 보 임

#### 제1절 중요부서의 장

**제12조(중요부서의 장)**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육군에 있어서는 군사령관, 군단장, 관구사령관 및 사단장, 해군에 있어서는 함대사령관 및 전투사령관, 공군에 있어서는

작전사령관 및 전투비행단장, 해병대에  
있어서는 해병상륙 사단장

(2)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국방부에 있어서의 국방대학원장, 육군에  
있어서는 전투병과 교육기지 사령관, 육  
군대학총장, 육군사관학교장 및 훈련소장,  
해군에 있어서의 통제부사령관 해군대학  
총장 및 해군사관학교장, 공군에 있어서  
는 공군대학총장 및 공군사관학교장, 해  
병대에 있어서의 해병기지 사령관

**제13조(임기)** 전조에 규정된 부대의 장  
및 중요부서의 장의 동일직위에서의 임기  
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

## 제 2 절 특수직위

**제14조(특수직위)**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  
된 특수직위라 함은 해외주재무관, 국방  
대학원 교수, 사관학교 교수 및 기타 국  
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속  
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15조(임명)** 특수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은 다음에 의한다.

(1) 생략

(2) 해외주재무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  
이 임명한다. 단 영관급 장교는 국방부장  
관이 진행한다.

(3) 국방대학원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수자격을 가진 장교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단 국방부장관은 국방대학원을 이수한 영  
관급 장교를 국방대학원 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4) 사관학교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의  
한 교수자격을 가진 장교중에서 참모총장  
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제16조(특수직위의 임기)** 특수직위에 보  
직된 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타보직)** 보직에 관하여는 본령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5 장 진 급

### 제 1 절 통 칙

**제18조(최저 복무기간)** 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최저 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진급선발을 하  
는 다음해의 진급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진급연도)** 본령에서 진급연도라 함  
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0조(장교진급 선발대상권)**

(1) 장교진급 선발대상권(이하 선발대상  
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장교진급 선  
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부  
의(附議)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  
조제1항에 규정된 최저 복무기간이 달하  
는 자로 한다. 단 참모총장은 진급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한자 중에서 선임순에 따라 선발대상  
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최저 복무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전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선발대상권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자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한 자는 특별진급 선발대  
상권에 포함한다.

**제21조(진급예정인원)**

(1) 진급예정인원은 다음 진급연도의 필  
원수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한다.

(2) 기본병과는 계급별로 진급예정인원을  
지정하되 기본병과내의 각 병과간에 심한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하  
여 병과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3) 특수병과는 병과별로 각각 진급예정 인원을 지정한다.

(4) 매년도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병력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수로 한다.

**제22조(결원)** 결원이라 함은 일진급 연도에 있어서 실재 및 예상되는 승인병력에 비한 계급별 부족수를 말한다.

**제23조(선임순)**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선임순이라 함은 제20조에 규정된 장교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명단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

**제24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규정된 승인된 계급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내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 명시한 계급을 말한다.

**제25조(위임규정)** 하사관 진급선발위원회와 하사관의 진급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 2 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26조(설치)**

(1)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의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사할 때에는 당해 병과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구성)**

(1) 선발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7일 이내로써 구성한다.

(2) 위원은 중령급 이상의 장교로서 선발대상자보다 1계급 이상 상급인 장교라야 한다.

(3) 법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군내에서 전항 규정한 위원후보자의 부족으로 2회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소집)** 참모총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당해 진급연도의 전년도내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중위진급 선발위원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1)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본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4) 진급선발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임관 구분이나 전년도 의 낙천사실 등에 차별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동일한 선발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0조(해명서 등)**

(1) 진급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이 기록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된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 제 3 절 장교진급선발

**제31조(선발절차)**

(1) 선발위원회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예정 인원수에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 인원수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 인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중에서 다시 진급예정 인원수를 선발하여야 한다.

(4) 선발위원회는 특별진급선발 대상자 중에서 특별진급을 위하여 할당된 인원수를 선발한다.

**제32조(선발기준)** 선발위원회는 진급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선발한다.

(1) 경 력

- ①경험한 직책
- ②군사교육
- ③군사적 전문기능
- ④진급기록

(2) 복무성과

- ①고과성적
- ②군사교육성적
- ③상벌사항

(3) 기 타

- ①품 격
- ②신체조건
- ③연 령
- ④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⑤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추천 및 낙천명단)**

(1)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추천자 명단과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2) 진급추천자 또는 진급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순으로 작성한다.

**제34조(진급낙천)**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된 자를 진급낙천자로 한다.

(2) 참모총장은 진급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다.

(3) 동일계급에서 2회이상 진급낙천된 자는 진급선발대상이 될 수 없다.

## 제 4 절 장교진급 발령

**제35조(진급예정자 명단)**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얻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예정자 명단을 당해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2) 전향의 진급예정자의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제36조(발령)**

(1) 진급발령은 수시로 행하되 그 인원수는 진급시킬 당시의 결원수에 의한다.

(2) 진급예정자로서 당해 연도내에 진급되지 못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자에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3) 진급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이 발령될 자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지 아니한 자와 특별 진급예정자로서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당해 최초 복무기간에 달할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제37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1)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군법회의에 기소되었을 경우 단 무죄 판결된 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무죄로 확정된 일자 이후의 첫 진급시에 발령한다.

②중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단 항고에 의하여 처분이 경정계로 경감 또는 면제된 때에는 전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단 전역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진급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진급추천 및 제창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창권자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발령의 보류)** 진급예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의 발령을 보류한다.

- ①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② 휴직되었을 경우
- ③ 군인휴가규정에 의하여 사비로 유학하였을 경우

**제40조(증편)**

(1) 법 제33조에 규정된 증편이라 함은 당해군 총 병력이 증가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수는 당해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수 범위내로 한다.

**제41조(원계급 복귀)**

(1) 법 제34조에 규정된 하직위라 함은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하위의 계급인 직위를 말한다.

(2)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에 복귀한다.

- 1. 군법회의에 기소되었을 때
-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때
- 3.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 4. 무단 탈영 또는 도망하였을 때
- 5. 휴직되었을 때
- 6. 군인휴가규정에 의하여 사비로 외국에 유학하였을 때

7. 전역될 때

8.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하였을 때

(3) 원계급 복귀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제 5 절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

**제42조** 전사자 및 순직자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진급 또는 임용시킬 수 있다. 단 장관급 장교로서의 진급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 (1) 장 교  
1 계 급
- (2) 장교후보생  
소 위
- (3) 상 사  
준 위
- (4) 중사이하(병포함)  
1 계 급
- (5) 하사관 후보자  
하 사

## 제 6 장 전역 및 제적

**제43조(전역보류 신청)** 법 제39조에 규정된 전역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제44조(전역지원)** 전역지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전역일로부터 1년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 복무장교는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정년 전역일)** 법 제36조에 규정된 자의 전역일은 그 현역정년에 달하는 날의 다음달로 한다.

**제46조(원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일)**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역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내에 각각

전역한다.

(2) 전조 및 전항에 규정된 기간내에서의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제47조(심신장애자의 전역)**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심신장애자의 기준심사방법 및 기타 필요한 전역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저능률자의 전역)**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저능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능률의 부족으로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 ②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③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자
- ④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

(2) 저능률자의 기준 및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역심사위원회)**

(1)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장교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2) 하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하사관에게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하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1) 전역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하되 장교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대령급 이상인 장교로 한다.

**제51조(회의)**

(1)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단 필요할 때는 전역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2)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전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 7 장 권리 및 의무

### 제 1 절 휴 직

**제52조(복직)**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그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53조(권리회복)**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 2 절 인사소청 심사위원회

**제54조(인사소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 인사소청 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하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 인사소청 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각각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단 임명권자는 군인이 아닌 자를 위촉할 수 있다.

(3)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위원회의 위원은 당해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5조(소청절차)**

(1) 소청은 전역 또는 제적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된 소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제기일은 우편국의 소인일자로 한다.

**제56조(소청장)**

- (1)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와 이유 및 소청인의 주소, 전 소속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2) 소청장에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57조(회의)**

- (1)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의 회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인을 출석시켜 불복의 요지와 이유를 청취할 수 있다.
- (2)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4)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 (1)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전역 또는 제적의 취소를 한 때에는 30일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시켜야 한다.
- (2) 소청의 사유가 이유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통고함으로써 당해소청은 종료된다.

**제59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본령에 규정된 외에 특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장 징 계**

**제 1 절 통 칙**

**제60조(징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군인본분의 태세로 회복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엄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중지)** 징계를 하여야 할 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추가 있을 때에는 징계

를 행하지 못한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형사소추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2조(강등시의 계급)**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당해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3조(처분의 병과(併科)금지)** 징계종류는 법 또는 본령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을 병과하지 못한다.

**제64조(징계관여자의 제한)**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 또는 연고관계가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 및 기타 징계심의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당해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

**제65조(비행의 통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사안의 이송)** 징계권자가 그의 소속하에 파견되어 있는 타군 소속자에 대하여 중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징계혐의자의 원소속장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67조(이중징계의 금지)** 여하한 징계사유에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비행에 대하여 두번 징계할 수 없다.

**제 2 절 징계의 절차**

**제68조(심사기준)** 징계는 비행의 사실을 심사하여 그 정도 정상 기타 징계혐의자의 성행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위원회 구성)**

(1) 징계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15인 이내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한다.

(2) 위원중 최상급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會務)를 장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위원중 상급 또는 선임인 장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의 경우 당해 부대에서 위원구성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타부대 장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70조(회의)**

(1)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1조(징계혐의자의 참석)**

(1)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참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써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2)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2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물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보고)** 징계위원회는 그 심사결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결의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 후 징계권자에게 보고한다.

**제74조(징계결의서)** 전조에 규정한 징계결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징계혐의자 및 증인의 출석여부
- ② 비행사실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 ③ 정상참작 여부
- ④ 심의결론
- ⑤ 의결방법 및 그 내용

**제 3 절 결 정 및 처 분 에 대 한 조 치**

**제75조(징계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76조(징계권자)** 징계는 징계권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77조(징계처분의 감경 및 정지)**

(1)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승인권자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78조(징계처분의 연기)**

(1)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소속부대의 장은 결정된 징계의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처분을 연기한 자는 지체없이 징계권자에게 그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승인상신)**

(1)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의결서와 관계기록을 구비하여 상신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징계처분의 통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76조에 규정한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고하고 수령증을 받아 징계의결서 사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징계의 기간)** 징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82조(관할)**

(1) 징계혐의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 소속장은 혐의사실 및 관계자료를 징계혐의자의 현 소속장에게 이송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징계사안은 현 소속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절 항고절차

- 제83조(처분통고일)**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이라 함은 본인이 그 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을 말한다.
- 제84조(항고의 제기)**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고서에 징계처분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5조(항고서에 대한 조치)** 항고심사자는 항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그 항고요지를 당해 징계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86조(기록의 송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로부터 그 징계관계기록 일체를 송부받아야 한다.
- 제87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되어 기각되었거나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는 후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 제88조(항고심사위원회 설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를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9조(항고심사위원회 구성)**
- (1) 항고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장교중에서 항고심사자가 임명한다.
  - (2) 위원중 1인은 법무관 또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라야 한다.
- 제90조(회의)** 항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91조(조사)**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심사서류와 항고서에 의하는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 및 기타기관에 사실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92조(항고심사 의결서)**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비행사실, 항고이유, 증거채택사유, 사안기각여부, 심의내용, 정상참작, 사유, 결론 및 의결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3조(의결의 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그 의결된 사항을 당해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4조(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제95조(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96조(준용)** 제72조의 규정은 항고심사위원회, 제77조의 규정은 항고심사권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 5 절 기 타

- 제97조(처분결과의 보고)** 본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①장관급 장교는 국방부장관
  - ②장관급 장교 이외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③병은 사단장, 전투사령관, 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 제98조(처분의 통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감독하에 있는 타 부대장병을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법령)** 정규군인 신분령, 육군 보충장교령, 군인 입시진급령, 병 진급령,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기규정, 국군징계령 및 국군징계 항고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령에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 4 조(경과조치)** 법 시행당시의 해군 및 해병대의 병조장, 일등병조, 이등병조, 상등수병(해병대는 상등해병), 일등수병(해병대는 1등해병), 2등수병(해병대는 2등해병) 및 견습수병(해병대는 견습해병)은 이를 각각 법에 의한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본다.

**제 5 조(동전)** 법 시행이전에 사관학교를

마친 자로서 5년 이상 복무한 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1차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제 6 조(동전)** 1962년도의 장교진급 선발은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한다.

**제 7 조(동전)**

(1) 본령 시행이전에 행한 중징계중 신분정지는 정직으로, 경징계중 중근신과 경근신은 근신으로, 중노동, 중영창 및 경영창은 영창으로, 금족 및 상륙금지는 견책으로 본다.

(2) 본령 시행당시에 계속(繫屬)중인 징계 및 항고사안은 종전의 국방징계령 및 국군징계 항고심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동전)** 본령 시행당시의 장교의 서열은 본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전단(前段)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계급에 진급된 순으로 한다.

## II. 歷代 國防部長官·次官, 合參議長, 各軍 參謀總長, 韓·美聯合司 副司令官 及 海兵隊 司令官 名單

### 가. 歷代 國防部長官

歷 代	姓 名	在 任 期 間
初 代	李 範 奭	1948. 8. 4 ~ 1949. 3. 21
2 代	申 性 模	1949. 3. 21 ~ 1951. 5. 7
3 代	李 起 鵬	1951. 5. 7 ~ 1952. 3. 29
4 代	申 泰 英	1952. 3. 29 ~ 1953. 6. 30
5 代	孫 元 一	1953. 6. 30 ~ 1956. 5. 26
6 代	金 用 雨	1956. 5. 26 ~ 1957. 7. 6
7 代	金 貞 烈	1957. 7. 6 ~ 1960. 5. 2
8 代	李 鍾 贊	1960. 5. 2 ~ 1960. 8. 19
9 代	玄 錫 虎	1960. 8. 23 ~ 1960. 9. 12
10 代	權 仲 敦	1960. 9. 12 ~ 1961. 1. 30
11 代	玄 錫 虎	1961. 1. 30 ~ 1961. 5. 18
12 代	張 都 暎	1961. 5. 20 ~ 1961. 6. 6
13 代	宋 堯 讚	1961. 6. 12 ~ 1961. 7. 10
14 代	朴 炳 權	1961. 7. 10 ~ 1963. 3. 16
15 代	金 聖 恩	1963. 3. 16 ~ 1968. 2. 27
16 代	崔 榮 喜	1968. 2. 28 ~ 1968. 8. 5
17 代	任 忠 植	1968. 8. 5 ~ 1970. 3. 10
18 代	丁 來 赫	1970. 3. 10 ~ 1971. 8. 25
19 代	劉 載 興	1971. 8. 25 ~ 1973. 12. 3
20 代	徐 鍾 喆	1973. 12. 3 ~ 1977. 12. 20
21 代	盧 載 鉉	1977. 12. 20 ~ 1979. 12. 14
22 代	周 永 福	1979. 12. 14 ~ 1982. 5. 21
23 代	尹 誠 敏	1982. 5. 21 ~ 1986. 1. 8
24 代	李 基 百	1986. 1. 8 ~ 1987. 7. 14

歷代	姓名	在任期間
25代	鄭鎬溶	1987. 7. 14 ~ 1988. 2. 26
26代	吳滋福	1988. 2. 26 ~ 1988. 12. 5
27代	李相薰	1988. 12. 5 ~ 1990. 10. 8
28代	李鍾九	1990. 10. 8 ~ 1991. 12. 20
29代	崔世昌	1991. 12. 20 ~ 1993. 2. 26
30代	權寧海	1993. 2. 26 ~ 1993. 12. 21
31代	李炳台	1993. 12. 21 ~

#### 4. 歷代 國防部次官

歷代	姓名	在任期間
初代	崔用德	1948. 8. 20 ~ 1950. 5. 13
2代	張暲根	1950. 5. 14 ~ 1951. 6. 22
3代	金一煥	1951. 6. 23 ~ 1953. 11. 8
4代	姜英勳	1953. 11. 9 ~ 1953. 11. 18
5代	李濬	1953. 11. 19 ~ 1955. 9. 16
6代	金用雨	1955. 9. 17 ~ 1956. 5. 26
7代	金鍾甲	1956. 7. 2 ~ 1957. 8. 7
8代	崔世璜	1957. 8. 8 ~ 1960. 5. 26
9代	李熙鳳	1960. 5. 27 ~ 1960. 8. 28
10代(政務)	朴炳培	1960. 9. 2 ~ 1961. 1. 30
10代(事務)	金業	1960. 8. 29 ~ 1961. 5. 22
11代(政務)	禹熙昌	1961. 1. 30 ~ 1961. 5. 18
11代(事務)	申應均	1961. 5. 22 ~ 1961. 7. 4
12代	李興培	1961. 8. 10 ~ 1963. 12. 16
13代	姜瑞龍	1963. 12. 17 ~ 1968. 5. 20
14代	李垆鎬	1968. 5. 21 ~ 1970. 7. 3
15代	柳根昌	1970. 7. 4 ~ 1973. 10. 18
16代	崔侑洙	1973. 10. 19 ~ 1974. 12. 16

歷代	姓名	在任期間
17代	李敏雨	1974. 12. 17 ~ 1978. 10. 5
18代	金容然	1978. 10. 6 ~ 1979. 12. 20
19代	曹文煥	1979. 12. 21 ~ 1980. 9. 8
20代	朴贊兢	1980. 9. 9 ~ 1982. 5. 21
21代	權寧珏	1982. 6. 2 ~ 1985. 10. 17
22代	黃仁秀	1985. 10. 17 ~ 1987. 12. 31
23代	申致求	1987. 12. 31 ~ 1988. 12. 12
24代	林憲杓	1988. 12. 12 ~ 1990. 12. 29
25代	權寧海	1990. 12. 29 ~ 1993. 2. 25
26代	李秀然	1993. 3. 4 ~ 1993. 12. 28
27代	鄭竣昊	1993. 12. 28 ~

#### ㄷ. 歷代 合同參謀議長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初代	陸軍大將	李亨根	1954. 2. 17 ~ 1956. 6. 27
2代	陸軍大將	丁一權	1956. 6. 28 ~ 1957. 5. 18
3代	陸軍中將	劉載興	1957. 5. 18 ~ 1959. 2. 23
4代	陸軍大將	白善燁	1959. 2. 23 ~ 1960. 5. 31
5代	陸軍中將	崔榮喜	1960. 8. 29 ~ 1960. 10. 7
6代	陸軍大將	金鍾五	1960. 10. 8 ~ 1961. 6. 5
7代	陸軍大將	金鍾五	1962. 6. 23 ~ 1963. 5. 29 (重任)
8代	陸軍大將	金鍾五	1963. 6. 1 ~ 1965. 4. 10 (重任)
9代	陸軍大將	張昌國	1965. 4. 10 ~ 1967. 4. 10
10代	陸軍大將	任忠植	1967. 4. 10 ~ 1968. 8. 6
11代	陸軍大將	文亨泰	1968. 8. 6 ~ 1970. 8. 6
12代	陸軍大將	沈興善	1970. 8. 6 ~ 1972. 6. 2
13代	陸軍大將	韓信	1972. 6. 2 ~ 1975. 2. 28
14代	陸軍大將	盧載鉉	1975. 3. 1 ~ 1977. 12. 20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15代	陸軍大將	金鍾煥	1977. 12. 20 ~ 1979. 12. 13
16代	陸軍大將	柳炳賢	1979. 12. 13 ~ 1981. 5. 14
17代	陸軍大將	尹誠敏	1981. 5. 15 ~ 1982. 5. 23
18代	陸軍大將	金潤鎬	1982. 5. 24 ~ 1983. 6. 3
19代	陸軍大將	李基百	1983. 6. 3 ~ 1985. 6. 3
20代	陸軍大將	鄭振權	1985. 6. 3 ~ 1986. 7. 9
21代	陸軍大將	吳滋福	1986. 7. 9 ~ 1987. 12. 30
22代	陸軍大將	崔世昌	1987. 12. 30 ~ 1989. 4. 14
23代	陸軍大將	鄭鎬根	1989. 4. 14 ~ 1991. 12. 6
24代	陸軍大將	李弼燮	1991. 12. 6 ~ 1993. 5. 25
25代	空軍大將	李養鎬	1993. 5. 25 ~

#### 2. 歷代 陸軍參謀總長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初代	少將	李應俊	1948. 12. 15 ~ 1949. 5. 8
2代	少將	蔡秉德	1949. 5. 9 ~ 1949. 9. 30
3代	少將	申泰英	1949. 10. 1 ~ 1950. 4. 9
4代	少將	蔡秉德	1950. 4. 10 ~ 1950. 6. 29
5代	中將	丁一權	1950. 6. 30 ~ 1951. 6. 22
6代	中將	李鍾贊	1951. 6. 23 ~ 1952. 7. 22
7代	大將	白善燁	1952. 7. 23 ~ 1954. 2. 13
8代	大將	丁一權	1954. 2. 14 ~ 1956. 6. 26
9代	大將	李亨根	1956. 6. 27 ~ 1957. 5. 17
10代	大將	白善燁	1957. 5. 18 ~ 1959. 2. 22
11代	中將	宋堯讚	1959. 2. 23 ~ 1960. 5. 22
12代	中將	崔榮喜	1960. 5. 23 ~ 1960. 8. 19
13代	中將	崔慶祿	1960. 8. 20 ~ 1961. 2. 16
14代	中將	張都暎	1961. 2. 17 ~ 1961. 6. 5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15代	大將	金鍾五	1961. 6. 6 ~ 1963. 5. 31
16代	大將	閔穢植	1963. 6. 1 ~ 1965. 3. 30
17代	大將	金容培	1965. 4. 1 ~ 1966. 9. 1
18代	大將	金桂元	1966. 9. 2 ~ 1969. 8. 31
19代	大將	徐鍾喆	1969. 9. 1 ~ 1972. 6. 1
20代	大將	盧載鉉	1972. 6. 2 ~ 1975. 2. 28
21代	大將	李世鎬	1975. 3. 1 ~ 1979. 1. 31
22代	大將	鄭昇和	1979. 2. 1 ~ 1979. 12. 12
23代	大將	李愷性	1979. 12. 13 ~ 1981. 12. 15
24代	大將	黃永時	1981. 12. 16 ~ 1983. 12. 15
25代	大將	鄭鎬溶	1983. 12. 16 ~ 1985. 12. 15
26代	大將	朴熙道	1985. 12. 16 ~ 1988. 6. 10
27代	大將	李鍾九	1988. 6. 11 ~ 1990. 6. 11
28代	大將	李鎮三	1990. 6. 12 ~ 1991. 12. 6
29代	大將	金振永	1991. 12. 6 ~ 1993. 3. 9
30代	大將	金東鎭	1991. 3. 9 ~

#### 나. 歷代海軍參謀總長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初代	中將	孫元一	1948. 12. 7 ~ 53. 6. 30
2代	中將	朴沃圭	1953. 6. 30 ~ 54. 11. 1
3代	中將	鄭競謨	1954. 11. 1 ~ 59. 2. 23
4代	中將	李龍雲	1959. 2. 23 ~ 60. 9. 28
5代	中將	李成浩	1960. 9. 28 ~ 62. 9. 28
6代	中將	李孟基	1962. 9. 28 ~ 64. 9. 10
7代	中將	咸明洙	1964. 9. 10 ~ 66. 9. 1
8代	大將	金榮寬	1966. 9. 1 ~ 69. 4. 1
9代	大將	張志洙	1969. 4. 1 ~ 72. 4. 1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10代	大將	金圭燮	1972. 4. 1 ~ 1974. 2. 28
11代	大將	黃汀淵	1974. 2. 28 ~ 1979. 4. 17
12代	大將	金鍾坤	1979. 4. 17 ~ 1981. 5. 14
13代	大將	李銀秀	1981. 5. 14 ~ 1982. 12. 28
14代	大將	吳慶煥	1982. 12. 28 ~ 1984. 9. 4
15代	大將	崔相和	1984. 9. 4 ~ 1987. 9. 4
16代	大將	金棕鎬	1987. 9. 4 ~ 1989. 9. 4
17代	大將	金鍾浩	1989. 9. 4 ~ 1991. 9. 4
18代	大將	金鐵宇	1991. 9. 4 ~ 1993. 5. 24
19代	中將	金弘烈	1993. 5. 24 ~

#### 나. 歷代空軍參謀總長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初代	中將	金貞烈	1949. 10. 1 ~ 1952. 12. 1
2代	中將	崔用德	1952. 12. 1 ~ 1954. 12. 1
3代	中將	金貞烈	1954. 12. 1 ~ 1956. 12. 1
4代	中將	張德昌	1956. 12. 1 ~ 1958. 12. 1
5代	中將	金昌圭	1958. 12. 1 ~ 1960. 8. 1
6代	中將	金信	1960. 8. 1 ~ 1962. 8. 1
7代	中將	張盛煥	1962. 8. 1 ~ 1964. 8. 1
8代	中將	朴元錫	1964. 8. 1 ~ 1966. 8. 1
9代	中將	張志良	1966. 8. 1 ~ 1968. 8. 1
10代	大將	金成龍	1968. 8. 1 ~ 1970. 8. 1
11代	大將	金斗萬	1970. 8. 1 ~ 1971. 8. 25
12代	大將	玉滿鎬	1971. 8. 25 ~ 1974. 8. 1
13代	大將	周永福	1974. 8. 1 ~ 1979. 4. 18
14代	大將	尹子重	1979. 4. 18 ~ 1981. 3. 10
15代	大將	李喜根	1981. 3. 10 ~ 1982. 6. 5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16代	大將	金相台	1982. 6. 5 ~ 1984. 6. 5
17代	大將	金仁基	1984. 6. 5 ~ 1987. 6. 5
18代	大將	徐東烈	1987. 6. 5 ~ 1989. 6. 5
19代	大將	鄭用厚	1989. 6. 5 ~ 1990. 9. 8
20代	大將	韓周奭	1990. 9. 8 ~ 1992. 9. 7
21代	大將	李養鎬	1992. 9. 7 ~ 1993. 5. 2
22代	大將	趙根海	1993. 5. 24 ~ 1994. 3. 3

### 사. 歷代 韓·美聯合司 副司令官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初代	陸軍大將	柳炳賢	1978. 11. 7 ~ 1979. 12. 18
2代	陸軍大將	白石柱	1979. 12. 18 ~ 1981. 8. 31
3代	陸軍大將	朴魯榮	1981. 8. 31 ~ 1983. 8. 30
4代	陸軍大將	李相勳	1983. 8. 31 ~ 1985. 8. 30
5代	陸軍大將	韓哲洙	1985. 8. 31 ~ 1987. 8. 30
6代	陸軍大將	鄭鎭泰	1987. 8. 31 ~ 1989. 4. 13
7代	陸軍大將	羅重培	1989. 4. 14 ~ 1990. 12. 26
8代	陸軍大將	金振永	1990. 12. 27 ~ 1991. 12. 5
9代	陸軍大將	金東鎭	1991. 12. 5 ~ 1993. 3. 9
10代	陸軍大將	金在昌	1993. 3. 9 ~ 1994. 4. 18

### 아. 歷代 海兵隊 司令官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初代	少將	申鉉俊	1949. 2. 1 ~ 1953. 10. 14
2代	中將	金錫範	1953. 10. 15 ~ 1957. 9. 3 ( '55. 9. 20 중임 )
3代	中將	金大植	1957. 9. 4 ~ 1960. 6. 24 ( '59. 9. 5 중임 )

歷代	階級	姓名	在任期間
4代	中將	金聖恩	1960. 6. 25 ~ 1962. 7. 1
5代	中將	金斗燦	1962. 7. 2 ~ 1964. 7. 1
6代	中將	孔正植	1964. 7. 2 ~ 1966. 6. 30
7代	大將	姜起千	1966. 7. 1 ~ 1969. 6. 30 ( '68. 7. 1 중임 )
8代	大將	鄭光鎬	1969. 7. 1 ~ 1971. 6. 30
9代	大將	李丙文	1971. 7. 1 ~ 1973. 10. 10 ( '73. 7. 1 중임 )
10代	中將	金然翔	1973. 10. 23 ~ 1975. 7. 10 ( 第2參謀次長 )
11代	中將	李東用	1975. 7. 11 ~ 1977. 8. 31 ( 第2參謀次長 )
12代	中將	鄭台錫	1977. 9. 1 ~ 1979. 9. 25 ( 第2參謀次長 )
13代	中將	金正浩	1979. 9. 26 ~ 1981. 3. 15 ( 第2參謀次長 )
14代	中將	崔琪德	1981. 3. 16 ~ 1982. 12. 27 ( 第2參謀次長 )
15代	中將	朴喜宰	1982. 12. 28 ~ 1984. 9. 3 ( 第2參謀次長 )
16代	中將	成炳文	1984. 9. 4 ~ 1986. 9. 2 ( 第2參謀次長 )
17代	中將	朴九澄	1986. 9. 3 ~ 1988. 9. 2 ( '87. 11. 1부로 海兵隊司令官 )
18代	中將	崔甲鎭	1988. 9. 3 ~ 1990. 9. 2
19代	中將	趙基燁	1990. 9. 2 ~ 1992. 6. 29
20代	中將	林鍾璘	1992. 6. 30 ~

□ 監 修

副 所 長 張 滄 鎭

□ 企劃 및 編輯

主幹： 國防史部長 李 丙 泰

編纂： 前任研究員 申 英 鎮

前任研究員 曹 福 鉉

主任研究員 崔 禹 洪

編輯： 管 理 員 林 英 淑

## 國 防 史 年 表 (1945~1990)

---

1994年 6月 20日 印刷

1994年 6月 30日 發行

發行人 具 本 重

發售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1街 8番地  
戰 爭 紀 念 事 業 會 附 設  
國 防 軍 史 研 究 所

印刷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2街洞 2-12  
軍 人 共 濟 會 第 1 印 刷 事 業 所